4404078

電波管理五十年史

대한민국정보통신부 MIC LIBRARY
4-404078

題號：楊峴宣陽奎





우리나라 최초의 선박무선국 광제호

발 간 사

지난 반세기가 새 천년을 향한 주춧돌이 되기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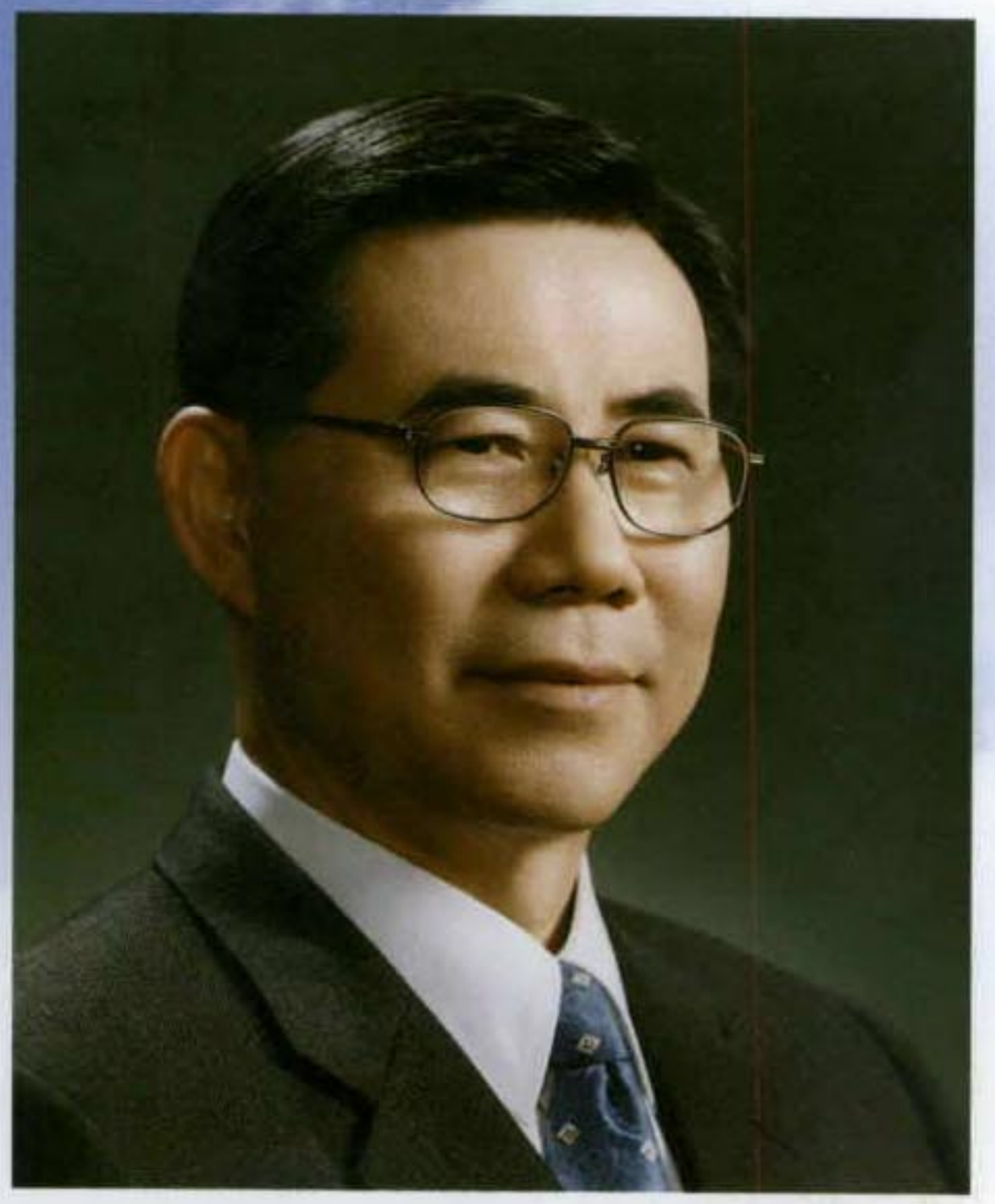

오늘에야 비로소 〈전파 관리 50년사〉가 발간 되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머지않아 우리 앞에 다가올 21세기의 전파관리를 새롭게 조명해 보기 위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진통을 겪느라 다소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 만 그래도 이 해를 넘기지 않고 햇빛을 보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가 전파 감시 업무를 처음 시작한 것은 1947년 6월 1일 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중앙 전신국 광장 수신소 내에 체신부 직할 광장분실이 설치되어 그 역사적인 업무가 첫발을 내어딛게 되었으며, 1949년 11월 22일 서울 · 부산 · 광주 전파 감시국의 설치와 더불어 본격적인 전파관리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983년 12월 30일 중앙전파감시소로 승격되었고 1987년 12월 15일을 기해 현재의 중앙전파관리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부터 자동화된 감시시설을 설치하는 등 현대화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무선국 혼신이나 방송 수신장애가 생길 경우 즉시 출동해서 이용자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국에 16개의 CS(고객만족) 기동팀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전파운용 상황을 중앙에서 한눈으로 파악하고 전파장애의 신속한 해소는 물론 인명의 안전 및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파감시 지휘 · 통제망을 구축함으로서 전파이용자의 편익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간의 전파 자국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우주공간에서의 전파권익을 확보하고 국내 위성 전파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기도 이천에 2001년 10월 개소를 목표로 위성 전파 감시센터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위성 전파 감시센터가 준공이 되면 위성전파의 이용을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리하는 중심 기관으로 자리 매김할 것입니다.

무릇 역사란 미래 발전의 밑 거름이자 나침반의 구실을 한다고 합니다 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전파관리50년사〉는 단순히 우리가 걸어온 지난날을 되새기고 정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새 천년을 열어 가는 데에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우리 나라 정보화의 산 역사를 가꾸시느라 심혈을 기울이시며 이 책자가 편찬되기 까지 적극 배려해 주신 정보통신부 남궁 석 장관님과 안병엽 차관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을 감수해 주신 민병기, 이응효, 박성득, 문명진, 윤현보, 진용옥 제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료수집과 책자 편찬을 지원해 주신 한국통신 박물관 최병희 님, 한양애드 최영식 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자를 편찬하는데 수고하신〈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 50년사 편찬위원회〉, 〈편찬전담반〉제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 12. 28

중앙전파관리소장 강 덕 근

기 념 사



새 천년에는 전파시대의 문을 열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전파감시 업무를 시작한지 52년이 되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그간 의 전파감시에 대한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사료로 정리하여 「전파관리 50년사」로 발간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보람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전파발사는 1910년 9월 5일 월미도 등대무선국과 광제호 선박무선국간의 통신이고 전파 감시업무는 1947년 6월 1일 본부직할 광장분실에서 수행되었지만 전파관리 업무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날은 1949년 11월 22일 입니다.

당시 체신부장관이 경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전파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여 서울 · 부산 · 광주의 전파감시국 직제가 공포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전환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국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전파일 것입니다.

이동전화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더니 금년 9월 15일을 기준으로 유선전화 가입자를 추월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전파는 위성통신, IMT-2000 등의 고도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국민속에 파고들 것이며 전파이용은 급격히 증가 되리라 믿습니다.

불행하게도 전파는 무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자원으로서 이를 소중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전파분야의 발전도 빛을 잃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전파를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보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전파이용 질서확립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모두 국민들이 전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전파이용 환경을 개선하여 다가오는 대망의 새 천년에는 전파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파관리 50년사」가 발간되기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감수자, 중앙전파관리소장 이하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1999. 12. 28

정보통신부장관 남 궁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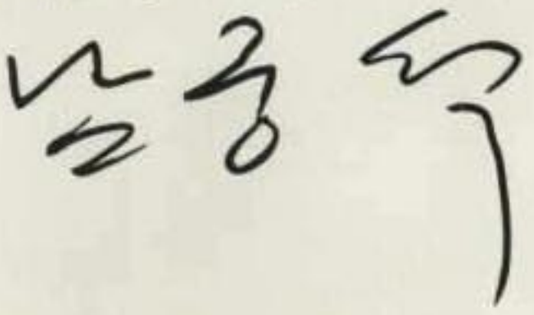

광장분실 / 역대 전파감시국 / 전파감리국장

광장분실장

초 대	통신기사	민병기(閔丙璣)	1947. 6. 1 ~ 1948. 3.31

서울전파감시국 / 전파감리국장

초 대	통신기정	최원식(崔源植)	1949.12. 1 ~ 1950. 5.30
제 2대	통신기정	홍순성(洪順成)	1950. 5.30 ~ 1951. 4.31
제 3대	통신기정	김중백(金仲伯)	1951. 4.31 ~ 1958. 1. 4
제 4대	통신기정	조정현(趙鼎鉉)	1958. 1. 4 ~ 1958.11.17
제 5대	통신기정	조재문(趙載文)	1958.11.17 ~ 1960. 6.30
제 6대	통신기정	송찬복(宋燦復)	1960. 6.30 ~ 1961. 6.21
제 7대	통신기정	신언모(申彦模)	1961. 6.21 ~ 1962. 8. 7
제 8대	통신기정	조재문(趙裁文)	1962. 8. 7 ~ 1964.12. 9
제 9대	행정서기관	김인극(金仁克)	1964.12. 9 ~ 1965. 7.25
제10대	행정서기관	고규봉(高圭峯)	1965. 7.25 ~ 1966. 6. 1
제11대	통신기정	김성규(金聖奎)	1966. 6. 1 ~ 1966.11.30
제12대	행정서기관	한창명(韓昶命)	1966.11.30 ~ 1967. 6.23
제13대	통신기정	위종만(魏鍾萬)	1967. 6.23 ~ 1968.10.11
제14대	통신기정	김득풍(金得豊)	1968.10.11 ~ 1970. 1.21
제15대	통신기정	이양수(李養壽)	1970. 1.21 ~ 1970.10. 5
제16대	통신기정	이용훈(李容薰)	1970.10. 5 ~ 1971. 5.20
제17대	서 기 관	김길식(金吉植)	1971. 5.20 ~ 1973. 3.20
제18대	서 기 관	김운경(金雲慶)	1973. 3.20 ~ 1976.12.17
제19대	통신기정	문명진(文明進)	1976.12.17 ~ 1979.10. 1
제20대	서 기 관	남명진(南明鎭)	1979.10. 1 ~ 1980.10.27
제21대	통신기정	성이운(成利運)	1980.10.27 ~ 1981.12.31
제22대	통신기정	이희영(李熙英)	1982. 1. 1 ~ 1983. 6. 3
제23대	통신기정	김병석(金炳奭)	1983. 7. 1 ~ 1984. 1. 8

부산전파감시국 / 전파감리국장

초 대	통신기정	김중백(金仲伯)	1950. 9.30 ~ 1951. 5.24
제 2대	통신기정	배은성(裵恩成)	1951. 5.24 ~ 1951. 9.23
제 3대	통신기정	홍명복(洪命福)	1951. 9.23 ~ 1955. 5.31
제 4대	통신기정	차인도(車引道)	1955. 5.31 ~ 1957. 5.15
제 5대	통신기정	김남수(金南壽)	1957. 5.15 ~ 1960. 8. 1
제 6대	통신기정	조정현(趙鼎鉉)	1960. 8. 1 ~ 1961. 6.21
제 7대	통신기정	차인도(車引道)	1961. 6.21 ~ 1963. 6.17
제 8대	통신기정	임재오(任在五)	1963. 6.17 ~ 1970.10. 1
제 9대	통신기정	김남수(金南壽)	1970.10. 5 ~ 1972. 6.12
제10대	통신기정	전성주(全聲柱)	1972. 6.12 ~ 1976. 5.23

제11대	서 기 관	황성근(黃成根)	1976. 5.23 ~ 1979. 10. 1
제12대	통신기정	전성주(全聲柱)	1979.10. 1 ~ 1980. 8.23
제13대	통신기정	노판구(盧判九)	1980. 8.24 ~ 1981. 11.13
제14대	통신기정	최석환(崔碩煥)	1981. 11.14 ~ 1982. 6.30
제15대	통신거정	강신용(姜信容)	1982. 11.10 ~ 1984. 1. 8

광주전파감시국 / 전파감리국장

초 대	통신기정	조정현(趙鼎鉉)	1949. 12.26 ~ 1951. 9.24
제 2대	통신기정	김남수(金南壽)	1951. 9.24 ~ 1957. 5.16
제 3대	통신기정	차인도(車引道)	1957. 5.16 ~ 1961. 6.22
제 4대	통신기정	이해운(李海運)	1961. 6.22 ~ 1963. 9.13
제 5대	통신기정	박영효(朴泳孝)	1963. 9.13 ~ 1964. 4.23
제 6대	통신기정	안종두(安鍾斗)	1964. 4.23 ~ 1964. 7.15
제 7대	통신기정	이응효(李膺孝)	1964. 7.15 ~ 1966. 3. 5
제 8대	통신기정	위종만(魏鍾萬)	1966. 3. 5 ~ 1967. 6.23
제 9대	행정서기관	김근만(金根萬)	1967. 6.23 ~ 1968. 12.28
제10대	행정서기관	박남희(朴南熙)	1968. 12.28 ~ 1969. 11.10
제11대	서 기 관	박화규(朴化圭)	1969. 11.10 ~ 1971. 4.12
제12대	서 기 관	양학규(梁學圭)	1971. 4.12 ~ 1978. 1.30
제13대	통신기정	박정철(朴正喆)	1978. 1. 30 ~ 1979. 10. 1
제14대	서 기 관	류광용(柳光容)	1979. 10. 1 ~ 1983. 1. 7
제15대	서 기 관	김성제(金成濟)	1983. 1. 7 ~ 1984. 1. 8

강릉전파감시국 / 전파감리국장

초 대	통신기정	김득풍(金得豊)	1964. 11.14 ~ 1966. 3.28
제 2대	통신기정	최연수(崔然壽)	1966. 3.28 ~ 1966. 11.30
제 3대	통신기정	김남수(金南壽)	1966. 11.30 ~ 1970. 10. 5
제 4대	통신기정	문순기(文順基)	1970. 10. 5 ~ 1971. 8. 1
제 5대	통신기정	권홍재(權洪才)	1971. 8. 1 ~ 1972. 9. 8
제 6대	통신기정	김신회(金信會)	1972. 9.11 ~ 1973. 12.24
제 7대	통신기정	문명진(文明進)	1974. 3. 4 ~ 1975. 2.18
제 8대	통신기정	김옥수(金玉秀)	1975. 2.18 ~ 1976. 6.26
제 9대	통신기정	임영두(林永斗)	1975. 6.26 ~ 1976. 6. 7
제10대	통신기정	정규찬(丁奎燦)	1976. 6. 7 ~ 1977. 7.26
제11대	통신기정	이경천(李景天)	1977. 7.26 ~ 1979. 4.20
제12대	서 기 관	김운경(金雲慶)	1979. 4.20 ~ 1983. 1. 8
제13대	서 기 관	최상규(崔相圭)	1983. 1. 8 ~ 1984. 1. 8

전파통제소 / 전파통제국

초 대	통신기정	문명진(文明進)	1979. 10. 1 ~ 1984. 1. 8

역대 중앙전파감시소/중앙전파관리소 소장



초대 朴 成 得 (1984. 1. 9 ~ 1987. 7. 31)



제2대 李 寅 學 (1987. 8. 1 ~ 1988. 8. 16)



제3대 金 權 洙 (1988. 8.17 ~ 1988.12.19)



제4대 權 寧 收 (1988.12.30 ~ 1990. 1.11)

역대 중앙전파관리소 소장



제 5 대 李 鍾 山 (1990. 1. 12 ~ 1991. 1. 11)



제 6 대 李 起 晟 (1991. 1. 12 ~ 1992. 1. 14)



제 7 대 金 時 鎰 (1992. 1. 15 ~ 1992. 7. 15)



제 8 대 曺　弘 (1992. 7. 16 ~ 1993. 1. 13)

역대 중앙전파관리소 소장



제 9 대 朴 元 浩 (1993. 1.26 ~ 1994. 2.26)



제 10 대 李 政 幸 (1994. 3. 9 ~ 1995. 4.12)



제 11 대 李 東 善 (1995. 4.17 ~ 1996. 6.30)



제 12 대 趙 景 鎬 (1996. 8.27 ~ 1997. 8.15)

역대 중앙전파관리소 소장



제 13 대 千 朝 雲 (1997. 8.16 ~ 1998. 3.15)



제 14 대 姜 德 根 (1998. 3. 18 ~ 현재)

목 차 50年史

발 간 사

기 념 사

역대 광장분실/ 전파감시국/ 전파감리국장
중앙전파감시소/ 중앙전파관리소장

映像으로 보는 電波管理 50年史 · 화보

前 史 通信의 始發과 監視業務 胎動

제 1 절 통신의 시발/ 147

1. 봉수제도 ····· 147
2. 우역제도 ····· 149
3. 전기통신 ····· 160
4. 무선통신 ····· 164

제 2 절 감시업무의 태동/ 171

1. 대한제국 무선통신 ····· 171
2. 일제시대 전파감시 ····· 175

第 1 章 草創期 電波管理 (1947~1961)

제 1 절 체신부 발족/ 181

제 2 절 전파감시기구 설치/ 184

1. 해방직후의 전파환경 184
2. 최초의 전파감시 186
가. 필요성 186
나. 전파감시 광장분실 개소 186
3. 전파감시국 설치 188
가. 서울전파감시국 189
나. 부산전파감시국 195
다. 광주전파감시국 197
라. 강릉전파감시국 198

제 3 절 전파감시시설의 복구와 업무의 확장/ 200

1. 전파감시시설의 복구 200
2. ITU 가입과 전파관리법의 제정 210
가. ITU 가입 210
나. 전파관리법의 제정 211

제 4 절 관련자료/ 231

1. 전파감시에 관한 기고문 231
가. 전파감시업무의 중요성 231
나. 전파감시업무의 국제법상 의의 234
다. 전파감시업무의 국내법상 의의 239
2. 문서주례 241
3. 허가서 242
4. 1949 ~ 1952 통신사업 특별예산 242

5. 전파감시업무 실적 ····· 243
가. 부처별 무선국 현황 ····· 243
나. 연도별 전파감시 실적 ····· 244
다. 전파의 질 위반 무선국 ····· 245
라. 연도별 무선국 허가통계 ····· 246
마. 연도별 무선국 검사 현황 ····· 246
6. 전파감시시설 공사내역 ····· 247
7. 당시의 무선국 인가서류 ····· 252
가. 인가서 ····· 252
나. 관련 기안문서 ····· 253

第 2 章 成長期 電波管理 (1962~1983)

제 1 절 전파관리국 外局化/ 257

제 2 절 전파관리국 內局化/ 274

1. 전파감시기구의 개편 ····· 275
2. 전파관리업무 ····· 280
가. 무선국 현황 ····· 280
나. 무선국 허가 ····· 283
다. 무선국 검사 ····· 285
3. 전파관리업무 전산화 ····· 287
가. 전파관리의 전산화 ····· 287
나. 전파관리업무의 전산화 확대 ····· 288

4. 전파이용의 개방과 전파관리업무 개선 ····· 289
5. 혼신조사 ····· 291
가. 혼신발생 현황 ····· 291
나. 원인별 현황 ····· 291
다. 혼신조사용 장비 ····· 291

제 3 절 전파감시체제강화와 전파통제소의 신설/ 292

1. 전파감시 가락동시대 개막 ····· 292
2. 특별감시업무의 변천 ····· 294
가. 방탐계의 신설 ····· 294
나. 연도별 변천 개요 ····· 295
3. 전파통제소의 신설 ····· 297
가. 배 경 ····· 297
나. 전파통제소 직제 및 사무분장 ····· 298
다. 전파감시 체제의 정비 ····· 299

제 4 절 전파감시시설의 확장/ 300

1. 감시장비의 변천 ····· 300
가. 단파수신기 ····· 300
나. V/UHF 수신기 ····· 300
다. 녹음기 ····· 301
라. 기타 시설 ····· 302
2. 장비구입 현황 ····· 304
3. 연도별 시설 및 투자 현황 ····· 305
4. 자동전파 감시시설 현황 ····· 307

가. 시설 설치 목적 307
나. 공사기간 및 예산 307
다. 자동 및 수동감시시설 투자 현황 308
라. 사이트별 자동감시시설 투자 현황 309
마. 전파감시시설 및 부대시설 공사 현황 309

□ 전파감시관련 기고문 : 전파의 적정관리/ 311

映像으로 보는 電波監視施設

第 3 章 跳躍期의 電波管理 (1984~1999)

제 1 절 중앙전파감시소 발족과 중앙전파관리소 개칭/ 351

제 2 절 전파감시기구 확장/ 352

제 3 절 국가사업 통신지원 활동/ 358

1. 86아주 및 88올림픽대회 358
가. 개 요 358
나. 계 획 359
1) 국내기관 통신망 구성 지원 360
2) 외국기관 통신망 구성 지원 361
3) 무선통신망 보호활동 363
2. 계획의 추진 일정 364
가. 준 비 366
1) 지원 조직 및 인력 366

2) 올림픽 무선통신 지원활동 367
3. 세계잼버리대회 371
4. 동계아시아대회 372
가. 지원활동 목적 및 개요 372
나. 수행내용 373
다. 대회현황 374
라. 활동효과 376

제 4 절 해상이동감시 및 전파주권회복/ 376

1. 해상이동감시 376
2. 전파주권회복 381

제 5 절 전파감시시설의 현대화/ 383

1. 종합전파감시망 구축 383
가. 연 혁 386
나. 구축내용 387
2. 이동방향탐지 장비 보강 390
3. 전파감시 지휘통제망 구축 396
가. 목 적 397
나. 구축내용 397
4. 지방관서 청사확보 399
가. 중앙전파관리소서울분소 399
나. 중앙전파관리소전주분소 401
다. 중앙전파관리소대구분소 402

제 6 절 국민편익 위주의 전파행정 구현/ 403

1. 전파감시업무 사법경찰권 부여 ····· 403
2. 전파감시방법 전환 ····· 406
3. 아마추어 자율감시 체제확립 ····· 407
가. 주요내용 ····· 408
나. 개선내용 ····· 409
다. 기타사항 ····· 409
4. 전파민원혁신을 위한 "CS기동팀" 발족 ····· 410
가. 전파이용의 증가 ····· 411
나.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 411
다. 쾌적한 전파환경 제공 ····· 412
5. 전파감시시설 Y2k 문제해결 ····· 415
가. 대상시설 ····· 415
나. 추진일정 ····· 415
다. Y2k 문제점 ····· 416
라. 문제해결 ····· 417
마. 자체검증 결과 ····· 419
바. Y2k 종료 시연회 개최 ····· 419

제 7 절 2000년대 전파감시 인프라 구축/ 420

1. 위성전파감시체제 구축 ····· 420
가. 위성전파감시센터 설립 ····· 420
나. 국제위성 엑스포 참석 ····· 420
다. 위성전파감시관련 국제회의 참석 ····· 421

라. 해외위성감시센터 현황 424
2. 차세대 전파감시망 구축 추진 429
가. 개 요 429
나. 종합전파감시망 구축현황 429
다. 추진방향 429
라. 추진일정 429

부 록

□ **연 혁**/ 433
1. 전파관리 433
2. 중앙전파관리소 443
3. 서울분소 450
4. 부산분소 450
5. 광주분소 452
6. 강릉분소 456
7. 당진분소 457
8. 제주분소 458
9. 울산분소 459
10. 대전분소 459
11. 대구분소 459
12. 전주분소 460

□ **연 표**/ 461

목 차 50年史

□ 간부 이 · 취임사항/ 469

1. 전파관리국/ 전파방송관리국 ····· 469
2. 서울전파감시국 ····· 474
3. 부산전파감시국 ····· 475
4. 광주전파감시국 ····· 476
5. 강릉전파감시국 ····· 477
6. 전파통제소/ 전파통제국 ····· 478
7. 중앙전파감시소/ 중앙전파관리소 ····· 480

□ 해외 훈련사항/ 488

□ 무선전신법/ 495

□ 전파관련법/ 500

1. 전파관리법 제정 ····· 500
2. 주요개정사항 ····· 520
3. 현행전파법 ····· 524

□ 중앙전파관리소의 사무분장세칙/ 547

□ 조직 변천사/ 556

중앙전파관리소/ 지방분소 얼굴들

映像으로 보는

電波管理 50年史

Office Central Radio Monitoring 50

영상으로 보는 전파관리 50年史(~ 1946)

우리나라 최초의 무선통신 효시라 할 수 있는 월미도 등대무선국과 광제호 선박이동국



▲ 월미도 등대무선국 원경 (자료제공 : 한국통신박물관)



▲ 1904년 6월 15일 일본 가와사끼 조선소에서 진수되어 대한제국정부에 인도 되기전 자체 시운전시 촬영된 사진으로 선수와 선미 마스터사이에 선박용 무선통신 더블렛 안테나 2기가 선명하게 보인다 (자료제공 : 가와사끼중공업 서울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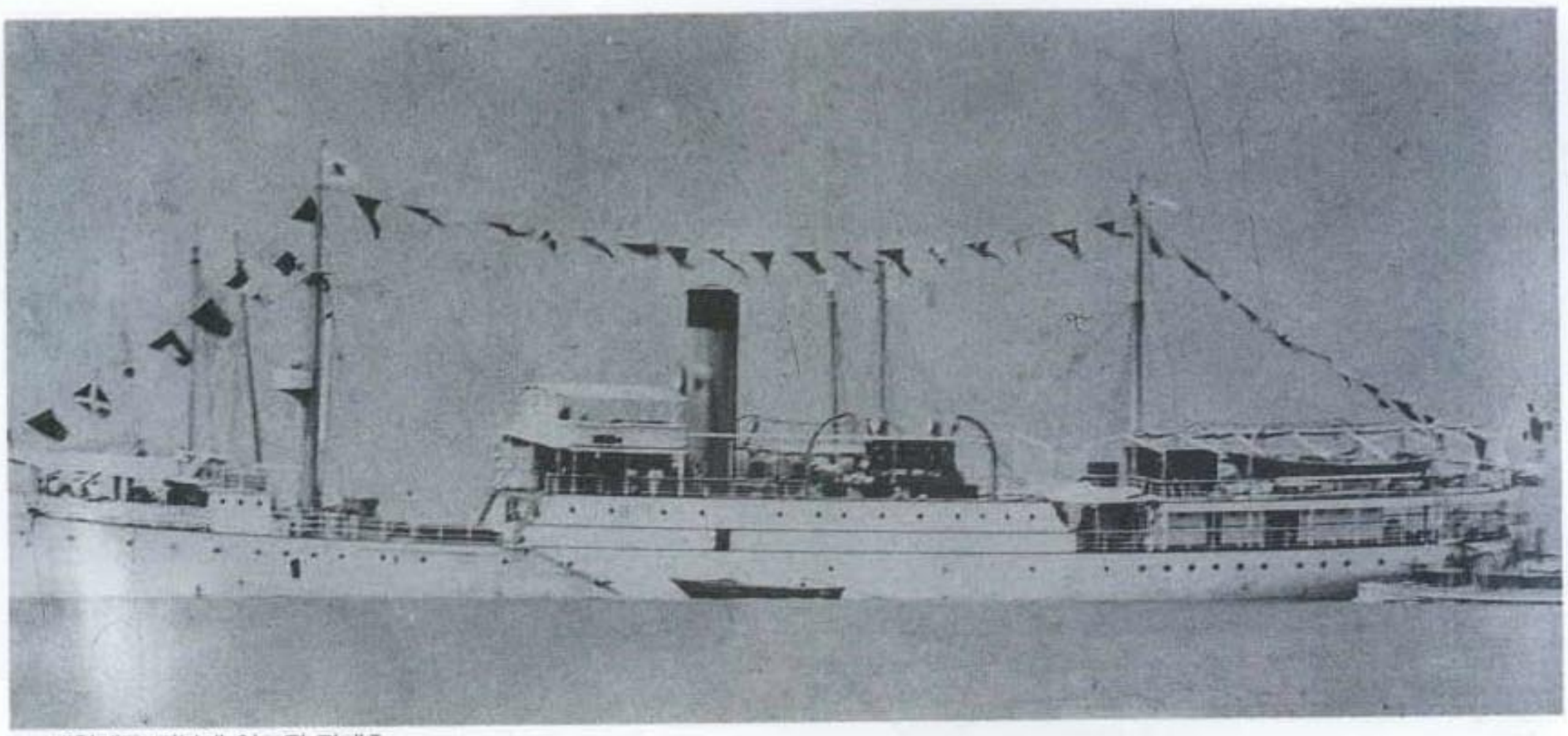

▲ 대한제국 정부에 인도된 광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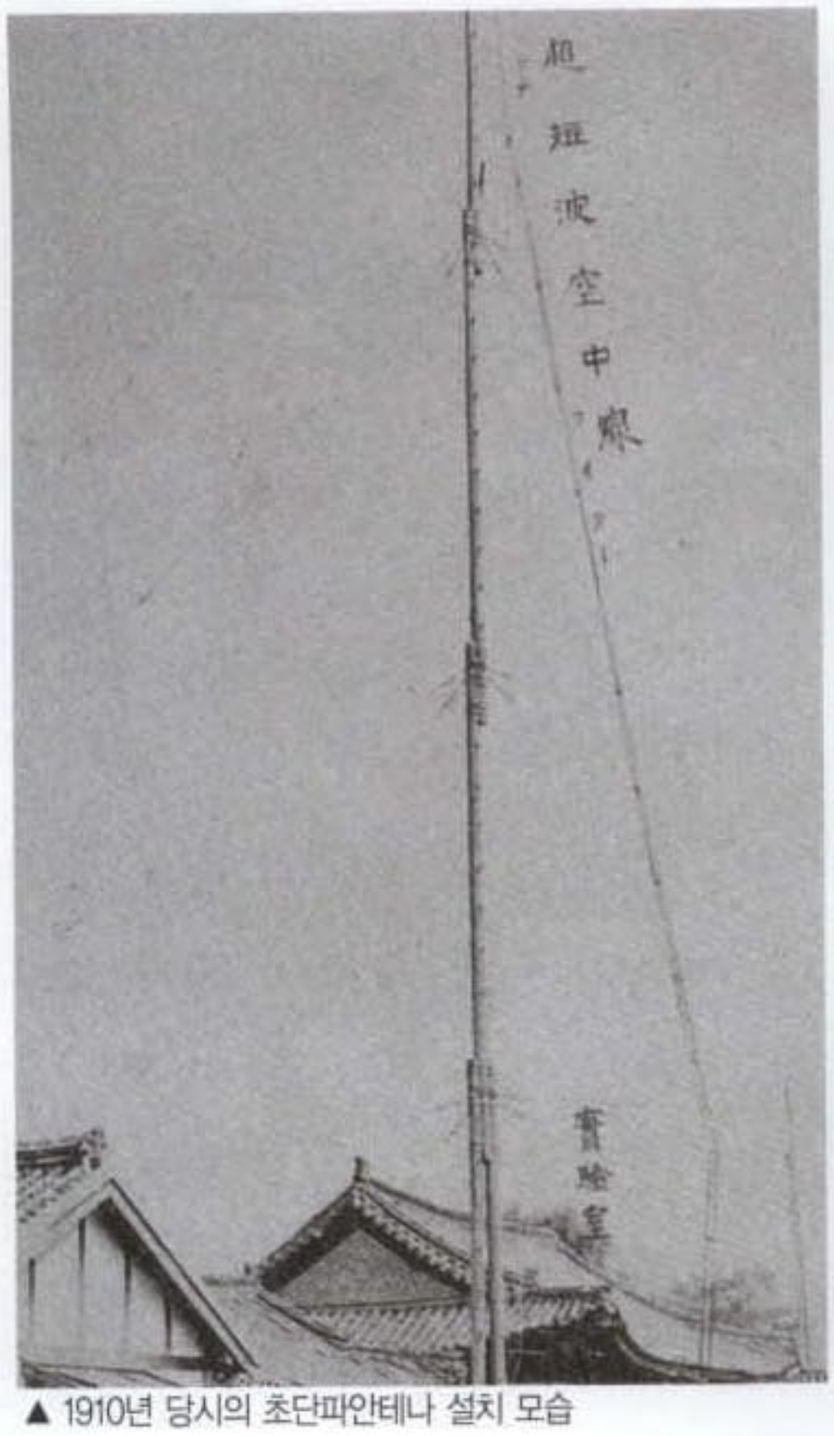

▲ 1910년 당시의 초단파안테나 설치 모습



▲ 월미도 등대무선국의 기초공사장면, 가래질은 세사람이 하는것이나 토질이 단단한 건축현장에는 여러사람이 동원되며 위사진은 9명의 사람이 가래질을 하는것으로 봐서 상당히 튼튼한 기초공사를 하는것으로 추측된다



▲ 월미도 등대무선국 전경

영상으로 보는 전파관리 50年史(~ 1946)

일본은 우리나라 주요항구에 무선통신시설 구축을 획책하였으나 대한제국 정부는
전파의 실체를 인식하고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대한제국 주요항구 모습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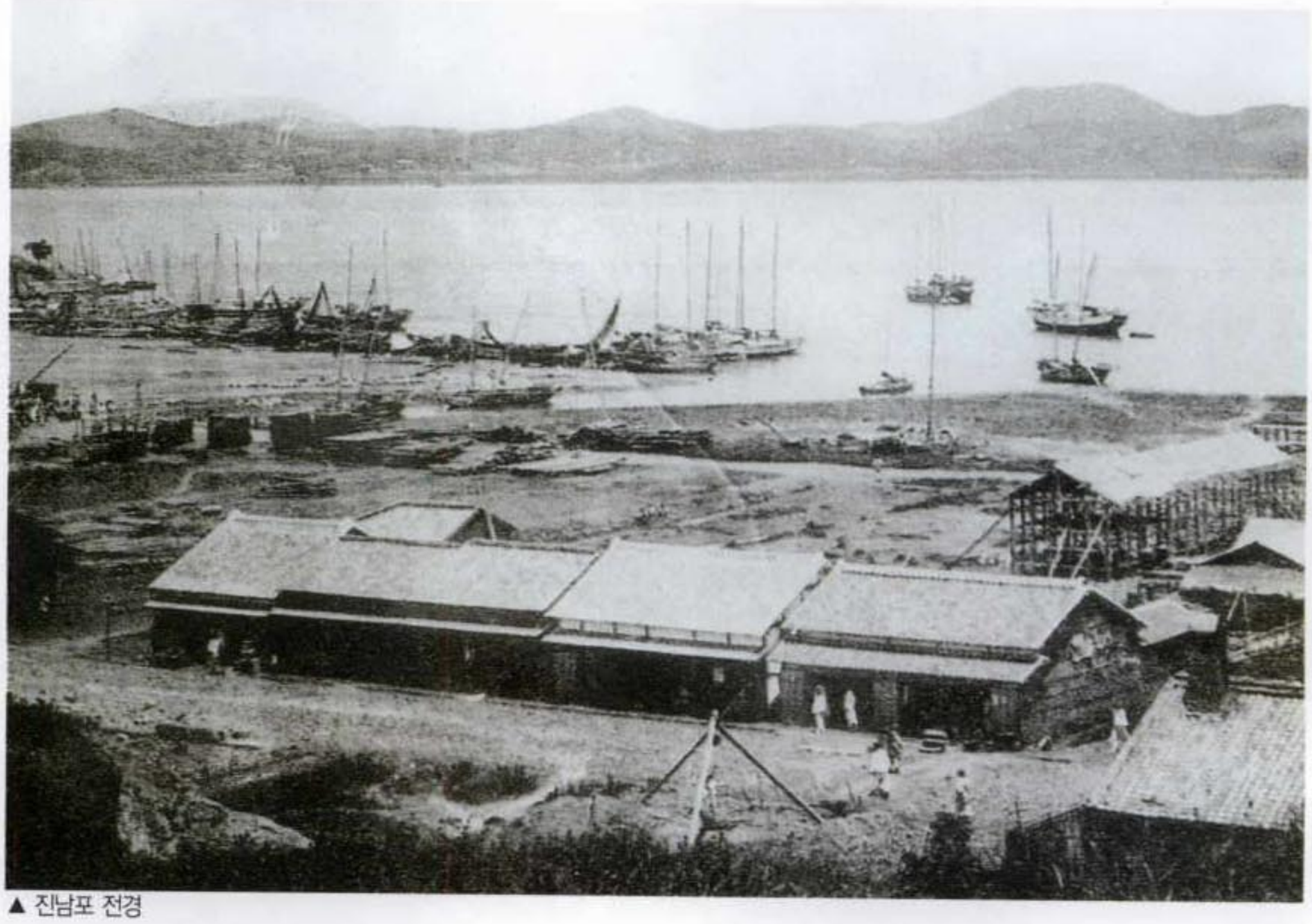

▲ 진남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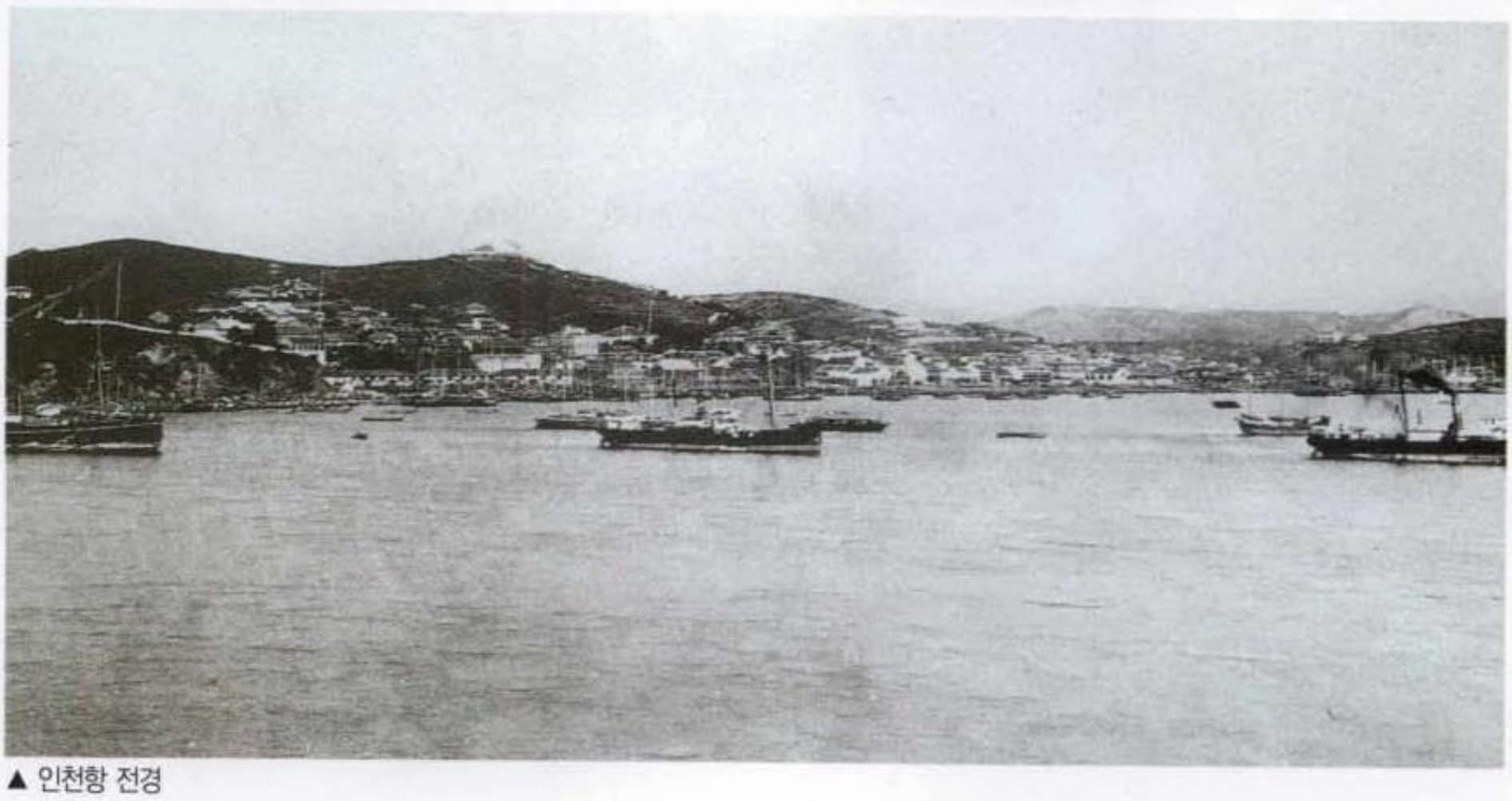

▲ 인천항 전경



▲ 월미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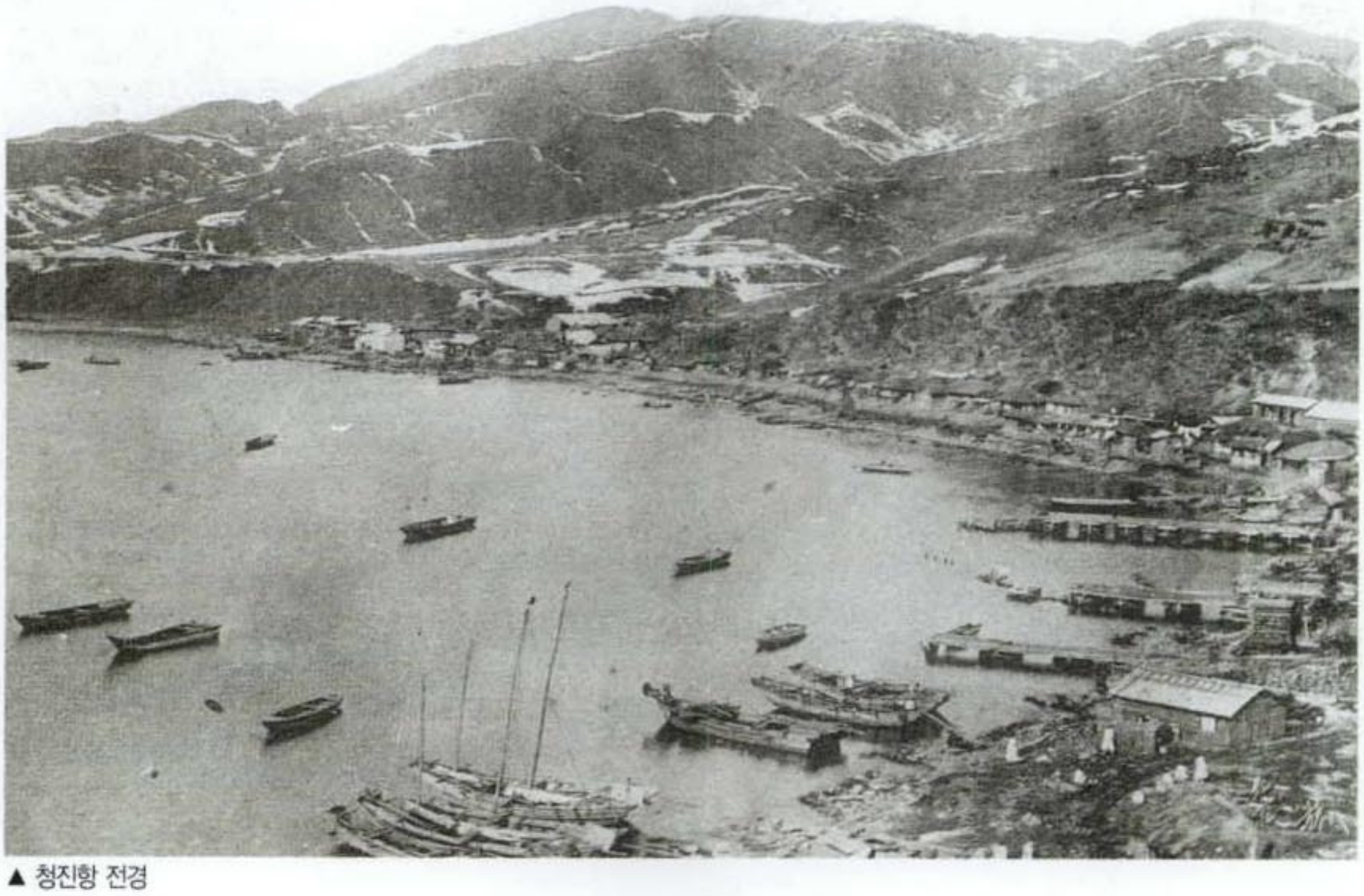

▲ 청진항 전경

영상으로 보는 전파관리 50年史(~ 1946)

노일전쟁은 우리나라 무선통신사에서 빠질수 없는 한 부분



▲ 거문도 전경



▲ 일본은 노일전쟁을 도발하고자 일본군을 인천에 상륙시킨후 서울로 진입시키고 있다 (1904년 서울 마포 나루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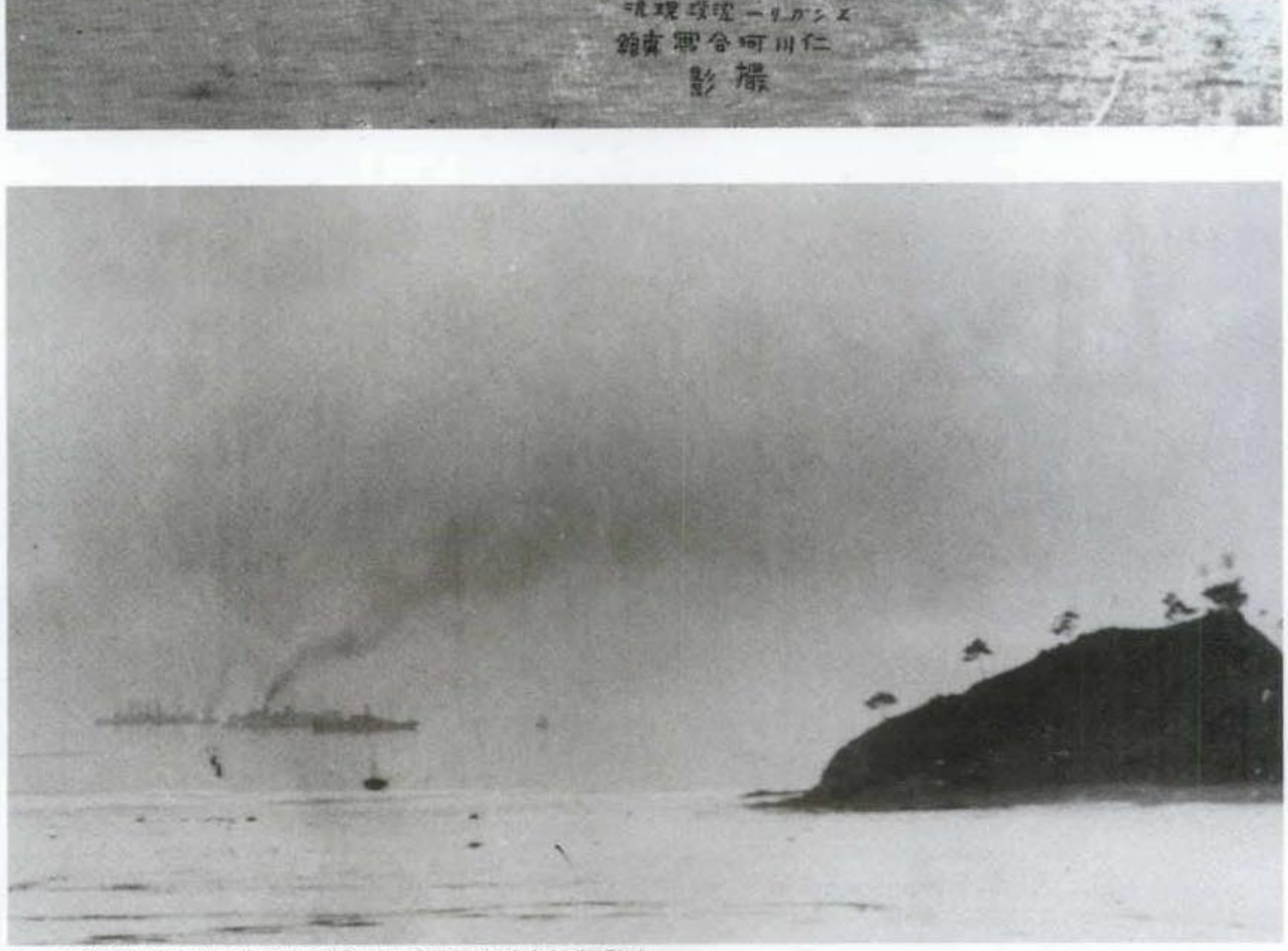

▲▼ 노일전쟁 당시 일본해군의 공격을 받고 침몰중인 러시아 해군함정



해동팔도 봉화 산악지도
17세기후반 비변사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며, 봉화를 올리는 전국의 지점이 잘묘사 되어있다. 직선거리 중계방식을 이용한 봉수는 마이크로파 통신의 중계방식과 너무도 흡사하다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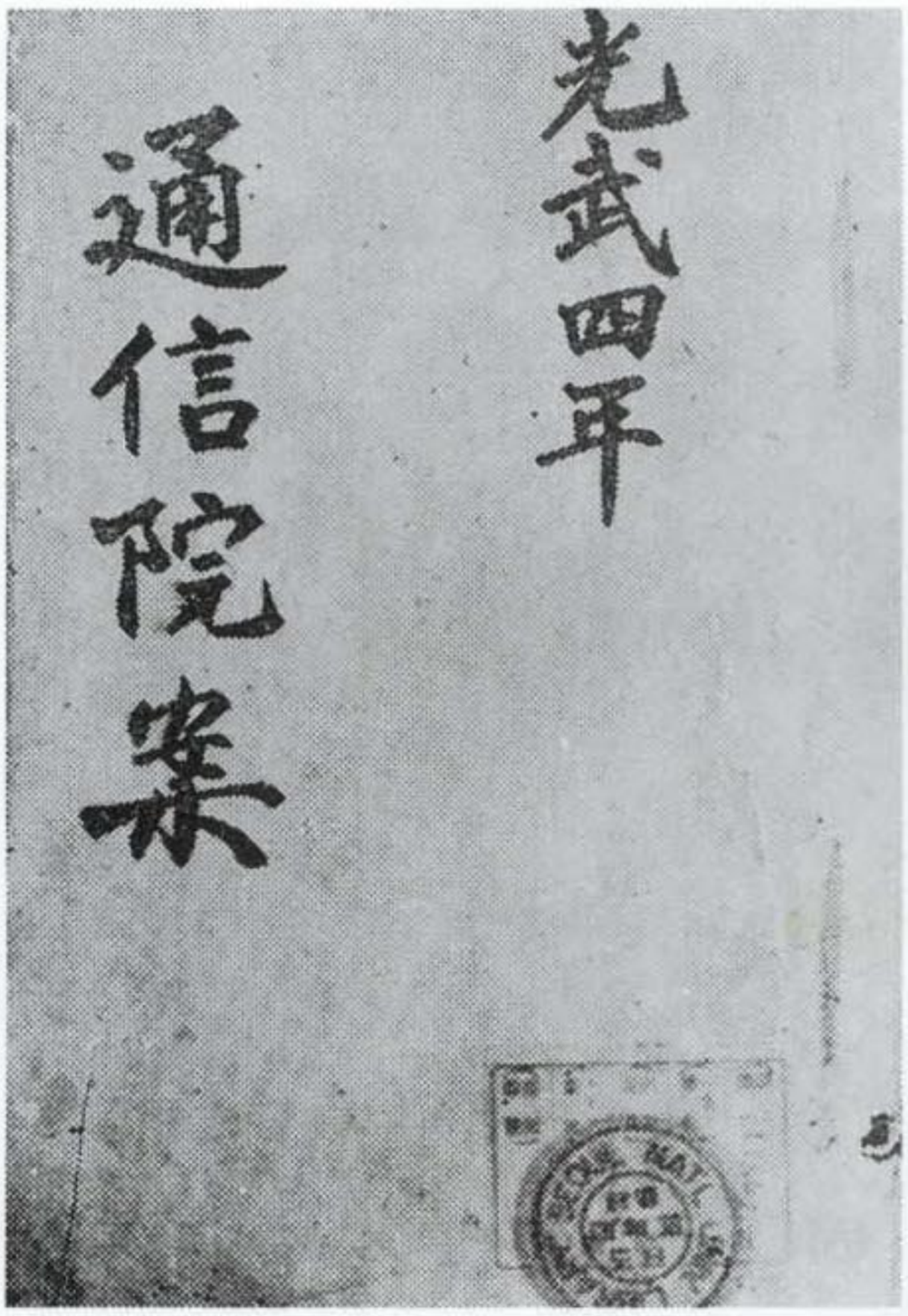
光武四年
通信院來




韓國電信局


舊韓國時代의 電報式紙

上 · 光武3年(1899) 11月 2日判
(20.3cm×26.1cm)
下左 · 光武5年(1901) 7月 25日判
(20.5cm×29cm)
下右 · 光武5年(1901) 7月 28日判
(21.5cm×29cm)

가. 통신원안
나. 대한제국의 통신관계 서책
다. 한국전신부호
라. 대한제국 시대의 전보식지

Office Central Radio Monitoring 50

영상으로 보는 전파관리 50年史(~ 1946)

가. 부호화된 전기신호를 음향으로 변환하는 음향기
나. 모스인자 전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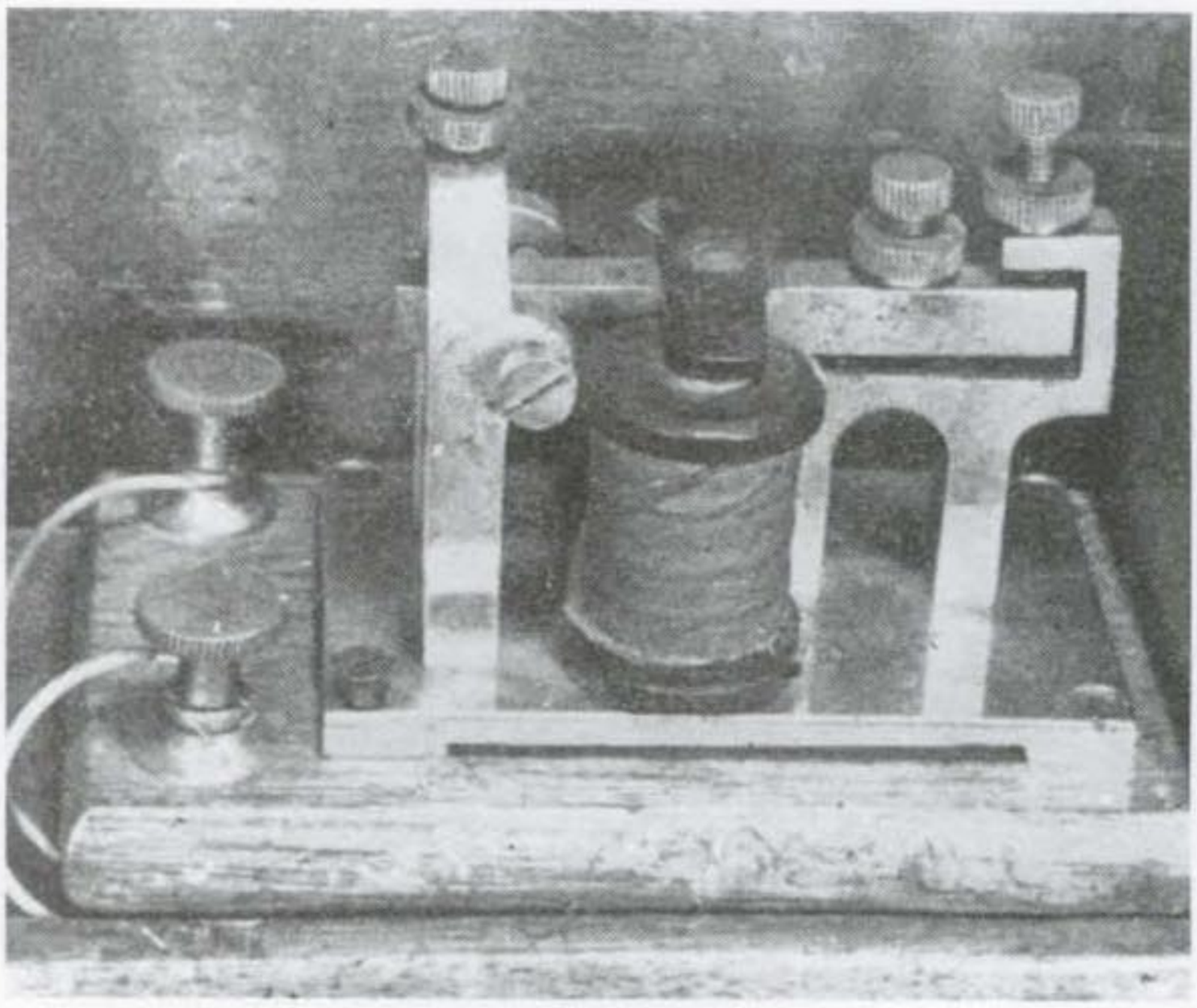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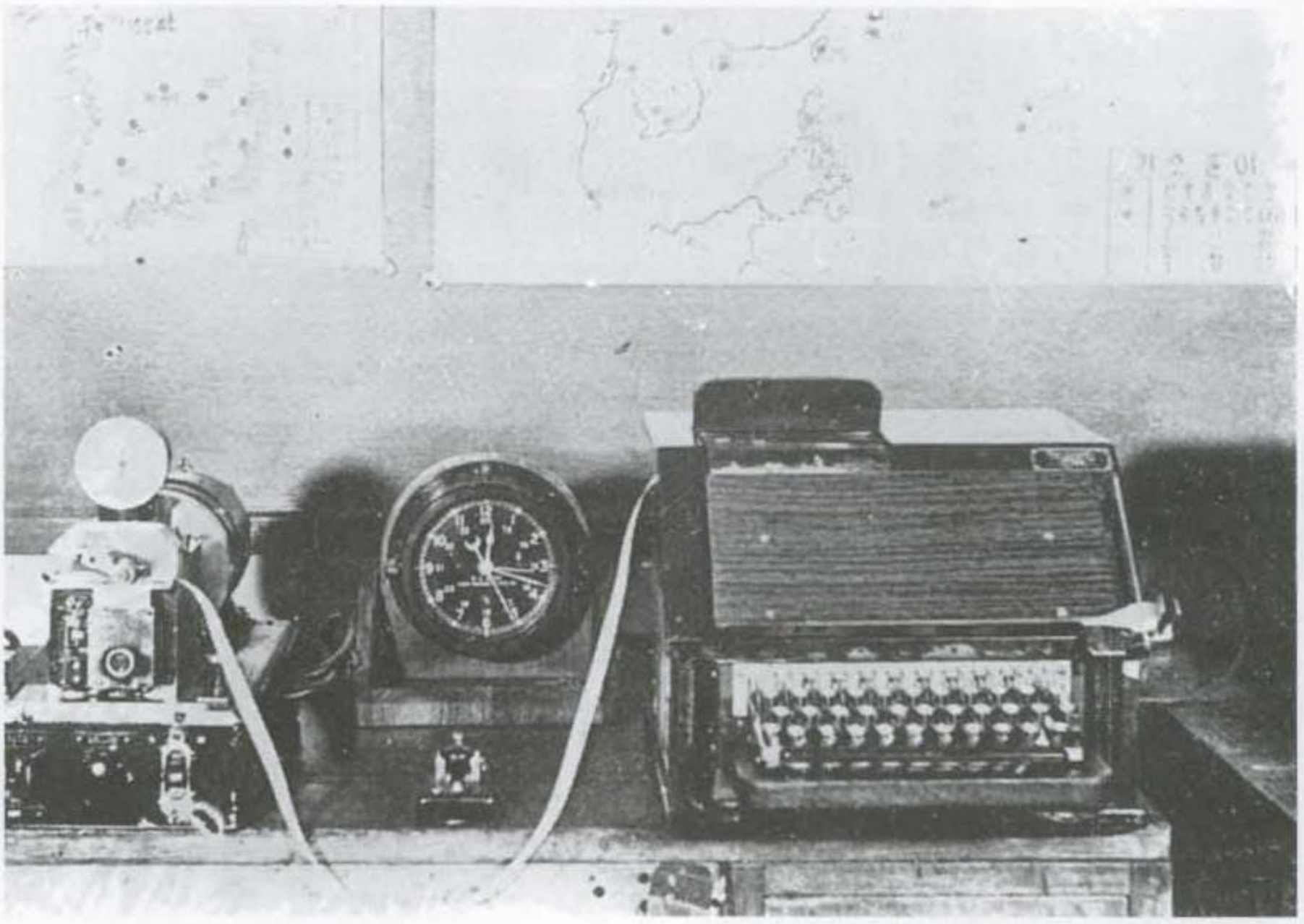

朝鮮總督府官報 第九百七十三號

○法律

欽帝國議會ノ協贊ヲ經タル無線電信法ヲ裁可シ玆ニ之ヲ公布セシム

御名御璽

大正四年六月十九日

內閣總理大臣 伯爵大隈重信
遞信大臣 武富時敏

法律第二十六號

無線電信法

第一條 無線電信及無線電話ハ政府之ヲ管掌ス

第二條 左ニ揭クル無線電信又ハ無線電話ハ命令ノ定ムル所ニ依リ主務大臣ノ許可ヲ受ケ之ヲ私設スルコトヲ得

一 航行ノ安全ニ備フル目的ヲ以テ船舶ニ施設スルモノ

二 同一人ノ特定事業ニ用ウル船舶相互間ニ於テ其ノ事業ノ用ニ供スル目的ヲ以テ船舶ニ施設スルモノ

三 電報送受ノ爲電信官署トノ間ニ施設者ノ專用ニ供スル目的ヲ以テ電信、電話、無線電信又ハ無線電話ニ依ル公衆通信ノ連絡ナキ陸地又ハ船舶ニ施設スルモノ

四 電信、電話、無線電信又ハ無線電話ニ依ル公衆通信ノ連絡ナク前號ノ規定ニ依ルヲ不適當トスル陸地相互間又ハ陸地船舶間ニ於テ同一人ノ特定事業ニ用ウル目的ヲ以テ陸地又ハ船舶ニ施設スルモノ

五 無線電信又ハ無線電話ニ關スル實驗ニ專用スル目的ヲ以テ施設スルモノ

朝鮮總督府官報 第九七三號 (日刊) 大正四年十月二十日(月曜日)



가. 1915년 6월 19일 일본의 조선총독부에 의해 제정 1961년 12월 30일 전파관리법이 제정 공포되기까지 우리나라 전파관리업무를 수행했던 무선전신법
(자료제공 : 국립중앙도서관)

나. 1947년 8월 6일자 신문에 게재된 당시의 불법무선설비의 압수 기사내용 (자료제공 : 한국통신박물관)

가

나

遞信公報

西曆一九四七年五月三十一日(土曜日)

第六十九號

部達

○部選第六十九號

一九四七年四月十六日附서울電信電話建設局을左記處에置會移轉함

西曆一九四七年五月三十一日

軍政廳遞信部長 吉元鎭

記

서울市鐘路區世宗路八四番地

(서울中央電信局二層)

○部選第七十號

一九四一年(昭和十六年)局達第四百九十號郵便電信電話局所名錄을廢止하고別冊과如히새로郵便電信電話局所名錄(一九四七年四月一日現在)을作成하여配付日로부터使用함

(別冊은別途配付함) (別冊省略)

西曆一九四七年五月三十一日

軍政廳遞信部長 吉元鎭

○部選第七十一號!

左記電務局無線課分室을設置하고來六月一日부터事務를開始함

西曆一九四七年五月三十一日

軍政廳遞信部長 吉元鎭

部內一般

名稱 位置 取扱種別

遞信部電務局無線課慶壯分室 京畿道高陽郡碧島面慶壯里 京城中央電信局慶壯受信所內 電信

○部選第七十二號

物品會計官吏、物品保管主任及切手類會計官吏配置任命規程中左와如히改正하고昭和二十二年五月三十一日附로서이를施行함

西曆一九四七年五月三十一日

軍政廳遞信部長 吉元鎭

部內一般

第三條中物品會計官吏의部遞信學校의項의次行에左의一項을追加함

「遞信工司 同 課長」

電信電話建設局의項의次行에左의一項을追加함

「서울電信電話建設局 江陵支局 同 局長」

電信局의項의次行에左의二項을追加함

「서울中央電信局 富平發信所 同 所長」

「서울中央電信局 慶壯受信所 同 同」

郵便局分局의項은此를削除함

電信電話建設局의項을左와如히改正함

「電信電話建設局 當該部局 物品會計官吏 課長但庶務課에서는上席史員」

遞信學校의項을左와如히改定하고其次行에左의一項을追加함

「遞信工司 同 課長但總務課에서는資材係長」

第四條中遞信學校의項은此를削除함

電信局의項及電話局의項을左와如히改正함

「서울中央電信局 物品會計官吏 庶務課上席史員」

「서울電信電話建設局 江陵支局 同 同」

「無線電信局 同 同」

「서울中央電信局 富平發信所 同 同」

「서울中央電信局 慶壯受信所 同 同」

電話局의項을左와如히改正함

「電話局 同 課長及局長附屬室 庶務係長 庶務課上席史員」

第七條遞信局의項의前行에左의一項을追加함

「遞信部 遞信部物品會計官吏 課長及局長附屬室 庶務係長 庶務課上席史員 (除總務局但資材局倉庫課에서는雇用品係長)」

遞信學校의項의次行에左의一項을追加함

「遞信工司 同 課長但總務課에서는資材係長」

郵便局分局의項은此를削除함

電信電話建設局의項을左와如히改正함

「電信電話建設局 當該部局 物品會計官吏 課長但庶務課에서는上席史員」

「서울電信電話建設局 江陵支局 同 同 上席史員」

「서울中央電信局 物品會計官吏 庶務課上席史員」

「서울中央電信局 富平發信所 同 同 上席史員」

「서울中央電信局 慶壯受信所 同 同 上席史員」

郵便局分局의項은此를削除함

電信局의項을左와如히改正함

「서울中央電信局 物品會計官吏 庶務課上席史員





나 가

다



가. 6 · 25전쟁으로 처참하게 폭파된 광장수신소 내부모습
전무국 무선과 광장분실은 당시 전파감시 업무수행을 위해 이곳에서 처음 발족되었고 민병기 초대 광장분실장이 임명되었다

나. 최초의 전파감시장비인 R-390 수신기

다. 민병기 초대 광장분실장
(당시의 사진기록이 소실되어 1999년 11월 16일 촬영한 모습)

영상으로 보는 전파관리 50年史 (1947 ~ 1961)

서울전파감시국 편



가. 나. 초창기 서울전파감시국 모습(뒷편)과 당시 감시국 직원들

가

나



가. 나. 다. 1950년대 전파감시 모습 51-S1
단파수신기 모습이보인다

(자료제공 : 한국통신박물관)

가 나

다









가



나

가, 나. 이동전파 방향탐지 모습(1950년대)



가



나

가. 나. 고정용 G-2 방향탐지기 운용모습 (1950년대)

영상으로 보는 전파관리 50年史 (1947 ~ 1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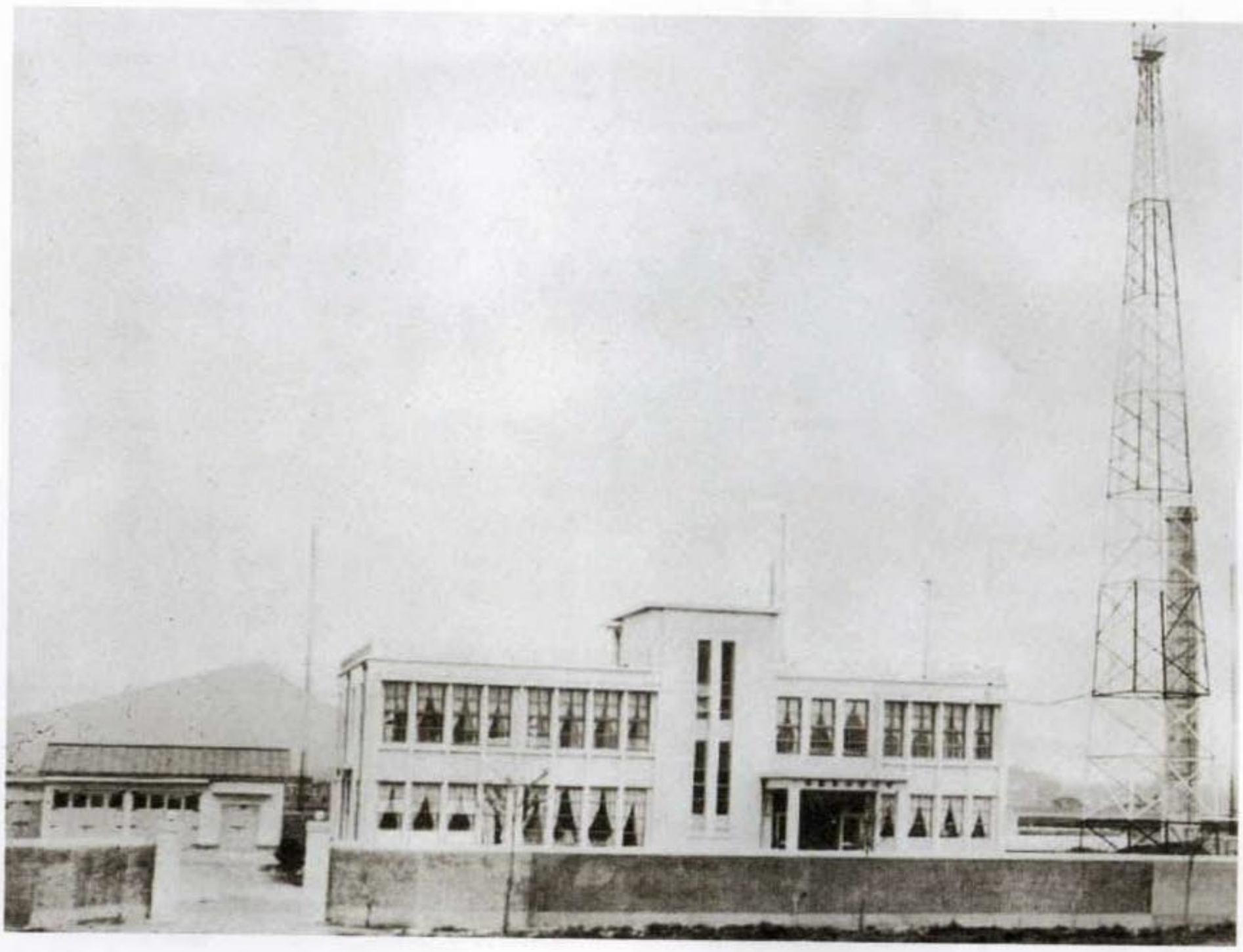



가. 나. 1960년대 서울전파감시국 전경(성수동)

가

나

1950년대 수신기 (자료제공 : 한국통신박물관)

가. BC-610 중단파 송수신기
나. RT-312 수신기
다. KM-D9F 수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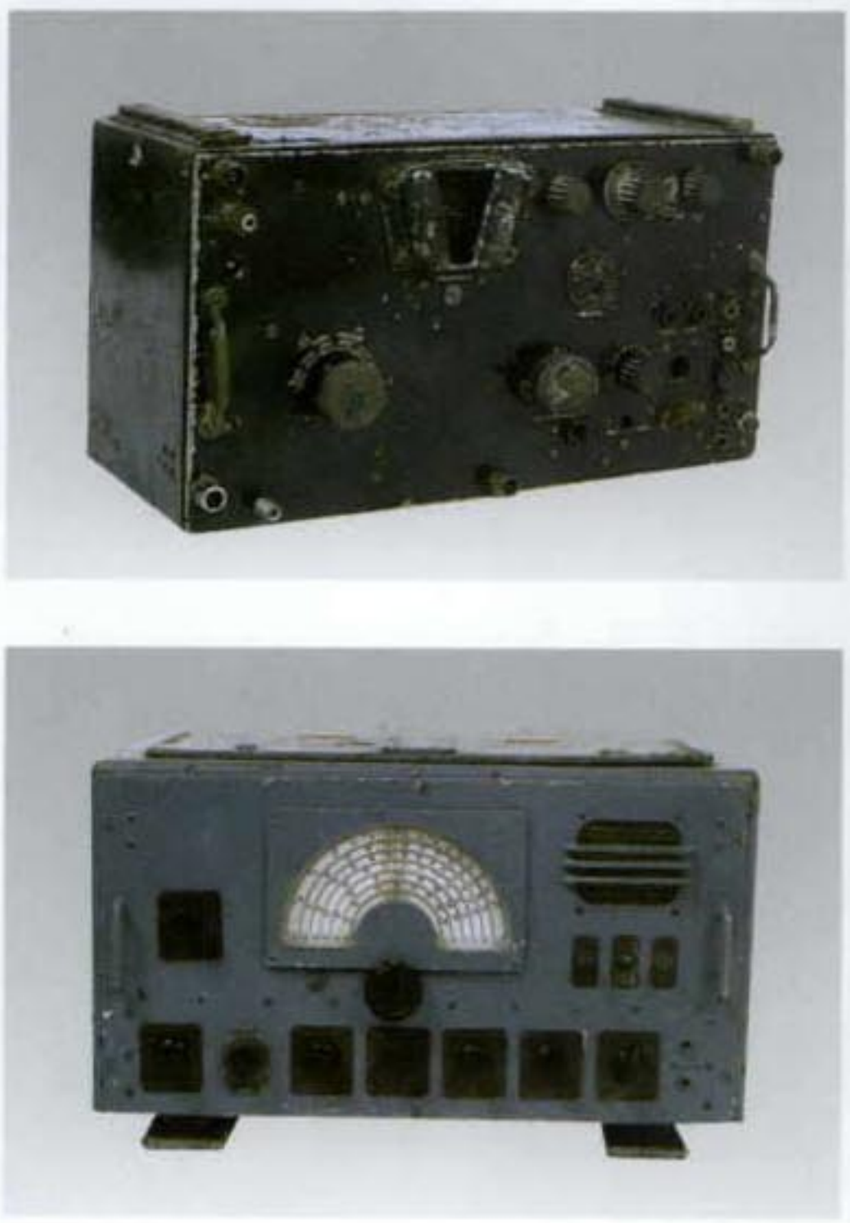







가

나

가. 나. 1968년 10월25일 가락동 청사 부지 매입시 황량한 주변의 모습







가. 나. 다. 가락동 청사주변과 안테나부지 정리장면
(1970년대 초)

가

나 다

Office Central Radio Monitoring 50

영상으로 보는 전파관리 50年史 (1962 ~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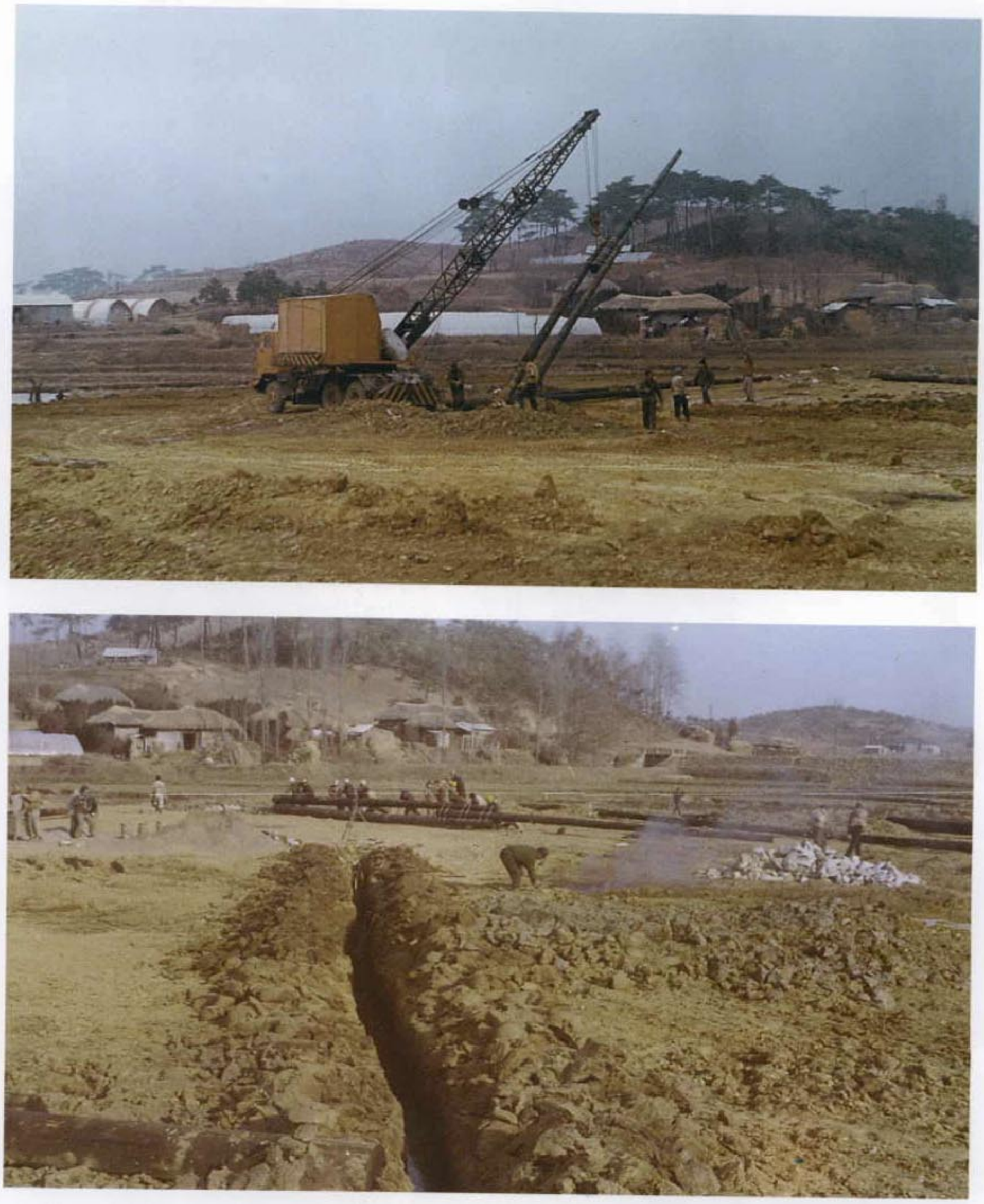

▲ ▼ INVERTED DISCON 단파 안테나 설치를 위해 목주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가락동 청사 주변의 광경(1970년대 초)



▲ ▼ INVERTED DISCON 단파 안테나 설치를 위해 목주작업을 하고있는 장면과 가락동청사 주변의 황량한 모습

영상으로 보는 전파관리 50年史 (1962 ~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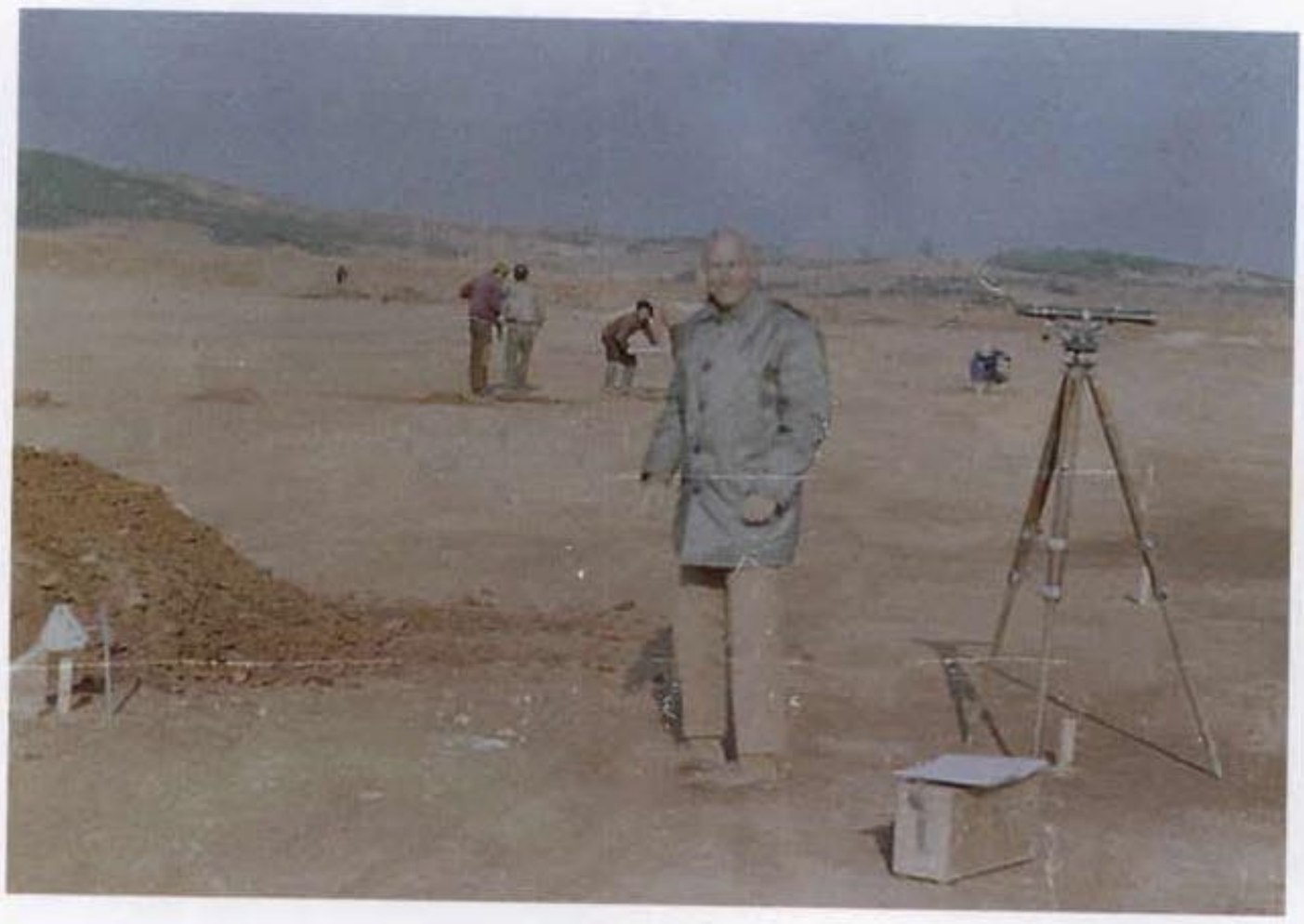

가

나

가. 서울전파감시국 11분실이전 개소식에 참석한 신언모 전파관리국장, 김운경 서울전파감시국장 (1975년 12월 16일)

나. 합덕 자동방탐사이트 구축장면, 당시 외국인 기술자와 안테나 케이블 터파기공사 작업광경



▲ 서울전파감시국을 순시중인 박원근 체신부장관, 오황근 전파관리국장과 문명진 서울전파감시국장이 업무현장을 찾아 현황 설명을 하고있다



▲ 합덕 자동방탐사이트 구축당시 안테나 케이블 터파기 및 지하실 공사로 인하여 청사 주변환경이 황량하기 그지없다

영상으로 보는 전파관리 50年史 (1962 ~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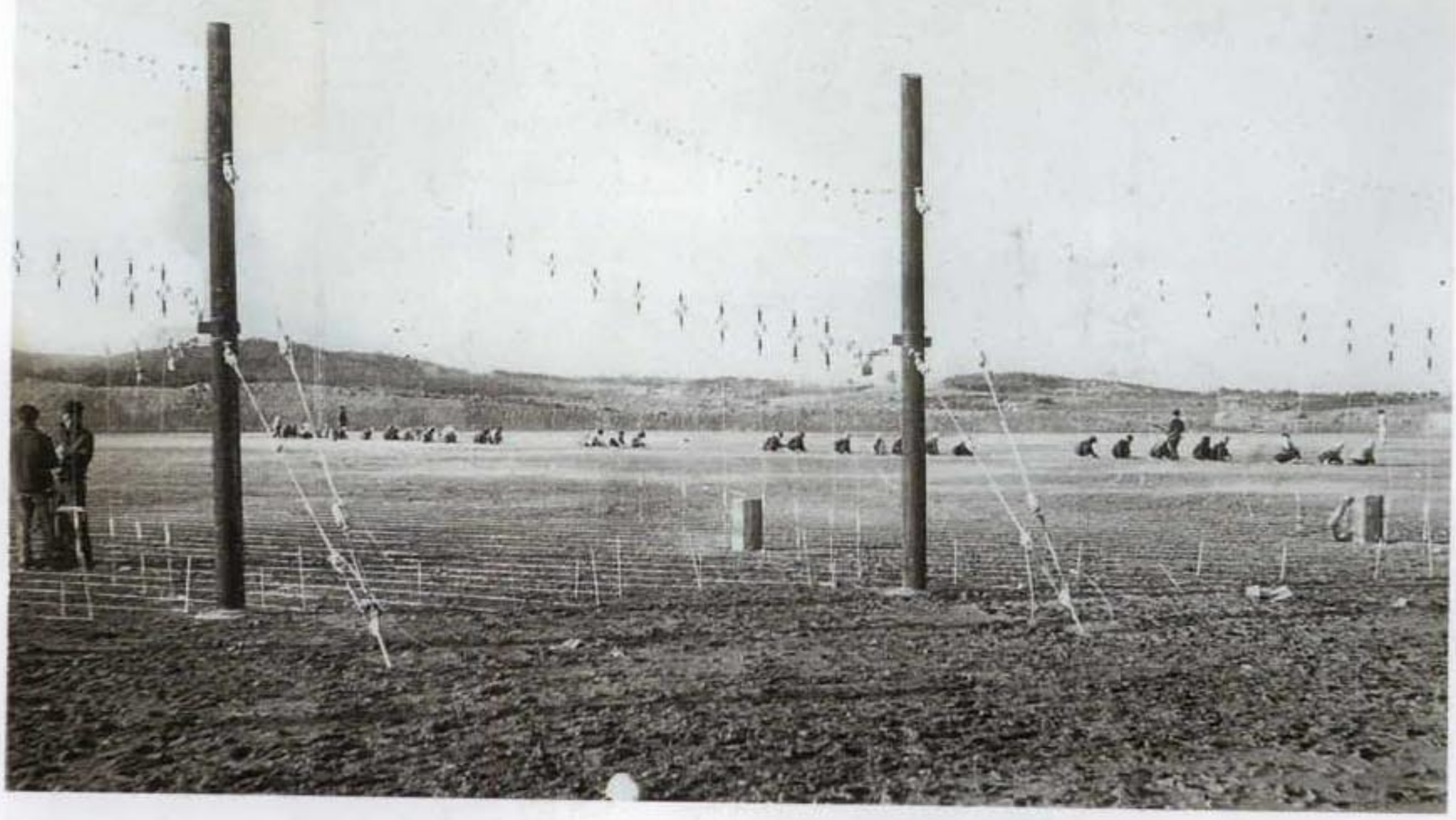





가

나

다

가. 나. 다. LP-409 방탐안테나 설치장면



가. 방탐안테나 설치를 위해 설치한 카운터포이즈 모습
나. INVERTED DISCON 안테나 설치장면(사천분실)

가

나

영상으로 보는 전파관리 50年史 (1962 ~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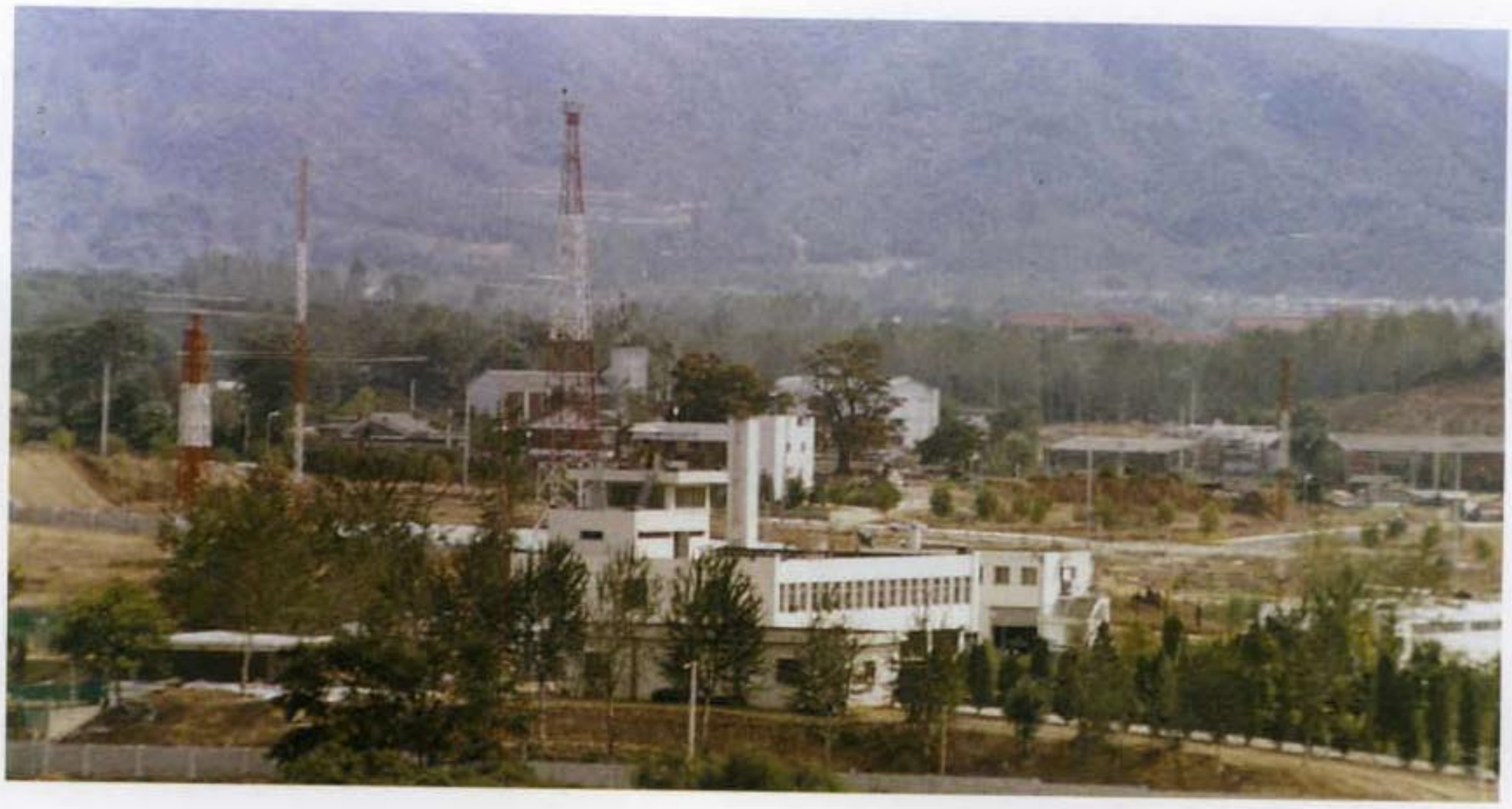

가

나

다

가. 나. 다. 가락동청사 전경(1970년대)







가

나 다

가. 나. 다.
R-55A 단파수신기와 KS-319R3 방탐기 운용모습





영상으로 보는 전파관리 50年史 (1962 ~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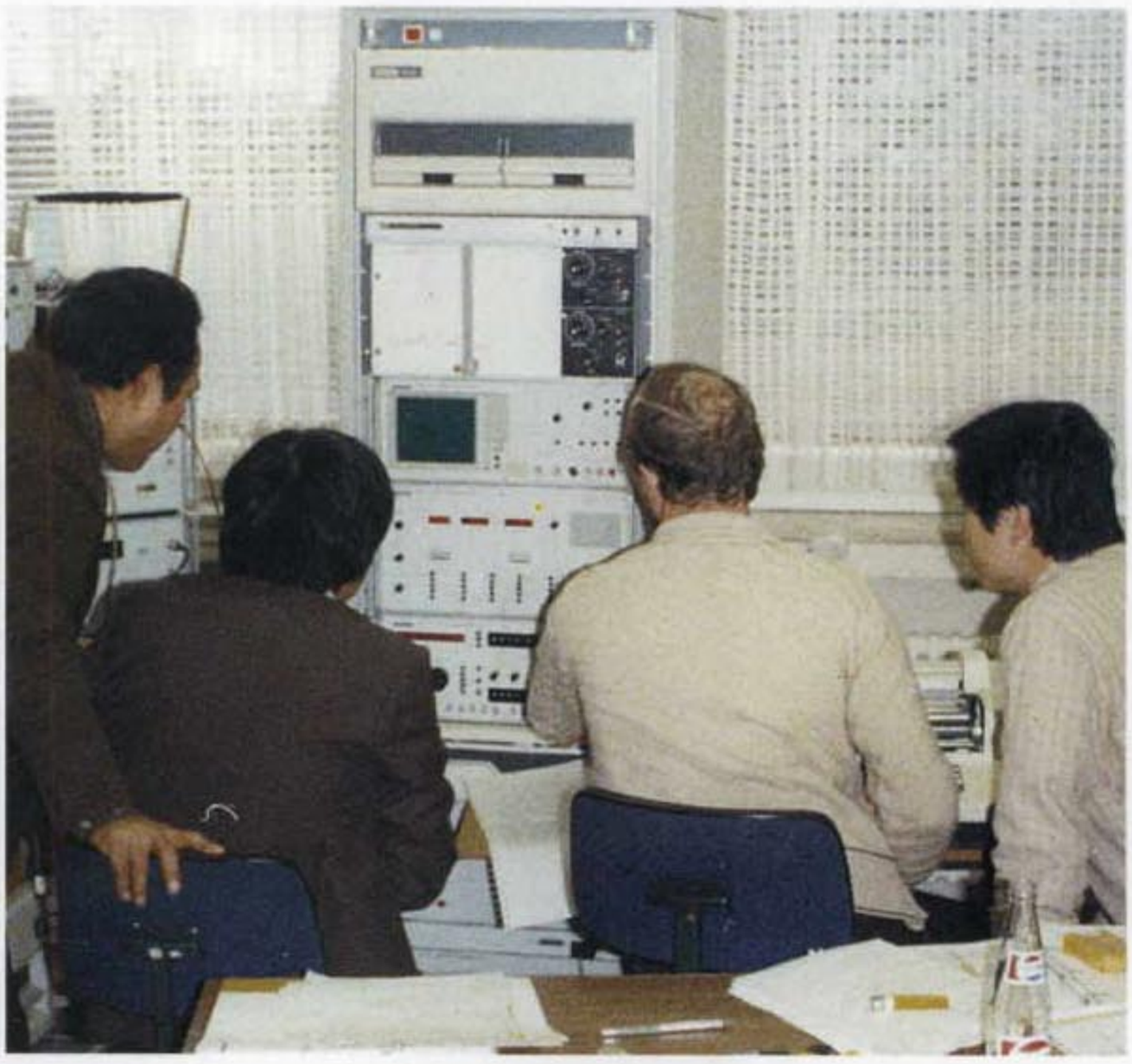

가. 전파품질감시장비가 미니컴퓨터를 이용한 최초의 장비로서 현장장비 시험운용을 위하여 독일 뮌 장비제작사를 방문 당시 장비로는 모형이 상당히 컸으나 그후 미니락 장비로 개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당시 장비명 FAHD 960)

나. 인터페로메타 방식의 PSI 1750 방탐장비 도입을 위해 독일 울름에서 기계 성능시험을 한 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모습

가

나





▲ 1979년 9월 7일 전파통제소가 신설되어 서울전파감시국 간부(우)와 전파통제소 간부(좌) 일동의 기념촬영



▲ 전파통제소 신설 기념행사 장면 (1979년 9월7일 가락동 청사 정원)

부산전파감시국 편





가. 부산전파감시국 준공직후 전경
(자료제공 : 임재오 前 부산전파감시국장)

나. 부산전파감시국 청사준공식 장면
박조옥 전파관리국장(중앙)
(1964년 12월 10일)

가

나







가. 부산전파감시국 청사준공식후 기념촬영
나. 부산전파감시국 청사준공식 기념사
(8대 임재오 국장)
다. 부산전파감시국 청사준공식 인사말
(부산문화방송 사장)

가
나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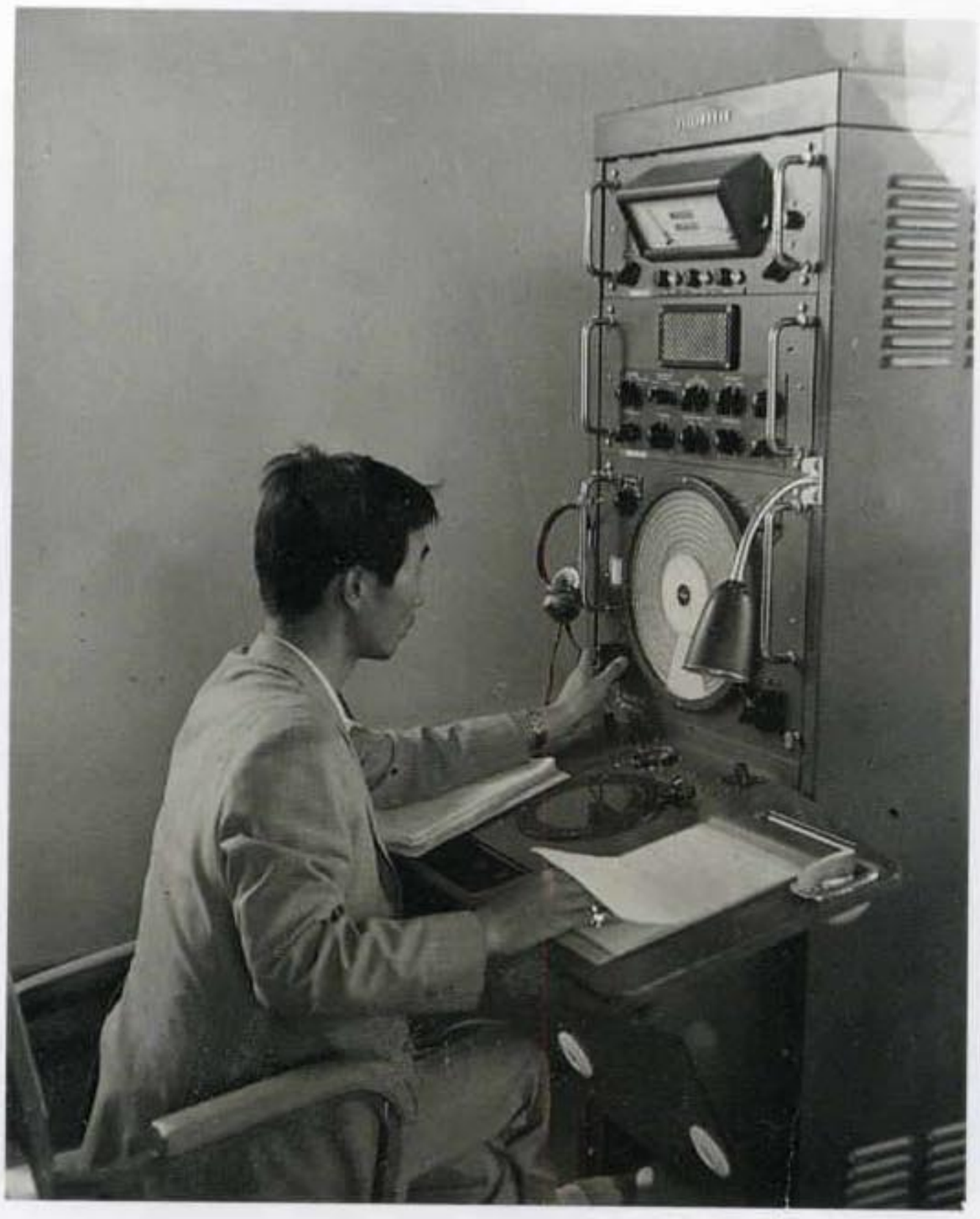



가. TELEFUNKEN사의 PST-396
고정방탐장비 운용모습
나. 부산전파감시국 전경과 직원일동
(1971년 당시)

가 나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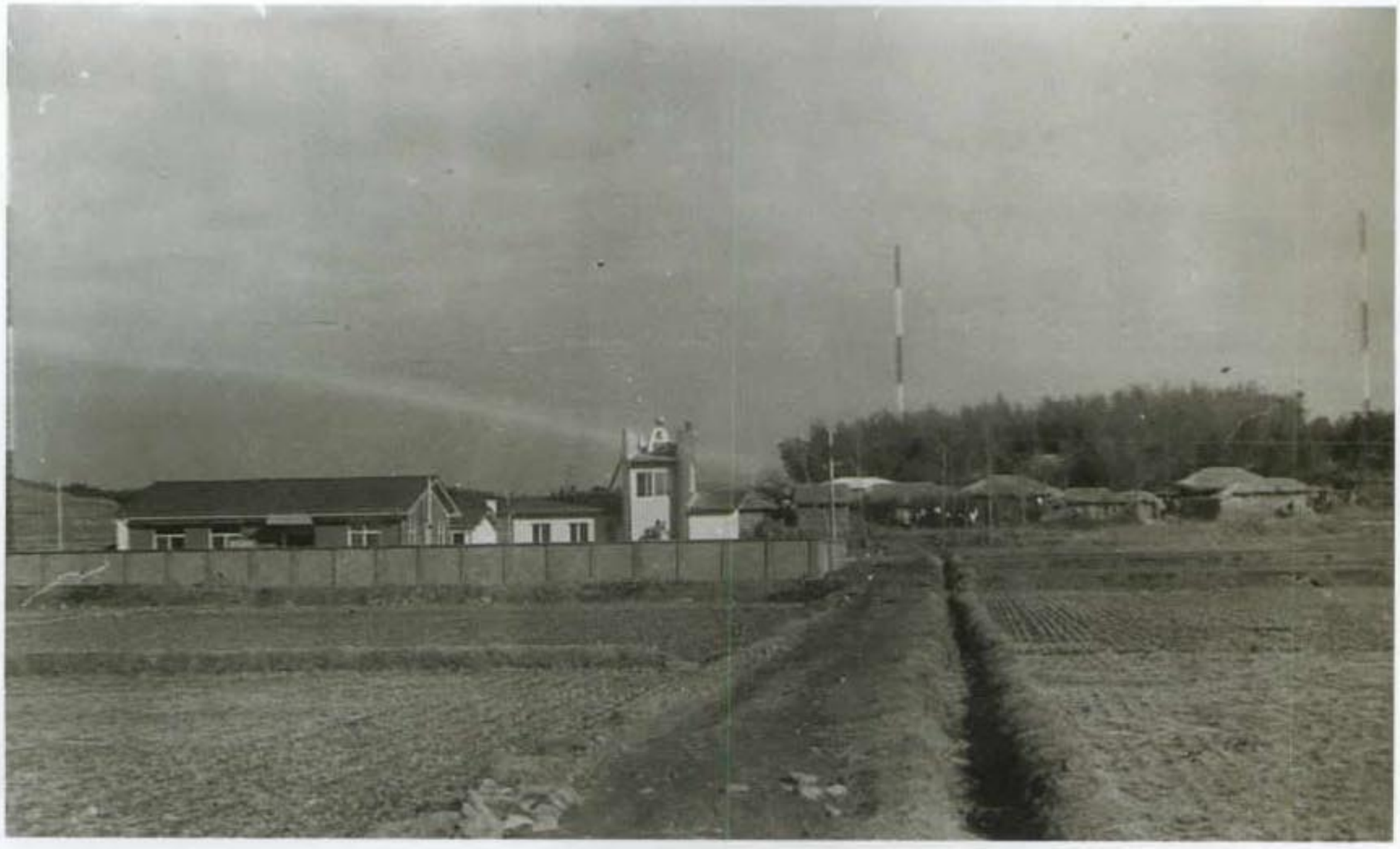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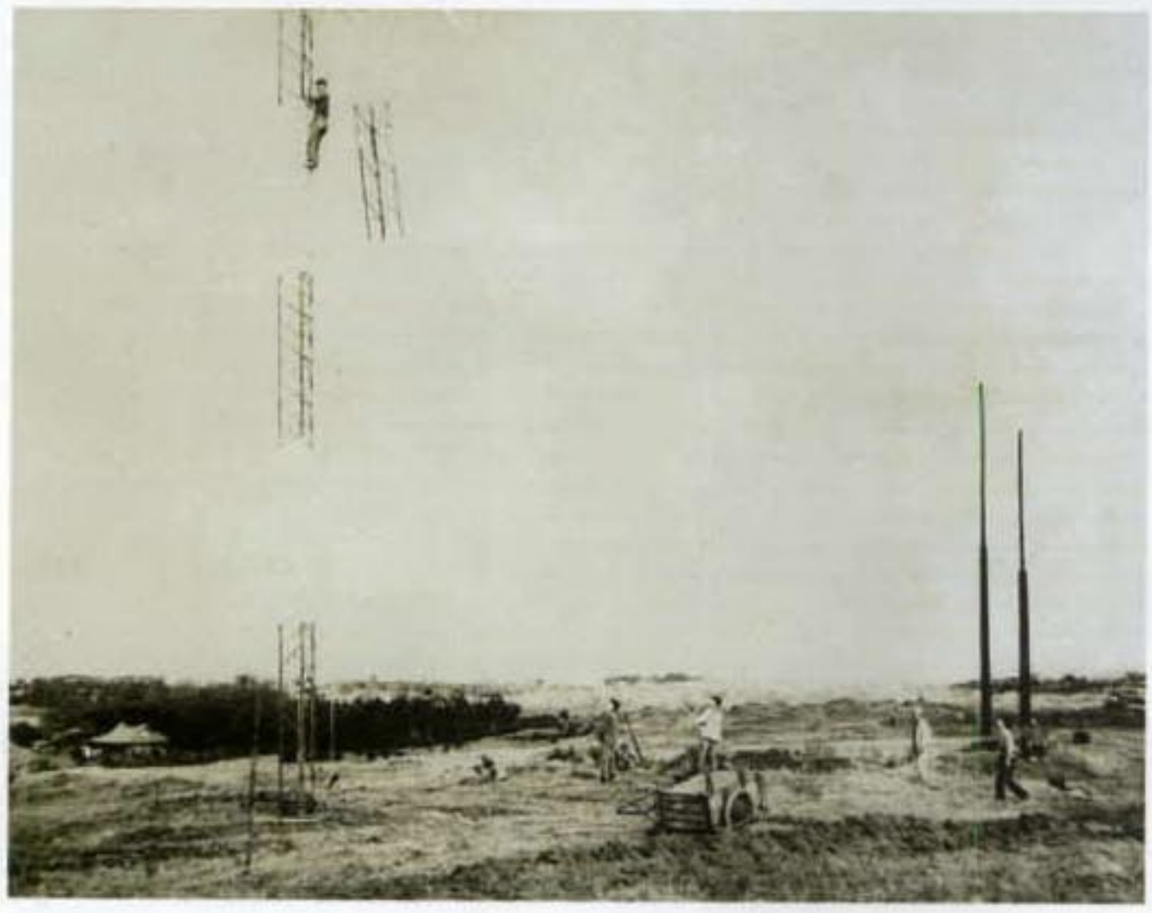



가. 나. 다.
부산전파감시국 사천분실 전경과 안테나 설치 작업 광경

영상으로 보는 전파관리 50年史 (1962 ~ 1983)



가

나

가. 부산전파감시국을 방문한 호주 전파감시국 관계자(1964년)
나. TELEFUNKEN사의 PST-396 고정방탐장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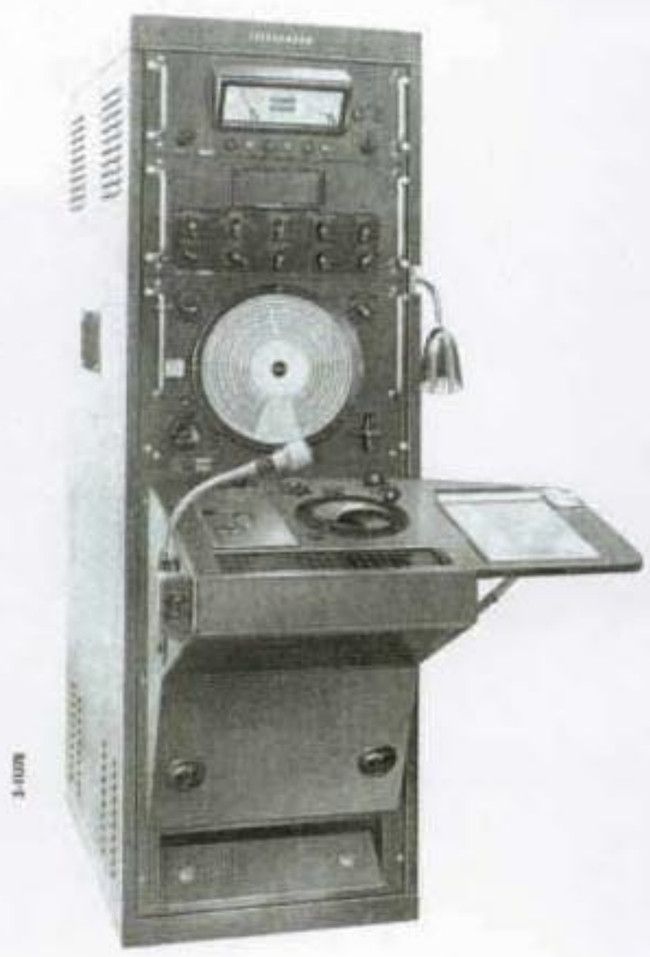



광주전파감시국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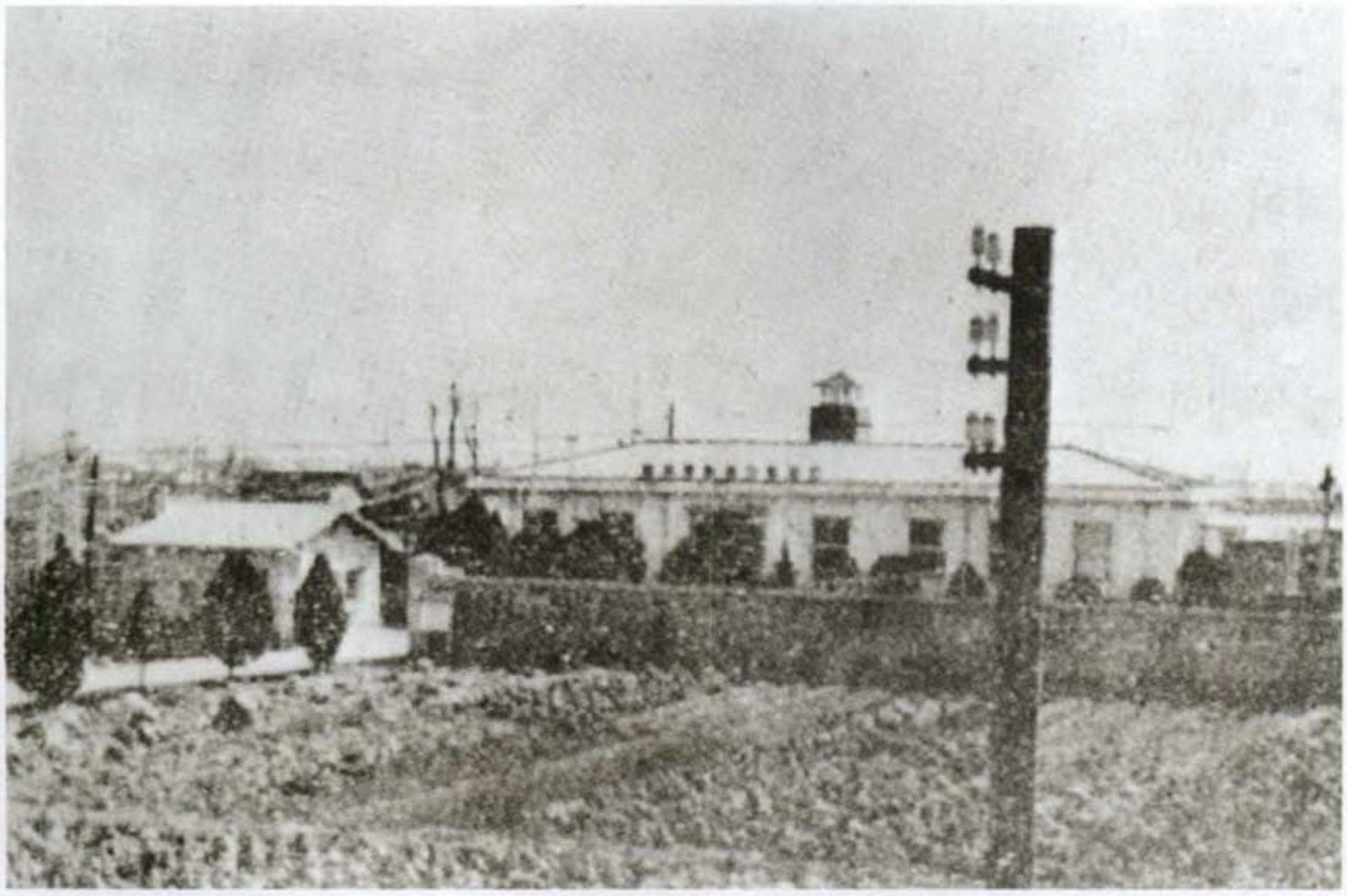



가. 광주전파감시국
송정리 청사 전경
나. 광주전파감시국 순회
방문기념(1968년 7월)

가

나





가. 광주전파감시국 5대 박영효 국장 송별식(1964년 4월 23일)
나. 순회방문 기념(1968년)

가

나





가. 나. 오세관 전파관리국장 순시 및 업무 현황 보고 장면(1972년 9월)

가

나

Office Central Radio Monitoring 50

영상으로 보는 전파관리 50年史 (1962 ~ 1983)



가. 광주전파감시국 송정리 청사를 순시한 최준식 전파관리국장 (1971년 3월)
나. 광주전파감시국 박화규 국장과 직원일동(1971년 송정리청사)

가

나





▲ 뽕나무밭 사이로 보이는 광주전파감시국 초기 산포청사 전경(1973년)



▲ 광주전파감시국 산포 청사전경

영상으로 보는 전파관리 50年史 (1962년~1983년)

가. G-2 고정방탐 장면 E-1500, 51-S1수신기와 , N4407 녹음기가 보인다

나. 일반 전파감시 업무장면 R-55A 단파수신기가 보인다





강릉전파감시국 편



가

나

가. 강릉전파감시국 전경 (1964년도)

나. 강릉전파감시국 초대 김득풍 국장 송별회





가
나
다

가. 강릉전파감시국 최연수 국장 송별회
(1966년 11월 30일)
나. 강릉전파감시국 초기 DF실 전경(1966년도)
다. 속초분실 전경(1969년도)











가
나
다

가. 나. 다. 대관령 사이트 건설장면



가

나

다

가. 나. 대관령 사이트 공사장면
다. 강릉전파감시국 대관령분국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직원을 격려한 정규찬 강릉전파감시국장







가

나

다

가. 나. 대관령 방탐사이트를 순시하여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 박원근 체신부장관

다. 박원근 장관에게 업무보를 하고있는 강릉전파감시국 이경천 국장





영상으로 보는 전파관리 50年史 (1962 ~ 1983)





가

나

가. 강릉전파감시국을 순시중인 이경식 차관(1977년 7월 8일)
나. 강릉전파감시국 초기 방탐실 직원의 숙소



가

나

가. 강릉전파감시국 감시과 방탐계 이동방탐 활동팀
(1975년 5월)

나. 강릉전파감시국 이동활동시 LOOP 안테나의
진북조정 장면



Office Central Radio Monitoring 50

영상으로 보는 전파관리 50年史 (1962 ~ 1983)





▲ ▼ 감청능력 향상 훈련모습, 안테나 급전선을 대나무로 받치고 있는것이 이채롭다





가. 나. 이동방탐차량과 훈련장면
다. 이동방탐차량 LOOP 안테나 진북조정 장면

가 나 다



영상으로 보는 전파관리 50年史 (1962 ~ 1983)







가. 나. 다. 애드- 콕 안테나 설치 및 이동 감시 활동에 필요한 캠프설치 작업 (1972년)

가

나

다





가. KS-319R3 설치작업
나. PST-396 수동방탐기(1973년)
다. 강릉전파감시국 체육대회(기술과 우승)

Office Central Radio Monitoring 50

영상으로 보는 전파관리 50年史 (1984 ~ 1999)

중앙전파감시소 / 중앙전파관리소 편





가

나

가. 중앙전파감시소 초대 소장으로 임명된 박성득 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담소하는 김성진 장관, 오 명 차관

나. 중앙전파감시소 현판식에 참석한 김성진 장관







가 다
나

가. 중앙전파감시소 간부직원 일동과 기념촬영한 김성진 장관
나. 다. 중앙전파감시소를 초도순시하고 근무 중인 직원을 격려하는 김성진 장관

Office Central Radio Monitoring 50

영상으로 보는 전파관리 50年史 (1984 ~ 1999)



▲▼ 중앙전파감시소 발족당시 가락동청사 전경과 농촌일손돕기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직원들, 가까이 가락동청사가 보인다



가. 을지훈련에 참관하여 상황보고를 받고있는 노신영 국무총리(1986년)
나. 을지훈련장을 찾아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김성진 장관 (1984년)

가

나







가. 당진분소를 순시하고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한 김성진 장관
나. 중앙전파감시소를 순시하여 방탐 차량을 둘러보는 이자헌 장관

가

나





가.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소재 부산분소 신축청사 준공식

나. 체신봉사상을 수여하는 이자헌 장관
(수상자 : 중앙전파감시소 손수조)

가

나

Office Central Radio Monitoring 50

영상으로 보는 전파관리 50年史 (1984 ~ 1999)





가. 중앙전파감시소 개소를 기념하여 1984년 4월 5일 기념식수를 하는 박성득 초대소장

나. 기념식수된 나무를 둘러보고 흐뭇해하는 오 명 장관과 이인학 소장 (1987년)

다. 1999년 10월 15년 후 청사 높이까지 자라나 중앙전파관리소의 기상을 대변하는 듯하다







가

나

가. 나. 중앙전파감시소를 순시하여
근무현장을 둘러보고 현황보고를
받고있는 이대순 장관

가. 중앙전파감시소 제71분소(서울) 개소식에 참석하고 현판식중인 오 명 차관
나. 중앙전파감시소 제71분소(서울) 개소식에 참석하여 박성득 중앙전파감시소장으로 부터 현황설명을 듣고있는 오 명 차관

나

가









가. 중앙전파감시소 제71분소(서울) 개소식에 참석하여 장비 개통 버튼을 누르는 오 명 차관
나. 제71분소 개소 축하 리셉션에 참석한 오 명 차관
다. 제71분소 개소 현황설명을 하고있는 박성득 소장
라. 을지훈련에 참관하여 관계서류를 살펴보는 오 명 차관

가
나 다
라





Office Central Radio Monitoring 50

영상으로 보는 전파관리 50年史 (1984 ~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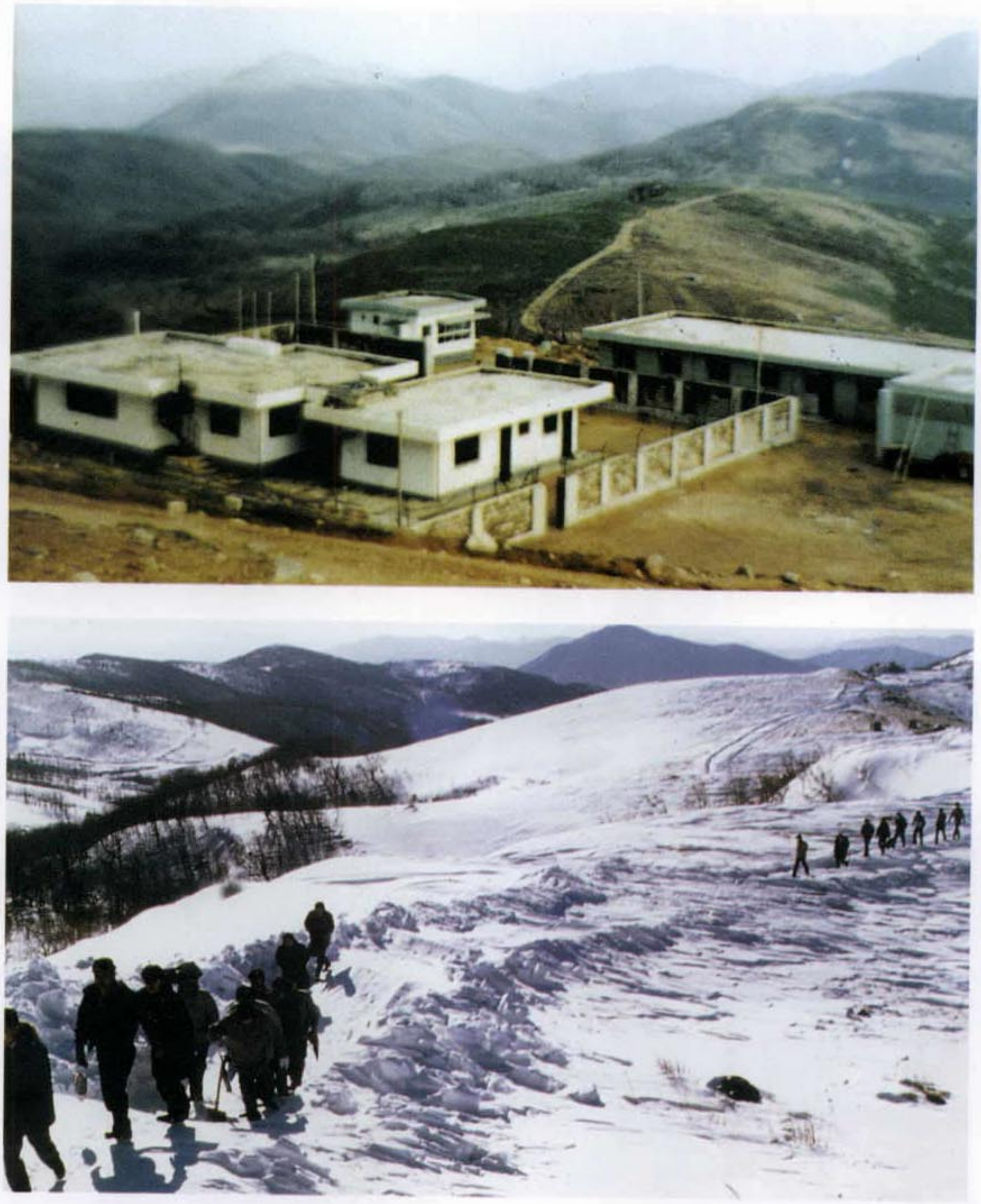

▲▼ 대관령 청사전경과 눈길을 출근하는 대관령 사이트 직원



▲ ▼ 대관령 사이트을 순시중인 박성득 소장



가

나

가. 제2대 이인학 소장 취임식
나. 중앙전파관리소를
순시중인 오 명 장관







가. 중앙전파관리소를 순시하여 주변을 둘러보며 현황설명을 듣고있는 오 명 장관
나.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불우시설을 방문한 이인학 소장

가

나

영상으로 보는 전파관리 50年史 (1984 ~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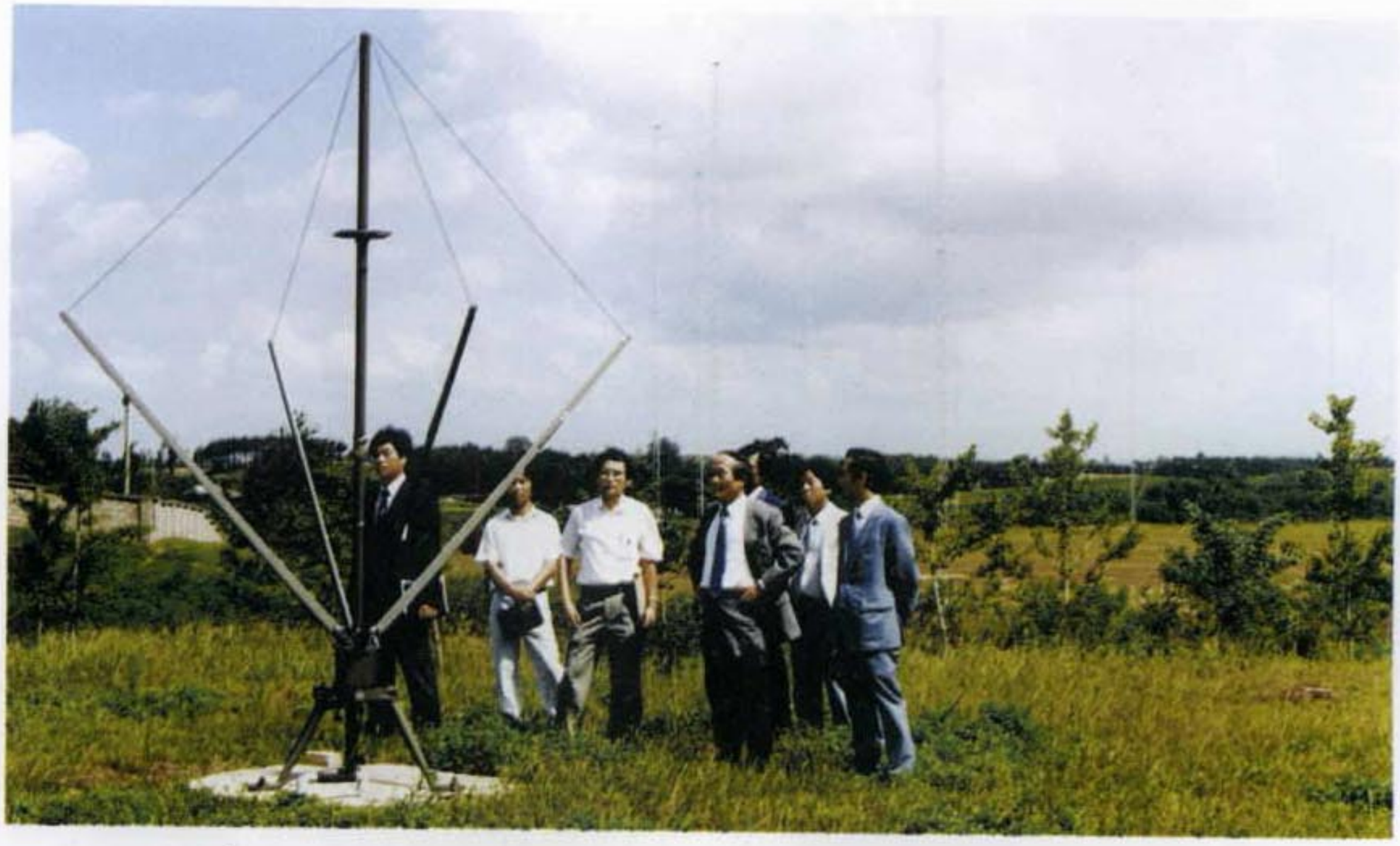

가. 당진분소를 순시하여 안테나부지를 둘러보고 인터페로메타 안테나 설명을 듣고있는 이인학 소장

나. 전파관리의 현장을 들러 근무중인 직원을 격려하고 관련 장비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는 이인학 소장





가. 대관령 사이트를 순시중인 이인학 소장
나. 당진분소를 순시하여 자동방탐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있는 이해욱 차관



Office Central Radio Monitoring 50

영상으로 보는 전파관리 50年史 (1984 ~ 1999)







가

나 다

가. 나. 국내 기술진에 의해 최초로 개발된 방탐제어 프로그램 컴퓨터접속 개통 버튼을 누르는 오 명 차관 TELEGON-6 방탐장비와 HP-1116 컴퓨터 접속(1986년 1월)

다. 초기의 UPS개념의 DC전원 자동화 개발에 참석후 기념식수한 오 명 차관



가. 제 3 대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 발령받고 오 명 장관에게 신임인사를 하고있는 김근수 소장

나. 새로 부임한 최영철 신임장관에게 인사하고 있는 김근수 소장

가

나



영상으로 보는 전파관리 50年史 (1984 ~ 1999)



가. 서울분실을 순시중인 김근수 소장
나. 당진분소를 방문하여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한 김근수 소장

가

나





가

나

가. 나. 88서울올림픽 지원 행사 및 혼신제거활동을 펴고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는 김근수 소장



Office Central Radio Monitoring 50

영상으로 보는 전파관리 50年史 (1984 ~ 1999)



가. 무선방향탐지 장비 (TELEGON-7) 탑재차량
나. 불법 방해전파탐사장치를 조작하는 기동활동조







가

나

가. 88서울올림픽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이동감시차량에 DISCON 안테나가 설치된 모습

나. 이동감시차량에서 불법방해전파를 색출하기 위하여 기동활동조와 무선통신으로 긴밀히 연락하고 있는 모습



가. 제 4 대 권영수 소장 취임
(1988년 12월 30일)
나. 중앙전파관리소를 순시하여
근무중인 직원을 격려하고
관련장비에 관심을 표명하는
최영철 장관

가

나







가

나

가. 중앙전파관리소를 순시하여 감시2과 최상규 과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있는 최영철 장관

나. 체신부 테니스 대회에 참관하여 선수단을 격려하고 환담중인 신윤식 차관



▲ 이동감시차량에 탑승하여 허가무선국 DB를 이용해 불법무선국을 포착하는 무허가 시스템을 살펴보는 최영철 장관



▲ 중앙전파관리소 청사준공식에 참석하고자 순시하여 업무보고를 받고있는 이우재 장관

중앙전파관리소 청사준공

1989 . 11 . 1



가

나

가. 중앙전파관리소 청사 준공식에 참석후 간부일동과 기념촬영한 이우재 장관

나. 청사 전경





가. 중앙전파관리소를 순시하여 감시업무현장을 둘러보는 이우재 장관
나. 88서울올림픽 무선통신 지원팀의 행사지원에 대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올림픽참여 기장을 수여하는 권영수 소장

가



나







가
나 다

가. 다. 서울분소를 순시하여 업무보고를 받고있는 이종산 소장
나.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특별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이종산 소장



가. 체신부 테니스대회에 참석하여 참가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는 이우재 장관

나. 당진분소를 순시하여 이창우 분소장으로부터 자동방탐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있는 이종산 소장

가

나





가

나

가. 나.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바자회 행사와 불우시설 「애덕의 집」을 방문한 이종산 소장





▲ 중앙전파관리소를 순시하여 업무보고를 받고있는 송언종 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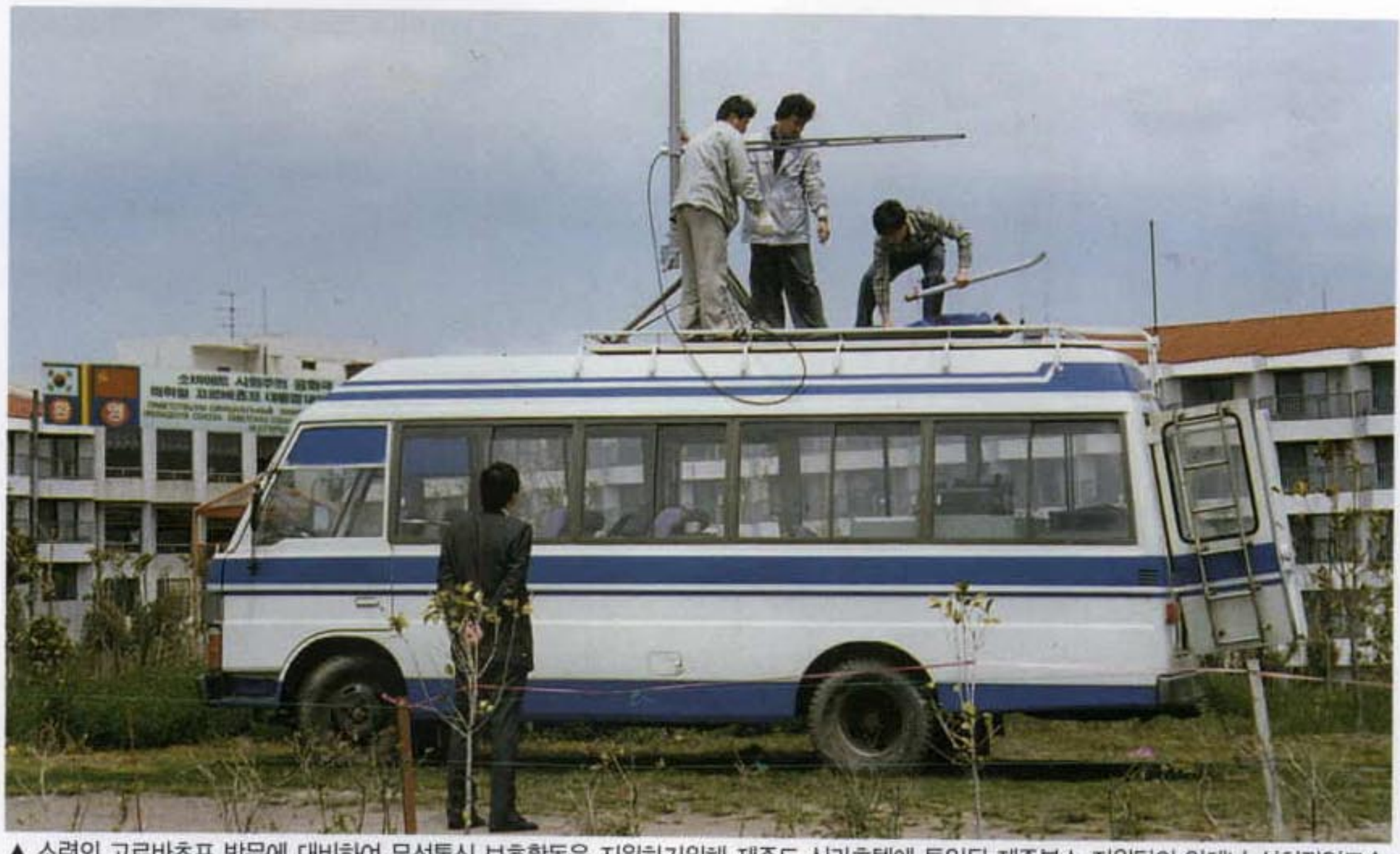

▲ 소련의 고르바쵸프 방문에 대비하여 무선통신 보호활동을 지원하기위해 제주도 신라호텔에 투입된 제주분소 지원팀의 안테나 설치작업모습과 이를 진두지휘하는 강덕근 체신부 주파수 과장



가. 감시장비박람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로부터 장비의 설명을 듣고있는 이기성 소장
나. 불우시설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관심을 표명하는 이기성 소장





▲ 스페인 토레몰리노스에서 열린 WARC-92회의에 참가(수석대표 : 이인학 전파관리국장)



▲ GMDSS 제도 도입과 해난사고 방지세미나 개최광경



가. 다. AFKN 채널2번 회수를 위해 채널34번 방송시설을
남산 송신탑에 설치하고 있는 장면
나. 중앙전파관리소 단체 아마추어무선국 개국식 장면









가

나

가. 광주분소 청사 준공식에 참석한 송언종 장관과 간부직원 일동

나. 1991년 8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강원도 고성에서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중 원할한 통신지원활동을 수행하여 세계잼버리대회 조직위원장인 쌍용그룹 김석원 회장으로 부터 무궁화동장을 수상받고있는 통신지원활동 유공자



가
나

가. 중앙전파관리소를 순시하여 업무현황을 보고받는 송언종 장관

나. 92년 제1회 분소장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김시일 소장







▲ ▼ 제 8 대 조 홍 소장 취임식 장면과 불우이웃을 위한 바자회 테이프를 컷팅하는 조 홍 소장



가. 중앙전파관리소를 순시하여 업무 보고를 받고있는 윤동윤 장관
나. 제 9 대 박원호 소장 취임식 장면

가
나





▲ ▼ 중앙전파관리소 서울분소 신축 예정 부지 선정에 대한 현황설명을 받고있는 윤동윤 장관



▲ 중앙전파관리소를 순시하여 감시2과 양의청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있는 경상현 장관



▲ 제주분소를 순시중인 박성득 차관(1997년 5월)



가
나

가. 정보통신부가 발족되면서 체신부의 현판을 내리기전 체신부 윤동윤 장관과 간부일동
나. 정보통신부 현판식 장면(초대장관 경상현, 차관 이계철)





가
나

가. 체신부 테니스장 준공식에 참석한 경상현 장관
나. 중앙전파관리소를 순시하여 업무보고를 받고있는 이석채 장관



영상으로 보는 전파관리 50年史 (1984 ~ 1999)





가

나

가. 국내전파권익을 보호 하기위해 외국전파침투여부를 조사하는 장면

나. 도라전망대에서 외국전파침투 여부를 조사하는 활동팀을 찾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있는 정보통신부 강덕근 감리과장



가

나

가. 전파관계관 회의를 하고있는 장면
나. 전파업무 자문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는 윤동윤 차관



영상으로 보는 전파관리 50年史 (1984 ~ 1999)







가. 중앙전파관리소 대구분소 개소식에 참석한 이동선 소장
나.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에 신축중인 대구분소 조감도
다. 대구분소 현판식 장면(이동선 소장, 강덕근 감리과장)







가. 중앙전파관리소 전주분소 개소식에 참석한
이동선 소장
나. 전주분소 현판식 장면(이동선 소장, 강덕근 감리과장)
나.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에
신축중인 전주분소 전경

가
나
다





가
나

가. WRC-97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서 개최된 APT지역 준비회의에 참석하여 연설중인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
나. 중앙전파관리소가 개최한 전산경진대회 장면



가. 나. 1990년부터 1997년 5월까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묶은 종합전파감시망을 구축하고 1997년 5월 30일 종합전파감시망을 시연하는 개최장면

가
나







가
나

가. 나. 중앙전파관리소 서울분소
청사준공식 장면
(서울시 구로구 궁동)







가. 중앙전파관리소서울분소 청사준공식 참석후 업무현장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는 박성득 차관
나. 서울분소 전경
다. 서울분소 준공식후 기념식수 장면(박성득 차관, 천조운 소장, 강덕근 감리과장, 김종환 서울분소장)

가
나
다





가
나

가. 제 14 대 강덕근 소장 취임식
나. IMF시대를 살아가야 할 공무원의 자세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중인 배순훈 장관



가
나

가. 중앙전파관리소를 순시중인 배순훈 장관이 감시1과 양의청 과장으로부터 혼신처리에 관한 설명을 듣고있는 모습

나. 중앙전파관리소를 순시하고 간부들과 환담중인 배순훈 장관







▲ ▼ 중앙전파관리소를 순시하여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있는 남궁 석 장관



▲ 불우이웃을 돕기위한 바자회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



▲ 신규임용자 및 타부처에서 전입된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기전 치사를 하고있는 강덕근 소장



가

나

가. 체신봉사 수상자에 체신봉사상을 수여하고 격려하는 남궁 석 장관(수상자 : 조규학)

나. 공무원 서예대전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선양규 : 광주분소) 한후 출품작에 대하여 김기재 행자부장관에게 설명하는 모습.







가

나

가. 나. 집배원들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고자 송파우체국 일일 집배원으로서 잠실주공 4단지에서 집배업무를 하고있는 강덕근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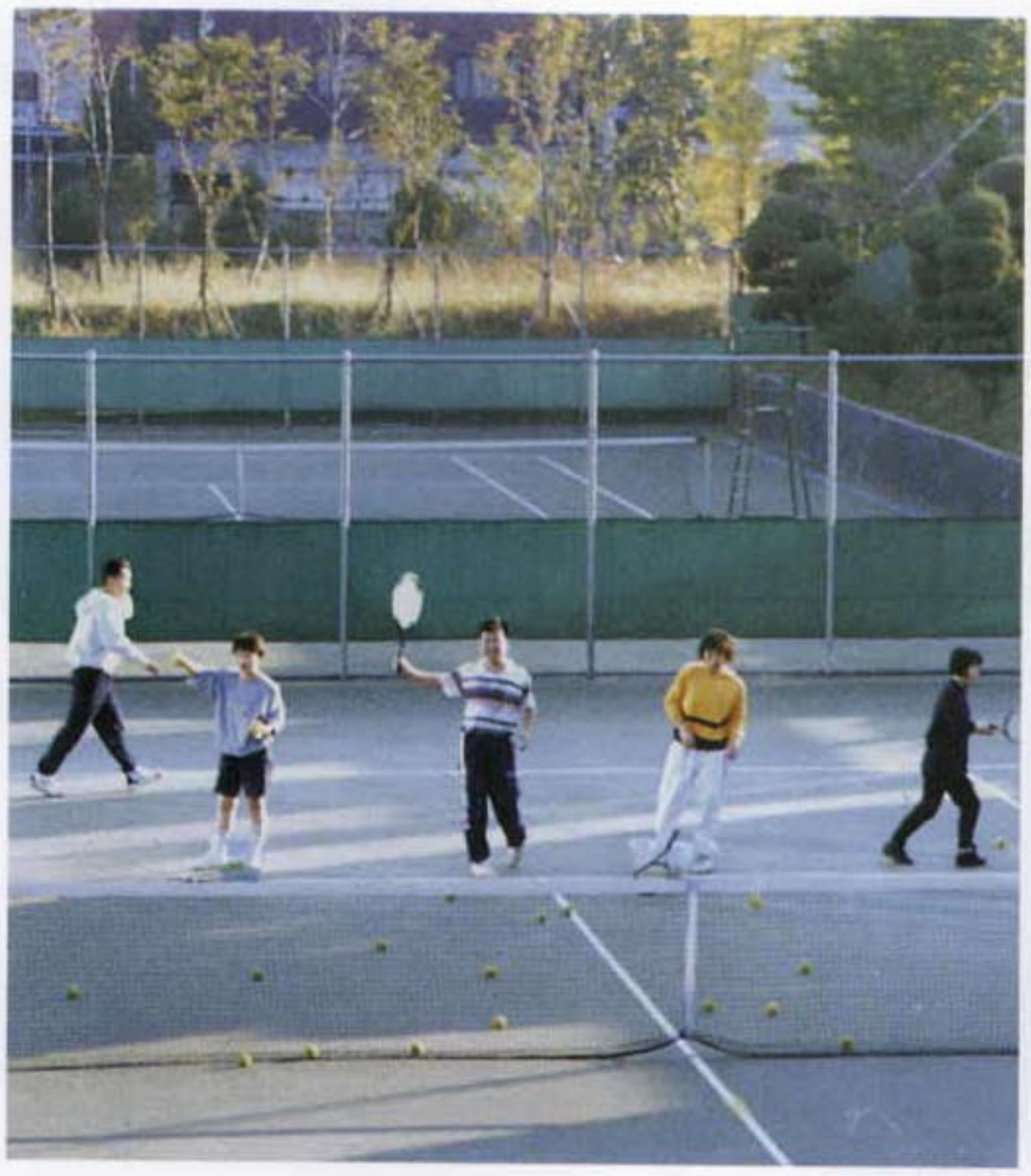







가. 나. 지역주민들에게 무료 테니스강좌를 실시하고 있는 장면

다. 1998년 서울 일부 지역 및 경기 북부 지역 호우로 많은 피해를 본 개미마을과 의정부지역에 자원봉사팀을 급파하여 부족한 일손을 돕고있는 직원들의 모습





가 나
다







가

나

가. 태풍으로 피해를 본 농가를 찾아 농촌봉사활동을 펼치는 장면

나. 사랑의 헌혈운동에 참여한 직원들의 모습







가 나
다

가. 다. 불우시설을 방문하고 격려금을 전달하는 강덕근 소장
나. 중앙전파관리소가 돕고있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부모들을 초청해서 격려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월 장학금을 지급하고있다







가

나

가. 무의탁 노인과 지체정신장애아 재활원을 매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앙전파관리소에 국민회의 송파(병) 지구당위원장 김병태 의원이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수여하고있다

나. 태풍 수해현장(개미마을 · 의정부)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쳐 송파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고 있는 강덕근 소장



영상으로 보는 전파관리 50年史 (1984 ~ 1999)



가
나
다

가. 나. 한국무선아마추어 무선연맹관계자와 아마추어 무선국 자율지도 문제를 협의하여 전국적으로 59명의 아마추어무선국 자율지도위원을 선발하고 1년간 수고한 자율지도위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강덕근 소장

다. 충남 논산에서 개최된 ARDF 세계대회에 참석하여 치사를 하고있는 강덕근 소장







▲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위한 10대 실천과제 준수 결의대회 모습



▲ 1999년도 전파감시 우수요원 산업시찰중 기념촬영



▲ 위성전파감시센터 설립 예정부지를 둘러보고 있는 강덕근 소장



▲ 위성엑스포에 참관한 중앙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 전시장을 찾은 안병엽 차관, 석호익 전파방송관리국장, 오 명 동아일보사장, 박성득 한국전산원장







가

나

다

가. 중앙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 전시장을 찾아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있는 안병엽 차관, 석호익 전파관리국장

나. 위성엑스포에 설치된 위성전파감시센터 전시장 모습

다. '99 위성엑스포에 정부관(위성전파감시센터)을 운영하여 위성통신 · 방송 및 우주산업 활성화의 공로가 인정돼 사단법인 통신위성 · 우주산업연구회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고 있는 강덕근 소장(1999년 10월 21일)





▲▼ 전파감시 기술개발 및 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하고 발표자들을 격려하고 전파감시시설의 Y2K문제를 해결하고 시연회를 개최 하고있는 장면





가. 나. 다. 민원인의 전파장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전파장애 원인을 찾아 전파장애를 해소하여 주는 CS기동팀 활동 장면

가 나

다





가

나

가. 전파감시 지휘 · 통제망 구축 시연회에 참석하여 방명록에 서명중인 남궁 석 장관

나. 전파감시 지휘 · 통제망 구축 시연회에 참석하여 치사하는 남궁 석 장관





가

나

다

가. 전파감시 지휘 · 통제망 구축 배경을 남궁 석 장관에게 설명하는 강덕근 소장

나. 전파감시 지휘 · 통제망 구축 관계자를 격려하는 남궁 석 장관

다. 전파감시 지휘 · 통제망 관련장비를 둘러보는 남궁 석 장관





중앙전파관리소 홍보책자



중앙전파관리소는 「한국의 전파관리」 홍보책자를 국영문 혼용판으로 발간하여 국내 관련 단체에는 물론, 외국의 전파 관계기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전파관리소의 연혁, 조직, 전파감시 활동사항, 혼신조사 및 제거, 위성감시센터 소개, 전파감시지휘 통제망, 홈페이지, 지방전파관리소 등을 소개 하고있다.



前史

通信의 始發과 監視業務 胎動

제 1 절 통신의 시발

제 2 절 감시업무의 태동

前史　通信의 始發과 監視業務 胎動

제 1 절　통신의 시발

1. 봉수제도

삼국유사에 수록된 단군설화에서 환웅이 가지고 온 천부인 3개는 신의 위력의 표상인 거울 · 칼 · 방울이라고 한다. 거울은 시각을 지배하며, 칼은 정착된 사회생활의 영위를 위한 규율의 준수를 나타내고, 방울은 청각을 지배하는 상징물이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울은 질서있는 사회생활의 전반적인 외형과 사회구성원의 문물에 대한 모방 즉, 교육의 상징인 것이다. 이는 곧 현대의 정치 · 교육 · 방송 등의 역할에 해당하며, 빛의 반사체라는 거울 자체의 성질로 볼 때는 미분화된 통신(광)시스템으로 볼 수도 있고, 정보이론으로 볼 때는 시각정보의 상징물로 볼 수도 있다. 그에 대하여 방울은 청각에 대한 거울에 상응된 것으로 소리(청각정보)를 통하여 안정된 정치,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 동심체 형성을 위한 주술적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 곧 이 시대에 있어 거울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단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이러한 광채를 발하는 기구를 사용함으로써 빛뿐만 아니라 소리, 그리고 언어를 통하여 단합된 형태의 사회를 이룰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물론 지금의 양방향 정보의 교환으로 볼 수는 없으나 이 모든 것이 통신의 요소와 통신의 한 형태를 구성하고 있었음을 추상할 수 있겠다.

이 같은 근원적인 통신의 한 형태에 이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 봉수였다. 사실 감각의 실험적인 직관에 의하여 쉽게 발명되었으리라 여길 수 있는 봉수는 전부터 통일되지 않은 형태로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헌에 나타난 봉수에 관한 확실한 기록은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수록된 온조왕에



▲ 인간의 통신역사 중 가장 원초적 통신형태의 하나인 솟대는 사람과 하늘과의 통신을 위한 안테나 같은 것이었다.



▲ 해동팔도 봉수 산악지도

관한 봉수관련 기록이나 수로왕의 설화가 대표적이라 하겠다.

특히 수로왕의 설화에서는 국가 통신기능의 원류를 엿볼 수가 있다. 수로왕이 유천간을 시켜 망산도 앞바다에 나가서 붉은 돛에 붉은 기를 단 배가 나타나면 봉화로써 통보케 하라고 한 봉화의 기록과 삼국사기에는 백제 온조왕 10년을 필두로 하여 봉현 · 봉산 봉화성 등의 기록이 있는데 이는 봉수제의 실시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때는 중국의 봉수제가 확실히 성립하였던 시기에 해당하므로 당시 양 지역간의 문물 전파의 실정으로 미루어 군사적인 의미의 봉수제가 우리 나라에서도 실시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그 시기의 사회발전 단계 면에서 미루어 볼 때는 아주 제한적인 것일 뿐 그 이상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을 것이다. 한편 낙랑공주와 호동왕자의 전설 가운데 정보통신공학상으로 볼 때 주목할 사실은 자명고에 관한 사항이다. 자명고란 적의 내침을 자동적으로 경보하여 주는 북이란 뜻으로 낙랑의 보배였다고 한다. 외세의 지배계급인 낙랑과 토착신진세력인 고구려와의 충돌과정에서 승기를 잡은 것은 먼저 자명고의 파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문학작품으로 볼 때 애틋한 사랑이야기가 되지만 현대전의 개념으로 볼 때는 첩보전의 승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설 속의 자명고가 실제로 존재하였는가는 의심스럽다. 다만 어떤 국가이든지 국가성립의 전제조건 중의 하나가 정보통신망의 설치라고 볼 때 당시의 고대국가들도 어떤 형태이든 대부분 정보통신망이 마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통신망을 통하여 외적의 내침 사실이 알려지면 국왕에게 보고하는 것은 물론 일반국민에게 알리는 자동경보의 표현이 곧 자명고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으며 당시의 정보통신망을 대표하는 표현일 것이다. 따라서 자명고의 파괴는 정보통신망의 교란에 성공하였슴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자명고에 연결되는 통신망으로서는 봉수나 역마를 상정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봉수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봉수

망은 원시초기부터 사용된 원초적인 통신망일 뿐만 아니라 그 신속성에 있어서 역마와 비교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삼국시대 초기에 이미 국가기간통신망이 존재하였슴을 증명하는 좋은 자료라 생각되며 또한 자명고는 김수로왕 설화속의 봉화와 함께 고대국가에 있어서 통신정보망의 존재를 실증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 하겠다.

烽燧組織網

第一炬 慶興→京都

慶興西水羅 → 慶興阿吾地堡 → 慶源乾原堡 → 穩城
→ 會寧古煙臺 → 會寧甫乙下鎭 → 富寧 → 鏡城姜德
→ 鏡城羅赤洞 → 鏡城長平 → 鏡城永康 → 鏡城朱村
→ 吉州鄕校峴 → 端川 → 北靑石茸 → 咸興
→ 永興 → 安邊 → 鐵原 → 楊州峨嵯山
→ 漢城木覓山(南山)

2. 우역제도

고대의 역제

한국의 역제 설립을 알려 주는 최초의 기록은 신라 소지마립간 (炤知麻立干) 9년(487년) 3월에 "비로소 사방에 우역을 두고 우역을 맡은 관청에 명하여 관도를 수리하게 하였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이다. 이렇게 우역이 설치될 수 있었던 배경은 첫째 내물마립간 (356년~401년)으로부터 시작되는 왕권강화에 의하여 고대국가로 발전하였고, 둘째는 물화의 거래와 유통이 많아졌기 때문이었다. 우역을 설치한 뒤의 일이기는 하지만 소지마립간 12년(490년)에는 "경사의 시사를 처음으로 열고 사방의 물화를 통하게 하였다"라고 하였듯이 물화의 거래와 유통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우역을 설치하게 되었던 것이다.

소지왕시대의 이러한 우역의 설치와 물화 유통량의 확대에 힘입어 다음 왕인 지증왕(500~514년)시대에 활발한 정복사업이 전개될 수 있었고, 그 다음 왕인 법흥왕(514~540년)시대에는 중앙집권적인 귀족국가로서의 통치체제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 사람을 활용한 통신수단으로 직접 걸어서 전하거나 말을 이용하기도 했다. 당시 짚신은 먼 길을 가는데 필수품이었다.



▲ 선사시대의 통신 반구대 암각화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에는 우역 설치에 관한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고구려가 망한 이듬해인 669년 문무왕 9년에는 당의 이적이 고구려의 고토에 도독부와 주현을 설치한 기록에서 국내성의 위치를 평양성으로부터 17역의 거리에 있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에도 역이 있었슴이 확실하다. 더욱이 고구려는 한족과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하여 고대국가로 성장하였고, 삼국 중에서는 고대국가 성립이 가장 빨랐으며, 정복국가로서의 성격도 가장 두드러졌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신라보다 더욱 발전된 우역제도를 갖추고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여겨진다. 백제의 경우 고대국가 성립과 발전이 신라보다 빨랐고 선진 중국의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신라보다 지리적으로 유리하였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신라보다 더 발전된 우역제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진다.

삼국을 통일함으로써 고대국가의 면모를 더욱 가다듬은 신라는 집사부를 중심으로 관제를 개편하면서 특히 경도역을 설치하여 우역의 행정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경도역을 맡아 운영하는 관리는 대사 2인과 사 2인이 있었는데 대사는 신라의 17관등 중 제1관등인 나마에서 제13관등인 사지까지의 관등에서 임명되었다.

고려시대의 역제

고려초기의 정치사의 흐름은 호족연합정권의 체제에서 호족을 중앙귀족 또는 중앙관리로 흡수 편입시키거나 또는 지방의 향리로 전락시키면서 귀족 중심의 집권적 국가제도로 옮아가는 것이었다. 고려의 역제 정비는 이러한 흐름에 크게 영향받아 현종 10년(1019년) 무렵에 일단락 된 6과 체제로 완결되었다.

6과 체제는 서경을 중심으로 한 변방개척과 큰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 반면 고려의 안정된 배후 지역인 후고구려의 고토에는 역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

았다는 것이 드러난다. 6과 체제에서 설치된 역은 대체로 신라와 후백제의 고토가 아닌 남방의 배후지역이었고 이는 호족의 저항이 강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

各科別郵驛明細表 (※ 科는 今日의 局等級)

第 一 科 (定員75名 · 驛數12)

金郊 · 臨波 · 金岩 · 寶山 · 安城 · 龍泉 · 聳嶺 · 洞山 · 高原 · 生陽 · 懷蛟 · 林原

第 二 科 (定員60名 · 驛數14)

安定 · 迎德 · 通寧 · 雲岩 · 興林 · 興郊 · 長若 · 安信 · 新安 · 雲興 · 林畔 · 通陽 · 豊陽 · 興化鎭

第 三 科 (定員45名 · 驛數22)

白嶺 · 玉溪 · 龍潭 · 嵐泉 · 林湍 · 松開 · 丹林 · 銀漢 · 孤山 · 藍山 · 寶龍 · 鐵關 · 德嶺 · 通達 · 和軒 · 城陽 · 康樂 · 大平 · 長興 · 玉泉 · 葦溪 · 數安

第 四 科 (定員30名 · 驛數10)

通德 · 善田 · 金川 · 長利 · 長歡 · 風湍 · 通堰 · 熊壞 · 通蕃 · 長壽

第 五 科 (定員12名 · 驛數45)

金谷 · 深洞 · 淸湍 · 望丁 · 金剛 · 舟林 · 沙溝 · 石牛 · 興泉 · 密田 · 桃摘 · 田原 · 臨江 · 利嶺 · 直木 · 保安 · 安撫 · 甘泉 · 山梁 · 高今 · 竹苞 · 灌木 · 射岩 · 淸澗 · 安奇 · 桑樹 · 隻谷 · 大昌 · 橫深 · 珍富 · 大和 · 芳林 · 雲橋 · 安仁 · 壽山 · 新池 · 雲峯 · 驥린 · 班石 · 陶工 · 金洞 · 管山 · 深源 · 德新 · 洞蔭

第 六 科 (定員7名 · 驛數43)

煬溪 · 嘉原 · 靑澗 · 長材 · 雲半 · 金化 · 僧嶺 · 朔寧 · 元貞 · 芳春 · 遂人 · 富昌 · 甘泉連峯 · 仁嵐 · 蒼峯 · 嵐적 · 圓壞 · 瑪瑙 · 希적 · 臨川 · 同德 · 린駒 · 樂豊 · 平陵 · 喬柯 · 史直 · 龍化 · 沃源 · 興富 · 木界 · 烏源 · 玆山 · 降仙 · 玉地 · 白原 · 免山 · 溫泉 · 往谷 · 泉頭 · 今勿 · 雲岩 · 長林

호족의 배경이 상대적으로 약한 동서북변에 있어서의 역 창설이 비교적 쉬웠기 때문에 6과 체제가 개경 · 서경지역과 동서북변에 치중되었던 것이다. 983년(성종 2년)에 있었던 최승로의 시무책에는 "여러 주 · 현 및 정 · 역 · 진 · 도의 호우들이 서로 다투어 제도에서 벗어나는 큰 가옥을 짓는데 일가의 힘을 다 소진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사역하여 그 폐단이 심히 크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호우 즉, 호족들의 세력을 지방에서 배제하고 국가의 집권적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이었다. 최승로의 시무책은 곧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체제의 전환이 시도되었는데 역제에도 대폭적인 정비가 있다.

성종 2년 6월에는 주 · 부 · 군 · 현과 함께 역에도 공해전으로서의 역전이 지급되었고 역장의 정원이 정해졌다. 이로써 역촌은 일단 제도적으로 국가에 의하여 장악되었고 역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기에 이르렀다.

전국의 22역도 525역으로 망라한 고려시대의 역첩은 고려사 병지 첩역조에 그 분포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전국을 대상으로 한 방대한 역로체제와 22역도의 분기 시점은 현종 10년(1019년)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22역도 성립의 하한 시점은 역명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청교도의 노원역, 춘주도의 남경역과 구곡역, 평구도의 평구역의 소재지가 남경으로 나와 있어 남경의 설치를 알려 주고 있는데, 남경이 제도화된 것은 문종 21년(1067년)의 일이므로 그 하한 시점을 문종 21년에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에 파견 상주되는 지방관은 현종 9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11세기에는 129명, 12세기 중엽인 인종조에는 146명으로 계속 늘어났다.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 장악의 이러한 강화가 문종 시대의 22역도의 완성에 기본적인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역정제도로 반영되었다. 현종 19년(1028년)에는 지방 역정기구가 종래의 순관에서 관역사로 전환되었다. 고려사에서는 이러한 변경이 단순히 순자가 왕의 이름을 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확충된 지방 역들을 순관이 감당하기에는 비효율적이므로 보다 기능이 강화된 관직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관역사의 설치에 앞서 현종 10년(1019년)에는 중앙의 역정기구가 공역서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한다. 공역서는 병부와 역정



▲ 수원성 봉돈

을 분리 · 전담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서로 설치되었던 것이다. 즉, 공역서는 전국의 역을 관장하고, 관역사는 공역서의 통솔 하에서 방면별 지방역을 관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순관을 매개로 하여 병부와 개별역 사이에 이루어진 6과 역정체제가 관역사를 매개로 하여 공역서와 방면별 역도 사이에 이루어진 22역도체제로 전환된 것이며, 따라서 병부체제 · 6과 체제에서 공역서체제 22역도체제로 전환된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역은 하나의 교통시설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행정기구이기도 하였다는 것이 고려시대 역의 최대의 특징이었다. 역의 이러한 성격이 22역도체제에서 확립되었고 고려의 귀족세력이 지방의 호족세력을 중앙정부의 관리로 편입시키거나 또는 지방이 향리로 전락시키면서 중층적인 지방제도를 편성해 나가는 것과 궤도를 같이 하면서 정비되었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역제



교통 · 통신기관의 정비와 장악은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강화에는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 조선왕조 초기에는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지배의 체제를 개편하였다. 그 결과 지방관이 늘어난 지방과 중앙을 연결하는 교통 · 통신이 더욱 빈번하게 되었고, 따라서 교통 · 통신기관으로서의 역의 중요성도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馬 牌 制 度



官等差異에 依한馬牌發給狀況

馬 種		大君議政	正二品以上	從二品	三品堂上	六品以上	九品以上	備 考
乘馬	上等馬	1	1	1	1	·	·	赴京使, 通信使, 御史 등은 別途給馬以外에 鎭將 驛官, 敎官 등도 給馬
	中等馬	·	·	·	·	1	1	
	下等馬	3	3	2	2	1	·	
駄馬	下等馬	3	2	2	1	1	1	
計		7	6	5	4	3	2	

※ 公用에 있어서는 各驛官이 職名과 時日 等을 記錄하였다가 每季마다 兵曹에 報告하였다.



▲ 통신수단으로 역제를 이용할때 사용하던 마패로써 새겨진 말의 수에 따라 역마를 징발하였다.

태조 이성계는 새 왕조의 창건과 동시에 공용 이외 역의 이용을 엄금하는 한편 원년 8월에는 각 도의 수령과 유학 교수관을 역승에 제수하여 배치하고 병조가 우역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다음 태종 5년(1405년)에 6조에 3가가 설치될 때에 병조에도 무선사, 승려사, 무비사가 설치되었는데 승여사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공역서가 그대로 존재하면서 우역을 관장하였다. 다시 1410년 4월에는 종래 고려시대에 쓰여 왔던 공역서 도장이 찍힌 마표를 폐지하고 병조의 도장을 찍은 조선왕조 독자의 마패를 만들고 마패의 발급 절차를 보다 세밀히 규정하였다. 이어서 태종 15년(1415년) 12월에는 중국을 본 받아 주척 6척을 1보로 하고 360보를 1리로, 30리를 10으로 하여 거리를 재는 단위로 삼았으며, 이에 의하여 각 역의 리수를 재어 보고

착발의 기한을 미리 정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돈화문을 기점으로 하고 도정에 10리마다 작은 푯말을 세우고 30리마다 큰 푯말(대표)을 세워 돌이나 흙을 쌓아 이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경국대전에서 좀더 구체화되어 경복궁 앞의 원표를 기점으로 하여 10리에는 작은 돈대를 30리에는 큰 돈대를 세우되 돈대에는 리수와 지명을 새기도록 하였다. 그리고 10리마다 토석을 모아 놓거나 심어 표시로 삼기도 하고 5리마다 정자를 세우기도 하였다. 도로의 폭은 도성 안의 경우, 대로는 56척 소로는 11척으로 하고 양쪽에 2척 도랑을 파도록 하였다. 태종 15년의 이러한 조치는 전국의 교통 · 통신망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장악하는 전제가 되는 것이다.

병조의 승려사의 관할 하에 역을 관리하고 역사를 통제하는 관료는 역승과 찰방이었다. 역승은 종9품, 찰방은 종6품의 관료로서 각각 인신을 수여받았고 역마의 준비, 사객의 지지, 류민의 포획, 변보의 수발, 변금의 규찰 등의 역무를 수행하고 역리의 유망을 방지하는 등 역의 여러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역승제에서 찰방제로 넘어가는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세종실록 성립까지의 기간이고, 둘째로는 경국대전 성립시까지의 기간, 셋째로는 경국대전 성립 이후의 기간이었다. 이와 같이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 역승제에서 찰방제로의 전환이 확정되었다.

역승과 찰방은 역들의 집합체인 역도를 관장하면서도 역도의 역(예컨대 경기도 영서도이면 영서역, 도원도이면 도원역)에 상주하는 외관이었다. 역승은 고려말에서부터 중종 30년(1533년)까지 약 150년 동안 철폐와 복치를 거듭하면서 존재하였다. 조선시대의 역승은 서울의 크고 작은 관하의 서리로서 10년 동안 복무한 거관 해당자 중에서 채용시험을 통하여 임명하였는데 품계는 동반의 최하직인 종9품이었다. 이와 같이 역승은 미미한 외관 말직이었다.

10년 이상의 고생 끝에 역승이 된 이들에게는 관리로서의 승진의 길도 막혀 있었고 그들의 임기는 15개월 정도였으나 3~4개월이나 5~6개월만에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역승이란 관직의 이와 같은 단점으로 말미암아 역로가 입는 피폐는 막대한 것이었다. 찰방의 품계는 현감, 교수와 같은 종6품이었다. 역승과 마찬가지로 비록 봉록이 없는 관리이기는 하지만 법제적으로 현감보다 그 서열이 우위에 있었다. 찰방은 도임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만에 교체되었으며, 그 근무성적의 평가와 상벌은 관찰사의 소관이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전국에는 41개 역로에 소속 역이 502개였으므로 총 543개의 역이 있었다. 이들 역이



▲ 찰방 및 우역 분포도

수행하는 최대의 직무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전명이었다. 전명의 방법에는 우역이라는 말 뜻대로 걸어서 전하는 것을 우라 하고 말을 타고 전하는 것을 역이라 하였듯이 크게 나누어 도보에 의한 전송과 역마를 이용한 전송의 두 종류가 있었다. 긴급을 요하는 것 이외에는 도보로 전송하였다.

역사는 사객의 지지나 육전의 경우에 소속 군·현으로부터 약간의 지원을 받는 것 이외에는 역의 일을 자체의 힘으로 감당하였다. 역리의 호구안은 3년에 한 차례씩 관찰사가 일반평민의 호구열에 따라 작성하였다. 네 벌의 호구안을 만들어 병조, 감영소속의 고을에 각각 한 벌씩 보내고 한 벌은 소속 역에 보존토록 하되 역리의 소속역을 본관으로 삼게 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것 역시 역리를 역에 긴박시켜 역역을 계속 확보하려는 목적에서였다. 역사에는 일정한 정원이 없었다. 때문에 역에 따라 그 수가 들쭉날쭉하였다.

역리의 충원은 역리 세습제가 그 기본이었다. 조선시대에는 범죄, 특히 반역죄를 지은 경우에는 노비나 역리로 충족되는 경우가 많았다. 노비로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역리로 떨어뜨리는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었다. 이와 같이 형벌로 인하여 역리로 떨어지는 경우는 양반 관료에서 상민, 향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양인 신분 층이 범죄를 지으면 노비나 역리로 떨어졌다. 이것은 역리의 신분적 지위가 노비에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리의 사실상의 처지는 노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천인 신분이었지만 법·제적으로는 양인이었다. 예컨대 지금 양인 신분으로 일컬어지는 것에는 등급이 하나가 아니다. 비록 의관벌열의 후예는 아니더라도 상하내외의 구별이 있는 자들이 그 하나이고 비록 상하내외의 구별이 없더라도 그대로 평민인 자들이 그 하나이며, 나머지 하나는 신분이

천인은 아니지만 그 처지가 천민과 다르지 않다. 이를테면, "역리 · 보충군도 역시 통틀어 양인 신분이라고 일컫는다." 라는 것이 위의 사실을 들어낸다. 또 성종 15년(1484년) 5월에 성종이 평안도의 감사 · 수령을 역임한 자들을 불러 평안도에서의 향호입마의 가부를 물었을 때에 화순군 권함은 "역리는 비록 천하지만 신분은 양인이어서 천인들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병 · 보병의 관군에 충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역리가 친양역천임을 분명히 밝혔다.

역에서 사객을 지지할 때에는 고을의 재정적 원조를 받았으나, 그 밖의 일체의 경비와 입마의 부담은 역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재정적 부담이었다. 이러한 재원으로 역에는 여러 가지 토지가 지급되었다.

우선 역에는 관둔전이 있었다. 이는 역 경비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세조 4년(1458년)에 설정 · 지급된 자경무세의 관유지로 모든 역에 일괄하여 12결씩이었다.

역인입전은 역리 · 역노에 대한 급전인데 경국대전에는 장전 2결, 부장전 1결 50부 그리고 급도전 50부(교통량이 많은 긴로의 역에서는 50부를 추가 지급한다.)로 규정되어 있었다.

장전은 역리 중에서 선정되는 1명의 역장에게 부장전은 역시 역리 중에서 선정되는 1명의 역부장에게 급주전은 급주노비 매호에 지급된 수조지였다. 이들 인위전 역시 각자 수조지로써 민전이었다.

18세기에는 대마 · 중마 · 소마를 합친 전국의 역마가 5,287마리였는데 경국대전 당시의 역마도 이에서 크게 많지 않았으리라고는 짐작되므로 그 수로써 계산하면 한 역당 평균은 10마리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역도편제에 있어서는 조선왕조 후기에 들어와서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 영조 22년(1746년)의 속대전의 역도편제에 변화가 있었는데 그 결과 역도는 경국대전의 역도보다 하나 적은 40역도로 되었고 전체 역수에 있어서는 철폐가 5역, 신설이 18역으로 경국대전의 역보다 13역이 많은 전체 역수 556역으로 늘어났다. 이 역편제는 정조 9년(1785년)의 대전통편에 그대로 이어졌다. 순조 9년(1809년)의 만기요감에서의 역도는 변함없이 40역, 전체역수는 속대전 · 대전통편에서 보다 10역이 적은 546역으로 줄어들었다. 고종 2년(1865년)의 대전회통에서의 역도편제의 변화로 철폐가 5역, 신설이 5역이었는데 역도는 변함없이 40, 전체 역수는 만기요감과 같은 546역으로 양적으로는 거의 변함없는 역도편제가 신설되었다.

파발제

우편제도의 원래의 기능은 중앙의 명령을 지방에 하달하는 통신수단이었고 이에 대하여 관원의 사행을 뒷받침하거나 세미와 곡물을 중앙으로 이송하는 수송기능을 겸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역이 걸머진 통신기능은 위와 같이 중앙의 명령이나 보고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고 중앙정권의 존립상 가장 큰 위협의 하나였던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기능, 바꾸어 말하면 변방의 군정을 보고하는 기능은 우역과는 근본적으로 조직을 달리하는 봉수제도가 맡고 있었다.

그런데 봉수군들은 수년이나 수 십년 만에 한번 있기 어려운 책임 추궁이 두려워 온종일 언제나 긴장해 있을 수가 없었으므로 일찍부터 봉수제의 기능은 허설적인 것으로 화하여 그 사용이 극히 의문시되었다. 더욱이 임진왜란이란 큰 전란을 맞이하여 육상에서의 초전 대패 등으로 봉수제는 그 나마의 조직과 기능마저 완전히 잃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선조 30년 2월 왜적이 재차 침입하려는 무렵, 봉수제는 허구화되어 변보를 예지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걱정하면서 봉수제를 없애고 그 대신 파발을 세우거나 강화도와 같은 작은 섬에서 소규모의 대를 만들고 그 위에 간지를 세워 낮에는 기로, 밤에는 등으로 상응케 하려는 대안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와 아울러 우역제도가 맡았던 그 본질상의 통신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실정 등이 함께 작용하여 인마를 사용하되 통신기능만을 위주로 하여 새로이 나타난 시설이 파발제도였다. 파발제는 긴급한 군사정보의 통신제도로서 변경의 급보나 화급한 공문서를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봉수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자 선조 30년(1591년)에 파발제가 대두되어 중국에 파발제를 참작하여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파발마

파발은 기발과 보발로 나누어지며, 직발과 간발로 나누어졌다. 기발은 말을 타고 전달하는 것으로서 25리마다 1참을 두었으나 곳에 따라서는 20리 혹은 30리에 1참을 두기도 하였다. 기발에는 참에 발장 1명, 읍리 1명, 기발군 5명과 말 5필이 배치되었다. 보발은 빠른 걸음으로 달리는 것이었는데, 30리마다 1참을 두

었으며, 참에는 발장 1명, 군정 2명을 배치하였다. 파발의 참은 기존의 역참에 겹쳐 설치되었다. 시설 면에서는 역참의 것을 이용하면서 인마의 급보로 군사상의 급보를 전달하였던 것이다. 파발은 서발, 북발, 남발의 삼발로 조직되었다. 서발은 기발(단 간로는 보발임)로써 의주에서 한성까지 모두 41참 1,050리, 북발은 보발로서 경흥에서 한성까지 64참 2,300리였고 남발도 보발로서 동래에서 한성까지 920리였다. 파발의 조직망은 만기요감에 대동지지, 증보문묵비고, 여지도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



▲ 파발 조직망도

파발과 봉수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봉수는 경비가 덜 들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연기와 불에 의한 5거의 방법으로써만 전달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전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다. 파발은 경비가 많이 들고 전달속도가 봉수보다 늦은 결점이 있으나 문서로서 전달되기 때문에 보안이 유지되고 자세한 보고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파마의 입마자에게는 말을 가진 기병이나 보병이 충당되었다. 그러나 말은 항상 부족하여 군문의 말 혹은 역마가 보충되기도 하였다. 파발점에는 발장과 발군이 있었는데 발장은 파발참 운영의 책임을 지며 50개월을 근무하면 8품인 사과에 승진할 수 있었고 녹봉을 받고 있었다. 발근은 한난인이나 궤군·방군·정군·노잔

군 · 정사군에서 주로 충당하고 있다.

파발제는 군사, 정보의 통신기관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폐단이 뒤따르고 있었다.

첫째는 전달의 지체였다. 서발의 경우에는 중국사신 왕래에 따른 상황의 신속한 전달이 요구되었는데 그 전달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많은 외교적인 문제가 야기되었다.

둘째는 발마의 함기와 사서의 파발 이용의 성행이었다. 사서의 파발 이용은 역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선왕조 후기의 상품화폐 관계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인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제도가 사회 현실에 대응하고 있지 못함으로써 야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파발 감시의 의무를 띠고 있는 선전관이나 금군 등이 관권을 배경으로 여러 가지 행패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폐단은 특히 발군의 도산을 가져옴으로써 파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넷째는 기밀이 엄수되어야 할 공문서가 가끔 찢긴 채 전달되어 국가 기밀이 누설되는 일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폐단이 있었으나 파발제는 군사상 중요한 역할을 하여오다가 한말에 전신 · 전화시설이 가설되면서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3. 전기통신

전신의 발명

역사가였던 모스(S.F.B. Morse)는 미국 정부로부터 건설자금 3만 달러를 받아 워싱톤과 64km 떨어진 항만도시인 볼티모어 사이에 1845년 5월 24일 전신선로 가설을 완공하고 1845년 정월 초하루 전신사업 개시의 법률을 성립시킨 미 의회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식장인 의사당에서 정계 · 재계의 인사 등 여러 내빈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명자 모스 자신이 전신개업 최초의 전건을 두드렸다. 이 때 전송된 개통식 메시지는 성서 중의 한 구절인 "What hath God wrought!"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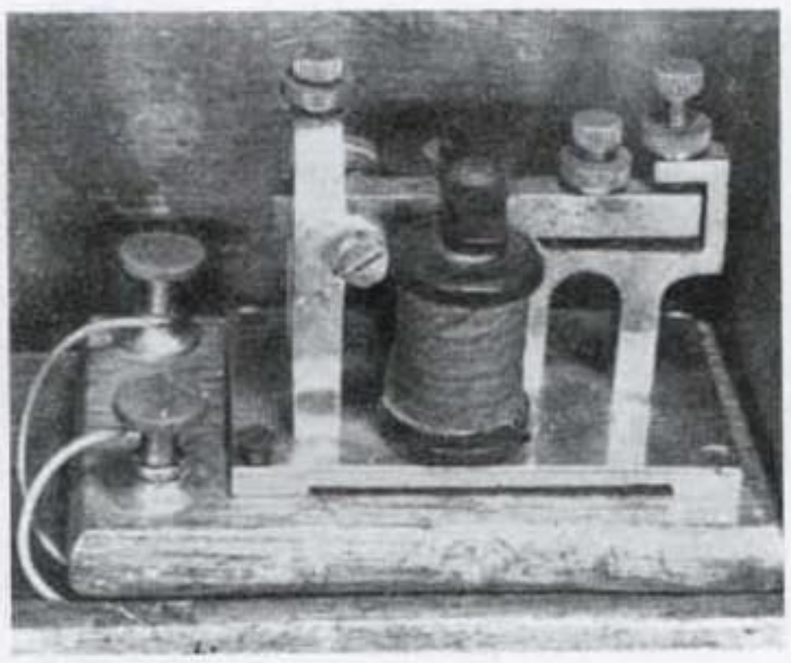

▲ 전건기

그 후 한 세기 사이에 전신, 전화, 라디오, TV 등 전기통신은 눈부신 발전을 계속하게 되었고 전화에 의한 전기통신은 오늘날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까지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모스 이전에도 유선전신의 발명이나 연구가 몇 사람의 선각자들

에 의해 행해진 바 있었다. 1787년에 스페인 사람 베단쿠르는 물체가 마찰할 때 생기는 정전기를 통해 보내는 실험을 행한 바 있었고 영국, 독일, 러시아 등 유럽 여러 나라의 학자들에 의해서도 전신의 실용화에 관해 열심히 연구되고 있었다.

1834년 영국 사람 쿠크는 5침식 지시전신기의 실용화 실험을 행했는데 이는 5개의 자침을 나란히 배치하여 전기의 강약에 따라 움직이는 침의 조합에 의해 문자를 보내는 방식이었다. 전기에 흥미가 많았던 모스는 유럽 여행 중 대서양 선박 내에서 알게된 학자로부터 전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후 연구에 몰두한 끝에 1839년 9월 뉴욕대학에서 500m의 전신선을 깔아 전자석식 전신기의 실험에 성공하기에 이르렀다. 실험에 성공한 모스는 이의 특허권을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에 팔고자 했으나 냉담한 반응이었다. 그 당시 프랑스에서는 세마포르(Semaphore)통신이 행해지고 있었고, 영국에서는 1841년에 런던과 스로우 사이에 다른 방식에 의한 전신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판매에 실패한 모스는 미국 정부와 열심히 접촉하여 정부 직영의 전신업무를 개시하는데 성공하였다. 당시의 전신기들은 시계의 문자판에 숫자 대신 A, B, C 등 알파벳 문자를 가르키게 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고 모스 전신기는 모스 부호에 의해 인간의 말을 점(·)과 선(—) 2종류의 부호만의 조합으로 바꾸어 전건을 두드리는 통신방식이었다. 따라서 일단 모스 부호로 통신하는 모스 방식은 당시로서는 매우 귀찮은 일로 여겨져 부호를 외울 필요없이 누구나 통신이 가능한 시계의 문자판 방식 쪽이 더 인기가 있었다. 발명 당시에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던 모스식 전신기는 전신이 철도의 안전운행 수단으로 발달하면서 다른 전신기를 물리치고 전신의 왕자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근거리의 정보전달에 있어서는 다른 전신방식 쪽이 쉬웠지만 점차 전신이 상업화되어 먼 곳에 많은 양의 통신문을 전송하게 됨에 따라 전류를 점(·)과 선(—)으로 두드리기만 하면 전송시킬 수 있는 모스 방식이 고장도 적고 전신선의 장거리 건설이 쉬워 단연 유리했기 때문이다.

모스 전신이 미국정부에 의해 건설되었듯이 다른 나라에서도 우선해서 국가가 전신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국가가 통치기



▲ 모스 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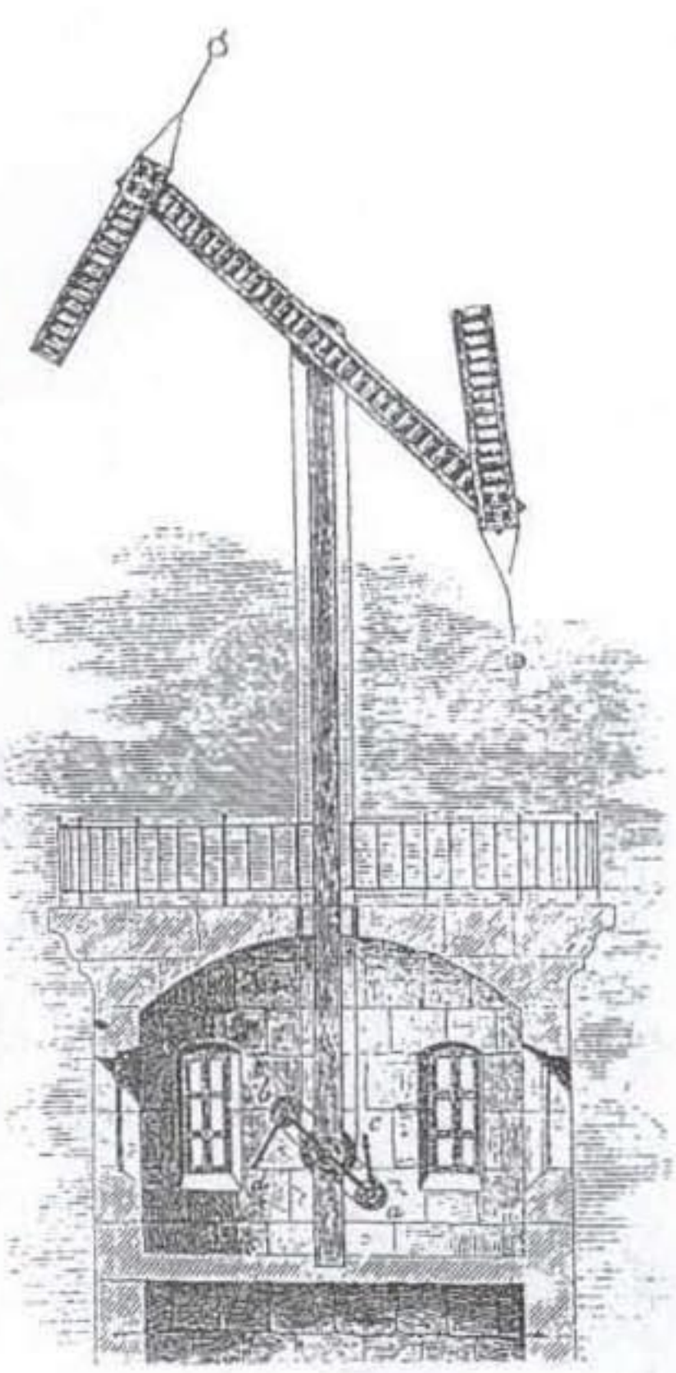

▲ 사페가 발명한 세마포르 통신은 높은 기둥에다 위아래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가름대를 붙이고 가름대 형상에 따른 통신부호를 미리 정해 두고 망원경으로 살펴서 중계하여 전달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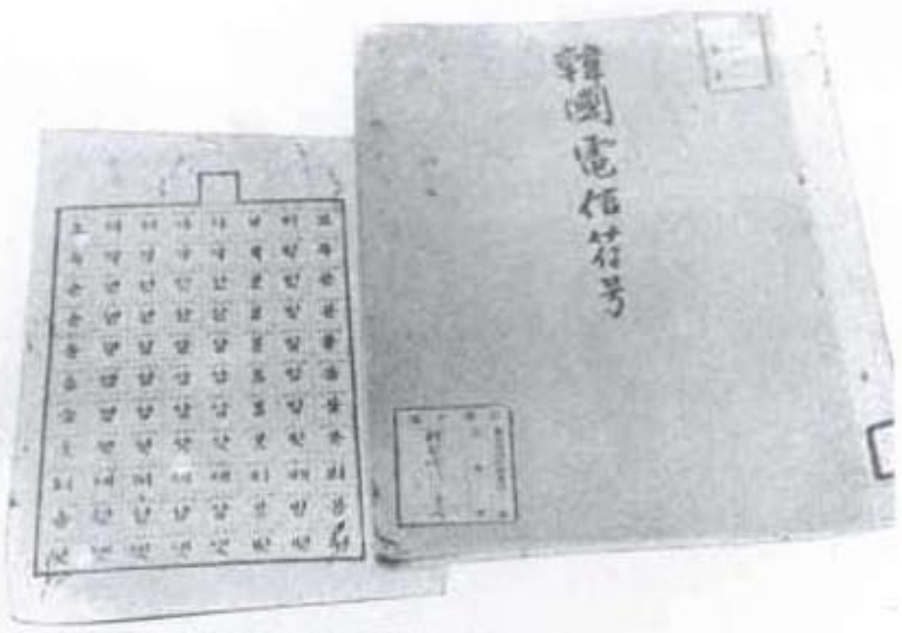

▲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전신부호표

구로써 지배를 확립, 유지하는데 있어 전신이 갖는 속보성, 즉, 나라 구석구석에서 일어난 일을 신속히 파악하고 즉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명령을 전달하는데 있어서는 최대로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모스 전신 개시 14년 전인 1830년 영국의 스티븐슨이 자신이 발명한 증기기관차를 손수 잉글랜드 북서부의 상업도시인 리퍼블 사이의 45km를 운전하여 세계 철도의 신기원을 이룩했고, 그후 철도는 산업혁명의 기수로서 유럽쪽으로 급속히 발달되어 나갔다. 전신은 철도의 보급과 더불어 철도 연선으로 확대되어 갔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각지를 연결하는 전신망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는데 1852년 영국은 전장 6,500km의 전신망을 가지게 되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1845년에, 다음해 6월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헝가리가 속속 전신선로를 완성하였고, 1852년에는 스위스, 러시아에서도 전신망이 완성되었는데 대부분이 철도용이었지만 드디어는 유럽 전체를 하나로 잇는 전신망으로 발달하기에 이르렀다.

철도 운행 수단으로서의 전신망은 1851년 영국사람 그레트에 의해 영불해협인 칼레와 도버 사이의 약 50km에 해저전선이 부설됨으로써 새로운 정보통신 수단으로 탈바꿈하게 되었고, 영국과 유럽은 정보면에서 한 몸이 되게 되어 새로운 정보산업의 발달을 촉구하게 되었다.

당시의 통신수단은 전서 비둘기가 중심이었다. 도버해협에 해저전신 케이블이 부설된 것이 알려지자 파리의 통신사에 근무하던 로이터는 직장을 그만두고 1852년에 런던으로 이사하여 영국과 유럽을 잇는 통신사를 경영하게 되었다. 전신을 중심으로 하는 로이터의 통신사는 전서 비둘기를 중심으로 하는 다른 통신사에 비해 속보성이 커져 갔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세계적 통신사인 로이터통신의 기원이 된 것이다. 미국에서도 AP통신이 전산망을 구사하여 뉴스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전신은 철도로부터 상업적인 이용에 제공되었다. 전신이나 전서 비둘기를 이용하기 전에는 시각에 의한 통신방식이 주였다. 트로이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 군대는 이러한 승전보를 산에서 산으로 횃불에 의한 릴레이 방식으로 본국에 속히 알렸다고 한다. 이와 같은 원시적인 시각통신방식은 꽤 오랫동안 사용되었고, 18세기에서부터 19세기에 걸쳐 유럽에서는 세마포르(Semaphore) 통신이 보급되기에 이르렀다. 세마포르통신방식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의 일반적인 것은 기둥이 상하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가



▲ 헤르츠 초상

름대(가름목)를 붙인 것을 탑위에 설치한 것인데, 이런 것을 수십 킬로미터에 하나씩 설치해 놓고 미리 가름대 형상에 따른 통신부호를 정해두고 망원경으로 살펴 사람의 힘으로 가름대의 형상의 변화를 중계하여 전달하는 통신방식이었다. 1790년 프랑스의 기사 사페(C. Chappe)가 세마포르라는 시각 신호를 이용한 일종의 통신기의 실용화에 성공하자 프랑스 정부는 곧바로 이 통신방식을 채용하기에 이르렀고, 1890년경에는 총 연장 4,800km에 556개의 세마포르 신호국을 가지게 되었다. 그 당시 영국, 네덜란드,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의 연합군에 밀리고 있던 프랑스 군대가 이 세마포르에 통신으로 종종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이것이 전국적인 통신 조직이 전쟁과 관련을 가지게 된 최초의 사례라 하겠다. 세마포르 통신은 안개가 낀 날이나 시계가 좋지 않아 긴급한 통신일지라도 주간에 할 수 밖에 없었기에 비능률적인 통신수단이었다. 수 백개나 되는 중계신호소를 산이나 들에 건설해야 했고, 신호의 조작을 위해서는 많은 인력을 배치해야 했으므로 경제적 부담도 컸다. 그러나 18세기에서부터 19세기에 걸친 시대로서는 비능률적이고 막대한 돈이 든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세마포르 통신이상 빠른 통신수단이 없었으므로 그 당시의 정부로서도 세마포르 통신을 유지한다는 것이 군대의 유지나 마찬가지로 국가의 통치상 필요 불가결했을 것이다. 고대의 연기나 횃불에 의한 통신이나 18세기의 세마포르통신 모두 그 통신의 범위는 육상에 한정되었지만 모스의 전신 발명과 영국의 그레트에 의한 해저케이블의 포설 성공은 육상에 한정되었던 통신을 바다를 넘나드는 전기통신의 시대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도버해협에 해저전신이 포설되고 나서 6년 후인 1857년 미국 순양함 나이애가라와 영국선박 아가멤론이 뉴펀드랜그와 아일랜드 사이에 해저케이블 포설에 나서 몇 차례의 케이블 절단사고를 만나면서 1년여에 걸쳐 케이블 포설에 성공했으나 송신장치에 이상이 생겨 8년이란 세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대서양 횡단 해저전신에 성공을 보았다. 즉, 1865년에 드디어 인류의 통신능력이 유럽과 미국 대륙을 직접 연결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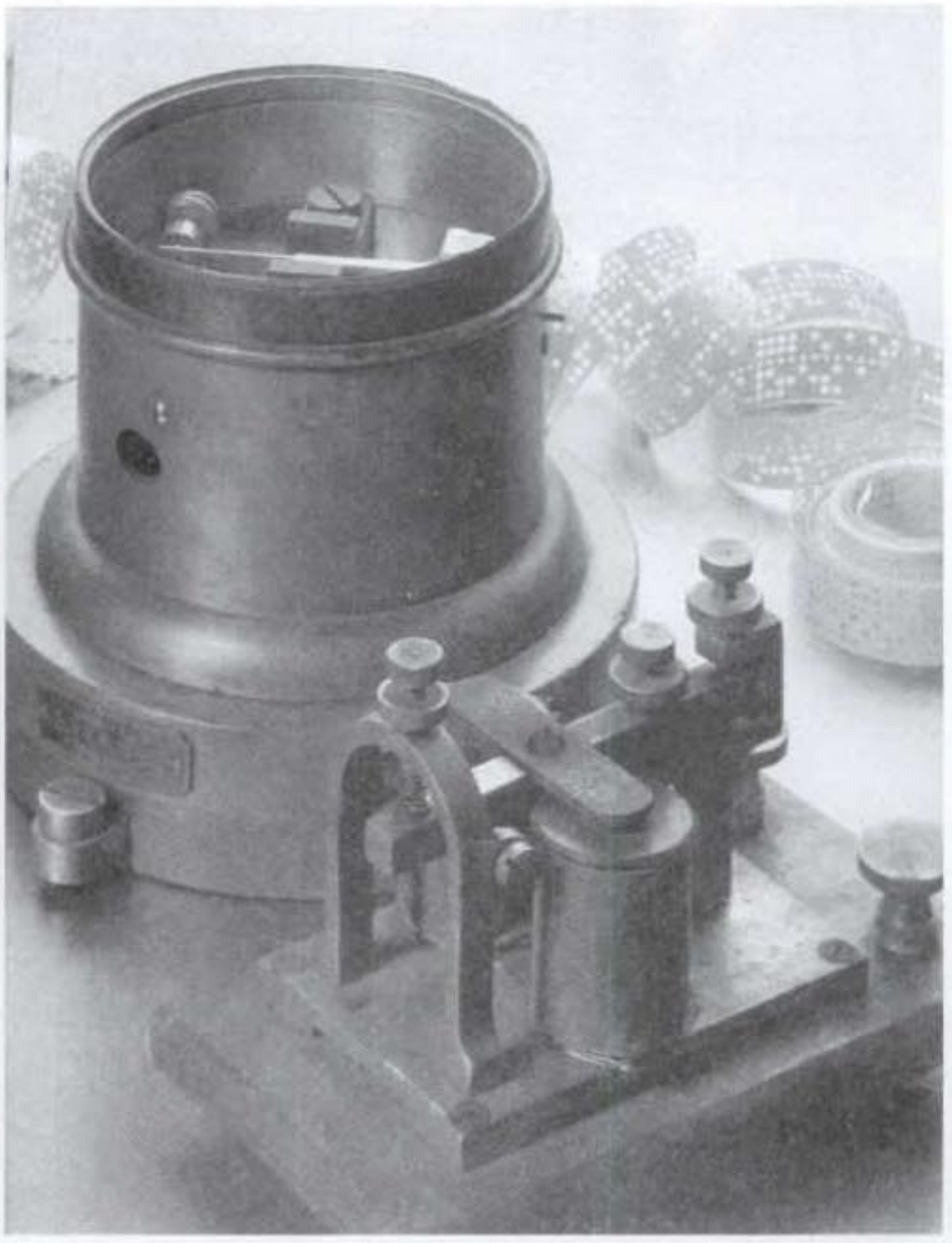

▲ 초창기의 음향기와 계전기

4. 무선통신

1864년 물리학자 맥스웰은 전자기장의 수학적인 이론을 통해 전파의 존재를 예언하였고, 1871년에는 빛의 파동설을 제창하였다. 그 후 전파가 공간을 통해 전달된다는 그의 이론은 1888년 독일의 물리학자 헤르츠가 실험으로 증명하였고, 1895년에는 마르코니에 의해 무선통신에 이용되게 되었다.

전파에 의한 무선통신의 가능성을 입증해 보인 마르코니의 발견에 대해 당시 해상권을 쥐고 있던 영국이 관심을 보여 1896년 영국 브리스톨해협횡단 무선전신 실험에 이어 1899년에는 영국해군에 무선설비가 장착되었고 이때의 무선전신 통달거리는 180Km 정도였다. 1902년에는 2,500Km 떨어진 선박과 육지와의 교신에도 성공하였고, 5년 뒤 마르코니와 영국이 합작한 '마르코니 무선전신회사' 가 대서양 횡단 무선전신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의 무선통신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대한제국의 전파실체 인식

1900년 2월 일본공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우리나라에 통보하여 왔다. "근년에 발명된 마르코니식 무선전신은 가장 편리한 전신시설로서, 특히 육상과 해상간의 통신연결에 유효한 것임은 이미 증명된 바이다. 따라서 무수한 도서를 가진 조선의 연안에 무선을 설치해야 하며, 그것은 개항이래 조선과의 무역증가로 출입이 잦은 일본선박의 안전에도 크게 편리한 바이다. 그러므로 일본정부는 부산의 절영도를 비롯한 19개소에 무선국을 설치하고자 하니, 귀국 정부는 그 토지 사용권 등 항해자의 권리를 도모한다는 견지에서 승인해 주기 바란다".

이런 무례한 요구에 대해 당시 농공상부의 통신을 관장하고 있던 관아에서는 "새로 발명된 무선전신이 통신상 편리한 신법임을 이미 잘 알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이를 설치할 예정이므로 응낙할 수 없다" 라고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당시의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1900년경 우리 정부나 관계기술진 사이에서는 이미 무선전신의 실체를 인식하고 한 걸음 나아가 설치할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한제국 정부에서 무선국설치 거부의사를 표명한 후 1년이 지난 1901년 4월 일본은 또다시 무선전신교환소설치권 등과 함께 여러 가지 통신가설 특권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정부는 또 일언지하에 거절하였고, 5월 13일 3차의 요청이 있

었으나 즉시 반려하였다.

일본은 그 후에도 누차에 걸쳐 우리나라 연해 각 항구에 무선전신과 해저전신 가설권을 요하여 왔으나 우리 정부는 번번히 거절하다가 1901년 12월 29일에 이르러 일본의 요구를 수락하게 되었다. 당시 황성신문 광무5년 12월 29일자 갑보 양전허일란에 "일본이 연해가설선로를 누차 요청하였는바, 그때마다 장차 부설할 계획이므로 허가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으나 본국전선의 연접하는 일은 우리 정부에서 할 것이지만 무선전신과 연해전신은 경비관계로 우리 정부가 못하고 일본 정부에 허가토록 하였다" 라고 보도하고 있다. 청 · 일전쟁 이후 일본의 압력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것이지만, 여러 번 거절한 후에 허락하였다는 점과 특히 러시아의 전신이 연접된 직후(12월 28일)에 허락하였다는 점은 러시아는 연접해주면서 일본의 요구만 거부할 수 없다는 국제적 형평성이라는 논리에 의해 거절의 명분을 상실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당시 일본이 요구한 19개 해안국 설치지점은 원산, 부산, 거제, 마산, 남해, 목포, 인천, 진남포 등 전국적인 규모였다. 실제로 가설된 시기는 분명치 않지만 1904년 거문도등대에서 무선전신에 운영되어 1905년 대한해협에서 벌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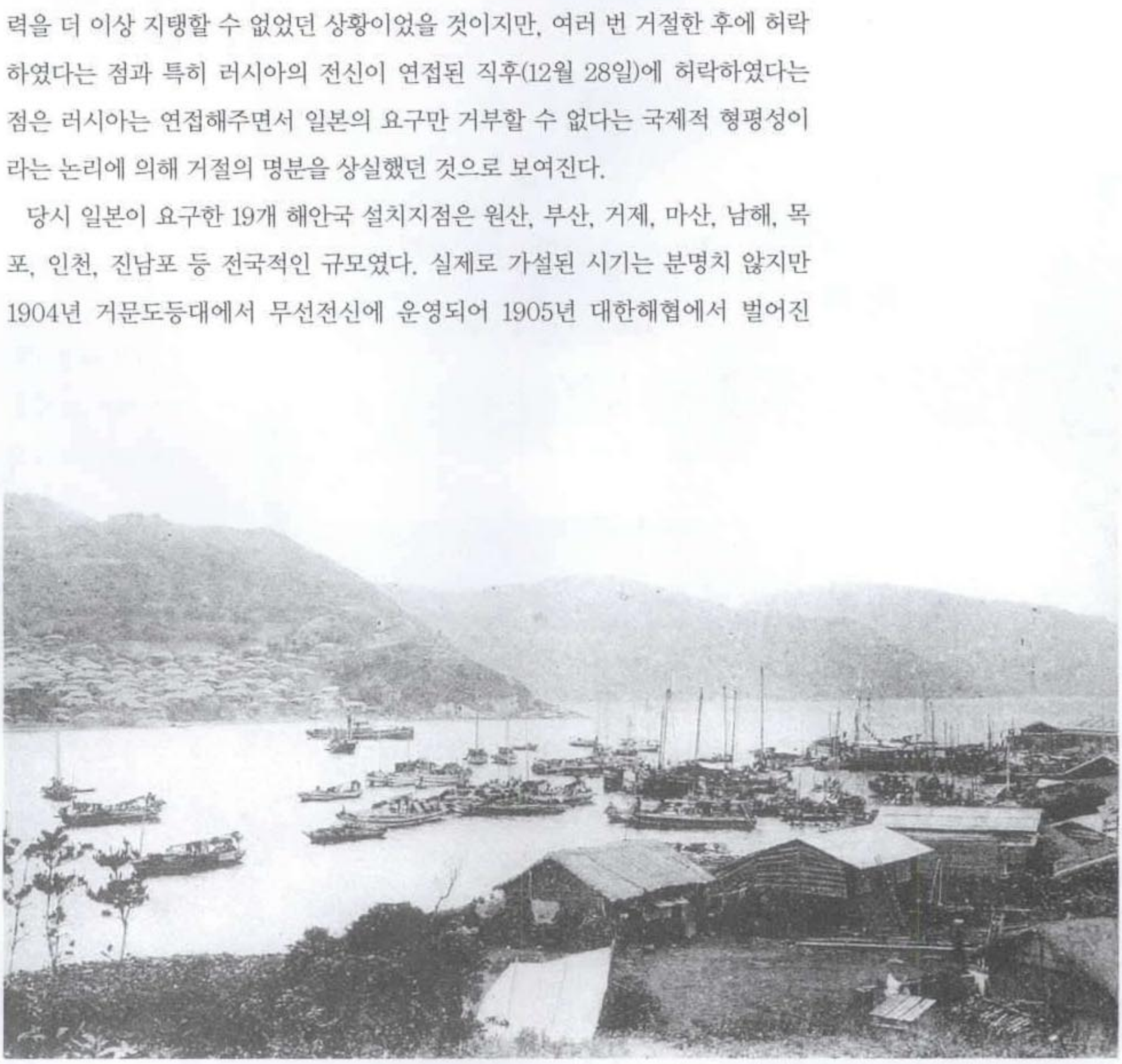

▲ 1904년 노 · 일 전쟁 당시 무선전신이 운영되었던 거문도 전경(1920년대 사진)

노 · 일 해전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일본측 기록이 있기 때문에, 노 · 일 전쟁 전까지는 적어도 몇 곳에는 해안중계소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 월미도 무선해안국 설치

1902년 대한제국 정부는 인천 해관내에 등대국을 설치하고 동년 5월 소월미도 · 팔미도 · 북장자도 및 백암 등에 등대건설을 착수하여 1903년 6월에 점등을 개시하였다.

당시 일본에 연해 각 항구의 무선국허가를 해 준 날이 1901년 12월 29일이고, 여기에 인천과 풍도 부근이 포함되어 있으나, 무선전신 설치에 관한 상세한 날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노 · 일 전쟁 당시 일본이 시설한 무선시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나라 최초의 무선통신 공식기록은 1910년 9월 5일 이전이 분명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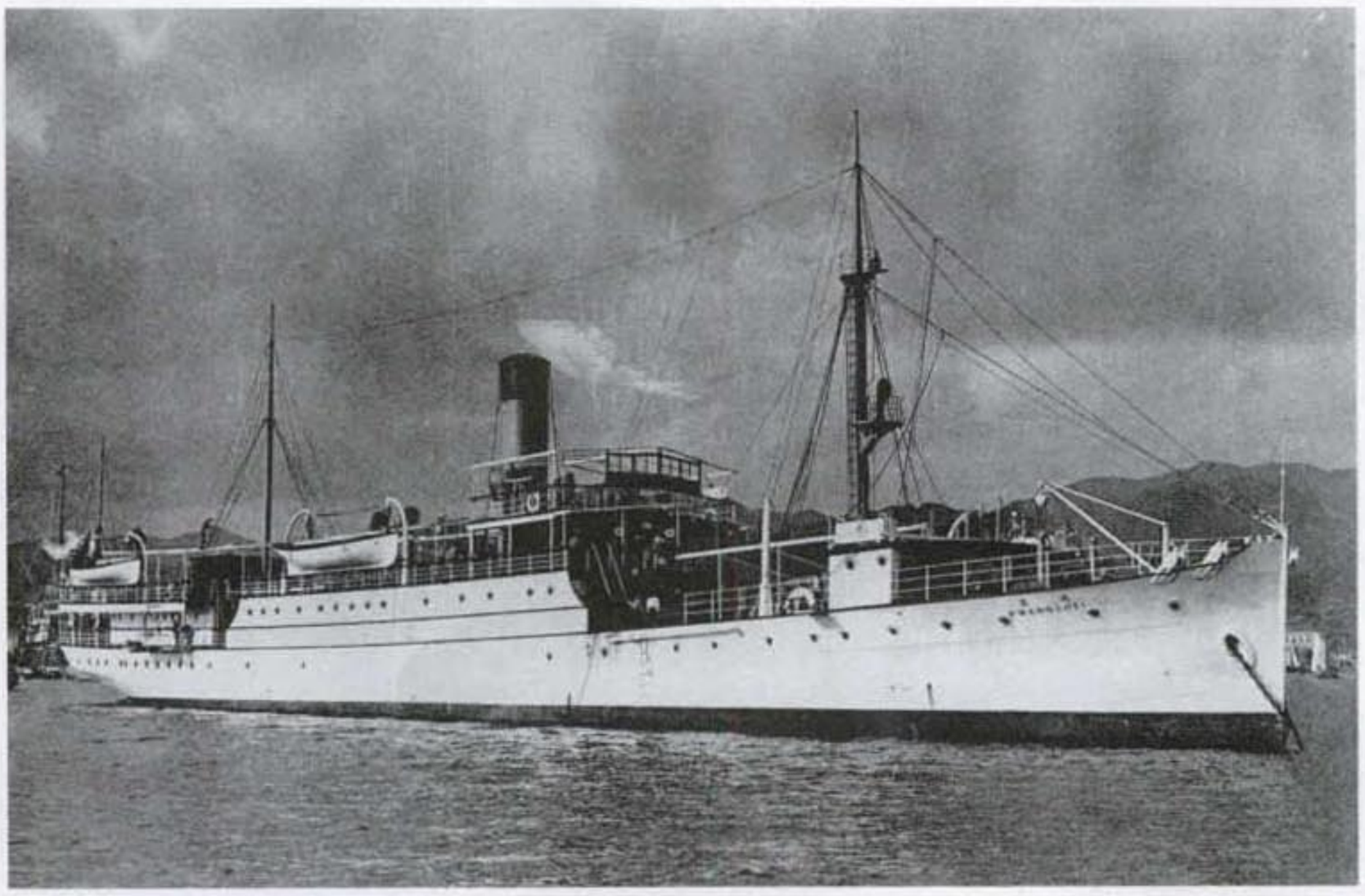

▲ 광제호

광제호 주요제원

1904년 2월 20일 한국 정부에 인도

- ○선박명 : 光濟號
- ○선 종 : 등대순시선
- ○주문주 : 한국정부
- ○총톤수 : 1056톤
- ○재하중량 : 540톤
- ○길이×폭×깊이 : 220′×30′×21′
- ○흘수 : 14′-6′
- ○속력 : 14,773해리/시간
- ○주기관종류 · 수 : R-Tri2
- ○보조기관 종류 · 수 : Scotch2
- ○제조번호 · 선대 : 248北洪M
- ○진수년월일 : 1904년 6월 15일
- ○인도년월일 : 1904년 12월 20일

○ 선박이동국 광제호

선박 이동국인 경우에도 일본(조선총독부)의 기록보다는 좀더 앞선 시기에 시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제호는 대한제국 정부의 발주에 의해 일본 가와사끼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1904년 6월 15일 진수된 후 자체시운전을 거쳐 1904년 12월 20일 대한제국 정부에 인도된 1,056톤의 선박으로서 등대순시용으로 건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등대순시목적 외 군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신조 군함이다. 대륙침략이라는 일본의 속셈과 거함거포 소유가 숙원사업이든 대한제국 정부의 동상이몽격 묵시적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광제호는 1904년 6월 15일 일본 가와사끼조선소에서 진수되어 대한제국 정부에 인도되기 전 자체 시운전시 촬영한 광제호 사진을 판독하면 선수와 선미 마스터 사이에 선박용 무선통신안테나인 더블렛트 2기가 선명하게 보인다. 내부의 무선국시설에 관한 제원은 알 수 없으나 외부의 안테나 시설로 보아 1910년 9월 5일 광제호에 무선국 시설을 했다는 일본의 기록보다 무려 5년 이상 앞서 1904년 12월 20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전파통신 행하여 졌다고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고 당시 일본군함과 통신을 목적으로 1903년 6월경에 월미도 등대에 무선통신소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광제호와 인천 월미도 등대 무선통신소간 전파통신이 행하여 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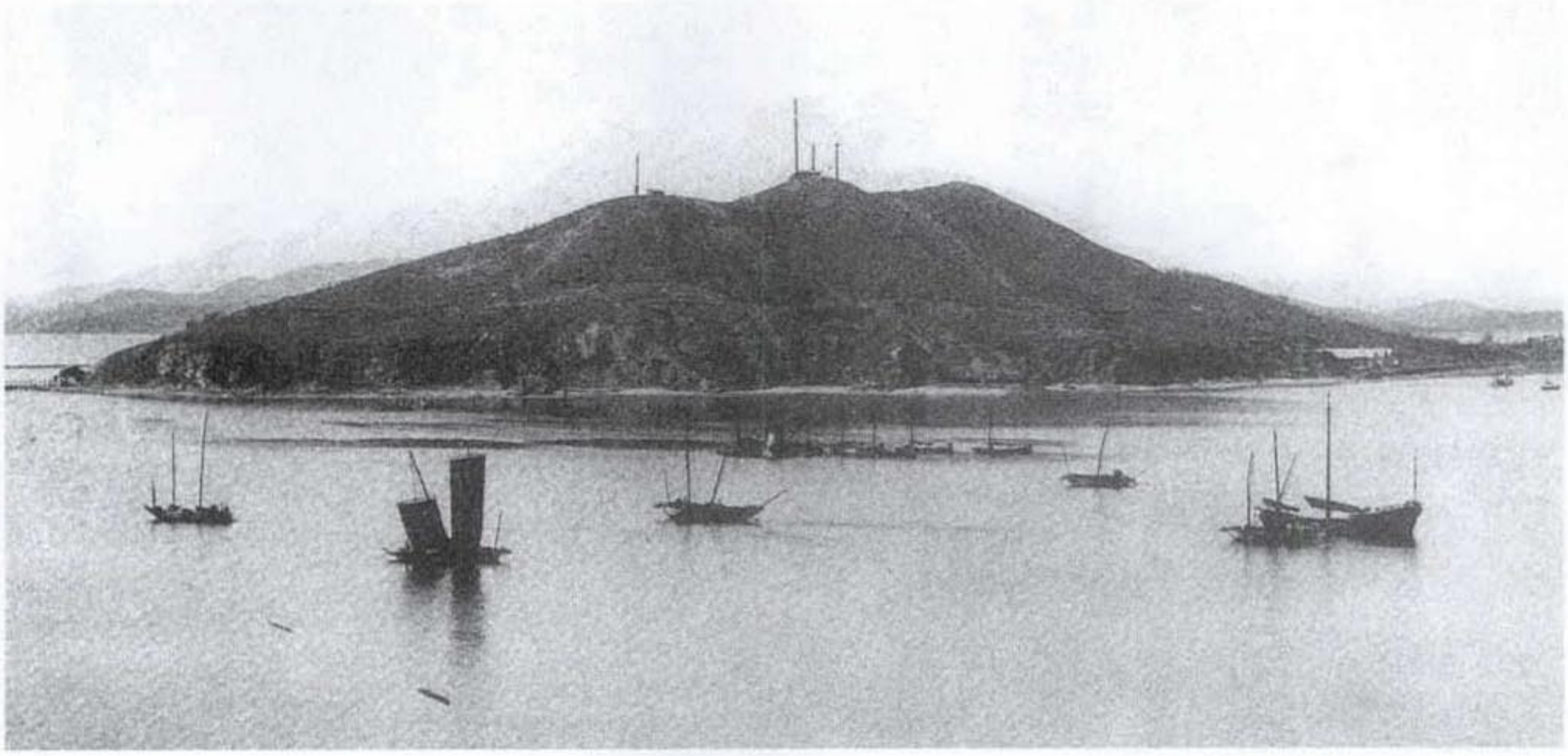

▲ 1903년 무선통신소가 운영되었던 월미도 전경

2. 新造船部門

(1) 商　　船

商船の受注は，当時のわが国海軍界の情勢を反映し，日本郵船・大阪商船等からの貨客船受注が多く，その総受注量は37隻（13万G.T.）に及んだ。

株式会社に改組したのちの第1船「伊予丸」（727G.T.）は，わが国における造船奨励法適用の第1船として，明治30年（1897）10月進水した。またこの年，1,000G.T.以上の船として初めて大阪商船の貨客船「大元丸」を受注したが，その後の新造船はしだいに大型化して，明治末年には日本郵船の「鹿島丸」・「八阪丸」など10,000G.T.級の貨客船を受注するまでにな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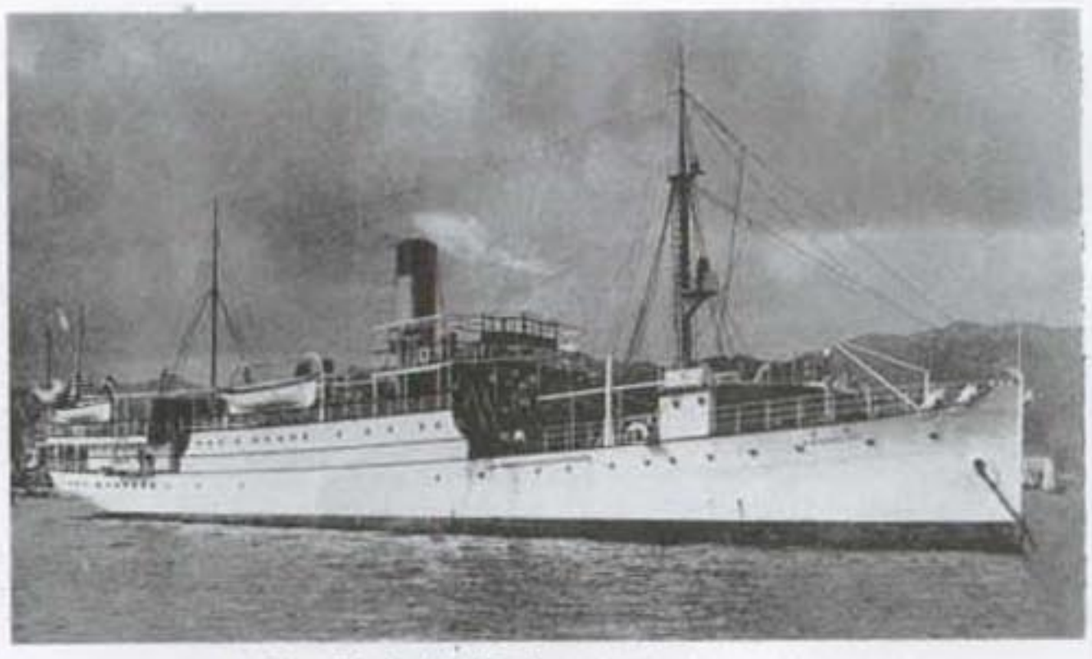

韓国灯台巡視船「光済」（明治37年）

明治34年（1901）には上海税関の灯台巡視船「流星」を受注し，ついで同36年には韓国税関の灯台巡視船「光済」を，翌年シャム国

▲▼ 광제호 관련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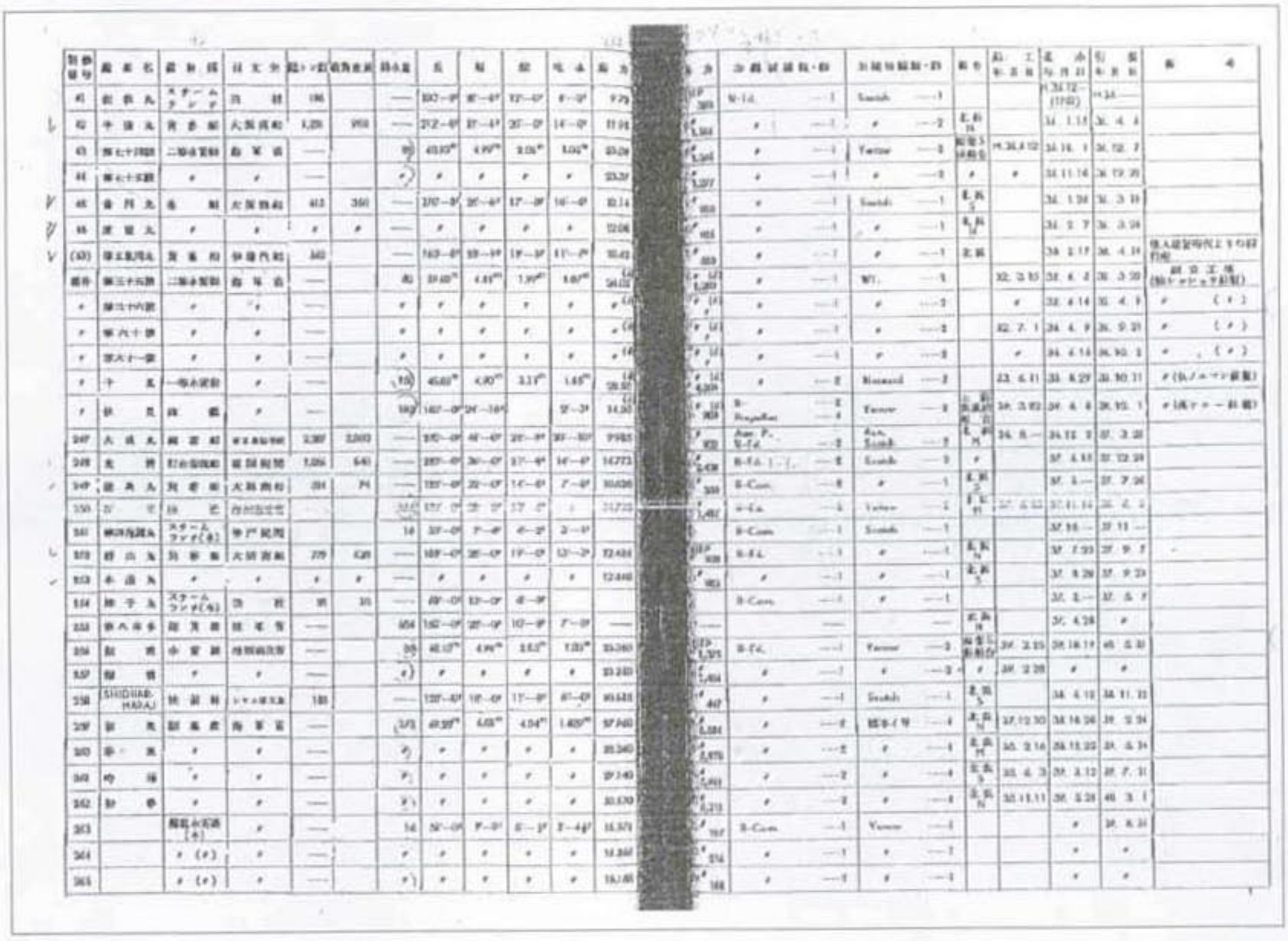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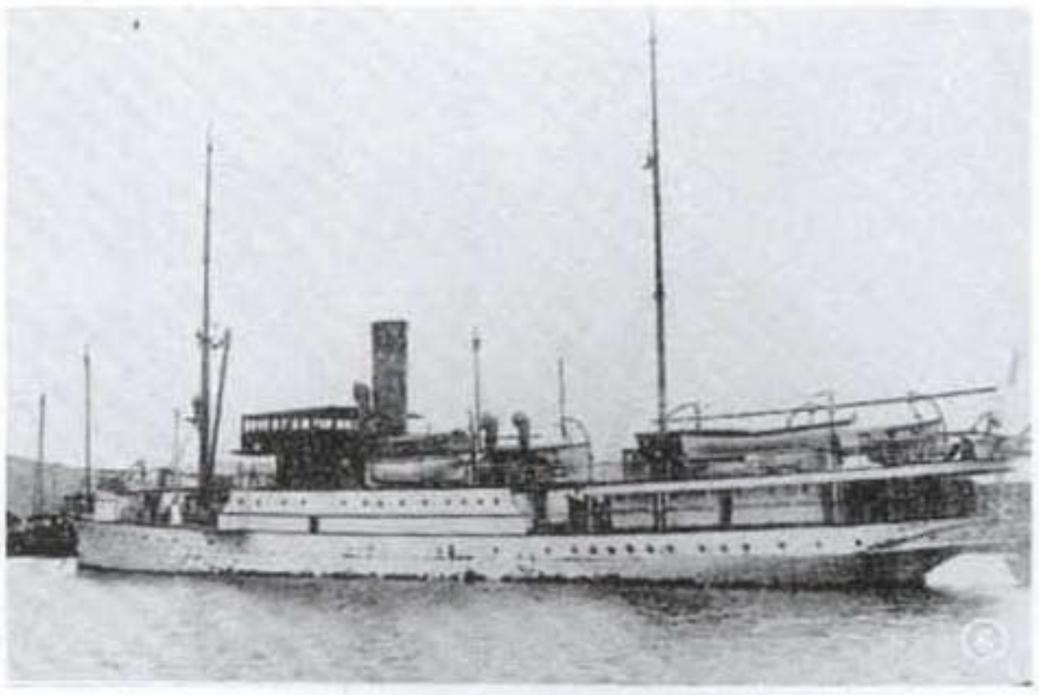

▶ 운항중인 광제호의 모습

年	月	日	当社主要事項
明治35(1902)	5	—	構内北浜埋立地2,593.5坪当社所有に帰属
	6	2	第1乾ドック略ぼ完成、開業式を兼ね仮竣工式を挙行
	〃	〃	日本郵船の「三河丸」、修理のため第1乾ドックに入渠（入渠第1船）
	〃	7	No. 36 韓国上海税関の灯台巡視船「孤星」進水（当社建出第1船）
	7	23	社長 松方幸次郎、工業視察のため欧米へ出張（明治36.1.22帰国）
	9	25	No. 35 大阪商船の貨客船「京都丸」進水
	10	—	構内南浜2,378.46坪の埋立を完了
	〃	—	東川崎町2丁目浜地、内務省用地2,000.4坪を山本通3丁目社有地2,500坪と交換し工場敷地に充当
	11	—	第1乾ドック竣工、長 450 ft（137.06 m） 幅 61 ft（18.59 m） 深 27 ft（8.23 m） 許容能力 6,000 G.T.（明治29.11.28起工 総工費 170万円）
	12	13	No. 38 日本郵船の貨客船「諏訪丸」進水
	〃	31	副社長川崎芳太郎、揚子江航路視察のため清国へ出張（明治36.2.25帰国）
	〃	—	吉原式水管汽缶（遠洋艦「鞍立」用）8基製作 ○東京事務連絡所を野津 道貫の私宅に設置（現東京支店）
明治36(1903)	1	15	No. 42 大阪商船の貨客船「平壌丸」進水
	〃	26	No. 45 大阪商船の客船「香川丸」進水
	2	7	No. 46 〃 〃 「愛媛丸」 〃
	4	10	神戸港にて大観艦式挙行の際、伏見北条氏静子妃を臨艦遊
	5	1	第5回内国勧業博覧会（大阪）へ当社の水管缶および乾ドック模型を出品
	6	22	露国クロパトキン陸相来社
	7	1	第5回内国勧業博覧会（大阪）にて、造船・鉄鋼の諸事業および工員養成などの功により名誉金牌を受領
	9	17	定款中の営業種目に「鉄鋼・海難救助および曳船」を追加
	〃	—	仏国汽船「安京」の火災救助費請求提訴
	10	1	No. 43 二等水雷艇「第七十四號」進水
	〃	20	副社長川崎芳太郎、シャム国へ出張（明治37.3.7帰国）
	11	10	No. 44 二等水雷艇「第七十五號」進水
	12	2	No. 247 東京商船学校の練習船「大成丸」進水
	〃	30	No. 39 一等水雷艇「鵯（ひよどり）」進水
明治37(1904)	2	29	No. 40 一等水雷艇「鴻（おおとり）」進水
	〃	—	広島築宇品に臨時出張所（第3回目）を設置（所長 安部正也 派遣員 職員10人 工員200人）
	6	1	社長 松方幸次郎、工業視察のため米国へ出張（出張期間70日）
	〃	15	定款中の営業種目に「潜水業者救助」を追加
	〃	〃	広島市国泰寺に広島製氷部を設置
	〃	〃	No. 245 韓国税関の灯台巡視船「光濟」進水
	7	5	ホーランド型改良潜水艇「第6」・「第7」の建造を受注（わが国における最初の潜水艇建造）その造にあたり万全を期するため米人技師ら（5名）を招聘
	〃	22	伊藤博文侯爵 来社
	〃	25	No. 252 大阪商船の貨客船「静山丸」進水
	8	20	No. 268 〃 〃 「木浦丸」 〃
	11	16	No. 250 清国南京省の砲艦「江元」進水 ○構内北浜埋立地2,819坪の埋立を完了

▲ 1904년 6월 15일에 광제호가 진수되었다는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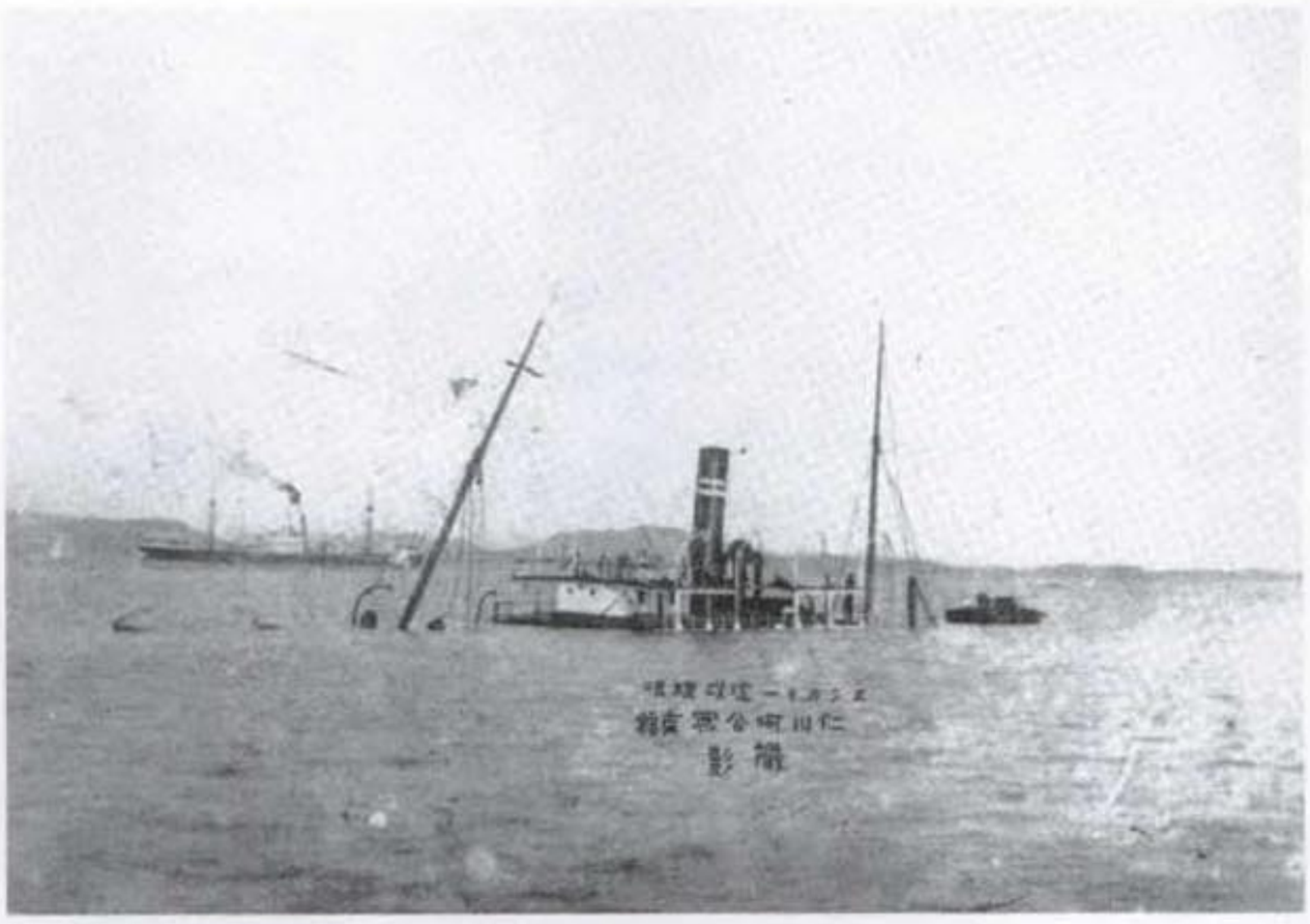

▲ 노 · 일 전쟁으로 일본해군의 공격을 받고 침몰 중인 러시아 해군함정

○ 거문도 무선중계소 설치와 노 · 일 전쟁

1905년 대한해협 근해에서 벌어진 노 · 일 전쟁은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사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해전이었다. 당시 일본해군 함정에 무선설비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일본까지 직통으로 연결하는 것 보다 한국해안 어디엔가에는 해안무선국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유리했을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누가 설치했던 이미 이 땅에 무선설비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1905년 4월 러시아 발틱함대는 인도차이나 캄란 만에 도착하게 되지만, 이미 여순항의 극동함대는 일본에게 함락당한 후여서 발틱함대는 블라디보스토크로 밖에 갈곳이 없었고 병사들의 사기는 떨어져 있었다. 그나마 어떤 방식으로든 러시아해군함대는 대한해협을 지나야만 했다. 전열을 가다듬은 러시아의 발틱함대는 불필요한 보조함선은 상하이로 들여 보낸 후, 5월 14일 블라디보스토크항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했고, 1905년 5월 27일 총38척의 러시아함대가 대한해협으로 들어섰다. 발틱함대 로제스트벤스키 사령관은 함대최선봉에서 항해하는 수바로프호에 타고 발틱함대를 종렬진으로 편성하여 지휘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의 해군제독 도오고 헤이하찌로는 진해에서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대기하고 있었다. 1905년 5월 27일 04시 5분 어선으로 위장하고 대한해협을 순시중이던 일본함선 '신농환' 으로부터 "적함 발견!"이라는 무전이 날아오면서 일본해군은 즉각 전투준비에 돌입하여 발틱함대를 기다렸고, 정오 무렵 러시아와 일본의 주력해군은 오끼노섬 부근에서 만나면서 세기적 해전이 시작되었다. 발틱함대는 울릉도 부근에서 모두 침몰되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귀환한 함정은 겨우 3척이었다. 여기에서 "적함 발견!"이라는 무선전보가 중계된 곳은 거문도 무선중계소이다. (지금도 거문도 주민의 증언을 들어보면 거문도 등대(공식명칭:거문도항로표지소)가 있는 수얼산 정상(무선중계소가 있던 자리)에 상당히 큰 철탑이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언제 이곳에 무선중계소가 설치되었는가 하는 일이다. 정부 기록물에는 거문도 무선중계소를 허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다만 1902년 경인간 전화가설을 요구할 때 각 연안 항에 무선시설 설치를 요구하였는데 이때에 거문도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때 우리 정부는 허락하지 않았으며, 일본해군의 군용시설이므로 승인 없이 불법으로 가설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일본의 기록으로 보아 1905년 5월 27일은 이 땅에서 전파가 사용된 가장 확실한 최초의 기록이다.

제 2 절 감시업무의 태동

1. 대한제국 무선통신

우리나라에서 무선통신은 일본 체신성 소속의 해안국을 매개로 하여 선박국에 발착하는 일본 및 기타 외국과의 무선전보를 대한제국내의 각 전신국소에서 취급한 것이 처음이다. 일본과는 1908년 5월 5일 이후에 그 밖의 외국과는 같은 해 6월 이후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무선전신 시설은 1910년 9월 대한제국 정부에서 월미도 무선전신소와 항로표시 시찰 및 세관감시선인 탁지부 소속의 광제호에 장치한 것이 그 효시였다.

이에 앞서 노 · 일전쟁을 계기로 우리 나라 영토 내에 일본 육해군이 군용으로 시설한 무선설비가 있기는 하였으나 정부통신기관이 정식으로 기획 · 설치한 것으로는 이것이 최초다. 대한제국 정부는 1881년 군비강화책으로 공채를 모집하면서까지 추진하였던 군함 도입계획이 좌절되자 1902년 말경 당시 한국해관 총세무사 브라운의 권유에 따라 도입한 군함이 양무호였으나 운영에 곤란을 겪게 되자 새로운 조선발주를 계획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여 신조된 배가 광제호인데 명목상 등대순시 및 보급을 목적으로 일본의 가와사끼 조선소에서 건조 1904년 6월 15일 진수하여 시운전을 끝낸 것이다. 그후 1904년 12월 20일 대한제국 정



▲ 1910년의 월미도 무선시설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



▲ 大韓帝國의 通信關係 書册과 資料(閔商鎬 遺品)

부에 인도한 이 배는 총 톤수 1,056톤급 선박이었다. 정부는 광제호가 인천항에 도착하자 3인치 포 3문을 장착하여 해안경비함, 등대순시선 및 세관감시선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였다. 1910년 6월 대한제국에서는 예비비 3만원을 지출하여 월미도(인천), 항문도, 목포(전라남도), 소청도(서해), 원산 등의 해안국과 광제호에 무선설비를 장착하려는 계획에 의하여 월미도와 당시로서는 최신설비를 장치한 광제호에 1910년 8월 15일 무선설비공사를 착공하여 1910년 9월 5일 완공하였다. 그 밖의 것은 일본해군이 1910년 9월부터 1911년 2월 사이에 시설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최초의 무선시설은 대한제국 정부 스스로의 계획과 경비로서 이룩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 무선시설의 계획이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제가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한일합방 직전에 이룩되었다는 점과 일본 정부의 권고에 의하여 일본인 기술자를 초빙할 계획을 하였다는 점, 그리고 한일합병으로 착공되지 못하였던 인천 월미도, 목포, 소청도, 항문도 등의 무선시설을 1910년 9월부터 1911년 2월까지 일본해군이 맡아서 준공하여 1898년 이래 일제가 대륙 진출의 군사, 경제적 근거지로 삼았던 중국의 대련항의 항로와 연결하였다는 점들을 감안하여 보면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었을 뿐 그 실체는 한국과 만주침략에 급급했던 일제가 제국주의 침략의 주요수단이 되는 선박의 항해안전을 도모하고자 기획 · 설치한 것으로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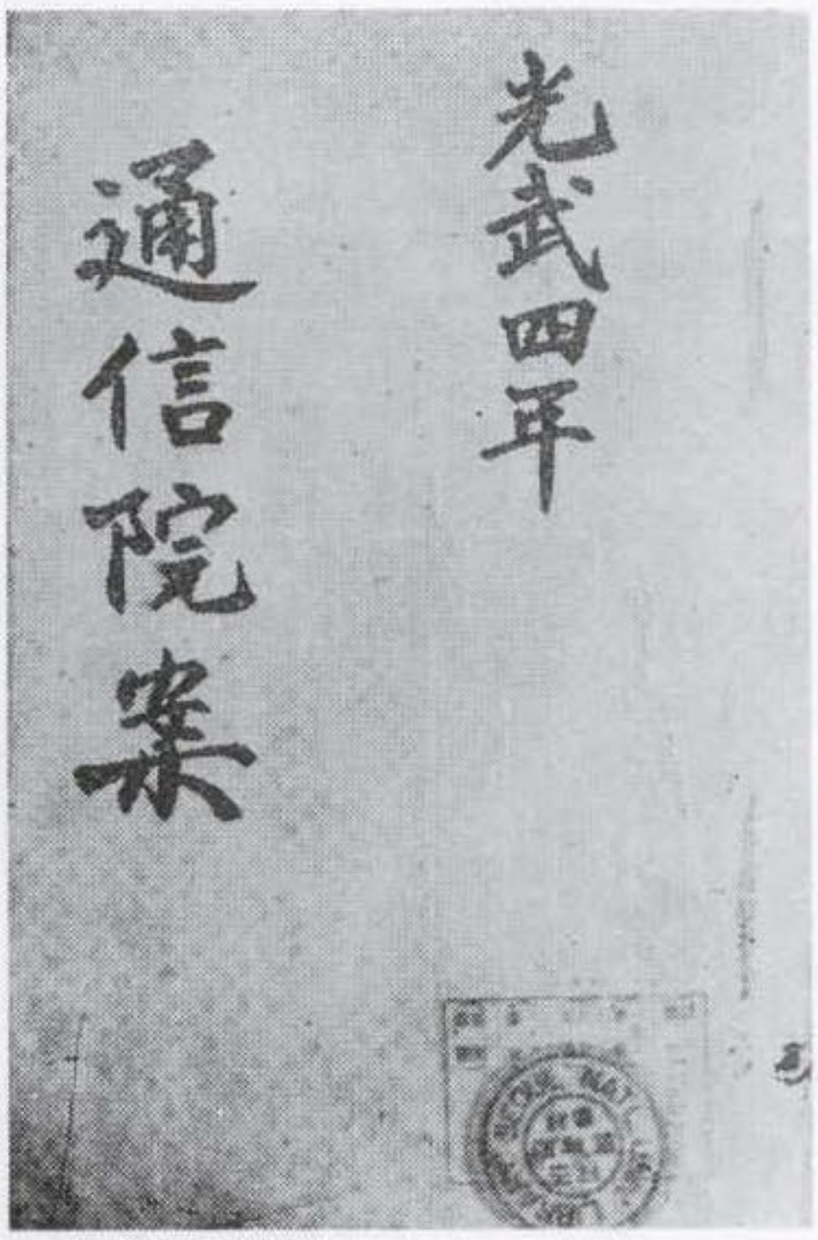

▲ 통신원안 표지(광무 4년)

월미도 무선시설은 황해를 항해하는 중국의 대련까지의 중계국이고 기타 무선시설은 기상관측, 등대통신, 해안경비, 해난구조 등의 특수업무에 사용되었을 뿐 일반 공중통신업무는 취급하지 않았다. 월미도와 광제호의 무선시설은 상호간의 통신 외에 일본함선에 발착하는 관보만을 중계하였고 일본해군의 함선에 발수하는 전보에 대하여는 월미도 등대무선소에서 인천우편국과 연락전화에 의하여 취급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다 1926년에 경성무선전신국이 확장되면서 월미도 등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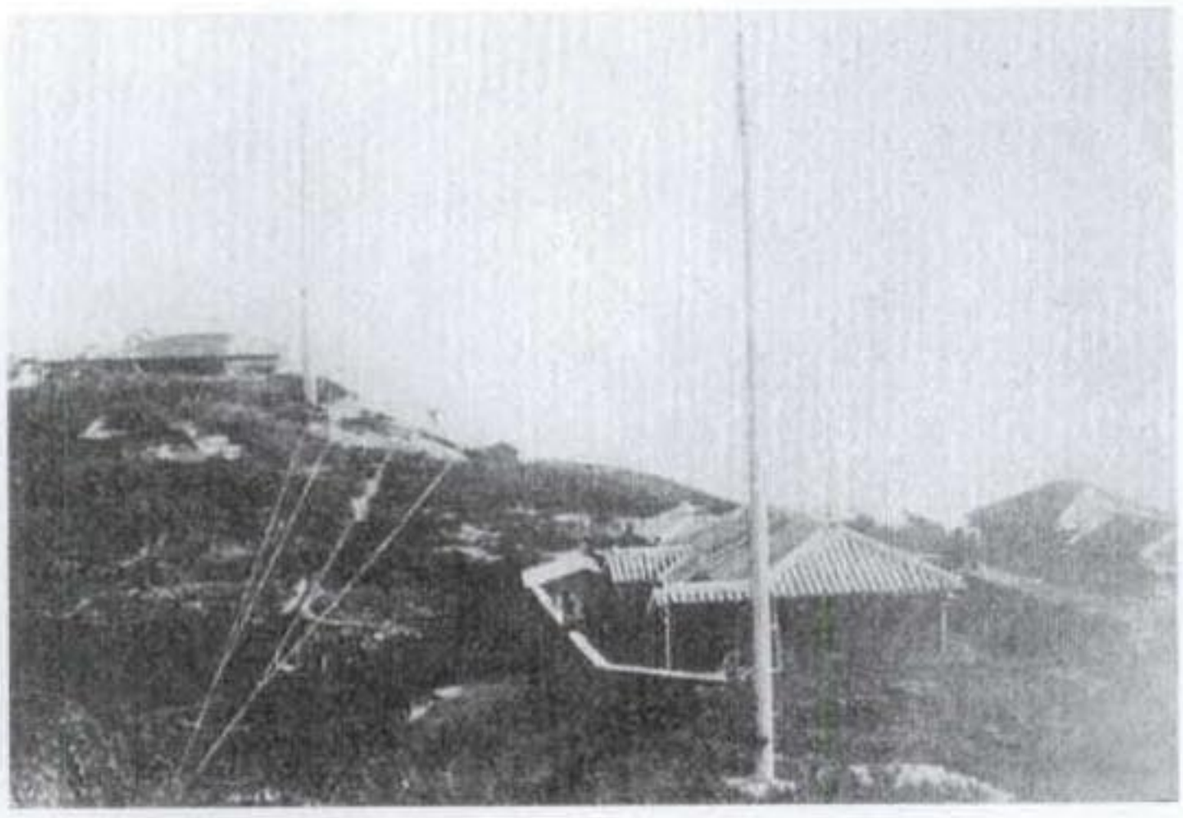

▲ 1910년 당시 월미도 무선국 전경

무선소는 그 업무를 경성무선국에 인계하고 폐지되었다. 일본해군의 월미도 무선전신소는 처음 대한제국 정부의 포대자리에 설치되었고 폐지 후에는 안테나와 국사만이 월미도 산정에 남아 있었으나 1932년 봄에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고 말았다.

무선시설은 일본의 대륙침략이 활발해 짐에 따라 경성, 목포, 제주, 부산, 청진, 원산, 나진 무선국 등이 건설되었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체제를 급속히 확립시켜 나갔다. 식량증식계획(1920~1934년)을 세워 한반도를 식량공급 기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세제도를 철폐(1920년)하여 독점적인 상품시장을 강화하였고 회사령을 제정(1920년)하여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경기를 지속시키기 위한 투자 시장화를 획책하였다. 이와 같은 급격한 정책의 전환으로 많은 일본의 상사와 회사가 한반도에 진출함에 따라 종래의 통신시설로는 통신량의 증가를 감당할 수 없었다. 1919년 3·1 독립운동으로 그 당시의 통신시설이 크게 파괴되어 총독부는 유선시설을 확장하는 한편 1922년 3월에 체결된 산동철병협약으로 일본의 시베리아 출정군과 직접통신이 불필요하게 되자 경성육군무선전신소를 1923년 3월 31일 육군측으로부터 인계 받아 동년 4월 1일부터 경성우편국 용산전신분실로 개편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최초로 일반공중무선전신사무를 취급하였다. 공식개국에 앞서 1922년 12월 1일부터 그들은 육군과 협조하여 대일 공중전보를 취급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의 급박한 사정을 여실히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일제는 모든 무선전신 및 무선전화에 의한 공중통신사업을 총독부의 관장 하에 두었다. 이는 통신사업을 총독부에서 경영한다는 대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무선통신이 지니는 특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통신소통과 시설운영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공중통신을 주목적으로 하는 체신당국의 시설과 군용통신시설을 제외한 모든 무선시설 즉, 특정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비 정부 전용통신시설은 시설에 앞서 체신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하였고 체신당국에서 규정한 설비와 통신종사자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만 하였다. 그리고 체신당국은 희소한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혼신방



▲ 1900년도 부산항의 모습

지 및 불온전파의 근절 등을 위하여 비 정부 무선시설은 전용통신시설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비 정부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그 시설을 허가하도록 하였다.

○ 항해의 안전에 대비할 목적으로 선박 및 항공기에 시설하는 경우

○ 동일인의 지정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 상호간에 그 사업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경우

○ 시설자와 전신관서와의 전보송수에 전용할 목적으로 전신 · 전화 · 무선전신전화에 의한 공중통신의 연락이 없는 육지 또는 선박 및 항공기에 시설하는 경우

○ 전신 · 전화 · 무선전신전화에 의한 공중통신의 연락이 없으나 전항의 규정에 의함이 부적당한 육지 또는 선박 및 항공기간에 동일인의 특정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육지 또는 선박 및 항공기에 시설하는 경우

○ 무선전신 또는 무선전화에 관한 실험에 전용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경우 이것은 무선전신화의 학술적 연구 또는 기기에 관한 실험에 공여하는 데 한하였다.

○ 이상의 각 항 이외에 주무대신(체신국장)이 특별히 시설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와 같은 전용통신 시설은 사설무선전신 · 무선전화, 관청용 무선전신 · 무선전화, 방송용 사설무선전화로 구분되어 각각 그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또한 1930년 1월 1일 무선전신법을 개정하여 전파통제 및 통신단속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무선통신의 보호를 위하여 고주파전류를 사용하는 시설을 규율하는

제도가 확립되었다. 또한 이 개정으로 공안을 방해하거나 풍속을 문란케 하는 무선통신의 제한, 무선시설에 대한 임시검사, 고주파이용설비에 대한 규제, 무료통신의 확대 등이 시행되었다.

2. 일제시대 전파감시

당시의 전파통제업무는 무선전신법의 별정세칙으로 1915년에 제정 시행된 일제의 [사설무선전신전화규칙]을 준용하였다. 일제시대의 전파감시시설은 1923년 6월 경성무선전신국의 개국 당시 1차로 그 설비를 확장할 때 1927년 8월에 경성무선전신국 중앙통제소에 설치되었으나 중일전쟁을 계기로 단파 방향탐지소를 비롯한 감시용 수신기의 증설로 시설의 보충을 도모하게 되었다.

1934년 조선선박 안전령 및 동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 부산, 목포, 청진 등에 선박무선전신전화의 검사설비를 완비하고 선박무선시설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박무선 전화감시 시설을 설치하여 선박무선에 정확을 기한 바 이것이 전파감시시설의 시초이며 기원이라 하겠다.

그러나 1935년 이후로는 상기 규칙의 감독사항을 더욱 강화하여 정비 개정한 부령인 사설무선전신무선전화규칙에 의하여 수시로 검사관리를 파견하여 기기 장치 사항, 통신사의 자격 및 인원수, 운용사항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고 허가내용과 상위할 때에는 검사증서를 회수 또는 개정사항을 무선검사부에 기재 지시하였다. 시설장소에는 검사부와 통신일지를 비치 · 기록하게 하고 시설자로부터 매월 1회씩 일지초록으로 통신사의 성명과 자격 및 복무방법, 항공기 또는 선박의 항정개요, 통신의 개황, 검사 시에 지시된 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 기기의 보수 사항, 시험용 시설의 실험방법, 경과, 결과, 기타 참고사항 등을 보고 받았다.


朝鮮總督府官報 第九百七十三號
大正四年十月三十日
朝鮮總督府印刷所
○法律
御名御璽
大正四年六月十九日
內閣總理大臣 伯爵大隈重信
書信大臣 武富時敏
法律第二十六號
無線電信法

▲ 1915년 제정된 무선전신법 시행 관보

1937년 중 · 일전쟁이 일어나자 전파의 불법사용을 감시하기 위하여 전파감시업무는 더욱 강화되어 감시용수신기 증설, 단파방향탐지기에 의한 불법전파원의 탐지, 자동차에 의한 방향탐지를 꾀하였다.

한편 1942년 6월 21일부터 경기도 뒤이어 1939년에는 대륙과의 접경지역인 경흥, 경원, 남양 등지에 소규모인 감시시설을 설



▲ 인천항에 정박중인 일본군 구축함(선박 무선시설이 보인다 : 1910년대)

비하여 경찰을 보조하기도 했다. 1942년에 이르러서는 광장수신소 내에 경성 무선 통신 감시소를 설치하고 고성능의 정밀측정장비를 설비하여 본격적인 감시업무를 위한 정지 작업준비를 하였는데 당시 업무는 내용감시나 품질감시를 위한 사전준비 단계로 여겨진다.

고양군에 무선통신감시소를 신설하고 이어서 부산과 나진(후에 남진으로 옮김)에도 감시소가 설치되었고, 감시소는 1944년까지 부산, 대구, 신의주, 청진 등에도 계속 설치되었다.

또한 무선통신감시국으로 하여금 시설사용의 적부 및 전파질서에 관한 감시를 하게 하고 만일 공안을 방해 또는 풍속을 교란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통신사에 대하여 통신을 정지시키고 체형 또는 벌금형을 과하게 하였다. 해방 후 지방체신관서설치법령에 의한 전파감시국이 신설되기 10년 전에 일제는 전파감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1938년 8월 부 고시 제673호에 의하여 경성, 목포, 부산, 진남포, 청진, 강릉의 무선전신국에서 전파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파감시업무 취급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공중통신상 군사상 또는 혼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전력, 전파의 형식과 주파수, 통신의 순위·속도 등에 관하여 제한 및 변경조치를 지시하였다. 시설자가 [무선전신



▲ 1900년대 청진항의 모습

법] [사설무선전신 · 전화규칙]을 비롯한 제 준수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며, 목적이외의 사용자 및 통신의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하여는 체형 또는 벌금형을 과하였다. 위의 사항에 의한 통신의 정지 또는 지시를 할 경우에 전파감시임무를 부여받은 각 무선통신감시국은 그 호출부호에 무선통신 감시부호(· — · · · — ·)를 넣어서 일반통신과 구별시켰다.



第 1 章

草創期 電波管理

제 1 절 체신부 발족

제 2 절 전파감시기구 설치

제 3 절 전파감시시설의 복구와 업무의 확장

제 4 절 관련자료



第 1 章　草創期 電波管理

(1947~1961)

제 1 절　체신부 발족

대한민국 국회는 1948년 7월 17일 법률 제1호로서 정부조직법을 공포하였다.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는 체신부 및 11부가 설치되었고 6국 22과이던 체신부 기구는 정부가 수립된 후 1948년 9월 22일에 대통령령 제5호로 공포된 각 부처 직제통칙과 1948년 11월 4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27호의 [체신부직제]에 의하여 1실 4국 26과로 개편되었다가 1948년 11월 20일 대통령령 제36호에 의거 전파국을 신설하고 그 밑에 2과를 두었으며, 체신부는 우편 · 전신 · 전화 · 보험과 우편저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8월 4일에는 초대장관으로 제헌국회의원 윤석구가 임명되었고 이어서 백홍균이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과도정부 체신부장서리 박상옥으로부터 업무인수를 끝낸 것은 9월13일이었다. 체신부가 발족된 후 1948년 10월 6일 윤석구장관은 국회 제83차 본회의에서 체신부의 시정방침으로 ① 통신의 자주권 확립 ② 국내 통신사업의 정비 · 확충 ③ 통신에 관한 기계 · 기구공업의 시급한 창설과 기술원의 양성 · 연마 등의 3대 기본방침과 전신전화 사업에 있어서의 당면정책으로서 ① 해외통신망의 완비와 주파수의 획득 ② 전신전화용 물자의 수입계획과 필요 물자의 국내생산 도모 ③ 전신전화 연구기관의 설치 ④ 전파국의 설치와 전기통신의 일원화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당시에 보고된 체신사업의 현황 중 전기통신사업에 관련된 사항만을 추려보면 남한의 전신전화 취급국 수는 527국 종사원 수는 5,600명이었으며, 전화 가입자수는 38,000여명이었다. 그리고 시외 전화가 312회선 전신이 148회선으로 모두 460회선이었는데 그 중 89회선을 미군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술 · 자재 · 재정 등의 부족으로 선로 및 기계의 보수가 불완전하고 전화 및 전신의 소



▲ 초창기 체신부 청사

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서울의 경우 전 가입자의 20%가 고장상태에 놓여 있었다. 또 당시에는 6개소의 무선전신국이 있었는데 무선전신전화의 경우 유선전신전화와 마찬가지로 진공관 등의 자재부족으로 시설의 운용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방송용 무선시설인 무선전화는 사단법인 대한방송협회가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체신부에서는 기술과 자재를 제공하고 있었다. 따라서 종래의 전무국 무선과에서 담당하던 사무 중 무선시설의 규제와 통일, 전파발사의 단속과 주파수의 할당, 무선통신사 자격검정 등의 업무가 신설된 전파국의 관장사무로 되었다. 이처럼 전파업무 기관을 확장한 까닭은 해방 이후 불법·방해전파의 단속 필요성이 증대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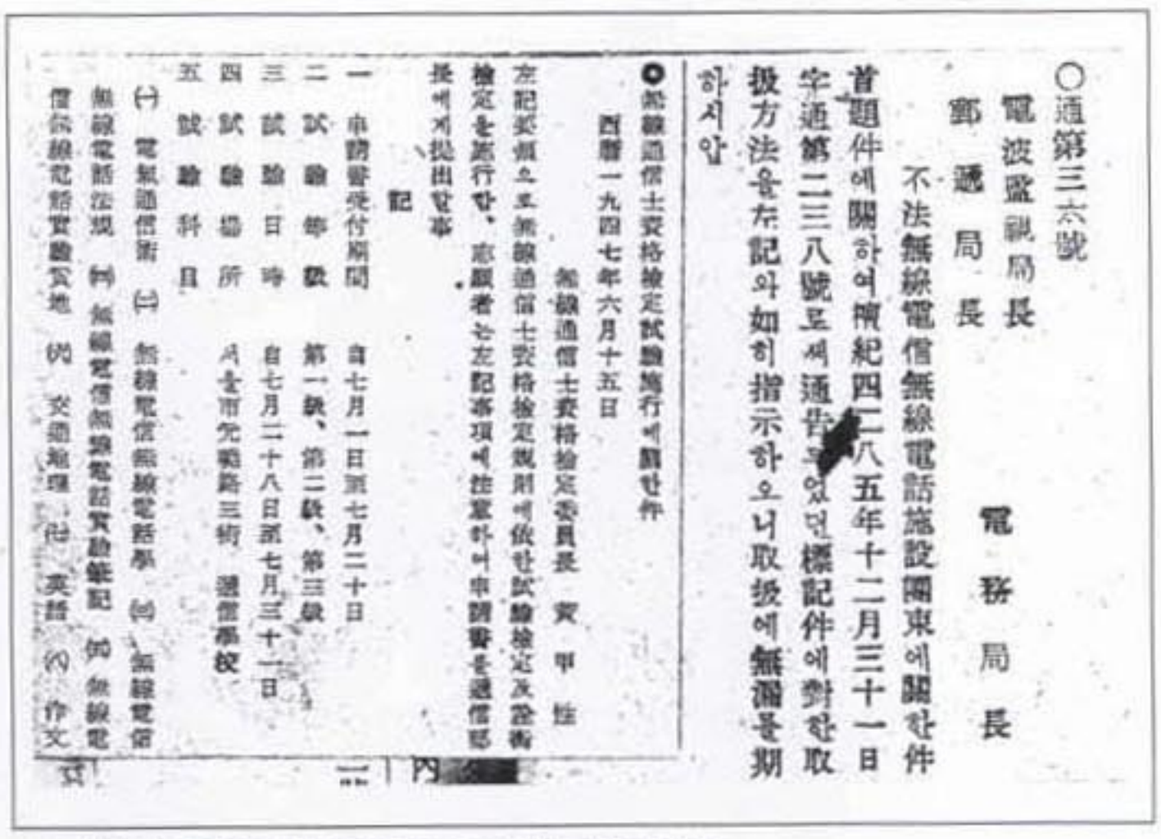
○通第三六號
電波監視局長
郵遞局長
電務局長
不法無線電信無線電話施設團束에關한件
首題件에關하여檀紀四二八五年十二月三十一日
字通第二三八號로써通告하였던標記件에對한取
扱方法을左記와如히指示하오니取扱에無漏를期
하시압
●無線通信士資格檢定試驗施行에關한件
西曆一九四七年六月十五日
無線通信士資格檢定委員長 黃甲性
左記要領으로無線通信士資格檢定規則에依한試驗檢定及登錄
檢定을施行함、志願者는左記事項에注意하여申請書를遞信部
長에게提出할事
記
一 申請書受付期間 自七月一日至七月二十日
二 試驗等級 第一級、第二級、第三級
三 試驗日時 自七月二十八日至七月三十一日
四 試驗場所 서울市元義路三街 遞信學校
五 試驗科目
(一) 電氣通信術 (二) 無線電信無線電話學 (三) 無線電信無線電話法規 (四) 無線電信無線電話實驗筆記 (五) 無線電信無線電話實驗實地 (六) 交通地理 (七) 英語 (八) 作文

▲ 불법무선국 단속 및 무선통신사 자격검정관련 관보

또한 전파국의 검정과를 업무과로 개칭하고 기술과를 신설하여 종래 전무국 무선과의 업무를 확장하였고 감리, 검정 2과로 나누어 감리과는 서무, 감리, 규약의 3개 계로 분장하여 국내의 일반업무와 무선통신사의 자격검정 및 불법무선국 시설의 단속, 외국과의 연결, 무선통신 규정, 호출부호 할당 등에 관한 사항을, 검정과는 검정, 전파관리의 2계로 나누고 무선통신시설의 검정과 주파수 할당 등을 맡아보았다.

□ 일제말기 체신국 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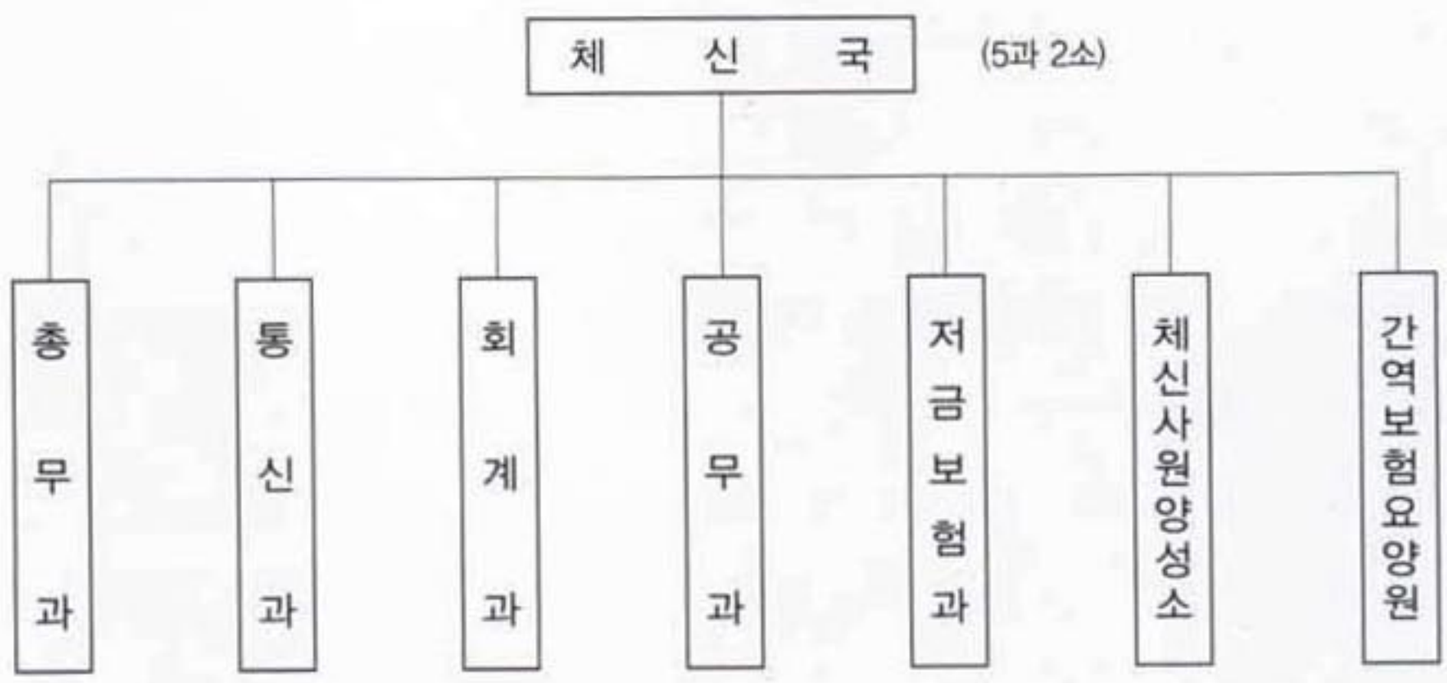

□ 해방 후 과도기의 체신부기구

【1946년 4월 26일 : 체신국을 체신부로 개편하고 그 밑에 6국을 설치】



□ 대한민국정부수립 후의 체신부기구



【전무국에 선로과를 신설하여 5과를 6과로 증설】



한편 기술부서내의 관장업무가 중첩되어 한계가 분명하지 않은 관계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기술과를 두려고 시도하던 끝에 1950년 3월 21일 이를 신설하였다.

이 기술과에 운영계, 기술계의 2계를 두고 무선시설의 유지개선 및 기기실험 업무를 담당케 했다. 이에 따라 전파국은 감리, 검정, 기술의 3과로 분장되었다.

제 2 절 전파감시기구 설치

1. 해방직후의 전파이용

해방이후 한동안 국내의 전기통신은 무분별한 운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었다. 특히 공중통신 이외의 시설들은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마구 신설되었다. 그러한 현상은 무선통신의 경우에 더욱 심하였으나 당시 체신국의 당면목표는 통신소통이었기 때문에 각종 불법시설과 부정전파의 발사를 감시하고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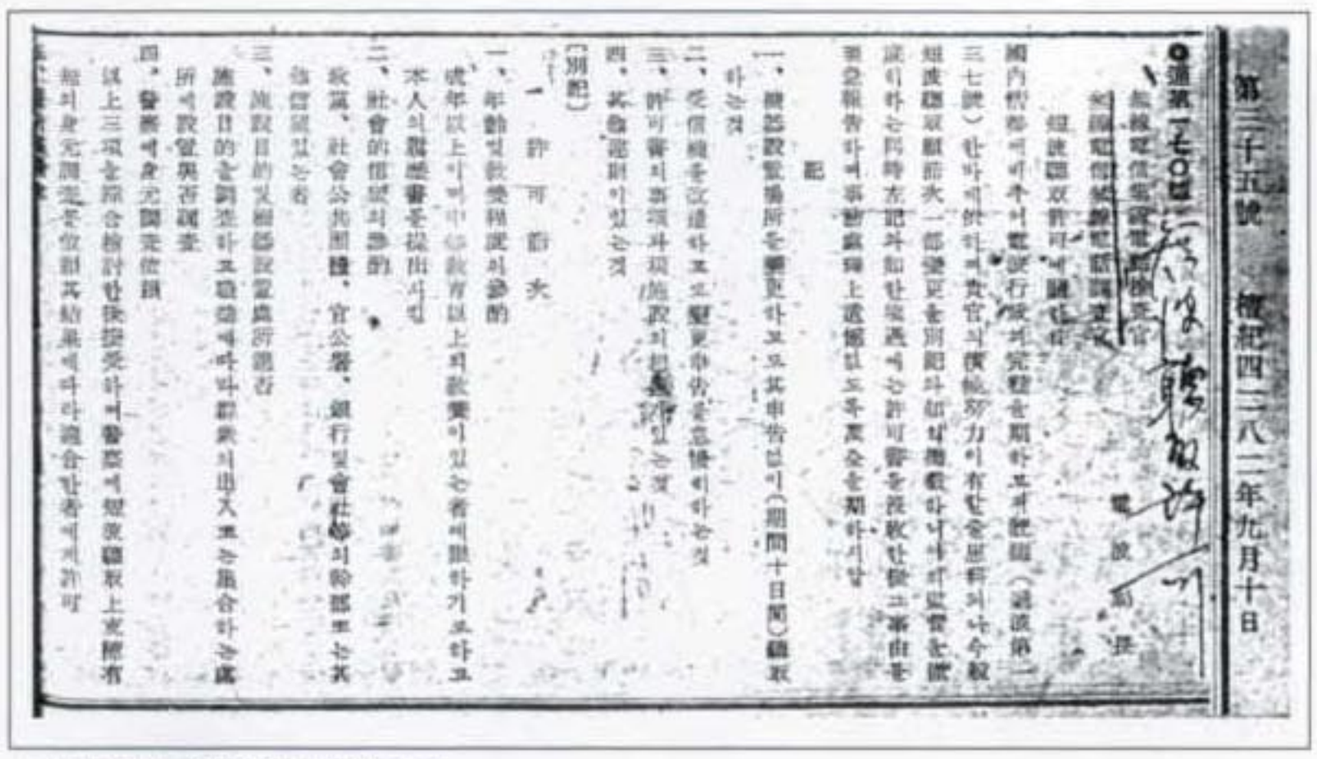
第三十五號 檀紀四二八二年九月十日

▲ 단파방송 청취허가 관련 공보

미군정청에서 처음으로 전파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나타낸 것은 민간인이 사용하는 라디오 수신기를 등록시키는 것이었다. 당시 남한의 방송은 공보처와 체신부가 공동 관리하는 조선방송협회가 독점하고 있었고 이 협회 산하에 11개 방송국이 있었으며 라디오 수신기 소유자는 매월 10원씩 청취료를 납부하게 되었으나 1947년 8월 15일에는 100원으로 올렸다.

□ 남한의 방송국 현황

(SKIGA 1947. 12)

호출부호	위 치	주파수(KHz)	출력(W)
HLKA	서울	970	50,000
HLKA	서울	2,500	10,000
HLKA	서울	7,900	3,000
HLKB	부산	650	500
HLKG	대구	800	500
HLKF	이리	570	500
HLKH	광주	780	500
HLKI	대전	880	300
HLKN	목포	600	50
HLKO	마산	600	50
HLKQ	청주	600	50
HLKM	춘천	600	50
HLKR	강릉	650	30

※ South Korean Interim Goverment Activities(SKIGA: 남조선 과도정부 업적)

1945년 당시 전국의 라디오 등록대수는 20만 8천대였으나 1947년 말에는 남한의 라디오 총수는 17만 5천대였고 신고를 마치고 요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11만 2천명이었다. 그 중 3분의 2가 남한인구의 15%에 불과한 서울을 비롯한 8대 도시에 집중되어 있었고, 약 5만대가 진공관, 콘덴서 등의 부속품이 없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미군정에서는 계속하여 라디오 부속품을 들여오고 일본인 기술자까지 불러다가 수리를 하여 1948년 4월말의 라디오 등록 대수는 156,733대로 증가하였다.

방송수신용 수신기를 당국에서 등록케 한 까닭은 방송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였지만, 단파방송 수신기에 허가제도를 적용한 것은 국가의 보안에 목적이 있었다.

당시 체신부는 민간인의 단파방송 청취에 관한 허가권을 관장하고 있었고 그들은 음악과 교양 등에 관한 프로그램만을 청취하도록 제한되었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청취하는 사람이 많아서 계속하여 경고한 바 있었고, 1945년 3월 전무국장은 허용된 목적 이외의 단파수신기 사용자는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다.

2. 최초의 전파감시

가. 필요성

전파의 발사가 미치는 영향은 국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국제 관례를 벗어난 전파의 발사는 외국과의 사이에 적지 않은 시비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체신당국으로서는 우선 효과적인 전파관리를 통하여 무선통신 사업의 일원화를 꾀하고 나아가 민족 해방을 계기로 무질서하게 설치되었던 무선국을 조정하여 국제통신의 관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연적으로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나. 전파감시 광장분실 개소

일제시대에서는 해안무선국에 무선통신감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광복후 전파감시를 관장하는 부서는 체신부 전무국 무선과에서 일부 담당하였으며 1947년 5월 31일자(부달 제71호)에 의하면 서울중앙전신국 광장수신소내에 감시사무를 담당하는 체신부 전무국 무선과 광장분실이 설립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1947년 5월 31일자 遞信公報誌 내용은 다음과 같다


遞信公報

▲ 1947년 5월 31일자 체신공보 (광장분실설치)

部達第七十一號 左記 電務局 無線課 分室을 設置하고 來 六月一日부터 事務를 開始함.

西曆 一九四七年五月三十一日　　軍政廳 遞信部長 吉 元 鳳

名　　稱 : 遞信部電務局 無線課 廣壯分室

位　　置 : 京畿道 高揚郡 蠶島面 廣壯里 서울中央電信局 廣壯受信所內

取扱種別 : 監視事務

1947년 6월 9일 체신부 전무국에서 근무하던 민병기, 권전, 어하운 3인이 광장분실로 발령을 받아 광장수신소에 설치되어있던 고장난 2대의 주파수측정장치를 수리, 1대를 가동시켜 매일 방송되는 일본의 JJY의 시보를 수신하여 장비를 교정하면서 중요주파수 등에 대한 초보적인 측정업무를 개시하였다. 그리고 미 군용수신기(R-390) 3대를 이용하여 감청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인원과 장비 부족으로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 군용수신기(R-390)

그후 장기영 체신부장관이 경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불법 전파감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1948년 11월 20일 대통령령 제36호에 의

해 전파국이 설치되었다. 그 반년 후인 1949년 5월에 통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전파감시 시설비(18,440,500원)를 반영 할 수 있었고 이 예산을 토대로 전파감시국 설치에 노력하였다.

1949년 7월 19일에는 체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체신위원회가 설치되어 지방관서의 개편작업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8월 13일에는 「지방체신관서설치법」을 공포하게 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체신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체신부장관 소속 하에 체신청 · 저금관리국 · 보험관리국 및 전파감시국을 두고, 체신청장 소속 하에 우체국 · 전신국 · 전화국 · 전신전화국 · 국제전신전화국 및 전신전화건설국을 두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설치법으로 표준주파수와 시보전파발사, 무선시설의 검정과 전파 포착을 담당하는 전파감시국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1949년 11월 22일에 서울전파감시국이 개국되면서 광장분실에서 수리하여 사용중이던 주파수측정장치를 이관하였다. 때문에 당시의 서울전파감시국에는 동장비의 유지보수와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타감시국에는 없었던 표준과가 신설되었다.



▲ 1950년 1월 12일 체신공보
(법률 제47호 지방체신관서 설치법, 대통령령 제217호 지방체신관서직제)

3. 전파감시국 설치

【전파감시국의 설치를 위한 기본법령 : 1949년 11월 22일(대통령령 제217호) 지방체신관서(전파감시국) 직제공포】

제1장 총 칙

제1조 지방체신관서 설치법에 규정된 지방 체신관서의 보조기관 설치와 사무분장은 본령에 의한다.

제 5장 전파감시국

제11조 전파감시국장은 통신기정으로 보한다.

제12조 전파감시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감리과, 기술과, 발사과(서울에 한함) 및 표준과(서울에 한함)를 둔다. 각 과장은 사무관 또는 기좌 중에서 보한다. 감리과는 무선통신의 감시, 불법전파 포착 및 타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기술과는 송수신기, 전원 및 기타 기기의 보수와 주파수 측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발사과는 표준 발사용 송수신기, 전원 기타 기기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표준과는 표준 주파수 기기 및 정밀 주파수 측정기기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949년 11월 22일에는 [지방체신관서직제(대통령령 제217호)]가 마련되어 전파감시국에는 무선통신의 감리 및 부정전파를 포착하는 감리과와 무전기를 비롯한 시설이나 주파수 측정을 담당하는 기술과를 두었으며, 설치를 보게된 전파감시국은 서울, 부산, 광주의 3개소였다. 각 전파감시국이 체신청장 아닌 체신부장관 직속인 직할관서였는데 당시 전파감시국을 본부 직속으로 설치한 것은 날로 증가하는 전파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함과 동시에 전문인력의 부족이 그 원인이었다.

각 감시국의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진 다음 1950년의 전파감시 시설비 2천만원 정도를 책정하여 전파감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즈음에 6.25전쟁이 일어나 부산을 제외한 모든 감시시설이 파괴되었다.

6.25전쟁이 일어나기 한달 전인 1950년 5월 29일 체신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265호)로 경리국과 비서실이 폐지되어 감사과와 검측과가 감리국으로 폐합되었다. 동시에 전파국도 폐지되면서 전무국에서 전파국 업무를 이어 받았다. 전

무국에는 전파관리과와 무선업무과 및 무선기술과를 두었고 전파관리과에서 전파의 통제와 감시 및 무선시설의 허가, 감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당시 전파국을 폐지한 까닭은 다른 국에 비하여 업무량이 적고 신설된 감리국에서도 통신내용을 검열할 수 있으며 또한 전파업무가 전무국의 무선기술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개념상의 문제에 있어서 전파국을 전무국으로 흡수한 조치는 반드시 합리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 까닭은 전무국이 체신부의 전무사업운영을 위한 기구인데 대하여 전파관리 업무는 체신부 밖의 민간전파까지 통제하고 관리하는 비 사업적 기구, 다시 말해 체신부의 사업경영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감독기구이기 때문이다.

【1950년 3월 21일(대통령령 제314호 : 전파국의 검정과를 업무과로 개칭하고 기술과 신설】

【1950년 5월 29일(대통령령 제265호) : 전파국을 전무국의 과제로 편입(5국→4국이 됨)】

【1955년 2월 17일(대통령령 제1006호) : 전무국의 전파관리과를 전파감시과로 개칭】

가. 서울전파감시국

해방 후의 전파감시업무는 미 군정청 시절인 1947년 6월 1일 체신부 전무국 무선과 직속으로 광장분실을 경기도 고양군 뚝도면 광장리(서울중앙전신국 광장수신소내)에 설치하여 불온 및 무선통신보안 위주의 전파감시업무(부달 제71호)를 개시하였고, 1948년 7월 17일 법률 제1호로 정부조직법을 공포하여 체신부가 발족됨에 따라 이때의 전파감시업무를 체신부 직속인 전무국 무선과에서 관장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 정부가 수행한 전파감시업무의 효시라 할 수 있다.

전파감시 업무는 전무국 무선과 분실이 모체가 되어 1949년 8월 13일 지방체신관서설치법(법률 제47호)에 따라 1949년 11월 20일 광장분실을 폐지하고(대통령령 제217호) 동년 11월 22일에 정식으로 전파감시업무를 관장하는 서울전파감시국(대통령령 제217호)이라는 조직이 발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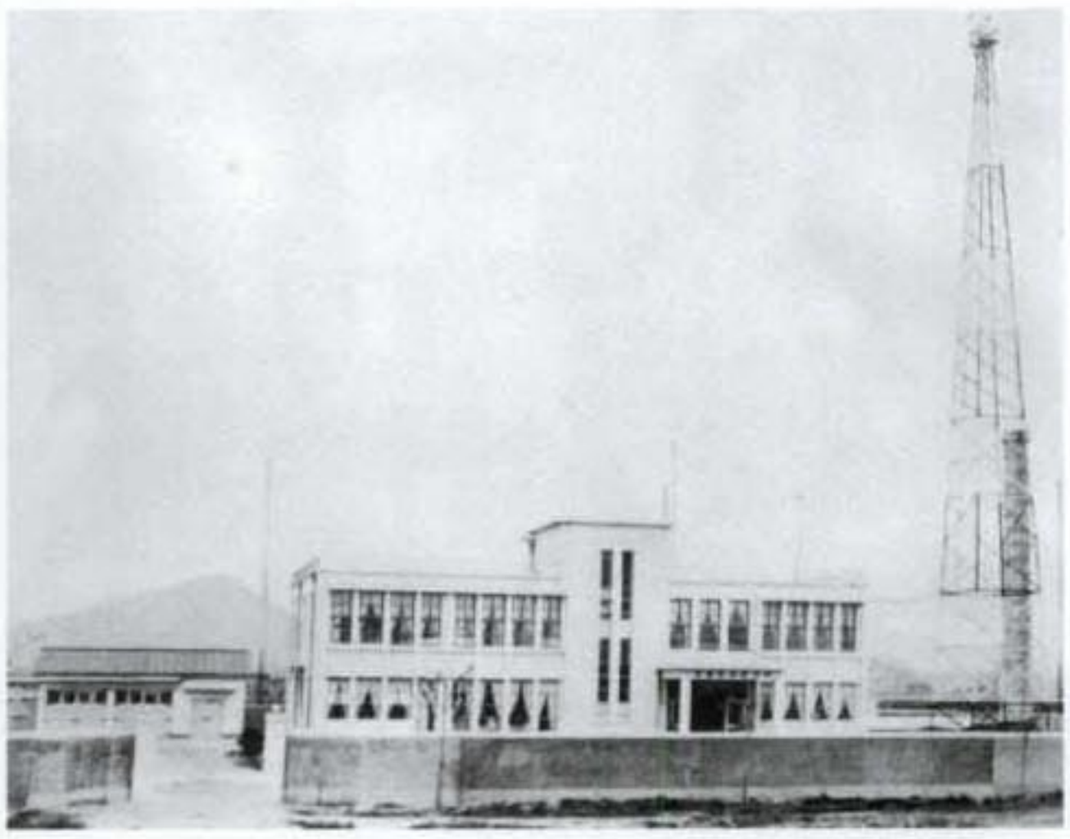

▲ 서울전파감시국 (성수동 청사)

감리과 및 기술과와 당시 서울전파감시국에만 있었던 표준과 발사과 양과를 합하여 4과로 분장하였다.

1950년 1월 10일 서울전파감시국은 과제(통 제1호)를 실시하여 감리과 및 기술과와 표준과 및 발사과(표준, 발사과는 서울전파감시국 한)를 합한 4과 체제로 첫 업무를 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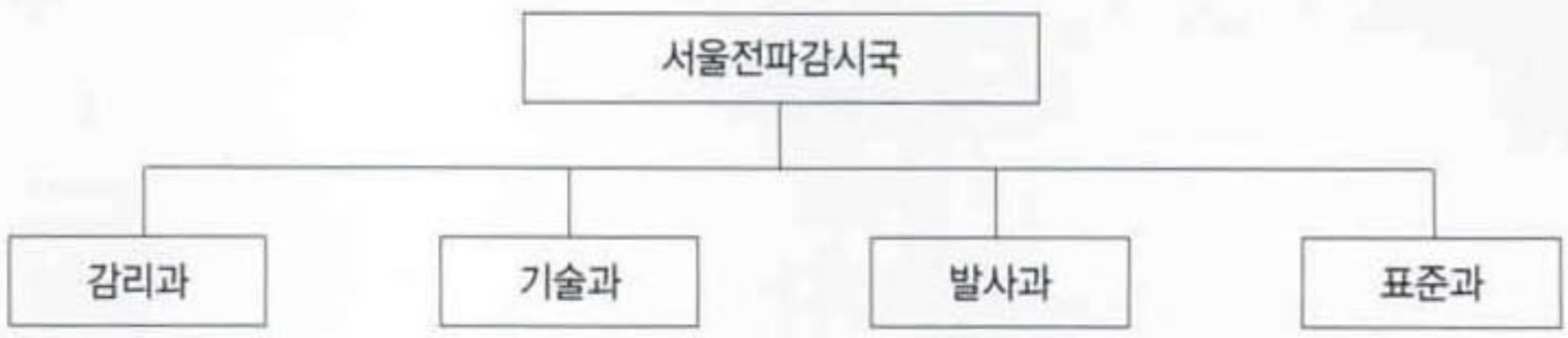

【서울전파감시국 설치 기본법령】

- 1949년 11월 22일(대통령령 제217호 : 서울전파감시국 설치)
- 1950년 1월 10일(통 제1호 : 과제실시)

서울전파감시국은 1950년 6월 25일 동란을 맞이하여 본관 208평이 모두 소실되는 등 완전히 파괴되었고 체신부 소개령에 따라 부산전파감시국과 합세하여 부산시 대연동의 임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부산에서의 활동은 별로 없었고 직원의 신변보호와 생계대책에 힘을 기울였다. 서울이 수복되어 정부의 환도와 함께 상경 후에도 한동안 파괴된 시설의 복구사업에 몰두하였을 뿐 실제적인 감시업무는 불가능하였다.

□ 6 · 25당시 우체국을 제외한 건물 피해현황

관 서 명	건물구역	동 수	사변 전 평수	피해정도
체신부	본관	1	908	전부소실
별관	1	616	〃	
창고	5	1,493	〃	
기타	6	288	〃	
중앙전기시험소	본관	1	204	
서울보험관리국	본관	1	1,680	직격탄으로 일부파괴
서울전파감시국	본관	1	208	전부소실
체신도서관	본관	1	90	반파
서울중앙전화국	본관	1	1,480	4층내부소실, 기타 내부 태반파괴

관 서 명	건물구역	동 수	사변 전 평수	피해정도
서울전신전화건설국	본관	1	80	내부소실
용산전화본국	본관	1	280	〃
광화문전화본국	본관	1	590	〃
대전시청	본관	1	320	〃
체신학교	본관	1	682	〃
	강당	1	55	〃
	부속사	4	85	〃

정부 환도 후에 복구한 전파감시시설로는 무선감시용으로 시급한 송신기 3대, 수신기 29대, 녹음기 13대, 발전기 8대 등이었고, 1954년에 송신기 2대, 수신기 4대, 주파수계 3대, 녹음기 4대를 복구하였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정부 부산 이전이 결정되자 체신부는 6 · 25당시와 같은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미리 소개를 위한 수송계획에 착수하여 12월 28일에 체신관서 소개 요령을 작성하여 조직적이고 기동력 있게 소개를 하였다.

□ 6 · 25당시 체신관서의 소개처 일람

관 서 명	1차소개	2차소개	기타 지정사항
체신부	부산	부산	일부는 대구
서울체신청	대전	대구	
서울저금관리국	대구	부산	
서울보험관리국	〃	〃	
서울국제전신전화국	부산		
서울국제전신전화건설국	〃		본국
서울전신전화건설국	수원	대전	
서울중앙전신국 부평송신소	부산		
서울중앙전신국 광장수신소	〃		
서울철도우체국	대전	대구	
서울중앙전기시험소	대구	부산	
서울국민보험의원	〃	〃	
체신학교	〃	〃	
서울전파감시국	부산		부산전파감시국과 합세할 것
서울중앙전신국	대구		



▲ 파괴된 광장수신소

이 때는 6 · 25동란 직후와 같은 혼란은 없었으며 어느 정도 질서있게 대부분의 직원과 그 가족들이 후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천항을 거쳐 선박으로 반출하려던 기계 등은 방해 공작에 부딪쳐 반출이 어려워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때문에 환도 이후에도 시설의 복구에 큰 지장이 있었다.

1952년 3월 부산에서 대전으로 옮겨 대전전신전화국 2층에 서울전파감시국 청사를 정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감시국장은 김중백, 감리과장 이윤재, 감리계장 김녕근, 감시요원은 차기환, 권용화, 남중락, 박범신이었다. 또한 인력수급이 여의치 않아 기술과는 기술과장과 기술계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직원 김재완이 업무에 종사하였다. 행정에는 서무계장 이창식, 서기에 정대호 등이 근무하였는데, 당시 서울전파감시국 전체 직원에 대한 숫자는 자료가 파기되어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했고, 장비로는 소개 중 보유 장비가 BD342 중파수신기 1대로 500kHz를 감시했으며, 미육군용 단파송신기 1대를 가지고 혼신이나, 경찰통신 등 국가 주요 통신망 보호활동을 수행하였다. 1952년 8월 서울전파감시국은 성동구 성수동 1가 276번지로 옮겨와 감시업무를 수행했다. 당시 국장은 김중백으로 1급무선통신사였으며, 감리과장 역시 2급무선통신사인 김녕근이 감시업무를 진두지휘하였다. 감청사로는 차기환, 권용하, 손득준, 박범신 등이었고, 기술과장과 기술계장은 1953년에 보충되었다.

당시 기술과에는 기술과장 대리 김재근, 기술계장 서홍석, 기술계원 김재완이 근무하는 등 6 · 25동란으로 물적피해 뿐 아니라 인력수급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때문에 환도 이후에도 시설의 복구에는 큰 지장이 있었다. 1952년경에 이르러 겨우 전쟁전의 시설에 가까운 수를 갖게 되어 6 · 25동란 중에 일시 중단되었던 전파감시업무를 정부의 환도 후에 재개하였다. 특히 국제조약 제27호로 1954년 9월 1일에 정식으로 공포하여 시행하게된 국제전기통신조약(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체결)은 당시 헌법 제6조의 "비준 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국내법과



▲ ITU회의(부에노스아이레스)

동일한 규율을 갖게 됐다. 이로서 전파관계에 있어서는 이 조약에 의하여 당연하고도 의무적으로 국제적인 임무를 띠게 되어 전파관리의 중요성은 가중되었다. 더욱이 정부 환도 후 정국의 안정과 더불어 경제 · 사회의 전후복구 및 발전을 가져오게 되어 무선통신시설의 많은 증설을 보게 되었다.

□ 주요 복구공사 내역

(단위:천원)

년 월 일	공 사 명	공사시설 개요	예 산	적 요
1952.6.16 체전 993호	서울전파감시국 긴급 가복구공사	1. BS342 단파수신기 2대 2. 전력배전판 1대 3. 1KW 자동승강변압기 1대 4. 접지용으로 와권접지를 증설 5. 공중선 10, 죽간 2본 6. 통신대 설치 1대	7,159	기공 52. 7. 16 준공 52. 7. 10
1953. 3.14 체전 737호	서울전파감시국 시설공사	1. 현 시설 이전 및 설치 일절 2. 특수 전력가설 1조 3. 공중선 가설 4조 4. 전력선배선반 제작 1대 5. 와권접지 매설 1개체 6. 파장계 제작 1대 7. 회로시험기 1대	205,750	기공 53. 4. 5 준공 53. 4. 25
1953. 5. 12 체전 1342호	서울전파감시국 시설 복구공사	1. BC342 단파수신기 신설 2대 2. BC344 중파수신기 신설 2대 3. 2.5KW 휘발유 발동발전기 1대 4. 통신대 6대 5. 물품보관호책 1대 6. 25M 공중선 본주 1기 7. 7M 궤전선주 4본 8. 단파 DOUBELT 수신공중선 2조 9. 중파T형 수신공중선 2조 10. 통신용 표준시계 1대	246,440	기공 53. 6. 18 준공 53. 6. 28

당시 현업기관으로는 서울, 부산, 광주 3개 전파감시국이 있었는데, 그중 서울전파감시국에서 동해안 지구 및 강원권 일원을 관장하고 있었고 1961년 10월 2일 상부기구와의 사무계통의 확립, 인원 및 예산절약 등을 이유로 종래의 직제중 발사과가 표준과에 통폐합되었다.

□ 각 전파감시국 관할 구역

관 서 명	위 치	관할구역
서울전파감시국	서울	서울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광주전파감시국	광주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부산전파감시국	부산	경상남도 · 경상북도

□ 1961년 10월 2일(각령 제209호 : 서울전파감시국의 발사과를 표준과에 통합)

제1조 전파감시국에 전파감시국장을 둔다.

전파감시국장은 행정서기관 또는 통신기정으로 보한다.

제12조 (1) 전파감시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감리과, 기술과와 표준과(서울에 한함)를 둔다.

(2) 감리과장은 행정사무관, 기술과장과 표준과장은 통신기좌로 보한다.

(3) 감리과는 무선전신의 감시, 불법전파포착, 기타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4) 기술과는 송수신기, 전원 기타 기기의 보수 및 전파방향탐지, 전계강도와 주파수의 측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5) 표준과는 표준전파 발사용 송수신기, 정밀주파수 측정기기의 보수와 정밀주파수 측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전파감시를 하고 있는 모습(1950년대)



1964년도 말 서울전파감시국에는 감리과, 표준과, 기술과 그리고 기타 감시국에는 감리과와 기술과의 2과 체제가 시행되고 있었다.

그 후 전파감시국 기구개편으로 1966년 말에는 각 전파감시국에 감리과와 기술과, 감리과에는 서무계, 제1계, 제2계를, 기술과에는 서울전파감시국에 한하여 기술계와 검측계의 2계 체제를 두었다.

당시 전파감시국장은 행정서기관 또는 통신기정, 감리과

장은 행정사무관, 기술과장은 통신기좌로 보하도록 했다. 각과의 사무분장을 보면 감리과는 전파의 감시와 불법전파 포착 등의 사항으로 업무가 분장되었다. 그 중 제1계는 일반전파의 운용상의 감시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제2계는 불법전파 포착 등의 특별전파 감시업무를 수행, 기술과는 전파감시시설, 전화, 기타 기기의 보수 및 전파품질 측정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하고 있었다.

나. 부산전파감시국

지방관서 설치법의 제정으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시설과 기술진이 부족하여 바로 업무개시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준비과정으로 1949년 12월 3일 시내 창선동에 위치하고 있던 부산전화국 3층에 임시사무실을 두고 사무에 착수하였다가 다음 해 1월 16일에 개국을 보았으며, 감리과와 기술과를 두었고, 감리과에는 서무계와 감시계, 기술과에는 기술계를 두었다.(체신공보 63호)



▲ 부산우체국(1950. 11. 1 ~ 1953. 11.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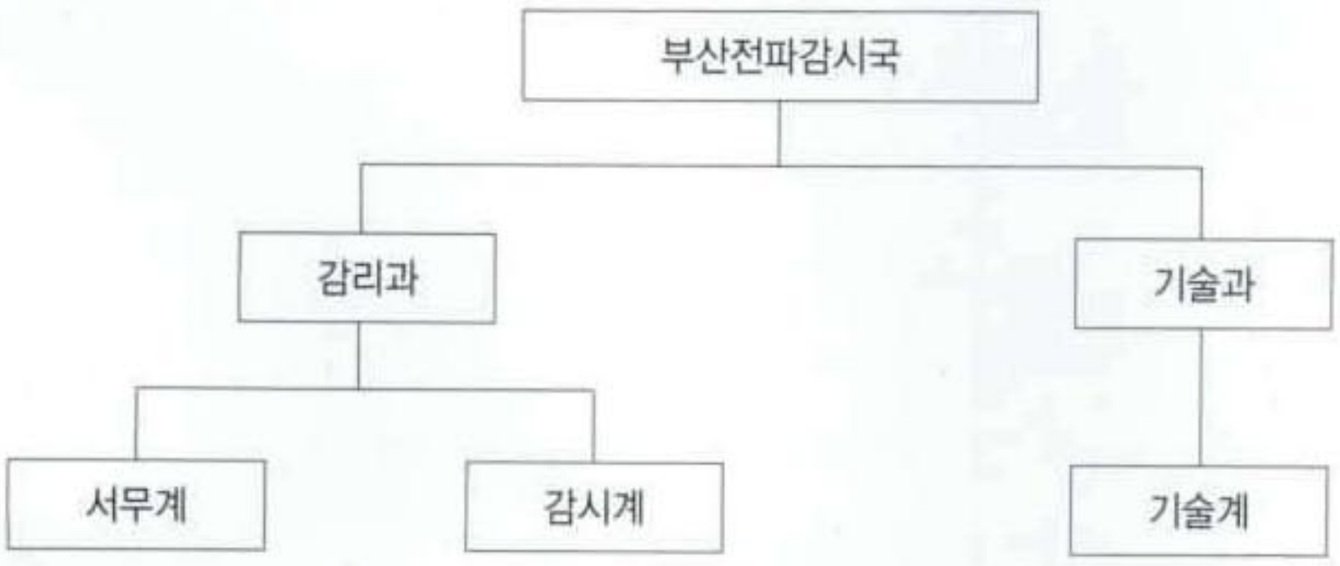

◇ 1950년 1월 6일(부산전파감시국 설치)

처음 시설로는 본부에서 받은 R-100 단파수신기 4대로 우선 부산무선전신국 청사 내에 설치하고 동년 6월 9일에 사무를 개시하였다.

그 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즈음에 6 · 25동란이 일어나자 부산으로 소개한 서울전파감시국과 합세하여 군사기밀 및 통신보안 업무를 맡아보았다. 수복과 더불어 청사를 환수하는 한편 시설확장도 추진되어 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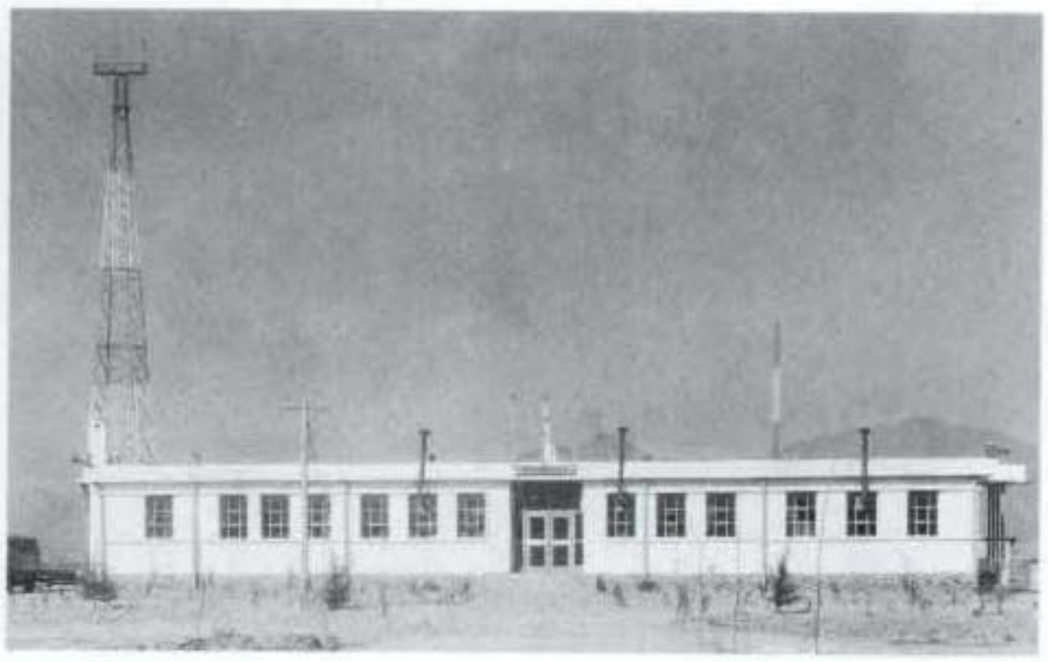

▲ 부산전파감시국

로 BC-342 단파수신기를 1951년 1월 4일에 환수 받고 기존시설도 일제정비 함으로써 휴전성립 후에야 비로소 정상적인 감시업무를 재개할 수 있었으며,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 복구 및 확장공사가 실시되었다.

□ 주요 복구공사 내역

(단위:천원)

년 월 일	공 사 명	공사시설 개요	예 산	적 요
1952.10.20 체전 2109호	부산전파감시국 시설 정비공사	1. BC342 단파수신기 1대 2. BC344 중파수신기 제작 1대 3. 2.5KW 휘발유 발동발전기 조립	8,190	기공 52. 12. 26 준공 53. 1. 4
1953. 3.14 체전 738호	부산전파감시국 긴급 복구공사	1. 단파수신기 신설 2대 2. 중파수신기 신설 1대 3. 파장계 신설 1대 4. 회로시험기 1대 5. 전력배전반 1대 6. 공중선가설 4조 7. 1.5KW 단권승강변압기 1대 8. 와권 접지 매설 1매	146,250	기공 53. 3. 29 준공 53. 4. 9
1953. 5. 31 체전 2037호	부산전파감시국 시설 복구공사	1. BC342 단파수신기 증설 2대 2. BC344 중파수신기 증설 1대 3. 2.5KW 발동발전기 1대 4. 5000 메가 1대 5. 통신용 표준시계 1대 6. 통신공작대 2대 7. 2.5M 공중선 목주 4기 8. 7M 궤전주 7본 9, DOUBLET 단파수신 공중선 4본 10. T형 중파 4본	199,400	기공 53. 8. 20 준공 53. 9. 15

1951년 8월 30일 미군이 진주하면서 부산전파감시국은 군에 징발되어 부산우체국 청사 내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후 주목할 만한 활동없이 1951년 9월 30일 미군의 반환으로 부산시 대연동 146번지 청사로 이전하였다.

1951년 7월 21일 미군이 재 사용하면서 부산시 대연동 제8호 관사로 다시 이전하였다. 1953년 1월 17일 부산저금관리국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즈음 부산무선전신국의 실화로 청사가 전소되는 수난을 당했다. 그리하여 1953년 3월 3일 대연동 146번지 제3호 관사로 이전하였으나 전기누전으로 제3호 관사가 전소되면서 제1호 관사로 이전하였다.

그후 1955년 6월 29일 부산시 문현동 294번지에 있는 부산진 중계소를 관리전환으로 인수받게 되었다.

□ 초기 부산전파감시국 감시장비의 발달과정

년 도	장 비 명	설치사유 및 성능
1950	R-100 단파수신기	진공관식으로 단파대 감청
1951~1954	BC-344 중파수신기	진공관식으로 중파대 감청
	BC-342 단파수신기	단파수신기 시설 확충(진공관식)
	2.5KW 발전기	예비전원 시설 확보
1955	RCA 녹음기	수신내용의 녹음 개시
1956	공중선 분할 증폭기	1기의 안테나를 분할 증폭 사용
	SCR 이동방탐기	이동방탐 개시

다. 광주전파감시국

광주전파감시국은 1950년 1월 18일부터 송정우체국에 임시사무실을 두고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감시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은 1950년 3월 28일 송정리 100번지에 위치한 청사로 이전하고 4월 1일부터 미제 군용 검정색 감시용 수신기(9구식) 2대를 시초로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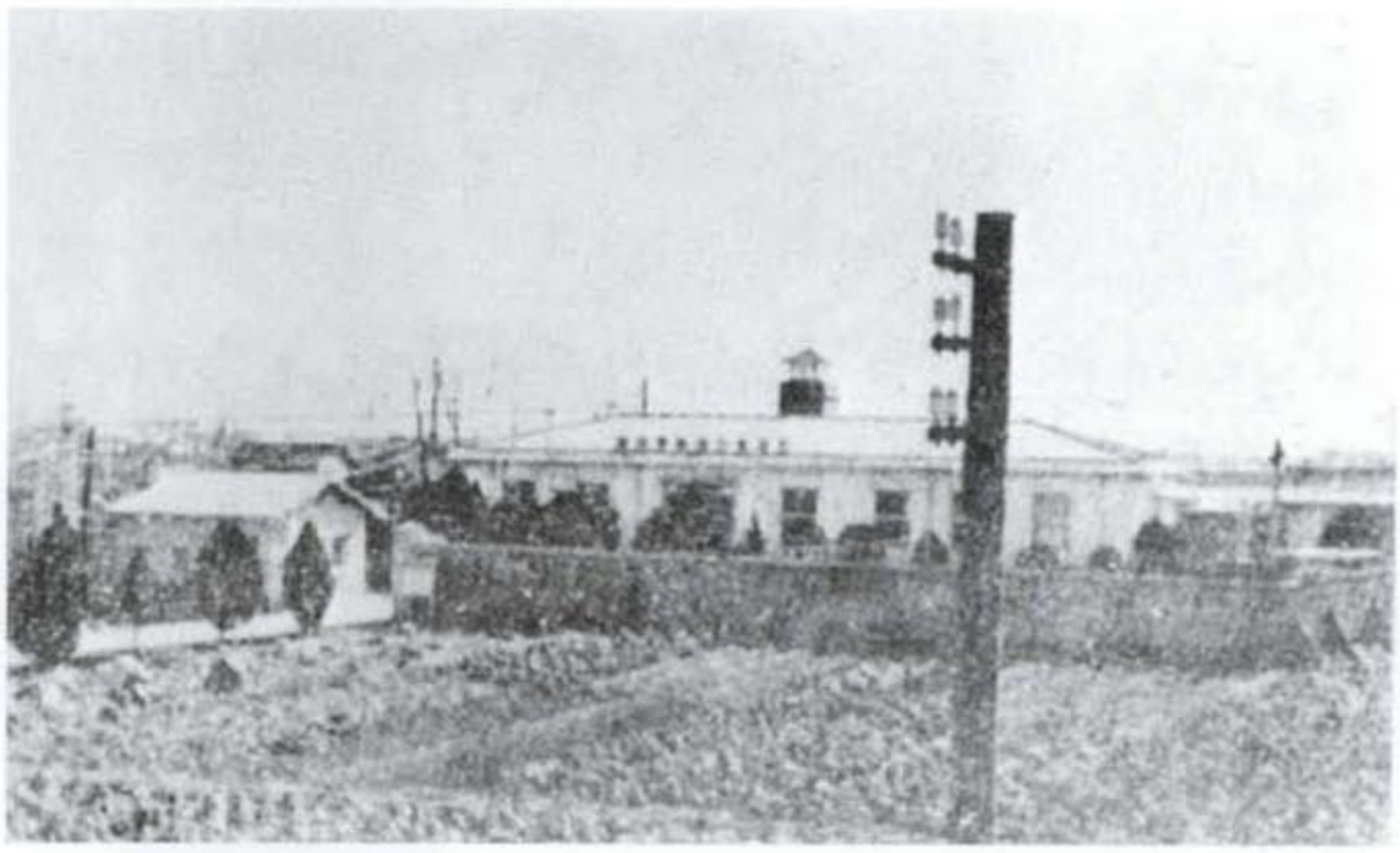

▲ 광주전파감시국

여 주로 법령에 위반되는 위규와 불요통신 등 전파감시 업무를 실시하였다.

그 뒤 6 · 25사변과 함께 서해안으로 상륙한 북한군의 습격으로 전남 일대가 피점 됨에 따라 7월 23일 업무가 중단되었고 아울러 9구식 진공관 감시용수신기 1대(체신공보 제88호)를 비롯한 각종 감시 기기들도 피폭되었다.

따라서 대개의 요원은 부산으로 피난하였다가 수복과 더불어 동년 10월 1일에 다시 광주시내에 사무실을 두고 복구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 주요 복구공사 내역

(단위:천원)

년 월 일	공 사 명	공사시설 개요	예 산	적 요
1952.10.20 체전 2109호	광주전파감시국 시설 정비공사	1. BC342 단파수신기 1대 2. BC344 중파수신기 제작 1대 3. 2.5KW 휘발유 발동기 1대 4. 변경공중선 15M 3본 3MHz DOUBLET 수신용 1조 6MHz DOUBLET 수신용 1조 8MHz DOUBLET 수신용 1조	7,005,000	기공 52. 11. 3 준공 52. 11. 17
1952. 12.16 체가 3438호	광주전파감시국 긴급 복구공사	1. BC342 단파수신기 조작 2대 2. BC221 중파장계 1대 3. 2.5KW 발동발전기 수리 1대 4. 즘부 렉카 1대 5. 회선시험기 1대 6. 5000V메가 1대 7. 전력배전반 1대 8. 자가 발동배전반 1대 9. 전반수신대공작 2대	271,560	기공 53. 3. 10 준공 54. 4. 3

라. 강릉전파감시국

1949년 서울전파감시국 설치 이전에는 강원도 일원의 선박무선 검사는 서울체신청에서 이후의 무선국 관리는 서울전파감시국에서 관장하였다. 그러나 영동지구의 국가기관 무선통신이 비약적인 보급 확장 등으로 인한 무선국의 급증과 군사상의 특수성이 고려된 전파감시기구의 신설이 불가피 하였다.

그리하여 1964년 10월 23일 대통령령 1965호(체신회보 제157호 1964.9.29)로 영동지역의 지리적 요건과 이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의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동 지구의 감시업무를 분담할 강릉전파감시국을 신설하였다.

강릉시 유산동 50-1번지에 대지 432㎡, 건물 487.4㎡의 규모로 발족한 강릉전파감시국 편제는 다음과 같다.



강릉전파감시국장은 행정서기관 또는 통신기정으로 보하며 감리과장은 행정사무관, 기술과장은 통신기좌로서 보하도록 했다. 각 과의 분장사무를 보면 감리과는 전파의 감시와 불법전파 포착 등의 사항을, 기술과는 전파감시 시설, 전원, 기타 기기의 유지보수 및 전파의 질 측정에 관한 사항들을 수행함을 그 임무로 했다.

◇ 강릉전파감시국 분장사무

감리과 서무 인사 및 회계
전파감시에 대한 제반계획
전파감시
불법전파의 포착 및 단속

기술과 전파감시시설, 공중선 시설, 전파원 장치의 보수 및 유지
전파의 질에 관한 측정과 분석
무선설비 및 상용전파 이용설비의 검사



▲ 강릉전파감시국

□ 각 전파감시국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기 관 명	위 치	관할구역
서울전파감시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북도
광주전파감시국	광산군 송정읍	전라남북도, 제주도
부산전파감시국	부산시	부산시, 경상남북도
강릉전파감시국	강릉시	강원도

제 3 절 전파감시시설의 복구와 업무의 확장

I. 전파감시시설의 복구

6 · 25동란 중에 일시 중단되었던 서울, 광주 두 전파감시국의 전파감시업무는 정부의 환도를 전후하여 재개하였으나 전파감시시설의 대부분이 동란 중에 파괴되어 이의 복구와 확충이 급선무였다.

따라서 정부 환도 후에는 전파감시시설의 복구에 주력한 결과 어느 정도 그 결실을 보아 대체로 5 · 16 군사혁명 전까지는 전파감시업무를 본궤도에 올릴 수 있게 하였다.



▲ 중앙우체국 파괴잔상

즉 ICA 협조에 의한 자재 및 기계 등의 도입과 자체예산의 중점적인 배당으로 매년 시설의 증설 및 대체를 보았고,

특히 당시로서는 최신시설인 표준정밀 주파수 측정장치를 비롯하여 방향탐지기, 감시용 고감도 수신기, 감시용 송신기 등을 각 감시국에 연차적으로 장치함으로서 국내외 각 무선국에서 발사되는 모든 편차를 측정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 이후에는 "통신사업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전파감시 시설의 확장 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계획 내용에서 전파관련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통신사업 5개년 계획" 중 전파관련 부분

정상적인 전파통제 규율화를 위하여 각종 정밀 측정시설을 갖추어 다음 사항에 만전을 기한다.

1. 각종 무선통신 업무의 보호를 위하여 불법주파수의 단속, 혼신제거, 인공잡음의 제거를 기한다.
2. 불법전파의 철저한 단속과 무허가 시설의 적발 및 이동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3. 공중통신 업무의 안전을 위하여 전파전파의 예보 및 경보, 잡음의 분포상황 조사를 시행한다.
4.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요청 또는 권고하는 국제전파감시업무를 수행한다.
5. 전파는 국가의 자원으로서 그 이용 분야가 광범위하여 한정된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리층 연구를 위하여 전파연구기관을 설치한다.
6. 선진국가에서 이미 이용되고 있는 우주통신의 개발에 관한 기초적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긴요한 정밀시설을 설치한다.

□ ICA 계획에 의한 복구개황(1956년)

공 사 명	불 화 액	원화공사비
전기통신케이블 및 정선자재	1,682,000	1,036,498,800
전화시설 및 각 단국장치	850,000	93,676,100
국제전신전화시설	152,000	65,374,500
전신전화시설	252,000	23,230,100
무선기상신문방송 및 감시용 기기	150,000	21,655,000
전기통신기술자 해외훈련	66,500	
전기통신요금분석	55,000	2,000,000
무선용시험 및 보수기기	48,000	993,600
서울시내선시설(추가)		30,000,400
합 계	$3,255,500	₩1,273,428,500

□ 전파감시시설공사

(단위:천원)

공 사 명	시설개요	공 사 비	준공년월일
부산전파감시국 시설 복구공사	BC342 단파수신기 증설 2대 BC344 중파수신기 증설 1대 2.5KW 발동발전기 1대 500V 메가 1대 통신용 표준시계 1대 통신 공작대 2대 25M 공중선 목주 4대 7M 전주 7본 DUBLET 단파수신기 공중선 4 T형 중파 2	199,400	1953. 9. 15
부산전파감시국 비상호출기공사	비상호출기 1식	49,500	1954. 3. 23
서울전파감시국 시설 복구공사	BC342 단파수신기 조작2대 단파수신기 설치 1대 6V 120AH 축전지 6조 15A 충전기 교부 1대 BC342 단파수신기 수리 1대 BC221P 파장계 1대	227,110	1954. 3. 30
광주전파감시국 시설 복구공사	BC342 단파수신기 조작 2대 BC221P 장파계 1대 2.5KW 발동발전기 수리 1대 주-부젝가 1대 회로시험기 1대 500V 메가 1대 배력 배전반 1대 자가 발전반 1대 수신기대 공작대 2대	271,560	1954. 4. 3

공 사 명	시설개요	공 사 비	준공년월일
서울전파감시국 이전공사	현 시설이전 및 설치 일절 전력선연장 및 전등선 가설 25M공중선주 건주 5조 지선이설	305,800	1954. 12. 31
부산전파감시국 긴급 가복구공사	수신기 및 파장계 설치 5대 수신기 수리 2대 전력배전반 설치조작 1대 2KW 스텔압 변압기 2대 녹음기 1대 진공관시험기 회로시험기 2대 공중선 전선연장 및 인입 5조 특수 상시전선연장, 가설	965,120	1955. 6. 26
서울전파감시국 시설 복구공사	녹음기조작 신설 2대 공중선 절체반 신설 1대 초단파 수신기 2대 단파수신기 수리 1대 진공관시험기 1대 진공관 시험 메가 1대 특수 전력선 연장, 가설	1,025,400	1955. 6. 30
부산전파감시국 시설 이전공사	현 기기시설 이전 일절 전력선 및 전등선 가설 1식 25M 공중선주 건주 5조 지선이설 1식	1,034,700	1955. 12. 19
서울전파감시국 시설복구 개설공사	공중선 및 전선개수 5조 25M 공중선 건주, 신설 1식 공중선 분할증폭기 설치 6조 동 전원장치 신설 2조 공중선 절체렉크 설치	1,858,600	1956. 12. 30
부산전파감시국	공중선 및 전선개수 4조 25M 공중선주건주 신설 2기 동 공중선가설 신설 2조 공중선 분할증폭기 신설 6조 동 전원 공급장치 신설 2조 공중선 절체렉크 설치 신설 1대	2,261,500	1956. 12. 31

□ "電氣通信事業의 復舊計劃과 現況"중 전파관련부문

電氣通信事業의 復舊計劃과 現況

(檀紀 四二八八年九月一日)

遞信部電務局

一. 緖 言

通信事業은 國家的發達의 尺度인 同時에 政治·經濟 및 文化生活에 密接不可缺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 바, 特히 電氣通信의 發達은 英國의 産業革命以後에 있어서 近代科學文化의 産物로서 登場하여 短時日內 驚異的發達을 하여 왔으며, 現代 社會生活에 占하는 比重은 增嵩되고 있는 現狀으로서 解放以後 當局은 自重과 忍耐로서 人的 物的 兩面의 若衷과 社會混亂을 克服하며 通信使命을 完遂하는데 最善을 다하였는 바, 民族의 怨恨인 赤狗의 六二五南侵은 通信施設의 殆半을 破壞하는 結果를 招來하고 말았으니(別揭施設被害統計表 參照) 事變當時 當部는 軍作戰에 呼應하여 施設과 技術을 最大限으로 提供하여 왔음은 勿論 休戰된 現今에 있어서도 軍用電話線의 約80%以上을 當部 所管의 施設로서 構成하여 國家守護에 萬全을 期하여 왔다.

特히 通信施設은 모든 再建事業에 있어 다른 産業施設보다 優先的으로 復舊되어야 全般的復興實施에 重要한 推進을 疏通시킬것으로서 最短時日內의 效率的 復舊를 爲하여 盡力한 것으로서 玆에 事變以後로 今日에 이르기까지 電氣通信事業의 復舊經緯를 略述하면 一九五三年初에 當局은 通信施設復舊五個年計劃書를 作成하여 被害된 電信電話施設의 復舊를 五個年間에 限하여 實行토록 年次別로 施設種別 數量, 規格 및 價格을 算出하여 老朽한 舊型으로 因한 非能率的인 通信疏通을 改良하여 大都市에는 自動式電話를 中都市에는 共電式電話를 採擇하고 主要都市相互間에는 搬送電話裝置를 施設하는 한편, 電信施設 역시 搬送裝置와 高速印刷裝置를 主要都市間에 設置토록하여 日進月步하는 世界通信의 水準에 對應하도록 企劃하였으며, 同年四月 美國大統領特使 타스카博士가 來韓함을 契期로 同氏의 要請으로 前記한 五個年計劃書를 改編하여 「緊急히

必要로하는 復舊對象」에 置重한 通信施設復舊三個年計劃書를 提出하여 同氏의 全的 贊同과 資金割當에 對한 確約을 얻었으며 其外로 CRIK(Clsril Relief In Korea)와 UNKRA 等을 通하여 復舊對策을 推進中, 特히 美會計年度 一九五四年度以後에 있어는 援助事業의 主流가 FOA(美對外活動本部)의 創設과 同時에 同機構로 移行됨으로서 從來의 机上計劃에서 脫皮하여 實踐性의 順位와 緊急性을 考慮하여 前述한 五個年 乃至 三個年計劃書를 基礎로하여 FOA事業의 基本策인 一九四九年의 現存施設을 基幹으로 策定한 一九五四年度 乃至 一九五六年度 FOA援助에 依한 通信施設復舊計劃書를 各各 年度別로 提出한바 있으나 物資導入에 있어서의 政治的 技術的 및 經濟的 難點으로 말미암아 그 推進狀況은 遲遲不振한 感이 不尠 한바 今後 加一層 施策面의 合理化를 試圖하여야 할 것 임은 勿論, 特히 本計劃이 漸次的으로 實現됨으로서 通話制度를 帶域制回線方式(Zone System)(市外電話回線復舊計劃書 參照)으로 改良하여 對話地域의 制限없이 通話의 疏通을 改善하는 同時에 電信에 있어서도(電信回線復舊計劃書 參照) 高速度印刷送信機(Automatice Transmitter) 等을 裝備하여 疏通의 完璧을 期할 것이다.

玆에 當局은 自己가 意圖하는 바를 一般에 周知시키므로서 韓國復興의 一助가 되도록 衷心으로 바라는 同時에 當事者로서는 自身의 企劃과 努力自體를 再檢討하는 實材로서 本冊子가 公表됨을 多幸으로 生覺하는 바이다.

－중　　략－

三. 自體豫算으로 假復舊된 內容

(事變以後로 四二八六年度末까지)

電氣通信施設의 復舊에는 前述된 計劃에서 立證한바와 같이 莫大한 資材와 努力을 必要로 함으로 一時에 完全한 復舊는 難望한 것이다. 그러므로 當部는 外國援助에 對한 具體的計劃과 建議를 하는 一方 爲先緊急이 必要한 部門에 對하여서는 自體豫算으로서 一部擴張改良工事와 補强乃至復舊工事를 施行하였으나 本復舊는 資材의 不備로 一時的 疏通을 目標로 한 것인지 만치 永久的인 原狀復舊에는 FOA援助事業과 外國援助 等

에 依持하여야 할 것이다.

(C) 無線施設

(가) 事變以後 無線通信의 最少限度 疏通을 爲한 緊急措置로서는 送信機二七台及受信機四二台를 應急修理하여 國際通信及國內無線疏通에 供하였다.

(나) 豫備電源으로 使用될 發動發電機二六台(一台 二·五KW基準)를 修 理하여 再生에 供하였다.

(다) 國際通信에 必要한 高速度通信施設一七台를 購入하는 同時에 端局裝置三台를 修理再生하여 國際無線疏通의 圓滑를 期하였다.

(D) 電波監視施設

爲先 監視用으로 時急한 다음 機器를 復舊하여 運營하였다.

다 음

送 信 機 三台

受 信 機 二九台

錄 音 器 一三錄

發 電 機 八台

-중 략-

五. 自體豫算으로 假復舊된 內容(四二八七年度分)

(C) 無線施設

(가) 短波送信機

對美國電信電話 對香港電信에 使用할 四台와 서울 釜山間 國內電信用으로 一台를 設置하였다.

(나) 中波送信機

海岸無線業務用으로 四台를 購入하여 仁川, 釜山, 木浦 各無線局에 設置하였다.

(D) 電波監視施設復舊

前年度에 繼續하여 다음 施設을 復舊하였다.

다 음

送 信 機　二台
受 信 機　四台
周 波 數 計　三台
錄 音 器　四台

-중　　략-

七. 一九五六年度FOA計劃의 槪要

(一九五六年度FOA復舊計劃書參照)

(C) 無線施設復舊

(가) 國際通信施設復舊

國際通信用 空中線을 改新하여 通信效率을 向上시키는 同時에 對北通信 및 對마니라 電信電話回線을 開設할 計劃이다.

(나) 氣象 및 報導放送施設復

서울中央電信局과 中央觀象臺間의 現用假施設을 復舊토록 計劃하였다.

以上의 施設購入費로 277,000弗이 計上되었다.

(D) 電波監視施設復舊

本施設은 不法無線施設을 團束하고 合法的인 無線通信의 運營을 期하는 同時에 國際電氣通信聯合이 要請하는 監視事業에 協助함이 目的으로서 政府樹立以後로 本使命을 遂行키 爲하여 諸般建設業務를 進行中에 六·二五事變이 突發하여 全施設의 92%를 破壞當하여 一時業務를 中止하는 事態를 惹起하였으나 四二八五年度以後 自體豫算으로서 假復舊하여 現今에 이르었든 것이다. 따라서 本計劃은 施設의 完全復舊와 아울러 戰時體制下 不法電波를 探知함에 다음과 같은 最新式機器를 購入토록 計劃하였다.

玆에 所要되는 資材費로서 七七九三三弗이 計上되었다.

다 음

機 器 名	數 量
移動用方向探知機	3台
周波數測定器	3台
通信用受信機	6台
超短波受信機通信用	

(E) 其他

全般的通信施設이 漸次復舊乃至廣張됨으로서 모든 機器의 運營과 修理 및 業務를 擔當할 高級技術者의 訓練이 必要하게 됨으로 玆等技術者를 六個月乃至一年間 美國에 派遣하게 될 것인바 本年度의 派遣人員은 都合10名이 策定되었다.

如上의 本計劃 實現에 所要되는 一九五六年度 FOA 總援助額은 2,999,500弗로 計上되어 있다.

(F) 本計劃完成後의 假定效率

(가) 第二次通信集中局에 該當되는 四個都市의 磁石式交換機를 共電式으로 改良擴張하여 總計 4,400回線容量을 確保하게 됨으로 本年度計劃을 包含하여 一九五四年度以後로 FOA事業에 依하여 復舊確保될 電話加入者豫想은 大略 47,400名이 됨으로 復舊比率은 170%로 上昇하게 될 것이다.

(나) 十二個中都市에 對한 市內케이블의 假復舊로한 未整備回線을 完全整備하는 同時에 第一次市外通話中心局을 連結하는 市外回線의 未復舊殘餘部分을 完全復舊할 것이며 特殊地域의 連絡케이블亦是 完全整備될 것이다.

(다) 國際通信에 있어서 二個外國都市間의 電信電話回線을 新設하는 同時에 서울中央觀象臺에 對한 氣象 및 報道放送施設이 完全復舊될 것이다.

(라) 電波監視施設의 刷新으로 因하여 事變前에 實施치 못한 移動式監視가 實現될 것이다.

八. 一九五七年度及一九五八年度FOA計劃의 輪廓

(C) 無線施設

國際通信施設 및 國內, 對岸無線施設을 全般的으로 國際水準까지 到達토록 擴張改良할 것이다.

(D) 電波監視施設

電波의 利用이 漸增되는 趨勢에 비추어 다음의 機器를 購入할 것이다.

다 음

監視用中波送信機 三台

監視用短波送信機 三台

監視用超短波送信機 六台

移動監視用自動車 六台

妨害電波發射機 二台

標準電波發射機 二台

(E) 事變으로 因하여 破壞된 各地通信官署의 建物을 完全修理할 것이다.

九. 結 論

以上의 當局所管 FOA計劃의 槪要와 同計劃이 完全實現되기까지의 空間的運營의 合理化를 爲한 假復舊를 前提로한 當部自體豫算에 依한 復舊內譯의 大要를 摘記한바 要는 當務者가 本計劃에서 意圖하는바는 今次事變으로 被害를 입은 施設의 完全復舊가 그 主目的임은 再言을 要치 않는 바 한거름 나아가서 比較的近代科學의 惠澤을 받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韓國에 하루速히 玆等 現代文明의 利器를 實生活面에 實現토록하며 全國民에게 一日之速으로 均等한 機會를 가지게 하려함이 負荷된바 枝術分野에 從事하고 있는 우리의 責務일 것이다. 끝으로 本說明을 補充하는 見地에서 通信施設別內譯書를 附錄으로 別添하였다.

-중 략-

(4) 電波監視施設統計表

施設名	單位	六·二五前施設	被害數	4285年度				4286年度				4287年度				復舊累計
				復舊數	%	施設數	%	復舊數	%	施設數	%	復舊數	%	施設數	%	
送信機	台	3	3	3	100	3	100	–		3		2	66	5	166	5
受信機	台	40	30	20	67	30	75	9	30	39	97	4	14	43	101	33
發動發電機	台	15	12	6	50	9	60	2	17	11	73	–		–		8
周波數計	台	3	3	–		–	–	–				3	100	3	100	3
錄音機	台	10	10	7	70	7	70	6	60	13	130	4	40	17	170	17
配電盤	台	10	10	7	70	7	70	3	30	10	100	–		–		10
蓄電池	組	52	41	21	50	32	61	6	14	38	73	2	5	40	77	29
空中線	基	124	114	51	44	61	50	18	16	79	63	2	2	81	65	71

(註) 復舊數는 自體豫算에 依한 假復舊를 표시함

2. ITU 가입과 전파관리법의 제정

가. ITU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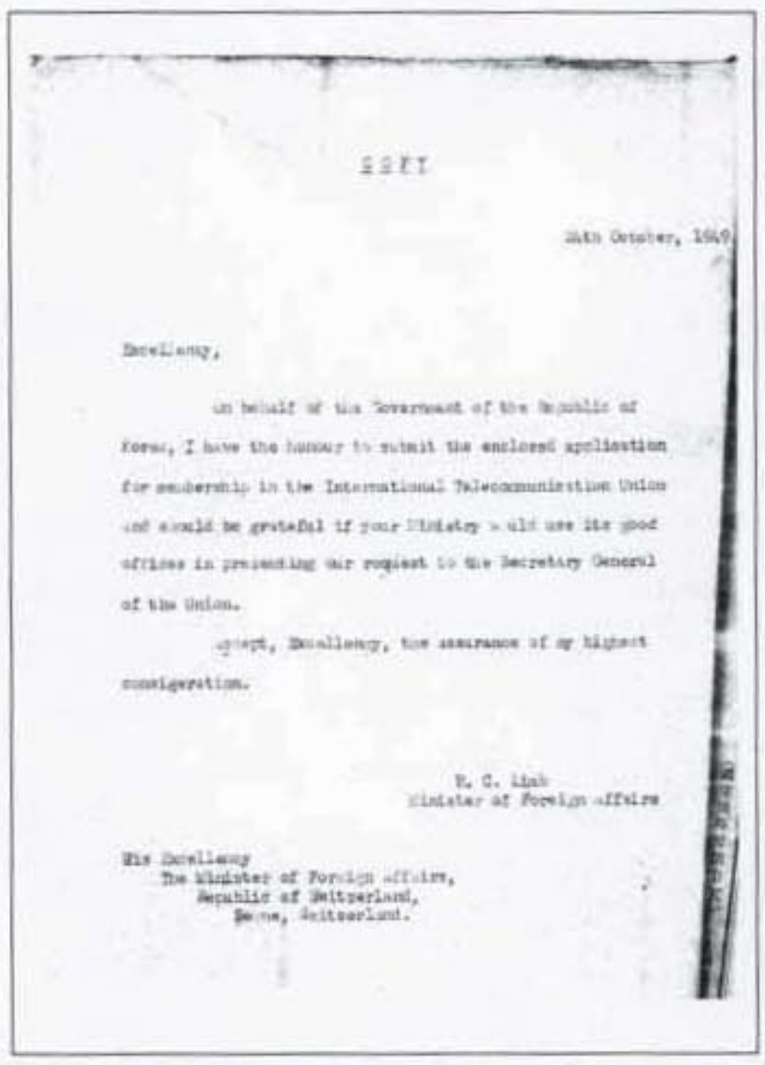

SEOUL

24th October, 1949

Excellency,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 have the honour to submit the enclosed application for membership in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and would be grateful if your Ministry would use its good offices in presenting our request t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on.

Accept, Excellency, the assurance of my highest consideration.

K. C. Limb
Minister of Foreign Affairs

His Excellency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Switzerland,
Berne, Switzerland.

▲ ITU 최초 가입신청문서(1949년 10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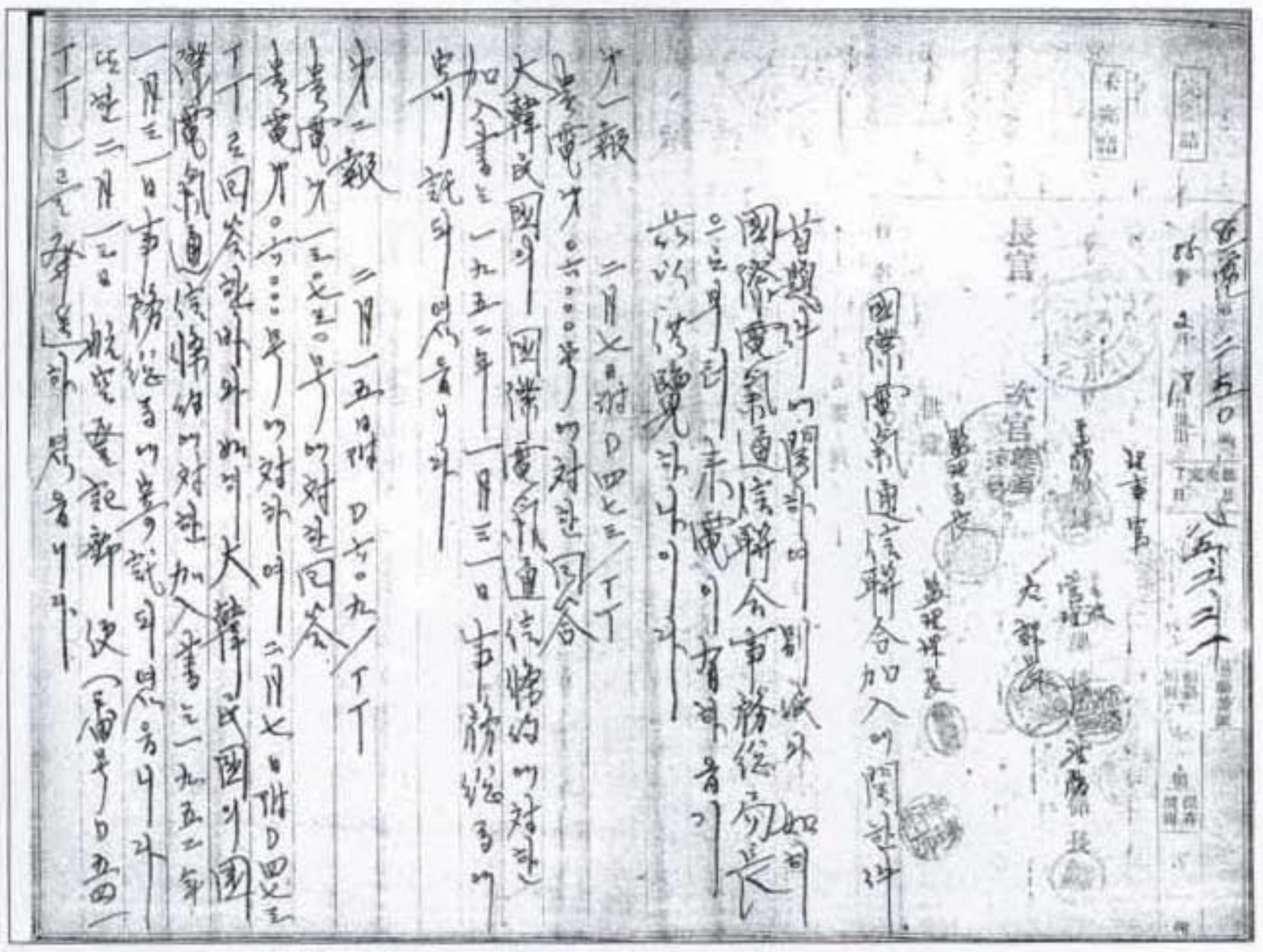

▲ ITU 최초 가입확정문서(1952년 1월 31일)

전파관리에 있어 주파수의 확보, 기술기준의 제정 및 혼신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긴밀한 국제협력이 필수요건이다. 이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무선통신이 실용화된지 얼마 안 되는 1906년에 국제무선통신조약이 체결된 바 있다.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도 호출부호와 주파수 등의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의 가입을 적극추진하여, 1949년 10월 24일 체신부장관의 요청에 의한 최초의 가입신청서가 외무부장관 명의로 발송되어 스위스 외무성을 경유하여 1949년 11월 18일에 ITU사무총국에 접수되었다. 그러나 1950년 3월 18일에 마감된 회원국의 찬반투표에서 찬성 34, 반대 10 및 기권 17로 부결되었다.

그후 1950년 5월 26일자로 재가입신청서가 발송되어, 동년 10월 19일 회원국 찬반투표에서 찬성 47, 반대 6으로 가입이 가결되었으나, 한국전쟁으로 가입수속이 지연되다가, 1951년 12월 19일자로 가입서가 발송되어 1952년 1월 31일자로 정식회원국이 되었다.

반면, 북한은 1965년 몽트뢰 전권위원회의에서 소련, 체코 등과 같이 협약상의 가입규정을 개정(회원국 2/3 이상동의에서 1/2동의) 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실패하고, 1971년 3월 9일자 재가입신청하여 1971년 7월 9일 찬성 36, 반대 40, 기권 1로 부결되었다. 그후 1975년 3월 17일자로 가입신청하여 동년 7월 17일자 회원국 투표결과 찬성 101, 반대 3, 기권 10으로 가입이 결정되어 1975년 9월 16일자의 가입서가 1975년 9월 24일자로 ITU에 기탁되어 회원국이 되었다.

나. 전파관리법의 제정

1949년 8월 15일 이전에는 전파에 관한 독립된 특별법이 없었으므로 일제하의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무선전신법, 사설무선전신 무선전화규칙, 관청용 무선전신 무선전화규칙 및 방송용 무선전화 규칙 등에 의거하였으나 이러한 규칙 등은 관료적인 일제의 유물로 일반 대중이 동 법에 의한 허가를 얻기에는 극히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따라서 무선설비 이용의 범위가 크게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다.

1952년 1월 31일 대한민국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가입하였고, 특히 국제조약 제27호로서 1954년 9월 1일에 정식으로 공포하여 시행하게된 국제전기통신조약(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체결)은 당시 헌법 제6조의 [비준 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규율을 갖게 됐다. 이로서 전파관계에 있어서는 이 조약

에 의하여 당연하고도 의무적으로 국제적인 임무의 성격을 띠게 되어 전파관리 업무의 중요성은 가중되었다.

그 결과 국제전파통신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전파발사가 외국 무선일 경우는 당해 국가의 주관청에서, 국내무선일 경우는 당해 기관에 상당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官報
관보

▲ 1961년 12월 30일 관보(법률 제924호 전파관리법 제정)

한편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24호에 의하여 전파를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공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관리법을 제정, 공포함에 따라 1915년 6월 19일 법률 제26호 및 칙령 제286호로 한국의 무선관리에 시행하고 있던 일본의 무선전신법은 전파관리법시행으로 대체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전파관리법이 제정된 다음해 3월 동 시행령이 공포되고 정국이 차츰 안정되면서 전파 이용율도 점차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본법 시행 전에는 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하거나 무선국의 운용을 1개월 이상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해야 할 강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지된 무선국에 대해서만 주무관청에서 통제를 하였을 뿐이므로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신 법령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고제를 택하였다. 이렇게 무선국의 취소와 휴지에 대한 신고제가 규정됨에 따라 1960년도 100건, 1963년도 69건, 1964년도 76건 등 다수의 미

정리된 무선국이 정리되어 국민공유의 사장된 자원을 활용하여 전파질서를 확립하고 전파이용의 실효를 거두게 되었다.

□ 1961. 12. 30 제정당시의 전파법(法律 第924號)

第 1 章 總 則

第1條(目的) 本法은 電波의 合理的인 管理를 함으로써 公共의 福祉를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本法에서 使用되는 用語는 다음과 같이 定義한다.

1. 電波 : 人工的인 導引없이 空間을 傳播하는 3千기가헬즈 以下의 周波數의 電磁波
2. 無線電信 : 電波를 利用하여 符號를 보내거나 받는 通信方式
3. 無線電話 : 電波를 利用하여 音聲 其他音響을 보내거나 받는 通信方式
4. 無線設備 : 無線電信, 無線電話 其他電波를 보내거나 받기 爲한 電氣的施設
5. 無線局 : 無線設備와 無線設備를 操作하는 者의 總體, 但 放送聽取를 爲하여 受信만을 目的으로 하는 것은 包含하지 아니한다.
6. 無線從事者 : 無線設備를 操作하거나 그 設備의 工事를 하는 者로서 遞信部長官의 免許를 얻은 者
7. 施設者 : 遞信部長官으로부터 無線局의 許可를 얻은 者

第3條(電波에 關한 條約) 電波에 關하여 條約에 따로 規定이 있는 때에는 本法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規定에 依한다.

第 2 章 無線局의 許可

第4條(無線局의 開設) ①無線局을 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遞信部長官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但 發射하는 電波가 極히 微弱한 無線局으로서 閣令의 定하는 것에 關하여는 例外로 한다.

②公衆通信業務(公衆의 一般的利用에 供하는 無線通信의 業務를 말한다)를 行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無線局은 政府가 아니면 開設하지 못한다. 但, 遞信部長官은 公衆通信業務의 運營上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業務의 一部를 他에 委託하여 取扱할 수 있다.

第5條(缺格事由) ①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無線局의 許可를 하지 아니한다.

1.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2. 外國政府 또는 그 代表者
3. 外國의 法人 또는 團體
4. 法人 또는 團體로서 前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가 그의 代表者인 때 또는 그들의 任員의 3分의 1以上이거나 議決權의 3分의 1 以上을 占하는 때
5. 本法에 規定한 罪를 犯하여 禁錮以上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날로부터 2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6. 無線局의 許可를 取消當한 날로부터 2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②前項第1號乃至第4號의 規定은 다음의 無線局의 許可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1. 實驗無線局(科學 또는 技術發展을 爲한 實驗에 專用하는 無線局을 말한다. 以下 같다)
2. 船舶安全法 第14條의 規定에 依한 船舶의 無線局

第6條(許可의 申請과 審査) ①無線局의 許可를 얻고자 하는 者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申請書를 遞信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遞信部長官은 前項의 申請書를 受理한 때에는 다음 各號에 依하여 許可의 適否를 審査하여야 한다.

1. 工事設計가 第3章의 定하는 技術基準에 適合할 것.
2. 周波數의 割當이 可能할 것
3. 當該業務를 維持할 만한 財政的基礎가 있을 것
4. 閣令의 정하는 無線局開設基準에 合致할 것

第7條(假許可) ①遞信部長官은 前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審査한 結果, 그 申請이 同項 各號에 符合된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指定하여 無線局의 假許可를 할 수 있다.

1. 無線局의 竣工期限
2. 電波와 型式 및 幅과 周波數
3. 呼出符號(標識符號를 包含한다. 以下같다) 또는 呼出名稱
4. 空中線電力
5. 運用許容時間
6. 無線從事者의 資格과 定員

②遞信部長官은 假許可를 얻은 者로부터 前項 第1號의 期限延長의 申請이

있는 境遇에 그 事由가 合當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1回에 限하여 그 期限을 延長할 수 있다.

第8條 (工事設計等의 變更) ①前條의 假許可를 얻은 者가 工事設計를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遞信部長官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但, 閣令의 定하는 輕微한 事項에 關하여는 例外로 한다.

②前項但書의 事項에 關하여 工事設計를 變更한 境遇에는 遲滯없이 그 事項을 遞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變更은 周波數電波의 型式 또는 空中線電力에 對한 變更을 招來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④前項의 假許可를 얻은 者는 遞信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通信의 相對方, 通信事項, 無線設備의 設置場所, 放送事項 또는 放送區域을 變更할 수 있다.

第9條(竣工檢査) 第7條의 假許可를 얻은 者는 無線設備가 竣工된 경우에는 遞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 그 設備와 無線從事者의 資格 및 定員에 對하여 檢査를 받아야 한다.

第10條(假許可의 取消) 第7條第1項第1號의 期限(同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期限을 延長한 때에는 그 期限)이 經過한 後 30日 以內에, 前條의 申告가 없는 때에는 遞信部長官은 그 無線局에 對한 假許可를 取消한다.

第11條(無線局의 許可) 遞信部長官은 第9條의 規定에 依한 竣工檢査를 한 結果 그 無線設備가 本法과 閣令의 定하는 無線局開設基準에 適合하고 無線從事者의 資格과 定員이 第31條 및 第37條의 規定에 違反하지 아니하는 때는 遲滯없이 그 無線局을 許可하여야 한다.

第12條(許可의 有效期間) ①許可의 有效期間은 5年을 經過하지 아니하는 範圍내에서 閣令으로 定한다. 但, 再許可를 할 수 있다.

②船舶安全法의 規定에 依하여 無線設備를 하는 船舶의 無線局(以下 義務船舶局이라 한다)과 航空法의 規定에 依하여 無線設備를 하는 航空機의 無線局(이하 義務航空機局이라 한다)의 許可의 有效期間은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無期限으로 한다.

第13條(許可狀) ①遞信部長官은 無線局을 許可한 때에는 許可狀을 交付한다.

②許可狀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한다.

1. 許可年月日 및 許可番號
2. 施設者의 姓名 또는 名稱

3. 無線局의 種別

4. 無線局의 目的

5. 通信의 相對方 및 通信事項

6. 無線設備의 設置場所

7. 許可의 有效期間

8. 呼出符號 또는 呼出名稱

9. 電波의 型式 및 幅과 周波數

10. 發振 및 變調方式

11. 空中線電力

12. 空中線의 型式 및 構成

13. 運用許容時間

14. 無線從事者의 資格 및 定員

③放送을 目的으로 하는 無線局의 許可狀에는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다음의 事項을 記載한다.

1. 前項第1號乃至第4號 및 第6號乃至第14號에 揭記하는 事項

2. 放送事項

3. 放送區域

第14條(再許可節次) 第12條第1項의 但書의 假許可는 第6條乃至第11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閣令의 定하는 節次에 依할 수 있다.

第15條(運用開始日의 申告) 施設者는 許可를 얻은 때에는 遲滯없이 無線局의 運用開始日을 遞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6條(變更等의 許可) ①施設者는 施設目的, 通信의 相對方, 通信事項과 無線設備의 設置場所를 變更하거나 無線設備의 變更工事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遞信部長官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放送을 目的으로 하는 無線局의 施設者가 放送事項 또는 放送區域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第8條第1項但書,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前項의 規定에 依한 無線設備의 變更工事를 하는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第17條(變更檢査) 前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無線設備의 設置場所의 變更 또는 無線設備의 變更工事의 許可를 얻은 施設者는 遞信部長官의 檢査를 받고 그 變更 또는 工事의 結果가 許可內容과 合致된다고 認定받은 後가 아니면 無線設備를 運用하지 못한다.

第18條(周波數等의 變更) 遞信部長官은 施設者가 呼出番號와 呼出名稱, 電波의 型式 및 幅, 周波數, 空中線電力 또는 運用許容時間의 指定의 變更을 申請한 境遇에는 混信除去其他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된 때에 限하여 指定을 變更할 수 있다.

第19條(許可의 承繼) ①施設者에 對하여 相續이 있는 때에는 相續人이 그 施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②施設者인 法人이 合併한 때에는 合併後 存續하는 法人 또는 合併에 依하여 設立된 法人은 遞信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施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但, 船舶의 無線局(以下 船舶局이라 한)과 航空機의 無線局(以下 航空機局이라 한다)의 施設者의 境遇는 例外로 한다.

③第5條의 規定은 前項의 許可에 이를 準用한다.

④無線局이 있는 船舶에 있어서 船舶所有權의 移轉, 傭船契約의 締結, 變更 또는 解除나 解止에 依하여 船舶을 運行하는 者에 變更이 있는 때에는 變更後 船舶을 運行하는 者는 施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⑤前項의 規定은 無線局이 있는 航空機에 이를 準用한다.

⑥第1項, 第2項, 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施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遲滯없이 그 事實을 證明하는 書類를 添附하여 遞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⑦前6項의 規定은 第7條의 假許可를 얻은 者에 이를 準用한다.

第20條(無線局의 廢止와 運用休止) ①施設者가 無線局을 廢止하고자 하는 때 또는 無線局의 運用을 1月以上 休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遞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施設者가 無線局을 廢止한 때에는 許可는 그 效力을 喪失한다.

第21條(許可狀의 返還) 無線局의 廢止申告를 한 施設者는 廢止한 날로부터 1月以內에 許可狀을 返還하여야 한다.

第22條(無線局의 告示) 遞信部長官은 無線局을 許可한 때에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第23條(許可의 特例) ①遞信部長官은 外國에서 取得한 船舶 또는 航空機의 無線局에 對하여는 第6條乃至第12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許可를 할 수 있다.

②前項의 許可는 그 船舶또는 航空機가 國內의 目的地에 到着한 때에는 本法의 規定하는 바에 依하여 다시 許可를 얻어야 한다.

第 3 章 無線設備

第24條(電波의 質) 送信施設에 使用하는 電波의 周波數의 偏差와 幅, 高調波의 强度等電波의 質은 閣令의 定하는 바에 適合하여야 한다.

第25條(受信設備의 條件) 受信設備는 그가 副次的으로 發生하는 電波 또는 高調波電流가 閣令의 定하는 限度를 超過하여 다른 無線設備의 機能에 支障을 주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第26條(安全施設) 無線設備에는 人體에 危害를 주거나 物件에 損傷를 주지 아니하도록 閣令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施設을 하여야 한다.

第27條(計器, 豫備品의 備置) 無線局의 無線設備에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設備의 操作에 必要한 計器, 器具 및 豫備品을 備置하여야 한다.

第28條(義務船舶局과 義務航空機局의 條件) ①義務船舶局의 無線電信에는 閣令의 定하는 條件에 適合한 補助設備를 하여야 한다.

②義務船舶局과 義務航空機局의 無線設備의 條件에 관하여는 閣令으로 定한다.

第29條(技術基準) 無線設備(放送의 聽取만을 目的으로 하는 것을 除外한다.)는 本章에 規定하는 것 외에 閣令의 定하는 技術基準에 適合하여야 한다.

第 4 章 無線從事者

第30條(無線設備의 操作과 工事) 無線局의 無線設備는 第31條의 規定하는 바에 依하여 無線從事者가 아니면 이를 操作하거나 그 工事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但, 船舶 또는 航空機가 航行中이어서 無線從事者를 補充할 수 없는 때나 其他閣令의 定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31條(無線從事者의 資格) ①無線從事者의 資格은 第一級無線通信士, 第二級無線通信士, 第三級無線通信士, 電話級無線通信士, 第一級無線技術士, 第二級無線技術士, 第三級無線技術士, 特殊無線技士, 第一級아마추어無線技士, 第二級아마추어無線技士, 第三級아마추어無線技士로 한다.

第32條(免許) 無線從事者가 되고자하는 者는 閣令의 定하는바에 依하여 施行하는 無線從事者資格考試(以下 資格考試라 한다)에 合格한 後 遞信部長官의 免許를 얻어야 한다.

第33條(免許를 附與하지 아니하는 境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 無線從事者의 免許를 附與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本法에 規定한 罪를 犯하여 罰金以上의 形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날로부터 2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2. 無線從事者의 免許를 取消當한 날로부터 2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3. 身體 또는 精神上의 缺格으로 因하여 職務遂行에 適合하지 아니한 者

第34條(免許의 有效期間) 無線從事者의 免許의 有效期間은 免許로부터 起算하여 5年으로 한다.

第35條(免許의 更新) ①無線從事者는 同一한 資格에 對한 免許의 更新을 申請할 수 있다.

②遞信部長官은 前項의 申請을 한 者가 本法 또는 本法에 依한 命令에 違反하지 아니하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同一한 資格에 對하여 免許의 更新을 하여야 한다.

1. 免許의 有效期間中 通算하여 2年6月以上 當該業務에 從事한 者
2. 免許의 有效期間中 通算하여 1年6月以上 및 申請前年以內에 6月以上 當該業務에 從事한 者

③前項各號의 境遇에 兵役義務를 畢하기 爲하여 軍에 服務하는 者에 對하여는 其 期間中當該業務에 從事한 것으로 본다.

④第1項의 申請을 한 者가 第2項 各號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資格考試의 一部를 免除할 수 있다.

⑤遞信部長官은 第2項에 規定한 本法 또는 本法에 依據한 命令에 違反한 事項이 輕微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6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免許의 更新을 保留할 수 있다.

⑥免許의 更新에 關하여는 第33條 및 第3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36條(資格考試 및 免許) 無線從事者의 資格考試 및 免許에 關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37條(通信長의 配置 無線從事者의 資格別定員) ①다음 表의 上欄에 揭記하는 船舶無線電信局(船舶局으로서 無線電信에 依하여 無線通信을 行하는 것을 말한다)에는 各 下欄에 揭記하는 無線通信士를 通信長으로 配置하여야 한다.

②國際航空에 從事하는 航空機局으로서 無線電信에 依하여 無線通信을 行하는 航空機의 通信長에는 無線通信士의 資格을 얻고 50時間 以上 航空機의 無線通信業務에 從事하고 現在 第一級無線通信士의 免許를 가진 者를 配

置하여야 한다.

③前2項에 規定하는 通信長 外의 無線局에 配置하여야 할 無線從事者의 資格과 定員에 關하여 閣令으로 定한다.

船舶無線電信局	通 信 長
第1種局(總屯數 3千屯 以上의 旅客船 및 總屯數 5千5百屯을 超過하는 旅客船 以外의 船舶의 船舶無線電信局을 말한다. 以下같다.)	通信長이 되기전 15年 以內에 있어서 船舶無線電信局의 第1級無線通信士로 4年 以上 業務에 從事하고 現在 第1級無線通信士의 免許를 가진者
第2種局甲(船舶安全法 第4條의 船舶으로서 總屯數 3千屯 未滿 5百屯 以上의 旅客船 또는 總屯數5千5百屯 以下 千 6百屯 以上의 旅客船 以外의 船舶의 無線電信局을 말한다. 以下 같다.)	通信長이 되기전 15年以內에 있어서 船舶無線電信局의 第1級無線通信士로 2年 以上 또는 第2級無線通信士로 4年 以上 業務에 從事하고 現在 第1級無線通信士의 免許를 가진者
第2種局 乙(旅客船 以外의 船舶의 無線電信局 (第1種局 및 第2種局甲에 該當하는 것을 除外한다.) 으로서 公衆通信業務를 取扱하는 것 또는 船舶無線電信局(第1種局 및 第2種局甲에 該當하는 것을 除外한다.)을 말한다. 以下같다.)	第1級 無線通信士의 免許를 가진者 또는 通信長이 되기전 10年 以內에 있어서 船舶無線電信局이나 海岸局 (船舶과 通信을 행하기 위하여 陸上이에 開設하는 無線局을 말한다.)의 第2級無線通信士로 1年 以上 業務에 從事하고 現在 第2級無線通信士의 免許를 가진者

第 5 章 運　用

第38條(目的外 使用의 禁止 等) 無線局은 許可狀에 記載된 目的 또는 通信의 相對方과 通信事項(放送을 目的으로 하는 無線局에 있어서는 放送事項)의 範圍內에서 運用하여야 한다. 但, 다음의 通信에 關하여는 例外로 한다.

1. 遭難通信(船舶 또는 航空機가 重大하고 急迫한 危險에 處한 境遇에 遭難信號를 前置하고 行하는 無線通信을 말한다. 以下같다.)
2. 緊急通信(船舶 또는 航空機가 重大하고 急迫한 危險에 處할 憂慮가 있는 境遇 其他 緊急한 事態가 發生한 境遇에 緊急信號를 前置하고 行하는 無線通信을 말한다. 以下같다.)
3. 安全通信(船舶 또는 航空機의 航行에 對한 重大한 危險을 豫防하기 爲하여 安全信號를 前置하고 行하는 無線通信을 말한다. 以下같다.)

4. 非常通信(地震, 颱風, 洪水, 海溢, 雪害, 火災 其他非常事態가 發生하거나 또는 發生할 憂慮가 있는 境遇에 有線通信을 利用할 수 없거나 이를 利用하기 困難한 때에 人命의 救助, 災害의 救護, 交通通信의 確保 또는 秩序維持를 爲하여 行하는 無線通信을 말한다. 以下같다.)
5. 放送의 受信
6. 其他 閣令으로 定하는 通信

第39條(無線局의 運用) ①無線局을 運營하는 境遇에는 無線設備의 設置場所, 呼出符號 또는 呼出名稱, 電波의 型式, 周波數發振과 變調方式, 空中船의 型式과 構成은 許可狀에 記載된 바에 依하여야 한다. 但, 遭難通信은 例外로 한다.

②無線局을 運用하는 境遇에 空中線電力은 許可狀에 記載된 範圍內에서 通信을 하기 爲하여 必要한 最少의 것이라야 한다. 但, 遭難通信은 例外로 한다.

第40條(無線局의 運用) 無線局은 第7條第1項第5號와 第13條第2項第13號에 依하여 指定하는 運用許容時間內에 運用하여야 한다. 但, 第38條各號에 依한 通信을 行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41條(混信等의 防止) 無線局은 다른 無線局의 運用을 해할 混信 其他의 妨害를 하지 아니하도록 運用하여야 한다. 但, 第38條第1號乃至第4號의 通信에 關하여는 例外로 한다.

第42條(秘密의 保護) 누구든지 法律에 特別히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無線局이 取扱하는 無線通信을 接受하거나 無線通信에 關하여 知得한 他人의 秘密을 漏泄 또는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3條(擬似空中線回路의 使用) 無線局은 다음의 境遇에는 可能한 限 擬似空中線回路를 使用하여야 한다.

1. 無線設備의 機器試驗 또는 調整을 行하기 爲하여 運用할 때
2. 實驗無線局을 運用할 때

第44條(實驗無線局等의 通信) ①實驗無線局은 外國의 實驗無線局과 通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實驗無線局과 아마추어無線局의 行하는 通信에는 暗語를 使用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5條(時計, 業務書類等의 備置) 無線局에는 正確한 時計, 無線檢査簿, 無線業務日誌 其他 閣令의 定하는 書類를 備置하여야 한다.

但, 閣令의 定하는 無線局에 對하여는 이들의 全部 또는 一部의 備置를 省略할 수 있다.

第46條(通信方法等) 無線局의 呼出 또는 應答方法 其他의 通信方法, 時刻의 照合, 補助設備, 救命艇의 無線設備, 方位測定裝置와 警報自動受信機의 調整 其他 無線設備의 機能을 維持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47條(船舶局等의 運用) ①船舶局의 運用은 그 船舶의 運行中에 限하고 航空機局의 航行中 및 航行準備中에 限한다. 但, 受信裝置만을 運用할 때, 第38條各號의 通信을 할 때 其他 閣令의 定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②海岸局 또는 航空局(航空機局과 通信을 行하기 爲하여 陸上에 開設하는 無線局을 말한다.)은 船舶局 또는 航空機局으로부터 自局의 運用에 妨害를 받을 때에는 妨害하고 있는 船舶局 또는 航空機局에 對하여 그 妨害를 除去하기 爲하여 必要한 措處를 取하도록 要求할 수 있다.

③船舶局 또는 航空機局은 海岸局 또는 航空局과의 通信에 있어서 通信의 順序, 時刻, 使用電波의 型式 또는 周波數에 對하여 海岸局 또는 航空局으로부터 指示를 받을 때에는 그 指示에 따라야 한다.

第48條(運用時間) ①船舶無線電信局은 그 船舶의 航行中은 第1種局에 있어서는 常時 第2種局과 第3種局甲 總屯數 千600屯未滿 五百屯以上의 旅客船 以外의 船舶安全法 第4條의 船舶의 船舶無線電信局으로서 公衆通信業務를 取扱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以下같다)에 있어서는 閣令에 定하는 時間表에 依한 時間에 依하여 運用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時間表의 時間은 第2種局甲은 1日16時間, 第2種局乙은 1日8時間, 第3種局甲은 1日4時間으로한다.

③海岸局 또는 航空局은 常時運用하여야 한다. 但, 閣令의 定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④義務航空機局의 運用時間은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야 한다.

第49條(沈默時間) ①海岸局과 船泊局은 國際標準時에 의한 每時 15分 및 45分부터 3分間(以下 第1沈默時間이라 한다.) 485키로싸이클부터 515키로싸이클까지의 周波數의 電波를 發射하지 못한다. 但, 遭難通信, 緊急通信을 行하는 境遇 또는 第1沈默時間終了前 20秒間 安全信號를 送信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②海岸局 및 船舶局은 每時 6分以內의 範圍內에서 閣令이 定하는 時間(以下

第2沈默時間이라 한다.)에는 前項의 周波數以外의 電波를 發射하지 못한다.

③第1項但書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第50條(聽守義務) ①500키로싸이클의 周波數의 指定을 받은 第1種局, 第2種局甲과 國際航海에 從事하는 旅客船의 第2種局乙은 500키로싸이클의 周波數로써 常時 聽守하여야 한다.

②500키로싸이클의 周波數의 指定을 받고 있는 海岸局, 第2種局乙(國際航海에 從事하는 旅客船은 除外한다.)과 第3種局甲은 運用하여야 할 時間(以下 運用義務時間이라 한다)中에는 500키로싸이클의 周波數로서 聽守하여야 한다

③前2項의 無線局은 運用義務時間中 第1沈默時間을 除外하고 現在 通信中인 境遇에는 前2項의 規定에 의한 聽守를 要하지 아니한다. 但, 警報自動受信機를 施設하고 있는 船舶無線電信局은 例外로 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無線局은 運用義務時間中에는 警報自動受信機에 의하여 聽守하여서는 아니된다. 但, 現在 通信中인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⑤閣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周波數의 指定을 받고 있는 海岸局 및 船舶局은 運用義務時間中 그 周波數로써 聽守하여야 한다.

⑥第3種局乙(第1種局, 第2種局과, 第3種局甲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船舶無線電信局을 말한다. 以下같다)은 2時間의 範圍에서 閣令의 定하는 周波數로서 聽守하여야 한다. 但, 現在 通信中인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51條(同前) 航空局과 航空機局은 運用義務時間中에는 閣令의 定하는 周波數로서 聽守하여야 한다.

第52條(遭難通信) ①海岸局과 船舶局은 遭難通信을 受信한 때에는 다른 모든 無線通信에 優先하여 卽時 應答하고 遭難을 當하고 있는 船舶 또는 航空機를 救助하기 爲하여 가장 便利한 位置에 있는 無線局에 對하여 通報하는 等 救助通信에 關하여 最善의 措處를 取하여야 한다.

②無線局은 遭難信號를 受信한 때에는 遭難通信을 妨害할 憂慮가 있는 電波의 發射를 卽時 中止하여야 한다.

第53條(緊急通信) ①海岸局과 船舶局은 遭難通信 다음의 優先順位로서 緊急通信을 取扱하여야 한다.

②海岸國과 船舶局은 緊急信號를 受信한 때에는 遭難通信을 行하는 境遇에는 最少 3分間 繼續하여 이를 受信하여야 한다.

第54條(安全通信) ①海岸局과 船舶局은 迅速하고 正確하게 安全通信을 取扱하여야 한다.

②海岸局과 船舶局은 安全信號를 受信한 때에는 그 通信이 自國에 關係없다는 것을 確認할 때까지 安全通信을 受信하여야 한다.

第55條(船舶局의 機器調整을 爲한 通信) 海岸局 또는 船舶局은 다른 船舶局으로부터 無線設備의 機器調整을 爲한 通信을 要請받은 때에는 支障이 없는 限 이에 應하여야 한다.

第56條(通信圈 出入通知) ①船舶局은 海岸局의 通信圈에 들어온 때와 通信圈을 떠날 때에는 그 뜻을 그 海岸局에 通知하여야 한다. 但, 閣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

②第1項의 海岸局의 通信圈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57條(準用) 第49條第1項 및 第51條 乃至 第54條의 規定은 航空機局의 運用에 이를 準用 한다.

第58條(航空機局의 通信連絡) 航空機局은 그 航空機의 航行中에는 閣令의 定하는 方法에 依하여 閣令의 定하는 航空局과 連絡을 하여야 한다.

第59條(其他運用條件) 無線局의 運用에 關하여는 本章의 規定外에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 6 章 檢　査

第60條(無許可無線局等의 檢査) 遞信部長官은 許可없이 無線局을 開設하거나 運用한 者 또는 第72條第1項의 設備를 하거나 運用한 者가 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關係 公務員을 派遣하여 無線設備의 檢査를 行하게 할 수 있다.

第61條(定期檢査) 遞信部長官은 每年1回 미리 通知하는 期日에 關係公務員을 無線局에 派遣하여 無線設備, 無線從事者의 資格과 定員, 第45條 時計와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但, 檢査를 每年 行할 必要가 없다고 認定하는 無線局과 外國航行中인 船舶, 航空機의 無線局에 關하여는 例外로 한다.

第62條(臨時檢査) ①遞信部長官은 第65條第1項에 依하여 電波發射의 停止를 命한 때, 同條 第2項의 申告가 있을 때, 無線局이 있는 船舶이 外國에 出航하고자 하는 때 其他本法의 施行을 保障하기 爲하여 特히 必要가 있는 때에는 關係公務員을 無線局에 派遣하여 無線設備, 無線從事者의 資格과 定員, 第71條의 時計와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遞信部長官은 放送의 受信을 目的으로 하는 受信設備의 對하여 第71條의 措置를 命한 境遇에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關係公務員을 當該 設備가 있는 場所에 派遣하여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第63條(證票의 提示) 本章의 規定에 依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施設者 其他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7章 監 督

第64條(周波數등 의 變更과 損失補償) ①遞信部長官은 電波의 規定 其他 公益上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當該無線局의 目的遂行에 支障을 주지 아니하는 範圍내에서 無線局의 周波數 또는 空中線電力의 指定을 變更 할 수 있다.

②政府는 前項에 依하여 無線局의 周波數 또는 空中線電力의 指定을 變更함으로써 發生한 損失을 當該 施設者에게 補償하여야 한다. 但, 施設者의 要請에 의하여 變更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③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補償을 할 損失은 前項의 處分으로 인하여 通常 發生할 損失로 한다.

④第2項의 補償金額에 對하여 不服이 있는 者는 補償金額決定의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月以內에 訴로써 그 增額을 請求할 수 있다.

第65條(電波의 發射의 停止) ①遞信部長官은 無線局에서 發射하는 電波의 質이 第24條의 規定에 依한 閣令의 定하는 것에 適合하지 아니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當該 無線局에 對하여 臨時로 電波發射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②遞信部長官은 前項의 命令을 받은 無線局으로부터 發射하는 電波의 質이 第24條의 規定에 依한 閣令의 定하는 것에 適合하게 되었다고 申告가 있는 때에는 그 無線局에 對하여 試驗電波를 發射하게 하여야 한다.

③遞信部長官은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發射하는 電波의 質이 第24條의 規定에 依한 閣令의 定하는 것에 適合하게 된 때에는 卽時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停止命令을 解除하여야 한다.

第66條(非常事態에 있어서의 無線通信) ①遞信部長官은 地震, 颱風, 洪水, 海溢, 雪害, 火災 其他의 非常事態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는 境遇에는 人命救助, 災害救護, 交通通信의 確保 또는 秩序維持를 爲하여 必要한 通信을 無線局에 行하게 할 수 있다.

②遞信部長官이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無線局에 通信을 行하게 한 때에는 政府는 그 通信에 要한 實費를 補償한다.

第67條 (無線局의 許可取消 等) ①遞信部長官은 施設者가 第5條第1項第1號乃至 第4號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얻을 수 없는 者가 된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②遞信部長官은 施設者가 本法 또는 本法에 依한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한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3月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無線局의 運用의 停止를 命하거나 期間을 定하여 運用許容時間, 周波數 또는 空中線電力을 制限할 수 있다.

③遞信部長官은 施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非常事態가 發生한 때
2. 混信防止上 必要한 때

④遞信部長官은 施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正當한 事由없이 繼續하여 6月以上 無線局의 運用을 休止한 때
2. 不正한 方法으로 無線局의 許可 또는 第16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얻거나 第18條의 規定에 依한 指定의 變更을 하게 한 때
3. 第2項 또는 第3項에 依한 命令 또는 制限을 違反한 때
4. 施設者가 第5條第1項第5號에 該當하게 된 때

第68條(空中線의 撤去) 無線局의 許可의 效力이 喪失된 때에는 施設者이었던 자는 遲滯없이 空中線을 撤去하여야 한다.

第69條(無線從事者의 免許의 取消 等) ①遞信部長官은 無線從事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免許를 取消하거나 3月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業務從事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1. 本法 또는 本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한 때
2. 不正한 手段으로 免許 또는 免許의 更新을 받은 때
3. 第33條第3號에 該當하게 된 때

②遞信部長官은 前項의 規定에 依한 處分을 한 때에는 그 理由를 記載한 文書를 本人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第70條(報告) ①施設者는 다음의 境遇에는 閣令의 定하는 節次에 依하여 遞

信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1. 遭難通信, 緊急通信, 安全通信 또는 非常通信을 行한 때
2. 本法 또는 本法에 依한 命令에 違反하여 運用한 無線局을 認知한 때
3. 遞信部長官이 許可한 無線局以外의 無線設備에서 電波가 發射된 것을 認知한 때
4. 無線局이 外國에서 미리 遞信部長官이 告示한 以外의 運用制限을 받은 때

②遞信部長官은 無線通信의 秩序維持 其他 無線局의 適正한 運用을 確保하기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施設者에 對하여 無線局에 關한 報告를 하게 할 수 있다.

第71條(受信設備에 대한 監督) 遞信部長官은 第4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要하지 아니하는 無線局(許可를 要하지 아니하는 無線局이라 한다. 以下같다)의 無線設備가 發射하는 電波 또는 受信設備가 副次的으로 發하는 電波 또는 高周波電流가 다른 無線設備의 機能에 繼續的으로 重大한 障害를 주는 境遇에는 그 設備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 對하여 그 障害를 除去하기 爲하여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 8 章 雜 則

第72條(高周波利用設備) ①다음의 設備를 하고자 하는 者는 遞信部長官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1. 電線路에 10키로싸이클 以上의 高周波電流를 通하는 電信電話 其他 通信設備(케이블搬送設備 및 平衡2線式 裸線搬送設備를 除外한다.)
2. 無線設備 및 前號의 設備以外의 設備로서 10키로싸이클 以上의 高周波電流를 利用하는 것中 閣令으로 定하는 것

②前項의 許可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遞信部長官은 當該 申請이 第24條, 第26條 또는 第29條의 技術基準에 適合하며 當該 申請에 依한 周波數의 使用이 다른 通信에 妨害를 주지 아니한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

③第13條第1項 및 第2項(許可狀), 第16條(變更等의 許可), 第20條(無線局의 廢止와 通用休止), 第21條(許可狀의 返還), 第26條(安全施設), 第29條(技術基準), 第62條(臨時檢查), 第63條(檢查官證의 提示), 第65條(電波發射의 停止), 第67條第2項 및 第3項(無線局의 許可取消等)과 第70條第2項(報告)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얻은 設備에 이를 準用한다.

第73條(無線設備의 機能의 保護) 第71條의 規定은 無線設備以外의 設備(前條의 設備를 除外한다.)에서 副次的으로 發하는 電波 또는 高周波電流가 無線設備의 機能에 繼續的으로 重大한 障害를 주는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第74條(同前) ①遞信部長官이 施設한 無線方位測定裝置의 設備場所에서 1키로미터以內의 地域에 電波를 妨害할 憂慮가 있는 建造物 또는 工作物로서 閣令이 定하는 것을 建設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그 事實을 遞信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無線方位測定裝置의 設置場所는 遞信部長官이 公告한다.

第75條(手數料의 徵收) 다음에 偈記하는 者는 閣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1. 第6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申請하는 者
2. 第9條, 第17條, 第61條, 第62條의 規定에 依한 檢査를 받는 者
3. 第32條의 規定에 依한 無線從事者 資格考試申請을 하는 者와 免許證을 申請하는 者
4.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免許의 更新을 申請하는 者로서 同條第2項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
5. 許可狀 또는 免許證의 再交付를 申請하는 者

第 9 章 罰　則

第76條 (罰 則) ①無線通信業務에 從事하는 者가 第52條第1項(第56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依한 遭難通信의 取扱을 하지 아니한 때 또는 遲延시킨 때에는 1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遭難通信의 取扱을 妨害한 者도 前項과 같다.

③第2項의 未遂犯은 이를 處罰한다.

第77條(同前) ①無線設備 또는 第72條第1項第1號의 通信設備에 依하여 大韓民國憲法 또는 政府를 暴力으로 破壞할 것을 主張하는 通信을 發한 者는 3年以上의 有期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②前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③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以上의 有期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第78條(同前) ①自己 또는 他人의 利益을 爲하거나 他人에게 損害를 가할 目的으로 無線設備 또는 第72條第1項第1號의 通信設備에 依하여 虛僞의 通信을 發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30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船舶遭難 또는 航空機遭難이 없음에도 不拘하고 無線設備에 依하여 遭難通信을 發한 者는 3月以上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③無線通信業務에 從事하는 者가 第1項의 行爲를 한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0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하고 前項의 行爲를 한 때에는 1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第79條(同前) ①公衆通信業務 또는 放送業務에 供用하는 無線局의 無線設備 또는 人命 및 財産의 保護, 公安維持, 氣象業務에 供用하는 無線設備을 損壞하여 이에 物品을 接觸하거나 其他 無線設備의 機能에 障害를 주어 無線通信을 妨害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 또는 70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前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80條(同前) 無線設備 또는 第72條第1項第1號의 通信設備에 依하여 淫亂한 通信을 發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 또는 20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81條 (同前) ①第42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10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無線通信業務에 從事하는 者가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2年以下의 懲役 또는 20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82條(同前)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年以下의 懲役 또는 20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없이 無線局을 開設하거나 無線局을 運用한 者
2. 第7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없이 同條同項의 設備를 하거나 이를 運用한 者

第83條 (同前)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10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8條乃至 第40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無線局을 運用한 者
2. 第17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無線設備를 運用한 者
3. 第65條第1項, 第67條第2項 또는 同條 第3項(第72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各各 包含한다.)의 規定에 依하여 電波의 發射 또는 運用이 停止된 無線局 또는 第72條 第1項의 設備를 運用한 者

4. 第60條, 第61條 또는 第62條(第72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依한 檢査를 拒否하거나 妨害한 者

5. 第66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措置를 拒否한 者

第84條 (同前)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5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7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第67條第2項 또는 同條第3項(第72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依한 運用制限에 違反한 者

第85條 (同前)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3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0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第49條第1項(第56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者

3. 第68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4. 第69條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의 從事를 停止 當한 後 無線設備의 操作 또는 工事를 한 者

5. 第71條의 規定에 依한 命令에 違反한 者

第86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其他 從事者가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82條 乃至 前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處罰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對하여도 各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87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萬圓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

1. 第19條第6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21條(第72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違反하여 許可狀을 返還하지 아니한 者

附　　則

第1條(施行期日) 本法은 196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廢止法令) 1915 勅令第186號 無線電信法을 朝鮮, 臺灣 및 樺太에 施行하는 件은 本法施行과 同時에 이를 廢止한다.

第3條(經過措置) ①本法施行 當時 1951年 12月 1日 大統領令第57號無線通信士 資格檢定令(以下檢定令이라 한다)에 依하여 다음 表上欄에 偈記하는 資格이 있는 者는 本法에 依한 同表下欄에 偈記하는 資格의 免許를 받은 것으

로 본다. 이 境遇에 免許의 有效期間은 舊資格의 免許有效殘餘期間으로 한다.

②本法施行 當時 檢定令에 依하여 聽守員級無線通信士의 資格이 있는 者는 그 免許有效期間滿了日까지 그 資格을 가진다.

③本法施行 當時 檢定令에 依하여 第2級아마추어無線通信士의 資格이 있는 者는 本法施行日로부터 2年間 그 資格을 가진다.

舊資格	新資格
第 1 級 蕪 線 通 信 士	第 1 級 蕪 線 通 信 士
第 2 級 蕪 線 通 信 士	第 2 級 蕪 線 通 信 士
電 話 級 蕪 線 通 信 士	電 話 級 蕪 線 通 信 士
第 1 級 아마추어 蕪 線 通 信 士	第 1 級 아마추어 蕪 線 技 士

第4條 (同前) 本法施行 當時 免許없이 無線設備의 通信操作 또는 技術操作에 從事하는 者는 第30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本法 施行日로부터 1年間에 限하여 無線通信士 또는 無線技術士 資格없이 當該 操作에 從事할 수 있다.

第5條 第37條第1項의 第1種局通信長의 資格에 있어서는 本法施行日로부터 2年間은 同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業務從事期間을 2年으로 한다.

第6條 (同條) 從前의 法令에 依하여 電波管理에 關하여 發한 命令이나 處分, 節次 其他의 行爲는 本法中 이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本法에 依하여 한 것으로 본다. 이 境遇에 第5條第1項第1號乃至第4號의 規定에 該當되는 無線局에 對한 許可의 有效期間은 第12條제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本法施行日로부터 1年間으로 한다.

제 4 절 관련자료

I. 전파감시에 관한 기고문

가. 전파감시업무의 중요성

1) 서 설

현하 아국의 실정에 비추어서 무선통신감시업무는 더욱 중대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만약 무선통신에 있어서 임의로 주파수를 선택해서 통신을 하고 또는 상호간 교신함에 있어서 기상 논쟁 또는 사담과 잡담 등을 장시간에 걸쳐서 감행한다면 정확신속을 기하여야 할 무선통신소통은 질서를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현 실정에 비추어서 무선을 이용하여 허허실실의 정보를 교환하는 불법전파범(간첩통신) 등을 엄중히 감시하여야 할 것이다.

고로 여기에 설명하고자 한 것은 감시업무의 중요한 요점을 아래에 기하고자 한다.

2) 전파감시업무의 중요한 요점

불법전파의 포착, 간첩통신의 적발, 시설목적외 통신의 적발, 요금감탈겸의문의 전보적발, 주파수측정, 혼신방지 및 통신소통강화조치, 부정주파수의 적발, 통신질서확립조치, 호출응답지연방지조치, 침묵시간불이행에 대한 조치, 조난전파(SOS)의 재령적부의 감시, 표준주파수발사, 시보발사, 정밀주파수측정, 전파발사의 임시정지명령, 전파이동감시, 불법시설자조사(한단파), 무선전신전화시설검정(정기 및 임기) 등등을 엄중히 감시하여 적발하여야 할 것이다.

3) 다음에 중요한 몇 가지 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가하고자 한다.

① 전파통제의 중요성

무선전파의 혼신문제는 무선통신운영상 대 난관인 문제로서 전파할당과 그 사용에 대하여서는 하등의 통제를 가하지 않으면 무선통신의 기능은 근본적으로 파기될 것이므로 국가권력에 의한 강력한 전파통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체신부장관의 명령으로서 전파의 할당사용통신방법 등에 의하여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일단 허가한 사설 무선전신전화라 할지라도 혼신방지 기타 공중통신이나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전력과 주파수 변경 장치방식의 개장 또는 사용정지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처분 또는 명령에 불복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자에 대하여 또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용정지 사용제한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처벌을 가함으로써 전파통제의 완수를 기하여야 한다.

② 시설목적외통신의 적발과 중요성

무선통신 무선전화의 불법시설과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사설 무선전신전화를 사용한자 또는 적법으로 시설한 무선통신시설이라 할지라도 시설 목적 외에 사용할 때에는 정부의 통신전장권을 침해당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기 위하여서는 전파감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용이하지 아니할 것이다.

③ 침묵시간엄수의 중요성

침묵시간이라 함은 사설 무선전신 무선전화는 물론 일반으로 선박국 및 해안국에 있어서 조난통신을 행하는 경우 기타 특히 규정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G · M · T)표준시간에 의한 매시 15분 및 45분부터 각 3분간 485kc/s~515kc/s간의 전파의 발신을 금하고 있다.

침묵시간제도의 설정은 타 통신으로부터 혼신 방해 등으로 인하여 조난통신의 호출 청취를 불능케 하기 쉬운 고로 제도를 설정한 것이다. 이 침묵시간은 국제전기통신 조약 부속 무선통신규칙에 의한 것으로 해상에 있어서 인명재화의 보전상 긴요한 것이다.

무선통신에 종사하는 자는 특히 엄격 신중하게 이행함은 물론 침묵시간에 있어서 선박에 시설한 사설 무선전신 및 해안국은 우주파수에 의한 발신을 중지할 뿐만 아니라 그의 통신업무시간 및 청수시간 내에 있어서의 침묵시간에는 조난전파인 500kc/s의 주파수로서 엄중히 청수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④ 불법시설의 강력단속의 중요성

무선통신의 강력단속(경찰권)의 작용은 본래 내정부분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내무장관이 소관하는 바이나 무선통신전화에 관한 경찰 소위 통신경찰 같은 것은 실제문제로서 무선통신 주무관청인 체신부장관이 아니면 실행하기가 곤란하므로 체신부장관이 사정하는 것이다.

무선통신 무선전화에 의한 불법 발신은 즉시로 우주전체에 전파해서 타 통신에 간섭방해를 끼치고, 또 극히 간단한 장치로서 전세계에 걸쳐 허허실실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실정이므로 그의 통제단속은 극히 중요하며 불법통신같은 것은 엄중히 감시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상과 같이 전파감시업무의 중요한 점을 열거한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감시하고 있으며 무선통신운영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 하겠다.

앞으로 무선통신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무선통신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가일층 노력을 가하여 감시업무에 대해서 연구를 거듭하면서 감시업무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파감시 기기 시설면에 있어서 앞으로 정밀한 감시업무 완수를 기하기

위해서는 감시업무 수행상 필요한 기기 등을 최신식기기로 대체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아국의 현 실정에 비추어서 불법전파(간첩통신)의 적발에 대하여서는 감시업무에 당하는 각자는 가일층 노력을 가하여 철저히 감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체신문화 제50호(1958년 12월 · 유만중)

나. 전파감시업무의 국제법상 의의

1) 서 론

전파감시라함은 국가의 보육행정으로 국가가 문화를 향상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기업을 경영하고 영조물을 시설관리하는 공기업으로서의 활동으로서 일반무선전신 무선전화의 감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의 불법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무선전신 무선전화의 개념은 최근 기기의 발명발달에 따라 그 의의가 상당히 광범위하여 통상 사용되는 무선전신 무선전화와 라디오방송, 자동통신(FSK), 모사통신(훼시밀), 사진전송(A4) 테레비죤(A5) 방향탐지 내지 레이더 등도 포함된다.

이들은 전파를 이용함으로써 전파통신이라고도 하게된다. 이와 같이 광범위하고 또 양질 공히 방대한 통신시설은 일익 증가하는 통신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정부가 시설관리하는 공중통신시설외에도 관청용 및 사설무선전신시설이 증가되어 상호 혼신방해되기 쉽고 통신질서도 문란하여질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감시 감독 즉 통제가 필요하게 된다.

무선통신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간에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으므로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연 국제적으로 상호협조하여 통제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여기에 국제전기통신조약에 규약된 비업무의 의의와 내용을 논하는 바이다.

2) 전파감시업무의 국제법상의 지위

국가의 통신기능은 인류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소위 통신이라 함은 격지자간에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데 고립하여 생존할 수 없는 인류의 사회생활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과 같이 [인간은 그 천성이 사회적인 동물이다]하여 필연적으로 상호 연대의 관계를 갖게 되며 상호 협조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상호 유대관계를 갖게되며 인류의 행복에 기여되는 바가 많은 것이다.

현재 국제간의 친선은 점점 돈독하여져 가고 있으며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등 상호 연결대응하지 않은 것은 없다.

국제법은 이러한 국가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며, 여러 국가의 공동승인을 받은 것을 말하며, 그 내용으로는 국제관습과 조약 및 법의 일반원칙이 있으며, 국제관행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묵시의 합의이며, 조약은 국가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이다.

이것이 국제적규율의 준칙이 되며, 법적규제를 구성하는 한 국제법이 되며, 모든 국가에 개방된 일반조약만이 국제법이라고 한다.

법의 일반원칙은 문명제국에 의하여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을 말한다.

이와 같이 일반조약이 진정한 국제법이라면 현행 국제전기통신조약은 당당한 국제법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 4285년 12월 22일 남미주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작성되어 조약이 체결되고, 단기 4287년 7월 1일자 조약 제27호로 공포 시행되어 있는데 헌법 제8조에는 [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약도 국내법과 동일한 규율을 하게된 것이며 전파감시관계를 규정한 한에서는 차업무의 지위는 명백한 것이다.

3) 국제전기통신연합과의 관계

개인이 집합하여 사회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간에도 국가가 다류병위하면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상리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다수 모여서 동일한 목적하에 조직된 국가단체가 있으니 이것이 곧 국제연합이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은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이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차의 가입신청과 외교적 절차를 마치고 회원국의 절대다수 찬성으로 가입이 확정되어 동 가입서는 4285년 1월 31일자로 스위스정부를 경유하여 연합사무총국에 기탁되어 동 일자로 정식 가입하게 되었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은 국제전기통신조약에 규정된 조약기구이며, 소재지는 스위스 [제네바]이며, 정기적으로 열리는 전권위원회의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되는 주관청회의와 상설기관으로 관리이사회 사무총국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 국제전신자문위원회 국제전화자문위원회 및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연합의 목적을 실천하기 위하여 각기 임무를 분담하고 있으며, 그의 목적은

가. 모든 종류의 전기통신의 개선과 합리적 운용을 위한 국제협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

나. 전기통신업무의 능률을 증진하고 그 유용성을 증가하고 최대한으로 공중

이 이를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술적 시설의 발달과 이의 가장 능률적인 운용을 촉진시키는 것

다. 상기의 공동목적을 위한 각국의 행위를 조화시키는 것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연합의 사명을 적기하면

가. 제국의 무선통신국간의 유해한 혼신을 피하기 위하여 주파수 [스펙트럼]을 할당하고 주파수 지정을 등록하는 것

나. 능률적인 업무에 지장이 없으며 또한 전기통신의 독립된 재정을 건실한 기초 상에 유지할 필요를 고려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저렴한 기준의 요금을 설정하기 위하여 연합원과 준연합원 상호간의 협동을 조장하는 것

다. 전기통신업무의 조력에 의하여 인명의 안정을 확보하는 방법의 채용을 촉진하는 것

라. 모든 연합원과 준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하여 연구하고 권고를 작성하며, 또 정보를 수집하여 발표하는 것이다.

4) 국제규정에 나타난 전파감시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는 조약기구가 있고 목적이 있으며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연합의 사명에 대하여는 기술한 바이나 동 조약규정을 실천하는 한에 있어서의 국제업무 즉 국제감시업무의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① 혼신방지를 위하여

무선통신은 전파를 매개체로 하는 만큼 그 위대한 확산성은 국내외를 통하여 전파되는 일이 많으므로 각국에서 감시하여 위반통고케 되어 있다.

연합기관에 의하여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 기술적인 주파수할당을 행하고 이의 국제적 등록과 승인을 받게되며 조약은 [그 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정당이 허가되고 규정에 따라 타통신에 유해한 혼신을 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운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당히 허가된 통신을 보호하고 통신에 유해한 혼신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이동업무에 대하여서는 실제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적인 규정을 하였으며 [모든 전기통신국으로서 국제업무를 행하는 국 또는 타국의 무선통신업무에 유해한 혼신을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국에 대하여 본조약과 부속규칙을 따를 것]을 규정하여 국제통신을 보호하고 국제적 분쟁을 해소하고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게 하였다.

국제업무를 행하는 국에 대하여는 [타국의 무선통신업무에 유해한 혼신을 발

생케 할 우려가 있는 국을 운용하는 자에 대하여 조약과 부속규칙의 규정을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혼신을 방지할 조치를 강구할 것을 규정하였다.

불필요한 전송과 무용한 신호 및 통신의 전송은 금지되었으며, 특정의 국이 발사할 수 있는 주파수의 허용편차는 조약부록 주파수 허용편차표에 의하기로 되어 있다. 혼신을 피하기 위하여 방사전력을 최저한으로 확보하고 가급적 지향성 공중선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여하한 국도 기본파 이외에 고주파 저주파 기생파 등 이상현상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다.

일주파수는 일 통신로를 구성하며 수회로(다중통신의 경우)를 구성하는 만큼 다중병립하여 상호 혼신방해가 없이 원활한 통신을 행하도록 여사한 규정들이 있다. 혼신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규정이라 하는 것은 최소한도의 편차로써 정밀한 확도를 보지하고 고주파는 2200미리왓트 이하인바 최소한도의 것을 경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조난통신의 보호와 부정행위의 단속 인간의 생명은 역사적으로 존중되어 온 바로서 해상 또는 상공에 있어서의 인명 및 재화의 안전을 위하여 조난통신의 사명은 막중하다. 항행 중에 기기의 고장 등 불의의 사고는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이의 구조에 관하여는 [해난에 있어서의 구원 구조에 관한 규정의 통일에 관한 조약]이 있으나 이는 차치하고라도 국제적 규율로서의 국제전기통신조약은 [조난의 호출과 통보는 절대 선순위로 취급될 것]이 규정되어 이에 응답하고 또한 곧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허위의 조난신호 또는 안전신호를 전송하고 유포하는 것과 정규로 할당되지 아니한 호출부호를 사용하는 국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유익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여 조난통신을 보호하고 부정한 것을 금하도록 하였다.

할당된 호출부호는 국제주파수대장 및 국명록에 의하여 식별할 수 있다.

특히 조난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규정으로 국제조난주파수인 500kc를 중심으로 하여 475~535kc의 주파수대에서는 500kc로써 전송하는 조난 긴급 안전 또는 경급의 신호를 무효로 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종별의 발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상 및 바다의 상공에 있어서의 인명의 안전을 증가하기 위하여 405~535kc간의 허용주파수대의 주파수로써 통상 청수하는 해상이동업무의 모든 국은 그 집무시간중 한 시간에 2회 [그리닛지]표준시(G.M.T)의 매시 15분 및 45분으로부터 삼분간 500kc의 청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우시간중 485~515kc의

주파수의 전송은 경급신호 긴급신호 안전신호를 제하고 일절 발사를 금하게 되어있다.

무휴 집무를 하는 국은 의무적으로 종일 청수하여야 함을 또한 규정하였으며, 외항선박은 특히 항행 중 청수하게 된다.

③ 군용통신의 확보와 공안방해통신의 정지

국방에 관하여는 국가의 존립을 위하여 국가의 최고정책을 수립하는 통치권에 기인하는 국가작용으로서 우리나라는 헌법에 국군은 국가를 방위하는데 사명이 있으며,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할 것을 천명하였는데, 국방기관의 통신에 대하여는 각국이 충분한 자유를 인정하도록 협약되어 있다. 국제전기통신조약에 의하면 [각국의 육군 해군 및 공군의 군용통신시설에 대하여는 그 사용에 충분한 자유를 보유하게 되며 이에 협력하고 국가의 안전을 해하고 또는 그 법령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보의 전송을 정지하는 권리를 가진다. 국제전기통신업무를 일반적으로나 또는 일정한 관계에 대하여서만 또는 발신 착신이나 중계의 통신의 일정한 종류에 한하여 정지할 권리를 유보하여 수자를 행할 때는 사무총국을 경유하여 곧 그 취지를 가연합원과 준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같은 국제법의 범위내에서 전신법에 의거하여 통신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장래를 위태롭게 하는 국제간첩의 비도량을 사전에 봉쇄해버리기 위하여 전파감시에 의하여 적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④ 통신설비의 기술적 향상을 위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의 목적에도 [기술적 시설의 발달과 능률적인 운용의 촉진을 도모할 것을 명시하고 각국이 이에 관하여 협약하고 있다. 특히 기술적시설의 향상은 학리의 응용과 연구 숙련이 필요하는 바]로 이에 대하여 조약은 [각국의 신속하고 부단한 교환을 확보하기에 필요한 통신로와 설비를 최량의 기술적 조건하에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혼신을 방지하는 조치와 더불어 기기 및 기난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익한 조치를 보유하도록 힘쓴다]라 규정하여 관할된 범위내에서 정밀기기를 이용하여 전리층의 특성을 조사 측정함과 기술증진에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기의 운용에 있어서는 일진 월보하는 과학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향상 발전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이 통신로와 설치는 가급적 실무상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최량의 방법과 수단으로써 운용하고 양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

하고 과학과 기술의 진보에 따를 수 있도록 보수하여야 한다]라 규정되어 통신 기술향상을 도모하여 국제의 원활한 통신의 교환과 문화의 발달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5) 결 론

지면관계로 국제법상의 제재에 관하여 논술하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나 요컨데 전파감시업무의 임무는 원활한 국제통신을 유지하는데 협조하며 정당한 시설 및 통신을 보호하고 불법 부당한 것을 제거하는데 노력하여 국제적 신의를 유지하고 국가간의 공동복리를 증진하는데 일익이 되어 그 역할이 크다. 문명의 이기라 할 수 있는 무선통신기기는 편리한 기구인 고로 이를 악용하기 쉬운 것인 만큼 이의 불법 사용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이를 전파감시에 의하여 적발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는 국제통신 타국에 속한 통신과 방송전파의 대하여서는 혼신을 제거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성국에서는 왕왕 국제법을 무시하고 타국의 방송을 고의로 방해하는 일 같은 것은 국제적 친선을 파양, 도전함은 물론 통신을 방해하여 문화를 파양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반통신을 적발하는데 있어서 국제전파통신조약부속무선통신규칙에 규정된 국제감시에 관한 규정은 그 의의가 큰 바 있다할 것이다.

-체신문화 (1959년 9월호 · 전영봉)

다. 전파감시업무의 국내법상 의의

1) 서 설

통신사업은 국가의 신경작용으로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는 국가에서 관리경영하는 공기업인바 이의 이용관계는 대가적인 또는 반대급부적인 역무의 제공이라 한다면 사법에 의한 규율을 받게되는 것이나 공익을 위주로 하는 만큼 공개부담에 있어서라든지 행정강제를 행할 수 있어서 공법상의 규율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전파감시업무는 무선전신 · 무선전화의 감시 · 감독 내지 통제 등 행정경찰의 작용을 하는 수가 많으며 그 의의와 내용을 상설하면 다음과 같다.

2) 시설목적외 사용의 금지

무선통신은 무선전신법 제1조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국가에서 이를 시설 경영하게 되어 있는데 공중통신을 전담하고 있는 국가사업에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동법 제12조에는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사설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사설을 허가받은 사설무선전신 · 무선전화는 물론 관청용무선통신시설이라 할지라도 목적외사용은 금지되고 있다.

이것을 적발해 내는 것이 감시국의 사명이다.

3) 부정주파수 발사의 금지

무선통신은 다수시설이 공간을 공동이용하고 있으므로 자연 혼신방해 되기가 쉬우며 일단 혼신에 함입하면 쌍방 모두 통신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으로서 혼신은 극력 피하여야 된다.

고의적인 방해는 통신장애의 죄로서 엄벌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무선전신법은 기기 · 장치 및 운용에 관한 제한 및 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을 정한바 있어 지정된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거나 허용편차외의 주파수를 발사하는 것이 있으면 타통신에 방해를 주게 되어 이런 것들은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명하게 된다.

4) 불법통신의 적발

법치주의국가에서는 사회생활관계에 있어서 그 규범인 법에 따라야 하는데 법을 위반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사회생활을 문란하게 하는 등 처사에 대하여는 그의 장애를 제거하고 예방하여 국가 및 개인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는 즉 경찰작용을 내무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무선통신에 의한 불법행위는 문명의 이기인 무선기기가 편리한 관계로 공공 · 안녕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가존립에 위해를 미친 행위를 하는데 사용할 우려성이 많은 만큼 이의 적발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함으로 이는 주무관청인 체신부가 관장하는바, 불법시설을 하고, 간첩통신에 사용하는 자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적발하고, 방해시설을 임검하고, 사용정지를 명하고, 또는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등 경찰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특히 행정경찰 즉 통신경찰작용으로 형벌을 가하게 되는 경우에 무선전신법은 형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이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경우를 특히 행정형벌 또는 전신형벌이라 한다.

5) 위반통신의 적발

무선통신에 대한 감독권은 주무관청은 체신부장관이 행하게 되어 있으며 정부조직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파감시국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으나 부내통신은 물론 관청용 및 사설무선전신무선전화에 대하여도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무선통신의 취급은 신속 · 정확을 기하여야 하며 전보취급규정 및 훈령으로서 시달된 바 있으나 원활한 통신을 저해하는 응답지연 · 기상논쟁 및 잡담 등을 적발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특히 사설무선전신무선전화규칙에는 체신부장관은 사설무선전신무선전화의 무선통신사가 그 직무를 행함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 해임을 명할수 있게 되어 있다.

6) 결론

근대의 국가가 복지주의 · 문화국가주의로 이행되고 국토통일을 위하여 전파감시는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군작전상에도 필수불가결한 작용으로 되어 있는 만큼 통신의 원활한 소통을 이룩하기 위하여 부정한 것을 적발 · 감독하여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운영에 기여되는바 크다. 특히 전파감시를 담당하는 분은 각자의 자질향상과 공정무사 · 진실한 사업애로서 맡은바 사명을 완수하여야 할 것이다.

—체신문화 제65호(1960년 5월 · 전영봉)—

2. 문서주례

체전 제2450호의 2

단기4292년 6월 2일 체신부장관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이사장 이인관 귀하

아마추어 무선시설허가에 대한 일

본 건 귀 연맹의 아마추어 무선시설을 허가하였으니 운용에 있어서는 관계법규를 지키시고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하심을 바랍니다.

다　　음

1. 본 시설은 그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2. 공사 설계를 변경코저 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을 것
3. 공사 완료시는 준공계를 제출하고 당부의 검사를 받을 것
4. 본 시설 운용에 있어 위법 처사가 있을 시는 시설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
5. 공산진영국과의 교신을 엄금할 것
6. 국내 무허가 아마추어국 간의 교신을 엄금할 것
7. 국내 무허가 아마추어국을 지득하였을 때는 즉시 당부에 보고할 것

8. 본 시설 운용은 아마추어급 무선통신사 면허증 소유자에 한하고 종사자의 이동이 있을 때는 즉시 선 · 해임계를 제출할 것
9. 매월의 일지초록을 다음달 5일 이내에 당부 필착토록 할 것
10. 초록내용에는 종사자의 성명 및 급별을 기입할 것

3. 허 가 서

허제 9245호
허　가　서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이사장 이인관
서울 특별시 중구 필동 2가 22번지의 아마추어무선시설의 건 호출부호 및 주파수를 여좌 지정하여 이를 허가함
호출부호 HL9TA
주 파 수 A3, 7050, 14100, 21150, 28200 kc/s
단기4292년 6월 2일
체신부장관

4. 1949 ~ 1952 통신사업 특별예산

(단위:억원)

항 목 / 세 입	1949년 결산	1950년 결산	1951년 결산	1552년 결산
	37.5	**70.3**	**144.4**	**488.7**
업무수입	22.9	20.8	85.3	371.2
1. 우편수입	7.8	5.8	46.1	221.0
2. 전신전화수입	14.0	14.7	36.6	138.6
3. 예금 및 대부이자	–	–	0.5	0.5
4. 기타	1.0	0.4	2.1	11.2
시설부담금	–	0.2	3.1	3.4
일반회계에서 전입	14.6	17.3	48.9	101.4
차입금	–	28.0	–	–
전년도 이월금	–	3.9	7.0	12.7
예비비	–	–	–	–

(단위:억원)

세 입 / 항 목	1949년 결산	1950년 결산	1951년 결산	1552년 결산
	33.5	63.1	130.6	446.6
업무비	20.6	64.6	60.9	96.6
전신전화유지비	5.0	6.8	18.2	153.5
집배체송비	0.8	0.7	3.5	15.1
체신학교비	0.3	0.1	0.5	1.5
전기시험연구비	–	0.04	0.4	1.1
전파감시비	–	–	0.3	1.6
통신검열비	–	–	0.4	–
군사우편비	–	–	0.9	1.5
의량비	0.6	1.8	2.0	2.0
증표제조비	0.6	0.33	3.4	11.2
청사 및 용품복구비	2.9	4.8	–	–
공무원 처우개선비	1.0	–	30.0	149.2
전신전화시설개량비	0.3	0.0	0.7	2.7
전파감시시설비	0.2	0.6	–	–
청사신축비	0.6	0.2	0.1	3.3
청사매입비	0.6	–	–	2.8
보조비	0.2	0.4	–	0.5
차입이자금	–	–	–	0.1
제 지출금	0.5	2.6	9.4	4.0
예비비	–	–	–	–
사변수습비	–	5.2	–	–
항목미상	–	0.2	–	–
재화복구	3.0	5.0	–	–

5. 전파감시업무 실적

가. 부처별 무선국 현황

1964년도에는 342국의 무선국이 허가되었다. 이는 5 · 16 전해인 1960년도 허가분의 188국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무선국 시설은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무부가 단연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책임의 복잡성에 비례하여 그 기동력 증가로 말미암은 통신망의 확장이라 하겠다. 즉, 당시의 무선국의 시설은 공공기관에서 거의 주축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다.

□ 부처별 무선국 현황

구 분	고정국	방송국	육상국	선박국	항공기국	육이국	무선표지국	아마추어,실험국	고주파이용설비	계
외무부	1									1
내무부	215		50	25	2	273				565
재무부	9		4	10						23
법무부	13		1	1						15
농림부	7		3	6		3				19
건설부	6		1			18				25
보사부					2					2
교통부	21		18		2	2	17			60
체신부	50		9			33				92
공보부	32	30	2			2	1			67
조달청	6									6
지자체	41		3	8	2					54
국영기업	100		29	24	5	43			46	247
사기업	10		6	374		31		61	39	521
민 방	20	15	6			6				47
신문사	53		2			9				64

나. 연도별 전파감시 실적

구 분 / 연도별	감시건수	위규건수	위규비율
1957	87,715	12,000	14.2
1958	98,001	16,967	17.3
1959	121,462	48,138	39.6
1960	161,639	93,155	57.6
1961	161,937	50,515	31.1
1962	190,046	9,136	4.8
1963	309,978	3,956	1.3
1964	351,102	595	0.2
1965	525,608	737	0.14
1966	581,649	791	0.13

□ 전파감시국별 감시건수 및 위규 적발 현황

년도 / 구분	서울전파감시국			부산전파감시국			광주전파감시국			강릉전파감시국		
	감 시	위 규	비율	감 시	위 규	비율	감 시	위 규	비율	감 시	위규	비 율
1957	42,451	2,436	5.75	15,652	5,499	35.1	26,612	4,065	15.3			
1958	35,804	4,136	11.6	24,684	4,716	19.1	27,513	8,115	21.6			
1959	54,164	28,687	52.9	36,313	5,725	15.7	30,890	13,726	44.3			
1960	70,924	60,946	85.9	46,527	6,372	13.6	44,178	25,843	58.4			
1961	78,095	28,350	36.3	83,802	3,287	8.4	45,040	18,879	41.9			
1962	77,591	3,469	4.5	72,157	1,648	2.3	40,298	4,019	10.0			
1963	98,318	1,334	1.4	154,574	1,834	1.2	57,086	788	1.4			
1964	153,687	260	0.2	127,463	140	0.1	68,261	196	0.3	1,691	1	0.01
1965	256,255	219	0.1	121,604	238	0.2	86,060	219	0.25	61,689	60	0.1
1966	250,376	192	0.07	152,131	272	0.1	110,244	228	0.2	68,898	99	0.1

다. 전파의 질 위반 무선국

주파수 편차에 의한 공간 질서의 혼신을 제거하는 동시에 전파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1958년 이후에 각 무선국 종별로 주파수 허용편차 위반국을 적발 시정한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연도별 무선국 적발 실적

국 별 \ 연도별	1958	1959	1960
고정국	1,358	21,718	
항공고정국	3	79	4,728
항공국	48	117	744
방송국	1	42	540
해안국	11	60	552
선박국	394	8,342	3,996
계	1,815	30,358	10,560

※ 체신부업적(57~60) 참조

라. 연도별 무선국 허가통계

구 분	고정국	방송국	해안국	항공국	기지국	선박국	육이국	표지국	실험국	아마추어	항공기국	휴대국	계
1957	357	23	17	5	32	149	170	-	11	3	7		774
1958	372	25	20	6	39	168	192	3	12	3	7		847
1959	420	28	22	6	41	209	212	10	13	6	7		974
1960	435	28	24	6	43	258	219	10	14	22	8		1,067
1961	450	30	29	10	40	305	213	10	16	44	10		1,157
1962	438	34	31	16	42	313	215	12	14	64	7		1,186
1963	526	39	34	24	45	244	15	17	55	8	68		1,477
1964	584	45	46	33	55	453	352	17	16	60	9	73	1,743
1965	674	54	47	34	64	688	413	17	15	79	19	128	2,232

마. 연도별 무선국 검사 현황

구 분	1956	1957	1958	1959	1960
고 정 국	16	9	32	44	64
선 박 국	57	74	61	93	76
방 송 국			1	2	
육상이동국			5	7	41
아마추어국					7
계	73	83	99	146	188

□ 연도별 무선국검사 통계표

구 분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고 정 국	18	153	580	476	534	443
해 안 국		8	22	26		
기 지 국		3	29	36	144	137
육상이동국		31	196	304	159	172
휴 대 국		9	84	9		
무선표지국			4	10	8	7
선 박 국	187	176	361	323	494	598
방 송 국	3	25	38	31	35	31
항공기국	1	4	5	72	11	4
아마추어국	8	18	75	15	60	49
계	217	427	1,394	1,302	1,445	1,441

6. 전파감시시설 공사내역

(단위:원)

공 사 명	시설개요	수 량	공 사 비	준공년월일
부흥자금에 의한 서울전파감시국 주파수측정장치 설치공사	1차주파수표준장치 설치	1대		
	주파측정장치	1대		
	고주파발진기	1대	944,500	1957. 9. 23
	전력분전반	1대		
	감시대	1대		
	측정대	1대		
부흥자금에 의한 서울전파감시국 초단파감시장치 설치공사	초단파수신기 설치	4대		
	25미터자립식철탑	1대		
	VHF광대역용회전식 공중선	1조	3,186,700	1957. 12 15
	VHF광대역용 고정공중선	2조		
	기기설치대	4대		
	수신기용렉크대	4대		
부흥자금에 의한 부산전파감시국 초단파감시장치 설치공사	초단파수신기 설치	2대		
	25미터자립식철탑	1기		
	VHF광대역용 회전식공중선	1조	2,805,200	1957. 12. 24
	VHF광대역용 고정공중선	1조		
	기기설치대	2대		
	수신기용렉크대	2대		
부산전파감시국 시설복구공사	610송신기 설치	1대		
	20미터목주철거	1대	1,819,600	1957. 12. 30
	20미터철탑주건주	2대		
	공중선 가설	2조		
부흥자금에 의한 서울전파감시국수신장치 설치공사	수신기 설치	6대		
	공중선 가설	3조	1,480,100	1957. 12. 31
	수신기설치대	6대		
	형광등장치	1식		
부흥자금에 의한 광주전파감시국 수신장치 설치공사	수신기설치	5대		
	VHF공중선 가설	2조		
	수신기설치대	5대	1,161,600	1957. 12. 30
	수신기 케-스대	2대		
	형광등 장치	1식		

(단위:원)

공 사 명	시설개요	공 사 비		준공년월일
부흥자금에 의한 부산전파감시국 주파수측정장치 설치공사	수신기 설치	3대	921,000	1957. 12. 26
	공중선 가설	2조		
	수신기설치대	3대		
	형광등 장치	1식		
서울전파감시국 시설 복구공사	610수신기	1대	2,429,700	1957. 12. 30
	20미터목주철거	2기		
	20미터철탑주건주	3기		
	공중선 가설	2조		
부산전파감시국 전단파감시장치 설치공사	배전반 설치	1대	1,002,500	1957. 12. 30
	철탑 및 철주도장	3기		
	감시시설기기정비 및 실내배선 설비	1식		
서울전파감시국 이동감시시설 복구공사	연결용 초단파송수신기 설치	2대		
	방향탐지기 차내 설치	2대		
서울전파감시국 불법통신감시용 수신장치 설치공사	감시용전파수신기	5대	4,420,400	1958. 12. 30
	감시대	3대		
서울전파감시국 공중선시설 확장공사	30미터지선식철탑 건립		4,304,600	1959. 12. 31
	수신용 다블렛형공중선 가설	1조		
	수신용 V형공중선 가설	12조		
	철탑표시등 설치	1식		
	25미터목주철거	4기		
서울전파감시국 공중선시설 확장공사	30미터지선식 철탑건립	4기	577,700	1959. 12. 28
	수신용 V형공중선 가설	4조		
서울전파감시국 전력선연장 및 고압신전신시설 설치공사	전원고압지하케이블연장 350미터		3,400,800	1960. 12. 31
	고압 수배전반실시설 설치 1식			
부산전파감시국 수신장치 설치공사	수신기 설치	4대	305,100	1960. 12. 30
	녹음기시설	2대		
	감시대	4대		

(단위:원)

공 사 명	시설개요	공 사 비		준공년월일
광주전파감시국 공중선시설 확장 및 전력선 연장공사	30미터자립식철탑 건립	1기	6,072,000	1960. 12. 31
	30미터지선식철탑 건립	9기		
	수신용 V형공중선 가설	8조		
	송신용 다블렛형 공중선 가설	2조		
	초단파수직형 공중선 가설	1조		
	전력선지하케이블 연장가설	1조		
	공중선주 철거	3기		

* 〈전파관리국소 시설원부〉에 의함

□ 1961년 이후 전파감시시설의 증설공사내역

(단위:원)

공 사 명	공사설계 개요	설치예산	적 요
서울전파감시국 전계강도 및 방위 측정기 설치공사	1. NM-20B 중 · 단파전계강도측정기 1대 2. NM-20A 초단파전계강도측정기 1대 3. NM-50A 극초단파 전계강도측정기 1대 4. DFG-2방위 측정기 설치 1대 5. 전력선 지하 케이블 가설 1식 6. 상호연락통화장치설치 1식	1,590,900	1961. 6. 16
서울전파감시국 시설이전 및 확장 공사	1. 현용시설이전 일체 2. 공중선 분할증폭기 설치 4대 3. 가상공중선절체 및 통화기설치 13대 4. 감시대 설치 18대 5. 정밀주파수 측정기 설치 1대 6. 궤전선 가설 1식 7. 나선형 접지매설 1식 8. 공중선 절체반 설치 1대 9. 제1호감시대 설치 3대 10. 주파수 측정보조대 설치 2대	9,149,750	1961. 6. 30

(단위:원)

공 사 명	공사설계 개요	설치예산	적 요
광주전파감시국 시설확장공사	1. 현용시설이전 일체 2. 공중선 지하가설 1식 3. 공중선 목주철거 2기 4. 정밀주파수 측정기 설치 1대 5. 감시대 설치 9대 6. 단파수신기 설치 2대 7. 주파수측정보조대 설치 1대 8. 발동발전기 설치 1대 9. 나선식접지 매설 1식	1,445,500	1961. 5. 13
서울전파감시국 전원시설 확장공사	1. 20KVA 발동발전기 설치 2대 2. 축전지 설치 134대	3,389,910	1961. 12. 28
부산전파감시국 10KVA 발동발전기 설치공사	1. 10KVA 발동발전기 설치 1대	637,300	1961. 12. 14
광주전파감시국 전파감시시설 확장공사	1. 10KVA 발동발전기 설치 1대 2. 공중선분할증폭기 설치 2대 3. 공중선절체반 설치	2,346,000	1961. 12. 25
서울전파감시국 이동감시용차량 기기 설치		591,131	1962. 6. 30
광주전파감시국 방향탐지기 설치공사	동경 126° 51′ 54,799″ (전파관리국 공고) 북위 35° 08′ 39,886″ (제14호 62. 10. 18) 전남 광산군 평동면 월전리, 477평	167,490	1962. 9. 30
서울전파감시국 VHF대 감시용 공중선 시설	A형 1조 B형 2조 C형 2조	164,730	1962. 12. 10

□ 연도별 전파감시시설 통계

구 분	1957	1958	1959	1960
송 신 기	3	3	3	3
송 · 수신기		2	2	2
수 신 기	44	53	55	92
방탐시설	3	6	6	9
주파수측정장치	8	11	11	18
주파수표준장치		2	2	2
철탑시설	11	13	13	33
목 주	15	13	13	7
전 주	46	46	27	27
발전시설	7	5	3	3
배 전 반	12	12	7	8
축 전 기	40	40	156	154
기록장치	17	9	13	28
시험기기	6	9	14	32

시 설 명	단 위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송신시설	대	3	3	3	3	3	4
송 · 수신시설	〃	2	2	12	22	24	33
teletype 장치	〃	1	0	3	0	4	4
감시용수신시설	〃	91	0	8	22	121	133
수신부속장치	〃	1	0	3	7	11	11
주파수표준장치	〃	2	2	2	2	2	2
주파수측정장치	〃	19	15	21	22	24	31
전계강도측정시설	〃	9	9	9	11	11	11
방향탐지시설	〃	9	9	19	19	19	
기록장치	〃	295	26	47	42	59	66
스펙트럼분석 시설	〃	0	2	4	6	12	14
발동발전시설	〃	11	10	9	11	11	11
공중선철탑시설	기	33	38	38	55	55	69

시 설 명	단 위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공중선 시설	조	43	8	0	19	70	102
공중선부속 시설	대	58	1	2	2	63	70
신호발생장치	〃	14	0	0	5	19	31
보수용 측정시설	〃	56	24	2	8	100	143
무선국검사용 시설	〃	7	17	10	0	34	48
이동감시용 차량시설	〃	0	4	4	4	4	8
수정편교정 장작장치	〃	1	1	1	1	1	1
전리층 측정장치	〃	0	0	0	1	1	1
계		389	171	197	262	658	793

7. 당시의 무선국 인가서류

가. 인가서

1955년 4월 4일 체신부장관 명의로 충청북도경찰국에 허가한 인가서와 무선시설사항 보고서는 아래와 같으며, 1962년 11월 8일 당시 무선국 허가장 송부에 관한 기안문서가 당시 배덕진 체신부장관 발신으로 내무부장관 앞으로 송부 된 것을 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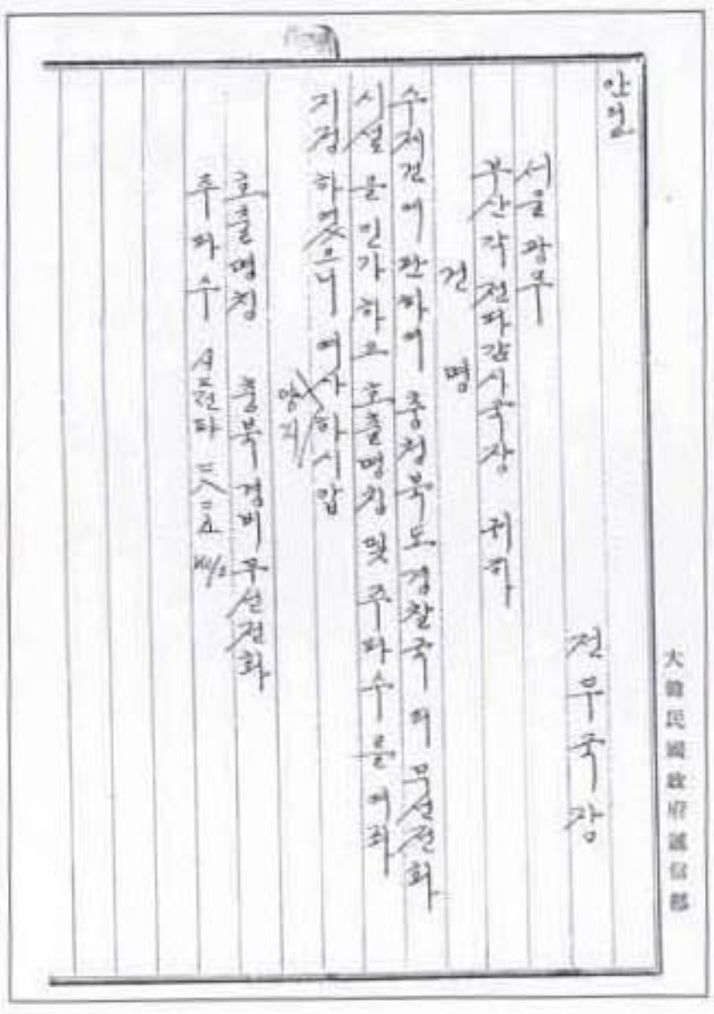
안건
서울 광무
부산 각 전파감시국장 귀하
건 명
수제건에 관하여 충청북도경찰국의 무선전화
시설을 인가하고 호출명칭 및 주파수를 여좌
지정하였으니 여사하시압
양지
호출명칭 충북경비무선전화
주파수 A5전타 ㅡ八ㅡ五 Kc/s
전무국장
大韓民國政府遞信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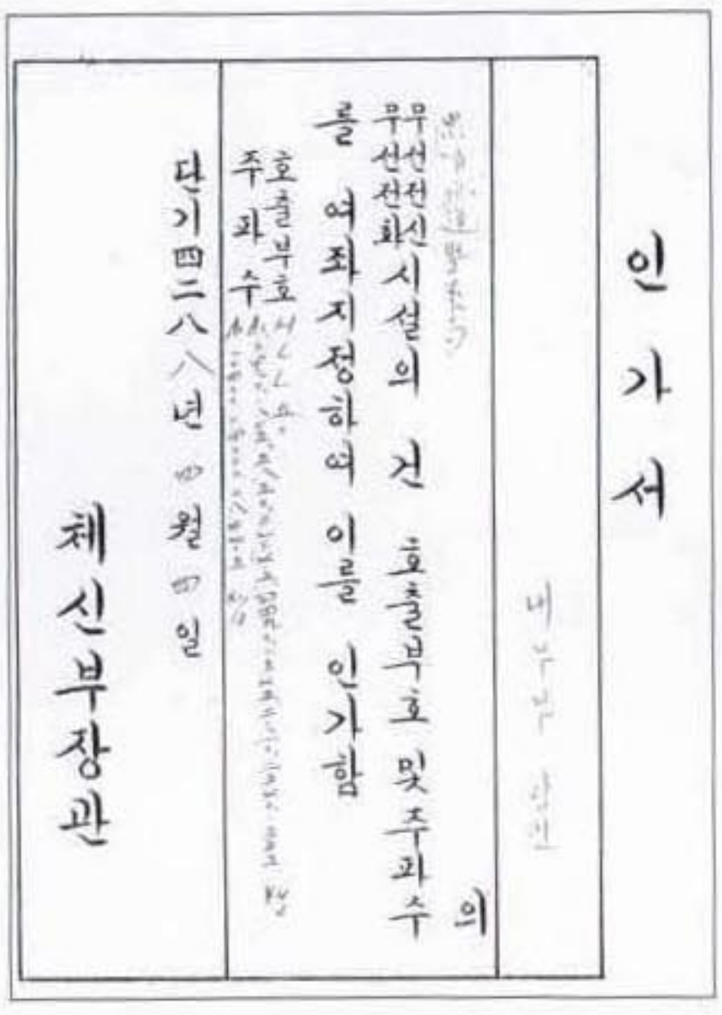
인가서
무선전화 무선전신 시설의 건 호출부호 및 주파수 의
를 여좌지정하여 이를 인가함
호출부호
주파수
단기四二八八년 四월 四일
체신부장관

나. 관련 기안문서



未完結
完結
비
受信人
件
名
충청북도경찰국(忠淸北道警察局)
경비 무선전화 시설 인가에 관한건
안
인가서
長官
次官
정무局長
정파관리課長
총무가장



第 2 章

成長期 電波管理

제 1 절 전파관리국 외국화

제 2 절 전파관리국 내국화

제 3 절 전파감시체제 강화와 전파통제소의 신설

제 4 절 전파감시시설의 확장

第 2 章　成長期 電波管理

(1962~1983)

제 1 절　전파관리국의 外局化

전파국 폐지 후 전파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본부의 전무국 전파관리과와 현업기관으로 서울, 부산, 광주에 전파감시국이 있었다. 그러나 체신부 특별회계의 제한된 예산으로 말미암아 시설면에서도 보잘 것 없는 상태였고, 관리 운영면에서도 부족한 인원으로 그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기란 무리한 실정이었다. 즉, 7명의 전파관리과 인원으로 각종 시설의 허가, 감독, 검사, 통제 및 감시, 시설 및 건설기획, 주파수 할당, 발사통제,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무선종사자 양성기관의 감독, ITU와의 연락 등 방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때문에 그 양으로 보아 긴급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설의 검사나 감시는 자연 소홀하여져 전파행정의 위축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 사업을 직접 관장하는 전파국장이 전파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또한 자체 업무를 감시 감독하는 모순성을 면치 못하였다. 풍부한 경험과 충분한 훈련, 단속을 절대 요소로 하는 전파관리 업무를 감당하기 위한 기구로서는 너무 빈약하고 불합리하여 내무부, 국방부 등 각 부처와의 제휴를 꾀하기도 힘들었다. 더욱이 기업회계를 표방하는 통신사업 특별회계에서 전파관리 행정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배당 받는 것도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밖으로는 전파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으로는 오히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불합리성이 더욱 노출되어 우리나라 전파행정의 부조화를 가져왔으므로 주무부인 체신부에서도 전파관리업무의 중대성을 감안한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기구개편 안이 논의되었다.

한편 전파 관계인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대한전파협회에서도 강력한 전파관리 기구가 절대 긴요하다는 결론을 얻고 1958년 9월 27일 체신부를 비롯한 관계인들에게 전파관리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자못 그 움직임이 활발하였으나 그 실현을 보지 못한 채 4 · 19혁명 및 5 · 16군사쿠데타를 맞이하게 되었다.

5 · 16 이후인 1961년 9월 13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지침으로 통신정보 및 보안업무 통제지침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61년 10월 2일 각령 제209호에 의하여 전무국 전파감시과를 전파관리국으로 승격하여 체신부 외국으로 설치되는 등 전파감시기구를 확장함과 동시에 특별감시업무를 개시하여 과거 수년동안 논의되어 오던 현안인 전파관리 행정의 독립을 실현하였다. 이로서 전파관리국은 해방 이후 그 명칭은 다르지만 두번째로 전파관리의 감독 관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체신부와 여러 전파인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였지만 당시 군사정권하에서 정보의 가치를 중시하는 풍토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있다.

당시의 기구로서는 국장 밑에 감리과, 주파수과, 기술과의 3과를 두었고 감리과는 서무계, 감리계, 규약계의 3계를, 주파수과는 주파수계 및 기준계를 그리고 기술과는 시설계 및 검정계를 각각 두었고 서울 · 광주전파감시국에 방탐계를 신설하였다.

1964년 10월 23일에는 대통령령 제1965호에 의하여 영동지역의 전파관리를 담당할 강릉전파감시국이 감리과, 기술과 체제로 설립되었다.

그후, 1966년 4월 1일 훈령 제11호에 의한 특별감시기능 확장 및 무선국검사 업무 전담부서로서 서울전파감시국 기술과에 검측계, 부산, 강릉전파감시국에 방탐계가 신설되었고 6월에는 강릉전파감시국에서 특별감시업무를 개시하였다.

동년 8월에는 해상 이동통신 감시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전파감시기능확장(훈령 제18호) 방안으로 서울(광화문), 인천 · 부산 · 여수분실이 신설되었다.

전파 관리업무를 담당한 기구 및 직제는 1966년 말 현재 전파관리국 밑에 감리과, 주파수과, 기술과의 3과가 전파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부속기관인 전파연구소를 비롯하여 지방별 일선관서인 전파감시국은 서울, 부산, 광주, 강릉의 4곳이었고 당시 전파감시국 공무원정원은 1967년 6월 19일(대통령령 제3118호) 공포된 정원표에 의하면 총 413명이었다.

1970년 1월 12일에는 훈령 제26호에 의거 속초(강릉전파감시국) 및 제주(광주전파감시국)분실이 신설되었고, 이어서 각 전파감시국의 감시계, 방탐계를 제1계 및 제2계로 개칭하였다.

1970년 3월 26일 훈령 제31호로 서울분실은 11, 인천분실은 12, 부산분실은 21, 여수분실은 31, 제주분실은 32, 속초분실은 41분실로 개칭되었고 11월에는 13분실(합덕) 및 22분실(홍해)이 신설(훈령 제36호)되었다.

그리고 1970년 12월 28일에는 서울전파감시국 청사를 현 위치(가락동)로 이전

함으로써 전파감시의 가락동시대가 막을 올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파관리업무의 독립성 강화에 대한 노력은 계속되어 1971년 1월 13일 전파관리법 제3차 개정시 전파관리법상의 「체신부장관」을 「전파관리국장」으로 개정함으로써 한층 구체화되었다.



▲ 가락동 청사와 주변모습(1970년대)

1971년 12월 24일에는 부산전파감시국 사천(23)분실이 개국(훈령 제40호)되었고, 1972년 12월 31일에는 부산전파감시국이 현재의 대저동으로 이전하였다.

1974년 4월 25일에는 대통령령 제7101호로 각 전파감시국의 직제가 관리과(서무, 허가계), 감시과(조사, 1, 2계) 및 기술과(기술, 검사계)로 개정되었고, 동년 5월에는 인천(12), 여수(31)분실이 폐지(훈령 제59호)되었다.

1975년 3월 자동전파감시시설 싸이트 1(합덕), 2(부산-양산서생)운용을 개시하여 최초의 자동방탐시대를 접어들면서 특별감시업무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1976년 12월 14일 합덕(13)분실을 서울전파감시국 서울분국으로 승격하고 부산전파감시국 부산분국(서생), 강릉전파감시국 강릉분국(대관령) 및 서울전파감시국 통제과를 신설하였다. 1977년 1월 19일에 서울전파감시국 통제과에 운용계, 통제계를 그리고 각 전파감시국 분국에 제1계 및 제3계를 신설하였다.

자동전파감시시설은 1978년 4월 싸이트 3(광주), 4(대관령)가 준공되면서 전국을 커버하게 되었고, 1979년 9월 7일 특별감시업무를 전담하는 전파통제소가 발족하면서 전파감시국은 일반감시를 전담하는 체제로 전환되어 전파감시의 양분화시대로 접어들었다.

◇ 1961년 10월 2일(각령 제209호 : 전파관리국 직제제정)

제1조 (직 무) 전파관리국은 전파의 통제와 감시, 무선시설의 허가감독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국 장) 전파관리국에 국장을 두고 국장은 행정이사관 또는 전무기감으로 보한다.

국장은 체신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무를 통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조 (정 원) 전파관리국에 국장 이외에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 행정서기관, 통신기정, 행정사무관, 통신기좌, 행정주사, 통신기사, 행정서기, 통신기원

전항의 공무원의 과별 배정은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하부조직) 전파관리국에 감리과, 주파수과, 기술과를 둔다.

감리과장은 행정서기관, 주파수과장 및 기술과장은 통신기정으로 보한다.

제5조 (각 과) 감리과는 기밀, 관인관수, 인사, 문서, 법령, 예규, 통계, 세입세출, 소속관서의 회계감사, 국유재산, 물품의 관리와 무선국의 허가, 감독,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 무선종사자 양성기관의 승인, 감독 및 전파감시기관과 국제전기통신연합 및 외국전파관리주관청과의 연락, 기타 국내 타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주파수과는 주파수 및 호출부호의 할당, 전파형식 및 공중선 전력의 지정, 혼신의 조정, 주파수의 측정, 주파수 및 무선기기의 종류별 기술기준과, 주파수등록위원회 및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와의 연락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기술과는 전파감시시설의 기획설계 및 운용전파의 감시 및 규정에 관한 기술적 사항 무선시설 및 유선방송시설의 운용허가 및 검사에 관한 기술적 기준과 무선시설의 검사 및 기술적 운용감독, 무선기기 및 부속기기의 검정과 무선설비에 대한 잡음의 조사와 제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부 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1항의 공무원의 정원은 추후 이를 삽입한다.

◇ 1961년 10월 2일 각령 제209호 : 전파관리국설치

□ 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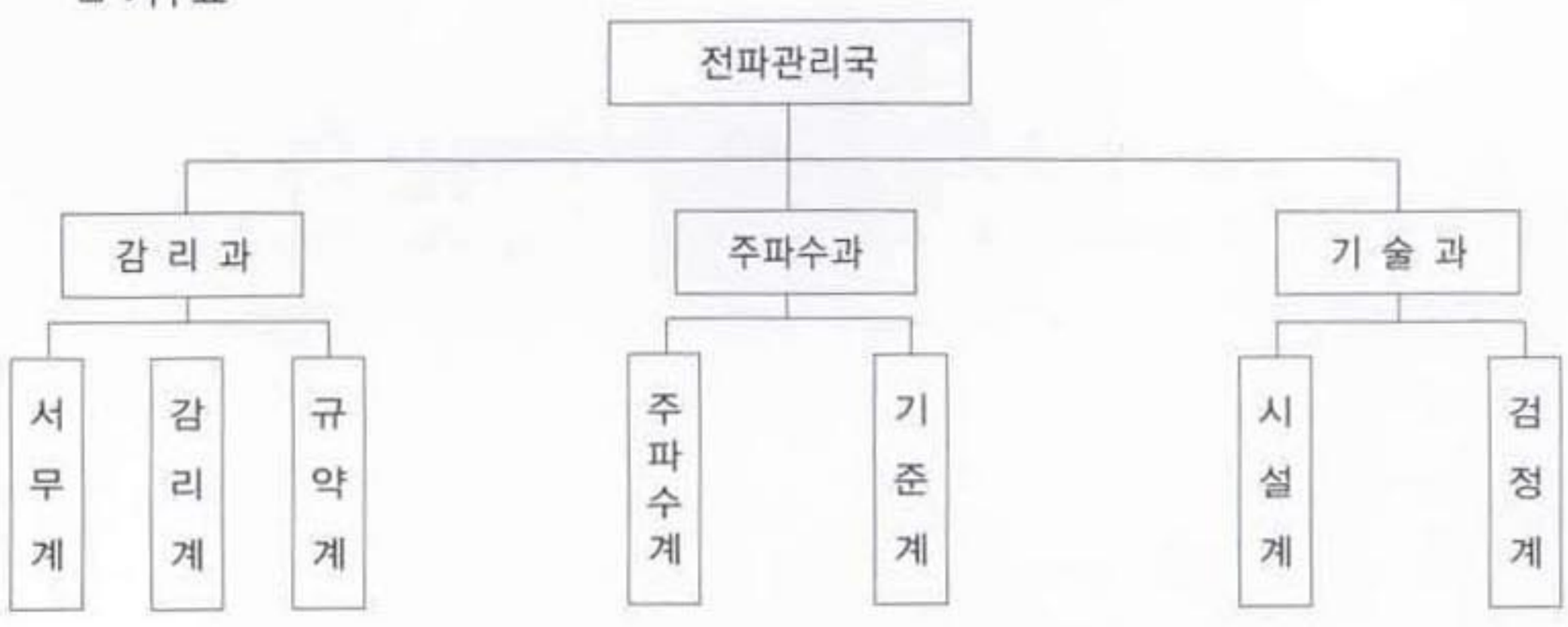

□ 전파관리국 공무원 정원표

급 별	정 원	급 별	정 원
총 계	33명		
2급내지5급계	29명	행정주사	6명
행정이사관 또는 전무기감	1명	통신기사	8명
		재경주사보	1명
행정서기관	1명	재경서기	1명
통신기정	2명	통신기원	1명
행정사무관	3명	고용원직계	4명
통신기좌	4명		

□ 전파감시국의 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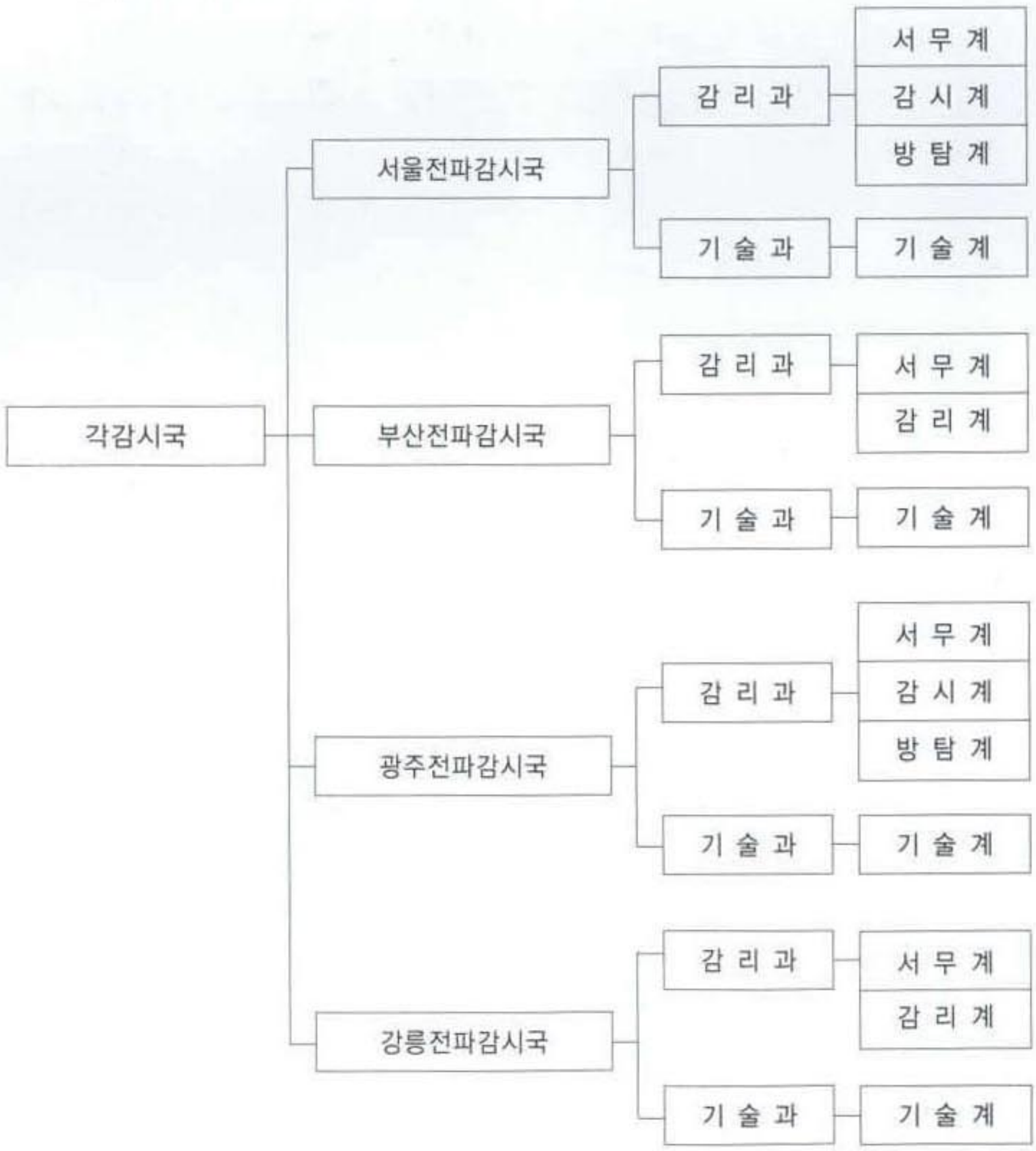

그 직위를 살펴보면, 국장은 기감 또는 부기감으로 보하도록 하고 3개 과장 중 관리과장은 서기관, 기타는 통신기정으로 하고 각 계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통신기좌로서 보하도록 하였다.

◇ 1963년 9월 3일 (각령 제1531호 : 전파관리국 직제개정)

제2조 (국 장) 전파관리국에 국장을 두고, 국장은 통신기감 또는 부기감으로 보한다.
국장은 체신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무를 총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조 (공무원) 전파관리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전파감시국장은 행정서기관 또는 통신기정으로 보하며 감리과장은 행정사무관, 기술과장은 통신기좌로서 보하도록 했다.
각과의 분장사무를 살펴보면 감리과는 전파의 감시와 불법전파 포착 등의 사항을 분장하였고, 그 중 감시계는 일반전파의 운용상의 제 감시를 담당했으며, 방탐계는 불법전파 포착 등의 특별전파 감시업무를 담당 수행하였으며, 기술과는 전파감시 시설, 전화 기타 기기의 보수 및 전파의 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함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 전파감시국 기구변천 및 사무분장

◇ 1949년 11월 22일(대통령령 제217호 : 서울전파감시국 설치)

◇ 1950년 1월 6일(부산전파감시국 설치)

◇ 1950년 1월 10일(통 제1호 : 과제실시)

◇ 1950년 1월 18일(광주전파감시국 설치)

◇ 1961년 10월 2일(각령 제209호 : 서울전파감시국의 발사과를 표준과에 통합)

◇ 1963년 6월 28일(훈령 제7호)





◇ 1966년 2월 5일 (대통령령 제2396호)

– 서울전파감시국의 표준과 폐지

◇ 1966년 4월 1일 (훈령 제11호)

– 서울전파감시국의 기술과에 검측계 신설

– 부산 · 강릉전파감시국의 방탐계 신설



◀ 강릉전파감시국 초기 DF실 전경(1966년)

◇ 1968년 12월 19일(대통령령 제3673호)

– 전파관리국 감시업무과 신설(감리과의 규약계 폐지)

– 전파감시국(부산, 광주, 강릉)의 직제 개편



◇ 1969년 8월 5일(훈령 제18호)

해상통신 및 어업무선국에 대한 전파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 서울전파감시국에 제11분실(서울)과 제12분실(인천)

– 부산전파감시국에 제21분실(부산)

– 광주전파감시국에는 제31분실(여수)을 신설



▲ 1969년도 속초 분실전경

◇ 1969년 12월 3일(대통령령 제4373호)

지방체신관서(전파감시국) 직제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적용) 지방 체신관서 설치법에 규정된 지방 체신관서의 보조기관 설치와 사무분장은 이 영에 의한다.

제2조 (공무원의 조정) 지방 체신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5장 전파 감시국

제9조 (국장) 전파 감시국에 전파감시국장을 둔다.

전파 감시국장은 행정 서기관 또는 통신기정으로서 보한다.

제10조 (하부조직) 전파감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감리과 및 기술과를 둔다.

감리과장은 행정사무관, 기술과장은 통신기좌로서 보한다.

감리과는 무선전신의 감시, 불법 전파 포착 기타 국내 타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기술과는 송수신기, 전원 기타 기기의 보수 및 전파 방향탐지 전계강도와 주파수의 측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1970년 1월 12일(훈령 제26호)

– 광주전파감시국에 32분실(제주)

– 강릉전파감시국에 41분실(속초)을 각각 신설

◇ 1970년 1월 31일(훈령 제27호)

– 전파감시국의 감리과의 감시계와 방탐계를 제1계 및 제2계로 개정

◇ 1970년 3월 26일(훈령 제31호)

전파감시국 분실 명칭 개정

– 서울전파감시국 서울 및 인천 분실을 11 및 12분실로

– 부산전파감시국 부산 분실을 21분실로

– 광주전파감시국 여수 및 제주분실을 31 및 32분실로 하고

– 강릉전파감시국 속초분실을 41분실로 개정

◇ 1970년 11월 19일(훈령 제36호)

– 전파감시국 분실 신설(합덕, 홍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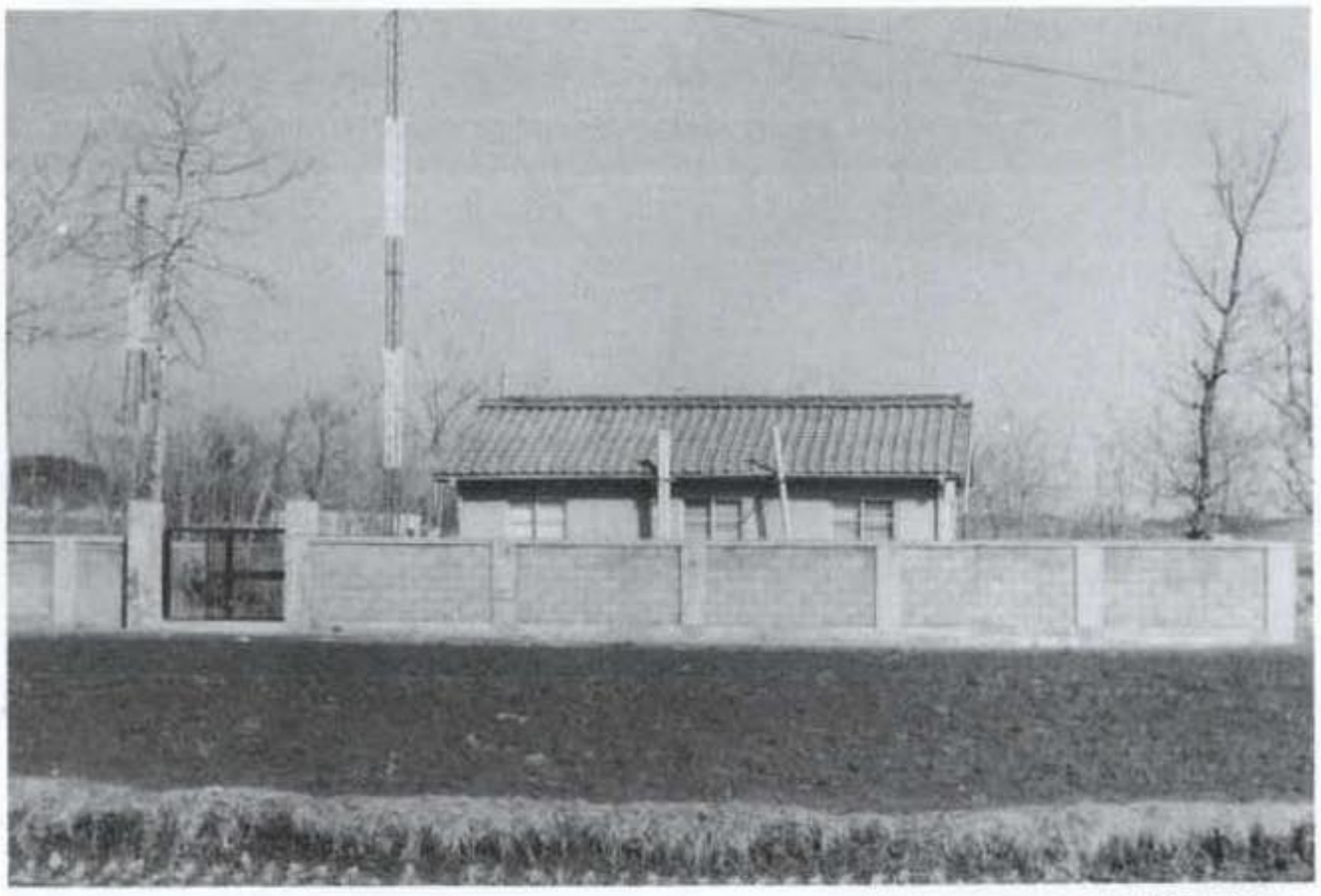

▲ 강릉전파감시국 초기 방탐실 요원 숙소

◇ 1971년 4월 2일(대통령령 제5586호)

– 전파감시국 정원표 개정

□ 전파감시국 공무원 정원표

직급	정원	직급	정원
총계	437		
2급내지5급계	284	전송기원	29
통신기정	4	행정서기보	4
전무기좌	4	통신원보	32
통신기좌	4	전송기원보	37
행정주사	4	기능직계	108
통신사	31	2등급통신원	20
전송기사	14	3등급통신원	40
행정주사보	4	4등급통신원	33
통신사보	29	4등급조무원	3
전송기사보	12	5등급조무수	8
행정서기	12	6등급조무수	1
통신원	64	고용원계	45

◇ 1971년 12월 24일(훈령 제40호)

– 전파감시국 분실 신설(사천)

◇ 1973년 3월 13일(대통령령 제6557호)

– 전파관리국 감시업무과를 감시과로 개칭

◇ 1974년 4월 1일(대통령령 제7101호)

– 전파감시국의 감리과를 관리과로 개칭하고 감시과를 신설

◇ 1974년 5월 20일(훈령 제59호)

– 분실 폐지(인천, 여수)

◇ 1974년 9월 25일(대통령령 제7260호)

– 전파관리국 감리과를 관리과로 개칭

(감리과의 감리계를 관리계로, 감시과에 통신보안계 신설, 기술과의 시설계와 검정계를 기술계 및 검사계로 개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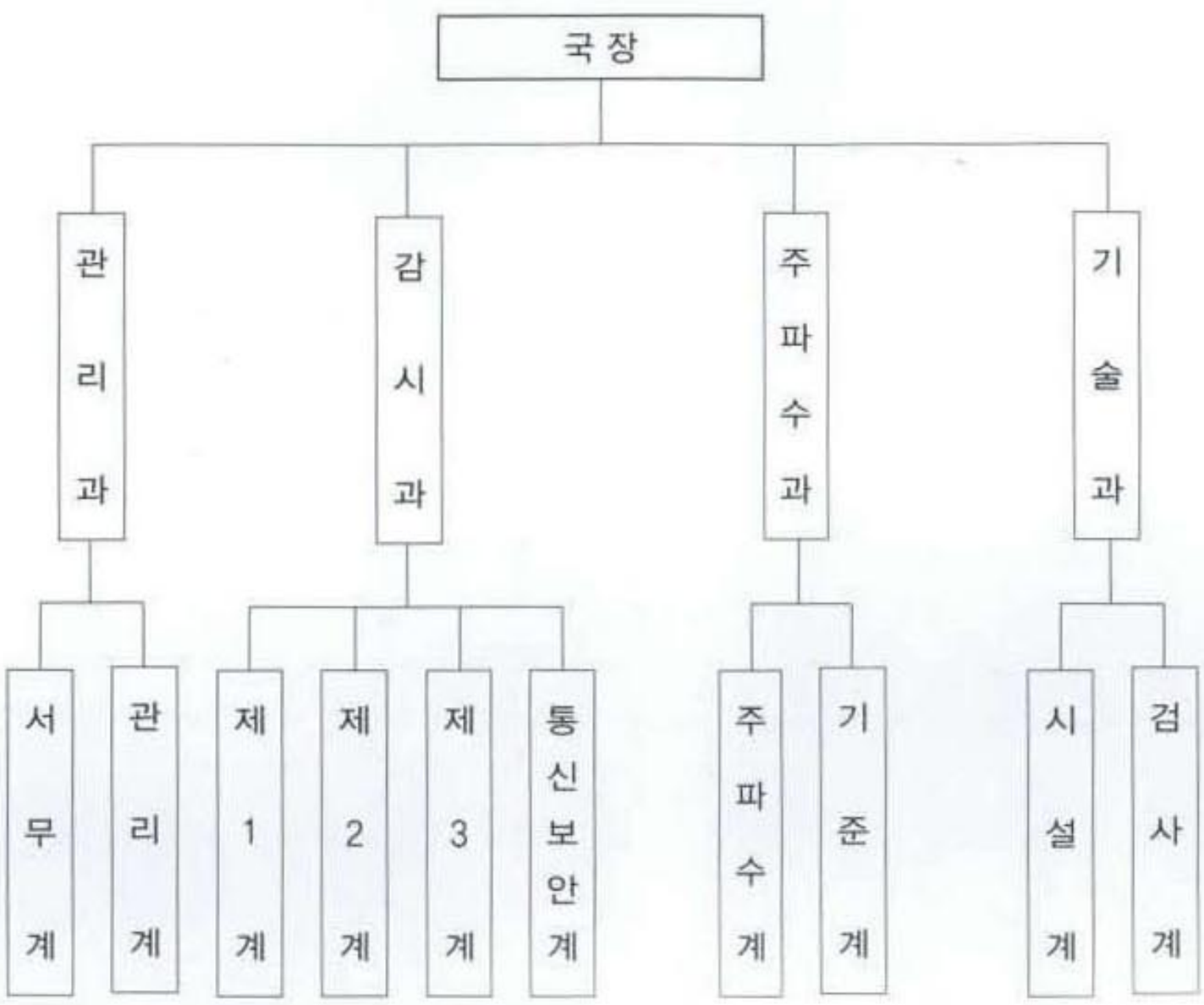

◇ 1976년 2월 6일(대통령령 제7978호)

– 지방체신관서 직제 중 전파감시국 사항을 전파관리국 직제에 통합

– 전파탑 관리 사무소 신설

(전파관리국 각과의 계 편제는 담당제로 개편하여 관리과의 서무계 및 관리계를 서무담당, 관리담당으로, 감시과의 제1계, 제2계, 제3계 및 통신보안계를 일반감시담당, 특별감시담당, 고정감시담당, 통신보안담당으로 주파수과의 주파수계 및 기준계를 주파수담당, 기준담당으로 기술과의 기술계 및 감사계를 기술담당, 감시담당으로 변경)

□ 전파관리국 공무원 정원표

구분 / 직급별	총계	전파관리국	전파연구소	전파탑관리사무소	전파감시국
총계	683	84	47	29	523
2급내지5급계	471	73	35	14	349
통신기감 또는 통신부기감	1	1			
통신부기감	1		1		
서기관	2	1		1	
서기관또는통신기정	1	1			
통신기정	8	2	2		4
행정사무관	10	4	1	1	44
통신기좌	15	5	4	1	5
전무기좌	5	1			4
행정주사	29	17	2	2	8
통신기사	1			1	
전송기사	38	17	4	1	16
통신사	39	5			34
행정주사보	14	6	2	2	4
건축기사보	1	1			
전기기사보	1			1	
전송기사보	34	1	10		23
통신사보	44	66			38
행정서기	18	2	3	2	11
전송기원	51		6	22	43
통신원	76	3			73
행정서기보	44				4
전송기원보	39				39
통신원보	39				39
기능직계	144	5	7	4	128
2등급체신원	4				4
3등급체신원	5			1	4
4등급체신원	9			1	8
5등급체신원	9			1	8
6등급체신원	9			1	8
7등급체신원	22	1	1		20
8등급체신원	27		2		25
9등급체신원	15		2		13
10등급체신원	15	4	1		10
11등급체신원	13		1		12
12등급체신원	16				16
고용원	68	6	5	11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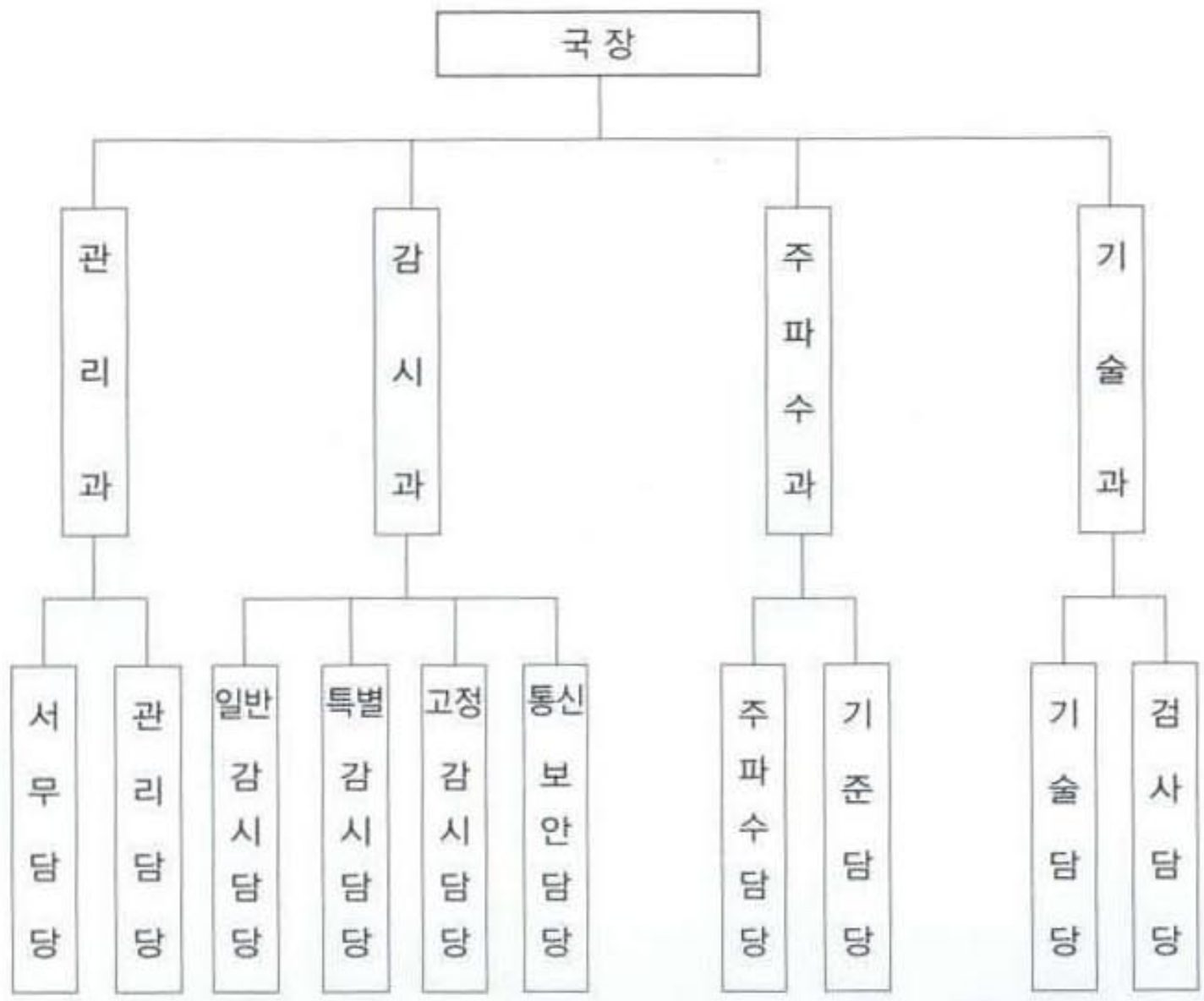

◇ 1976년 12월 14일(대통령령 제8306호)

– 서울, 부산, 강릉전파감시국에 분국신설 및 서울전파감시국에 통제과 신설

□ 전파관리국 공무원 정원표

구분 / 직급별	총계	전파관리국	전파연구소	전파탑관리사무소	전파감시국
총계	739	84	47	29	579
2급 내지 5급 계	505	73	35	14	383
통신기감 또는 통신부기감	1	1			
통신부기감	1		1		
서기관	2	1		1	
서기관또는통신기정	1	1			
통신기정	8	2	2		4
행정사무관	10	4	1	1	4
통신기좌	18	5	4	1	8
전무기좌	5	1			4
행정주사	29	17	2	2	8
통신기사	1			1	
전송기사	42	17	4	1	20
통신사	43	5			38

직급별 \ 구분	총계	전파관리국	전파연구소	전파탑관리사무소	전파감시국
행정주사보		18	6	2	28
건축기사보	1	1			
전기기사보	1			1	
전송기사보	45	1	10		34
통신사보	52	6			46
행정서기	18	2	3	2	11
전송기원	51		6	2	43
통신원	76	3			73
행정서기보	4				4
전송기원보	39				39
통신원보	39				39
기능직계	159	5	7	4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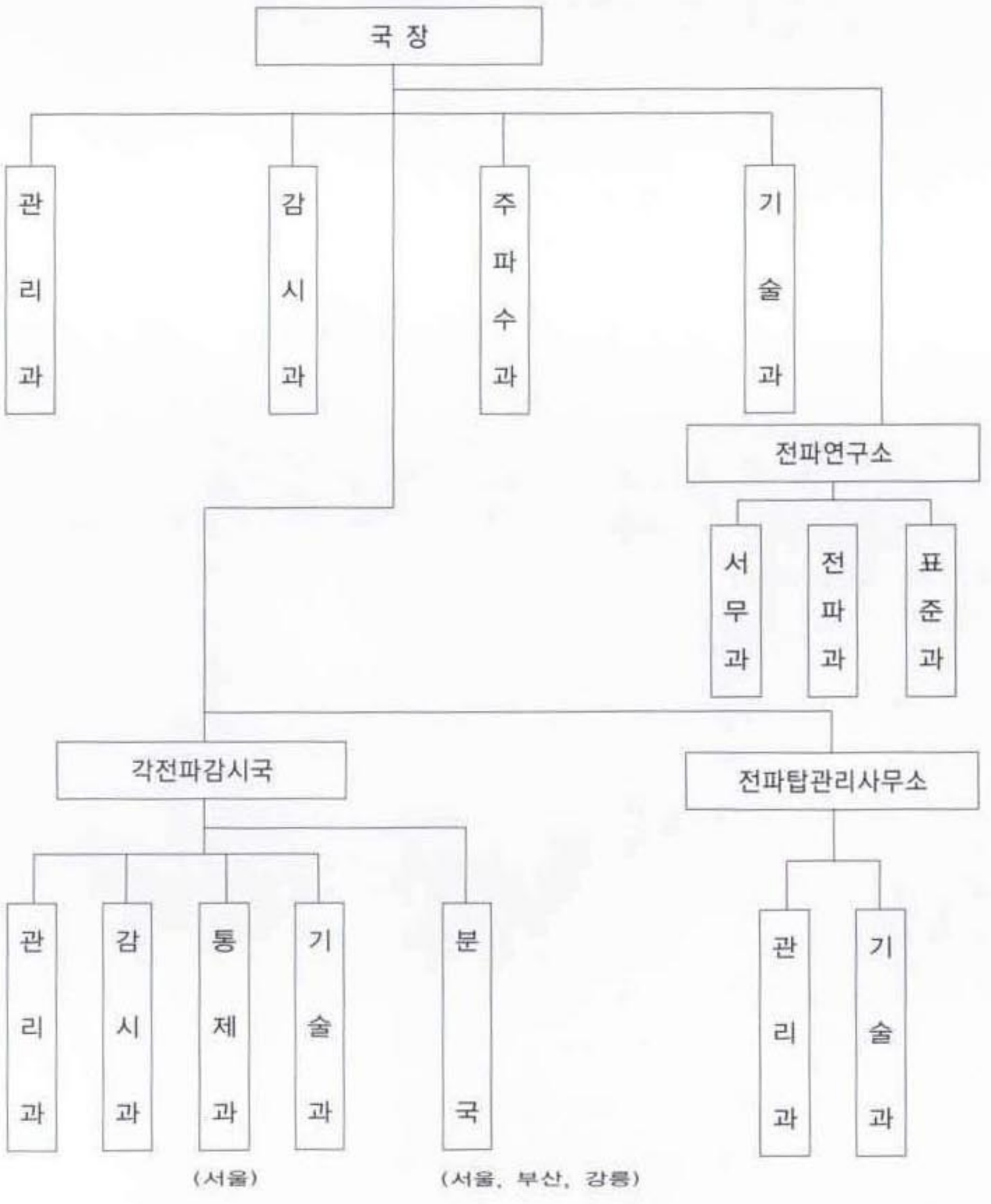

□ 전파관리국

가) 관리과

- 서무, 인사 및 회계
- 소속 관서의 사무감사
- 사업의 기본운영계획과 예산편성
- 전파관리의 기획과 통제
- 무선종사자 교육, 지도,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 국제 전파관리기구와의 협조
- ITU와 외국 주관청과의 연락

나) 감시과

- 전파감시업무의 기획통제
- 방향탐지업무의 기획통제
- 방향탐지업무 관계일체
- 통신보안
- 무선국 통신감사, 불법전파 및 불법무선국 단속
- 전도자금 출납

다) 주파수과

- 주파수 및 호출부호 할당 지정
- 주파수 취득 및 등록
- 전파형식과 공중선 전력의 지정
- 주파수 측정
- 주파수의 사용과 혼신에 대한 통제
- IFRB 및 CCIR과의 연락
- 주파수 작성
- 주파수 및 무선기기의 종합적 기준 책정
- 전파예보

라) 기술과

- 전파감시 설비의 운용
- 전파감시 설비와 확장개량에 관한 계획과 건설
- 전파감시 설비의 소요 자재 수급
- 무선설비 및 고주파 이용 설비의 검사와 단속

– 무선국의 검사에 대한 측정기준과 연구

□ 전파감시국

가) 감리과

– 서무, 인사 및 회계

– 전파감시업무에 대한 제반 계획

– 전파감시

– 불법전파의 포착 및 단속

나) 기술과

– 전파감시시설, 공중선시설, 전파원 장치의 보수 및 유지

– 전파의 질에 관한 측정과 분석

– 무선설비 및 상용전파 이용설비의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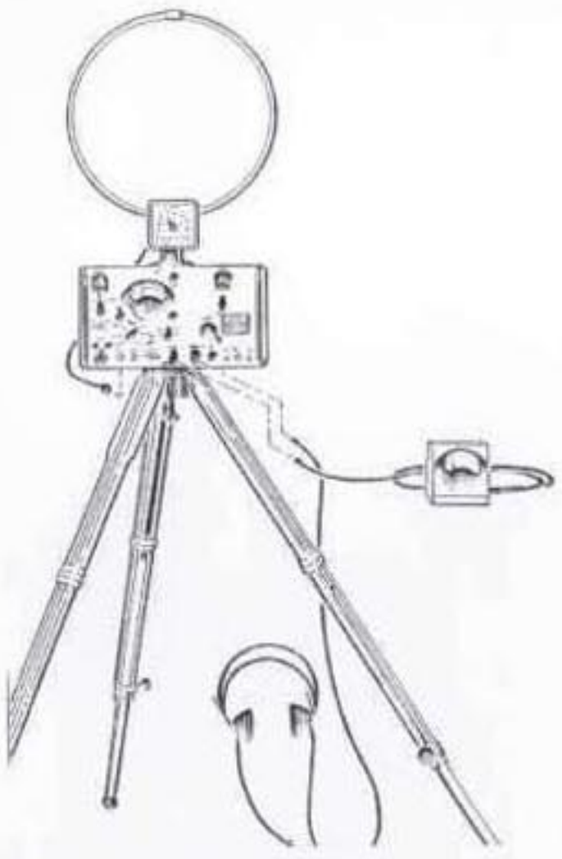

▲ NM-25T 전계강도 측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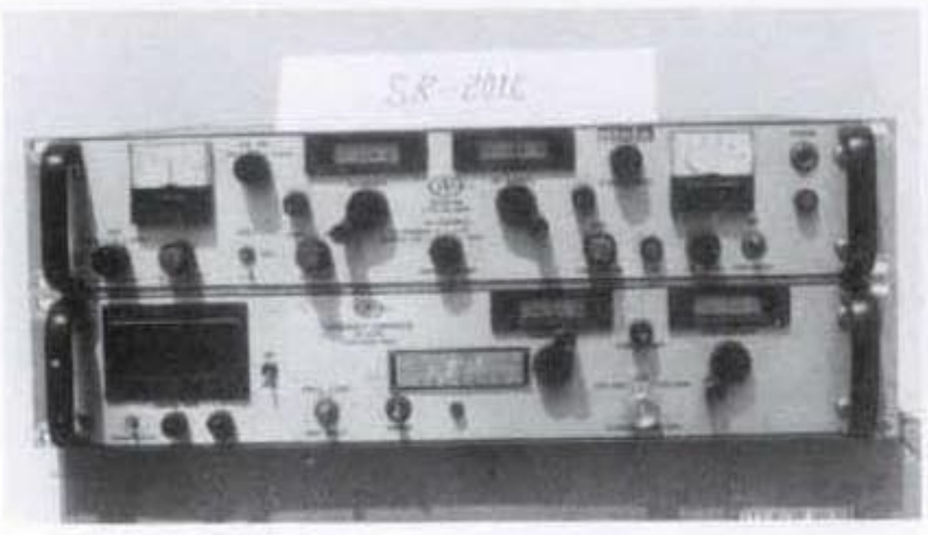

▲ SR 201C 수신기

□ 전파감시시설의 확장

6 · 25동란 중에 일시 중단되었던 서울, 광주 두 전파감시국의 전파감시업무는 정부의 환도를 전후하여 재개하였으나 전파감시시설의 대부분이 동란 중에 파괴되어 이의 복구와 확충이 급선무였다.

따라서 정부 환도 후에는 전파감시시설의 복구에 주력한 결과 어느 정도 그 결실을 보아 대체로 5 · 16군사혁명 전까지는 전파감시업무를 본궤도에 올릴 수 있게 하였다. 즉 ICA 협조에 의한 자재 및 기계 등의 도입과 자체예산의 중점적인 배당으로 매년 시설의 증설 및 대체를 보았고, 특히 당시로서는 최신시설인 표준정밀 주파수 측정장치를 비롯하여 방향탐지기 감시용 고감도 수신기, 감시용 송신기 등을 각 감시국에 연차적으로 장치함으로서 국내외 각 무선국에서 발사되는 모든 편차를 측정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 이후에는 "통신사업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전파감시 시설의 확장 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계획 내용에서 전파관련 부분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통신사업5개년계획" 중 전파관련 부분

정상적인 전파통제 규율화를 위하여 각종 정밀 측정시설을 갖추어 다음 사항에 만전을 기한다.

1. 각종 무선통신 업무의 보호를 위하여 불법주파수의 단속, 혼신제거, 인공잡음의 제거를 기한다.
2. 불법전파의 철저한 단속과 무허가 시설의 적발 및 이동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3. 공중통신 업무의 안전을 위하여 전파전파의 예보 및 경보, 잡음의 분포상황조사를 시행한다.
4.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요청 또는 권고하는 국제전파감시업무를 수행한다.
5. 전파는 국가의 자원으로서 그 이용 분야가 광범위하여 한정된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리층연구를 위하여 전파연구기관을 설치한다.
6. 선진국가에서 이미 이용되고 있는 우주통신의 개발에 관한 기초적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긴요한 정밀시설을 설치한다.

전파관리국에서는 이상과 같은 계획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매년 시설 투자계획표를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1962년도	1. 각종 전파형식의 점유대폭 측정기 및 분석기 시설
	2. 초단파 감시용 공중선 시설
1963년도	1. 수정편 고정제작 업무용 시설
	2. 부산전파감시국 청사신축과 시설의 이동 및 확장
1964년도	1. 잡음분석 제거용 측정장치
	2. 무선통신의 개선 실험용 시설
	3. 이동감시소 설치 및 시설확장
1965년도	1. 전리층 관측 시설
	2. 전파연구소 설치
	3. 국제감시용 측정 시설
1966년도	1. 전리층 및 대류권 산란파 측정분실 설치 및 시설
	2. 극초단파 송수신장치 및 실험용 측정장치 설치

제 2 절 전파관리국의 內局化

전파관리국은 1961년 당시 전무국 전파관리과로부터 전파관리국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체신부 외국으로 지속하여 오다가 1982년 1월 1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발족을 계기로 차제에 전파관리국을 체신부에서 완전히 분리시키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전파관리국을 제외한 체신부가 독립된 부처로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근본문제에 봉착하여 1981년 12월 31일자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3518호)시, 내국조직으로 개편되어 정책과 행정기능을 보강한데 이어 종래 전파관리국의 산하관서였던 전파연구소와 서울, 부산, 광주, 강릉의 4개 전파감리국 및 전파통제소는 체신부 직할관서로 개편되었다. 전파관리국에는 전파기획과, 감리과, 방송과, 주파수과 및 기술과를 두고 국장은 이사관, 통신기감, 부이사관 또는 통신부기감으로 전파기획과장은 서기관으로 감리과장 및 방송과장은 서기관 또는 통신기정으로 주파수과장 및 기술과장은 통신기정으로 보하도록 하였다. 전파관리국 각과의 업무는 개편되기 전의 사무와 대동소이하였다. 그리고 선진국을 비롯한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주력하고 있던 통신, 위성방송의 개발에 관한 업무를 주파수과에서 분장토록 1982년 12월 31일 다시 개정되었다. 추가된 사무분장 내용은 ①우주개발을 위한 전파자원과 위성궤도에 관한 정책수립 ②통신, 방송위성의 계획 및 기술기준의 제정 ③위성관계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④우주개발에 따른 전파이용 및 감시기술의 연구, 조사 등이었다.



◀ 1981년 12월 31일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3518호)

I. 전파감시기구의 개편

전파감시업무는 1979년 9월 7일(대통령령 제9601호) 일반감시와 특별감시를 분리하여 전파통제소를 신설하였다. 전파감시국에서는 순수한 일반감시업무만을 담당하였고, 신설된 전파통제소에서는 특별감시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서울(합덕), 부산(양산), 강릉(대관령)에 분국을 설치하고 광주, 김포, 제주에 분실을 설치하였다. 1979년 9월 20일에 업무를 개시하였던 남산주재실과 제11분실(수색)과 더불어 서울, 경인지역 VHF대의 감시업무를 보강하였고, 1980년 3월에는 제주분실청사를 제주시 오라동 한림읍으로 이전하여 특별감시업무를 전담토록 하였다.

1980년 8월 26일에는 일반감시업무를 담당하던 전파감시국을 전파감리국으로 개칭하고 감시과를 감리과로 개칭하였다.

이듬해인 1982년 1월 1일을 기해 전파통제소를 전파통제국으로 개칭하여 전파감리국과 함께 본부직할 관서로 개편되었고 전파통제국 제53분실은 제주분국으로 승격하였다.

1983년 1월 1일 전파통제국은 관리, 조사, 통제계 체제로 개편되어 업무를 일원화하기 시작하였고, 이때 전파감리국은 체신청 직속기관으로 이관되었다.

그후 1년 만인 1983년 12월 30일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전파감리국은 각 체신청 직할에서 분리되면서 각 지역 전파감리국과 전파통제국을 통·폐합하여 중앙전파감시소로 승격 발족하면서 4개 지방 전파감리국에서 수행하던 업무중 전파감시분야는 중앙전파감시소로 허가, 검사 등 민원관련 업무는 7개 체신청에 이관하여 무선국 증가에 따른 민원창구를 확대하고 지역적으로 분장된 전파감시업무를 전국단일 종합감시 체제로 전환하였다.



▲ 중앙전파감시소 현판식

◇ 1979년 9월 7일(대통령령 제9601호)
- 전파관리국에 방송과 신설
- 서울전파감시국에 통제과 및 분국폐지

– 부산전파감시국 분국폐지

– 강릉전파감시국 분국폐지

– 전파통제소 신설

제6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표준과는 표준전파에 관한 연구 및 조사, 무선시설의 기술기준, 무선기기 형식검정 및 연구, 무선통신 생산품에 대한 기술지도 및 수정발진자의 측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 제4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 전파감시국에 관리과, 감시과 및 기술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감시과장은 전무기좌로, 기술과장은 통신기좌로 각각 보한다.

⑤ 관리과는 서무, 인사, 문서관리, 회계, 무선국의 허가 및 무선종사 자격검정의 실시와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⑥ 감시과는 전파의 감시, 불법전파의 단속 및 전계강도와 주파수의 측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 기술과는 송수신기, 전원 기타 기기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 (전파통제소) 통신정보에 관한 전파의 감시 및 방향탐지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전파관리국장 소속하에 전파통제소를 둔다.

② 전파통제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 또는 통신기정으로 보한다.

③ 전파통제소에 관리과, 조사과, 통제과 및 분국을 두되,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조사과장은 전무기좌로, 통제과장은 통신기좌로, 분국장은 통신기좌 또는 전무기좌로 보하며, 분국은 서울, 부산 및 강릉지방에 한한다.

④ 관리과는 서무, 인사, 문서관리, 회계 및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⑤ 조사과는 전파의 특별감시, 이동감시 및 방향탐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 통제과는 전파의 고정감시 및 방향탐지와 특별 및 고정감시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 분국은 전파의 감시 및 방향탐지, 전파감시시설의 운용 및 유지보수와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1979년 12월 22일(전파관리국 훈령 제94호)

□ 전파관리국 공무원 정원표

구분 / 직급별	총계	전파관리국	전파연구소	전파탐관리사무소	전파감시국	전파통제소
총계	795	101	47	22	350	275
2급내지5급계	546	88	35	8	224	191
통신기감 또는 통신부기감	1	1				
통신부기감	1		1			
서기관	2	2				
서기관또는통신기정	5	2			2	1
통신기정	6	2	2		2	
행정사무관	13	6	1	1	4	1
통신기좌	17	5	4		4	4
전무기좌	6	1			4	1
행정주사	33	20	2	1	1	82
통신기사	1			1		
전송기사	46	17	4		13	12
통신사	43	4			25	14
행정주사보	21	8	2		6	5
건축기사보	1	1				
전기기사보	1					
전송기사보	50	4	10		21	15
통신사보	52	5			22	25
행정서기	24	5	3	2	8	6
전송기원	58	4	6	2	31	15
통신원	80	1			27	52
행정서기보	4				4	
전송기원보	41				30	11
통신원보	40				13	27
기능직계	167	5	7	4	79	72
2등급체신기장	4				2	2
3등급체신기장	5			1	1	3
4등급체신기장	9			1	5	3
5등급체신기장	9			1	4	4
6등급체신기장	11			1	6	4
7등급체신기장	29	1	1		13	14
8등급체신기장	34		2		10	22
9등급체신기장	22		2		10	10
10등급체신기장	44	4	2		28	10
고용원	82	8	5	10	47	12

□ 전파관리국 조직도(1979년 9월 7일 대통령령 제96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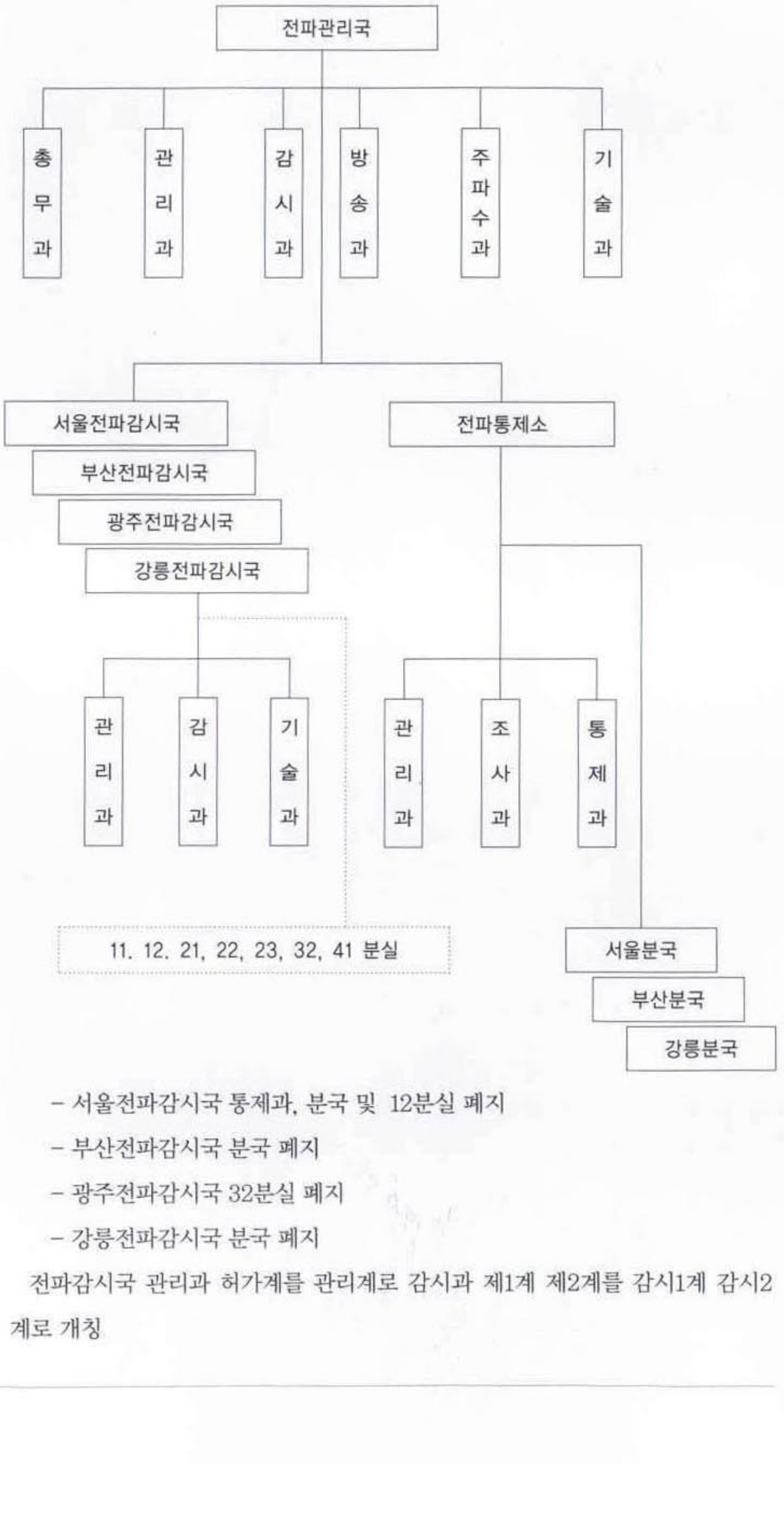

– 서울전파감시국 통제과, 분국 및 12분실 폐지

– 부산전파감시국 분국 폐지

– 광주전파감시국 32분실 폐지

– 강릉전파감시국 분국 폐지

전파감시국 관리과 허가계를 관리계로 감시과 제1계 제2계를 감시1계 감시2계로 개칭

◇ 1979년 12월 22일(전파관리국 훈령 제95호)

- 전파통제소 관리과에 서무계, 회계계
- 조사과에 분석계, 조사계, 측정계
- 통제과에 통제계, 운용계, 기술계
- 서울분국에 관리계, 통제계
- 부산 · 강릉분국에 관리계, 조사계, 통제계 및 51, 52, 53분실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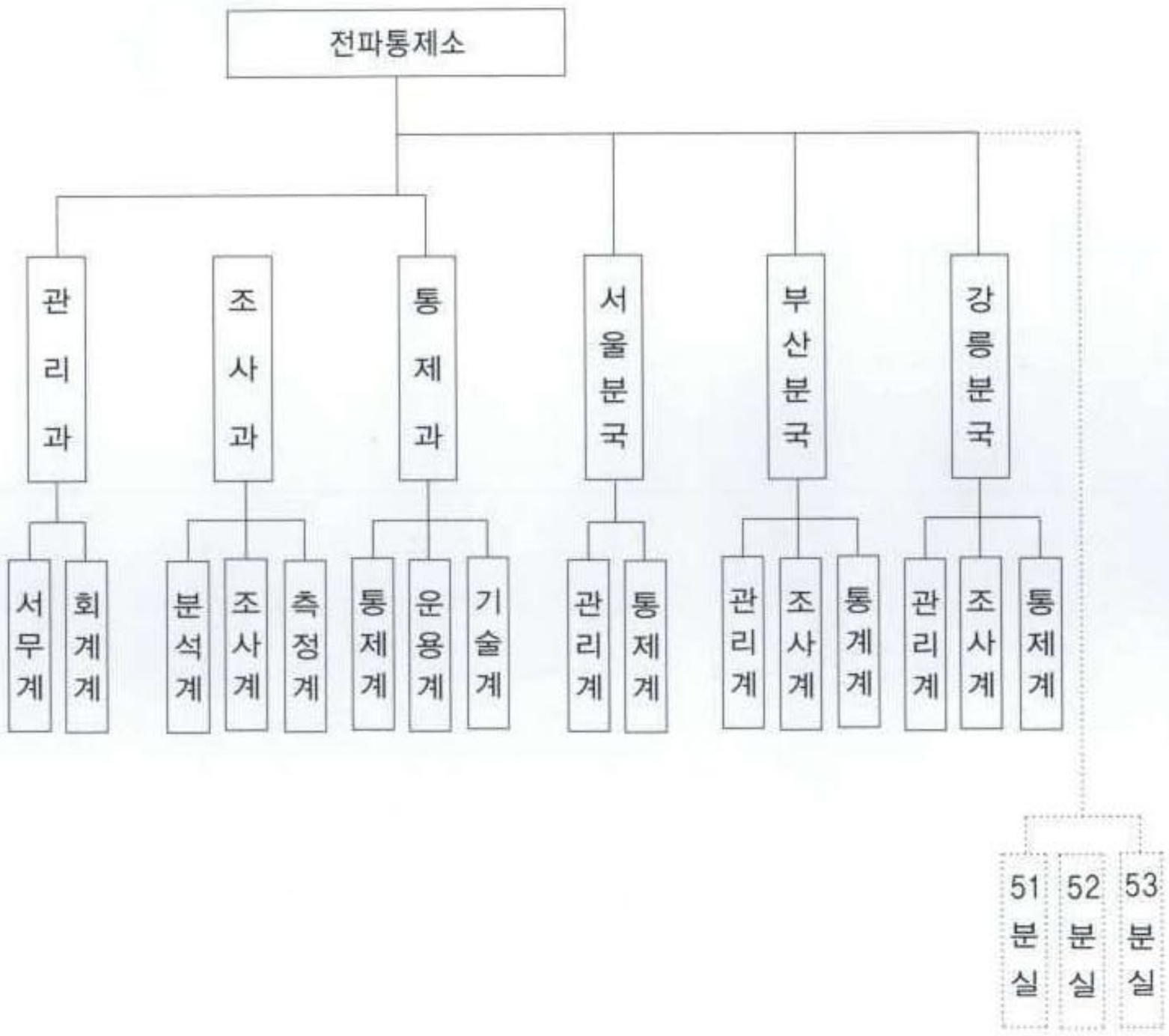

◇ 1980년 8월 26일(대통령령 제10008호)

- 전파관리국 감시과는 감리과로
- 전파감시국은 전파감리국으로 개칭
- 전파통제소 51분실을 폐지하여 광주분국으로 승격
- 전파탑 관리사무소 폐지

제7조의 제목 "(전파감시국)"을 "(전파감리국)"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중 "전파감시국"을 각각 "전파관리국"으로 하며, 동조 제4항 중 "감시과"와 "감시과장"을 "감리과"와 "감리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6항 중 "감시과"를 "감리

과"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분국은 서울, 부산 및 강릉지방"을 "분국은 서울, 부산, 강릉 및 광주지방"으로 한다.

제9조(위임규정) 이 영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1980년 12월 24일(전파관리국 훈령 제105호)

- 전파통제소 광주분국에 관리계, 조사계, 통제계 신설

2. 전파관리 업무

가. 무선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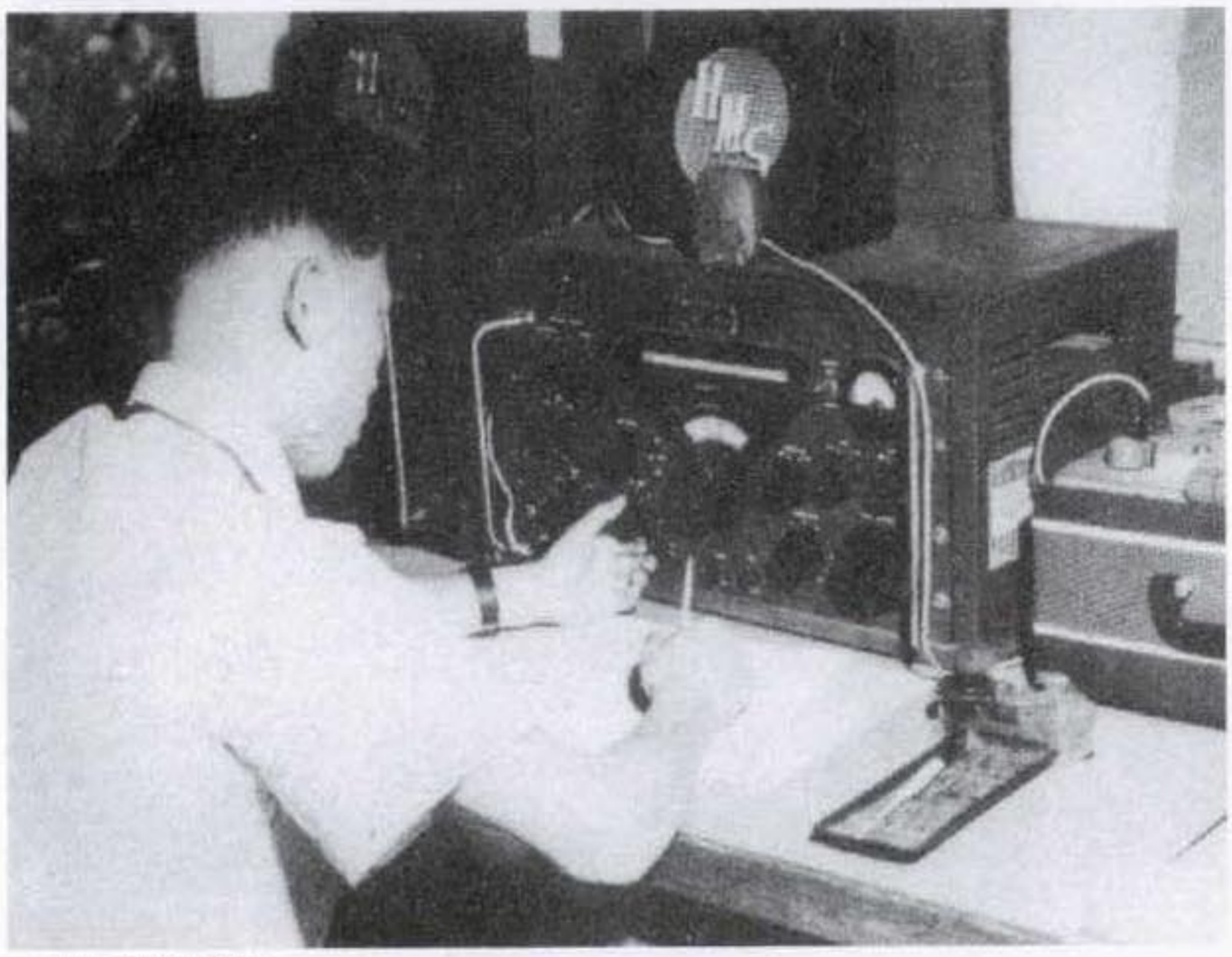

▲ 선박무선 전파감시

1945년 광복 전까지만 해도 몇 개에 불과하던 공중통신용 무선국은 1945년 이후 경제발전과 더불어 통신설비의 수요를 더욱 급증시켰고 이로 인한 무선국 수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무선통신부문은 1962년을 기점으로 하여 제6차에 걸쳐 실시되어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힘입어 더욱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무선통신분야는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1961년에는 사용주파수가 약 6,000여파, 1,150여국에 불과하던 무선국 수는 전파관리법이 시행되던 1962년을 기점으로 하여 급격히 증가하여 1980년 말에는 약 190,000여파, 무선국수 22,000여국으로 증가하였다.

1966년 이후의 무선국은 다음 도표와 같이 매년 거의 30%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모든 성과가 조기 달성될 2001년도에는 무선국에 대한 수요가 더욱 격증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무선국에 대한 전파감시업무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시 될 것으로 분석된다.

□ 지역별 무선국 통계(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선국 종별 / 지역별	방송국	고정국	항공고정국	해안국	항공국	육상국	기지국	휴대기지국	선박국	항공기국	육상이동국	이동국	휴대국	무선표지국	무선측위국	실험국	비상국	아마추어국	간이무선국	기타	계	고주파이용설비
서울특별시	6	210	2	1	4		130	27		85	4,358	6	836	7	8	77	224	233	13	6,227	325
부산시	14	76	1	11	3	11	33	19	2,412		322	73	918	10	3	3	68	60	70	4,107	215
경기도	30	291		10		7	97	19	1,031		641	27	250	7	9	38	61	71	34	2,623	159
강원도	60	194	2	16	5	8	143	4	849		398	15	30	3	1	14	2	17		1,761	88
충청북도	38	83					52	2			112		10			20	4	15		336	38
충청남도	8	176		4		8	106	9	212	1	430	6	752	2	1	14	19	27	8	1,803	73
경상북도	64	196		15	1	12	143	5	1,696		575	16	216	3	2	38	37	46		2,065	116
경상남도	58	333	2	20	1	12	94	16	647		345	9	339	5	1	13	35	63	65	3,058	75
전라북도	32	161		8		6	61	4	506		150	11	54	1	2	12	13	14		1,035	43
전라남도	51	830	3	19	2	16	111	11	1,057	1	355	37	193	3	2	18	22	15		2,746	113
제주도	16	48	5	9	2	6	8	3	291		42	10	19	8	1	3	4	7		482	15
계	397	2,598	15	113	18	86	978	119	8,701	87	7,728	210	3,617	49	30	250	489	568	190	26,243	1,260

□ 연도별 감시대상 무선국(82년 이후)

구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고정국	2,539	2,530	2,777	2,786	2,994	3,368	3,298
해안국	107	102	114	118	119	119	120
기지국	1,138	1,361	1,707	1,959	2,315	2,476	2,711
항공국	15	17	22	23	29	37	43
무선표지국	46	56	71	84	93	112	94
육상이동국	9,163	11,329	28,352	34,229	49,410	58,196	72,923
휴대국	3,662	3,186	3,698	3,487	4,234	3,160	1,794
항공기국	95	95	101	105	107	136	140
선박국	9,403	9,756	10,258	10,387	10,755	11,420	12,222
방송국	435	543	655	834	924	1,004	1,110
실험국	23	23	25	22	25	23	26
아마추어국	664	932	1,203	1,608	2,196	2,141	2,521
간이무선국	2,620	4,993	8,380	14,484	25,396	38,287	30,147
기타	813	1,317	1,638	1,665	647	1,119	2,501
고주파이용설비	1,428	1,540	1,881	2,032	2,364	2,426	2,523
계	32,151	37,780	60,882	73,823	101,608	124,024	132,173

□ 연도별 전파위규현황

종별 \ 연도별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비고
전파감시		1,083,452	1,083,452	1,083,452	1,213,209	1,622,518	1,910,858	
운용위규	전파질위규	37	44	111	101	69	80	
	통신시간	646	791	681	464	493	603	
	통신방법	373	413	627	688	616	540	
	허가장위반	513	564	688	785	743	804	
	전파사용위반	204	421	482	243	364	392	
	계	1,773	2,233	2,589	2,281	2,285	2,419	
혼신제거	중요통신	28	32	48	63	55	58	
	일반통신	45	61	52	66	33	64	
	계	73	93	100	129	88	122	
불법무선국	아마추어국	24	8	15	23	15	17	
	선박국	225	244	202	241	1,163	417	
	티브이중계비	1	91	11	11	10	5	
	고주파설비	51	100	102	73	76	167	
	계	31	443	330	348	1,264	606	
국제위규	침묵시간위반			7	8	7	26	
	호출방법위반					1	11	
	계			7	8	8	37	
국제위규접수	침묵시간위반			1	1	4	2	
	주파수편차위반				2	3	11	
	호출방법위반			34	2	5	1	
	주파수대폭위반					2		
	계			35	5	14	14	
운용위규	육상국			230	264	204	254	309
	선박국			821	1,281	708	1,218	657
	계			1,051	1,545	912	1,472	966
운용위규	종사자			6,769	9,515	12,685	11,132	13,213
	이용자			2,693	37,730	47,950	53,402	64,811
	계			9,462	47,245	60,635	64,534	78,024

구분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일반감시	감시	운용감시	996,386	1,060,543	1,147,430	1,390,165	1,736,230	1,852,916	1,971,418	2,413,801	3,412,159	4,303,591	4,273,255	4,113
		품질감시	87,066	152,666	188,315	232,353	174,628	243,559	274,103	364,164	381,294	378,957	480,878	620,701
	위규	운용위규	2,269	2,562	2,309	2,273	2,409	2, 580	2,735	3,548	5,890	6,249	5,975	5
		품질위규	44	111	101	69	97	87	65	122	144	131	152	208
		불법국	443	330	348	1,264	606	4,848	541	701	1,357	2,784	2,159	2,227
		보안위규	36	37	22	35	80	58	62	74	105	47	24	13
	혼신제거		93	100	129	88	117	148	127	121	103	141	132	140

나. 무선국 허가

제한된 전파자원의 합리적 관리와 효율적 이용으로 공공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이나 국가기관(군용통신 제외) 등 누구를 막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전기통신협약 부속 무선통신규칙에서도 각국의 주관청의 허가 없이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계의 모든 국가는 무선국의 허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발사하는 전파가 극히 미약한 무선국으로서 전파관리법 제4조제1항이 정하는 것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였다.

무선국 허가는 신규, 변경 및 재허가의 세 경우로 구분되며 방송국을 제외한 무선국의 허가는 지방 전파감리국장에게 위임하였고 신문사 및 통신사의 무선국에 대하여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방송국의 허가는 체신부장관이 문화공보부장관과 합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는 이들 무선국의 특수성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고 무선국의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과정을 통하여 허가하였다.

□ 무선국허가절차 계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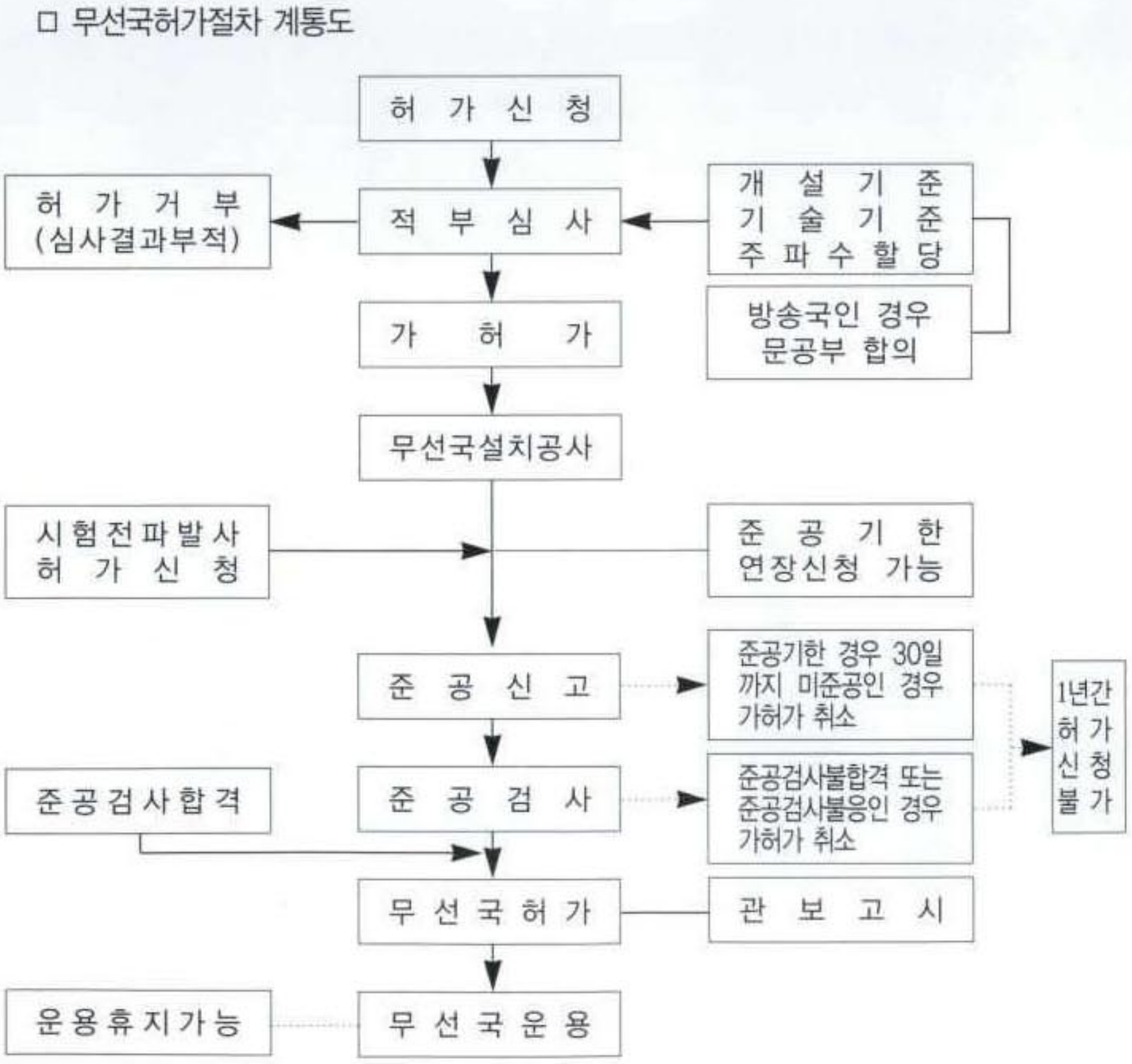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로는 ① 허가신청서 ② 공사설계서 ③ 선박등기부등본(선박인 경우에 한함) ④ 신원증명서(정부기관 및 정부전액투자기관을 제외한 기관의 모든 임원) ⑤ 항행구역이 표시된 증서(선박인 경우에 한함) ⑥ 문화공보부장관의 추천서(방송국에 한함) ⑦ 항공기 등록증명서(항공기인 경우에 한함) ⑧ 자동차의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인 경우에 한함) 등이 필요하며, 허가신청 서식은 전파관리법시행규칙 별지에 무선국의 종별에 따라 허가신청서식과 공사설계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무선국 허가의 심사기준은 무선국의 공사설계가 전파관리법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주파수 할당여부, 무선국 운용에 소요되는 재정적 기초 등이다.

무선국의 허가만을 얻고 운용하지 못한다면 귀중한 전파자원을 능률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재정관계를 심사함과 동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허가에 대한 기본방침인 개설기준에 적합한가를 심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선국허가의 개설기준은 무선국의 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하고 무선국 시설자가 아닌 타인의 사용에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이 기준에 대하여는 비상통신망 기타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체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은 타인의 사용에 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무선국개설의 목적, 통신의 상대방선정 및 통신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통신의 상대방과 통신사항은 그 국을 이용하는 사업 또는 업무의 수행상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끝으로 그 국을 개설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공중통신시설 및 무선설비 이외의 설비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할 것이 요건이 된다.



▲ KARL 강릉사무소 아마추어 무선국 개국

이와 같은 개설기준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지만 공중통신업무국, 공중업무국, 어업용 해안국, 방송국, 실험국, 아마추어국, 휴대국에 대하여는 전파관리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6조에 의거 무선국별 개설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무선국의 허가신청을 심사하여 그 신청이

심사기준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선국의 가허가를 하는 바, 가허가라는 것은 무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 종사자도 지정된 자격과 정원에 합치되면 앞으로 반드시 무선국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이다.

가허가시에 지정사항은 무선국의 준공기한, 전파의 형식 및 폭과 주파수, 공중선전력,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운용허용시간,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을 지정하여 가허가를 하여 주었으나, 가허가를 허가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었다.

다. 무선국 검사

무선국의 검사는 전파관리법령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무선국에 파견하여 시설을 검사하는 행위이다. 전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궁극적인 수단으로서 체신부장관이 그 권한을 지방 전파감리국장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무선국의 검사는 전파관리상 무선시설에 대한 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수행하는 업무내용 및 방법에서 전파감시업무와 구별되었다.

무선국 검사는 크게 허가시에 수반되는 검사와 허가된 기존무선국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자를 허가절차상 행하는 검사로서 허가업무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허가된 무선국의 감독을 위해 행하는 검사로서 시설감독기능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검사에는 준공검사와 변경검사가 있다. 준공검사는 무선국 허가신청을 하여 체신부장관(또는 허가업무를 위임받은 전파감리국장)으로부터 가허가를 얻은 시설자가 무선설비를 시설하고 준공신고를 한 때, 그 설비와 당해 무선국에 배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에 대하여 무선설비 규칙 및 가허가시 지정한 사항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검사에 불합격되면 가허가가 취소된다.

변경검사는 이미 무선국의 허가를 얻어 운용하던 시설자가 무선설비의 설치장소의 변경이



▲ 야간통행증



▲ 무선국 검사관 신분증

나 무선설비를 변경하고자 허가관서에 신청하여 변경허가를 얻고 그 후 변경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신고를 한 때에 허가관서에서 변경허가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검사에 합격하여야 변경 내용대로 운용할 수 있다.

감독상 행하는 무선국 검사는 정기검사와 임시검사가 있다. 정기검사라 함은 무선국의 무선설비가 허가 받은 내용대로 운용되고 있으며, 무선설비규칙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는 선임신고내용대로 배치하고 있는가, 또한 시계 및 업무서류 등은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비치하고 있는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다만 정기검사를 매년 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무선국과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국 및 항공기국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임시검사의 내용은 정기검사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정기검사가 사전에 시설자에게 검사일정을 통보하고 집행하는 검사라면 임시검사는 불시에 또는 시설자의 요청에 의해서 행하는 검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검사업무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부와 무선국의 적법운용(무선종사자의 자격, 정원 등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독행위로서 전파의 질서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1981년부터 소형 무선국에 대한 검사를 한국무선국종사자 협회에 위탁하였으며, 연도별 검사 실적은 아래와 같다.



▲ 무선국 운용

□ 연도별 무선국 검사

연　도	1977	1978	1979	1980	1981
검사건수	15,811	18,585	21,350	20,870	26,549

3. 전파관리업무 전산화

가. 전파관리의 전산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정보를 잘 이용함으로써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의 발전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도 각 부처별로 정확한 정보처리 능력을 배양하여 신속한 행정처리를 하고자 사무자동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파관리분야에서도 급증하는 전파이용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3년부터 주파수 관리 전산화를 추진하여 주파수 할당과 원부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나 전파관리업무의 신속, 정확화 및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보다 확장하고, 무선국 인 · 허가관리, 무선종사자관리 감시 및 검사시스템 등으로 확장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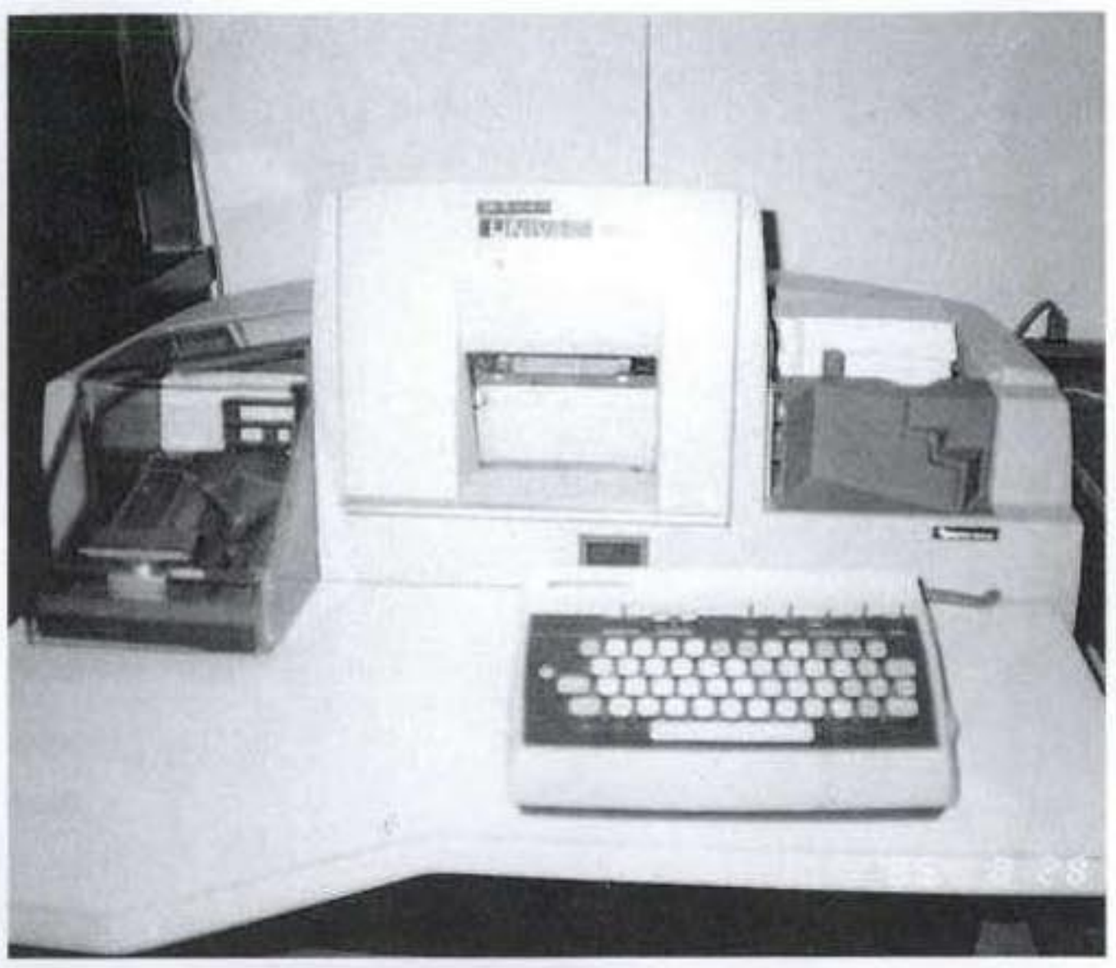

▲ 전파관리 On-line 주전산기

□ 전산화 추진사항

- 1972년 : 주파수관리 전산화 계획 구상
- 1973년 : 주파수관리 전산화 계획 수립
- 1974년 : 주파수관리 전산화 개발요원 현지훈련 (Fair Child사 2명, 2개월)
- 1976년 : 전파감시국 요원에게 FORMAT 작성요령 교육
- 1977년 : 체신부 전산계산소 전산기를 이용하여 일부업무 수행
- 1979년 : 주파수일람표 인출, V/UHF 혼변조 프로그램 수정, 보완과 동시에 체신부 전산계산소의 전산기UNIVAC1106에서 전파통제국 HP2116C형 컴퓨터에 적합토록 수정
- 1980년 : 전파통제국 HP2116C를 이용하여 주파수 관리업무 전산처리, 위성통신 간섭계산프로그램을 KETRI에서 개발, ITU에서 표준방송 전계강도 계산을 위한 프로그램 입수(LMF96)

당시 추진되어 온 전산화 업무는 모두 Batch 작업으로서 입력 Data를 읽어서

Error Data를 점검 후 보조기억 장치 (Disc 또는 Magnetic Tape)에 수록하고 수록된 Data를 Sort하여 영문으로 출력시키는 가장 단순한 전산처리와 주파수 대별 혼변조파를 계산하여 주파수 할당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전국지역별, 방송국별 TV시청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국의 치국계획 자료로 활용한 바 있다.

전파관리 전산화 업무를 단계별 연차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아래와 같이 대상 업무를 선정하였다

- 무선국 허가 및 무선종사자 관리
- 각종 전파감시 자료관리
- 방송국에 관한 각종 정보관리
- 주파수 및 호출부호 관리
- 군주파수 관리
- 무선국 검사업무 관리
- 무선기기 형식검정업무 관리
- 전파예보 및 전리층 데이터 관리

나. 전파관리업무의 전산화 확대



▲ 전파관리 On-line 단말기

이미 운용 중인 주파수관리전산화를 전파관리업무 전반에 걸쳐 확산시키기 위하여 1980년 그 타당성과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전파관리 종합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용을 위해 주전산기를 자체적으로 도입하려 하였으나 1983년 2월 주전산기는 환금관리사무소에 설치된 IBM 4341-11M을 공용하여야 한다는 방침이 확정되었다. 전파관리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도 이를 이용하여 개발하도록 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1984년에 지역별 무선국통계 외 10종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환금관리사무소와 본부간에 온라인 시스템을 구성 운용하게 되었다.

한편 컴퓨터 마인드의 확산과 앞으로의 온라인 시스템의 구성시에 단말기를 공용하기 위하여 다기능 사무용 퍼스널컴퓨터를 각 체신청 및 중앙전파감시소

에 공급하여 단순 반복업무를 자체적으로 전산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사무자동화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또한 이미 구축된 데이터 베이스를 계속 확장 발전시켜 무선국의 허가, 검사, 전파감시, 전파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1985년 2월 전파관리전산화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1988년까지 전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전파관리 종합경영정보 시스템(MIS)을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

그 첫해인 1985년에 전파관리업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 즉, 무선국 허가장 정보와 국가기술자격 정보관리 및 무선종사자 선임 및 해임 정보관리의 데이터 베이스, 소프트웨어를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용역, 개발토록 하는 한편 각 체신청 및 각 전파관서와 온라인 시스템을 구성, 현장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즉시 입출력하여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전파관리행정의 수작업에서 자동화 처리라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는 이미 구축된 데이터 베이스를 계속 확장 발전시켜 무선국 허가대장 및 허가사항서에 기재된 정보와 무선기기 형식검정 정보, 전리층 관측 업무 및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하여 고도의 과학기술 계산과 프로파일의 그래픽 전산처리 등의 시스템을 구축 운용함으로서 전파관리행정의 전산화를 정착시키고 전파관리경영정보시스템, 더 나아가 의사결정시스템(DSS)으로 발전시켜 정책의 입안 및 결정의 과학화를 실현하여 다가올 정보화 사회에 대처하여 전파관리 행정의 선진화를 이룩하도록 하였다.

4. 전파이용의 개방과 전파관리업무 개선

1982년 내무부 고시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야간통행금지지역은 간이무선국의 허가와 운용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주파수의 지정조건으로는 다수인이 동일주파수를 공용함에 따른 전파관계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고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 하여야 하며 주파수를 공용함으로써 야기되는 혼신을 감수하는 조건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간이무선기는 그 출력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협소한 지역에서도 업무용 간이무선국으로 최대출력 5W를 다수 사용함으로 혼신은 더욱 가중되어 13개의 주파수를 더 증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으나 단시일 내의 증파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는 어느 무선국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동일한 사정으로 전파발사 시에는 운용전에 검사하는 과정이 있었다.


電子時報
The Electronic Times
簡易無線 上半期중 開放
電波 활용범위 크게 擴大
學習·완구·趣味用등
自由롭게 쓸수 있게
利用秩序확립방안 곧 마련

▲ 관련기사(전자시보)

□ 1983년 9월12일 조선일보 기사내용

일반인의 워키토키 사용 허용

지금까지 국가기관, 국영기업체 등에만 허용되던 간이무선기(워키토키)의 사용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반에게도 허용된다. 또한 일체 금지되었던 아마추어무선사들의 이동운용도 개인이 아닌 학교나 연구소 등 단체의 경우에는 허용된다. 체신부는 전파이용을 일반국민에게 제한 없이 개방하기 위한 1단계 조치로 20일부터 간이무선국의 허가범위를 확대한 것인데 법인이 아닌 개인업체라도 자기사업장의 범위 내에서 출력 0.1W 이하의 간이무전기는 사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용으로 이동운용이 가능해져 학교나 연구소가 현장실습을 하고 적십자가 구호활동에 이동무선국을 운영할 수 있는 등의 길이 트였다. 그러나 간이무전기나 아마추어 무선사가 무전기를 차량에 싣고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파개방으로 간이무선국의 이용확대와 아마추어 이동운용허용 등을 단행하였는데, 일반 국민측에서 볼 때는 이러한 정도를 가지고 이용개방이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도리어 정부측의 미온적인 개방정책을 비난할지 모른다. 그러나 비법인 개인사업자가 무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단체 아마추어의 고정운용을 이동운용까지 허용했음은 분명히 전파이용의 점진적인 개방이란 의지가 내포된 것이며 이를 계기로 2000년대는 전파이용분야에서 도약의 발판이 되는 전주곡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전파의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예기치 않는 혼신 발생량의 증가를 일으킬 것이며, 그 중에는 통신보안 사고를 일으킬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불법전파운용 적발은 물론이며, 특히 혼신조사 제거에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후의 전파감시체제는 새로운 고성능 장비를 도입, 기동성 있는 감시체제로 방침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결국 상설이동감시를 의미한다.

5. 혼신조사

전파감시가 기구면이나 기능면에서 안정되고 성숙된 반면 전파를 이용한 혼신은 점차 늘어났다. 혼신의 원인으로는 군통신의 주파수편차와 고주파이용설비에서 발생되는 스퓨리어스에 의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군통신의 주파수편차에 의한 혼신은 장비의 불량에서 기인되는 것보다는 운용자들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다. 혼신조사용 장비는 과거 60년대에 비하여 발전된 것은 없었고, 추적조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혼신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차량이 정차할 수 없는 도로상에서(고가도로, 고속도로 등) 차량 상탑의 안테나를 돌리고 차안에서는 파형분석과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 다만 도래되는 전파의 스펙트럼을 관찰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의 수신기(SR-201C)가 있어 조사가 비교적 훨씬 용이하였다.

가. 혼신발생 현황

연　도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발생건수	128	85	88	71	70	84

나. 원인별 현황

구 분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계
군 통 신	45	29	28	21	16	21	160
스 퓨 리 어 스	24	23	24	12	29	30	142
전 력 선 잡 음	2	4	2	12	7	9	36
혼 변 조	1	2	4	3	2		12
자 체 장 해	12	9	6	5	6	2	40
기 타	44	18	24	18	10	22	136

다. 혼신조사용 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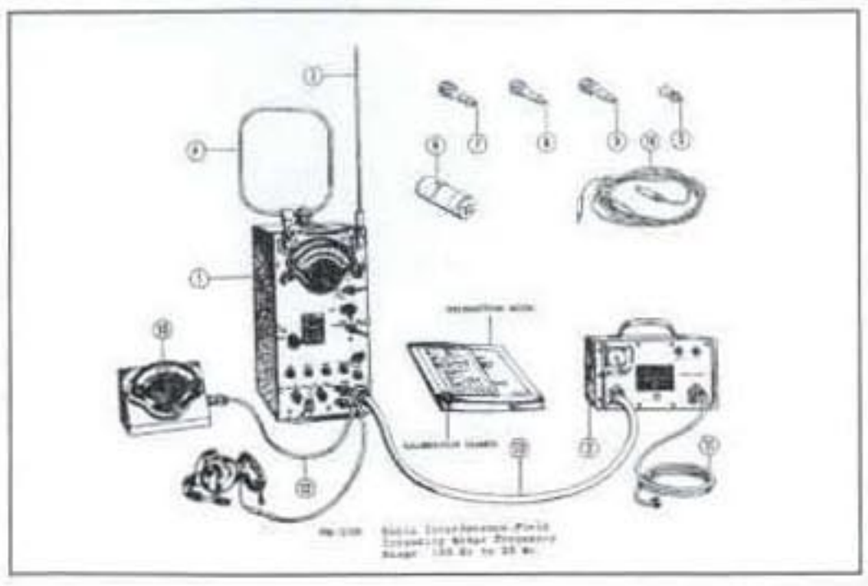

◀ NM-20B 전계강도 측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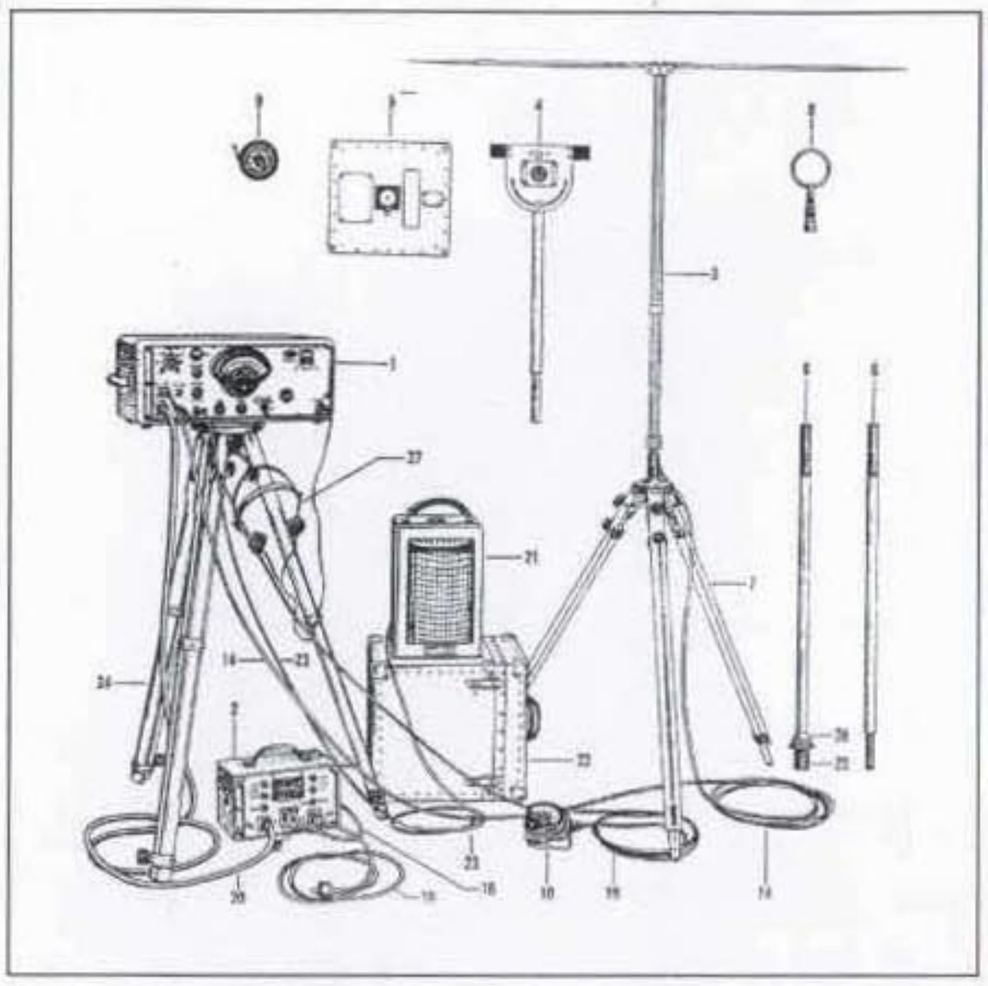

▲ NM-30A 전계강도 측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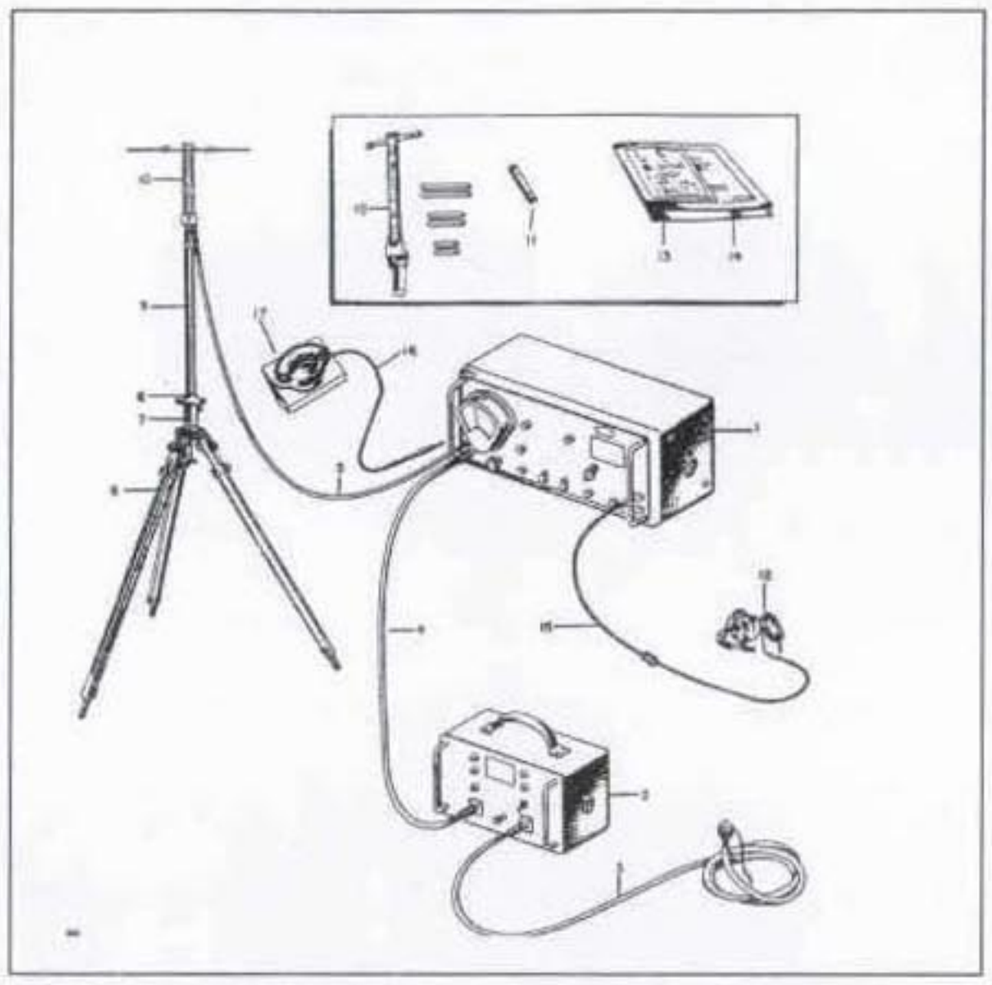

▲ NM-50A 전계강도 측정기

제 3 절 전파감시체제 강화와 전파통제소의 신설

I. 전파감시 가락동시대 개막

방탐계 발족(1963년)으로 전파감시 업무는 가일층 업무의 확장을 가져오게 되었으나 1960년대 후반에 들면서 성수동 주변의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로 인한 전파수신 장애로 방탐 업무는 오차가 극심하여 방탐소의 이전 문제가 대두되어 급기야 1967년 12월 29일 방탐업무는 강남구 반포동으로 방탐소를 이전하여 운용하였으며, 당시 반포동 방탐소는 「전파연구소 서울분소」라는 위장 명칭으로 운용되었다.

청사가 성수동과 반포동으로 양분되어 업무 수행에 일관성 및 효율성이 떨어져 통합청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68년 10월 25일 서울시 강남구 가락동 일대 183-1(답)외 63필지 50,192.1m² (15,183평)를 매입하여 1970년 12월 28일 가락동 청사로 이전하였으나,

가락동 부지 일부 전 206-1번지 2,304m² (697평)가 경기도 성남시 연성모, 강남구 개포동 연종모 2인의 사기에 의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1982년 10월 29일 체신부(전파통제국)의 소송 제기로 1983년 11월 2일 승

소 판결이 날때까지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기도 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1980년 7월 2일 건설부 고시 제197호로 「가락토지 구획 정리사업」 계획을 결정 추진하여 가락동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체신부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가락동 청사부지를 사업대상 지역에 포함하여 현재의 구청사 뒷편을 중심으로 해서 4거리를 계획함으로써 가락동 부지가 4등분 되어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나 당시 체신부(담당 : 강덕근)에서는 전파관련 부지가 4등분 될때는 전파감시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됨이 명백하게 됨을 판단하여 서울시에 도로계획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여 1981년 8월 29일 건설부 고시 제331호로 계획 변경 결정을 하여 현 경찰병원 4거리로 도로계획이 변경되었고, 현재의 가락동 청



▲ 가락동 청사부지 취득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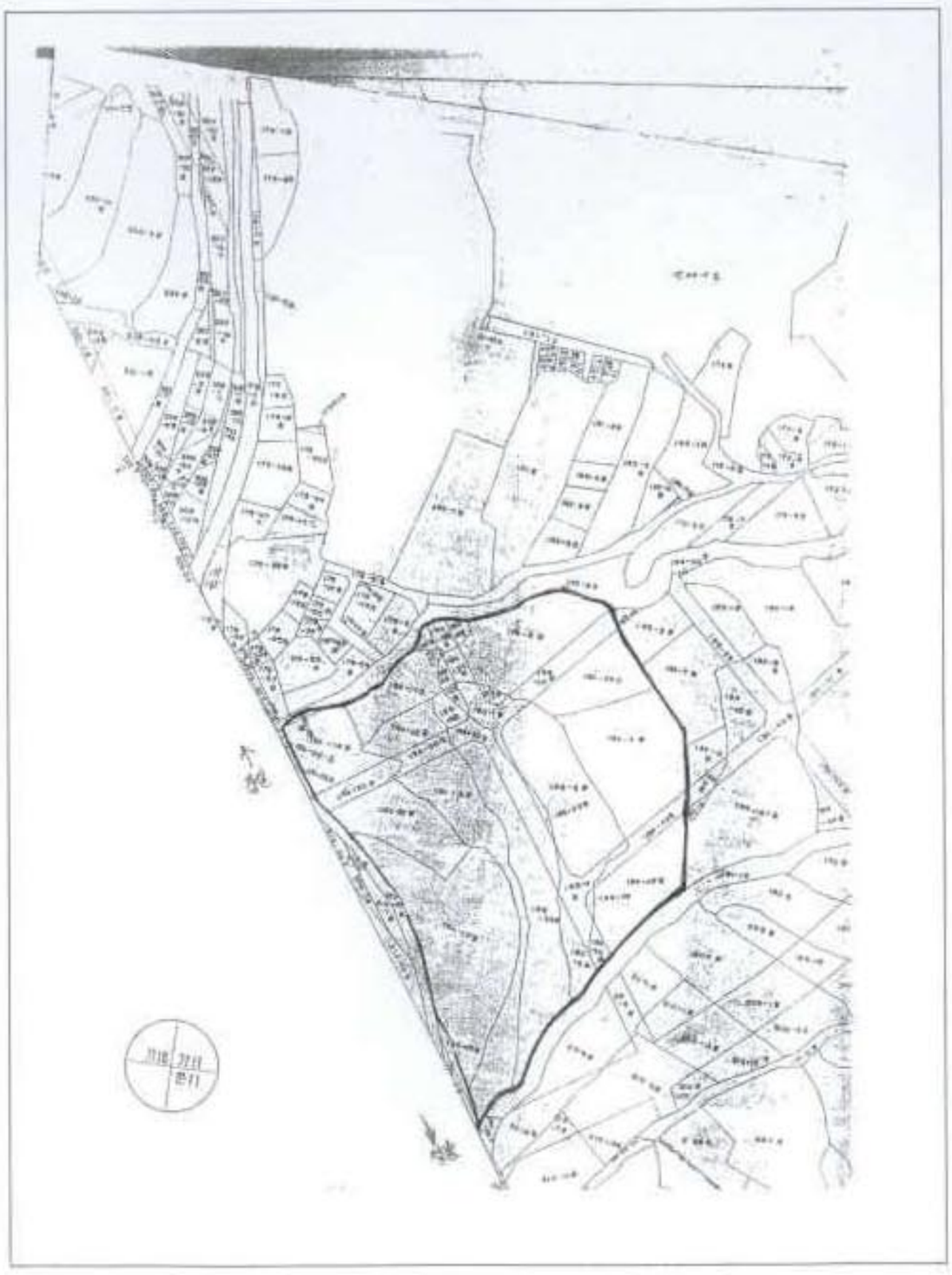

▲ 1982 당시 최초 토지이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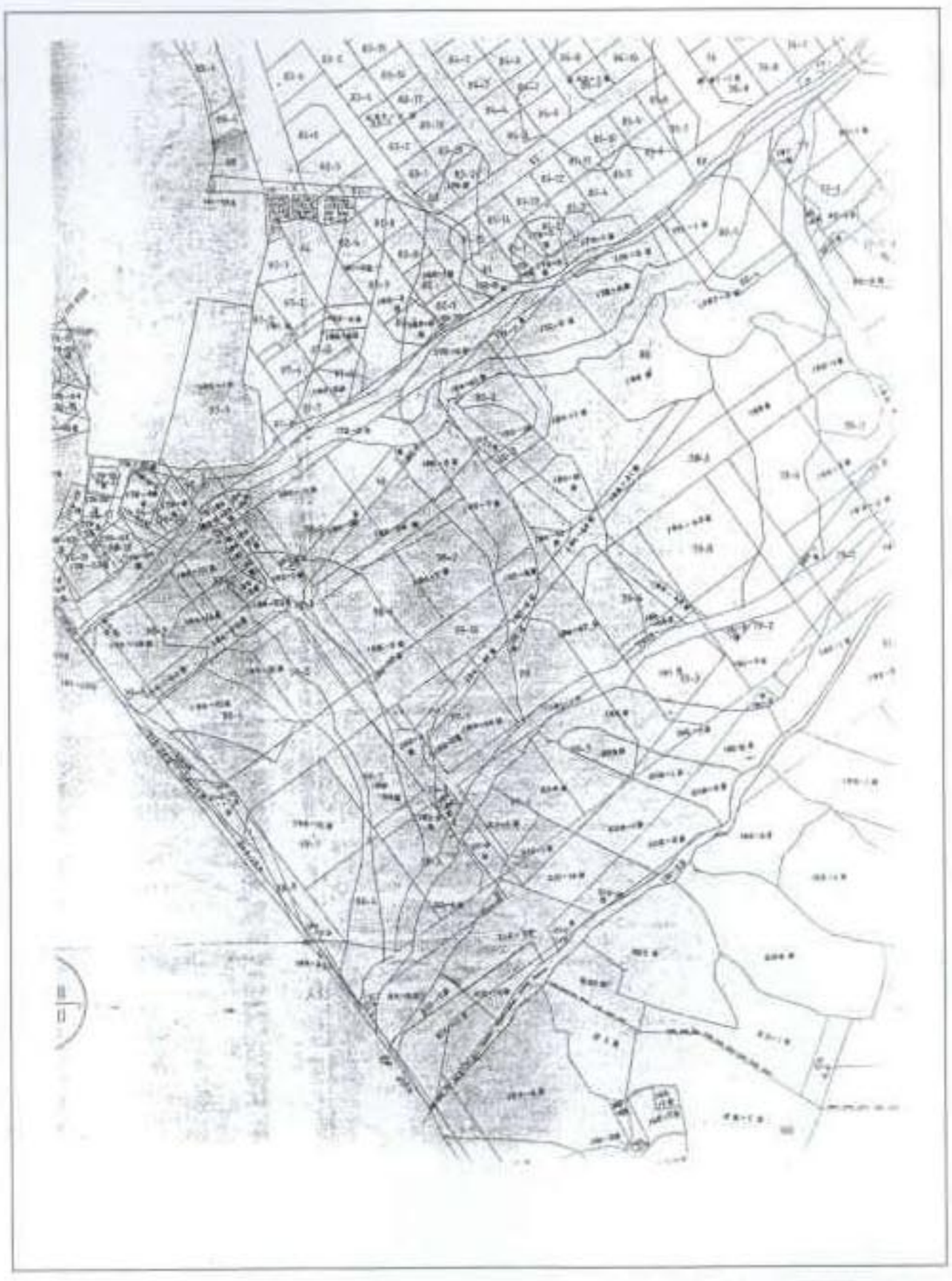

▲ 1982 1차 변경 토지이용계획도

사부지 주변도로 및 네모반듯한 청사부지 모습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가락동 부지는 당시 64필지로 산재하여 구성되어 있었으나 구획정리 사업시에는 대상토지 중 약간이 도로 및 공원 등 시부지로 편입되지만 당시 체신부(전파통제국장 : 문명진)의 힘겨운 노력으로 가락동 부지는 64필지 전체면적 50,192.1m²(15,813평)를 단 한평의 손실도 없이 확보하여 현 가락동 100번지 부지를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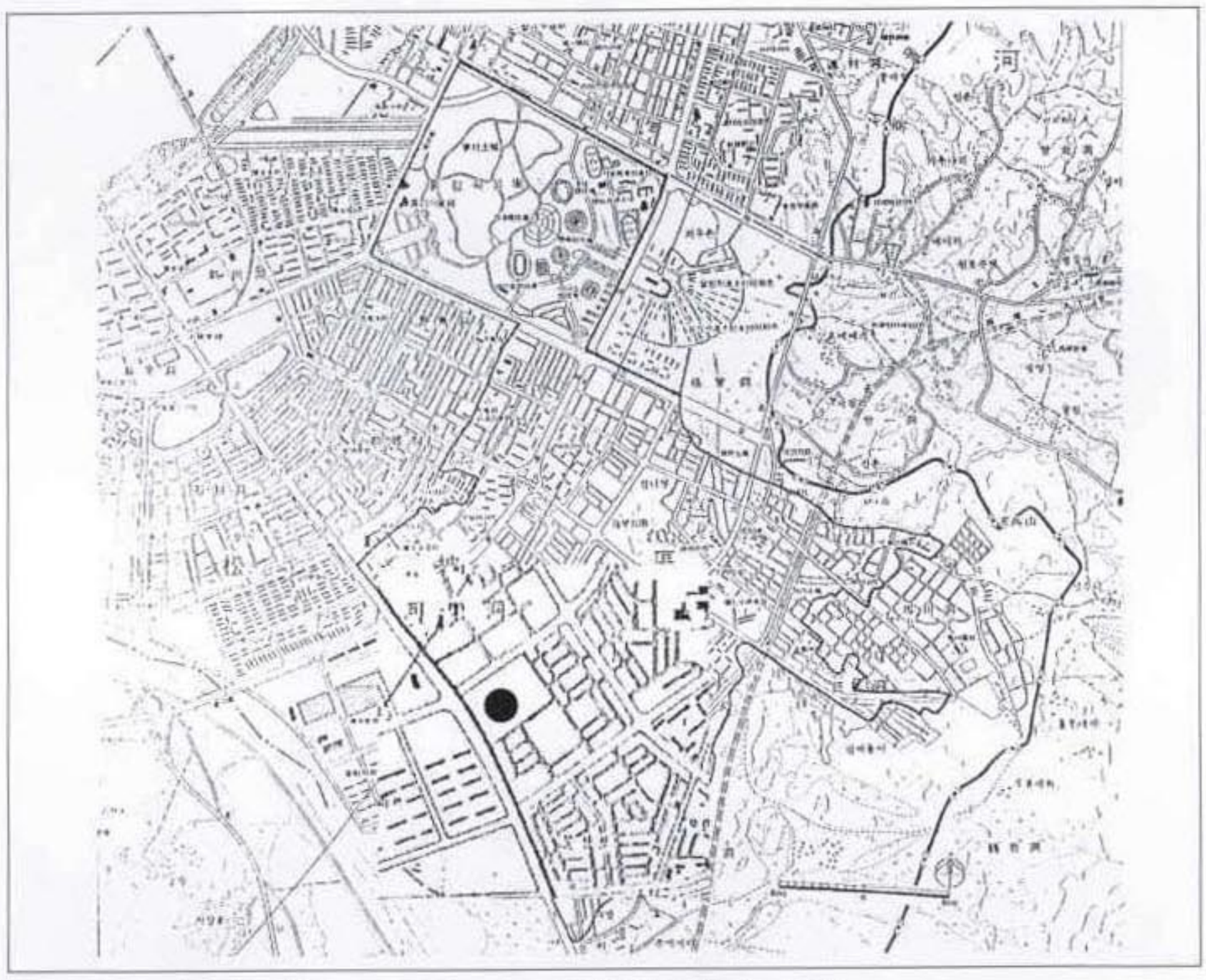

▲ 1982 확정된 가락 토지구획정리 지적도 (● 부분 현재의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 G2 방탐기

2. 특별감시업무의 변천

가. 방탐계의 신설

전파감시국의 직제는 1949년 11월 22일(대통령령 제217호)지방체신관서(전파감시국)직제 공포에 의하여 그 근거를 엿볼 수 있는데 서울, 부산, 광주전파감시국의 직제는 1950년 1월 10일 통첩 제1호에 의거, 시행되어 오다가 1963년 6월 28일(전파관리국 훈령 제7호)로 서울, 광주 전파감시국

감리과에 서무계, 감시계, 방탐계, 기술과에 기술계가 신설되었다. 그후 광주 전파감시국 방탐계 발족과 동시에 서울 전파감시국의 방탐계가 발족되었고, 1966년까지 성수동 1가 276번지에서 군으로부터 회수한 고정(G/2) 및 이동방탐기(M/2)를 설치, 최초로 이 방탐기에서 수집되는 불법 외래 전파를 포착함과 동시에 위치 측정을 하는 방탐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부산감시국과 강릉전파감시국에는 1966년 4월 1일에 방탐계가 신설되었다.


체신부 회보 1963. 7. 9 (화요일) 제1284호

▲ 1963. 6. 28일자 체신부 회보 (전파관리국 훈령 제7호)

나. 연도별 변천 개요

○ 1958. 11. 7

–서울전파감시국장 : 조재문

–감리과장 : 노영주

–감시계장 : 전영봉

–고정방탐기 : 3대 (G/2)

–이동방탐기 : 1대 (M/2)를 미국 R.C.A사로부터 구입

※ 운용상의 여건 불비로 보관 조치됨

– 고정방탐기의 구조 (G/2)

1. 상단 : Goniometer 및 Drive
2. 중단 : Indicatior
3. 중단 : HP–600 수신기
4. 하단 전원부 : 115V ~ 125V
5. ANT명 : Adcock
6. 시각측정 및 청각측정

– 이동방방탐기의 구조 (M/2)

1. 차량적재용
2. 상단 : Indicator (무음측정)
3. 하단 : HP–600 수신기
4. ANT : Loop ANT
5. 전원 AC DC 겸용
6. 청각측정



▲ 성수동 서울전파감시국

○ 1960.

–방탐소 설치(목재건물)

–성수동 1가 276번지 대지 사용

–휴대용 방탐기 PE/484, 독일제 구입

○ 1962.

–특별전파감시 업무개시

–서울, 광주 전파감시국에 방탐운용 개시

○ 1963.

–방탐계 발족(계장 : 임병창)

○ 1965.

–성수동 1가 276번지에 고정방탐기 설치

–방탐업무시작(당계에서 수집되는 전파)

○ 1966.

–방탐계장 : 윤태원

–방탐장비 고유성능조사 실시(고정, 이동, 휴대)

–D.B.R 작성, 타자수신 시작

○ 1967.~1968.10

–방탐계장 : 이부희

–방탐오차 극심으로 강남구 서초동으로 이동(12. 29)

– 방탐장비 교체(일본 고덴전기)

1. 고정 : KS/329

2. 이동 : KS/319 R3

–타자기 수신

–이동활동 업무실시(차량 : 미제반추력)

–청경업무 시작(1968. 2. 1)

○ 1969.~1970. 1

–방탐계장 : 최윤부

–가락동 신청사 대지선정에 따른 방탐업무 타당성 조사 1개월간 실시

(KS/319 R3를 반고정용으로 사용 : 권태성, 한종균)

○ 1970. 12

–가락동 현청사로 이전

-조사계 명칭변경

-D.F실과 감청실 병합

○ 1974. 12

-자동방탐 업무개시

○ 1975. 3

-자동시설 준공 및 운용(#1, 2 및 지휘소)

○ 1976. 12

-부산 방탐소를 김해에서 홍해로 이전

○ 1978.

-고정방탐실을 김포군 하성면 석탄리로 이전

-통제과 자동방탐업무 실시

-수동방탐과 자동방탐 대치 작업실시

-본소 조사계와 고정방탐소(김포 Site)간

-연락장비 S.S.B 사용

-UHF대 2개좌석 운용

-고정방탐 오차 극심

-VHF, UHF 방탐기 구입, 업무개시

-수동방탐기 철수

○ 1979.

-김포에 초단파 방탐기(D-4560)설치

○ 1980.

-제주에 고정방탐기(TELEGON-6)운용 수동↔자동 연계장치 설치



▲ 김포분실 전경



▲ KS-319R-3 이동방탐기



▲ 반포동 방탐소

3. 전파통제소의 신설

가. 배 경

전파통제란 각 무선국에 이미 할당된 주파수중 사용하지 않으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유휴주파수의 회수, 주파수 할당에 있어서의 각종 자료의 수집 등을 통하여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과 통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파수 관리면 등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파



▲ 자동방탐시설 (TCI)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1973년 3월 전파관리국에 제3계를 신설하였고, 이를 위한 현업기관으로 1976년 12월에 서울전파감시국에 통제과를 신설하였고, 그 후 무선국의 증가에 따른 이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979년 9월 7일에 전파통제소를 신설하였다.

당시의 편제는 관리과, 조사과 및 통제과의 3과 외에 서울, 부산 및 강릉에 각 분실을 설치하였다. 1980년 분실을 분국으로 승격함과 동시에 광주분국이 추가되었다. 이 통제소의 신설로 철저하고 기동성 있는 전파통제업무를 실시하게 되었다.

나. 전파통제소 직제 및 사무분장

□ 직제개편

◇ 1979년 12월 22일(전파관리국 훈령 제95호)

전파통제소 관리과에 서무계, 회계계

조사과에 분석계, 조사계, 측정계

통제과에 통제계, 운용계, 기술계

서울분국에 관리계, 통제계

부산, 강릉분국에 관리계, 조사계, 통제계

51, 52 및 53분실 신설



◇ 1980년 8월 26일(대통령령 제10008호)

- 51분소를 폐지하고 광주분국으로 승격

◇ 1980년 12월 24일(전파관리국 훈령 제105호)

- 광주분국에 관리계, 조사계, 통제계 신설

□ 사무분장

◇ 1979년 9월 7일 대통령령 제9601호

① 통신정보에 인한 전파의 감시 및 방향탐지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전파관리국장 소속하에 전파통제소를 둔다.

② 전파통제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 또는 통신기정으로 보한다.

③ 전파통제소에 관리과, 조사과, 통제과 및 분국을 두되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조사과장은 전무기좌로 통제과장은 통신기좌로 분국장은 통신기좌 또는 전무기좌로 보하며 분국은 서울, 부산 및 강릉지방에 한한다.

④ 관리과는 서무, 인사, 문서관리, 회계 및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⑤ 조사과는 전파의 특별감시, 이동감시 및 방향탐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 통제과는 전파의 고정감시 및 방향탐지와 특별 및 고정감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 분국은 전파의 감시 및 방향탐지, 전파감시시설의 운용 및 유지보수와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 전파감시 체제의 정비

전파감시 체제를 정비 강화하기 위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직제 개편이 있었는데 그 기간동안의 실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선국의 증가에 따른 이용증대에 대처하여 이들 시설을 조작하는 무선종사자는 물론 이용자들에 대하여 통신보안의식을 고취시켜 보안위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1974년에 전파관리국에 통신보안계를 신설함과 동시에 통신보안교육을 실시하였다.

둘째, 남산에 있는 전파탑에 설치된 중요통신시설의 보호는 물론 시내주요 시설물에 대한 보안 취약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 탑을 민간기업으로부터 1976년에 매입하여 전파탑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였다.



▲ 통신보안관계관 회의장면

셋째, 혼신조사의 자동화를 기하기 위해서 단파대의 주파수 이용상태를 일목요연하게 관측할 수 있는 주파수 분포상황기록기가 도입되었다.

넷째, 조난통신의 발신을 자동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경보자동수신기의 도입

으로 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섯째, 새로이 허가된 무선국에 대하여 그 운용 개시 초부터 이의 운용 사항을 집중적으로 감시하여 통신보안사항을 포함한 각종 위규사항을 철저히 파악하게 하는 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밖에 전파감시체제의 정비를 위하여 감시의 자동화 및 이동감시를 위한 장비가 도입되었다.

제 4 절 전파감시시설의 확장



▲ R-55A 단파 수신기



▲ 전파감시를 하고있는 모습

1. 감시장비의 변천

가. 단파수신기

○ 1971년에는 NS-7022(영국), 51J-4(미국), R-55A(한진) 등의 단파용 수신기가 있었으며 전부 진공관식으로 찬넬 선택 SW를 돌린 후 동조다이얼로서 주파수를 선택하여 수동으로 작업하며 눈금표시방식으로 되어 있다.

○ 1976년에는 진공관식에서 개량되어 나온 TR, IC식 디지털 표시방식인 E-1500, E-1501(독일) 수신기로써 이 수신기는 동조다이얼 및 SPEED SW로 주파수를 가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며 E-1501 수신기는 E-1500의 기능에 LED에 의한 주파수 동조상태 확인 기능이 부가된 감시장비가 도입되어 운용돼 왔다.

○ 1981년 11월에는 RC-14A SSB수신기(한진전자)를 도입하여 사용한 바 이 수신기는 주파수고정 찬넬방식으로 CH 선택 SW로서 희망주파수를 선택하여 고정주파의 변경은 X-TAL을 교환하는 디지털 표시 방식의 수신기이다.

○ 1983년에는 WJ-8718(미국)수신기로 MEMORY 및 자동 SCAN 기능을 갖춘 장비로 디지털 표시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나. V/UHF 수신기

○ 1984년에 MRM-100(한진전자)수신기는 6대의 재생편집 장치의 수신 UNIT 및 충전기로 구성되며, 각 수신UNIT에 카셋트 녹음기를 보유하여 MEMORY, SCAN 신호입력시 자동녹음 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ANT는 슬리브형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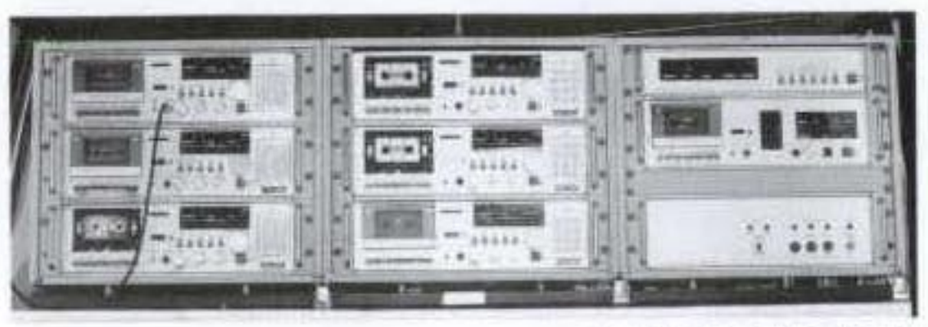

▲ MRM-100 VHF 수신기

○ 1985년 6월 SR-MP-25(미국)

- 25W 휴대용으로 타케트 시험용
- TR, IC식으로 디지털 표시 방식
- 주파수 가변 방식으로 수동튜닝
- WHIP 안테나 사용

○ 1985년 12월

- 장비명 : 4801-1 VHF송신기(미국)
- RF AMP UNIT를 부착하여 사용
- DISCON ANT 사용

○ 1986년 7월

- 장비명 : HSP-50A SSB 송수신기(국산, 해양전자)
- 고정주파수 CH절체 방식
- 2 MHz대 선박국 통신망의 감시 및 개입용
- DOUBLET ANT 사용
- 장비명 : HSP-2730A 송수신기(국산, 해양전자)
- 고정주파수 CH절체 방식
- 27 MHz대 선박국 통신망의 감시 및 개입용
- GP ANT 사용



▲ HSP-50A SSB 송수신기

○ 1986년 8월 2일

- 장비명 : KR-29 27MHz대 송수신기(국산, TARGAT)
- 디지털 표시방식으로 차량이동용
- 27 MHz대 생활무선국용 감시 및 개입용
- 차량용 WHIP ANT 사용

다. 녹음기

○ 1971년 TC-106(일본)

- TR방식으로 MONO



▲ B-77 녹음기

- 릴 테이프 사용

○ 1977년 M-6020(미국)

- TR방식으로 MONO용
- 릴 테이프

○ 1982년 10월 GX-4000D(일본)

○ 1983년 9월 B-77

- STEREO용으로 릴 테이프 사용

○ 1985년 9월 GSK-3060(금성)

- 카셋트용으로 STEREO
- 원터치 SWITCH방식

라. 기타 시설

○ 1982년 HTR-30(한진)

- STEREO녹음기에 사용하여 녹음테이프 한쪽 TRACK에 시간신호 기록과 그 신호의 재생이 가능

○ UHF 다중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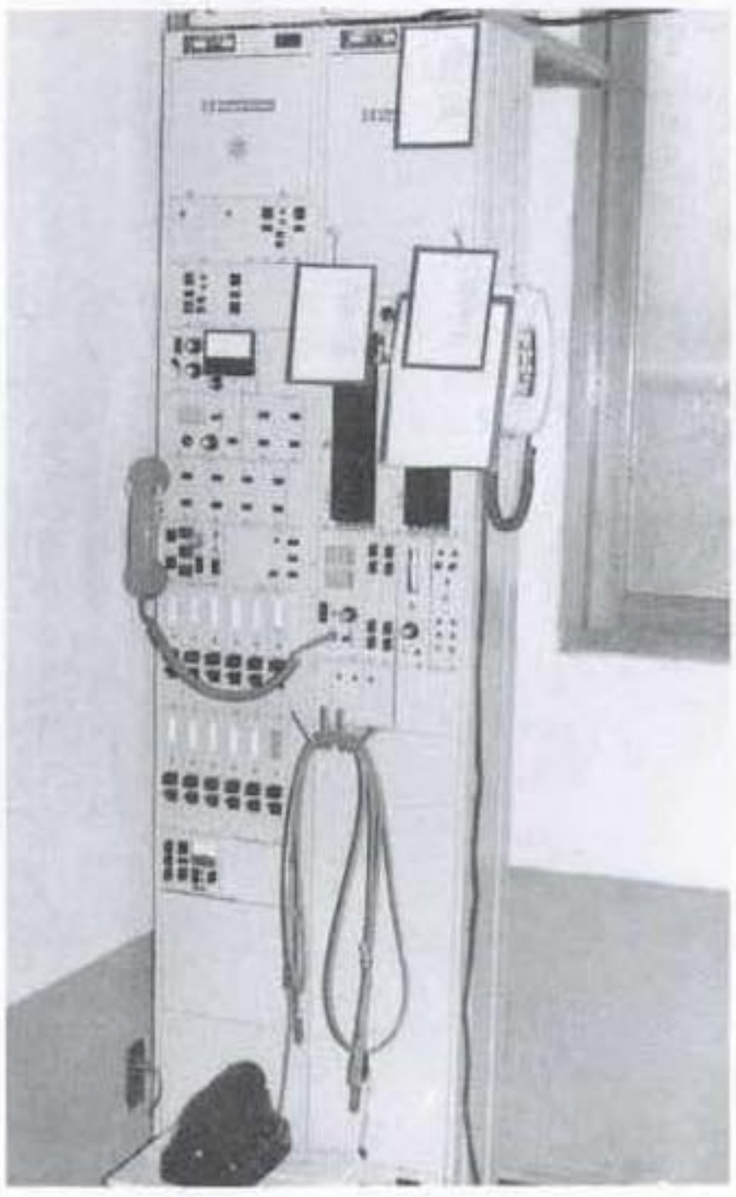

▲ UHF 다중장치

연 도 별	장 비
1973	CT-1053(한진전자) - 5CH용 - 자동방탐시설의 DATA 송수신용으로 사용
1976. 2	900 B/24(광림전자) - 12ch용 - DATA 회선과 직통전화 회선을 수용 - PARABOLA ANT 사용

○ 송수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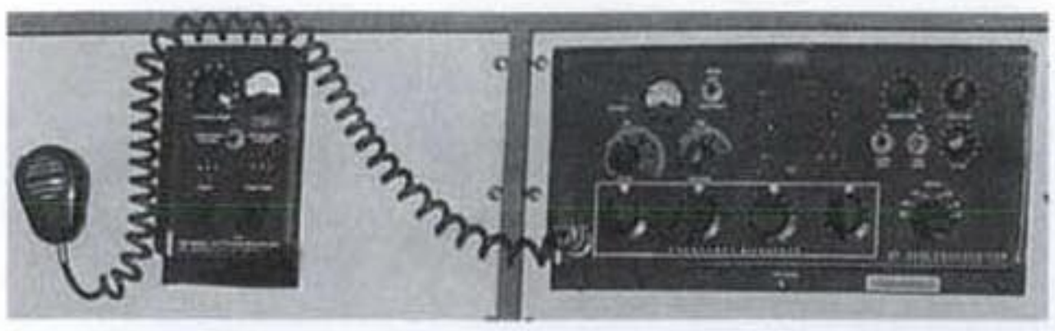

▲ RF-301 송수신기

연 도 별	장 비
1968	SSB-1 MARK IV(미국, RCA) - 연락통신망으로 사용 - 진공관식, 출력 100W - 4CH(각 CH에 주파수 고정) - DOUBLET ANT사용
1976	RF-301A(미국, RF COMMUNICATION) - 비상통신망 - 진공관식, 출력 100W - 주파수가 가변방식으로 수동 튜닝 - DOUBLET 및 WHIP ANT사용
1979	SS-15A 송수신기(한진전자) - 비상통신망 - TRTLR(출력관은 진공관) - 6CH(각 CH에 주파수 고정) - DOUBLET ANT사용
1982	ASTRO-C 송수신기 - TR, IC식으로 디지털 표시방식 - SEMI AUTO TUNNING UNIT를 사용하여 튜닝하는 주파수 가변 방식 - WHIP ANT 사용

○ 전파측정시설

연 도 별	장 비
1978. 10	NRD-71/3060 주파수분포 상황 기록기(일본, JRC) - 수신부와 기록부로 구성
1982. 9	MINILOCK 종합전파감시장치(서독, SCHLUMBERGER) - 4개의 UNIT와 ANT로 구성 - ANT SYSTEM은 87. 1. 16 표준 ANT로 교체(BIG LIFT 1대, ANT 7기 등)
1982. 9	ESH-2 단파대 전계강도 측정기(서독, R&S) - 디지털 주파수 표시방식 - LEVEL 표시는 디지털 + 아날로그 방식 - LOOP 및 ACTIVE ROD ANT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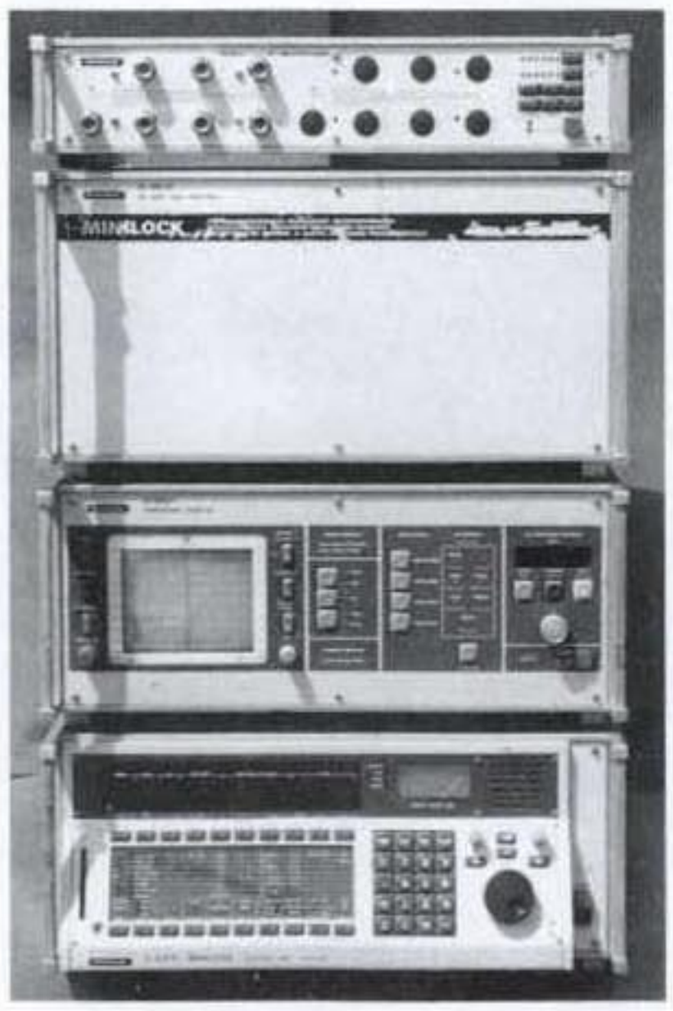

▲ 미니록 전파품질측정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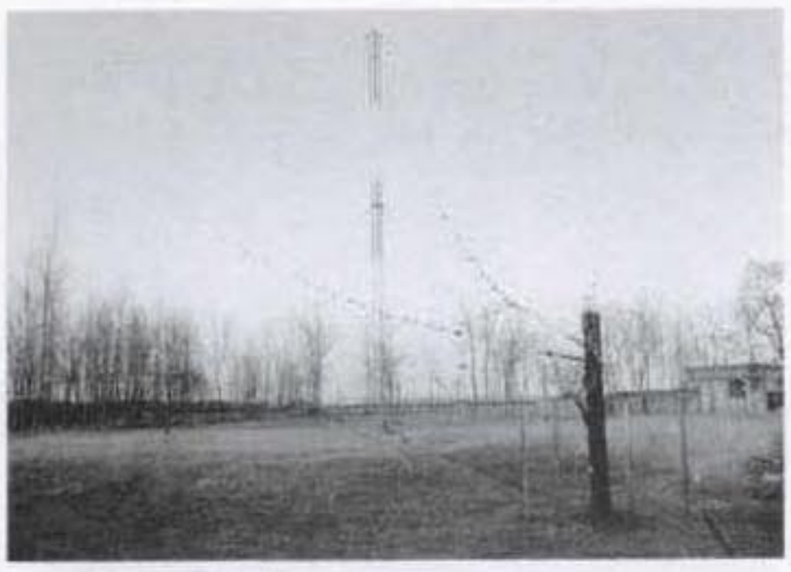

▲ LP-501 중단파 수신용 안테나

○ 수신용 공중선

연 도 별	장 비
1971	D.C ANT - 6기의 목주에 ELEMENT를 설치 - 전방향 수신용으로 일반감시 수신에 사용중 86년 철거
1984	LP-409ANT 24기중 8기를 방향별로 선택 BEAM FORMER를 이용하여 500KHz 수신 전용 ANT로 사용
1986	CROSS LOOP ANT - I.D.C ANT 철거후 도플러 방탐기의 전용 ANT 인 CROSS ROOP ANT를 이용하여 수신

2. 장비구입 현황



▲ SS-15A 연락용장비



▲ ASTRO-C 단파 송수신기

구입년도	HF 장비	V/UHF 장비	DF 장비	비 고
1957. 3		BC-610 : 1 HT-4H : 4		
1959. 12	51J-4 : 1			
1963. 12	SSB-1 : 2			
1964			PE-484 : 7	
1967			KS-329-P2F : 1	
1968	SSB-1 : 1			
1969. 7	51S-1 : 4 S-40 : 1 ASTRO-C : 1		KS-319R3 : 4	
1970. 10	R-55A : 17	906A : 3 906A : 1	KS-319R3 : 2 PE-484 : 3	방탐초점정보 산출 불가능
1971. 3	COMPACT SSB : 2		KS-319R3 : 4	〃
1972. 4	E-127 : 2			
1973. 1	R-55A : 2	CT-1053 : 2	PST-638 : 2	1973. 3. 13 자동 방탐 업무계획 착수
1974. 9	FA-30-25A : 1	T83TRA3 0LIA : 2	HP-2116C : 3 (CCX 2)	
1975. 8	E-863 : 5	HT-220 : 3		1975. 3. 1 자동방탐 개시(합덕, 광주)
1976. 11	SR-502 : 10 E-1500 : 26 E-1501 : 6 RF-301A : 4	900B/24 : 20 MC-24 : 20 ICB-160 : 2	PST-638 : 1	

구입년도	HF 장비	V/UHF 장비	DF 장비	비 고
1977. 3	SR-502 : 5 E-1500 : 21 BC-610 : 2	SF-48FA : 13 SR-35 : 2 MC-24D : 4 900B/24 : 2	PSR-638 : 2 HP2100A : 3 (#2, 3, 4)	
1978. 6		SF-48FA : 11 VF-4P : 1	PSR-638 : 1	
1979. 6	E-1501 : 12 SS-15A : 1	VK-1HP : 12	D-4560 : 1 TELEGON Ⅳ : 1 PST-638 : 1	1. 수신신호검출능력 부족 2. 목표신호식별능력 부족 3. 방탐소요시간 과다 4. S/N비 12dB이하오차심함 79. 4 #3, 4 자동방탐 추가 개시
1980. 6	NRD-75 : 8			
1981. 12	SS-15A : 5	WJ8617 : 1		
1982. 10	WJ-8718 : 4 ASTRO-C : 1			
1983. 11	WJ-8718 : 2 SS-15E : 4		PA-010 DOPPLER 방탐기 : 1	
1984. 1	ASTRO-C :1		TELEGON Ⅳ : 1 D-4560 : 1	
1985	NRD-75 : 8 WJ-8718 : 6 E-863 : 5 E-1500 : 47 E-1501 : 18 SR-502 :15 R-55A : 17 (수신기)	WJ-8617A :1 906A : 4 (수신기)	PST-638 : 5 KS-319R3 : 1 HP-2116C : 3 HP2100A : 3 DOPPLER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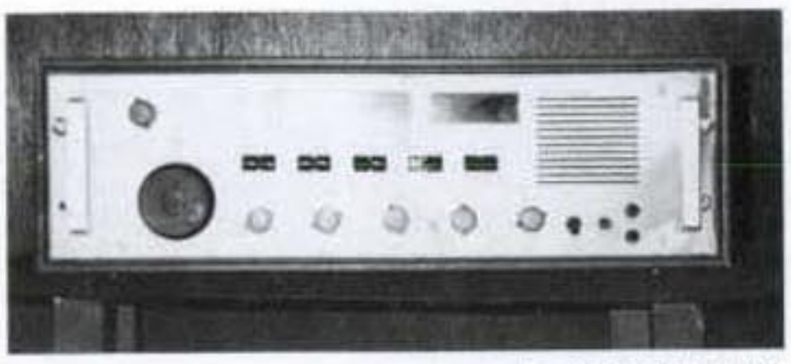

▲ E-1500 단파수신기



▲ VHF 연락용장비

3. 연도별 시설 및 투자 현황

시 설			1976	1977	1978	1979	1980
유 형 별	기 기 명	단위					
수신시설	수신기	대	325	361	333	331	320
	녹음기	〃	191	212	247	206	192
	표정장치	〃	40	40	38	36	36
	TELETYPE	〃	9	9	13	9	16
	진북측정장치	〃		2	2	2	2
	수상기	〃	15	15	26	35	34
	수신부속장치	〃	11	11	(송수신	부속장치	에 포함)
	소 계		571	640	659	619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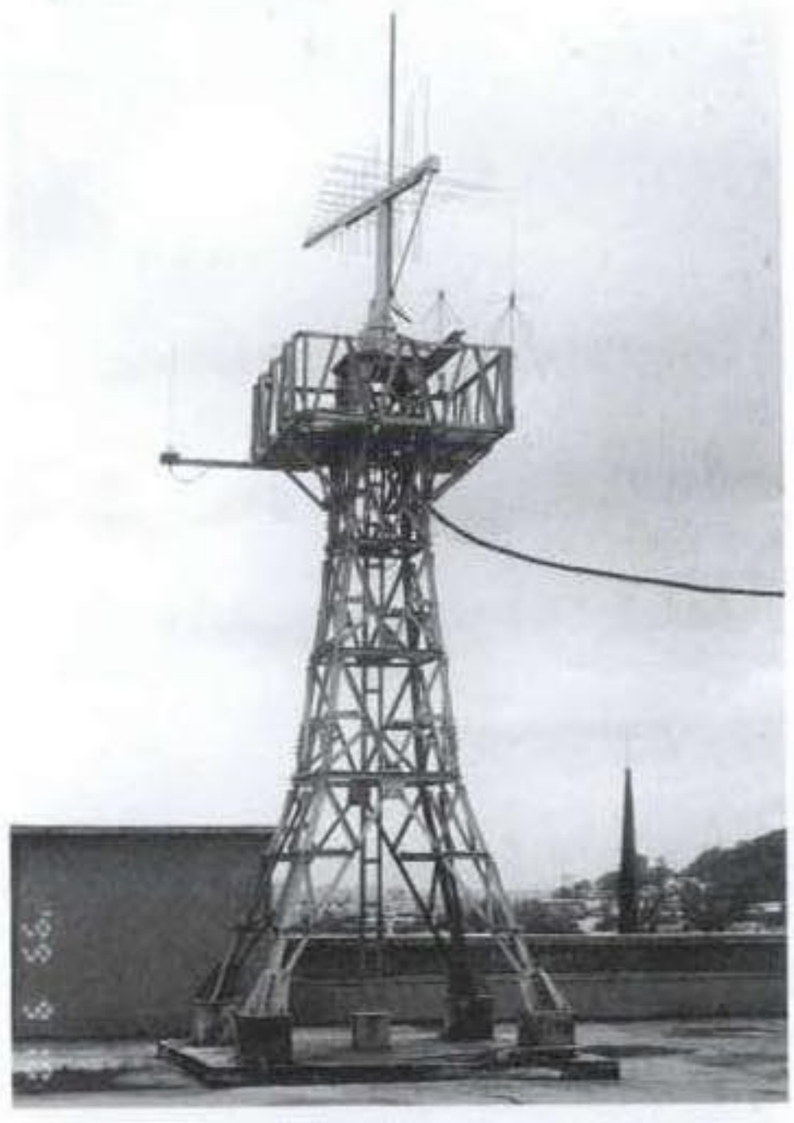

▲ 사각자립식 철탑 및 각종 통신용 안테나



▲ LP – 402 바룬교체공사 모습



▲ RTTY 신호분석장치



▲ PE-484 송수신기

시 설			1976	1977	1978	1979	1980
유 형 별	기 기 명	단위					
통신시설	송신기	대	28	30	25	20	17
	송수신기	〃	75	104	124	133	143
	송수신부속장치	〃		45	77	83	92
	UHF 다중시설	〃	28	34	40	40	43
	반송단국장치	〃	12	14	14	10	10
	소 계		143	227	280	286	305
공중선시설	철탑	식	49	50	145	146	144
	공중선조		176	176	160	163	167
	궤전선		46	52	56	56	52
	공중선부속장치		75	63	95	74	55
	소 계		346	341	456	439	418
측정장치	주파수측정장치	대	35	36	30	29	26
	주파수분포상황기록기	〃	17	17	16	20	14
	전계강도측정기	〃	22	23	22	21	18
	스펙트럼분석기		17	20	15	11	6
	검사용측정기		101	101	98	113	132
	보수용측정기		257	257	273	219	285
	소 계		449	454	454	413	481

기 기 명 \ 연 도 별		단위	'81	'82	'83	'84	'85	'86
수신시설	수 신 기	대	316	270	249	264	275	264
	특정파 감시장치		1	1	1	1	1	1
	V/UHF 감시장치	〃	2	4	4	10	20	20
	TTY 감시장치	〃	2	2	2	4	4	3
	녹 음 기	〃	204	192	178	213	227	197
	T V	〃	37	33	30	25	25	29
	디지털 시간기록장치	〃		7	7	7	7	7
	데이터 축적장치	〃					10	10
	소 계		562	509	471	524	579	531
통신시설	송 신 기		19	17	7	7	6	12
	SSB 송수신기		32	30	33	36	36	47
	VHF 송수신기		42	42	41	43	43	33
	휴대용 송수신기		74	55	45	44	42	52
	아마추어 감시장치	〃				4	14	22
	UHF 다중장치	〃	45	45	45	45	45	42
	TTY	〃	6	9	9	7	7	3
	반송전신단국장치	〃	8	13	12	12	13	3
	모사전송장치	〃			1	1	1	1
	통신회선 제어장치	〃	64	14	11	11		14
	기타장비	〃	31	31	33	3	33	23
	소 계		321	256	237	213	240	252

기 기 명 \ 연 도 별		단위	'81	'82	'83	'84	'85	'86
측정기 시설	전계강도측정기	대	11	10	9	11	11	11
	주파수측정장치	〃	10	5	3	7	5	4
	주파수분포상황기록기	〃	6	4	4	4	7	5
	전파질 측정장치	식	1	1	3	4	4	5
	종합전파감시장치	〃	4	4	4	4	5	5
	보수용 측정기	대	243	260	267	275	275	751
	검사용 측정기	〃	126	109	111	113	153	170
	소 계		401	393	401	418	460	951
공중선 시설	공중선주	기	125	141	143	142	1323	127
	공 중 선	면	168	182	182	183	146	130
	AMC	대	55	57	45	45	47	41
	공중선선택장치					18	10	17
	소 계		348	380	370	383	526	315
전원시설	발동발전기	대	57	56	53	66	57	73
	AVR	〃	19	34	27	27	21	13
	UPS	〃			5	5	6	6
	전원부속장치	〃	110	119				
	소 계		186	209	85	88	84	92
표정시설	고 정 용	대	5	5	5	6	34	4
	이 동 용	〃	25	15	16	17	10	12
	소 계		30	20	21	23	44	16
전리층 관측시설	컴퓨터 장치	대	54	51	51	51	63	61
	G · I , G · II	〃	166	163	159	159	14	183
	회선장치	〃	48	29	29	29	34	50
	공 중 선	식	4	4	4	4	4	4
	소 계		272	247	243	243	115	298



▲ 로컬 전파측정 시설



▲ 전파품질측정 차량

4. 자동전파 감시시설 현황

가. 시설 설치 목적

감시업무 자동화로 전파 발사 위치 측정 능력 향상

나. 공사기간 및 예산

○ 공사기간

- 1970. 7 : 미 FAIRCHILD사와 시설의 기술적 가능성 협의
- 1971. 2 ~ 1972. 3 : 2계 SITE 위치선정 및 건설도입 시설 계약(#1,2)



▲ 자동방탐소 SITE 위치 선정 및 건설현장

- 1973. 8 ~ 1975. 3 : 2계 자동방탐소 및 지휘소 준공 (1, 2)
- 1975. 4 ~ 1978. 3 : 2개 자동방탐소 증설 (3, 4)
- 1978. 4. 1 : 운용개시

○ 투입예산

- 1970 ~ 1977년 : 4,942,246천원
- 1978 ~ 1981년 : 1,820,000천원
- 1982 ~ 1983년 : 1,037,345천원

  계 : 7,799,591천원

○ 1978년 이후 주요사업 내용

- 수동감청 시설에 자동방탐 결합장치 부가 설치
- 후생복지 시설 확충(관사 및 휴게실)
- 김포분실 신설
- 제주분소 증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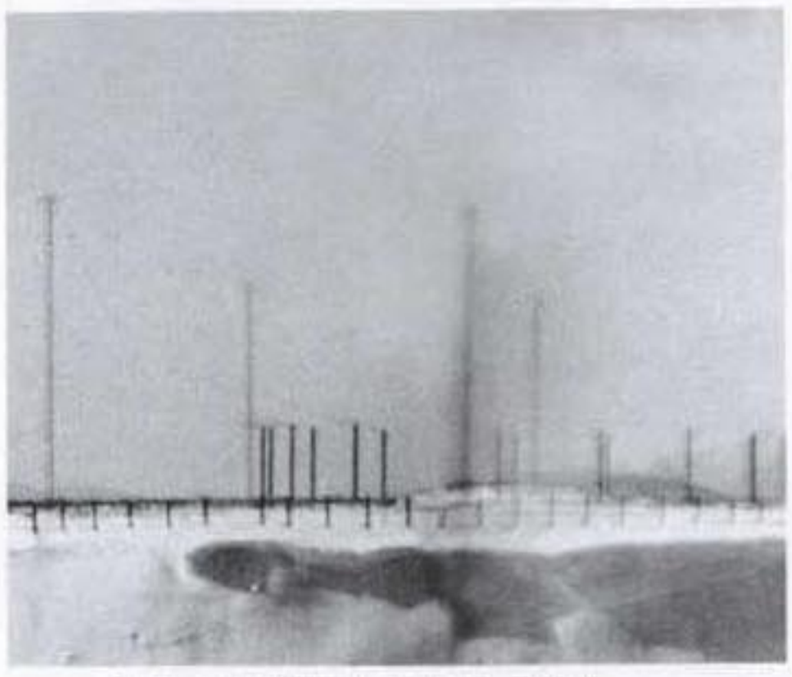

▲ 눈덮인 방탐 안테나부지 전경(강릉 대관령)

다. 자동 및 수동감시시설 투자 현황

(단위:천원)

성 명	자 동	수 동	계	비 고
70 ~ 77	4,942,246	512,041	5,454,287	
78	565,041	74,959	640,000	
79	193,028	306,972	500,000	
80	277,374	2,626	280,000	
81	387,742	12,258	400,000	
82	248,384	5,900	254,284	
83	683,473	99,588	783,061	자동중 도플러 방식 1식 도입비 포함(196,502천원)
소 계	2,355,042	502,303	2,857,345	
합 계	7,297,288	1,014,344	8,311,632	

라. 사이트별 자동감시시설 투자 현황

(단위:천원)

구 분	개소년월일	1차년도	2차년도	합 계
		70 ~ 74년	75 ~ 77년	70 ~ 77
#1 합덕	75. 3	732,076	267, 717	999,7393
#2 광주		568,305	491,041	1,059,346
#3 양산	78. 4		1,110,638	1,110,638
#4 대관령			979,809	979,809
본 소			792,660	792,660
계		1,300,381	3,641,865	4,942,246



▲ 감시 사이트에서 자동전파감시 시설을 운용하는 모습

마. 전파감시시설 및 부대시설 공사 현황

년 도 별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1976	1. 부대시설 및 설치공사		
	○ 자동공중선 설치2식외 4점	29,020	
	○ 냉난방 2개소	5,100	
	○ 데이터 통신	117,810	
	소 계	151,930	
1977	1. 건물공사		
	○ 건물4동 (관사)	74,034	
	○ 구축물 보강	92,096	
	2. 기계장치		
	○ 시설보강 및 용역	145,,000	
	○ 국고채 상환	288,944	
	3. 부대시설 및 설치공사		
	○ 부대시설	23,390	
	○ 단말시설 2종	19,630	
	소 계	643,094	
1978	1. 건물공사		
	○ 김포부지 매입 1,700평	8,959	
	○ 분국관사 4동	132,341	
	○ #3 토목공사	140,032	
	○ #4 토목공사	127,012	
	○ 기타부대비	12,049	
	2. 기계장치		
	○ 자, 수동접속장치 1식	158,597	
	3. 차량 및 공기구		
	○ 차량구입	29,595	
	○ 공기구 (내자 5종63대)	31,415	
	소 계	640,000	



▲ 중앙전파관리소 전경

년 도 별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1979	1. 건물공사		
	○ 제주부지매입(5,073평)	38,179	
	○ 제주분국 건축공사 183.7평	100,000	
	○ 제주분국 진입로 정지	55,180	
	○ 기타 부대비	6,760	
	2. 기계장치		
	○ 외자 접속장치	97,000	
	○ 발전기 2대	8,717	
	○ SSB송수신기 4대	11,800	
	○ 제주분국 공사	113,595	
	3. 차량 및 공기구		
	○ 구동차(#3, 4)	14,500	
	○ 타자기 21대외 18종	54,251	
	소 계	499,982	
1980	1. 건물공사		
	○ 제주분국 부지	2,620	
	○ #3관사 1동	44,420	
	○ 강릉분국 법면 보강	104,393	
	○ 기타 부대비	3,362	
	2. 기계장치		
	○ CRT터미널	18,200	
	○ V/UHF 수신기 3대	63,350	
	○ AMC 5대	3,500	
	○ 그라운드 스크린	14,950	
	3. 차량 및 공기구		
	○ 차량비	5,199	
	○ 공기구비	20,000	
	소 계	279,994	
1981	1. 건물공사		
	○ 서울분국 관사	48,200	
	○ 서울분국 발전실	8,000	
	○ 제주분국 식당	12,258	
	○ #3보강외 5종	92,315	
	○ 기타 부대비	3,387	
	2. 기계장치		
	○ GROUP-Ⅰ,Ⅱ	83,698	
	○ 팩시밀리 1대	7,182	
	○ SSB송수신기 2대	27,120	
	○ LP ANT	15,600	
	○ UPS	31,500	
	○ 발전기 4대	7,000	
	3. 차량 및 공기구		
	○ 차량 2대	15,153	
	○ 공기구비	48,587	
	소 계	400,000	

년 도 별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1982	1. 건물공사		
	○ 제주외 5종	100,504	
	○ #3 법면 및 진입로	52,842	
	○ #4 피해복구 외 1종	57,202	
	○ 기타 부대비	3,678	
	2. 기계장치		
	○ AMC 3조	14,311	
	○ HF 수신기 2대	13,245	
	○ 분석용 녹음기 4대	5,220	
	3. 차량 및 공기구		
	○ 공기구	7,282	
	소 계	254,284	
1983	1. 건물공사		
	○ 김포분실 부지매입	7,642	
	○ #1국사보강(화장실)	1,430	
	○ 통제국 차고	63,613	
	○ #4 진입로 보수공사	52,602	
	○ 정구장 4면 (본소, 제주)	20,000	
	○ 울타리, 경보시설(#1, 제주)	52,052	
	○ 기타 부대비	7,085	
	2. 기계장치		
	○ HF 방탐기 1식	197,502	
	○ 자수동 연계장치 1식	56,308	
	○ HF 수신기 10대 외 2종	151,813	
	○ LP ANT 설치(김포)	19,638	
	○ 공중선 시설이전 공사	99,500	
	○ SSB 송수신기 4대 외 1종	19,286	
	3. 차량 및 공기구		
	○ 녹음기 4대 외 8종	35,590	
	소 계	784,061	
70~83	누 계	3,653,345	

□ 전파감시관련 기고문 : 전파의 적정관리

I. 서론

무수한 전파는 무한정된 공간을 통하여 각종 통신, 방송, 항해, 항공의 이용 등에 사용되므로써 우리 인류의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치안 등

전반에 걸쳐 침투되어 그 기능은 현대국가형성에 필요불가결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들 다종다양의 이용관계에 있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파의 사회적 작용 또한 통신 특히 전기통신을 이루고있는 사회적 작용이다. 그러나 전파의 이용범위가 아무 곳에나 다방면에 고도로 이용된다고 할지라도 전파를 통제관리하지 않고서는 전파에 의한 통신 기타 용무를 다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파가 사회의 완성에 참여하는 중요한 전기통신방식의 큰 작용으로서 이의 통제는 더욱 중요하다고 보겠다.

수많은 전파의 무질서한 통신은 타 통신을 방해하는 결과 등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되므로 이를 적정한 통제와 관리를 함으로써 유효적절한 전파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감시기관의 원만한 시설 등이 원만한 전파행정의 바탕이라 보겠다. 전파의 이용분야는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인류가 생존하고 역사가 있는 한 개척될 것이다. 중요한 본 업무의 감시대상자인 무선종사자의 일인으로서 평소 생각한 바 있어 이를 기술코자 한다.

2. 불법전파의 적발 및 단속

불법무선국의 적발은 방위, 치안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며, 현 시국에 비추어 특히 그 임무는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전파관리법 제4조에 의해 모든 무선국은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비로소 무선국의 운용을 하게 되어 있다. 무허가로 시설된 무선국의 운용은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신성한 법정신의 무시를 뜻하는 고로 전파감시국의 강력한 단속 및 적발이 필요하다.

대개의 불법국을 포착하였을 때마다 그들은 무선전신기를 휴대하고 있었음을 볼 때 이의 적발을 행하지 못하였다함은 그 전파감시요원들의 강력한 뒷받침을 해주지 못한 관계당국에 그 책임을 묻고 싶은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맡은 바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 전반에 걸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불법의 통신들을 용이하게 포착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감시기관의 기기 시설의 완비와 감시통신사나 이에 따르는 요원훈련이 시급한 방안이라 생각된다.

근간 모 어업무선국 관할 어선통신에서 자국의 가허가는 받았으나 정규허가를 받지 못하여 타선의 호출부호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제 법규를 무시하

고 있는 처사로만 생각이 된다. 이는 분명히 전파사용방법의 위반이라 본 장에서 기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겠으나 불법전파의 일종이기 때문에 감시기관의 더욱 분발을 촉구하고 싶어서이다. 무선전신 및 무선전화의 관장권이 체신부장관에게 있는 고로 불법으로 무선시설을 하는 것이나 허가취소를 받은 무선시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위의 임검을 행할 수 있는 감시요원의 권리를 대폭 부여하여 충분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될 것이다.

이는 무선에 있어서 사법경찰권을 검사파견관에게 위임하는 것이 당연하리라 본다. 전파관리법 벌칙에 의하면 무허가인 무선국을 운용한 자는 2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는 현행법을 준수하여 불법으로 시설하는 국이 전무토록 특별한 감시가 되어야 되겠다.

3. 전파의 질에 관한 감시

가. 주파수 편차

발사되는 전파가 그 전파를 이용하는 본래의 목적에 어느 정도 법의 규정에 적합하고 있는가하는 품질을 전파의 질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특정의 주파수를 사용한 경우 당해 주파수에 대하여 허용되는 최대한의 편차를 주파수 편차라고 한다. 주파수 허용편차는 무수한 통신로의 확보 혼신방지와 수신의 능률화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주요한 주파수의 범위를 무작정 사용하여 고주파를 발생케 한다든지 허용편차를 초과하여 사용한다든지 또는 저주파 기생발사의 강도를 규정 외로 사용한다는 것은 타 통신에 크나큰 방해를 주는 결과가 되므로 현업통신실무자의 사전 보수가 극히 필요한 것이다.

감시업무를 수행하는데는 발신국의 주파 등을 항상 감시하여 허가상의 규정에 위배되는 때에는 상세한 감시내용을 발신 무선통신 당해국에 통보하는 것이다.

전파관리국 훈령 제2호 별표 제1항에 의하면 기준준파수와 이에 대응하는 발사의 특성주파수측정치와의 차에서 최대측정 오차를 감한 치가 전파관리법시행령 제107조에 정한 허용편차를 넘는 때에 상당주의를 시켰으나 그 경과를 감시한 결과 아직도 그 사고의 상태가 계속한 때 또는 과거 3개월간에 주의를 2회 이상 시켰을 시는 경고를 하며 경고한 후 감시결과 그 사고의 상태가 계속한 때나 과거 3개월간에 경고를 하였음에도 같은 사고를 반복한 때는 계고의 처분을 하

게 되어 있다.

나. 스퓨리어스 발사강도

스퓨리어스 발사라 함은 필요주파수대외에서의 1 또는 2이상의 주파수의 전파의 발사로서 그 레벨을 정보전송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저감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고조파 저조파의 발사 기생발사와 상호변조적을 포함하고 필요주파수대에 근접하는 주파수의 전파발사로서 정보전송을 위한 변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스퓨리어스 발사강도의 허용치는 전파관리법시행령 109조에 표시되어 있으며 고조파 저조파 스퓨리어스 발사의 강도가 시행령 109조에 정한 허용치를 넘든지 불명한 것으로서 타에 혼신을 주는 것은 주의 또는 경고로서 그치게 되어있다.

4. 전파사용방법의 규정감시

가. 통신방법

무선통신방법에 있어서는 고정업무, 이동업무 등 각종업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능률적인 운용에서는 가능한 한 유효적절한 통신방법을 취해야 될 것이다. 무선통신을 행함에 앞서 전파관리국법시행령 제209조에 규정한 무선통신의 원칙을 준수해야 될 것이다.

무선통신사는 항상 무선통신의 중요성을 잃지 말고 법규에 규정한 호출방법, 응답방법, 시험전파 발사방법을 철저히 이행해야 될 것이며, 약부호 또는 용어를 사용하여 시간의 낭비를 없애야 될 줄 믿는다.

또 불요통신을 행한다든지 호출부호를 오용한다던지 하는 것은 모두가 감시대상이 되는 고로 전파를 다루는 일선 통신사들의 상당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제 법규의 통신방법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모오르스 부호가 불량하여 무용의 시간을 계속한다면 그만큼 시간의 낭비와 소통의 원만을 기하지 못한 고로 되도록 미숙한 자신들의 기량을 연마하여 세심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통신방법은 모두가 감시대상으로서 주의 및 경고를 하게되고 타의 통신을 심히 저해한 때 또는 경고한 후 10일 이내에 또 위반사항이 유할 시는 계고

로서 벌하게 되어 있으나 실무자의 주의가 새삼 필요하며, 국제법규를 중심한 제 법규준수에 노력해야 될 줄 믿어진다.

나. 통신시간에 관한 것

통신시간이란 일정한 시간을 제한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것으로서 제1 침묵시간, 제2 침묵시간, 허용시간, 할당시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침묵시간이라 함은 조난통신, 긴급통신, 안전통신을 위한 이들 통신에 혼신을 미치게 하든가 또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기타 통신을 위한 선박국과 해안국에 대하여 통신을 금지하는 시간이며 제1 침묵시간과 제2 침묵시간의 2종으로 구분하여 설명코자 한다.

제1 침묵시간이란 국제표준시(GMT)에 의한 매시 15분 및 45분부터 각 3분간 485kc/s 내지 515kc/s의 주파수의 전파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시간이다.

이 침묵시간의 설정이유는 위의 중요통신의 효과를 완전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이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전파를 발사하였을 시는 3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제2 침묵시간이란 중앙표준시에 의한 매 시초의 3분간을 말하며 ,이 시간 중에는 해안국과 선박국은 2091kc/s와 2170kc/s, 2194kc/s의 전파를 발사 못하는 대신 제1 침묵시간과 같은 벌금형이 없는 것이 다르다.

고로 침묵시간의 주의를 준수하여야 될 줄 믿는다. 귀중한 인명의 보호와 재산의 안전보호를 위한 조처가 극히 중요한 것임은 재언을 할 필요마저 없는 것이다.

허용시간은 혼신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주파수와 공중선전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운용시간을 지정한 이유는 같은 주파수공중선전력인 것이라도 그들이 동시에 전파를 발사하지 않으면 혼신 방해없이 통신이 가능한 것이다.

운용 허용시간이라는 것은 전파를 발사하여도 좋은 시간이라고 해석되겠다. 이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운용허용시간과 운용의무시간과의 구별인데 전자는 운용하여도 좋은 시간을 말하며 후자는 그 시간 중에는 반드시 운용하여야 하는 시간이다. 운용허용시간은 모든 무선국에 대하여 지정되는 것이나 운용의무시간은 선박국 등에 정하여져 있다.

이동업무에서는 동일한 주파수를 가진 무선시설국이 대다수인고로 상호간 순서통신을 이행하여 소통의 혼잡을 삼가고 원활한 빠른 시간 내에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 전파의 사용에 관한 것

무선시설국은 허가장에 기재된 주파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타 무허가의 주파수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국제조난주파수인 500kc/s에서 중요통신 이외의 목적으로 무용한 전파를 발사한다든지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더욱이 이 원칙은 통신혼잡지역에서는 혼신을 적게 하기 위하여 더욱 제한되고 또 통신혼잡지역외에서 무선방향탐지 등 약간 완화되어 있는 것이다.

중파에 의한 500kc/s의 사용제한은 중요통신을 중심한 일반호출 및 응답 시험전파의 발사 등 기타 간단한 통신으로서 3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운용하게 되어 있다. 또 변조의 형식, 전송의 형식과 포착적 특성에 의한 전파의 형식은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전파의 형식을 정하는 것을 무작정 제한사용도 하지 않고 공중선전력 등을 위반 사용한다거나 혹은 이들 사용구별을 위반사용케 하는 것은 타통신에 유해한 혼신을 일으키는 요인이라 볼 수 있는 고로 조심성있게 운용되었으면 한다.

라. 허가장 기재의 중요사항

무선국은 전파이용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무선국 허가장에 기재된 목적으로만이 운용될 수 있는 것이며, 타의 용도에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통신의 목적을 제한하고 인명재화의 보전과 사회의 안녕질서, 그 외에 일반적 복지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신에 대하여는 전파규율의 예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전파관리법 제38조에 의하면 조난통신, 긴급통신, 안전통신, 비상통신, 방송의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을 무선기기의 시험 또는 조정을 위하는 통신기상의 조회 전파의 규정에 관한 통신, 방위측정을 위한 통신, 선박국에서 그 시설자와의 사업에 관한 통신,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항무용의 무선국과 선박간에 하는 선박의 교통, 항내의 정리 기타 항내의 단속과 해항검역사무에 관한 통신, 치안유지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무선국상호간에 하는 치안유지에 관한 통신 등이 있다.

이렇게 수많은 무선국에 시설된 시설자 상호간 이외의 타인을 위한 통신은 허가의 본래 목적이 아닌 고로 목적 외의 통신이 전무토록 해야 될 것이다. 통신사항 및 통신상대방에 대하여는 그의 목적내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무선국허가장에 기재된 통신상대방 및 통신사항을 지정 외에 사용한다 함은

비록 목적의 내용은 같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정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역시 위반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정당하다고 생각된다. 가령 A국에서 B국(각기 고정국)과 연락설정이 곤란하여 통신상대방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C국이나 D국에 임시의 교신을 할 수 있다고 볼 때 이것은 비록 법규에 근거없는 통신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공중통신을 소통키 위한 수단으로 부득이하리라 생각되지만 전파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개설이 허용된 요건인 고로 준수하여야 될 당해 무선국의 고유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부여하는 관계당국의 충분한 상대지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나 현행법규로 본다면 이동업무의 용도에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지정된 주파수사용 및 전파형식의 사용 등은 신청 시 시설자의 희망을 고려에 넣어서 지정하는 것인 고로 이를 사용하는 무선국은 허가가 되지 않은 타 주파수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선국의 시설목적은 그 무선국존재의 가장 큰 요소이니 시설목적을 변경코자 할 때는 체신부장관의 재허가가 필요한 것이다. 국제부자열에 의하면 작성되는 호출부호는 상대국을 호출한다던가 이의 응답을 하든가 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며 호출국, 응답국 또는 전파발사국을 표시하는 것이다. 지정도 하지 않은 호출부호를 고의로 오용하는 일등은 상대방 통신연락설정에서 빠른 시간에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되도록 유의해서 허가가 부여되지 않은 오용의 발사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마. 중요통신에 관한 것

중요통신이라 함은 조난통신, 긴급통신, 안전통신, 비상통신, 중파통신에서의 청취의무 등으로 볼 수 있다. 중요통신의 실질적 의미는 해상에 있어서의 긴급의 성질을 띤 통신을 말할 수 있다.

조난통신이라 함은 선박이 항행 중에 발생하는 충돌침수, 기관손해표류 및 화재 등 해난에 조우하는 것을 조난이라 하고 이에 관련된 통신을 조난통신이라 한다. 조난통신은 해상이동업무에서 최우선 순위를 가지며, 모든 통신을 중지하여 행할 수 있는 권한과 기타의 특권을 주어 이를 보호하고 있으며, 긴급통신이란 조난통신의 다음 순위로서 취급되며 선박의 항행에 대한 중대한 예방을 하기 위한 안전통신은 조난긴급통신의 다음 순위로 타 통신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중요통신은 그 내용의 성질상 타의 해상무선통신에 대하여 우월적 순위

를 가질 뿐만 아니라 허가장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며, 운용허용시간 등에 제한이 없으며 또한, 이들 통신은 타의 무선통신에 혼신의 방해를 주어도 부득이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들 중요통신은 주로 선박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선박을 상대로 하는 해안국에 설치되어 있는 고로 언제 어떤 불상사가 돌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는 청취가 필요하다. 조난통신은 해상 및 공중에 있어서의 인명과 재화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통신이므로 무선통신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취급 거절하고 통신에 의한 전송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함이 없이 그 취급을 지연시키거나 혹은 조난통신을 취급방해하였을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들 미수범도 처벌하게 되어있다. 이들 중요통신의 의무는 법 제50조 및 영233조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참조하여 일했으면 한다.

5. 이동감시의 필요성

고정된 감시기관의 기능이란 한정된 부분감시에 불과한 것이다. 전파행정의 원만을 기하는데는 무엇보다 질적인 감시업무를 수행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파를 감시함에 있어서는 부단히 전파를 청취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올바른 운용을 기하도록 하여 통고하는 것이 그 의의에 당연하다고 보겠다.

서두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전파가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제관리하는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의 감시기관인 서울, 부산, 광주 3개 전파감시국 만으로는 본래의 감시업무만을 되풀이하고 있음을 부인 못할 사실인 것이다. 감시의 능률화와 강력한 단속을 다하기 위하여는 중요한 지역을 이동하는 감시소나 또는 감시국 출장소의 형식으로 일정한 지역의 전파를 감시하는 것이 이상적인 감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선통신의 발전과정은 최초의 시대로부터 현재는 고도의 통신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무궁한 발전을 거듭해왔든 것이다.

10년 전의 감시업무와 현재의 감시기능은 천지차라해도 무방하리만큼 업무의 능률이 향상되었지만 보다나은 관리와 전파를 통제하기 위하여는 이동감시의 업무나 혹은 출장소 형식이라도 전파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곳에 증설이 하루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 전 전파인과 더불어 기대하는 바이다.

6. 무선종사자 직제개선

무선통신은 그 업무성질로 보아 국제성을 띄고 있는 관계로 그의 임무란 극히 중요하다고 보겠다.

국제조약에서 무선통신사의 자격규정을 채택한 것은 1906년 베를린에서의 국제무선조약에서이며, 그 전통은 지금까지 계승되어 왔다.

무선통신사나 무선기술사는 독자적으로 무선설비의 조작을 담당하며, 그 자격에 따라 일정한 범위내의 무선설비의 조작을 행하는 지위를 보유하는 관계로 법령의 수많은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는 동시에 전파를 통제관리하는 제 감독과 벌칙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 하에 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파이용관계의 통일성 내지 요통제성의 확보, 환언하면 혼신의 방지 및 통신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일정한 기능지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무선종사자자격제도의 설정이유는 전파의 유한성과 확산성으로 인한 무선통신의 혼신을 피하기 위함과 동시에 원만한 운용을 도모하며,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안전 인명재화의 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서이며, 무선과학의 발달에 수반하여 전파기기는 일익 정교화되고 일방 전파의 이용범위가 확대되었음으로 기술자에 대하여도 질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무선종사자는 무선국을 구성하는 인적요소이므로 그 의무란 중요한 것이다.

전파관리법 제31조, 동시행령 제48조에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종사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고, 법 제37조에는 무선종사자의 배치 및 정원을 규정하였으나 실질적인 지위에 관한 법의 대상은 이동업무국에 되어 있으나 이는 타 무선국을 도외시하는 결과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 없다.

1963년 6월 1일부터 시행케 되는 기능직 직급표에 의하면 통신부문에서 등급규정이 어떻게 될것인지 매우 궁금한 일이지만 통신직에는 무선통신직과 유선통신직, 인쇄통신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바, 위의 자격을 위한 고시과목이 당해 직종 내지는 학문적으로 상위될 뿐 아니라 특히 국제성을 띤 무선통신의 중요성에 비추어 각 자격별 지위가 현재의 위치에서 각 무선시설 담당국에 통신장제도를 설정하여 직무 및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책임관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의 실위를 타방향으로 개선하여 무선통신의 올바른 길로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을 관계당국에 건의하고 싶다.

7. 결 론

전파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의 개방으로 장차의 발전이 기대되는바 5개년 계획의 완수로 이룩될 경제성장에 따라 전파계의 발전도 획기적인 일로에 발전의 길만이 있을 따름이다.

전기통신사업의 일부분으로 전파관계가 차지하는 업무의 한계가 대량 어려운 통신인 고로 이를 조작하는 자신들의 제법규 준수와 타의 연구가 지극히 필요한 것이다.

외국의 전파행정을 살피건데 행정부에서 독립하여 독특한 통제를 함으로써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할 때 한국의 전파행정도 하루속히 전기통신과 분리하여 전파관리청으로 이끌어 갈 때까지 관계인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줄 믿는다.

예산이 부족하여 무선국 검사하나 제대로 못하는 전파관리국의 실정에 비추어 전파행정은 통신사업특별회계로부터 분리시켜 통제를 관리하는 것만이 당연하리라 믿는다.

현업무선통신실무운용국의 개선을 위하여 현대화의 기기시설이 필요하며 이에 따르는 제반환경이 정비되었으면 한다.

전파문화의 발전, 전파인의 기술향상 등 과감한 우리들의 과업이 남아 있음을 볼 때 전파통신건설의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 체신문화 제95호(1964년 7월), 제97호(1964년 9월):거문도 우체국 방부영 —

映像으로 보는

電波監視 施設

전파감시용 안테나 모습들



▲ 단파 수신용 안테나 설치 전경



▲ 당진분소 DISCON 안테나 전경



▲ 사천분실 DISCON 안테나 전경



▲ 중앙전파관리소 DISCON 안테나(1970년대 가락동) 전경



▲ LP-501 안테나 설치전경



▲ 제주분소 LP-501 안테나 설치전경



▲ 당진분소 방탐용 LP-409 안테나 설치전경



▲ 광주분소 방탐용 LP-409 안테나 설치전경



▲ 폭설에 묻힌 대관령 사이트 방탐용 LP-402 안테나의 중앙기계실 전경



▲ 강릉분실 LP-501 안테나 설치전경



▲ 울산분소 LP-402 안테나 설치전경



▲ 부산분소 LP-501 안테나 설치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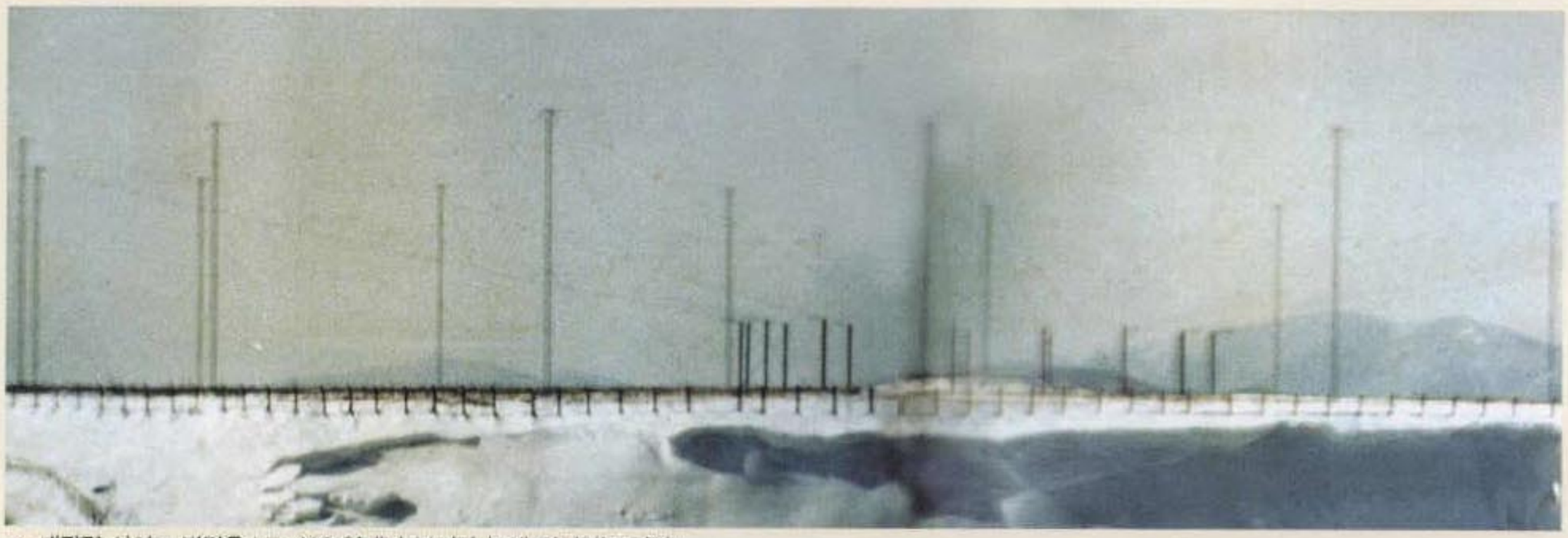

▲ 대관령 사이트 방탐용 LP-402 안테나 부지가 눈에 덮혀있는 전경



▲ 광주분소 방탐용 LP-409 안테나 설치전경



▲ 제주분소 TELECON-6 방탐용 에드콕 안테나 설치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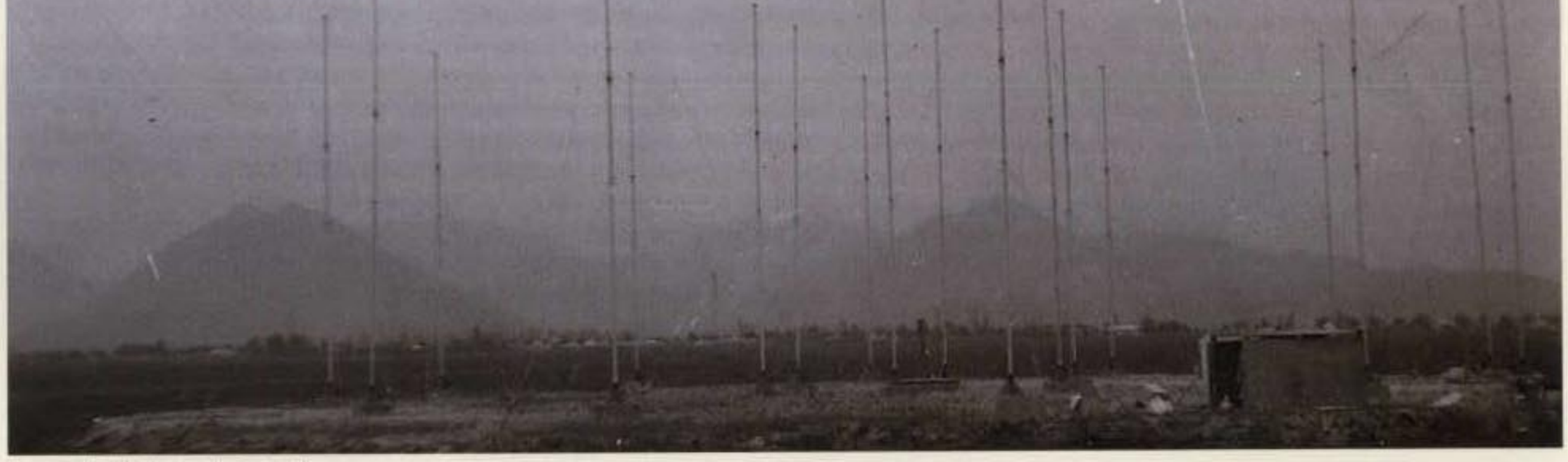

▲ 김포분실 방탐용 에드콕 안테나 전경



▲ 흥해분실 에드콕 안테나 전경

▲ 반고정 에드콕 안테나 전경



▲ 종합전파감시망 VHF대 DISCON 안테나



▲ 중앙전파관리소 LP-2 안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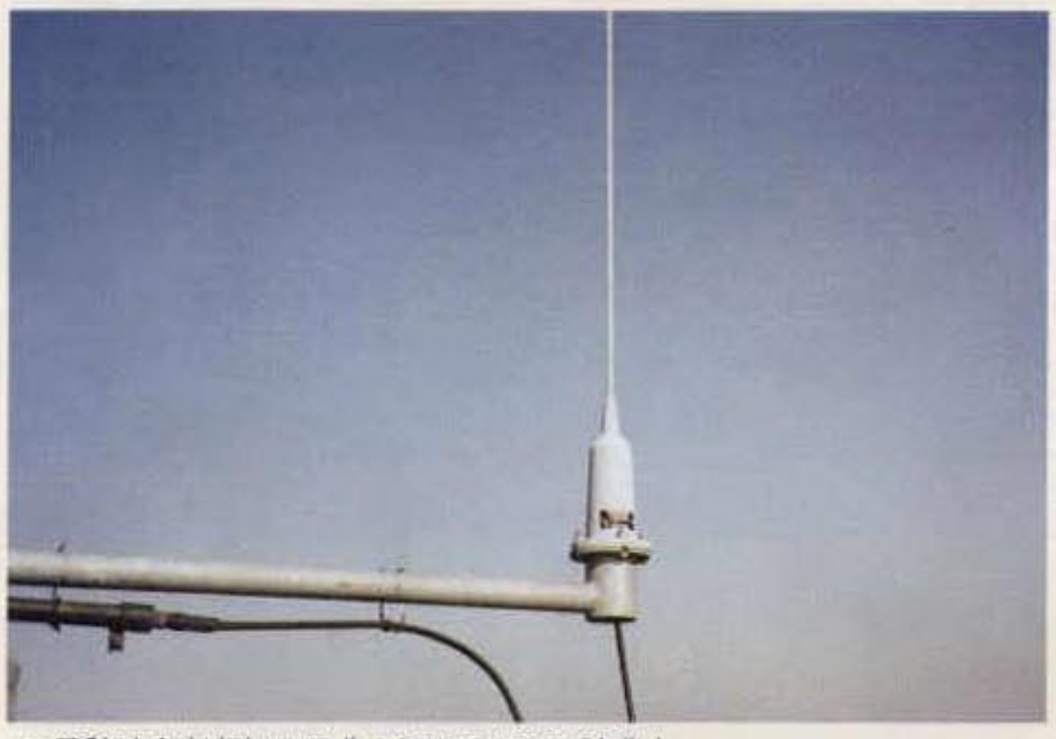

▲ 종합전파감시망 VHF대 ACTIVE-ROD 안테나



▲ 종합전파감시망 V/UHF대 CROSS-LP 안테나



▲ 김포분실 V/UHF대 방탐용 안테나



▲ 부산분소 더블렛 안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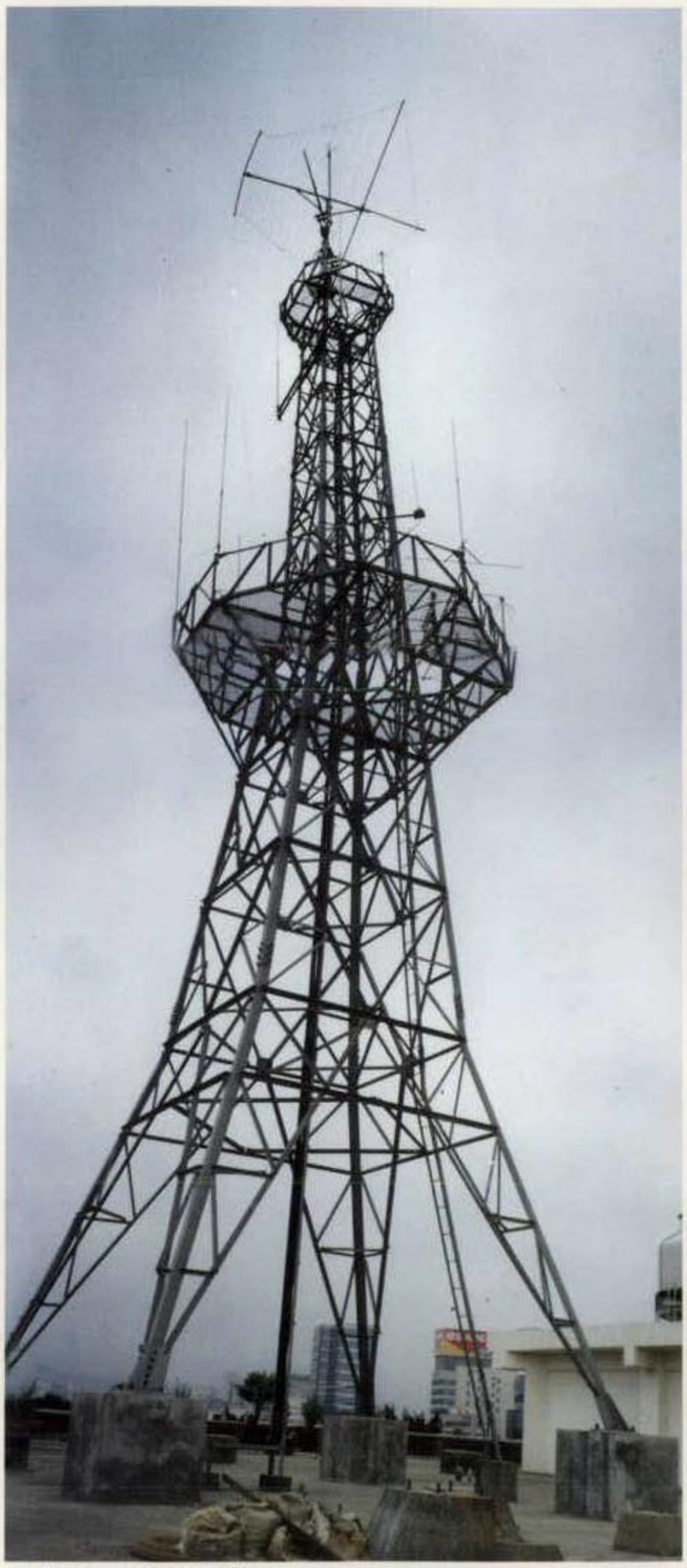

▲ 대구분소 사각자립식 철탑



▲ LP - 501 안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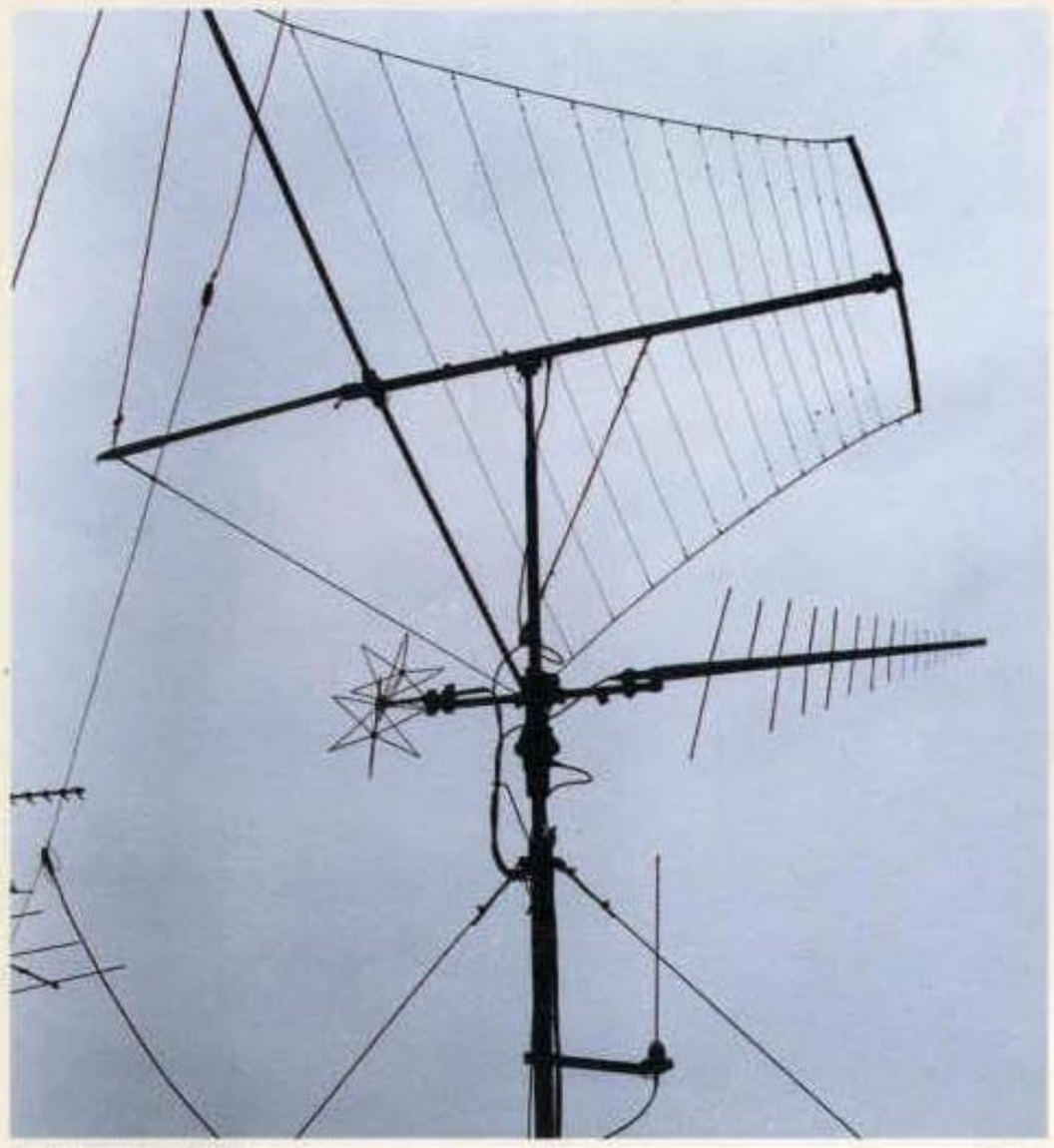

▲ HF/VHF대 LP 안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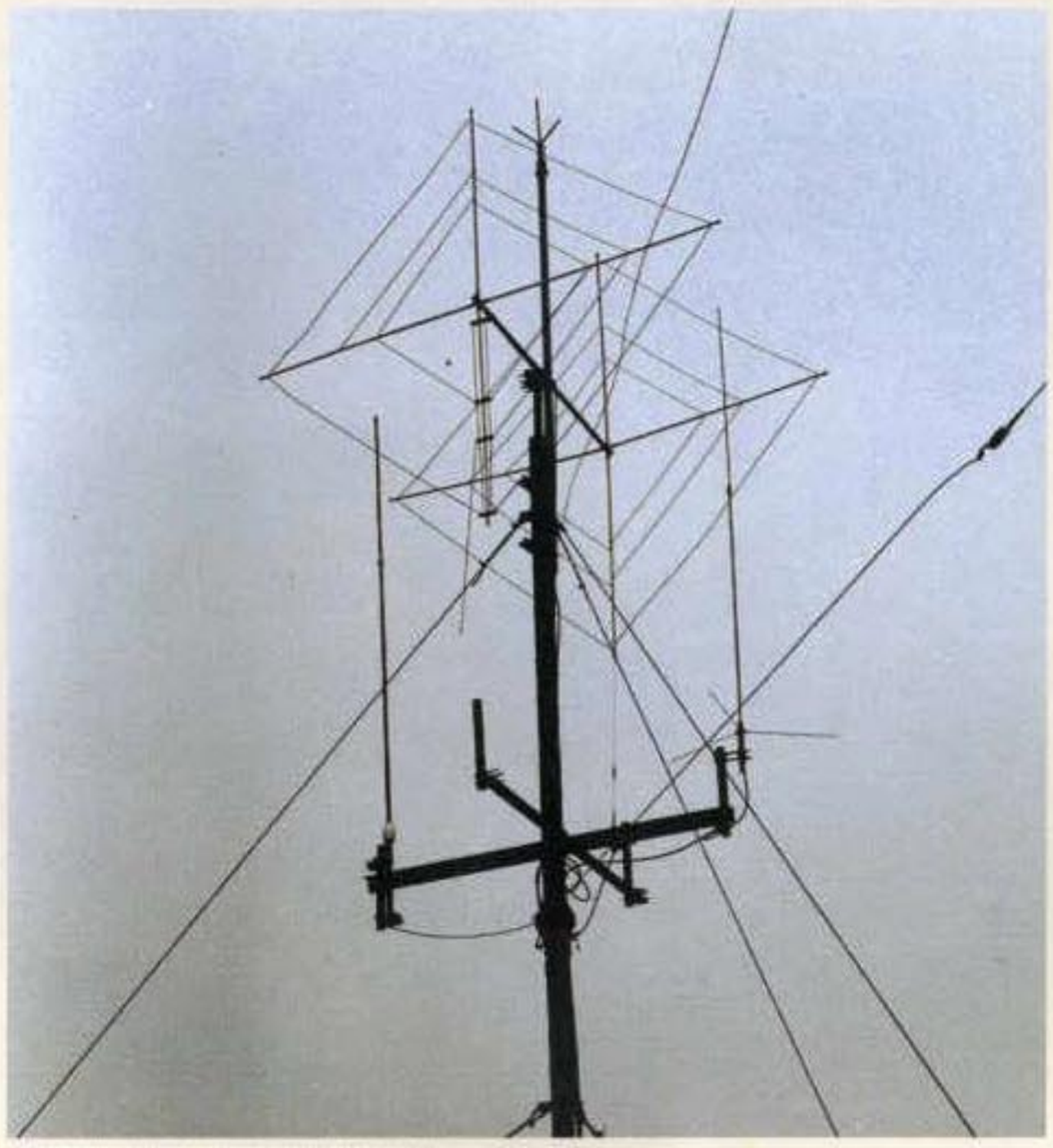

▲ 아마추어용 HF대 LOOP 안테나



▲ 아마추어 통신위성 추적용 야기안테나



▲ DISCON 안테나



▲ 부산과학교육원 철탑에 설치된 종합전파감시망용 안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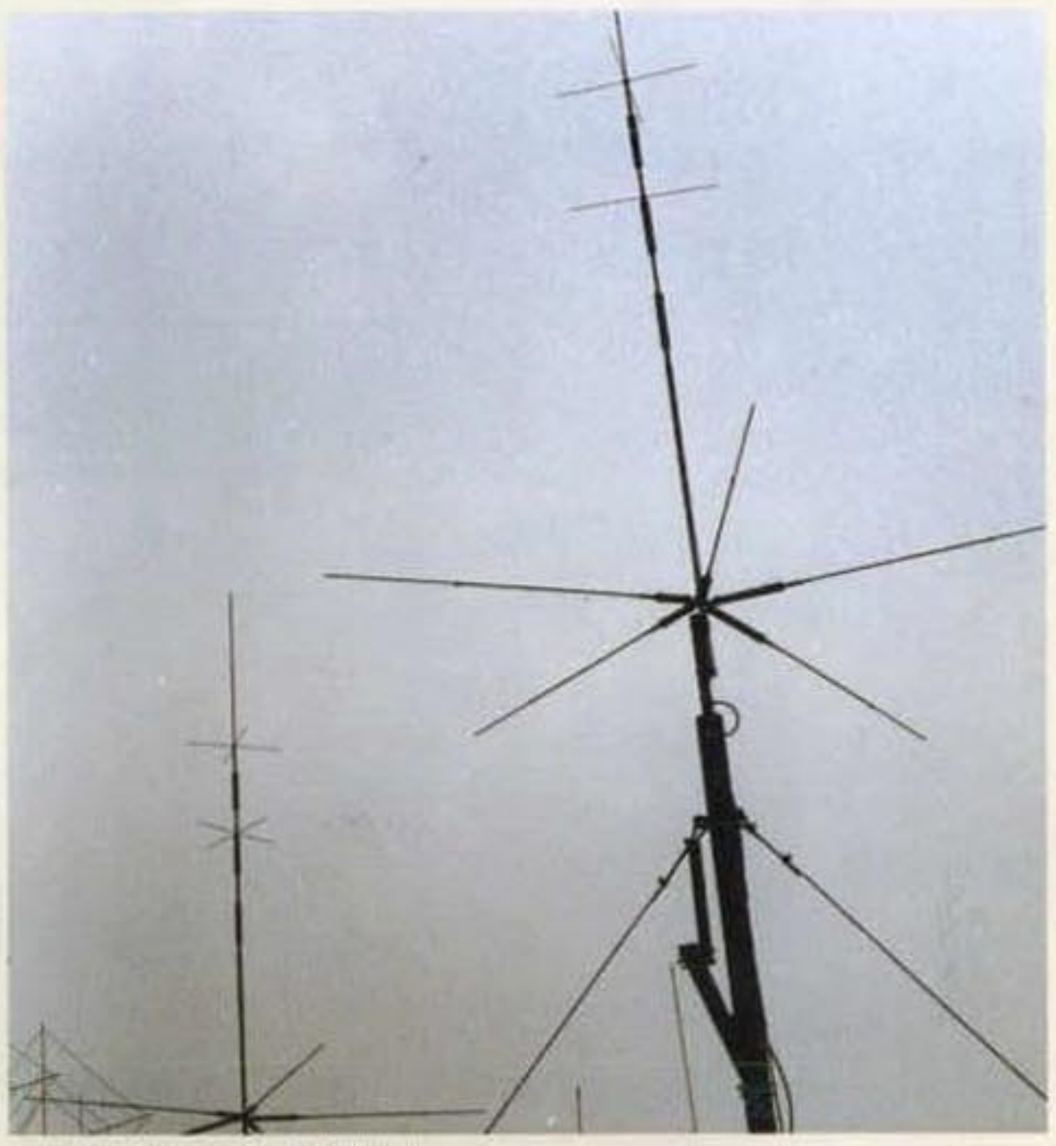

▲ 아마추어용 3단 GP 안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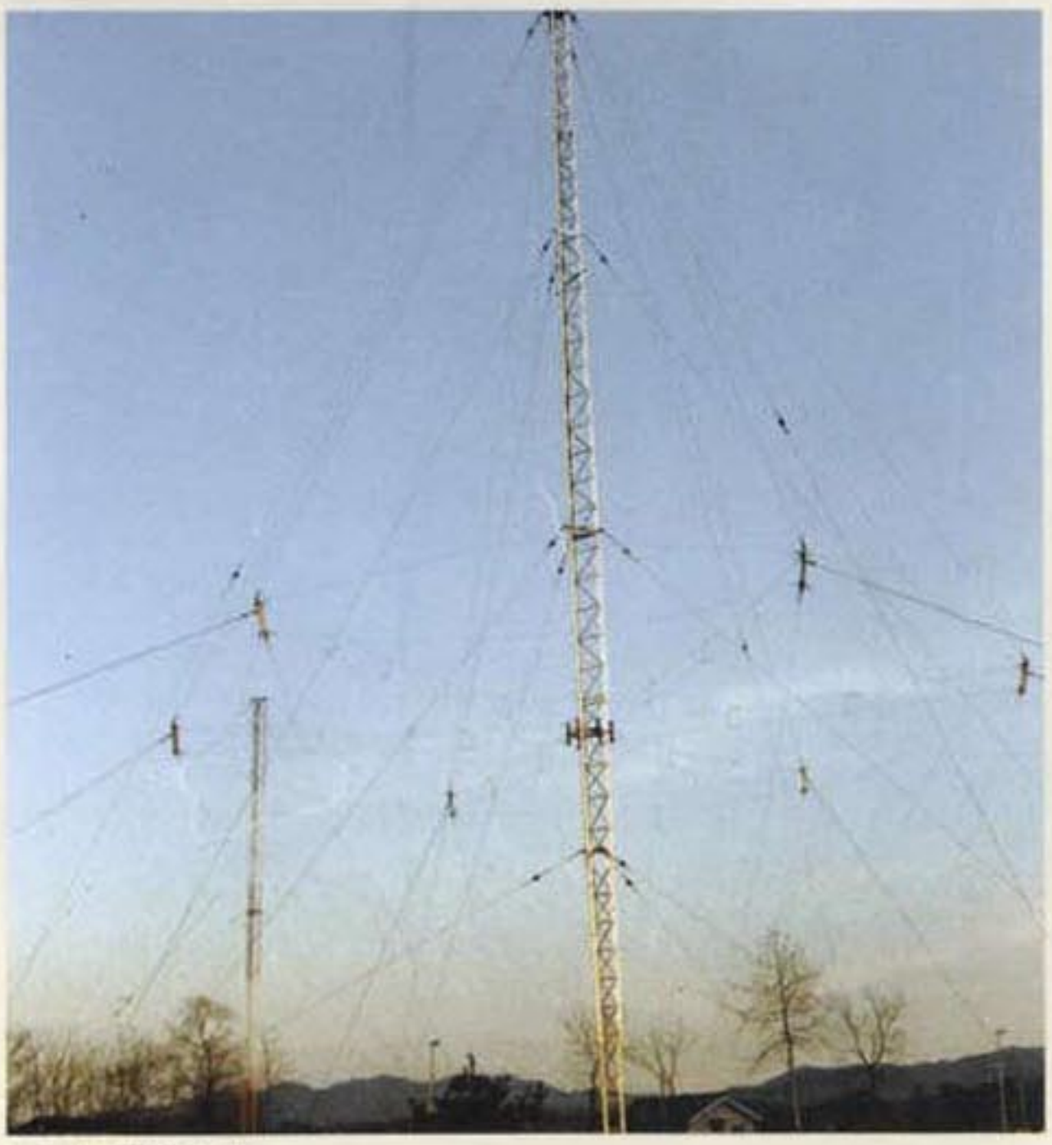

▲ 모노폴 안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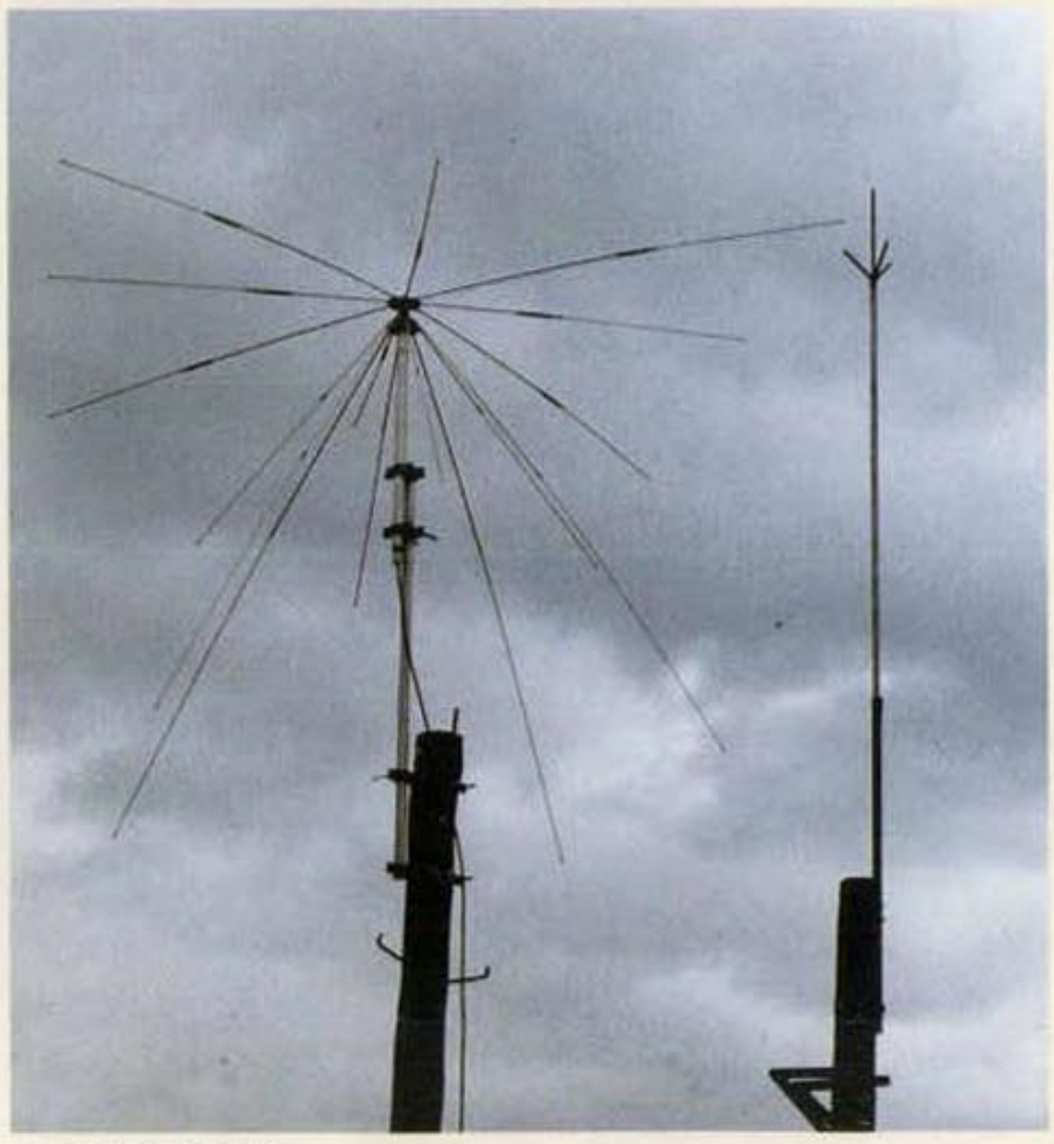

▲ DISCON 안테나



▲ 울산분소 LP-501 안테나 전경



▲ 광주분소(산포) BC-610 송신용 안테나 전경



▲ 울산분소 LP-402 안테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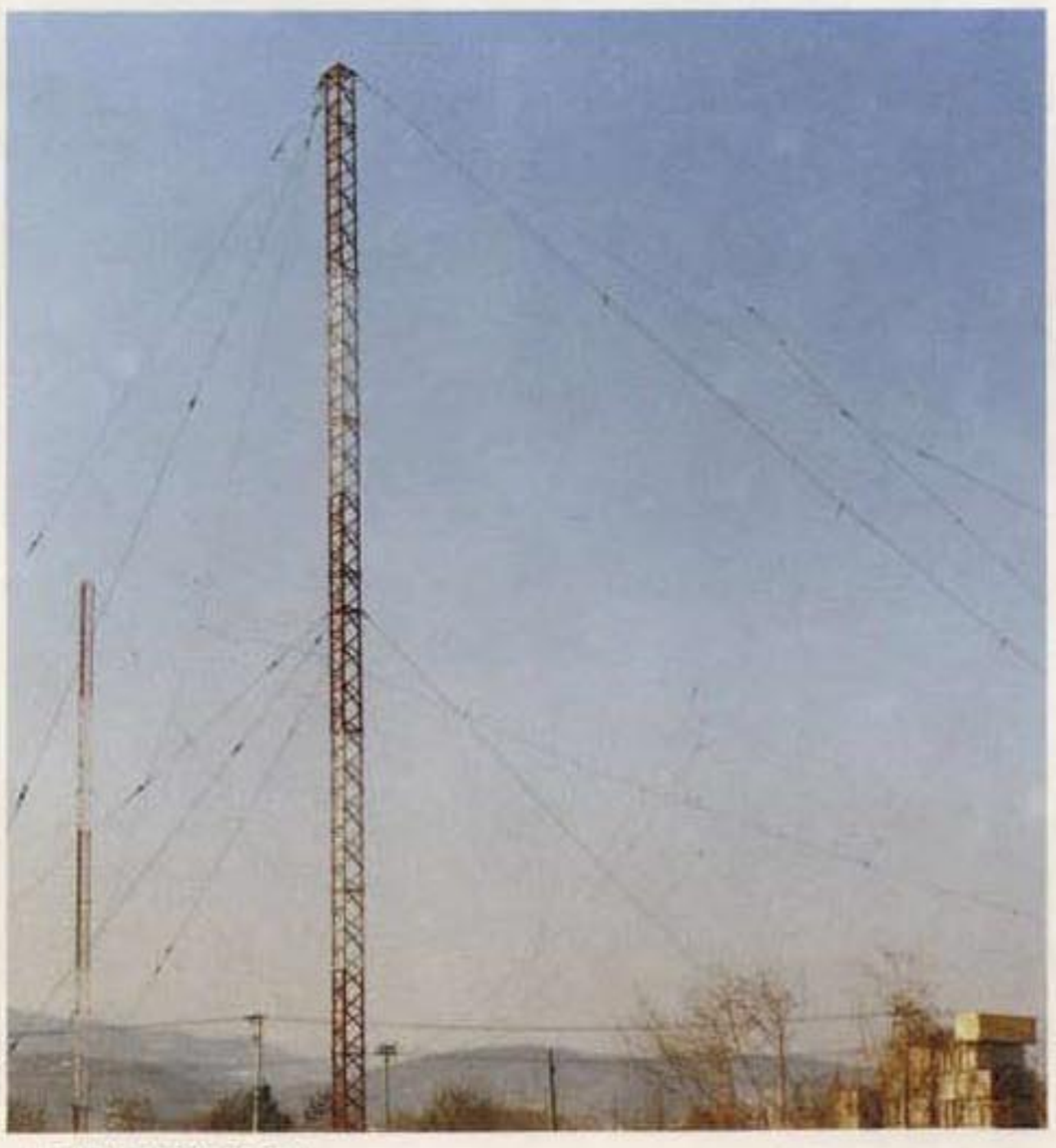

▲ 단파 더블렛 안테나

전파감시용차량의 변천모습



▲ 전파통제차량(EMC-25 탑재)



▲ 이동감시차량(MINILOCK탑재)



▲ 혼신조사용차량(TV혼신처리용 장비탑재)



▲ 이동방탐차량(PST-638장비 탑재)



▲ 이동방탐차량(PST-638장비 탑재)



▲ 이동방탐차량(PST-638장비 탑재)



▲ 불법전파조사 및 단속차량



▲ 전파통제차량



▲ 불법전파조사 및 단속차량



▲ 전파통제차량



▲ 이동방탐차량(KS-319R3 방탐장비 탑재)



▲ 이동방탐차량(KS-319R3 방탐장비 탑재)



▲ 혼신제거차량(TELEGON-7 탑재)



▲ 혼신제거차량(TELEGON-7 탑재)



▲ 혼신제거차량(TELEGON-7 탑재)



▲ 이동전파감시용차량(CMR-90, CMNR-90, MINILOCK 장비탑재)



▲ 전파환경 측정차량



▲ 민원해소용 CS기동차량



▲ 민원해소용 CS기동차량



▲ 민원해소용 CS기동차량



▲ 민원해소용 CS기동차량

전파감시의 시설 및 감시업무 모습



▲ TCI 방탐장비 시스템(광주분소)



▲ 감시업무실 전경(울산분소)



▲ HP- 2116 컴퓨터(중앙전파관리소)



▲ TCI 방탐장비 시스템(울산분소)



▲ TCI 방탐장비 시스템 운용장면(울산분소)



▲ 감시업무실 전경(중앙전파관리소)



▲ VHF대 방탐장비(김포분실)



▲ 감시업무 광경



▲ 연락용 통신장비



▲ 자동방탐장비(당진분소)



▲ 감시업무 전경



▲ HP-2116컴퓨터 및 회선절체기



▲ 차량에 탑재된 G-2 방탐장비



▲ 차량에 탑재된 PST-638 방탐장비



▲ 차량에 탑재된 MINILOCK 전파품질 측정장비



▲ 차량에 탑재된 TV 전파품질 측정장비



▲ 차량에 탑재된 VHF대 MRM-100 장비



▲ 차량에 탑재된 MINILOCK 전파품질 측정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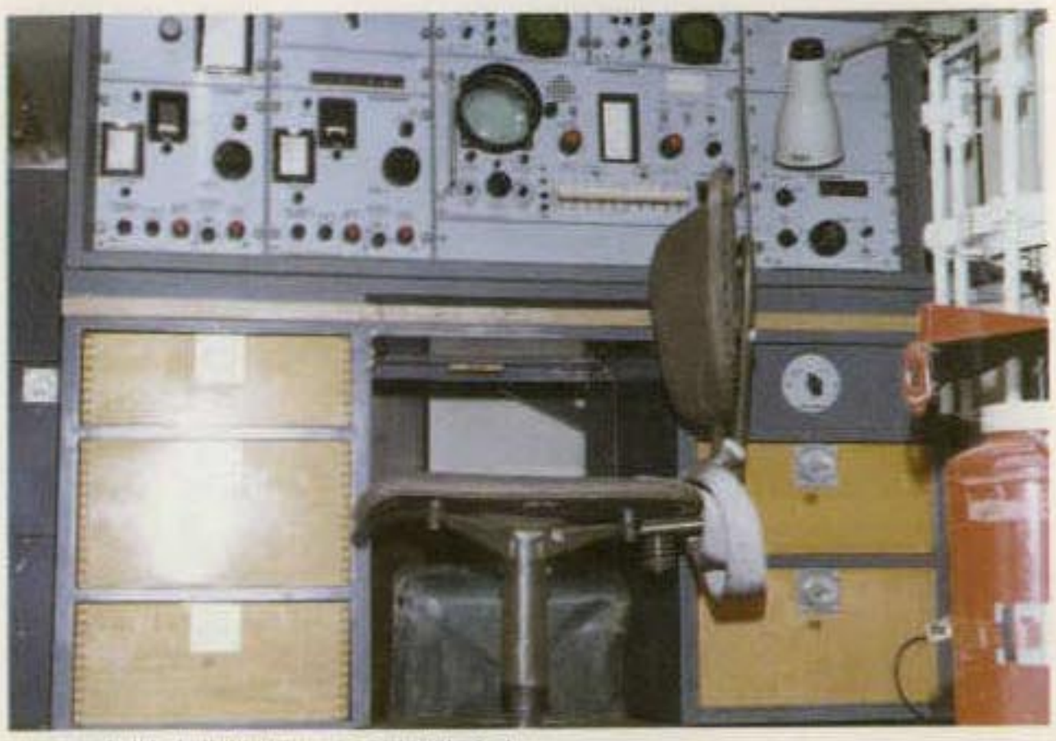

▲ 차량에 탑재된 PST-638 방탐장비



▲ 방탐장비 KS-319R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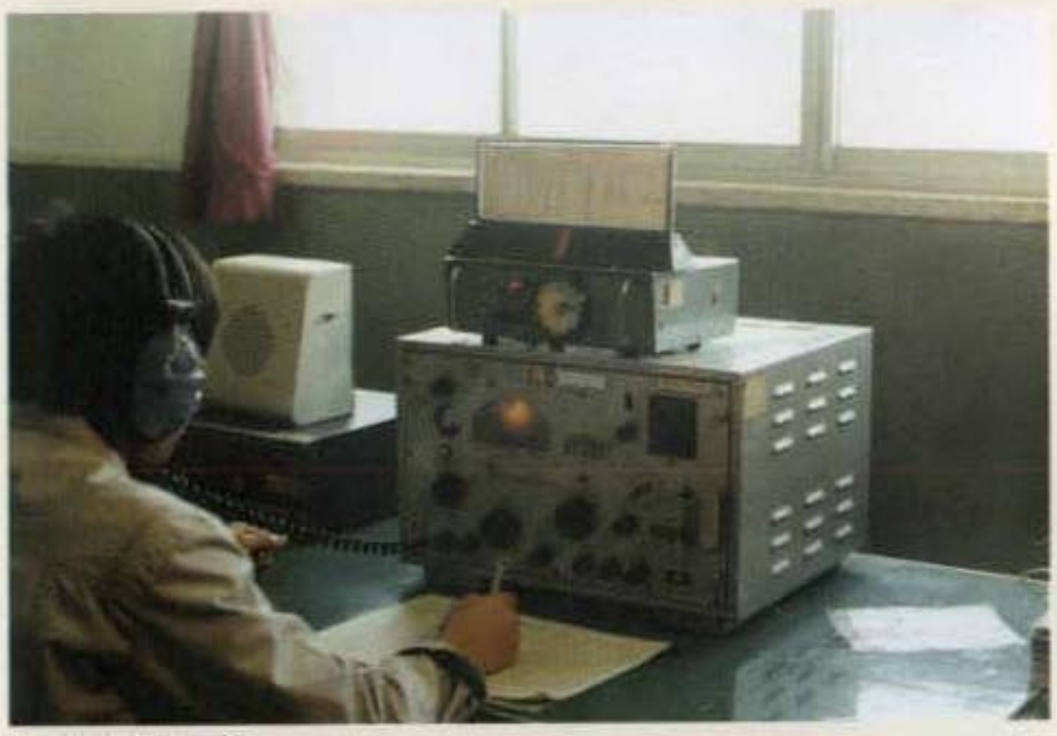

▲ 감시업무 모습



▲ 방탐장비 TELEGON-6(제주분소)



▲ 차량에 탑재된 TELEGON-7 혼신조사용 장비



▲ 국제단파방송 품질측정장비 RTA-1457



▲ 종합전파감시망 CRM-90 장비



▲ ESH2 측정장비



▲ VUHF대 MRM-300장비



▲ 전파품질 측정장비ESN



▲ EB-100 휴대용 방탐장비안테나



▲ EB-100 휴대용 방탐장비



▲ AS-86 단파수신기



▲ RA-1792 단파수신기



▲ ASTRO-C 장비



▲ RF-301 장비



▲ SYNGAI-2000 장비



▲ DM-1520 업무연락용 장비



▲ E-1800 중단파 수신기



▲ E-1500 중단파 수신기



▲ E-1900 VHF 수신기



▲ TELEGON-7 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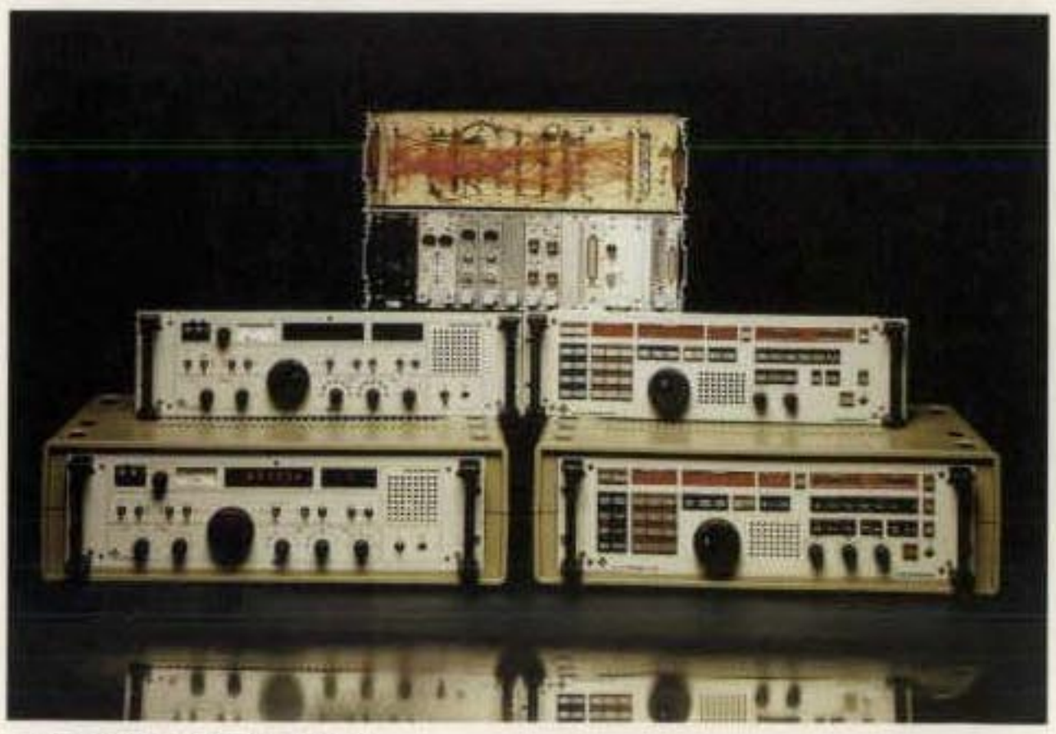

▲ E-1500 중단파 수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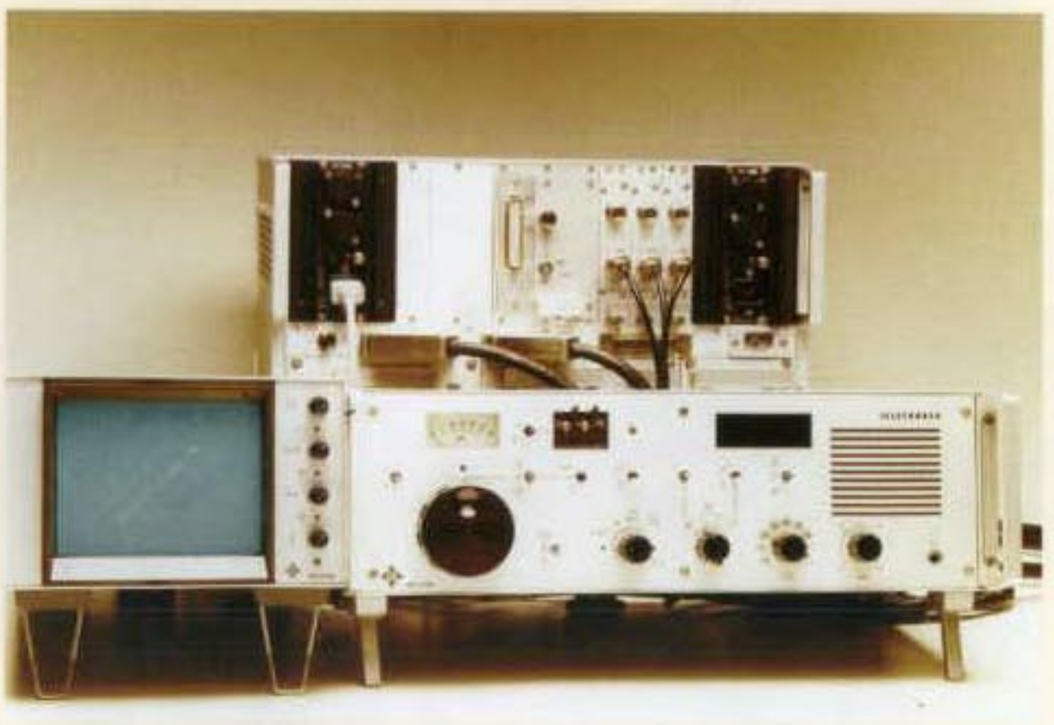

▲ TELEGON-7 장비

폭설에 휩싸인 대관령 사이트의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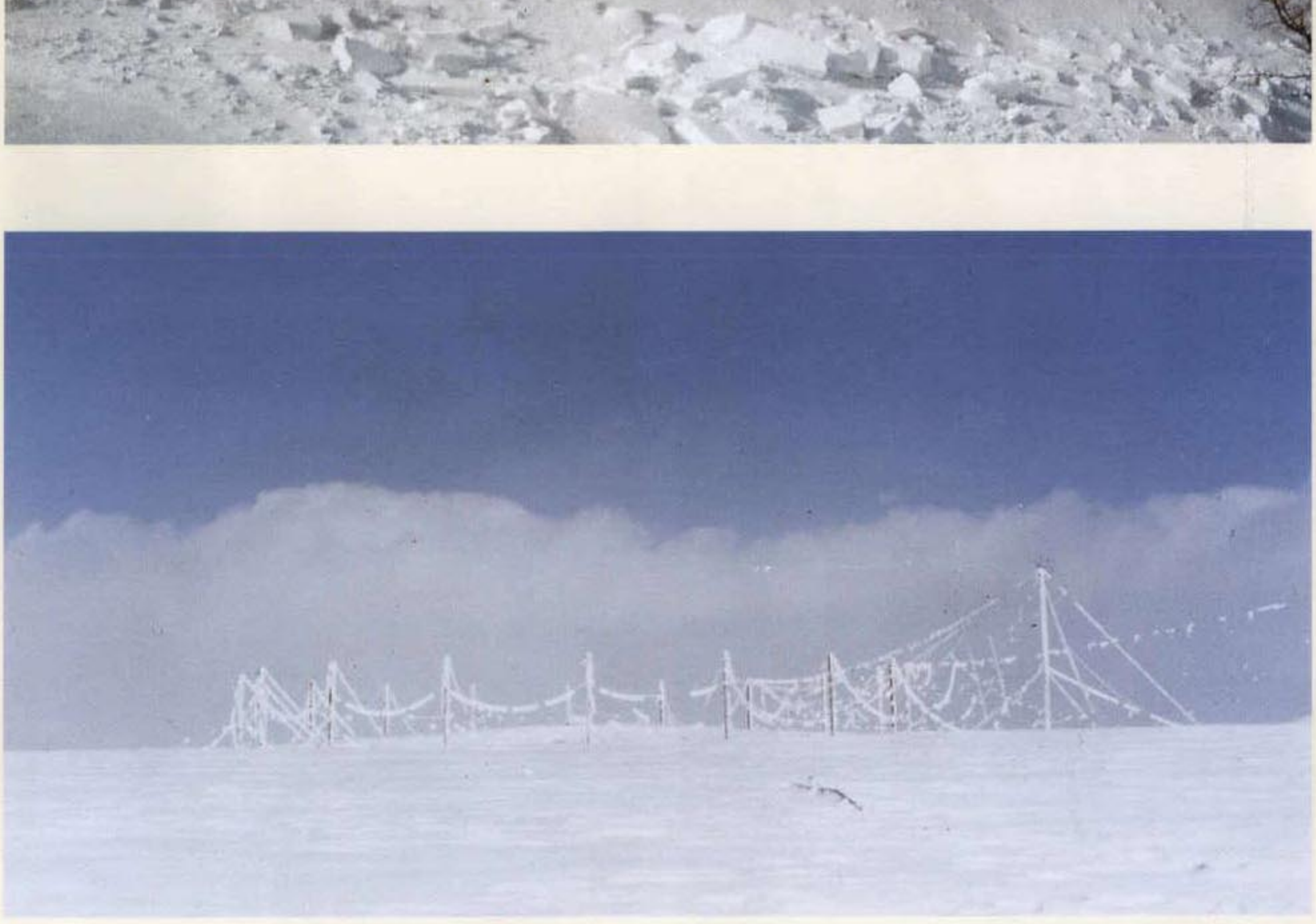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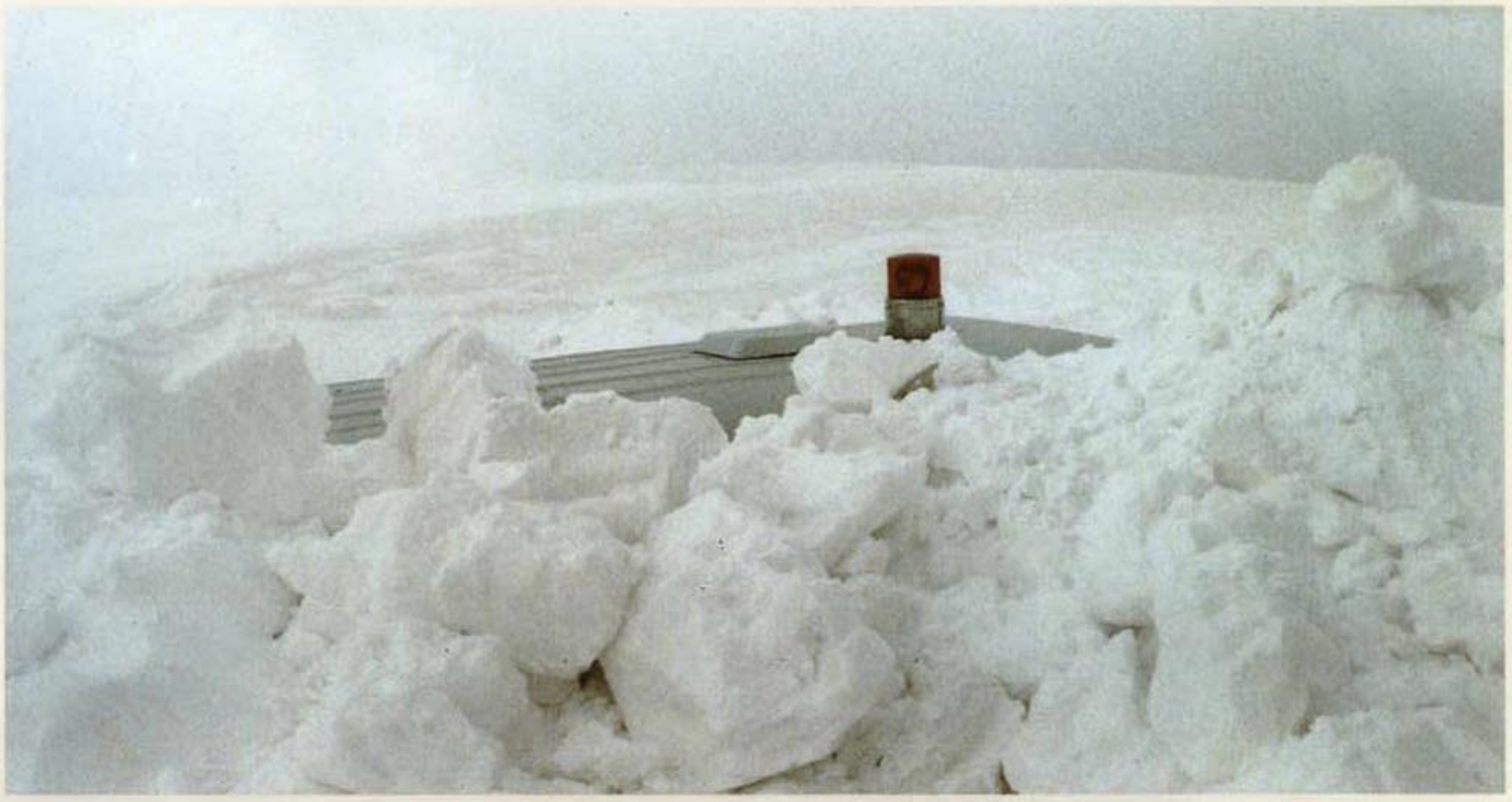









▲ LP-402 안테나 바륨 교체작업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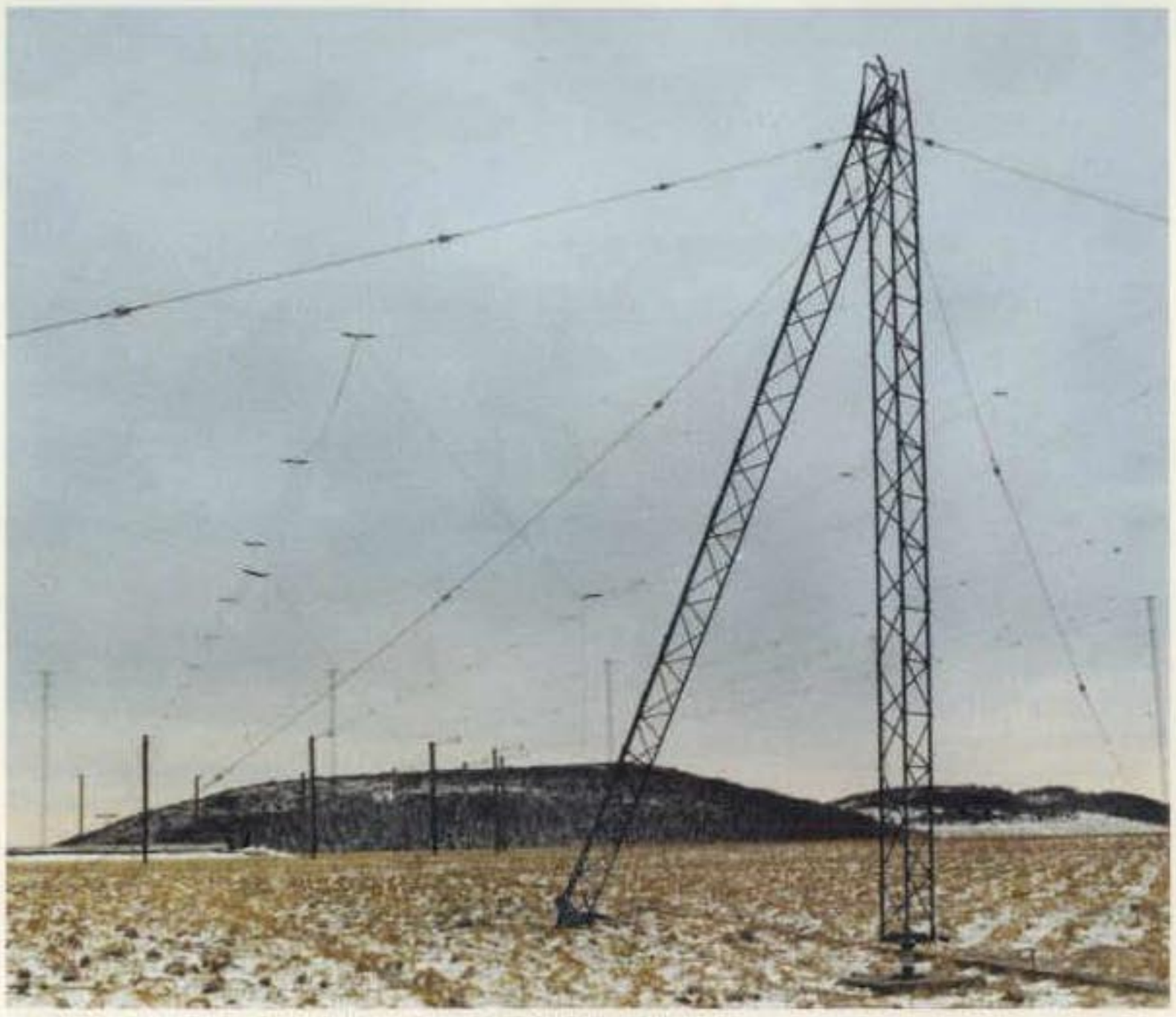

▲ 강풍으로 쓰러진 대관령 사이트 LP-402 안테나 철탑 모습



▲ 강풍으로 쓰러진 철탑모습



第 3 章

跳躍期 電波管理

제 1 절 중앙전파관리소 발족과 중앙전파관리소 개칭

제 2 절 전파감시기구 확장

제 3 절 국가사업 통신지원 활동

제 4 절 해상이동감시 및 전파주권 회복

제 5 절 전파감시시설의 현대화

제 6 절 국민편익 위주의 전파행정구현

제 7 절 2000년대 전파감시 인프라 구축



第 3 章　跳躍期 電波管理

(1984~1999)

제 1 절　중앙전파감시소 발족과 중앙전파관리소 개칭

1982년 초에 공중전기통신사업을 전담할 한국전기통신공사를 발족시키고 외국이었던 전파관리국을 내국화 하고 83년 7월부터 체신예금 · 보험 업무를 새로이 시행함에 따라 체신부는 우편사업과 체신금융사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전파관리업무와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책임부처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 중앙전파감시소 초대 박성득 소장 임명장 수여 장면

전신전화업무의 공사 분리 이후의 지방 체신청은 그 기능과 기구가 대폭 축소되어 과간 기능의 편중과 불균형이 있었는데 체신예금 · 보험 업무 등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서 그 정도는 더욱 심화되자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 개선하는 한편 서울 · 부산 · 광주 · 강릉의 4개 전파감리국에서 수행하던 방송국을 포함한 무선국의 허가 · 검사 · 운용감독 등 전파관리행정 업무를 7개 지방체신청으로 흡수하여 전파민원창구를 확대하여 체신청 성격에 일대 전환을 가져 왔다.

당시의 전파감시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정보화사회의 진전으로 더욱 확대 ·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전파수요와 국가 안보를 위한 전파수요의 통제라는 모순된 문제를 균형 있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정책과제를 안고 있었다.

전파이용개방정책을 표방하고 있던 정부는 전파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감시업무의 조정, 통제기능을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일반감시와 특별감시업무로 이원화된 감시체제를 통 · 폐합하여 1983년 12월 30일에 중앙전파감

시소를 발족시켰고, 초대 소장에는 박성득(3급)이 취임하였다.

중앙전파감시소의 조직은 소장을 3급으로 하고 하부조직으로 관리과 · 감시1과 · 감시2과 및 6개 분소를 두었다.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 감시1 · 2과장은 서기관 또는 통신기정, 분소장은 행정사무관, 통신기좌 또는 전무기좌로 보하도록 하고 필요한 계를 두어 소관업무를 분담토록 하였다.(대통령령 제11302호, 1983. 12.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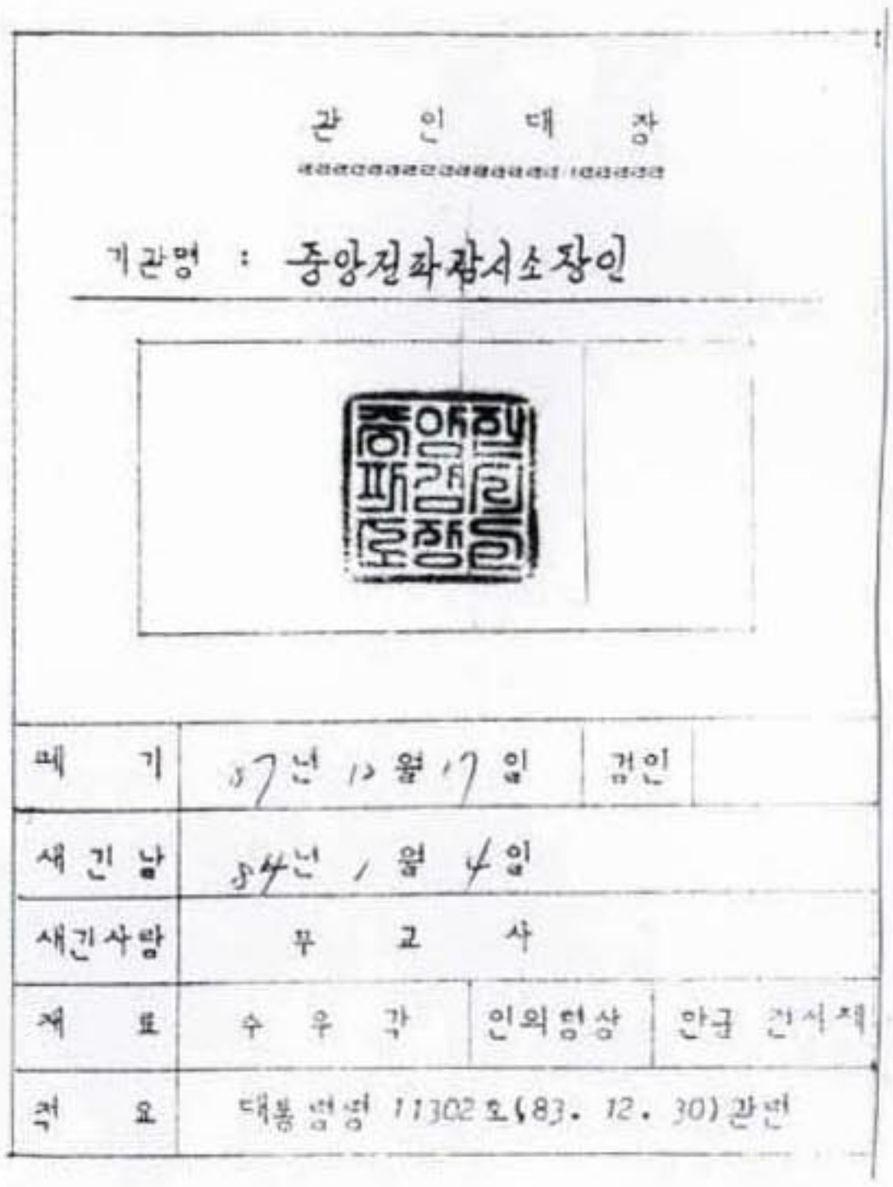

관 인 대 장

기관명 : 중앙전파감시소장인

폐 기	87년 12월 17일	검인	
새긴날	84년 1월 4일		
새긴사람	부 교 사		
재 료	수 우 각	인외형상	안금 건식제
적 요	대통령령 11302호(83. 12. 30)관련		

▲ 중앙전파감시소 관인

중앙전파감시소의 명칭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부감을 갖게 한다는 여론에 따라 1987년 12월 15일 대통령령 제12315호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로 개칭하였다.

제 2 절 전파감시기구 확장

1983년 12월 30일(대통령령 제11302호) 각 체신청 산하의 전파감리국 및 전파통제국을 통 · 폐합하여 본소 및 6개 분소 10개 분실체계의 중앙전파감시소가 발족되었다.

□ 중앙전파감시소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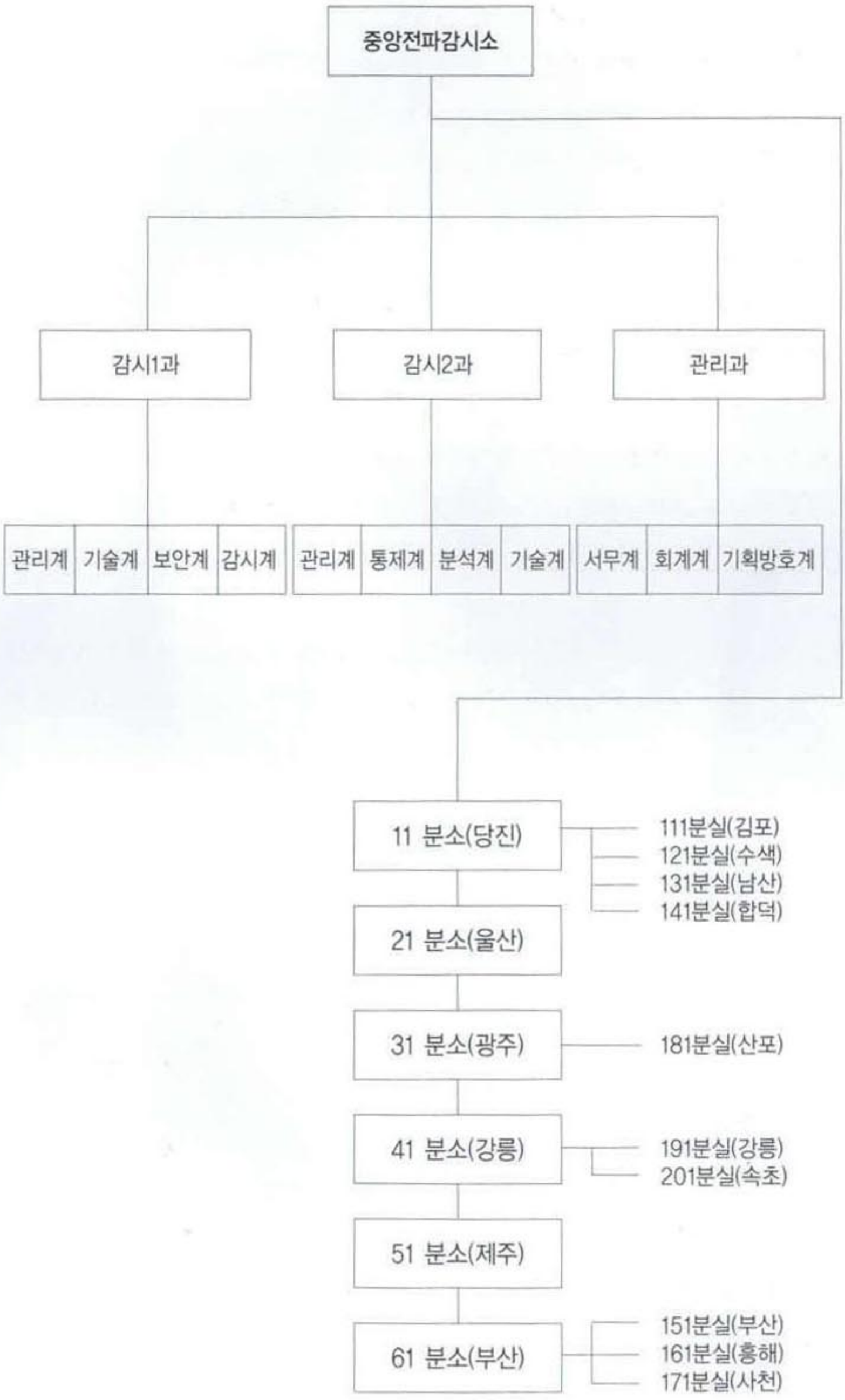
중앙전파감시소
감시1과
감시2과
관리과
관리계
기술계
보안계
감시계
관리계
통제계
분석계
기술계
서무계
회계계
기획방호계
11 분소(당진)
111분실(김포)
121분실(수색)
131분실(남산)
141분실(합덕)
21 분소(울산)
31 분소(광주)
181분실(산포)
41 분소(강릉)
191분실(강릉)
201분실(속초)
51 분소(제주)
61 분소(부산)
151분실(부산)
161분실(흥해)
171분실(사천)

1985년 1월 211(대전), 221(대구)분실 및 광주, 전주, 원주주재실이 설치되었고, 동년 12월에 원주분실에서 춘천지역의 전파를 감시할 최초의 원격제어무인감시시설이 춘천전신전화국에 설치 운용되었다.

1986년 1월 제주분소 감시계를 폐지하고 231(제주)분실이 설치되어 한림읍에서 오라동으로 이전하면서 통제계가 신설되었고, 전주 및 원주주재실이 241(전주), 251(원주)분실로 승격되었다. 12월에는 부산분실에서 울산지역과 마산·창원지역의 무선국을 감시할 원격제어무인감시시설이 21(서생)분소와 불모산에 설치되었다.

수도권 지역의 무선국 급증과 중앙전파감시소의 업무폭주로 인한 전파감시기구 보강방침에 따라 수도권 지역을 전담할 서울분소를 88서울올림픽 개최이전에 개소하기로 하고 수도권 지역을 전담할 전파감시 현업 관서인 서울분소 신설을 추진하여 대통령령 제12017호에 의거 1987년 2월 12일 분소명 제71분소로 개소하게 되었다



▲ 중앙전파감시소 71분소(서울) 개소식에 참석한 오 명 차관(1987년 2월 17일)

전파감시 기구 보강 방침에 따라 신설된 서울 분소는 인천, 경기지역의 무선통신 및 방송망과 전국의 단파통신망을 관할하며, 전파이용자를 위하여 중앙전파감시소에서 수행하던 무선업무일지초록 접수, 불법무선국 자진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의 신속처리로 수도권 주민에 대한 봉사와 88서울올림픽 통신지원사업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

개소 당시 청사확보가 어려워 중앙전파감시소(당시 감시계)에서 임시로 운영하다가 서울체신청 직영우체국인 용산우체국에 청사를 확보하고, 최초의 수도권 분소로서 감시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중앙전파감시소에서는 일반감시분야의 현업업무를 하부 분소에 완전히 이관하여 전파감시분야의 업무기획과 계획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파관리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부 조직으로 6분소 체제에서 7분소를 거느리는 중앙 조직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더욱 체계적인 전파감시를 수행하는 동시에 88서울올림픽 지원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제71분소 신설과 더불어 중앙전파감시소의 직제도 개편되어 1986년 12월 26일 공포된 체신관서 직제개정령에 의거 감시1과 기술계 및 감시2과 기술계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통합하여 기술과로 승격하는 등 직제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기

술과에 기술1계, 기술2계 및 보수실를 두어 전파감시 기술의 조사 및 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고도의 전문화된 감시 기술에 대비하는 한편 자체 기술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 서울분소 개통식 장면

1987년에는 대통령령 제12017호('87. 12. 26 : 체신관서직제중개정령)에 의하여 감시1, 2과의 기술계를 폐지하고 기술1, 2계 및 보전계의 기술과를 신설하였고, 감시1과의 감시계를 폐지하고 조사계와 전산계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88올림픽의 원활한 지원과 급증하는 수도권 무선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파감시기구 보강방침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전파감시업무를 전담할 서울분소를 1987년 2월 12일 관리, 감시, 조사, 기술, 통신보안계 체제로 개소하였고 21, 31, 41, 51분소의 감시계 폐지와 분석계를 신설, 각 분실의 명칭변경 등의 기구개편이 있었다.

□ 각 분실 명칭변경

11(합덕)분소	31(산포)분소	41(대관령)분소	51(한림)분소	61(부산)분소
141(합덕)	광주주재실	191(강릉)	231(제주)	151(부산)
→111(당진)분실	→311(나주)분실	→411(분실)	→511분실	→611분실
211(대전)	181(산포)	201(속초)		171(사천)
→121(대전)분실	→321(광주)분실	→421분실		→621분실
111(김포)	241(전주)	251(원주)		161(흥해)
→71분소711분실	→331분실	→431분실		→631분실
121(수색)		441(대관령)신설		221(대구)
→71분소721분실				→641분실
131(남산)				
→71분소731분실				

1987년 2월 12일 용산우체국 4층에 제71(서울)분소를 개소하였고, 4월 20일에는 제321(광주)분실이 신안동 북광주전화국 4층에서 임동 북광주우체국 3층으로 이전하였고, 동년 12월 15일에 중앙전파감시소의 명칭이 중앙전파관리소로 변경되었다.

1989년 1월 서울분소가 용산우체국에서 서대문우체국 4층으로 611(부산)분실이 부산시외전화국에서 부산체신보험회관 5층으로, 641(대구)분실이 동대구우체국에서 대구우체국 5층으로 이전하였고, 중앙전파관리소의 신청사를 준공 이전하였으며, 1990년 2월에는 부산분소가 강서구 대저1동 2327-3 현위치에서 청사를 증축하였다.

1991년 1월 1일자로 각 분소 및 분실의 숫자 명칭을 지역명칭으로 변경하였고 동년 1월 16일 수색, 사천, 홍해분실이 폐지되고 광주, 강릉, 당진분소에 조사계가 신설되었다. 대관령 분실은 강릉분소 통제계에 흡수되면서 폐지되었다.

□ 변경된 분소 및 분실명칭

11 당진분소	21 울산분소	31 광주분소	41 강릉분소	51 제주분소	61 부산분소	71 서울분소
111→당진분실		311→나주분실	411→강릉분실	511→제주분실	611→부산분실	711→김포분실
121→대전분실		321→광주분실	421→속초분실		641→대구분실	731→서울분실
		331→전주분실	431→원주분실			

1992년 2, 3월에는 강릉분소가 강릉시 유산동에서 명주군 연곡면 방내리 산106번지로, 제주분소가 한림읍에서 제주시 오라동으로, 광주분소가 나주군 산포면 현 위치에서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고, 3월 19일 사무분장세칙 개정으로 광주, 당진, 제주분실이 감시계로 개편되었다. 동년 12월 2일 대전분소가 신설되면서 당진분소 조사계 및 대전분실이 폐지되었다.

그리고 1993년 7월 김포분실이 인천(부평우체국 3층)으로 이전하여 인천분실로 개칭되었고, 1995년 12월 20일 청주분실(대통령령 제14549호)이, 1996년 2월 22일에는 전주, 대구분소(대통령령 제14927호)가 신설되었다.

1998년 11월 9일 중앙전파관리소 훈령 제16호로 감시 1과에 국제전파감시계획의 수립 · 조정, 외국전파감시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업무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할 국제업무계를, 관리과에 사무감사, 범죄 · 비위사고의 예방 및 조사, 소송 · 신고 및 진정의 조사처리를 위한 감시계를 신설하였다.

□ 중앙전파관리소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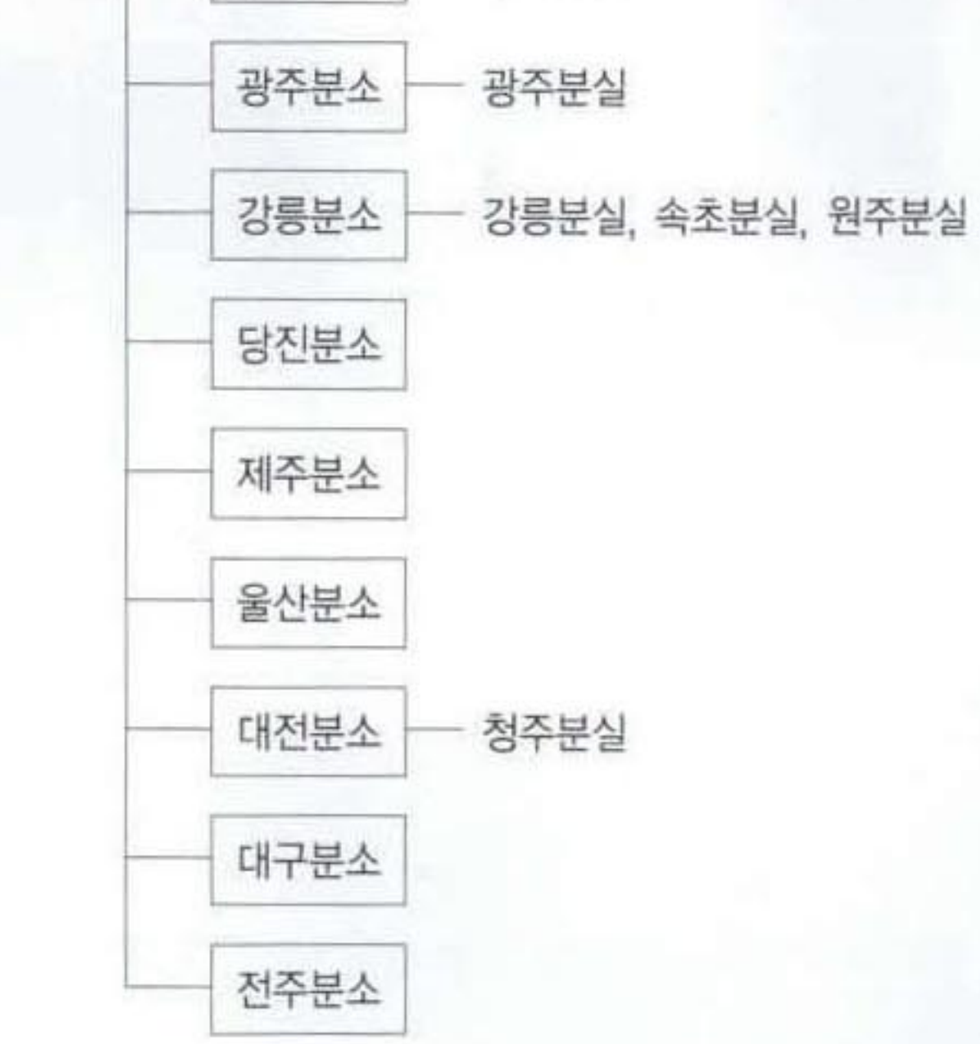



▲ 중앙전파관리소 신청사 준공(1989년 11월 1일)



▲ 부산분소 신청사 준공(1986년 12월 29일)

제 3 절 국가사업 통신지원 활동

1. 86아주 및 88서울올림픽대회

가. 개 요



▲ 88올림픽 통신자원활동을 격려하는 김근수 소장

무선통신은 대규모의 국제행사인 올림픽 대회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통신구간에서 방대한 정보의 전송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타 통신수단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이다.

86아주 및 88대회시에도 마찬가지로 무선통신의 이점을 살려 대회의 준비단계에서부터 대회종료 후 사후처리에 이르기까지 경기진행, 치안 및 경비 등의 신속한 연락유지에 사용한 워키토키를 비롯하여 경기시간을 전자적으로 측정 기록하기 위한 경기기록장비와 공중통신망과 연결되는 이동전화, 무선호출기, 음향효과를 전송하기 위한 Radio Microphone, 영상을 중계하기 위한 M/W 장비, 제작된 TV 프로그램을 세계 각국으로 중계하기 위한 이동위성지구국 등 다양한 장비가 동원되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예외 없이 활발히 운용되었다.



▲ 88올림픽 통신자원 감시차량

무선장비 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장비에 소요되는 주파수를 유효적절하게 공급하는 것이며 또한 이들 통신망 상호간에 혼신없는 원활한 통신소통을 보장하며, 예기치 않은 방해전파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듯 일련의 각종 지원활동을 일사불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체신부에 무선통신지원전담반을 조직하고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에서는 지원 및 활동반을 구성하여 각 분야별로 지원태세를 확립함으로써 지원업

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다.

나. 계 획

86대회시의 성공적인 무선통신 지원결과는 88대회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금석이 되었다. 당시의 무선통신은 시설이나 운영면에서 88대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적기는 하였으나 국제적인 대회규모의 개괄적인 파악과 필요한 분야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상당기간 동안 86대회시 국내외 기관이 운용한 각종 무선통신망과 서비스종류를 검토 분석하였으며 88대회시에는 보다 많은 무선통신장비의 수요가 발생하고 운용되리라는 예측과 함께 막대한 양의 주파수를 공급하는 문제와 수만에 달하는 무선국에 대한 기술 행정상의 지원이 필요하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기관의 수요는 각 시설자 별로 그리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으나 외국기관의 경우에는 거의 예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파악하여 필요로 하는 주파수 등 지원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각국 NOC에 무선통신장비의 수요를 조사하는 설문서를 송부하는 한편 장비운용상 필요 제원인 주파수의 이용 가능한 자원과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주파수대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대회의 성공적 수행과 완벽한 통신보장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기본방침을 정하여 무선통신운용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첫째, 대회진행을 위한 전용무선통신망은 SLOOC에서 구성 운용한다.

둘째, 외국 대표단, 선수단 또는 신문, 통신, 방송사 등이 대회기간 중 사용할 통신망은 원칙적으로 KTA에서 대여하는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토록 한다.

셋째, 국내공급이 불가능하거나 외국으로부터 반입이 불가피한 특수한 장비는 사전에 체신부의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무선국 허가 및 검사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체신청에 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용한다.

다섯째, 대회진행과 관련된 각종 무선통신망의 원활한 소통과 각종 사고예방을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에 전파감시기동반을 편성 운용한다.

여섯째, 대회기간 중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소속의 단체국에 한하여 이동 운용을 허용하고 아마추어무선 면허를 소지한 외국인에게도 운용을 허용한다.

그리고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지원계획을 1987년 7월 13일 수립함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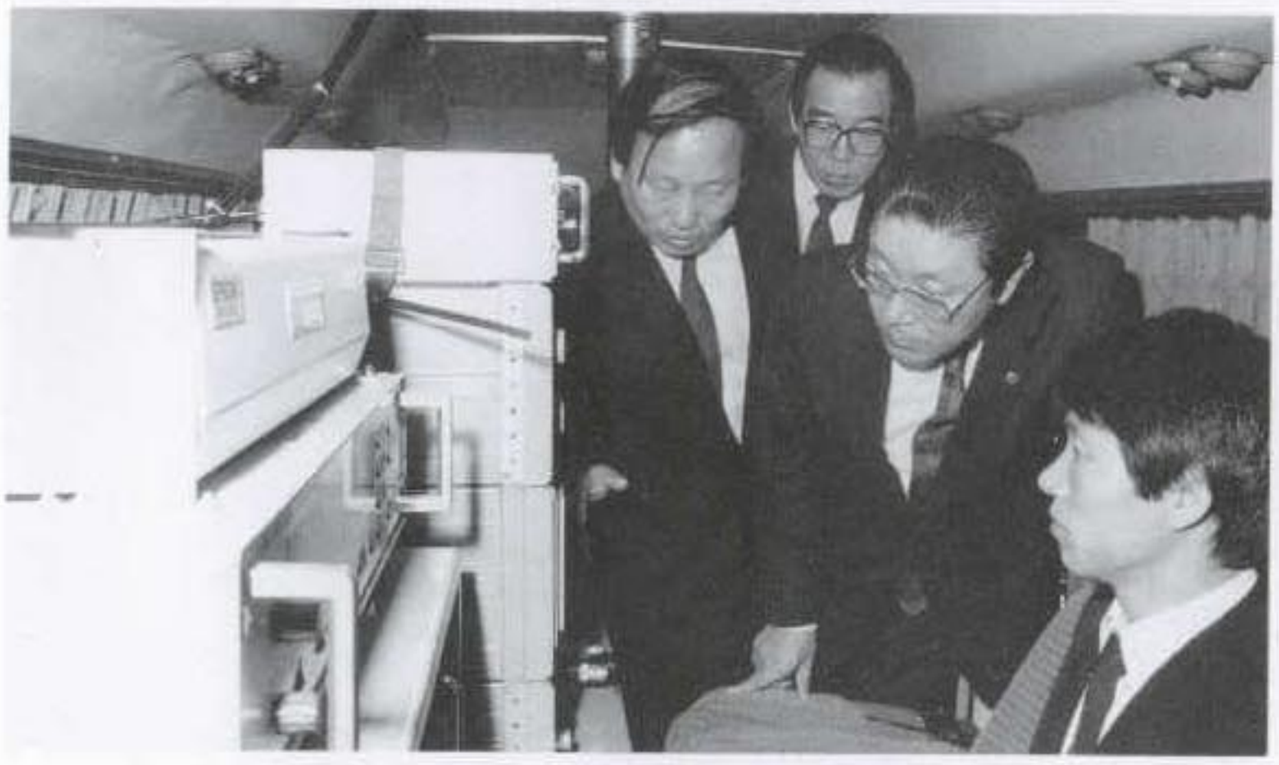

▲ 차량 이동감시중인 직원을 직접 찾아 근무를 격려하시는 최영철 장관

로써 대회 지원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 국내기관 통신망 구성 지원

국내기관 통신망으로는 대회전용 통신망과 대회지원 통신망으로 구분하였는데 대회전용 통신망은 SLOOC에서 주관하여 구성하는 대회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통신망이고 대회지원 통신망은 KTA, 치안본부, 군 등 대회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통신망으로서 이러한 무선통신망의 구성지원은 무선국의 설치에 필요한 주파수 할당과 무선국 허가에 대한 것이었다.

SLOOC에서는 86대회시 사용한 통신망을 88대회에도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운용규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86대회시 사용한 통신망과 연계운용이 가능하도록 동일 주파수대역에서 주파수를 할당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대회의 경호, 경비 및 치안유지를 위하여 평상시 운용하고 있는 통신망에 추가하여 새로이 구성한 군·경 통신망, 올림픽대회 개막 전의 빅 이벤트인 성화봉송 상황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하여 SLOOC과 합동으로 운용한 KTA의 통신망 그리고 방송프로그램이 제작을 위한 SORTO통신망에 대하여도 주파수 할당 및 무선국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통신망의 구성과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무선국의 허가는 지방 경기장 통신망을 포함한 모든 무선국을 서울체신청에 일괄 접수하여 대회 개막예정일 4개월 전까지는 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망의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허가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제품으로 별도의 시공이 필요치 않은 휴대용 육상이동국에 한하여 본 허가만 하고 가허가, 준공검사를 생략토록 하여 최단 시일 내에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그러나 차량용 육상이동국, 고정국, 기지국은 종전과 다름없이 기존의 무선국 허가 처리규정에 의거 처리토록 하였으며, 허가 및 검사에 수반되는 수수료도 매 기기마다 해당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국내기관 통신망은 아래 그림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

□ 국내기관 통신망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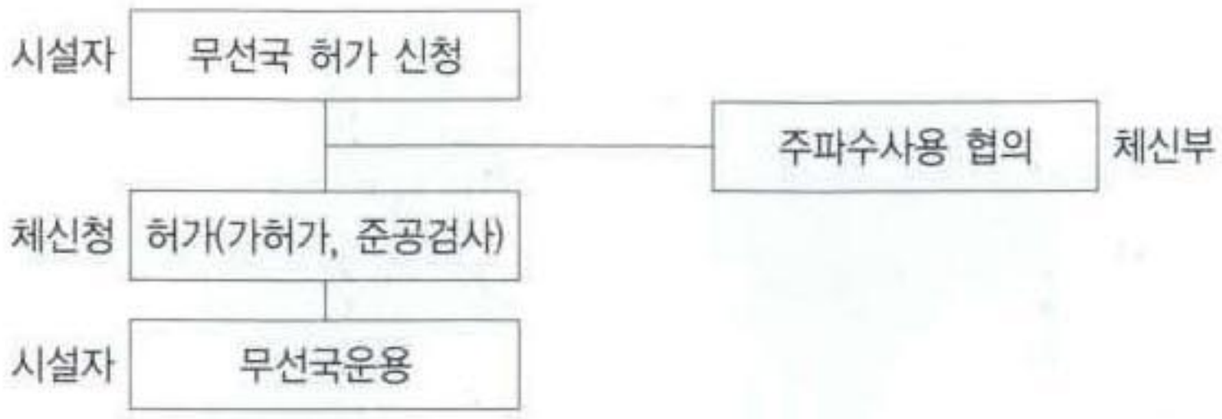

2) 외국기관 통신망 구성 지원

각국 NOC, 신문, 통신, 방송사 등 외국기관의 통신망들은 외국인이 대회기간 중에 KTA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는 대여장비와 자국으로부터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반입장비로 구분되는데 대여장비는 무선호출기, 차량전화, 휴대용전화, 근거리 및 원거리 워키토키, 주파수공용통신(TRS : Trunked Radio System)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장비의 허가 및 대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KTA에서는 SLOOC의 협조를 얻어 대회개막예정일 8개월 전까지 대여장비의 소요량을 파악하여 6개월 전까지 통신망별로 무선국 허가신청서를 서울체신청에 제출토록 하고 이에 대한 주파수 할당 및 무선국의 허가는 SLOOC의 전용통신망 허가방침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대여장비의 대여절차는 사용을 원하는 외국 기관이나 단체가 직접 KTA에 청약신청하고, KTA에서는 공급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청약을 승낙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임대청약도중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수요가 적체되는 경우에는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을 증설하여야 하므로 추가로 소요되는 주파수는 수요판단 즉시 체신부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수요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한편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장비는 국내공급이 불가능하거나 반입운용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므로 무선장비를 반입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입운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 최소한 운용예정일 6개월 전까지는 체신부에서 마련한 서식에



▲ 전파품질 측정 미니락 장비가 탑재된 88올림픽 통신지원 차량

의하여 반입운용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장비반입운용에 대한 홍보는 세계 각국과 연락설정이 용이한 SLOOC에서 각국 NOC를 통하여 실시토록 하였으며 반입운용신청서를 접수한 체신부는 국내 대여가능 여부, 주파수 할당 및 타 통신에의 혼신가능 여부를 검토 후 최소한 반입운용 예정일 4개월 전까지 반입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반입운용 희망기관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 반입운용신청서

APPLICATION FOR IMPORT & OPERTATION OF RADIO EQUIPMENT

From :　　Date :

To　: Director General, Regulation Bureau,
Ministry of Communications
Republic of Korea

1. Operating Agency
2. Operationg Purpose
3. Operationg Period
4. Desired Date ofr inspection
5. Characteristics of Radio Equipment

Type of Equipment	Name of Manufacturer	Perpose of Use	Quantity	Frequency		Type of Emission & Bandwidth	Output Power
				Transmitting	Receiving		

그러나 반입할 장비는 비록 승인을 받았더라도 운용예정일 1개월 전까지 기기형식, 발사주파수, 주파수대역, 스프리어스 발사강도, 공중선전력 등에 대하여 성능점검을 받아 이에 합격한 기기에 한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 통신에 혼신이 발생하여 전파발사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고, 반입운용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치 아니하며 국내의 전파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아야 하고 그 밖에 우리 정부의 점검이나 조사 요청 시에는 즉각 응하는 조건으로 운용하게 하였다.

□ 외국기관 통신망의 허가 및 대여 절차

◇ 허가절차



◇ 대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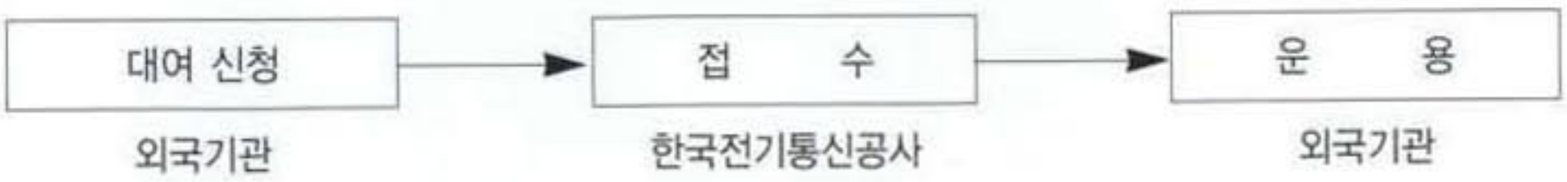

외국기관의 장비반입과 관련한 제반 수수료는 국제행사에 사용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국내 기관통신망과는 달리 전액 면제토록 하였으며, 외국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각종 올림픽 관련물자의 국내 반입시 세관통관업무처리가 용이하도록 반입운용기관, 반입장비명, 수량 등 체신부 승인사항을 관세청에 미리 통보하기로 하였다. 외국 기관에서 반입하고자 하는 장비의 지원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 외국기관 반입장비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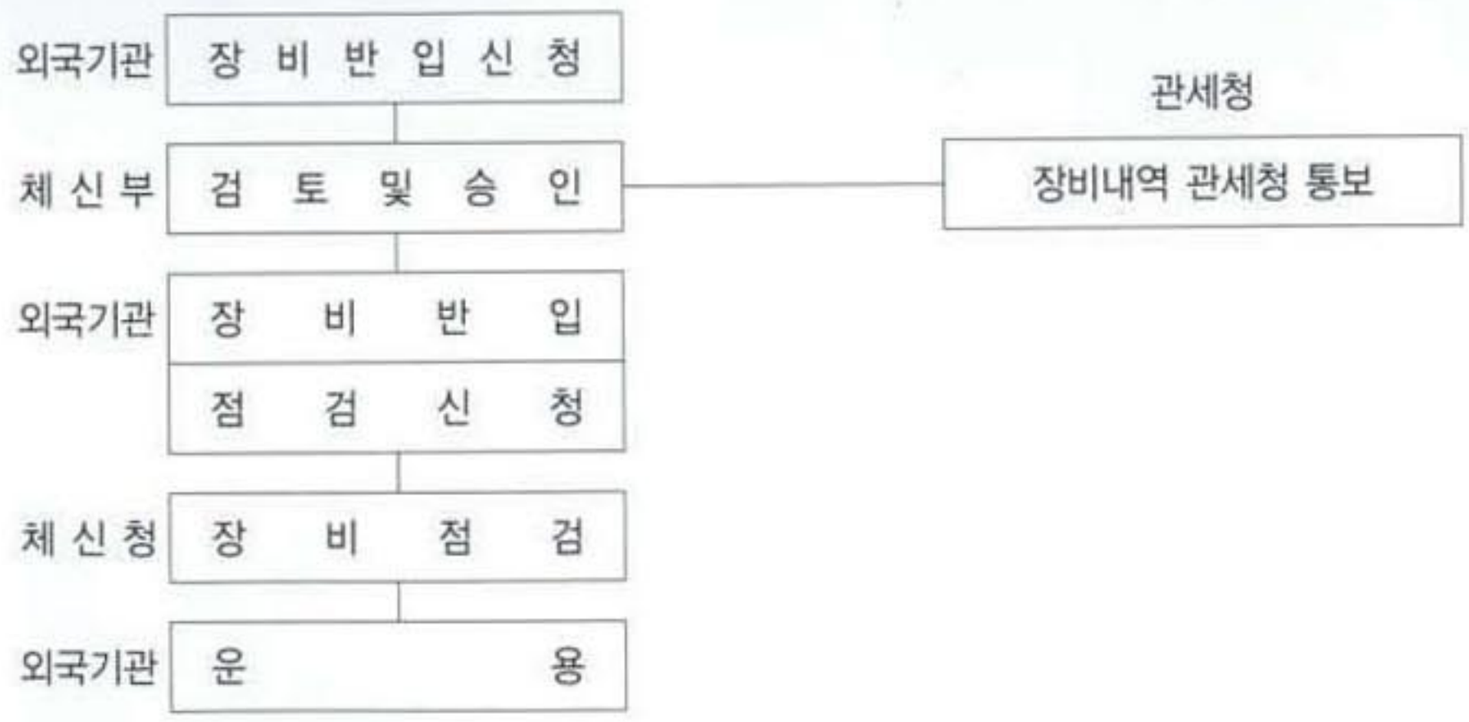

3) 무선통신망 보호활동

무선통신망의 보호활동은 통신망 상호간에 야기될 수 있는 혼신과 예기치 않은 전파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기존 전파감시 체제하에 업무를 수행하되 대회관련 무선통신망의 혼신제거 및 불법 · 방해전파의 색출제거를 위하여 고정감시조와 기동활동조를 편성 운용하고 지휘통제를 위한 지휘소를 설치토록 하였다. 그리고 무선통신시설 예방점검 및 운용자에 대한 통신보안



▲ 88대회 무선통신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불법·방해전파를 탐색하는 기동활동조와 탐사차량의 모습

교육을 실시하여 위해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였다.

먼저 국내기관 통신망에 대해서는 담당좌석별로 감시대상 무선국에 대한 제원을 미리 작성하여 비치토록 하고 담당별로 감시대상 무선국의 통신내용을 집중 감청하여 전파법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특히 불법전파가 출현하는 경우에는 즉시 전파도래방향을 탐지함으로써 전파의 발사지점을 측정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무허가무선국으로 판명될 때에는 조사차량을 출동시켜 색출토록 한 후 무선장비를 봉인하는 한편 의법처리하여 불법으로 전파가 발사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무선국 운용시의 제반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문제가 야기될 만한 경우에는 무선종사자의 활동정지 또는 무선국의 운용정지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외국기관 통신망에 대해서는 국내무선국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시하되 불법전파탐사 장비를 탑재한 기동활동조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에 정박하는 외국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불법사용하는 무선시설을 검사하여 국적, 송신소 위치 등의 제원을 파악하고 문제발생 시에는 감청결과에 따라 SLOOC을 통하여 해당국가의 NOC에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전파감시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것 외에도 전화나 문서 등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조사하여 제거하도록 하였다. 혼신의 신고는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의하여 접수 처리하되 대회관련 통신망을 우선적으로 조사 제거토록 하였다. 혼신전파를 발사하는 무선국이 규명되면 이 무선국의 시설자로 하여금 혼신원인을 제거토록 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 혼신 제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계획의 추진 일정

이상과 같이 국내외기관의 통신망 구성지원, 무선통신망 보호활동의 전개, 아마추어무선 자원봉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일정계획을 세워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 세부 추진사항

세부추진사항	추진일정							추진 주관처
	1987년			1988년				
	2/4	3/4	4/4	1/4	2/4	3/4	4/4	
○무선통신운영 지원 방침 확정	7월							체신부
○국내기관 통신망								
- 무선국 허가신청				3월				운용처
- 무선국 허가처리 및 운용					6월~10월			서울체신청, 체신부, 운용처
○외국기관 통신망								
- 대여장비								
· 이용제도 홍보 및 수요조사						10월		SLOOC, KTA
· 무선국 허가신청 및 처리						10월		KTA, 서울체신청, 체신부
- 무선기기 대여 및 운용		11월						KTA, 대여사용처
- 외국기관 반입장비								SLOOC
· 정부방침의 대외홍보					6월~8월			
· 반입운용 승인				3월				반입운용처, 체신청
· 무선설비 반입 및 점검설시						8월		반입운용처, 체신청
· 반입운용장비 반출							10월	반입운용처
○아마추어무선 자원봉사활동								
- 교신허용범위 확대협의		9월						체신부, 아무추어무선연맹
- 자원봉사자 선발 및 교육				2월				〃
- 무선국 운용						7월		〃
○무선통신망보호 및 안전활동								
- 지휘통제소 설치 운영							10월	중앙전파관리소
- 기동활동반 편성운용 (혼신예방 제거)		9월						〃
- 혼신발생예상국사전 점검 및 검사				12월~8월				중앙전파관리소, 체신청
- 관계기관 합동 점검							10월	체신부, 대회관련기관, SLOOC

가. 준 비

1) 지원 조직 및 인력

무선통신운영의 지원을 기능별로 담당하기 위해서 체신부(본부), 체신청, 중앙전파관리소 등에 분야별 전담조직이 구성되었다.

전파관리국 주파수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신부 본부조직은 86대회 지원조직을 그대로 연계하여 운용해 오다가 대회가 다가오면서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 처음 6명을 9명으로 증원하여 1987년 4월 새로이 개편 보강하였다.

체신부(본부)는 총괄조, 허가조, 방송조, 검사조, 안전조로 구분하고 총괄조에서는 지원업무의 총괄과 각종 통신망의 주파수 할당에 관한 업무처리를 허가조에서는 대회관련 무선국의 허가업무지침을 시달 및 감독하였으며, 방송조에서는 방송중계통신망의 설치운용 지원을 검사조에서는 대회관련 무선국의 검사 및 외국인 반입장비에 대한 점검을 담당하고, 안전조에서는 무선통신망 보호활동 및 각종 안전업무의 지도감독을 수행하게 하였다. 각 조의 인원구성으로 허가조, 방송조는 각1명, 총괄조, 안전조, 검사조는 각 2명으로 편성하였다.

□ 무선통신지원 전담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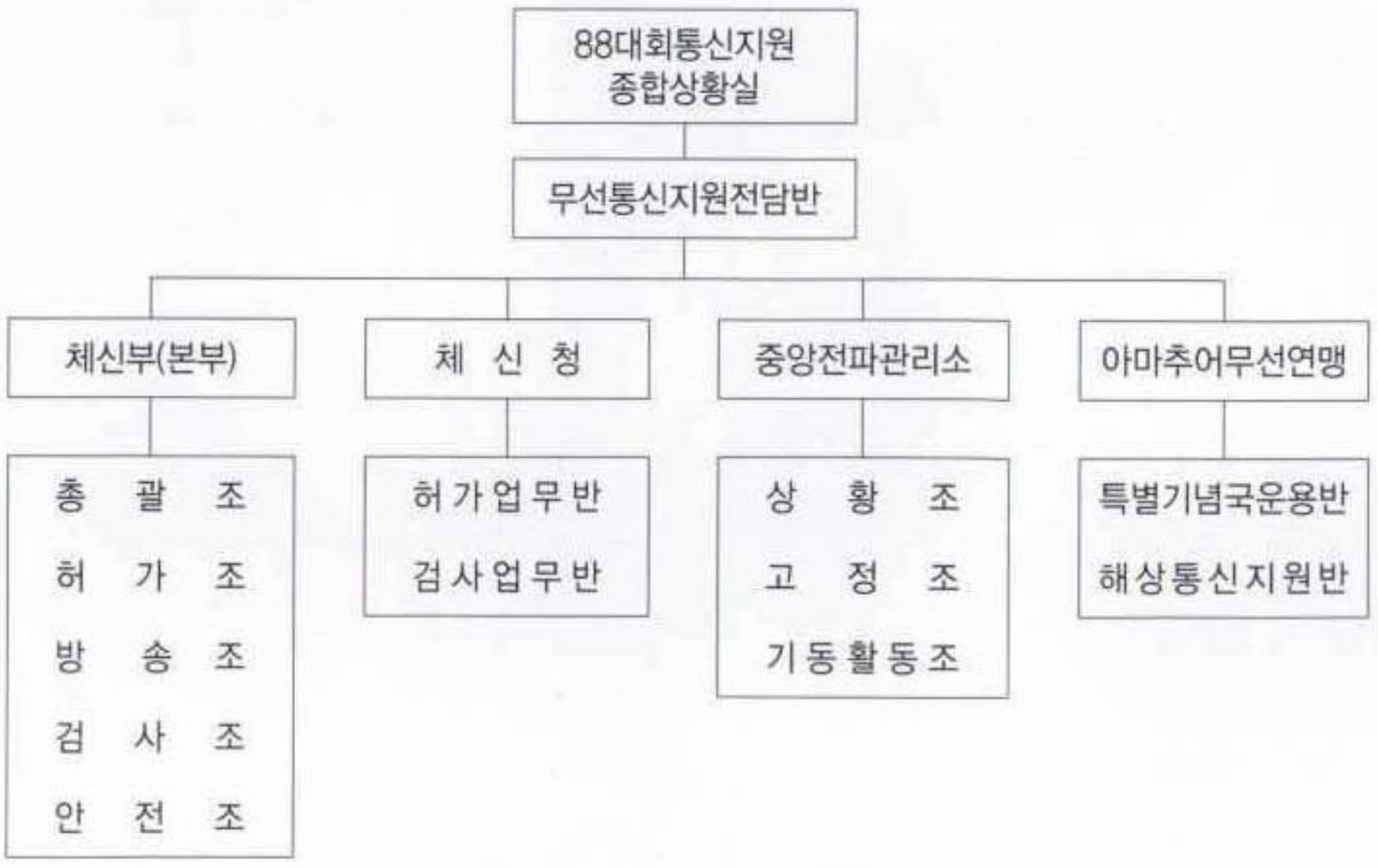

대회가 개최되는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지역의 관할 체신청에도 허가업무 지원반과 검사업무지원반 등 18명의 요원으로 청별 지원전담반을 구성하여 대회와 관련된 국내기관 통신망의 허가와 검사 및 외국기관의 반입장비 점검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감시 1과장을 지휘통제소장으로 하는 744명의 중앙전파관리소 지원조직은 상황접수 하달을 담당하는 상황실, 각종 무선국의 전파질서 위반여부를 감시하는 고정감시조, 방해 전파 및 혼신발사원을 추적 제거하기 위한 기동활동조로 편성하여 대회관련 무선통신망의 보호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기동활동조는 경기장 주변을 상주하면서 상황발생 즉시 신속히 대처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혼신조사 제거능력이 우수한 인원을 엄격히 선발하여 정예요원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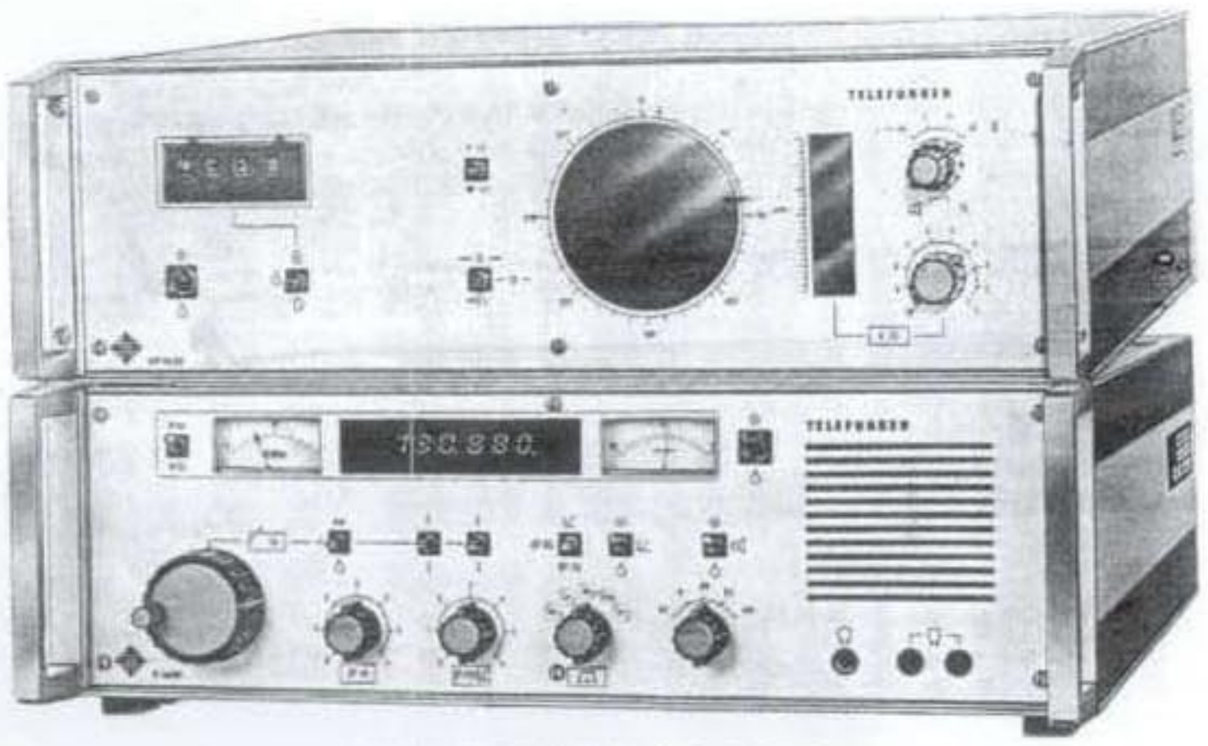

▲ 방해전파 및 혼신발사원을 추적하는Telegon-7 방탐장비

한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서도 면허의 종류, 운용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울과 부산에서 특별기념국을 운용할 요원 77명과 부산요트경기장에서의 해상 통신지원요원 70명을 선발하여 활동조직을 구성하였다.

2) 올림픽 무선통신 지원활동

대회시 운용되는 각종의 무선통신망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의 하나가 통신망 상호간에 야기되는 혼신과 불법방해전파에 의한 전파교란행위로 말미암아 소기의 운용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에 신속히 대처하고 완벽한 통신소통의 보장을 목표로 하여 세부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다.

1988년 7월 28일에는 기동활동조의 전파탐색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이동방탐기 1대를 새로 도입했으며, 본소 및 분실에 V/UHF대를 감시하기 위한 신종 감시장비 3대를 보강하였다. 또한 대회에 관련된 무선국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불법방해전파의 출현을 감시하기 위하여 1988년 8월 10일 수도권에 방탐시설을 설치하고 9월 1일부터 가동하도록 하였다.

한편 무선통신망 보호활동을 보다 더 치밀하게 추진해나가기 위하여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은 기동활동조간의 상호 협조체제 강화와 상황발생

시의 처리요령 등으로 이동방탐기를 비롯한 감시장비를 총동원하였으며, 현장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개최지역에서 실시하였다.

특히 88대회 전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수영 및 다이빙대회와 을지연습, 올림픽경기 예행연습 시에도 실시함으로써 훈련의 생동감을 부여하였다. 이밖에 무선국 운용요원의 통신보안교육과 무선국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점검해보는 기회도 가졌다.

무선통신의 이용은 전송되는 가운데 비밀사항이 누설되어 대회진행에 차질을 야기하거나 저명인사의 동향이 알려져 테러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신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988년 8월부터 SLOOC의 통신요원과 아마추어무선 자원봉사자 등 521명을 대상으로 전기통신망의 통신보안 취약성 및 필요성과 방법, 통신보안 준수사항 및 운용시 유의사항, 아마추어무선국의 미 수교 공산국가와의 교신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통신보안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경기장, 선수촌, 공항주변 및 마라톤, 성화봉송로 구간에서 혼신발생이 예상되는 콜택시통신망, 고주파이용설비, 과거에 다발적으로 혼신을 야기한 통신망, 군통신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점검을 하여 적합한 기술제원으로 운용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조치하였다.

□ 올림픽관련 통신망 예방점검 현황

구 분	점검실적	조 치		
		현지교정	보완지시	계
콜택시	613	52	28	80
고주파이용 설비	178		89	89
과거 혼신발생국	34			
주요 통신밀집지역	503	33		33
기 타(성화봉송로 · 경기장 주변)	5			
계	1,333	85	117	202

또한 SLOOC의 전용통신망과 치안본부의 통신망이 가장 방대한 만큼 SLOOC, 체신부, 국방부, 치안본부, 안전통제본부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혼신원에 대한 봉쇄조치를 취하였다. 점검은 1988년 8월 대상 무선국 23,336국이 동시에 전파를 발사하도록 하여 실시하였다.

무선통신망의 보호는 1988년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대회 전후 1개월간을 본격적인 활동기간으로 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정기적인 상황보고체제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주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한 지휘체제는 다음과 같다.

□ 88통신지원상황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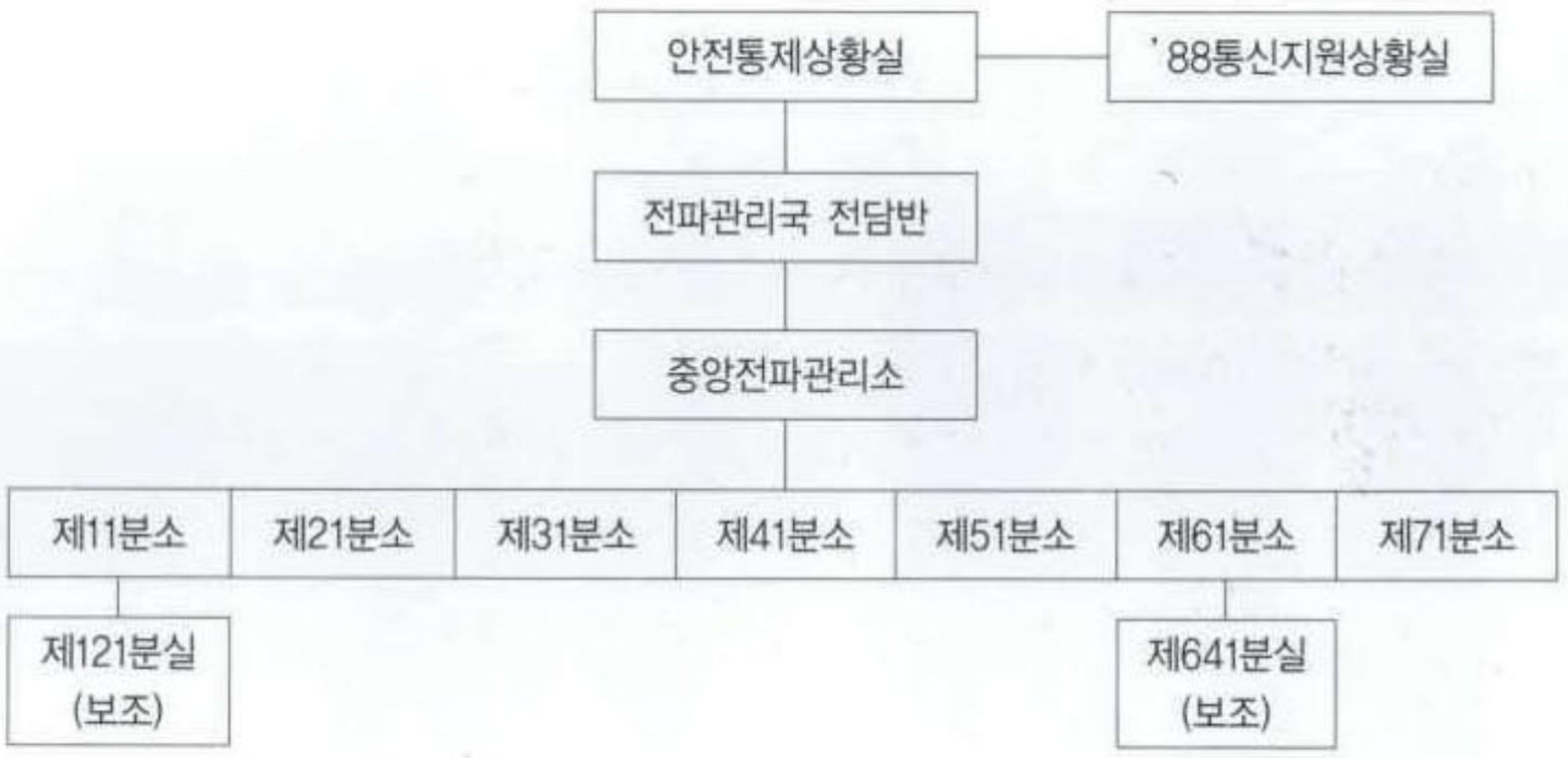

또한 모든 대회관련 무선국에 혼신을 발생시키는 무선국을 신속히 포착하여 처리하고 방해전파 및 불온전파 출현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동활동조 8개조 48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감청 및 탐색활동을 전개하였다. 기동활동조의 배치는 수도권에 3개조, 부산에 2개조, 대전, 광주, 대구에 각 1개조씩으로 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지휘 통제하에 임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기동활동조를 통한 현장보호활동과 병행하여 기존의 감시국소를 중심으로 위해 요인 수집 및 처리를 위하여 운영된 고정감시조는 올림픽기간 동안 56,824개 무선국 125,747건의 운용상황을 감시한 결과 0.63%의 위규가 발생되었다. 이 중 VIP의 이동상황을 누설하는



▲ 이동 전파감시활동 차량을 방문하여 격려하는 최영철 장관

등 보안위규가 75%이었는데 이를 적시에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누설된 정보의 가치가 소용없게 되도록 하였다.

주요 혼신 조사실적으로는 2개의 주파수가 상호 변조되어 발생되는 SLOOC 남산기지국의 혼신의 원인을 무리 없이 규명하고, 경호통신망의 혼신은 혼신파를 수원까지 추적하여 제거하는 MD 혼신원을 신속히 조사 처리하여 대회관련 통신망의 소통을 원활히 하였으며, 특히 1988년 9월 18일에 발생된 치안본부 특수경비대의 혼신은 인터콘티넨탈호텔의 29층 2900호 실에 투숙한 미국 CBS방송사의 취재팀이 불법으로 사용한 방송중계장비였는데, 대형빌딩내의 많은 객실을 누벼가며 언어소통을 무릅쓰고 혼신원을 규명함으로써 요인경호업무 및 테러작전수행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였다.



▲ 88올림픽 통신지원 참여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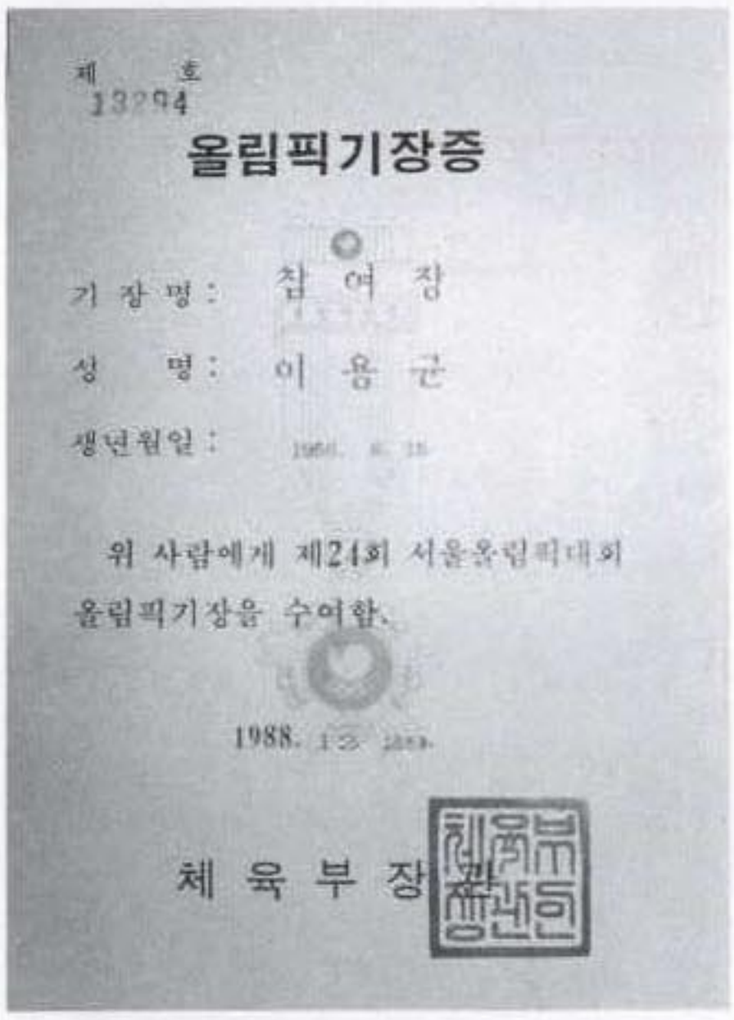

▲ 88올림픽 참여 기장증

특히 대회관련 통신의 완벽한 보호를 위하여 전국 22개 고정감시좌석에 대회관련 무선국 전담감시임무를 부여하여 혼신 등 무선통신의 소통장애요인 발생여부를 감시함은 물론 대회운영요원들의 대회관련 비밀의 누설 등 무선통신을 통한 위해 요인 발생여부를 감시, 수집하였다. 감시결과 수집된 대회 위해 요인에 대해서는 정보의 수집 즉시 상황실을 통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신속히 대책을 강구하였다.

□ 대회관련 무선통신망 전파감시

통신망별		경기진행	경호 · 경비	국가주요통신	기타 통신망	계
무 선 국 수		1,667	14,502	836	39,819	56,824
감 시 건 수		12,564	29,157	2,356	18,670	62,747
위규	통신보안	3	3			6
	일반운용			2	2	4
	계	3	3	2	2	10

□ 대회관련 무선국 혼신 및 방해전파 조사 · 제거

통신망별		경기진행	경호 · 경비	국가주요 통신	기타 통신망	계
발 생 건 수		4	5	6		15
위규	조사제거	3	3	1		7
	자연해소	1	2	5		8
	계	4	5	6		15

3. 세계잼버리대회

1991년 8월 8일부터 8월 16일까지 9일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일원에서 외국참가자 132개국 11,262명, 국내참가자 7,819명 등 총 133개국에서 19,081명이 참석하여 「세계는 하나」 슬로건 하에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가 개최되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총 52개 종목에 지원될 무선통신 보호활동을 위하여 전파감시용 차량 및 인원을 지원하고 무선통신망의 원활한 소통과 불요전파유입 등 혼신 발생시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무선통신망 보호활동을 실시하였다.

투입장비로는 중앙전파관리소 강릉분소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전파감시용 차량 2대(이동방향탐지 및 일반감시용)와 기동조 2개팀 6명이 파견되어 대회조직운영 위원회가 운용하는 무



▲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중 원활한 통신지원활동을 수행하여 세계잼버리대회 조직위원장인 쌍용그룹 김석원 회장으로부터 무궁화 동장을 수상받고 있는 통신지원활동 유공자(정보통신부 강덕근 과장)

선통신망보호와 전파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고, 인접대역 무선국에 대한 전파품질 감시를 강화하여 대회장 주변의 전파환경을 개선하였다. 그 결과 대회 기간 중 불법무선국 2국을 적발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즉시 철거조치를 취하는 등 통신소통에 원활을 기하였고, 대회기간 중에도 무선통신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세계잼버리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무선통신지원활동 분야에서 유공자를 선발 표창하였다.

4. 동계아시아대회

가. 지원활동 목적 및 개요

제4회 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무선통신망과 방송중계 통신망을 대상으로 대회기간 중 맑고 깨끗한 전파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원활한 통신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전파감시활동을 수행하였다.

○ 기　간 : 1999. 1. 31 ~ 2. 5(6일)

○ 활동지역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일원

○ 활동인원 : 2개조 9명

– 이동감시조 : 6명

– 이동방탐조 : 3명

○ 활동방법

– 이동감시조 : 비번자 조별(A, B) 출장

– 이동방탐조 : 일근자 출장

– 일일출장 : 09:00 ~ 17:00 귀청 후 일일결과 보고

○ 활동장비

– 차 량 : 2대

– 이동감시조 : 강원 7다 6464호(종합감시장비 탑재차량)

– 이동방탐조 : 강원 80다 5030호(TELEGON-10 탑재차량)

○ 부대장비

[감 시 계]

– 이동용종합감시장비 (MINILOCK-6910) 1식

- 전파감시장비 (CMN-90) 1식
- 광대역 수신기 (ALINCO) 1대
- 휴대용 송수신기 (TH-79A) 1대
- 기타 관련장비

[조 사 계]

- 전계강도측정기 (ESN) 1식
- 휴대용방탐기 (EB-100) 1대
- 휴대용송수신기 (TH-78A) 2대
- 광대역수신기 (MVT-7100) 1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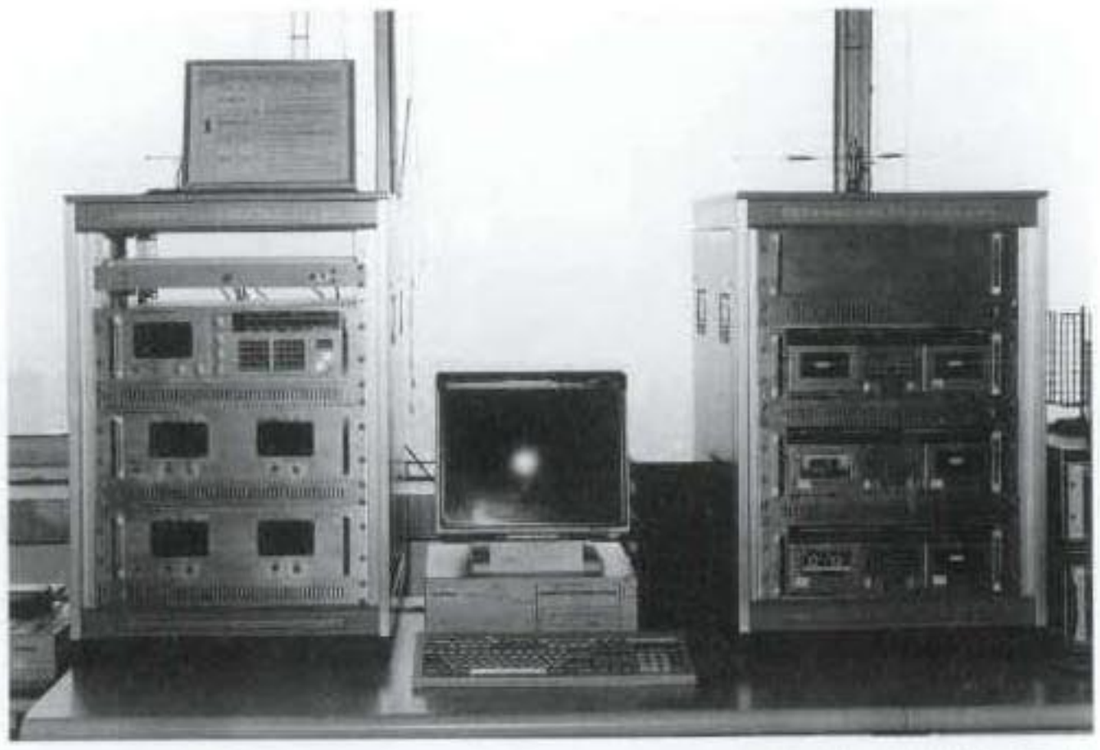

▲ CMN-90 전파감시장비

나. 수행내용

○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운용하는 무선통신망 보호

- 대회 운영주파수 참조화일을 생성하여 채널스캔 전파탐사
- 인접주파수의 혼신유입여부 확인
- 방송중계망보호(KBS, MBC, SBS, 인천방송 등)
- 무선호출기지국(SK Telecom, 강원이통)의 전파혼신발생 방지를 위한 전파측정

○ 전파이용 질서유지를 위한 불법무선국 색출 및 불법전파탐사 활동

○ 치안통신망 등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 대회기간 중 CS기동반 운영

○ 경기운용 주파수 인접대역 무선국에 대한 품질감시 수행

- 경기장 주변 고출력 무선국 스퓨리어스 측정
- 경기장내 혼변조에 의한 혼신발생 여부 조사

○ 일반무선국은 출현빈도가 높은 순으로 순환감시

○ 대회기간 중 아마추어운영 활성화 적극유도

- 관내 아마추어 무선국과 공조체계를 구성하여 성공적인 대회운영에 최대한 협조

다. 대회현황

○ 대회 조직위원회 무선국 현황

– 무선국 제원 및 무선국수 : 403 국

구 분	사용주파수	전파형식	출 력	무선국수	비 고
기 지 국	463(375, 400)	8K50F3EJN	4.8W	2국	
육상이동국 (휴대용)	147(210,230,620,640,660) 158.450 222(150,200) 463(375,400)	16K50F3EJN	4.8W	401국	

○ 대회상황

– 대회기간 : 1999. 1. 30 ~ 2. 6 (8일간)

– 개최장소 : 강원도 평창(용평), 강릉, 춘천 (3개 장소)

– 주 최 :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 Olympic Coundil of Asia)

– 주 관 : 제4회 강원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KAWGOC)

– 참가국수 : 한국 외 22개국(한국, 중국, 일본, 홍콩, 인도,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쿠웨이트, 레바논, 스리랑카, 파키스탄, 타이페이, 우즈베키스탄, 네팔, 마카오, 싱가포르, 베트남, 몽골, 타지키스탄, 뱅글라데쉬, 필리핀, 부탄)

– 참가인원 : 1,300여명

• 임 원 : 290여명

• 선 수 : 520여명

• 기타 자원봉사 : 490여명

– 경기종목 : 7경기 43세부종목

구 분	경 기 종 목	세부종	참가국수	선 수	비 고
용평 실 · 내외경기장	알파인스키	목	13	76	
	크로스컨트리	6	7	52	
	숏트랙스피드스케이팅	6	7	48	
	피겨스케이팅	10	7	45	
	바이아드론	4	6	44	
	소 계	6	40	265	
춘천실외빙상경기장	스피드스케이팅	32	5	55	
강릉실내빙상경기장	아이스하키	9	6	200	
계	7경기	2	51	520	

○ 인근지역 무선국 현황 (평창군)

시 설 처	무선국종별	국 수	파 수
산림청	고 정 국	2	2
	육 상 국	2	5
	이 동 국	33	8
국립공원	기 지 국	2	2
	육상이동국	17	2
국가건교부	항 공 국	2	11
	무선표지국	1	2
	비 상 국	2	1
국가치안	고 정 국	4	25
	기 지 국	12	8
	육상이동국	33	24
고속순찰	기 지 국	1	10
	육상이동국	43	24
소방서	기 지 국	2	12
내무부	기 지 국	3	5
	육상이동국	99	8
	간이무선국	19	3
도로공사	고 정 국	5	7
	기 지 국	1	2
	육상이동국	31	23
수자원공사	고 정 국	11	1
방송공사	방 송 국	9	6
	간이무선국	2	1
한국전력	고 정 국	5	3
	기 지 국	5	2

시 설 처	무선국종별	국 수	파 수
한국전력	육상이동국	12	4
한국통신	기 지 국	3	3
	육상이동국	2	3
공공조합	기 지 국	1	1
	육상이동국	7	1
	간이무선국	12	3
적십자사	육상이동국	4	1
	간이무선국	2	1
	이동중계국	1	2
쌍용양회	기 지 국	1	2
	육상이동국	20	2
	간이무선국	202	6
	이동중계국	1	2
	무선호출국	1	1
문화방송	방 송 국	3	3
이동통신	기 지 국	21	34
	이동중계국	1	4
	무선호출국	12	13
아마추어	아마추어국	42	3
개인간이	간이무선국	324	34
개인기타	기 지 국	5	6
	육상이동국	14	4
합 계		1,037	330

라. 활동효과

제4회 강원동계아시아 경기대회의 대회운영 기간 중 사용하는 방송중계 등 전파통신분야의 보호활동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성공적인 99동계아시아 경기대회를 개최토록 함으로써 한국의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음.

※ 참고사항

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대표자 4명을 강릉분소에 파견하여 전파통신분야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었음

- 방 문 자 :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기술부 기술과
  (최승돈, 이영아, 이규풍, 심재안 등 4명)
- 방문일자 : 1999. 1. 25 14:00

제 4 절 해상이동감시 및 전파주권회복

1. 해상이동감시



▲ 해상 이동감시활동 위치도

중앙전파감시소의 현업업무는 전국 각 지방분소에서 수행하고 감시기획업무는 중앙전파감시소(본소)에서 일괄 집행하게 되었다.

해상이동 감시활동은 그 중에 특이한 사업의 하나였다.

해상의 선박무선국 운용실태조사, 위법 및 불법전파의 색출, 허가 주파수대의 간섭상황, 국제조난주파수의 위법사용 및 혼신유발국 파악단속, 해상통신보안 감시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1차년도인 1984년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8일간 동지나해상 247해구 일원에서 수행하였다.

당시 부산전파감시국 직원 3명이 500톤급 수산청 어업지도선에 동승하여 업무를 수행

하였는데 감시영역의 확대라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당시 동지나해상에서 감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E-1500 수신기와 RG-5500수신기 등의 장비와 멀미를 예방하기 위한 인삼 등을 준비하여 부산항 5부두에서 출항하였다.



▲ 망망대해를 운항중인 선박의 모습

통상 어선들은 음력 15일(보름)은 달빛이 밝아 조업을 하지 않는다. 달빛이 없는 밤이어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음력 15일을 전후하여 입항일을 잡고 그믐을 기준으로 해서 해상에서 조업활동을 한다. 그리고 태풍이 끝나는 시점을 출항일로 잡아 출항을 하더라도 해상에는 태풍의 여운이 남아 있어 우리 직원의 경우는 심한 멀미로 상당한 고생을 했다고 한다.

동지나 해상 현장에서는 비인가 주파수의 사용여부 혹은 통신보안 위규 등을 주로 감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시에 어선에서 사용하던 송신기는 크리스탈 방식으로 많은 어선들이 비인가 주파수 크리스탈을 확보하여 통신실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나, 해상이동감시가 실시된다는 소문에 크리스탈 등을 모두 숨겨 적발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매회 7일간 해상이동감시를 마치고 되돌아 올 때는 고기를 잡아서 돌아오는 운반선을 이용하거나 수산청 어업지도선이 되돌아 올 경우는 함께 돌아오곤 하였는데 어업지도선이나 어선 등이 노후하여 해상에서 기관고장이 일어나는 등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으며, 특히 선박에 많이 서식하고 있던 쥐에 의하여 입고 있던 옷이 손상되기도 하는 등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였다.

업무 수행 후 돌아와서도 3~4미터급의 파도로 인해 어업지도선과 어획물 운반선을 해상에서 계류시키고 작은 보트를 이용하여야 했는데 무거운 장비와 사람이 옮겨 타는 과정에서 매우 위험하였다.

전파감시업무를 목적으로 회당 약 7일 정도의 해상이동감시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7일이 지난 후 되돌아온 우리 직원들은 뒤에 몇 달을 바다 위에서 생활해

야 하는 선원의 모습을 그리며 안스러운 생각에 그들의 안전을 위한 한 방법으로 국제조난 주파수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뿌듯했다고 한다.

해상이동감시 활동의 결과

◇ 1984년도

가. 수행사항

해상의 선박무선국 운용실태 조사

위법 및 불법전파 색출단속

허가주파수대 간섭상황

국제조난주파수의 위법사용 및 혼신유발국 파악 단속

해상통신보안 감시

나. 출장개요

지역 : 동지나 해상(247해구 일원)

기간 : 1984. 5. 27~6. 3(8일간)

인원 : 3명

장비 : V/UHF 수신기(RG-5500), HF 수신기(E-1500), CB 수신기, 녹음기

수행국소 : 부산전파감시국



해상이동감시활동 현장 모습 ▶

◇ 1985년도

가. 수행사항

불법주파수 사용단속

국제조난주파수 이용실태조사

해상통신 위규사항 적발

통신보안 준수사항 이행여부 감시

허가주파수대의 간섭사항 조사

나. 출장개요

지역 : 동지나 해상(461,491해구)

기간 : 1985. 5. 22~5. 31(10일간)

인원 : 부산전파감시국 3명

강릉전파감시국 3명

장비 : V/UHF 수신기(RG-5500), HF 수신기(E-1500), CB 수신기, 녹음기

다. 주요실적

구 분	건 수	내 용
○불법증설 무선국 적발	2건	- 송수신기 증설 : 1대 - 레이다 증설 : 1대
○위법 및 불법주파수 색출	16개파	- 2775KHz외 15개파
○지정외 주파수 적발	4개파	- 2028.4KHz외 3파
○국제조난주파수(2183.4)KHz 운용 실태 조사	3회	- 잡담 및 혼신유발 사항 녹음
○국제조난주파수 운용에 대한 계몽	3회	- 현지 어선 대상 : 280척

◇ 1987년도

가. 수행사항

국제조난주파수 이용실태 파악

선박해상통신 위규사항
통신보안 사항 이행여부
선박통신에서 비인가 주파수 색출
선박통신에 대한 전파이용 홍보방송

나. 출장개요

지역 : 동해 특정해역(61해구 및 338해구일원)

기간 : 1987.7.23~7.29(6박7일간)

인원 : 2명

장비 : HP수신기 2대(E-1500) 녹음기2대(GX-4000D) 단파대송수신기

해상이동 이용선박 : P-506GH(동해 해양경찰서 소속)

다. 주요실적

구 분	건 수	내 용
○불법증설 무선국 적발	4건	- 송수신기 증설 : 2대 - 레이다 증설 : 2대
○위법 및 불법주파수 색출	8개파	- 2193.8KHz외 7개파
○지정외 전파형식 사용	1건	- A1A주파수 2050KHz를 J3E로 사용
○지정외 주파수 적발	4건 (6파)	- 2725KHz외 5개파
○제2침묵 시간 위반	1건	- 2183.4KHz에서 적발
○불요 통신	1건	- 2757.4KHz에서 적발
○국제조난주파수 운용에 대한 계몽	3회	- 현지 어선 대상 : 450척
○좌담회 개최	1회	- 국제조난 주파수 운용에 대한 홍보

전파이용 홍보 방송내용

연일 계속되는 조업에 고생하시는 선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전파감시소에서는 선장 여러분께 전파이용 홍보 방송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조난주파수인 2183.4KHZ는 조난, 긴급, 안전통신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조난주파수에서는 잡담 등 선박간의 교신은 하지 맙시다.

둘째, 최근 허가되지 않은 비인가 주파수나 비인가 약 부호를 사용하시는 것은 전파위법 사항이므로 즉시 철거, 폐기하여야 하며 이를 계속 사용하다 적발되었을 시는 의법 조치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중앙전파감시소 해상 이동감시반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홍보방송은 해당지역 어업무선국 조업선 위치보고 끝난 다음 단파대 송수신기로 각 어선에 전파 홍보 내용임)

2. 전파주권회복

AFKN VHF채널 회수

1957년부터 화질이 가장 좋다는 VHF대 채널 2번을 사용하고 있는 미군의 AFKN용 주파수를 회수하고 UHF대 34번 채널의 방송시설을 설치하여 주한 미군에 무상대여 하기로 하고 1991년 한 · 미간 합의각서 체결로 시작하여 1992년 11월부터 송신기, 안테나설치공사 및 기기 조정 후 1992년 12월 시험방송 및 시설의 인수 인계라는 1년 계획으로 시작하였으나 미군측이 협상과정에서 보인 각종 무성의 및 무례로 1997년 5월 15일 최종완료 확인서를 교환하기까지 무려 6년에 걸친 협상 끝에 완료하였다.

최종 협상과정에서 미군은 UHF대 34번 채널의 스트레오 방식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최종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우리측을 당황하게 하기도 하였다. 우리측으로서는 스트레오 방식으로 전환시 약 3천만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어 큰 부담은 아니었으나 문제는 미군 당국이 수년간 진행된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무성

의와 무례한 협상태도라 하겠다. 문제가 제기되면 수개월 혹은 1년이상 걸려 합의한 협상자체를 무시하고 또다시 시작하는가 하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였다. 예를들면 미군은 송신기 하자보증금 50만 달러를 예치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여 우리나라의 예산회계법상 부당성을 통보하였으나 협상을 지연시켰으며, 90일간의 시험 운용 후 별도로 60일간의 시험운용기간을 요구하기도 하였었다. 이같이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서 스트레오 방식을 요구해와 협상을 지연시킬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애를 태웠다. 이러한 어러운 협상과정을 통하여 1997년 5월 15일 최종합의서에 서명함으로서 VHF대 채널 2번을 회수하고 UHF 채널 34번을 사용할수 있게 하여 실로 40년 만에 전파주권을 회복한 쾌거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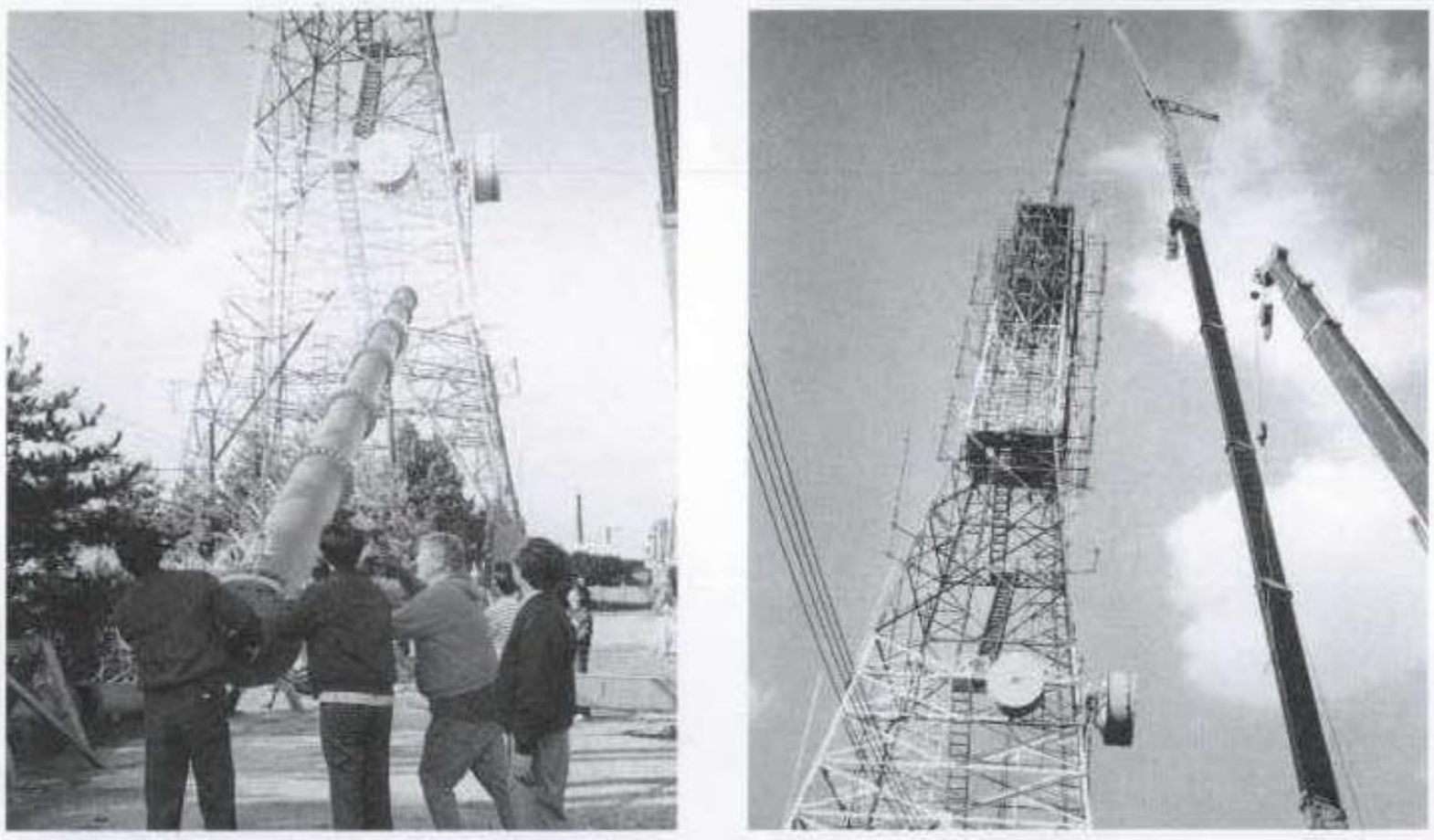

▲ AFKN 채널회수 공사모습



한 국 일 보

1995年 3月 28日 火曜日

AFKN채널 8월말환수

韓·美합의 채널2번 軍통신용 활용

○ 주요연혁

- 1991년 10월 18일 : 한 · 미간 합의각서 체결(본부)
- 1991년 12월~1996년 4월30일 : 방송시설 설치공사(한통엔지니어링.주)
- 1996년 5월~1997년 4월30일 : 하자보수 보증기간(영국 해리스사와 유지보수 용역계약 체결)
- 1997년 4월21일~4월 27일 : 하자보수기간 종료전 최종합동점검
- 1997년 5월 15일 : 최종완료 확인서 교환

○ 총공사비 : 2,599백만원

제 5 절 전파감시시설의 현대화

1990년 말에는 23만국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전파관리비용도 증가하였으나 동년 체신부의 무선국 허가수수료 수입은 43억원에 불과하여 전파관리비용 1백 31억원에 비해 8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적자분을 매년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 충당하였으나 이것을 전파를 이용하는 계층이 아니라 전화 또는 우표사업에서 보충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수익자부담원칙을 견지하고 한정된 자원이 전파자원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데 대한 점용료 부과, 전파자원의 효율적 분배 및 관련기술 개발의 필요성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하여 1990년부터 수차에 걸친 공청회를 거친 끝에 1991년 4월 27일 전파관리법 개정 입법예고를 거쳐 1993년부터 전파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었다.

전파감시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이 확보되어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시설확충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1. 종합전파감시망 구축

전파이용질서 확립과 감시사각지역의 해소 및 전파이용자에게 양질의 전파품질을 제공하기 위하여 1990년에 6년계획으로 종합전파감시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무선국의 분포가 많은 지역에 무인국소를 설치, 중심국(분소단위)과 단말국(분실단위)에서 원격제어 함으로써 급증하는 무선통신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지역별 감시체제를 전산화 및 단일망화 하는 종합전파감시망이 구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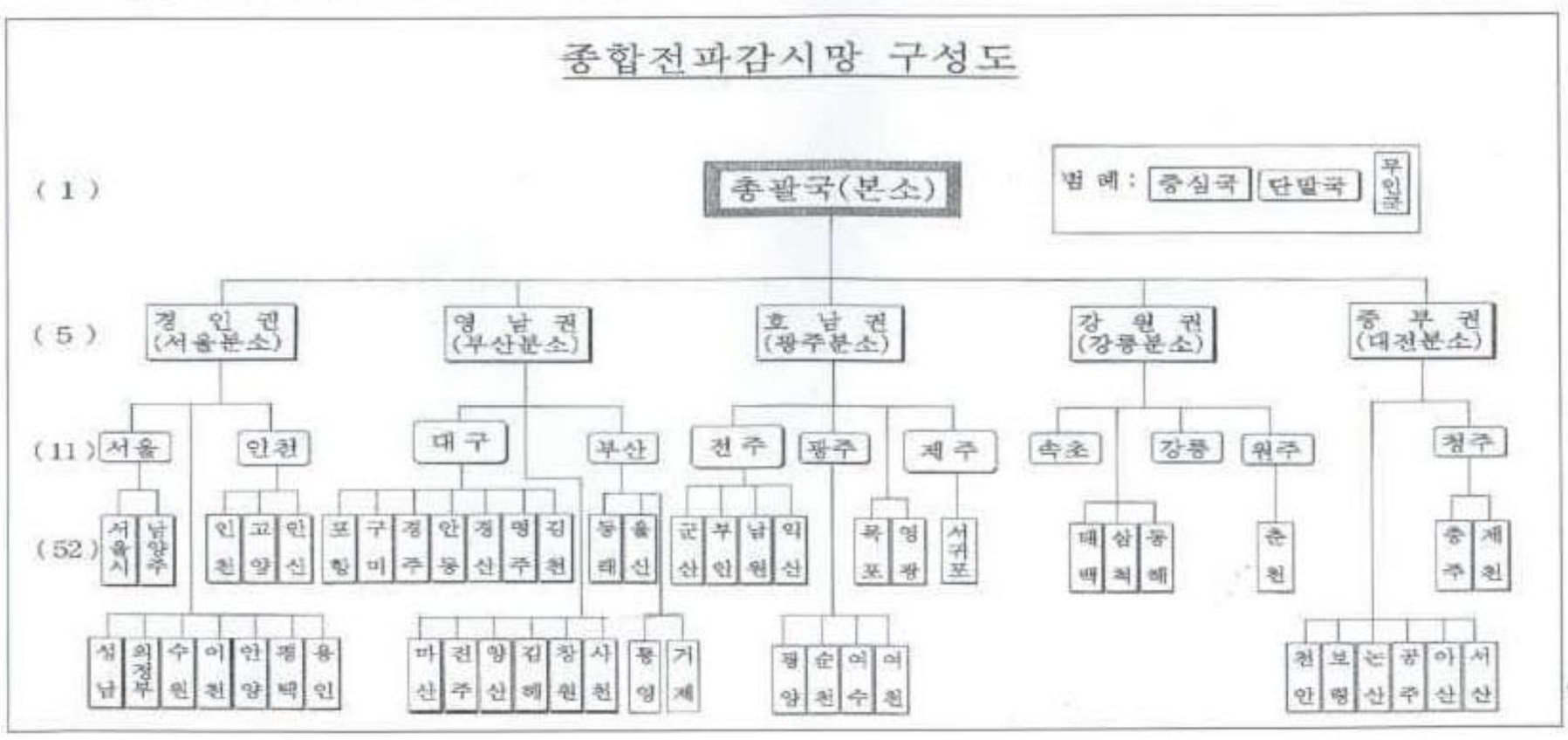

◀ 종합전파감시망 구성도

전체 네트워크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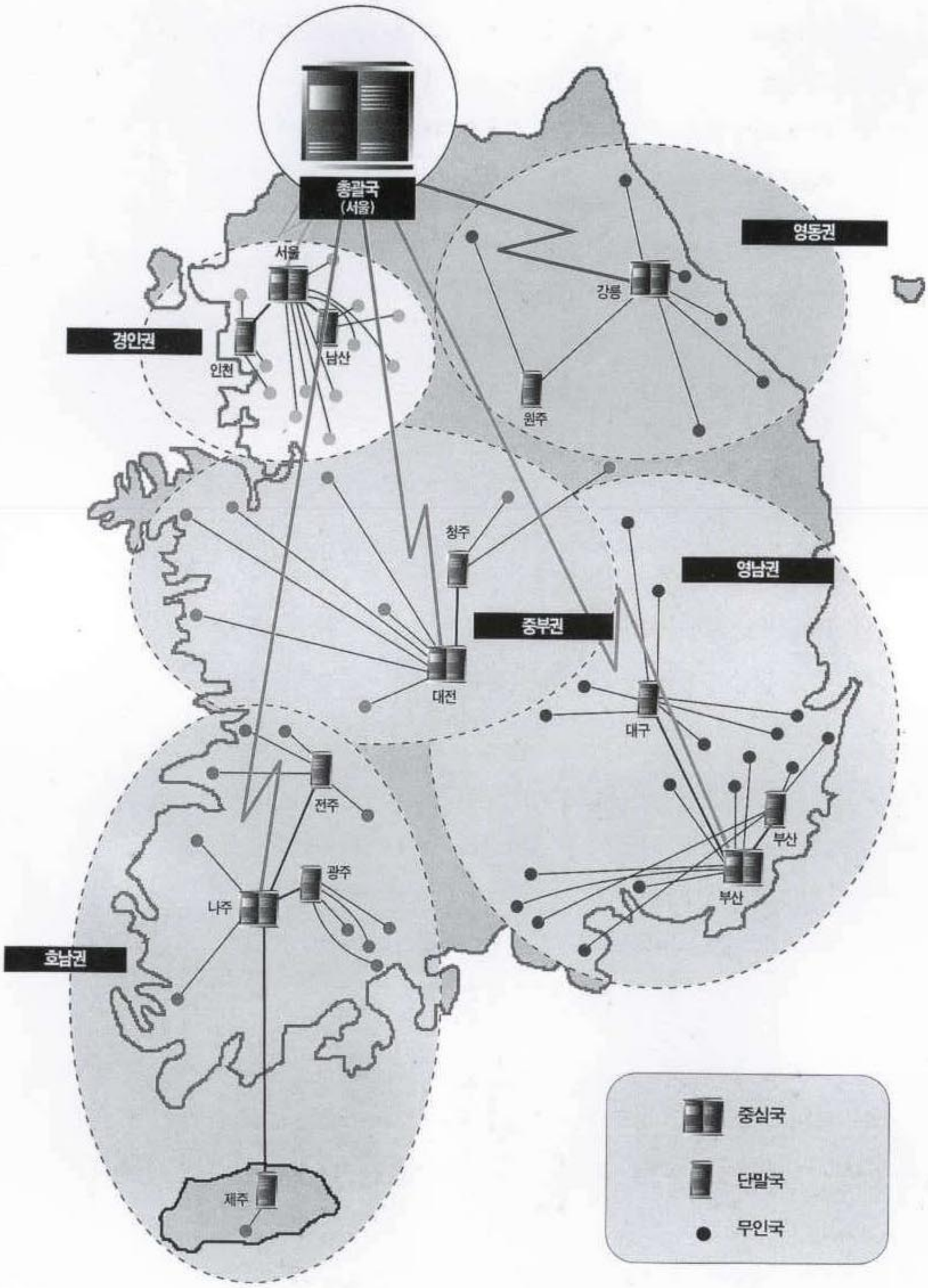
총괄국
(서울)
서울
남산
인천
경인권
영동권
강릉
원주
청주
중부권
대전
영남권
대구
부산
부산
전주
광주
나주
호남권
제주
중심국
단말국
무인국

원격국 장비 결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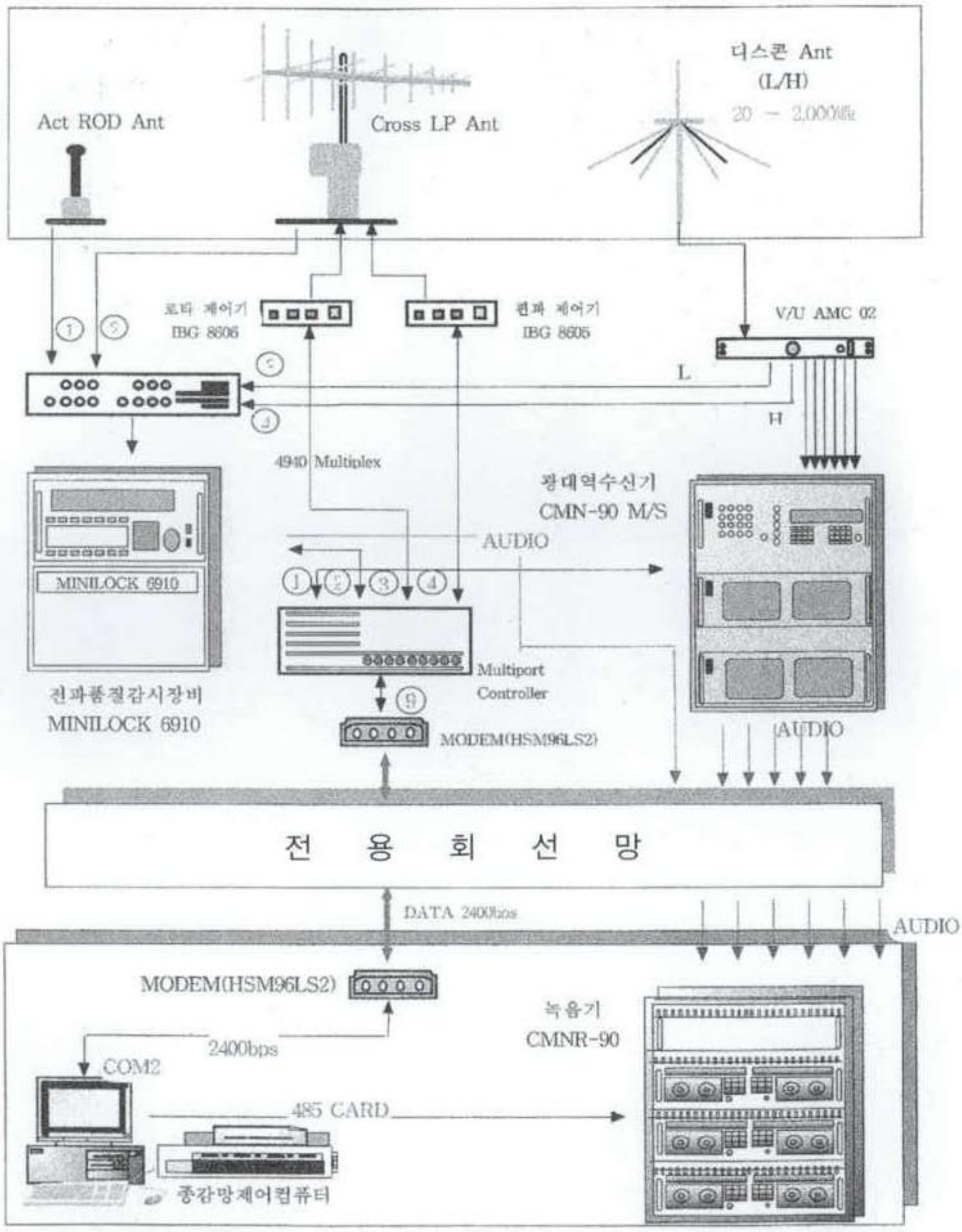
Act ROD Ant
Cross LP Ant
디스콘 Ant
(L/H)
20 ~ 2,000㎒
로타 제어기
IBG 8606
편파 제어기
IBG 8605
V/U AMC 02
L
H
4940 Multiplex
광대역수신기
CMN-90 M/S
AUDIO
MINILOCK 6910
전파품질감시장비
MINILOCK 6910
Multiport
Controller
MODEM(HSM96LS2)
(AUDIO
전 용 회 선 망
DATA 2400bps
AUDIO
MODEM(HSM96LS2)
녹음기
CMNR-90
2400bps
COM2
485 CARD
종감망제어컴퓨터

가. 연 혁

1990. 5.28	: 기본계획 수립(본부)
1992. 2.19	: 전파감시 자료관리시스템 개발계획 수립(본부)
1992. 6.23	: 전파감시 자료관리시스템 추진계획(본부)
1992. 7. 1	: 서울분소를 중심국으로 하는 경인권 운용
1994. 1. 1	: 부산분소를 중심국으로 하는 영남권 운용
1995. 6.20	: 광주분소를 중심국으로 하는 호남권 운용
1995. 10. 1	: 강릉분소를 중심국으로 하는 강원권 운용
1996. 7. 1	: 대전분소를 중심국으로 하는 중부권 운용
1997. 3.17~4. 30	: 총괄국 자료관리시스템 시험운용
1997. 5.30	: 종합전파감시망 시연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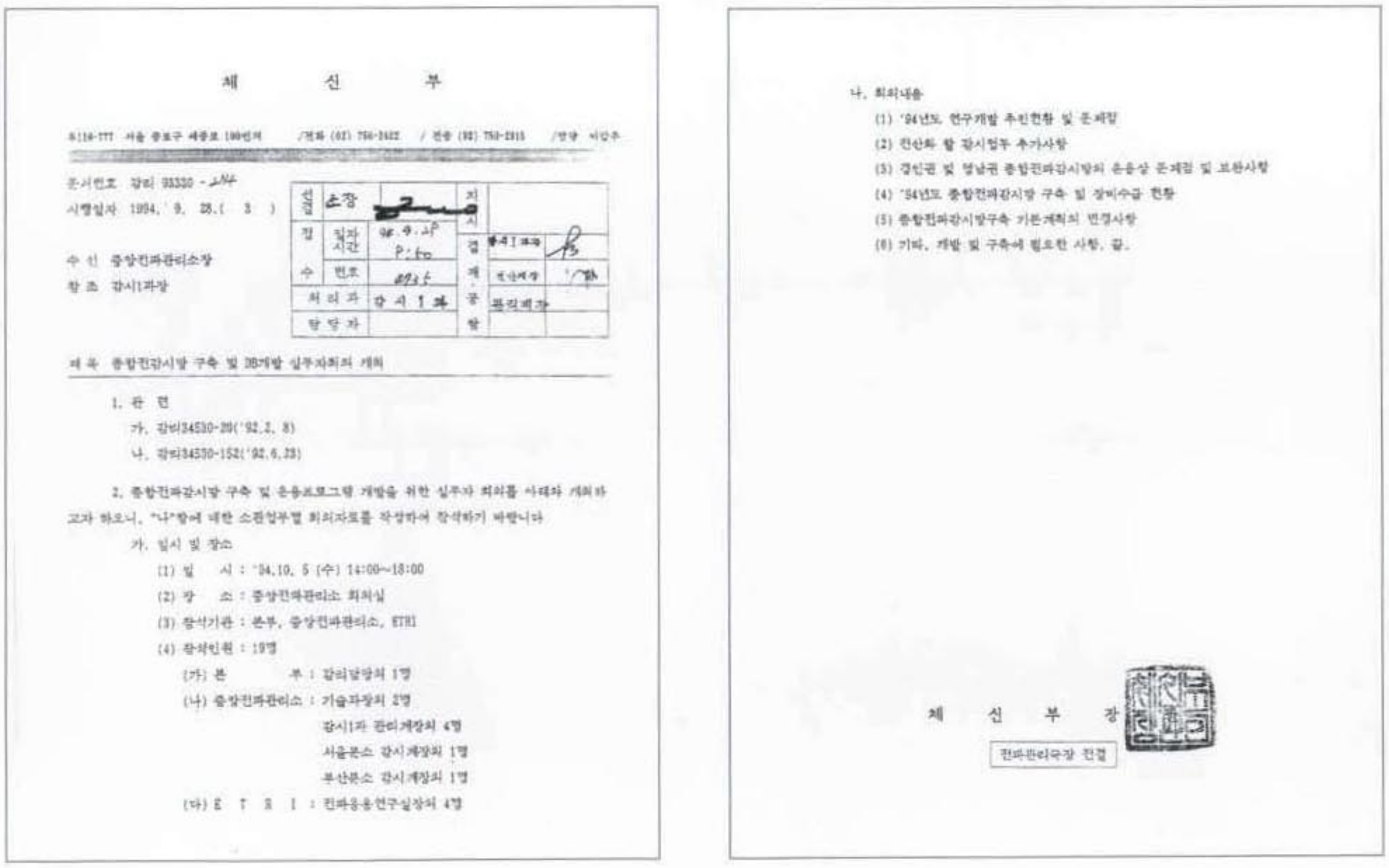

체 신 부

주116-777 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 (02) 750-2422 / 전송 (02) 750-2915 /담당 이강주

문서번호 감리 93330 - 244
시행일자 1994. 9. 28.(3)

선결	소장		지시	
접수	일자 시간	94.9.28 P:60	결재·공람	통신1과장
	번호	0935		전산계장
처리과	감시1과			관리계장
담당자				

수 신 중앙전파관리소장
참 조 감시1과장

제 목 종합전감시망 구축 및 DB개발 실무자회의 개최

1. 관 련
가. 감리34530-20('92.2. 8)
나. 감리34530-152('92.6.23)

2. 종합전파감시망 구축 및 운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아래와 개최하고자 하오니, "나"항에 대한 소관업무별 회의자료를 작성하여 참석하기 바랍니다

가. 일시 및 장소
(1) 일 시 : '94.10. 5 (수) 14:00~18:00
(2) 장 소 : 중앙전파관리소 회의실
(3) 참석기관 : 본부, 중앙전파관리소, ETRI
(4) 참석인원 : 19명
(가) 본 부 : 감리담당의 1명
(나) 중앙전파관리소 : 기술과장의 2명
감시1과 관리계장의 4명
서울분소 감시계장의 1명
부산분소 감시계장의 1명
(다) E T R I : 전파응용연구실장의 4명

나. 회의내용
(1) '94년도 연구개발 추진현황 및 문제점
(2) 전산화 할 감시업무 추가사항
(3) 경인권 및 영남권 종합전파감시망의 운용상 문제점 및 보완사항
(4) '94년도 종합전파감시망 구축 및 장비수급 현황
(5) 종합전파감시망구축 기본계획의 변경사항
(6) 기타, 개발 및 구축에 필요한 사항, 끝.

체 신 부 장

전파관리국장 전결

▲ 종합전파 감시망 구축관련 문서





▲ 종합전파 감시망 시연회 장면

나. 구축내용

1) 소요예산

당초 : 220억원

집행 : 207억원

– 투자액 : 173억원(장치비 : 163억원, 공사비 : 10억원)

– 연구개발비 : 34억원

2) 연도별 구축규모

구분	계	'90	'91	'92	'93	'94	'95
총괄국	1						1
중심국	5	1	1	1	1	1	
단말국	11	1	1	3	3	1	2
원격국	52	5	6	6	6	7	22
계	69	7	8	10	10	9	25
소요예산	220억원	20억원	30억원	30억원	30억원	40억원	60억원

3) 감시권역 및 년차별 추진내역

회차	사업추진년도	권역별	국소명	관련문서
1	'90	경인권	중심국 : 1(71분소) 단말국 : 1(731분실) 원격국 : 인천, 망경대, 의정부 이동국 : 1	○감리34530-4154('90. 6. 2) : 90년도 종합전파감시망 구축
			원격국 추가 : 수원, 이천(안산) ※원격국 제어국소 조정하여 승인 (단말국 ⇒ 중심국)	○감일34530-2123('90. 9. 1) : 90년도 종합전파감시망 구축계획(안) ○감리34530-7182('90. 9. 24) : 종합전파감시망 구축
2	'91	영남권	중심국 : 1(부산분소) 단말국 : 1(대구분실) 원격국 : 6(동래, 울산, 포항, 구미, 진주, 마산) 이동국 : 1	○감일34530-2097('91. 9. 2) : '91년도 종합전파감시망 구축계획(안) ○감리34530-6606('91. 9. 10) : 영남권 종합전파감시망 구축
3	'92	호남권	중심국 : 1(광주분소) 단말국 : 2(광주분실, 전주분실) 원격국 : 6(목포, 여수, 동광양, 군산, 부안, 남원) ※여천 ⇒ 동광양으로 변경	○감일34530-307('92. 4. 30) : 92년도(호남권) 종합전파 감시망구축계획(안) ○감리34530-181('92. 7. 27) : 호남권 종합전파감시망 구축
4	'93	강원권 및 영남권 보강	중심국 : 1(강릉분실) 단말국 : 2(원주분실, 속초분실) 원격국 : 4(동해, 삼척, 태백, 춘천) 이동국 : 1 ○영남권 보강 경주, 양산원격 추가 단말국 추가(부산분실) Computer설치 ※기본계획 변경 - 단말국 추가(속초분실) - 무인국 변경(속초 ⇒ 동해) (충무 ⇒ 양산) (상주 ⇒ 경주)	○감일93306-336('93. 5. 3) : 강원 및 영남권 종합전파 감시망 구축계획(안) ○감리93306-144('93. 5. 4) : 강원권 종합전파감시망 구축 계획 일부변경

회차	사업추진년도	권 역 별	국 소 명	관련문서
5	'94	중부권 및 호남권 보강	○중심국 : 1(대전분소) 단말국 : 1(청주분실) 원격국 : 3(충추, 천안, 논산) 이동국 : 1 ○단말국 : 1(제주분소) 원격국 : 2(순천, 서귀포) ※기본계획 변경 - 단말국 ⇒ 무인국(청주) - 지역변경(영광 ⇒ 순천) - 설치연기(대천, 영광 : 95년) - 제어국소변경 : 순천 (광주분실 ⇒ 광주분소)	○감일93306-245('94. 3. 24) : 중부 및 호남권 종합전파감시망 구축계획(안) ○감리93306-142('94. 5. 12) : 중부권 종합전파감시망 구축 세부추진계획 통보
6	'95	총괄국 외	총괄국 : 1(본소) 단말국 : 2(인천, 속초, 청주) 원격국 : 22국 - 경인권 : 7 [고양, 평택, 안양(하남), 남양주, 강북(동두천), 안산, 용인] - 영남권 : 9 창원, 김천(진해), 김해, 삼천포, 안동, 통영, 거제, 경산, 영주 - 호남권 : 2 이리, 여천 - 중부권 : 4 공주, 서산, 아산, 제천 ※기본계획 변경내역 원격국 변경 : 당초계획「( )」 제어국소 변경 : 충주 (대전분소 ⇒ 청주분실) 청주무인국 구축에서 제외	○감일93306-68('95. 1. 21) : 종합전파감시망 확장계획(안) 작성 ○감리93306-216('95. 6. 19) : 95년도 종합전파감시망 구축 계획 승인 ○감일93306-280('95. 3. 25) : 95년도 종합전파감시망 구축계 획(안)
			○경인권 무인국소 재비치 과천 ⇒ 성남('97.3.11이전완료) ∵ 망경대에서 운용 중 혼신 ○'95 구축예정 무인국소 변경 하 남 ⇒ 안양 동두천 ⇒ 강북	○감일93306-('95. 7. 21) 종합전파감시망 구축계획 재검토 시행

4) 권역별 설치내역

구 분	계	경인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중부권	총괄국
총괄국	1						본소
중심국	5	서울분소	부산분소	광주분소	강릉분소	대전분소	
단말국	11	서울분실	대구분실	광주, 전주분실	강릉, 원주, 부산분실	제주분소, 청주분실	인천, 속초분실
무인국	52	인천 수원 과천 의정부 이천	동래 울산 진주 마산 포항 구미	군산 남원 부안 동광양 여수 목포	동해 태백 삼척 춘천 경주 양산	천안 보령 충주 논산 순천 이리 서귀포	고양, 안산, 안양, 평택, 서울시, 남양주, 용인, 거제, 통영, 김해, 창원, 삼천포, 김천, 영주, 안동, 경산, 영광여천, 공주서산, 아산, 제천
계 획		'90	'91	'92	'93	'94	'95
설 치		'92	'93	'94	'95	'96	'96

2. 이동방향탐지 장비 보강

전파이용활성화정책에 힘입어 국내 무선국수는 80년대에 접어들어 연평균 25%정도씩 증가하여 86아시아게임 및 88서울올림픽경기를 거치면서 무선통신을 이용하는 전파이용자가 급증, 1990년 말에는 23만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무선통신의 상호혼신과 전파이용자의 민원을 신속하고 기동성있게 해결할 장비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Telegon-7 등 기존의 장비를 보강하여 종합전파감시망과 연계 운용할 수 있도록 이동방탐시스템의 기능을 보강하므로서

효율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1995년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예산 77억원을 계상하여 본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사업이 본격 추진되게 되었다.

사업 1차년도 보강내용으로는 86아시아게임 및 88서울올림픽의 통신지원활동을 목적으로 수도권에 설치한 이동방탐을 위한 중계소를 보강하여 전국으로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 이동방향 탐지장비 Telegon-7 탑제차량

보강내용으로는 수도권 이외 부산, 대전, 광주지역에 V/UHF 고정방탐장비 3식을 각각 구축하기로 하고 소요예산 77억원을 투입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내용을 결정하였다.

구분	현재		보강	
	수량	기능	수량	기능
지휘 · 통제장비	5	수동	5	완전자동
방탐전용장비	8	〃	8	〃
중앙통제센타	-	-	5	방탐장비의 통제기능을 갖춤

이동 방탐장비의 새로운 기능보강을 위해 감시 1과, 감시 2과, 기술과, 서울분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분야별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이동방탐보강사업 규격 검토시의 내용을 검토하여 HF/VHF 무선망 시스템 운용에 따른 탑재차량 및 차종 확정 및 V/UHF대 중계기 중 주파수 및 설치장소는 확보하였고, 제작사인 독일의 DASA로 하여금 장비개발 및 설치를 하도록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1997년 6월 수도권 고정방탐망제어 중 컴퓨터 및 운용 S/W 설치하고 5일간(1997. 6. 9 ~ 6. 13) 독일인 프로그래머가 서울, 부산, 광주, 강릉, 대전분소를 대상으로 제어용 컴퓨터 및 운용 S/W 설치 시험운용을 실시하고 이동방탐 보강시스템 운용을 위한 제작사의 교육에 참석할 요원을 선발하였다.

교육장소는 독일 울름시에 소재한 DASA사 훈련센터이며 보강시스템 운용에 관한 이론교육 및 실습을 위해 감시 1과 양의청과장을 비롯한 5명(오동열 · 김문

성 · 이희영 · 김동술)이 2주간의 일정으로 해외교육을 받았다.

1998년 1월 이동방탐 · 보강시스템 슬레이브장비 탑재차량에 대한 노후 차량 대체 및 신차구매 등 이동방탐 · 보강사업은 순조롭게 이루어져 1999년 1월 이동방향탐지 · 보강사업이 완료되고 각분소 별로는 「CS기동팀」이 구성되는 등 전파이용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완료되었다.



▲ 대기중인 CS 기동차량 모습



▲ 이동전파 감시차량



▲ 전파환경 조사차량

전파방향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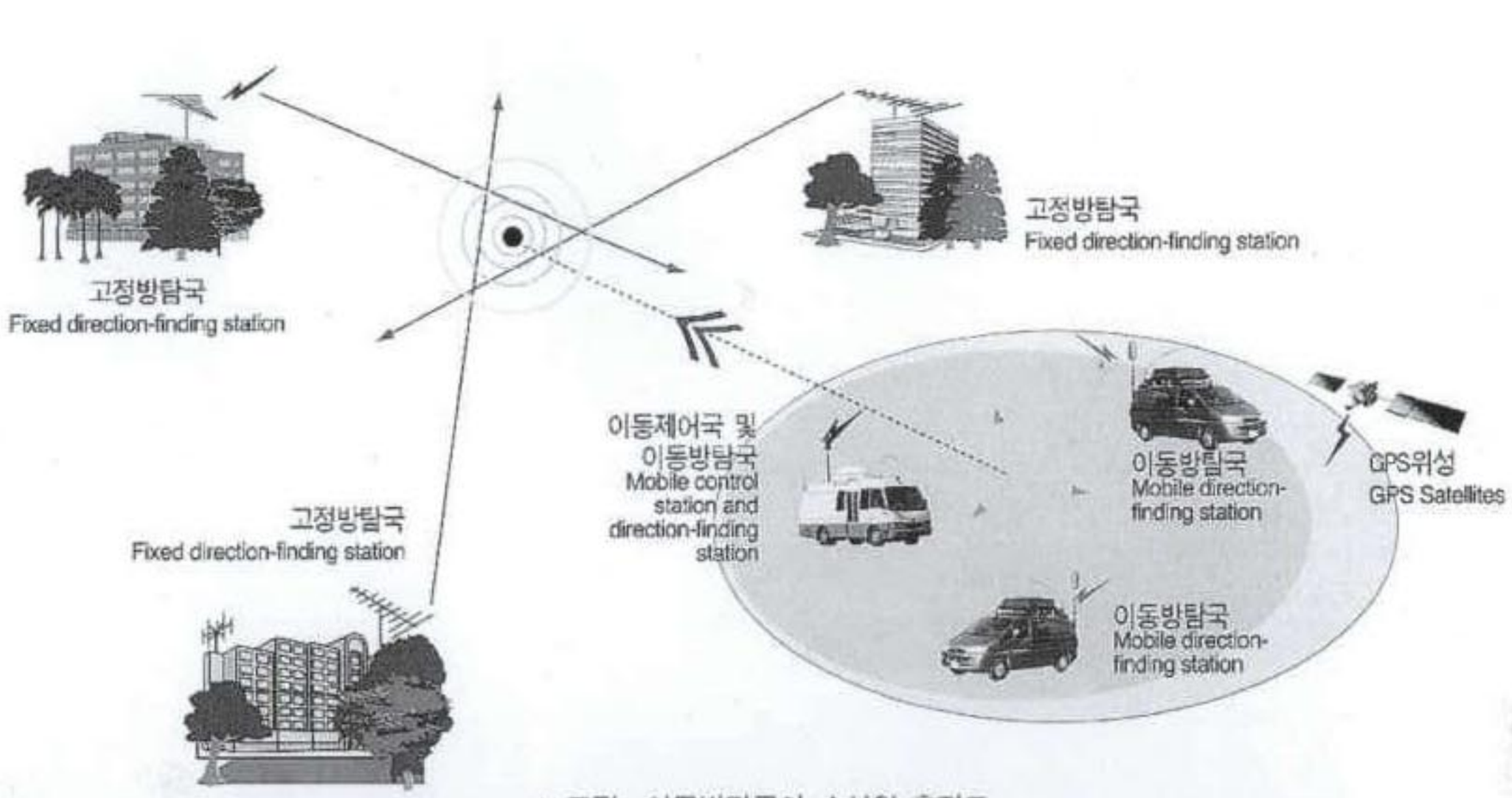

▲ 고정 · 이동방탐국의 송신원 추적도
drawing for detecting of emitting source by fixed and mobile direction finding station

방탐망 구성도
Mobile direction finding s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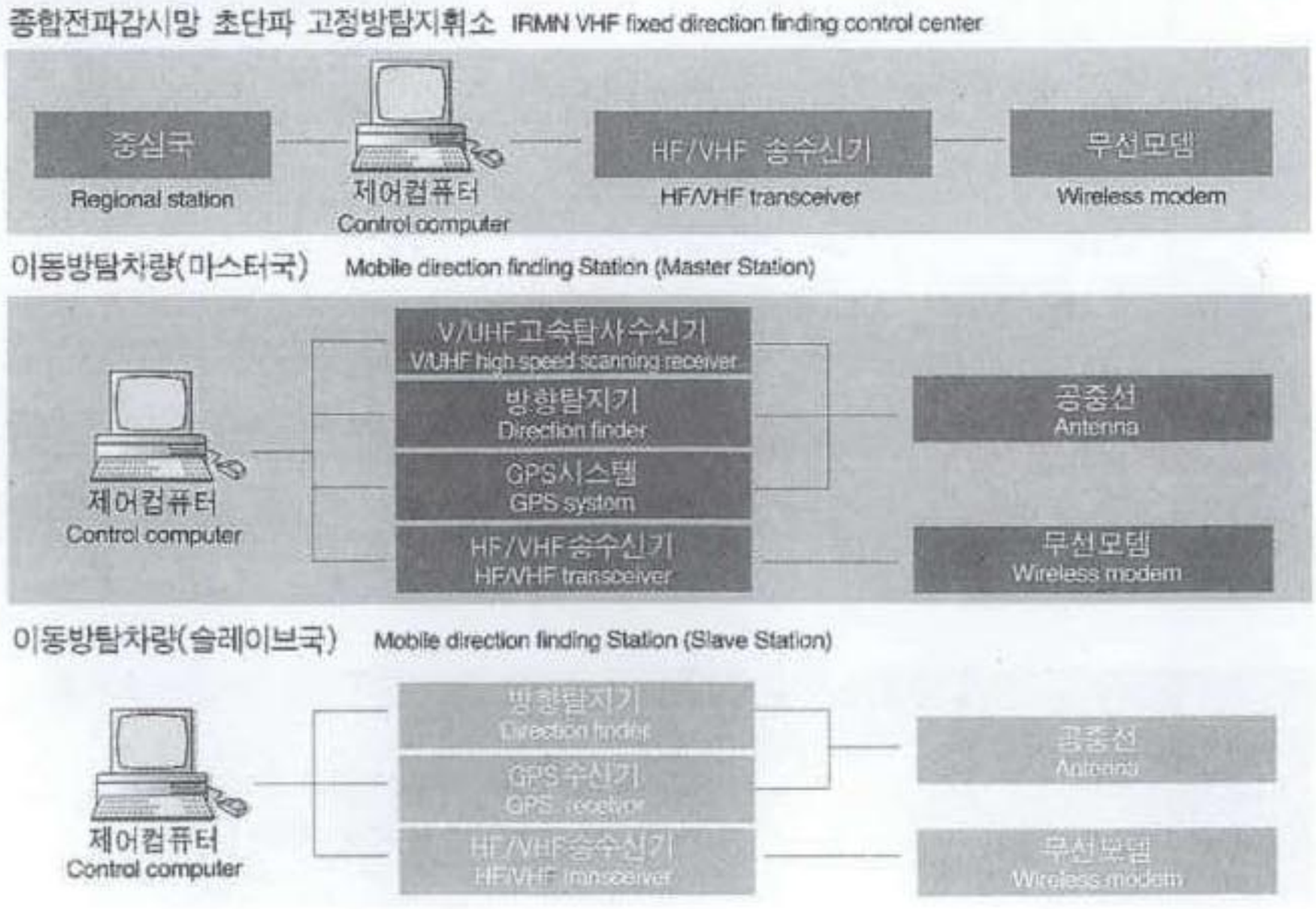

□ 이동방탐장비 구성내역

품 명	구 성 품	형 명	비 고
방탐기	방탐기 본체	P - 1270LU	
	콘트롤 유니트	BP - 1620/3	
	디스플레이 유니트	SG - 1620	
	V/UHF안테나	AK - 1206VU	
	UHF안테나	A - 1267U2	
	HF안테나	A - 1292MH	
	안테나 커버	-	
컴퓨터	컴퓨터	3513P - 250	
	모니터	1014R	
디지털녹음기	-	DR1485	
고속탐사수신기	-	E - 1900	*Master 한
단파송수신기	HF UNIT	HRU7000/1	
	power Amp	PAU7400	
	HF Tuner	ATU7400	
	HF Antenna	whip	
전원분전반	-	DCD5900	
보이스판넬	-	NFP7000	
VHF 송/수신기	VHF Unit	Telecar-10	
	Power Amp	PA160-50	
	DC-DC콘버터	DC2412/20	
	무선모뎀	DAFUMOD	
	VHF Antenna	Whip	
GYRO	GYRO Unit	LLN - GY INU	
	Speed Meter	EWG 201	
GPS	GPS 수신기	HNV - 500A	
	GPS Antenna	-	
인버터	-	24V - 230V	
충전기	-	-	

□ 이동방탐 현황

국소별	배치내역			수 량	비 고
	방탐기	차 량	구 분		
본소	T-10	콤비(4988)	슬래이브	1	▣ 방탐차량현황(총 16대) - 마스터(5대) ☞ 콤비(T-10) - 슬래이브(8대) ☞ 스타랙스(T-10) 7 콤비(T-10) 1 - 슬래이브(8대) ☞ 스타랙스(T-10) 7 - 수동(3대) ☞ 스타랙스(T-10) 2 이스타나(T-111) 1 ▣ 마스타 탑재장비 제어용컴퓨터, 방탐기, GPS, GYRO 고속탐사수신기, HF/VHF송수신기 ▣ 슬래이브 탑재장비 제어용컴퓨터, 방탐기, GPS, GYRO HF/VHF송수신기 ▣ 수동방탐차량 탑재장비 방탐기, VHF송수신기, 제어용컴퓨터(T-111방탐기만 설치)
서울	T-10	콤비(3725)	마스타	3	
	〃	스타랙스(8192)	슬래이브		
	〃	스타랙스(1822)	슬래이브		
부산	〃	콤비(3785)	마스타	3	
	〃	스타랙스(9682)	슬래이브		
	〃	스타랙스(6971)	〃		
광주	〃	콤비(4427)	마스타	2	
	〃	스타랙스(5105)	슬래이브		
강릉	〃	콤비(5030)	마스타	2	
	〃	스타랙스(6329)	슬래이브		
대전	〃	콤비(6011)	마스타	2	
	〃	스타랙스(1263)	슬래이브		
대구	〃	스타랙스(9954)	미보강	1	원격제어장비 설치안됨
전주	〃	스타랙스(4344)	미보강	1	
제주	T-111	이스타나(8797)	보강불능	1	원격제어불가
계				16	

□ 통신망(유선) 현황

구 분	서 울	부 산	광 주	강 릉	대 전	비 고
VHF 중계소	남산 음성 : 1회선 데이터 : 1회선	금련산 음성 : 1회선 데이터 : 1회선	금련산 음성 : 1회선 데이터 : 1회선	태기산 음성 : 1회선 데이터 : 1회선	식장산 음성 : 1회선 데이터 : 1회선	음성 : 4W(1회선) 데이터 : 2W(1회선)
HF통신	분소내	분소내	본소외각 (약500m 이격) 음성 : 1회선 데이터 : 1회선	본소외각 (약500m 이격) 음성 : 1회선 데이터 : 1회선	분소내	

□ POMON 시스템

설치국소	품 명	설치금액	실자산액	비 고
서울 (9329)	MINILOCK6910	78,361,641	54,909,540	
	POMON SYSTEM COMPUTERI	287,825,200	230,260,160	
	POMON SYSTEM PRINTER	5,095,200	4,076,160	
	POMON SYSTEM COMPUTER2	277,834,200	222,267,360	
	POMON SYSTEM PRINTER	5,095,200	4,076,160	
	POMON SYSTEM SCANNER	107,211,200	85,768,960	
	POMON AF RECORDER	18,962,200	85,768,960	
	POMON OMNIDIRECTION ANT	98,195,200	11,377,320	
	POMON 초단파수신기	141,756,200	85,102,520	
	POMON AF DISTRIBUTION	11,563,200	113,404,960	
총 금 액		1,031,899,441	897,012,100	

3. 전파감시 지휘통제망 구축

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의 조직을 살펴보면 중앙에 본소(서울)와 하부조직으로 10분소 8분실을 각 지방에 두어 전국의 전파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종합전파감시망을 구축하여 실시간대로 전파감시 실적을 프린트화하여 파악할 수 있지만 본부와 본소, 본소와 분소 간의 유기적이고 실시간적인 전파관리 통제업무의 수행은 사실상 없었다.

각 지방의 자료확인을 위해서는 업무중의 컴퓨터를 이용하여야 함으로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고 외부 방문자에 대하여 전파감시 업무를 설명할 실시간대의 감시자료가 부족하였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8년 7월 전파감시지휘통제망 구축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999년 1월 세부추진내역을 확정하고 1999년 2월, 2차에 걸쳐 기술규격심의회를 거치고 계약을 완성시킴으로서 본격적으로 전파감시지휘통제망 구축사업이 현실화 되었다.

1999년 정보통신부 남궁석장관은 초도순시시 전파감시지휘통제망 구축사업

을 보고 받고 "전파감시체제를 중앙에서 일괄 지휘 · 통제하는 전국 동시 감시체제로 구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훌륭한 시설이 되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라고 격려하였고,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 하며 준공 시 꼭 참석하겠다고 하며 수고하는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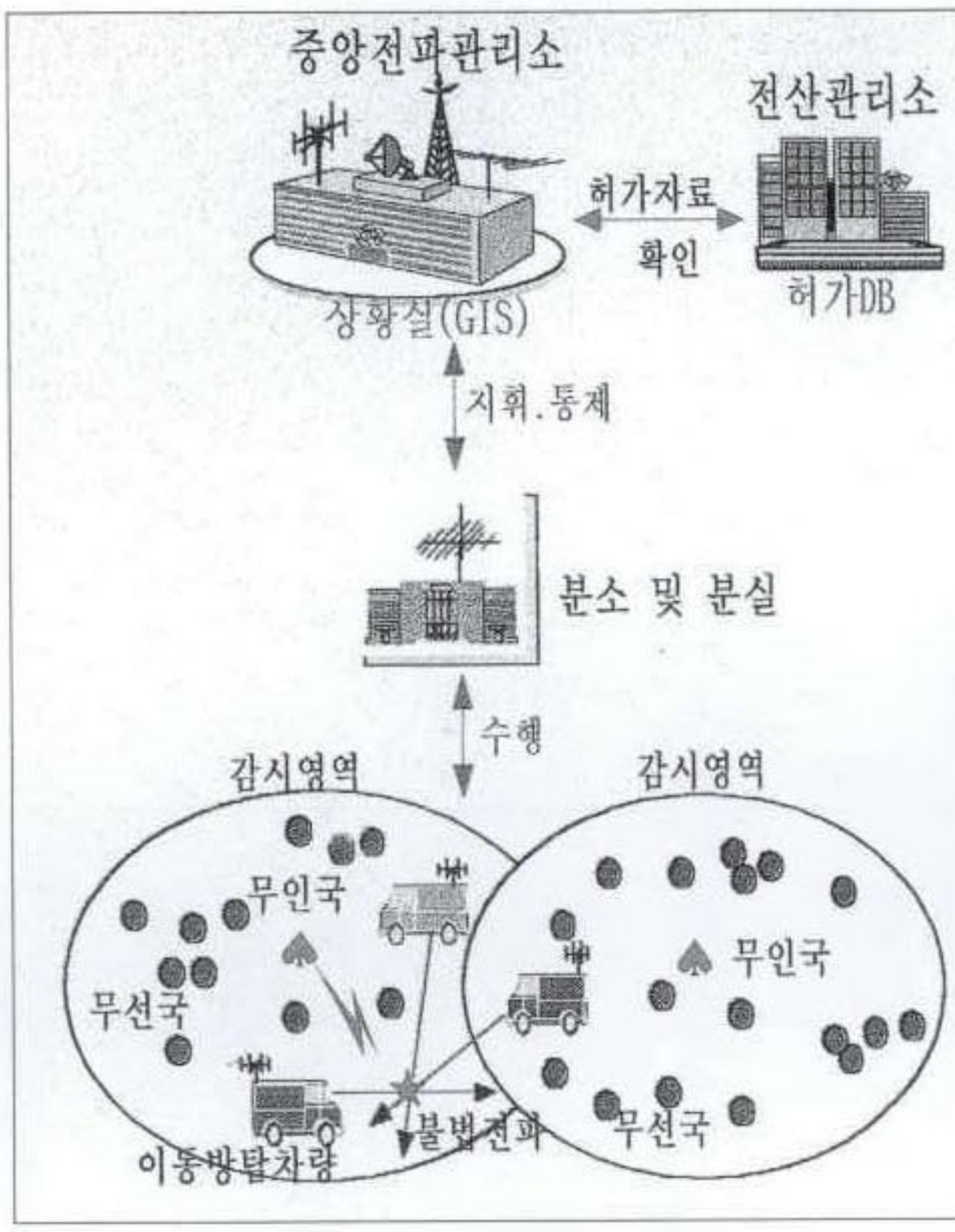

▲ 전파감시 지휘통제망 구성도

가. 목 적

전파감시지휘통제망 구축은 총괄국에서의 전국 종합전파감시망을 일괄제어하여 단일전파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긴급한 사항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1999년말 완료로 추진하고 있다.

나. 구축내용

○ 종합전파감시망 일괄제어

전국에 구축된 종합전파감시망 감시장비를 상황실에서 일괄 제어하여 전국적 감시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처리하고 처리시 GIS를 활용하여 도시함으로서 시각적 효율을 극대화하고, 일괄제어를 이용하여 전파 수신상태 및 불법전파를 탐색토록 구현하여 지역별 전파수신상태 및 불법주파수

에 대한 정보를 획득.

○ 긴급상황 처리

접수단계 : 상황에 대한 접수, 계통도에 의한 보고 및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단계로 정확한 상황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구현

처리단계 :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단계로 필요시 각 분소에 메시지 처리, 종합전파감시망 일괄제어, 이동방탐망 및 자동방탐망을 활용하여 신속한 조치가 가능토록 시스템 구현

완료단계 : 조치에 대한 처리결과를 수합하여 상황종료를 판단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감시업무 파악

중심국 또는 단말국에서 감시업무 수행시 품질감시 및 불법주파수 탐사대역을 자동보고 하도록 하여 평상시 감시업무를 파악하는 기능 구현

○ 방탐망 활용

방탐명령 및 결과를 수신할 수 있도록 구현함으로서 상황실에서 이동방탐망(V/UHF)과 연계운용을 추진하고 각 분소의 이동방탐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구현

자동방탐망(HF) 활용을 위하여 총괄국 터미널을 방탐운용실에 설치, 방탐명령 전달 및 방탐결과를 입력받아 처리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이 기능을 활용하여 분소에서 자동방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처리

○ 무선국 분포 현황 파악

GIS 지도상에 허가된 무선국 분포를 표시함으로서 전파감시 업무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지도상에 표시된 무선국의 제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통계현황

업무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지원하여 상황실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전산시설 관리

전국 종합전파감시망에 대하여 동일한 시간을 설정하고, 전산시설을 수시로 파악하여 장애발생 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정보 제공 기능

○ 자료관리(DB)시스템 변환 작업

총괄국, 중심국 및 단말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종합전파감시망 DB응용프로그램을 GUI환경으로 개선하고 기능을 보강

○ CS기동활동 사항

각 분소의 CS기동팀 일일 활동사항을 총괄국 DB에 입력하고, 상황실에서 전국 일일 활동현황 보고서 출력 및 상황판에 표시 기능

○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DB 구축

남한지역은 국립지리원(NGIS)의 1:5,000 수치 지도를 기본도로 활용하고 북한지역은 국방과학연구소 1:50,000 수치지도를 활용

고도데이터(DEM)는 30M 간격으로 국방과학연구소의 데이터를 변환하여 구축하고 무선국 분포 현황을 표시하기 위하여 대지번을 구축

○ 전파환경분석 기초자료

지형단면도 및 가시지역을 지형상에서 분석하여 감시업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

4. 지방관서 청사확보

가. 중앙전파관리소서울분소

서울분소는 2000년대를 향한 전파감시 장기종합계획(정보통신부 : 1988. 2. 13) 및 을지연습 1992계획('92. 7. 13)에 의거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의 V/UHF대 전파이용수요에 대비한 전파환경개선으로 국민복리를 증진하고 국제M/HF 외래방송파 침투를 방지하여 국내전파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서해안 개발에 따라 증가할 선박 · 항공기의 비상통신시 구난체계 구축, 무선통신 소통장애 요인의 신속한 제거로 국가 중요기간통신망 보호 및 국민불편사항 해소를 목적으로



▲ 선정된 부지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신축 청사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당시 서대문 우체국 4층에 위치하고 있던 사무소를 전파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125개소(서울시 21개소, 성남 외 주변도시 73개소, 경기도 31개소)의 후보지를 우리소에서 전파환경 등을 측정 조사하여 최초로 서울시 구로구 궁동, 서초구 원미동, 강동구 암사동 3개소가 최적지로 선정되어 전파환경조사(한국전파기술학회)를 마치고 청사부지선정보고를 하였으나, 본부의 재검토 지시가 있어 서울시 구로구 궁동 및 시흥시 당산동을 선정 현장답사를 거쳐 1994년 10월 28일 최종적으로 서울시 구로구 궁동이 선정되었다.

최적시 선정에 따른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어 연내 청사부지 확보가 시급하여 짐에 따라 청사부지 매입 추진계획에 의거 전담반을 편성하여 부지매입에 박차를 가하여 1994년 12월 30일 부지매입계약을 완료하여 지금의 청사부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부지매입 과정에서 여러 필지의 소유자가 전국에 걸쳐있었던 관계로 당시 담당자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았고, 해당부지에 심어진 관상수, 야채, 곡물 등 보상 관계로 민원인들과 마찰이 있었으며, 그중 한 사람이 이미 보상된 관상수를 다른 부지에 옮겨심고 2중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2차례 진정을 하였으나 당시 회계계장(정우섭)의 정확한 근거서류 등의 제시로 무고로 처리되었다.

또한 구로구 궁동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구로구청에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련기관의 전파감시시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당시 관리과장(한춘용)은 허가기관에서 요구한 서류외에 별도의 설명서를 작성하여 직접 설명하여 관계기관의 이해를 도모하였고, 가장 어려웠던 건설교통부와의 협의에서는 당시 본부 감리과장(강덕근)이 직접 전파감시시설의 설치 당위성 등을 설명하여 1995년 11월 27일 행위허가 승인을 받아 그해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오늘날과 같은 청사를 갖게 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특성상 일정면적(당시200㎡) 이하는 분할이 되



▲ 서울분소 청사준공

지않아 우선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착공한 구로구 궁동 117번지 소유자의 부지교환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제세공과금 납부 요구 민원 제기로 공사완료 후에도 계속하여 재산 처리가 어려웠고, 소유자의 형사고발 또는 소유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등 민원에 시달렸으나 당시 관리과장(김재휘), 회계계장(방종석)의 완벽한 법해석 및 논리 정연한 설득으로 민원인이 요구한 재산권침해에 따른 보상비 및 제세공과금 납부중 농작물 경작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는 인정하나 교환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제세공과금은 당연히 민원인이 부담하여야 된다는 결론으로 보상비만을 지급하고 3개년간 끌어왔던 토지교환 문제를 완료하였고, 진입로 설치에 따른 지적측량에 불만을 품은 116번지 토지소유자의 민원, 자기소유 부지로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고 건설교통부 소유 구거를 복개하여 사용함으로써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이익을 준다는 민원, 당초에 교환승낙을 하였던 115-1번지 소유자의 교환불응으로 진입로의 모습이 계획하였던 모습보다 상당히 울퉁불퉁하게 개설되었다.

이러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담당직원들의 확고한 의지와 해박한 업무지식을 앞세워 1997년 10월 30일 현대식 청사준공을 하게되었으며, 수도권 지역의 전파환경 개선 및 국가안보, 국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나. 중앙전파관리소전주분소

전북지역의 전파이용자 급증에 따라 전파통신의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전파감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 제14,927호(1996. 2. 22)에 의거 신설하게 되었으며, 당초 중앙전파관리소광주분소 전주분실로 전주우체국 4층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대통령령에 의하여 5급관서로 승격되어 1996. 4월 개소 후 단독청사가 없어 전주우체국(감시계, 기술계) 및 데이콤 전북지사(관리계, 조사계)



▲ 전주분소 청사전경(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전주과학산업 연구단지 내)

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청사시설 부족 및 분리로 인하여 전파감시업무의 수행이 원활하지 못함은 물론 현위치는 전북의 중심지역으로 고층건물, 도시잡음 등 고잡음 발생지역으로 전파감시 수행이 부적정하고 부지 공간부족으로 안테나시설 및 감시장비설치 불가로 중·단파대 국제전파 감시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유사시 중요감시시설 보호대책이 미흡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전주 과학산업 연구단지 2-3블럭)에 부지 13,582㎡(4,108평)를 매입 현대식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001평으로 1997년 12월 29일 착공하여 청사신축을 하게 되었으며, 1999년 12월중 완공으로 공사중에 있으며, 전주분소청사신축 부지는 전주우편집중국과 같은 지역에 위치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한국토지공사전북지사 및 완주군청과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전주 첨단 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함으로써 전파감시의 위상을 한층더 높여줌은 물론 전북지역의 전파 관리에 많은 영향을 줄것으로 기대된다.

다. 중앙전파관리소대구분소

대구분소는 부산분소 대구분실로 편재되어 있다가 전주분소와 같이 대통령령에 의하여 5급 관서로 승격되어 1996년 4월 개소하였으며, 대구·경북지역의 전파이용자에게 양질의 전파품질 제공 및 국민편익 위주의 전파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소 후 대구우체국 5층에 위치하고 있는 사무실을 청사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전파감시업무의 수행이 원활하지 못함은 물론 현위치는 대구·경북지역의 중심지역으로 고층건물, 도시잡음 등 고잡음 발생지역으로 전파감시 수행이 부적정하고 부지 공간부족으로 안테나시설 및 감시장비설치 불가로 감시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유사시 중요감시시설 보호대책이 미흡하여 전시 전파감시업무 수행불능으로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1429-7번지 일대에 12,792㎡

(3,870평)를 대구시로부터 공공용지를 매입(1998년 2월 16일)하여 단독청사부지를 확보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016평의 규모로 1998년 12월 18일 착공하여 2000년 7월 완공예정으로 공사하고 있다.



▲ 대구분소 청사조감도(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1429-7번지)

제 6 절 국민편익 위주의 전파행정 구현

I. 전파감시업무 사법경찰권 부여

전파이용의 활성화 정책으로 현대사회의 정보전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무선기기 이용이 빠른 속도로 늘어감에 따라 1990년에 23만 8천국에 불과하던 국내무선국수가 1994년 말에는 127만국을 넘어서 전파이용의 대중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전파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용자들의 나만 편리하면 된다는 이기심 때문에 법령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이들 불법사용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읍, 면 단위까지 전국적으로 증가되어 경찰, 소방, 방송 등 중요 통신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일반가정의 TV 시청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전파장애를 야기하였다.

그 동안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TV · 라디오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무선설비의 불법 · 변칙사용과 전자파 장애 및 형식검정미필 기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이들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고발, 과태료처분 등의 처벌을 강화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의 불법사용 등이 계속 늘어났다.

또한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현장 단속업무 수행과정에서 확인거부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아 이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1995년 1월 5일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국회 의결을 거쳐 개정됨



▲ 사법경찰관리증(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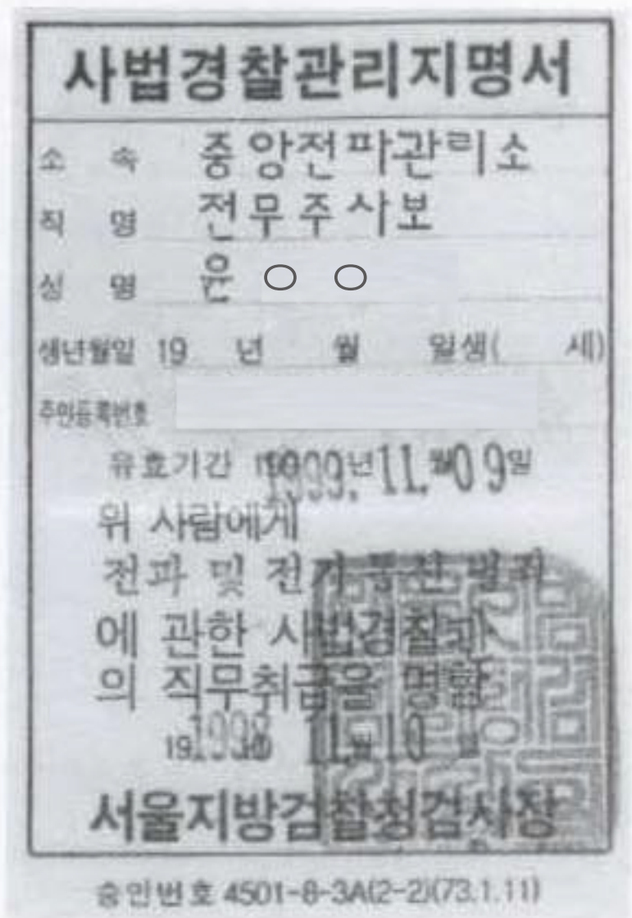

▲ 사법경찰관리증(후면)

에 따라 정보통신부와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에 근무하며 무선설비, 전자파 장해기기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기자재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법령을 준수하는 선량한 이용자를 적극보호하고, 법령위반자를 철저히 단속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전파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전파시설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단속활동의 내용은 불법전파설비(허가 받지 않은 무선국과 허가 받은 무선국이 전파설비를 허가 없이 임의 변경하여 변칙 운용하는 경우)와 검정 미필 기기(전자파장해 검정 및 무선설비형식검정)에 대한 단속 등이다. 불법 전파설비 단속에 대해 살펴보면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고주파 이용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령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하나 전파이용의 활성화에 비례하여 무허가 무선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허가 받은 무선국에서도 임의로 전파설비를 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중요통신망에 혼신을 주는 등 그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전파설비의 불법사용 유형을 보면,

첫째, 간이무선국은 형식검정을 받은 기기를 가지고 전국 주요 우체국에 신청만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무선국임에도 건설현장, 방범, 경비, 가스배달, 서비스업 분야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데, 이는 적발되는 무선국 불법무선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둘째,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고출력 무선전화기(코드 없는 전화기)를 건물 옥상 등에 안테나를 설치하여 일반 전화기와 연결되는 경우로서 지방 중소도시에서 많이 적발되고 있다.

셋째, 비닐가공이나 천막제조 등에 사용하는 공업용 고주파 설비를 허가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근의 TV 시청이나 무선전화기 사용 등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경우다.

넷째, 요즈음 취미활동으로 무선통신을 즐기는 아마추어국은 그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무전기를 개조하여 주파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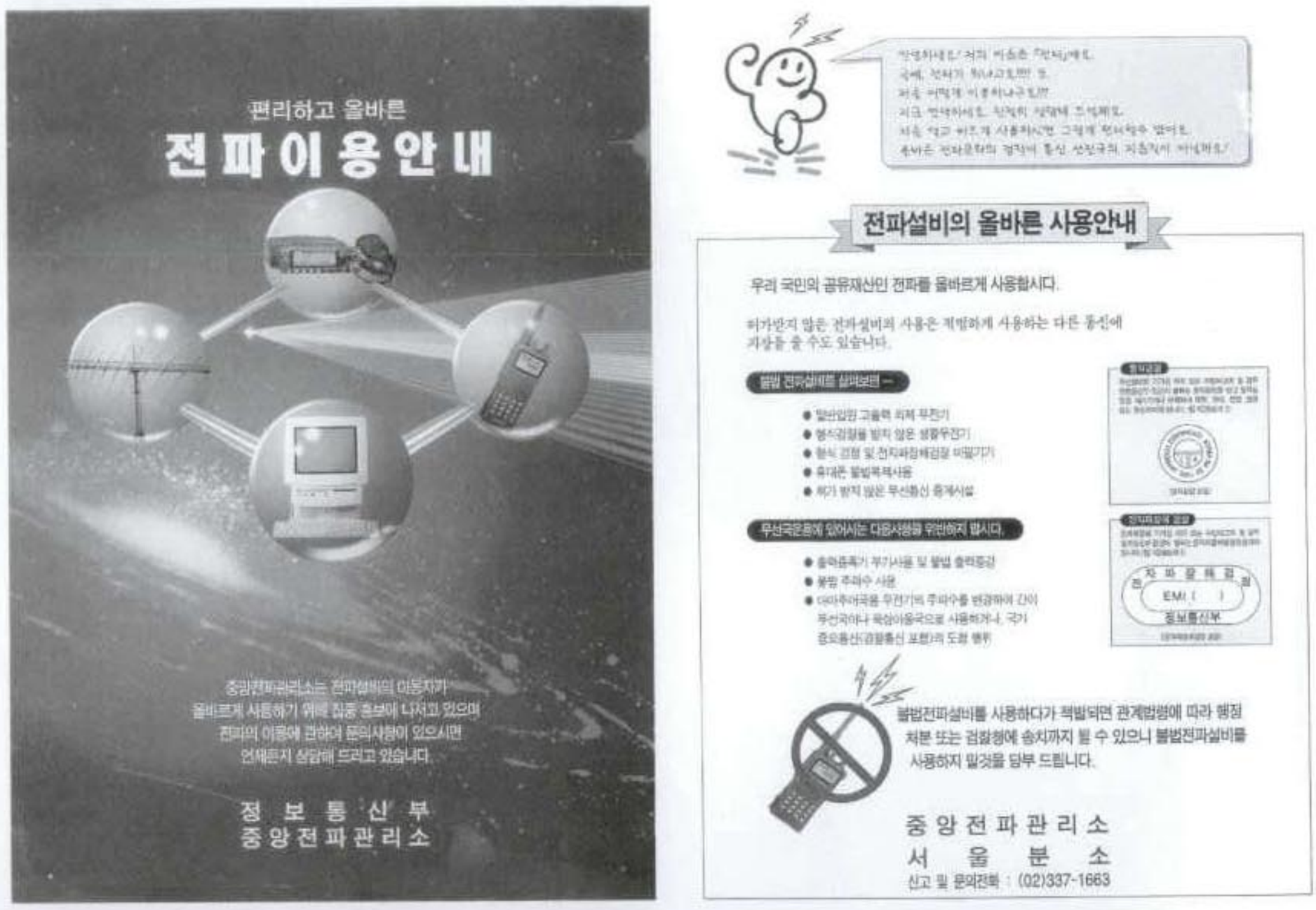

▲ 편리하고 올바른 전파이용안내 홍보물

를 확장하거나 증폭기를 부착하여 아마추어무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다. 또한 무선국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다른 통신에 혼신을 주는 등 전파질서를 문란케 하여 이것 또한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무전기에 증폭기를 부착하거나 공중선을 임의로 변경하여 출력을 높이는 행위, 차량에 설치할 수 없는 무선국을 설치하여 사용한다든가 설치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무전기의 주파수대를 확장하여 다른 무선국에 혼신을 주거나 엿듣는 행위 등이다.

그리고 검정 미필기기의 유통단속 내용을 보면 최근 전기 · 전자기기의 사용이 급증하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정보산업기기가 확산되면서 이들 기기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불요전파가 인체 또는 기기 상호간에 영향을 주어 전파환경을 위협하는 새로운 전파공해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자파로 인한 재해방지 및 보호를 위해 1990년 9월 전자파장해검정규칙을 제정하고 구내교환기, 퍼스널 컴퓨터 등 총 25개 품목의 대상기기를 선정하여 전자파장해검정을 실시(전파연구소)하고 있는데, 전자파장해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 · 진열 · 보관 또

는 운송한 자는 전파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며,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기기는 유통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전파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각종 전파 이용기기가 급증함으로써 정부에서는 인명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동가입 무선전화 장치 등 31개 기종을 무선설비 형식검정을 대상기기로 선정하여 형식검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검정대상 대상기기로 선정된 기기 중에서 형식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기기는 전자파 장해 검정기기와 마찬가지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

□ 연도별 송치건수

(단위:천원)

년도 \ 조치	송치
1995	287 (송치 45, 고발 242)
1996	7,273
1997	1,546
1998	12,598
1999. 8	63,704

2. 전파감시방법 전환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 전파의 탐사 · 색출 및 무선국에서 발사되는 전파에 대한 주파수 허용편차 등을 감시하는 전파 품질감시, 그리고 무선국이 법규를 준수하는지 또는 허가 받지 않고 운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무선국 운용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무선설비에서 발사된 전파가 다른 무선국의 정상 운용을 저해하는 혼신을 발생시키는 경우 혼신원을 색출해 제거하며 요즘같이 아파트 및 대형 건물이 많이 늘어나는 곳은 TV 시청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허가기관 · 건축주 · 민원인간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형식검정 합격 또는 형식등록을 하지 않은 무선기기나 전자파 적합 등록 미필 기기를 제작 · 수입 · 판매하는 행위를 조사 단속하며, 인접 국가와의 국제 혼신 조사 및 항공기나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국제 전파 감시활동도 하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런 전파감시를 위해 광대역수신기 · 품질측정장비 · 방향탐지기 · 연락통신장비 등 고정감시시설과 전파 사각지역의 효율적인 전파감시 및 단속을 위해 이동감시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전파 이용의 저변 확대 등 전파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의 인력 및 감시 방법으로는 효율적인 감시가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다. 이에 중앙전파관리소는 1998년 7월부터 전파감시 방법을 운용감시에서 불법 전파 및 품질감시 위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및 아마추어무선의 운용과 같은 개인적이고 취미활동을 하는 전파는 통신사업자나 당사자의 자율에 맡기고 그 대신 국가 주요 통신, 기간산업 및 인명 안전에 관한 중요한 전파를 집중적으로 감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질 높은 전파감시 체제를 구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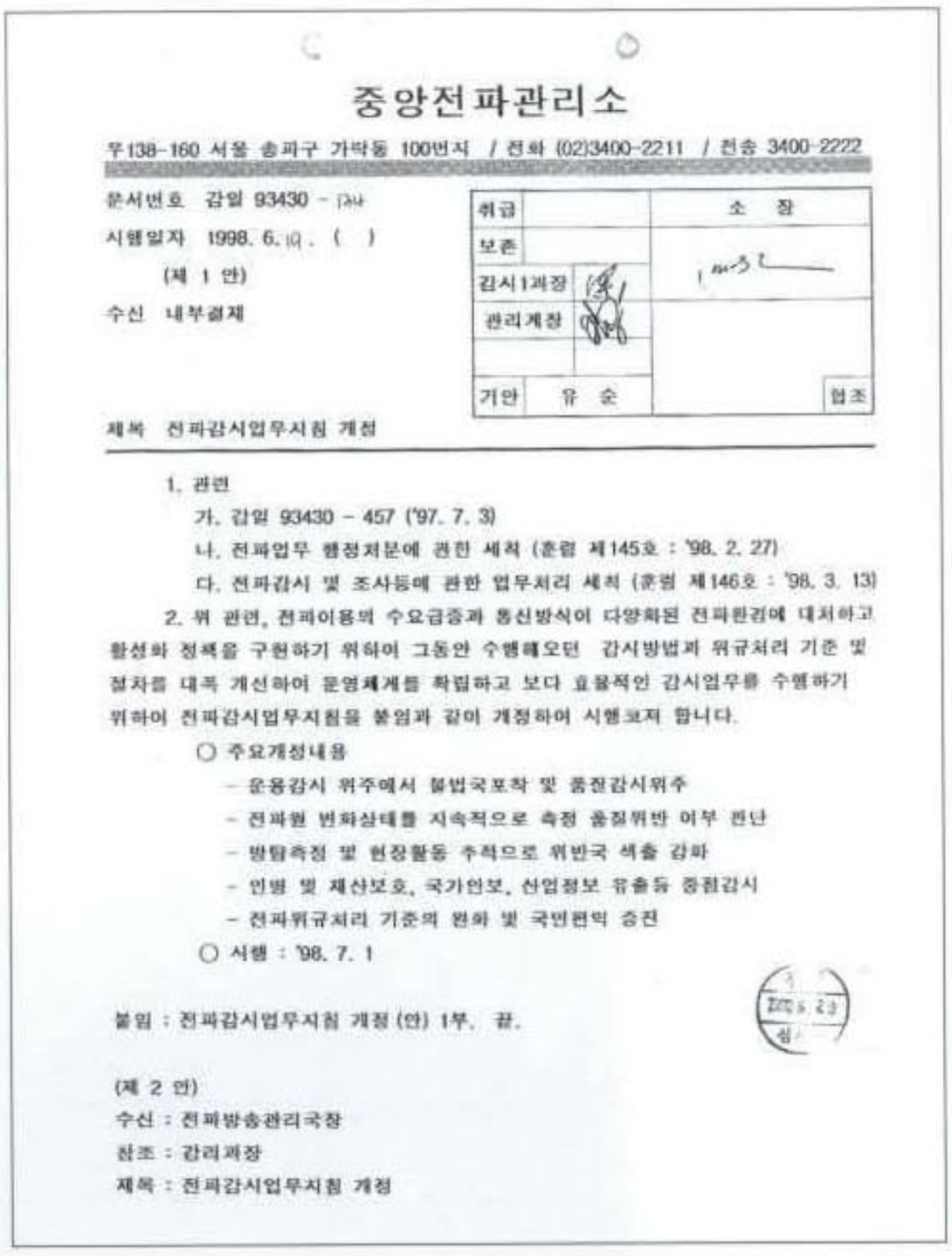

중앙전파관리소

우138-160 서울 송파구 가락동 100번지 / 전화 (02)3400-2211 / 전송 3400-2222

문서번호 감일 93430 - 기사
시행일자 1998. 6. 10. ( )
(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취급		소 장
보존		
감시1과장		
관리계장		
기안	유 순	협조

제목 전파감시업무지침 개정

1. 관련
가. 감일 93430 - 457 ('97. 7. 3)
나. 전파업무 행정처분에 관한 세칙 (훈령 제145호 : '98. 2. 27)
다. 전파감시 및 조사등에 관한 업무처리 세칙 (훈령 제146호 : '98. 3. 13)

2. 위 관련, 전파이용의 수요급증과 통신방식이 다양화된 전파환경에 대처하고 활성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행해오던 감시방법과 위규처리 기준 및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보다 효율적인 감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파감시업무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코저 합니다.

○ 주요개정내용
- 운용감시 위주에서 불법국포착 및 품질감시위주
- 전파원 변화상태를 지속적으로 측정 운영위반 여부 판단
- 방탐측정 및 현장활동 추적으로 위반국 색출 강화
- 인명 및 재산보호, 국가안보, 산업정보 유출등 중점감시
- 전파위규처리 기준의 완화 및 국민편익 증진

○ 시행 : '98. 7. 1

붙임 : 전파감시업무지침 개정(안) 1부. 끝.

(제 2 안)
수신 : 전파방송관리국장
참조 : 감리과장
제목 : 전파감시업무지침 개정

▲ 전파감시업무 지침 개정문서

3. 아마추어 자율감시 체제확립

최근 무선국의 증가 및 통신량의 급증에 따라 운용위규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으나 개인적이고 취미활동을 하는 아마추어와 같은 전파는 통신사업자나 당사자의 자율에 맡기고 아마추어국에 대한 감시는 자율지도위원의 지도 · 계몽에 의한 방법으로 개선하였다.

아마추어무선의 경우 1998년 10월 전국에 총 41명의 아마추어무선 자율지도위원을 구성하였고, 1999년 10월부터 18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현재 59명이 활동하고 있다. 자율지도위원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이사장의 추천에 의해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임명하며 자율적인 지도 · 계몽에 의한 방법으로 위반사항을 근절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 아마추어 무선국 허가 현황

(단위:국)

연 도 별	'93	'94	'95	'96	'97
국 수	9,348	15,861	25,385	35,171	45,708
증가율(%)	-	68	60	39	30

□ 아마추어 무선종사자 자격취득 현황

(단위:명)

구 분	'93	'94	'95	'96	'97
계	18,383	42,724	85,488	105,318	125,266
1급	253	265	648	697	768
2급	255	273	863	924	1,004
3급(전신)	468	769	2,467	2,800	3,156
4급(전화)	17,407	41,417	81,510	100,897	120,338

□ 전파운용위규 적발 및 조치현황

(단위:건)

구 분	계	적발(운용위반)				조 치	
		불요 통신	목적외 통 신	지정외 전파형식	불 법 주파수	시정, 경고	과태료
'93	9	2	5	-	2	7	2
'94	16	3	4	4	5	11	5
'95	21	4	11	-	6	15	6
'96	61	5	37	-	19	42	19
'97	36	16	4	-	16	20	16

가. 주요내용

아마추어 무선국의 전파운용위규 등이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여 한국아마추어연맹에서는 1991년부터 자체적으로 50명이내의 자율지도위원을 지명하여 자율지도 활동을 실시하였으나 지도위원의 권한부재와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관리 및 활용 상태가 유명무실하였다. 1998년 7월 1일부터 전파감시업무가 운용감시에서 불법 전파탐사 및 품질감시 위주로 전환, 개선됨에 따라 아마추어 무선국에 대한 운용감시는 아마추어 무선연맹에서 자율지도로 전환하였으며,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위촉한 자율지도위원이 지도, 계몽, 주의 촉구에 의한 방법으로 개선되었다.

나. 개선내용

○ 자율지도방법으로 개선실시

– 아마추어 무선국이 개인적인 취미활동에 목적을 두고 공개적으로 운용

– 아마추어 운용상 발생되는 전파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자율지도운영 지침제정으로 중앙전파관리소장에 의해 위촉된 자율지도위원의 지도, 계몽, 주의 촉구에 의한 방법으로 개선실시

○ 자율지도위원 위촉

–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연맹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자율지도위원을 위촉

– 각 분소별 5명이내 (대학 단체국 회원 포함)

○ 자율지도내용 개정

– 아마추어 무선국 운용 준수사항

– 아마추어 통신을 저해하는 교신내용 및 품위손상 행위

– 아마추어 무선국 운용상 발생되는 분쟁

– 아마추어국 운용상 발생되는 전파법령위반 사항

○ 자율지도 결과처리

– 자율지도 활동실적을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실적은 자율지도위원별로 작성)

– 자율지도위원이 지도가 이행되지 않는 전파법령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중앙전파관리소장 관할분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조치는 전파감시업무 지침에 의거 처리



▲ 아마추어 무선 자율지도에 대한 감사장 수여장면

다. 기타사항

1998년 10월 1일부터 아마추어 자율지도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각 분소는 연맹 지부와 협의하여 아마추어 자율지도위원 간담회를 반기 1회씩 실시키로 하였고 자율지도위원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소장이 이를 표창하거나 정부 포상 등을 추천키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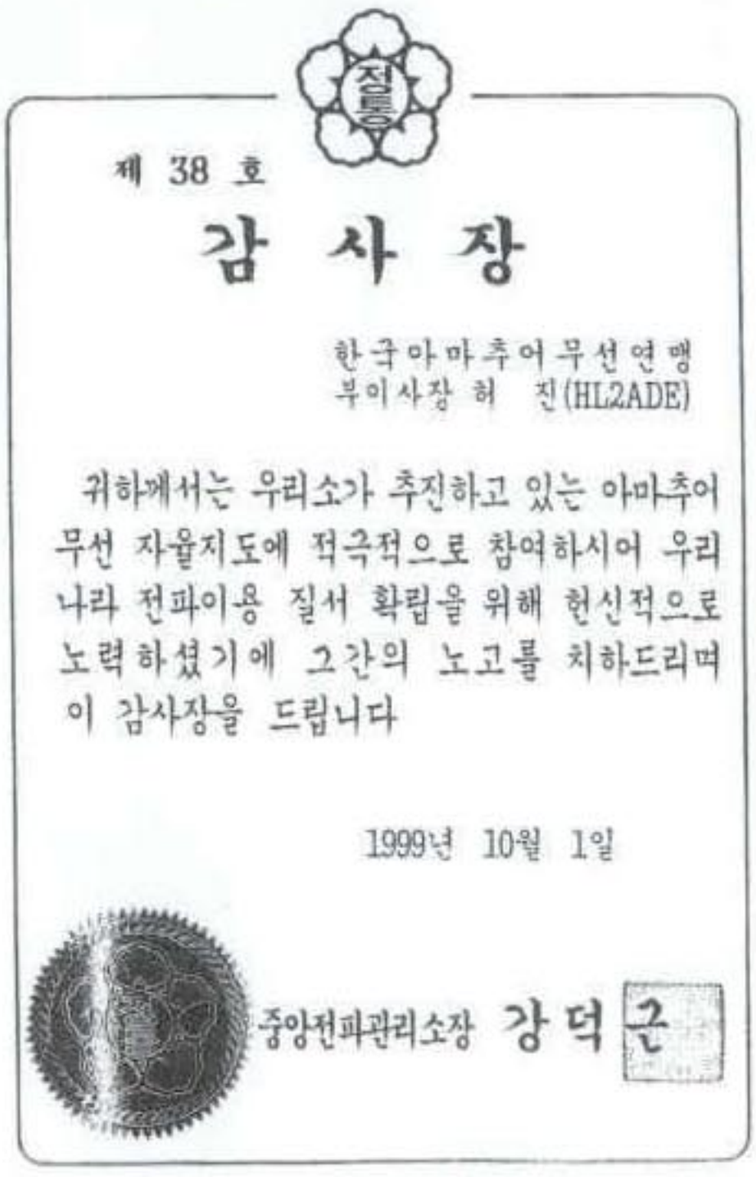

제 38 호

감 사 장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부이사장 허 진(HL2ADE)

귀하께서는 우리소가 추진하고 있는 아마추어 무선 자율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우리나라 전파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셨기에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1999년 10월 1일

중앙전파관리소장 강덕근

▲ 아마추어 무선 자율지도 감사장

4. 전파민원혁신을 위한 "CS기동팀" 발족

전자통신산업의 발달, WTO 체제 출범에 의한 통신시장의 개방, GMPCS 등장에 따른 범세계적 통신 범위 확장 등에 따라 정부는 전국민이 편리하게 전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파이용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산업통신, 재해 및 물류이동 등의 통신수단이 추가 확대 보급됨으로써 전파의 이용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최근 무선통신을 이용한 셀룰러, PCS 가입자의 급증으로 특정 주파수대역의 밀집현상이 가중되고 있으며, 허가 없이 사용되는 소출력 단말기의 다양화 · 대량 생산으로 인접주파수 상호간 혼신 또는 간섭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전파환경의 악화가 예상되며, 주파수 대역의 포화상태에 의한 통화품질 저하, 상호혼신, 수신장애 등으로 인한 전파이용자의 불편사항도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조금도 불편 없이 전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CS(Customer Satisfaction) 기동팀"을 발족하여 24시간 민원접수를 시행하고 전 직원에 대한 과감한 의식개혁을 단행하는 등 날로 달라지고 있는 전파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범국민적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통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초일류 전파행정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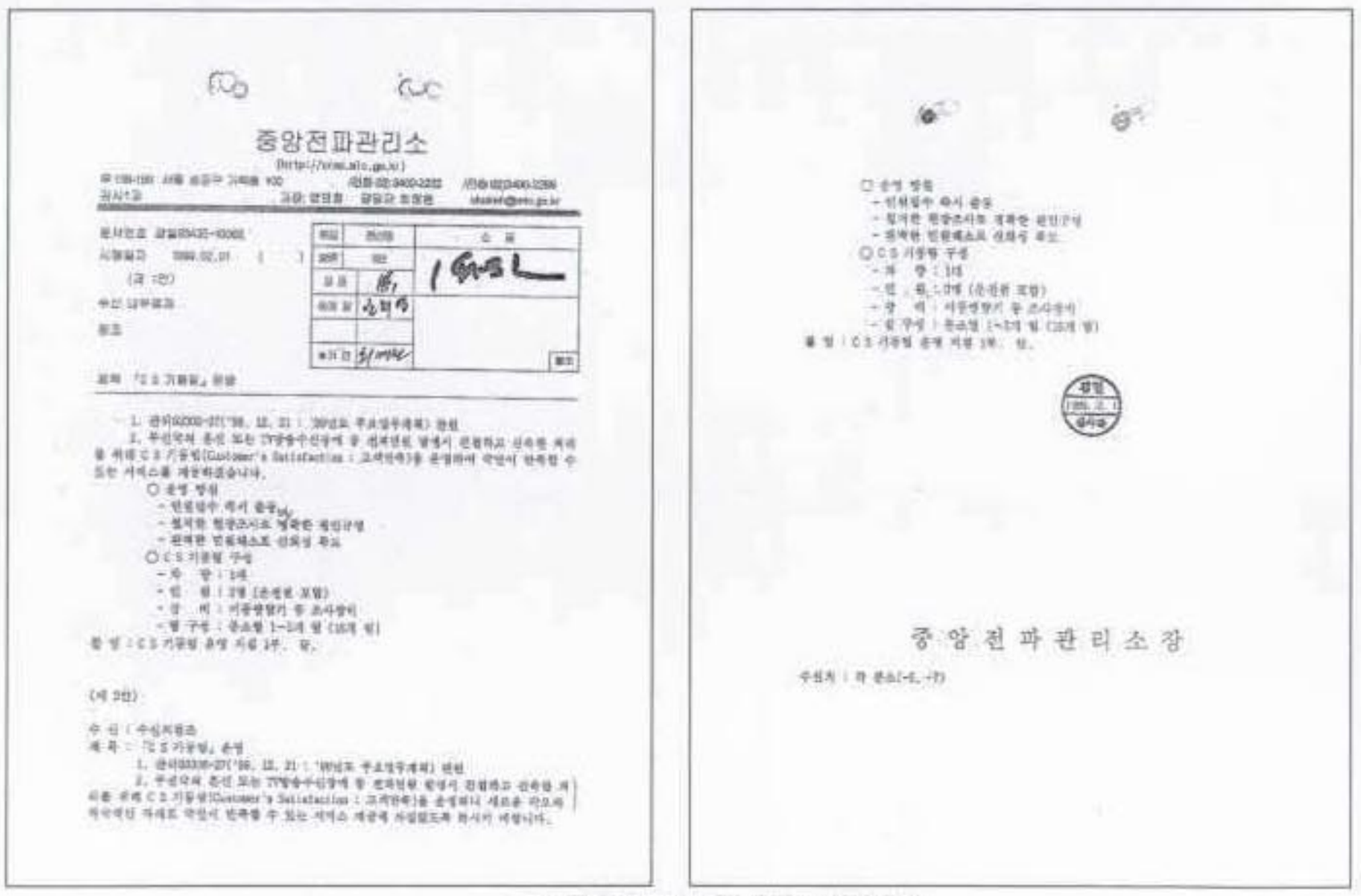
중앙전파관리소

(http://www.rrc.go.kr)

시행일자 1999.02.01 ( )

(국 · 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제목 「C S 기동팀」 운영

1. 관리6200-27('98. 12. 21 : '99년도 주요업무계획) 관련

2. 무선국의 혼신 또는 TV방송수신장애 등 전파민원 발생시 신속하고 친절한 처리를 위해 C S 기동팀(Customer's Satisfaction : 고객만족)을 운영하여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운영 방침

- 민원접수 즉시 출동
- 철저한 현장조사로 정확한 원인규명
- 친절한 민원해소로 신뢰성 확보

○ C S 기동팀 구성

- 조 장 : 1명
- 팀 원 : 2명 (순번별 보임)
- 장 비 : 이동방송차 등 조사장비
- 팀 구성 : 중소형 1~3개 팀 (10개 팀)

붙 임 : C S 기동팀 운영 지침 1부. 끝.

(세 2인)

수 신 : 수신처참조

제 목 : 「C S 기동팀」 운영

1. 관리6200-27('98. 12. 21 : '99년도 주요업무계획) 관련

2. 무선국의 혼신 또는 TV방송수신장애 등 전파민원 발생시 신속하고 친절한 처리를 위해 C S 기동팀(Customer's Satisfaction : 고객만족)을 운영하니 새로운 마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 방침

- 민원접수 즉시 출동
- 철저한 현장조사로 정확한 원인규명
- 친절한 민원해소로 신뢰성 확보

○ C S 기동팀 구성

- 조 장 : 1명
- 팀 원 : 2명 (순번별 보임)
- 장 비 : 이동방송차 등 조사장비
- 팀 구성 : 중소형 1~3개 팀 (10개 팀)

붙 임 : C S 기동팀 운영 지침 1부. 끝.

중앙전파관리소장

수신처 : 각 본소(국, 과)

▲ CS기동팀 발족 및 운영 관련문서

가. 전파이용의 증가

우리나라 무선국 수의 증가 요인은 산업사회의 발달과 함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정보 전달의 욕구가 증가하고, 통신의 개인화 및 대중화, 소형화를 가능케 한 무선통신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1990년대 중반 이후 셀룰러와 PCS 등 이동전화가입자의 폭발적 증가에 힘입어 급속히 증가하여 왔으며, 이동전화를 중심으로 한 육상이동국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무선 LAN, 도난자동차 추적, 자동차 원격시동 장치 등 국민 생활 곳곳에서 전파의 사용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이동전화가입자의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나 WLL, IMT-2000 등 신규 첨단 무선통신서비스의 지속적 도입으로 가입자 단말기를 중심으로 이동 및 고정무선국 수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년도별 무선국 증가현황

(단위:국)

무선국종	'94	'95	'96	'97	'98
고 정 국	3,053	3,066	3,113	3,327	3,385
방 송 국	1,685	1,758	1,826	1,450	1,444
해 안 국	99	98	119	124	121
기 지 국	7,774	9,529	10,271	51,978	63,995
선 박 국	16,318	17,230	17,920	17,767	17,256
항 공 기 국	246	269	295	319	320
육상이동국	1,073,001	1,768,260	3,327,920	7,646,382	14,600,108
아마추어국	15,861	25,385	35,171	45,400	51,425
간이무선국	144,480	175,433	208,036	229,541	209,129
기 타	8,638	20,743	7,477	9,198	37,692
합 계	1,271,155	2,021,771	3,612,148	8,005,486	14,984,875

나.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전파법에 의한 정당한 허가 · 신고없이 불법으로 무선설비를 사용하거나 형식검정 · 형식등록 또는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지 않고 유통하는 경우와 무선기기의 기능을 불법으로 변경하여 품질이 변하거나 불필요한 전파가 발사됨으로써

전파설비 이용자와 국민생활 편익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파이용 질서 확립에 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불법사례 유형별로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고출력 외국산 생활무전기를 가정에서 사용하여 인근 지역의 FM라디오, TV 등에 수신장애를 일으키며 자동문의 고장을 유발하고, 아마추어 무선장비를 허가 없이 불법으로 개설하여 운용하거나 원거리 통신을 위해 증폭기를 설치하여 경찰서나 소방서의 중요무선통신에 혼신을 초래하고,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주파수를 임의로 확장하여 중요통신망을 도청하여 정보를 도용하다 적발되는 사례 이외에도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형식검정 · 등록, 전자파적합등록 미필기기를 유통,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사법조치나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 년도별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적발 현황

(단위:건)

년 도 별	'94	'95	'96	'97	'98
불법무선국	5,010	5,759	5,537	7,520	4,761
불법유통(점)	13,117	3,328	7,271	1,885	13,562
변 칙 운 용	623	661	502	767	713
혼 신 유 발	260	234	188	225	227
계	19,070	9,982	13,498	10,397	19,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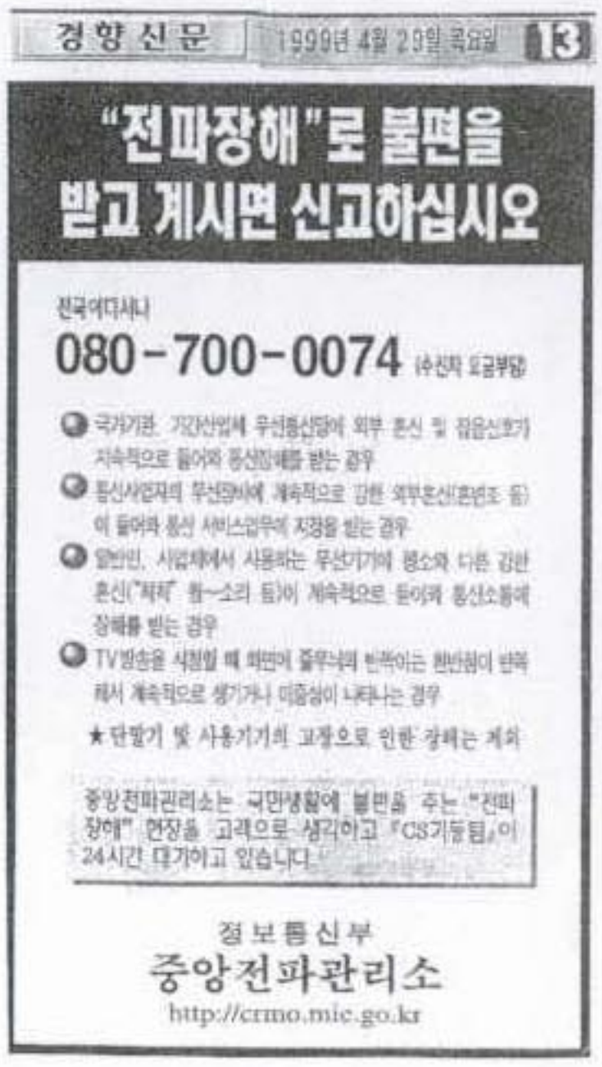
경향신문 1999년 4월 29일 목요일 13

"전파장해"로 불편을 받고 계시면 신고하십시오

전국어디서나
080-700-0074 (수신자 요금부담)

- 국가기관, 기간산업체 무선통신망에 외부 혼신 및 잡음신호가 지속적으로 들어와 통신업무를 방해 받는 경우
- 통신사업자의 무선망에 계속적으로 강한 외부혼신(혼변조 등)이 들어와 통신 서비스업무에 지장을 받는 경우
- 일반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무선기기에 평소와 다른 강한 혼신("찌직" 튐-소리 등)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통신소통에 장해를 받는 경우
- TV방송을 시청할 때 화면이 줄무늬와 반짝이는 현상이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생기거나 이중상이 나타나는 경우

★단말기 및 사용기기의 고장으로 인한 장해는 제외

중앙전파관리소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전파장해" 현장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CS기동팀』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http://crmo.mic.go.kr

▲ CS 활동 대국민 홍보물

다. 쾌적한 전파환경 제공

CS(Customer Satisfaction)기동팀이란 "무선국을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전파장해를 받고 있는 현장이 바로 우리의 고객이라는 인식하에 붙여진 명칭"으로 과거의 권위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을 "행정의 고객"으로 바라보고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CS활동의 핵심은 불법무선설비 사용에 따른 정상적인 통신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고객 중심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만족"과 "전파이용 신뢰성 회복"을 서비스의 최고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 신고접수 즉시 출동 ▲명확한 원인규명 ▲ 완벽한 민원해소라는 3가지 목표를 갖고 금년 1월 1일부터 근무시간 중은 물론 휴일 및 야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전파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다.

CS기동팀의 서비스업무는 ▲ 혼신조사 · 제거 ▲ TV방송수신장애 조사로 크게 2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무선호출 통신용 중계기의 불량으로 국가 경호통신망에 "칙칙"하는 잡음이 유입되어 국가 주요통신망에 혼신을 유발하거나, 경찰통신망에 통신사업자 기지국과 인접한 방송국 주파수간의 상호간섭으로 혼신을 야기시키고, 무선호출 기지국의 장비 노후로 불필요한 전파가 발생하여 가정집 TV, PC 화면에 줄무늬나 흰점 또는 이중화면이 심하게 나타나며 다른 음성이 들리고 CD플레이어가 오작동되는 경우로서 화재발생시 소방차나 인명구조를 위한 119구급대 출동과 같이 전파민원 신고시 "혼신장애 응급처치를 위한 CS기동팀"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장애원인을 즉시 제거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사후 전파관리 업무이다.



▲ TV에 전파장애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

후자는 다른 전파장해로 TV 시청이 곤란하거나 아파트 및 고층건물 신축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TV 시청에 장애(단, 수상기 고장, 전원, 케이블 단선 등은 제외)를 받는 경우로 다시 구분되어진다. △전파장해로 인한 TV 시청 장애사항은 CS기동팀에서 직접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아파트 및 고층건물로 인한 TV 시청 장애는 민원인이 시 · 군 · 구청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건축물허가기관장의 협조요청에 의하여 CS기동팀이 출동하여 방송수신시설의 상태, 장애범위, 장애원인 등을 조사한 후 허가기관, 건축주, 민원인간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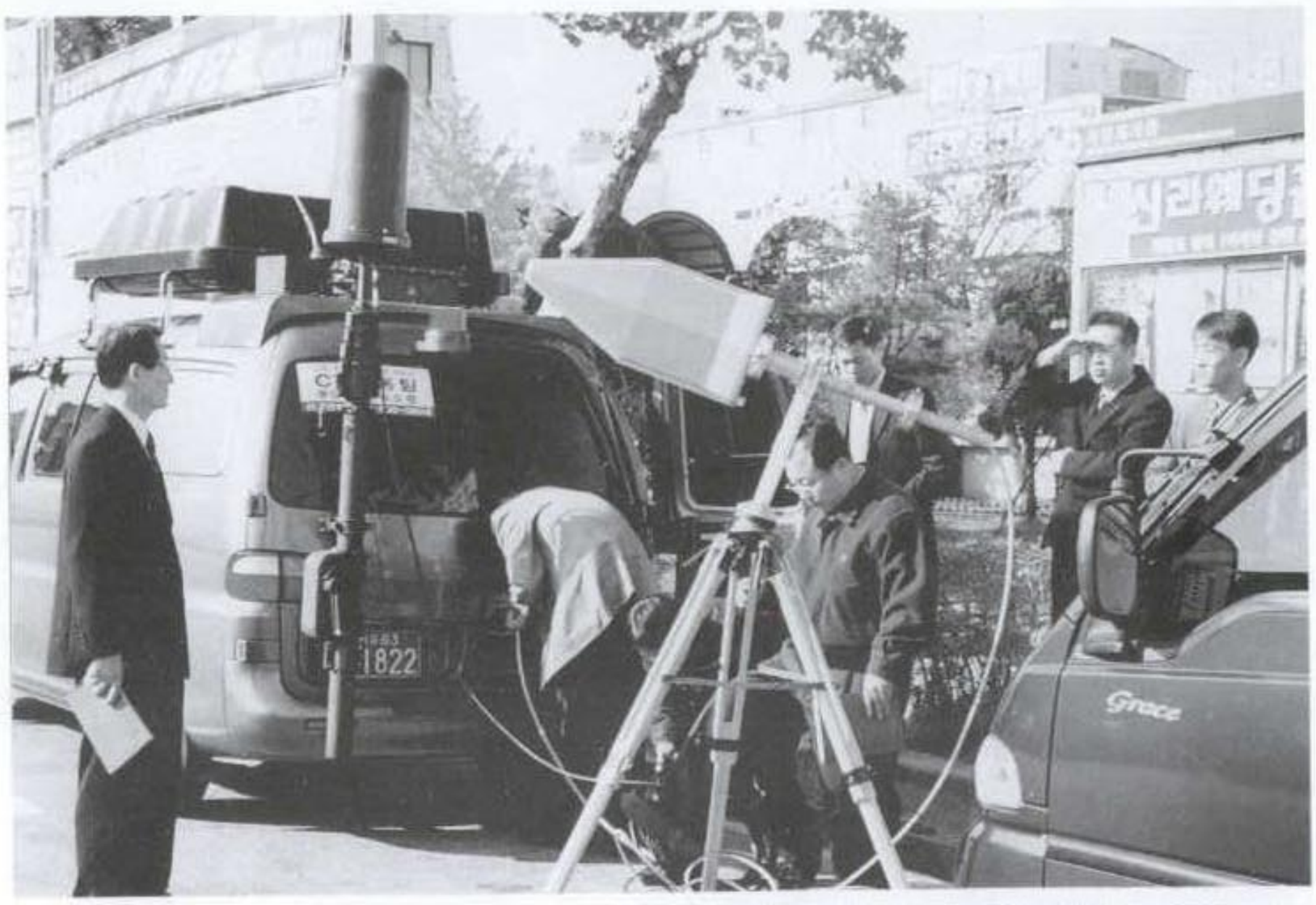

▲ 전파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출동하여 방해전파를 탐지하는 모습

전파민원 발생에 대하여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에 정한 처리기간(10일)에도 불구



▲ 전파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출동하고 있는 CS 기동차량

하고 신고접수 즉시 처리가 가능토록 조사요원 71명으로 전담요원을 편성하여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와 의식개혁 교육을 통한 시민봉사 공직자의 자세를 확립하였으며, 전파품질측정장비, 휴대용 전파추적장비 등 첨단 조사장비를 탑재한 전용차량을 확보함으로써 신속한 혼신제거로 쾌적한 전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는 고객만족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하나의 번호로 민원인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파 공공질서를 지킵시다" 라는 의미로 "080-700-0074(공공질서)" 수신자 요금부담 전용전화를 설치하였으며, 로고(표어)를 제작하여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전국 어디에서나 민원인이 편리하게 신고·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설문서를 통하여 전파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민원이용 불편요인을 발굴, 개선함으로써 최고의 전파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CS기동팀은 각 도별로 1~3개팀씩 모두 8개 분소에서 16개팀이 지역별 전담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전파이용도가 많은 밀집지역에 대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각 분소별 관할 범위는

▲ 서울분소는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권	▲ 부산분소는 부산 · 울산광역시 · 경남권
▲ 광주분소는 광주광역시 · 전남권	▲ 강릉분소는 강원권
▲ 제주분소는 제주도 전역	▲ 대전분소는 대전광역시 · 충청권
▲ 대구분소는 대구광역시 · 경북권	▲ 전주분소는 전북권역이다

한편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무선기기,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전자 · 정보기기류 수입에 대한 통관절차가 우선 통관 후 사후 관리체제로 개선됨에 따라 검인증 미필기기 및 전자파적합 미등록 제품 등 불량전파설비의 대량반입에 의한 유통질서 문란이 예상되므로 수입 · 제작 · 유통업체 및 이용자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활동과 불법무선 설비를 이용한 고의적인 통신방해에 대한 단속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전파이용환경 보호에 주력할 것이다.

5. 전파감시시설 Y2k 문제해결

컴퓨터 보급초기에 하드디스크와 메모리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연도표기를 4자리 중 마지막 2자리만 인식토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설계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로서 연도관련 오류 및 오동작 현상을 2000년대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오류 및 오동작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을 파악하여 2000년대 이전에 문제를 해결함.

가. 대상시설

정보시스템

비정보시스템

- ○ 주전산기 : 7대
- ○ Workstation : 9대
- ○ 장비제어용 PC : 145대
- ○ 응용프로그램 및 DBMS
- ○ 감시장비류 29종(181대)
- ○ 측정기류 : 57종(124대)
- ○ 신호발생기류 : 7종(21대)
- ○ 네트워크장비류 : 2종(19대)
- ○ OA용 PC : 20종(406대)

나. 추진일정

- ○ 1998. 4. 10 : 2000년 문제 전담반 구성(감시1과장 외 4명)
- ○ 1998. 4. : 정보시스템 장비납품 및 프로그램 개발사에 의해 Y2k



▲ 전파감시시설 Y2k 종료 시연회(1999년 7월 16일)

문제 조사

○ 1998. 4. 10 : 본부 및 한국전산원과 합동으로 정보시스템 Y2K 문제 조사

○ 1998. 7. 20 : 정보시스템 Y2k 문제 종합대책 수립

○ 1998. 9. 18 : 정보시스템 Y2k 문제해결 비상계획 수립

○ 1998. 11. 10 : 비정보시스템 Y2k 문제 종합대책 수립

○ 1999. 6.30 : 정보 및 비정보시스템 Y2k 문제 추진 완료

다. Y2k 문제점

○ 정보시스템

– 종합전파감시망

· 중심국 주전산기(Ticom Ⅱ) 윤년 처리 안 됨 : 3대

· 단말국 주전산기(Workstation) 윤년 처리 안 됨 : 9대

· 허가무선국 DB의 연도표기가 2자리수로 되어 있음.

– 특별감시 분석망

· 주전산기(K-100) 2000년 표기 및 윤년 처리 안 됨 : 1대

· 응용프로그램 2000년 지원 안 됨.

– 자동방탐망

· 방탐업무용 PC(386, 486급)에서 2000년 지원 안 됨 : 3대

○ 비정보시스템

– 표준신호 발생기(FTS-4060) : 1대

· 2000년 표기 및 윤년 처리 안 됨.

– 데이터 회선측정기(NP-7050) : 7대

· 2000년 표기 및 윤년 처리 안 됨.

– 녹음기(CMNR-9X 시리즈) : 84대

· 2000년 표기 안 됨.

– M/W 스펙트럼분석기(HP-8563E) : 6대

· 자체확인 불가

· 장비 제작사에 문의한 결과 Y2k문제 있음을 통보 받음.

– 라우터(CISCO4000/2501) : 19대

· 날짜 입력기능이 없어 자체 확인 불가

· 장비 제작사에 문의한 결과 Y2k문제 있음을 통보 받음.

– OA용 PC : 62대

· 486급 이하의 PC에서 2000년 표기 및 윤년 처리 안 됨.

라. 문제해결

○ 종합전파감시망

– Ticom-II

· 추진내용 : Y2k PATCH 프로그램 설치 완료

· 추진기간 : 1998. 11 ~ 12(2개월)

· 추진업체 : 삼성전자

– Workstation

· 추진내용 : O/S 프로그램을 상위 버전으로 Upgrade 완료

· 추진기간 : 1999. 1 ~ 2(2개월)

· 추진업체 : 삼성전자

– 종합전파감시망 허가DB

· 추진내용 : 연도표기 자릿수를 2 → 4자리로 확장 완료

· 추진기간 : 1998. 10 ~ 1998. 12(3개월)

· 추진업체 : 데이콤(본부추진)

○ 특별감시분석망 및 자동방탐망

– K-100 및 방탐용 PC

· 추진내용

–K-100에서 GP5000으로 교체 완료

–486급 PC에서 586급 PC로 교체 완료

· 추진기간 : 1999. 1 ~ 1999. 6(6개월)

· 추진업체 : LG LCD

· 소요예산 : 2억 3백만원

– 분석망 및 방탐망 프로그램



▲ 전파감시시설 Y2k 종료 시연회 설명 모습

· 추진내용 : 운용프로그램 새로 개발 완료
· 추진기간 : 1999. 1 ~ 1999. 6(6개월)
· 추진업체 : LG LCD
· 소요예산 : 9천 9백만원

○ 비정보시스템

– 표준신호 발생기

· 추진내용 : 제어용 PC에 Y2k Patch 프로그램 설치 완료
· 추진기간 : 1998. 12월
· 추진업체 : 삼성전자

– 데이터 회선측정기

· 추진내용 : 제작업체에서 제공한 Upgrade된 O/S Disk를 분소에 배포 · 설치 완료
· 추진기간 : 1999. 1월
· 추진업체 : 매크로시스템즈

– M/W 스펙트럼분석기

· 추진내용 : O/S를 상위 버전으로 Upgrade 완료
· 추진기간 : 1999. 2월
· 추진업체 : 한국 HP

– 라우터(CISCO 4000)

· 추진내용 : O/S를 상위 버전으로 Upgrade 완료
· 추진기간 : 1999. 1 ~ 2(2개월)
· 추진업체 : NSI

– 라우터(CISCO 2501)

· 추진내용 : 플래쉬 메모리 교체 후 O/S를 상위 버전으로 Upgrade 완료
· 추진기간 : 1999. 2 ~ 3(2개월)
· 추진업체 : NSI
· 소요예산 : 2백만원

– 녹음기(CMNR-9X 시리즈)

· 추진내용 : 장비 제작업체에서 ROM을 제작후 O/S를 상위 버전으로 교체 완료

· 추진기간 : 1998. 11 ~ 1999. 6(8개월)

· 추진업체 : 정진전자, 세양전자

- OA용 PC

· 추진내용 : PC 제작업체에서 제공하는 Y2k Patch프로그램 배포 및 설치 완료

· 추진기간 : 1999. 3월

· 추진부서 : 감시 1과 전산계

마. 자체검증 결과

○ 종합전파감시망

- 시스템 날짜를 2000년도로 셋팅 후 프로그램이 정상 수행되는지 확인한 결과 이상 없음.
- 임의의 전파감시 자료를 프로그램상에서 입력하여 DB에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등록 · 조회되는지 확인한 결과 이상 없음.

○ 특별감시 분석망

- 시스템 날짜를 2000년도로 셋팅 후 감청좌석 운용프로그램이 정상 수행되는지 확인한 결과 이상 없음
- 임의의 전문을 작성하여 DB에 정상 등록되었는지와 전문이 정상적으로 전송 되었는지 확인한 결과 이상 없음.

○ 비정보시스템

- 시스템의 날짜를 수동으로 셋팅하여 2000년 1월 1일 및 2000년 2월 29일로 변환하는지 확인한 결과 이상 없음.
- 날짜를 수동 셋팅 후 장비의 동작이 정상 수행되는지 확인한 결과 이상 없음.

바. Y2k 종료 시연회 개최

○ 일　시 : 1999. 7. 16(금)

○ 장　소 : 중앙전파관리소 대회의실

○ 참석대상 : ETRI, DACOM, LG LCD, 중앙전파관리소

제 7 절 2000년대 전파감시 인프라 구축

I. 위성전파감시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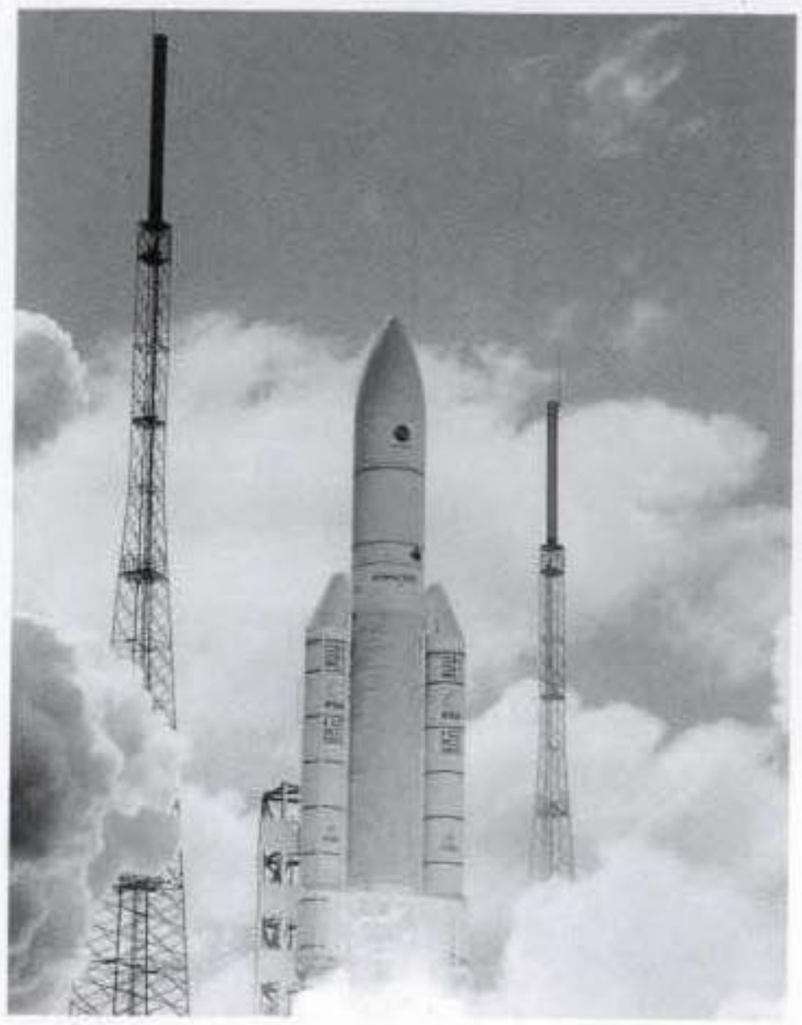

▲ 인공위성 발사장면

가. 위성전파감시센터 설립

아 · 태지역의 위성발사 증가에 따른 한반도 상공의 국내외 위성전파를 측정하고 위성망의 혼신과 간섭현상을 막고, 국내 위성과 지상의 전파환경 보호를 위한 "위성전파감시센터" 설립이 추진 중이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2005년까지 아 · 태지역에 약 70개 정도의 정지궤도 위성이 발사될 것으로 보고, 외국 일부위성이 출력을 높이거나 불법전파를 발사하는 것에 대비해 약 2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위성전파감시센터를 설립, 오는 2001년 10월 개소할 계획이다.

위성전파감시센터는 경기도 이천에 설립되며, 감시대상위성은 동경 55도~서경 160도에 있는 정지궤도위성이며, 대상주파수는 L(1.5㎓대), C(4㎓대), X(7㎓대), Ku(12㎓대), Ka(18㎓대)밴드의 하향회선 주파수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지궤도위성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등록한 대로 전파를 발사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게 된다.

위성전파에 대한 감시는 이미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70년대 말부터 정부기관에서 위성전파감시소를 구축해 운용하고 있으며, 1998년 11월에 일본에서 우주전파감시소를 개소하였고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위성감시센터를 운용하는 나라가 된다.

이처럼 전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모두가 공유하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것이다.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촉진과 전파질서 확립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전파환경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1세기 새로운 전파문화 창달을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7월23일 목요일

한국일보 27

위성전파 감시센터 세운다

▲ 위성전파 감시센터 설립 보도자료

나. 국제위성 엑스포 참석

위성전파감시센터의 기능과 역할 홍보 및 위성전파이용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을 위해 1999년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여의

도 중소기업종합전시관에서 열린 '99위성통신 · 방송우주산업 박람회('99 Satellite Expo)에 참가하였다.

박람회는 21세기 위성시대를 대비하는 위성통신 · 방송사업 및 우주사업 분야를 총망라하는 행사이며 국내에서는 처음 열리는 행사로서 50여 위성산업관련 기업뿐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참여하였으며, 위성발사체 분야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소 아리랑 위성 실물모형, 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 우리별 3호 위성 실물모형과 전송수신상황 시연, 통신방송시스템분야는 한국통신에서 위성멀티 미디어서비스 시연, 위성응용서비스 분야는 스카다엔지니어링에서 오브컴 인공위성 데이터 통신단말기, 위성관제 분야에서는 정부기관으로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위성전파감시 시스템 및 시연 프로그램을 전시하여 관람객이 위성전파감시 운용 S/W를 직접 운용하고 위성체 및 혼신전파를 추적할 수 있도록 전시하여 관람객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99위성통신 · 방송우주산업 박람회는 통신위성 · 우주산업연구회(KOSST), 한국통신학회(KICS), 한국전자파학회(KESS)가 주최하고 정보통신부가 후원하였으며 3일간 8천여명이 관람하였다.



▲ '99 Satellite Expo에 참가하여 우리소 전시품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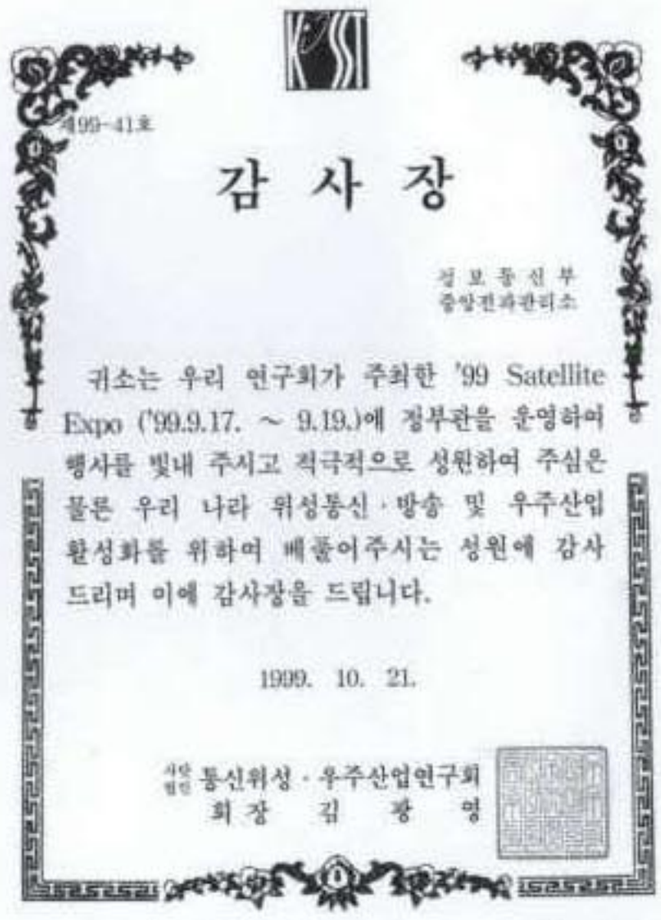

제99-41호

감 사 장

정 보 통 신 부
중앙전파관리소

귀소는 우리 연구회가 주최한 '99 Satellite Expo ('99.9.17. ~ 9.19.)에 정부관을 운영하여 행사를 빛내 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심은 물론 우리 나라 위성통신 · 방송 및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베풀어주시는 성원에 감사 드리며 이에 감사장을 드립니다.

1999. 10. 21.

사업 통신위성 · 우주산업연구회
회 장 김 광 영

▲ '99 Satellite Expo에 참가하여 행사를 빛내 준것에 대한 감사장

다. 위성전파감시관련 국제회의 참석

1999년 10월 3일부터 10일까지(8일간) 독일 마인즈와 울름에서 개최는 제2차 국제위성전파감시 Workshop 및 전문가 회의에 참석(강덕근 소장 , 고영철)하여 국내 위성전파감시 시스템 구축과 관련, 독일 우전청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독일 위성전파감센터를 견학하여 우리나라의 위성전파감시 센터 설립 추진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수집하고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였다.



▲ '99 Satellite Expo 참가부스 및 위성 전담반

1) 활동사항

한국, 일본, 독일, 미국, 영국 등 11개국 1개 국제기구(유럽위성기구)에서 50여명 참석하고 독일우전청(Regularity Authority for Telecommunications and Posts) 부사장을 대신하여 지역사무국장의 인사말과 리하임 위성전파감시 센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시작으로 각국의 위성전파감시 시설 및 감시 기능에 대하여 모두 13건의 발표(우리나라 2건, 일본 3건, 독일 5건, 미국 2건, 유럽위성기구 1건)가 있었으며, 주요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유럽위성기구(EUTELSAT)의 위성 간섭 현황 :

- EUTELSAT은 45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유럽지역에 통신 및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간 기구임.
- 1999년 10월 현재 15개 위성을 운용중에 있으며, 2001년에 18개 위성을 운용할 예정임.
- 2001년에 민간회사 형태로 재구성할 예정임.
- 1999년 9월말 현재 모두 120건(주당 약 3건)의 유해 간섭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운용 미숙 또는 장비 불량에 의해 발생되었음.
- 대부분의 간섭 현상은 디지털 신호간에 발생(약 80%)하였으며,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TV 신호간의 간섭은 약 20%를 차지함.
- 송신지구국 위치 탐지 장치(TLS, Transmitting Locating System)를 운용중에 있으며, 관련 주관청과의 협력을 통해 간섭장치를 제거함.

② 무궁화 위성 통신시스템 감시 :

- 무궁화 위성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이제까지 무궁화 위성시스템에 유해 간섭이 발생 상황 및 간섭원 제거 현황을 설명함.

③ 독일 리하임 위성전파감시 센터 기능 확장 방안 :

- 주파수 대역 확장 : Ku 대역 확장(10.7 ~ 12.75GHz)하고 간섭 송신지구국 위치 식별 장치 추가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④ 대한민국 위성전파감시 시스템 구축 계획 :

- 위성수요 예측 및 위성망 국제등록 현황을 고려할 경우 위성망간 간섭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위성전파감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



▲ 위성 안테나 모습

천에 건설될 위성전파감시 시스템의 요구 기능과 구축 일정을 발표함.

⑤ 두 개의 안테나를 이용한 정지궤도 위성 위치 식별 기술 :

- 일본 통신총합연구소에 설치 운용중인 정지궤도 위성 위치 식별장치에 대한 기술적인 이론과 식별 방법을 설명함.

⑥ 복수 주파수 대역을 커버하는 반사형 안테나 기술 :

- 일본 미우라 위성전파감시 센터에 구축된 복수대역(L/Ku/Ka 대역) 안테나에 대한 기술적인 이론을 설명함.

⑦ 광학장치를 이용한 정지궤도 위성 위치 측정 기술 :

- 일본 미우라 위성전파감시 센터에 구축된 광학장치를 이용한 정지궤도 위성위치 측정 기술을 설명함. 기존 측정장치에 비해 위치 측정오차(0.003°)가 매우 작으나, 광학 장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간 측정이 불가능하고 기상상태에 따라 측정 오차가 변화하는 단점이 있음.

⑧ 일본 미우라 위성전파감시 시설 :

- 1998년 11월에 운용 개시한 일본 미우라 위성전파감시 센터의 감시 시설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향후 기능 확장에 소개가 있었음.
- 일정 DB, 국제조정 DB, 측정 DB, 분석 DB, 위성망(ITU SRS) DB 등 모두 5개의 DB가 있음.
- 이제까지 약 30개의 위성을 성공적으로 감시하였음. 추가 감시 주파수 대역으로 S/C 대역 안테나(11m)를 구축중에 있음.

위성전파감시 관련 전문가 회의는 우전청 마인즈 분관에서 위성 전파감시 Workshop의 효용성 및 개최 주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한국을 포함 참가한 모든 주관청 대표들은 본 Workshop이 위성전파감시와 관련된 기술적인 정보 교환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주관청, 위성사업자 및 전파감시 관련 장비업체들에게 매우 유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음.



▲ 위성전파 감시안테나 전경

아울러 현재와 같이 1년마다 개최되기를 희망하였으며, 처음 2일간은 사업자, 장비제작 업체들과 함께 Workshop를 개최하고 3일째는 주관청 대표들간의 회의를 통해 감시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기로 하였음.

2) 위성전파감시업무 검토

위성전파감시업무는 3가지로 구분하여 추진키로하고 주파수 자원 계획 및 스펙트럼 엔지니어링 지원업무로서 우주국 및 지구국 방사 신호 분석을 통해 등록된 전송제원과의 비교 분석 및 주파수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간섭원 또는 비인가 무선국 탐지 및 제거에 대하여 유해 간섭을 발생하는 우주국 및 지구국을 탐지, 신속히 제거하므로서 유한한 전파자원의 안정적인 이용을 보장하고 위성 궤도 자원 분석업무로는 다른 국가가 운용하는 우주국과 지구국의 운용중인전송제원 분석을 통해 주관청간 조정 합의 사항 준수 여부, ITU에 등재된 제원과의 일치 여부 분석을 통해 자국이 운용하는 우주국 및 지구국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

3) 위성전파감시 관련 각 주관청의 역할

위성전파감시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파규칙 제16조에는 전파감시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있으나, 주관청의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ITU-BR 과의 비공식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위성전파감시 관련 주관청 역할의 구체적인 규정작업 방법을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함.

4) 각 주관청간 협력 방안 강구검토(한국 의제)

- 국제적인 협력 방안 :
  . 최신 감시 기술 교류 촉진
  . 전세계를 커버하는 비정지궤도 위성망 공동 감시
  . 감시 정보 및 경험 교류 촉진
- 인접국가간 협력 방안 :
  . 주파수 계획 협의(지역 국가간 간섭 방지)
  . 공동 감시 시설 운용
  . 위성전파감시 관련 DB 공유

라. 해외위성감시센터 현황

1) 독일 위성전파감시센터

○ 정식명칭

Radio Monitoring and Radio Inspection Service Centralising Office

Regulatory Authority for Telecommunications and Posts

○ 근무개시연도 : 1980년

○ 감시업무

– 감시대상위성 : 정지, 비정지궤도 위성

– 정지위성 궤도범위 : 서경 67~동경 83

○ 측정항목

– 정지궤도 위성의 위치

– 비정지궤도 위성의 궤도

– 주파수, Doppler Shift

– 점유 대역폭 : $\beta/2$ 대역폭(β=0.5%)

– 변조 특성 등의 전파 형식

– EIRP

– 편파특성

– 총전력 밀도

– TV 방사의 경우 측정 요소

○ 주요 업무

– RegTP 3국 또는 BMPT의 요구에 따른 감시 및 측정 업무

– 주말 또는 야간을 이용하여 정지궤도에 대한 위치, 주파수에 대한 신호 감시 수행

– 스펙트럼 점유 대역폭의 측정 업무

– 유해한 간섭원의 탐사 및 제거

– 위성 중계기 불법사용자의 식별(고의적, 비고의적)

– 기타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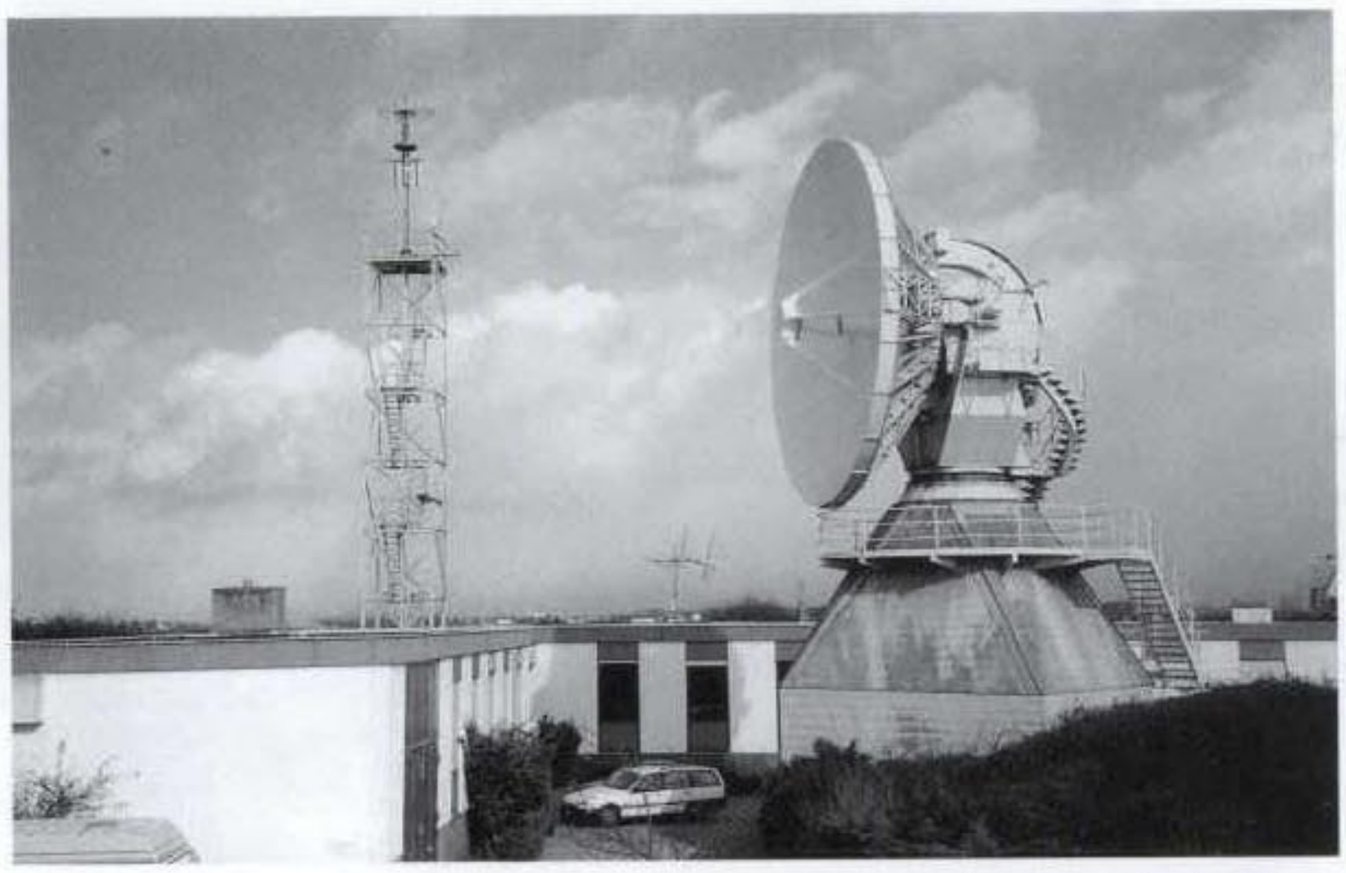

▲ 독일 리하임 위성전파 감시센터전경

○ 감시소 인원 : 5명(운용인력 : 2명, 유지보수 인력 : 2명, 비서 : 1명)

○ 근무방법 : 주간근무

○ 안테나 제원

– 위치 : 08° 23'50"E 49° 51'15"N

– 감시가능 영역 : 67° W to 83° E

2) 영국 위성전파감시센터

○ 정식명칭

Satellite monitoring Baldock Radio Station, Radiocommunication Agency

○ 감시업무

- 감시대상위성 : 정지궤도위성
- 정지위성 궤도범위 : 서경 70 ~ 동경 70

○ 측정항목

- 정지궤도 위성의 위치 : Arc Atlas 감시
- 위성중계기 점유도
- 주파수
- 점유 대역폭 : $\beta/2$ 대역폭(β=0.5%)
- 변조 특성 등의 전파 형식
- PFD
- 편파특성
- 모든 위성중계기의 스펙트럼 도표



▲ 영국 발독 위성전파감시센터 전경

○ 주요 업무

- ITU RR Article 20 및 ERC권고 T/R 01-03에 따른 위성전파감시업무
- 독일의 경우와 달리 일, 주간, 월간 별로 규정화된 측정업무를 수행
  - 정지궤도 위성의 위치 측정 업무
  - 대역감시업무
  - 경사궤도 위성 감시업무
  - 신규위성 발사 감시 업무
  - 특정 전파에 대한 PFD 일일 점검 업무
  - 중계기의 점유율 감시 업무

○ 감시소 인원 : 2명

○ 근무방법 : 주간근무

일간, 주간, 월간 계획에 의한 자동 업무 수행이 대부분이며, 간헐적으로 외부의 요구에 의한 측정 업무 수행

○ 안테나 제원

– 감시가능 영역 : 70°W to 70°E

3) 미국 위성전파감시센터

○ 정식명칭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COMPLIANCE and INFORMATION BUREAU COLUMBIA OPERATIONS CENTER

Satellite Monitoring Facility

○ 감시업무

– 감시대상위성 : 4GHz 대의 18개, 12GHz 대의 16개의 정지궤도위성

○ 측정항목

– 주파수, 점유주파수 대역폭

– 전력속밀도

– 발사전파의 특성측정

– 수신신호(Baseband)의 해석

– 중계기의 사용 상황

– 영상의 Monitoring(단, 스크램블은 해제하지 않음)

– ATIS의 감시

○ 감시담당 인원 : 1명

○ 근무방법 : 주간근무

○ 시스템 제원

– 1GHz~12.2GHz 대역(4개의 Feeder를 수동으로 교환함) 5m 카세그레인 안테나 1기

○ 시스템의 G/T

· 4GHz : 18 dB/K

· 12GHz : 22 dB/K



▲ 미국 콤롬비아 위성전파 감시센터 전경

4) 일본 위성전파감시센터

○ 정식명칭

MINIST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KANTO REGIONAL BUREAU OF TELECOMMUNICATIONS

INTERNATIONAL MONITORING DEPARTMENT

○ 역할

- 감시 : ITU-SRS를 기반으로 한 등록위성에 대한 우주에서의 방사와 위성 위치의 감시
- 탐색 : 미등록 위성의 탐색
- 조사 : 혼신과 방해의 보고에 의한 세부자료의 수집과 분석

○ 자동 측정

- 각각의 밴드의 캐리어 검출(L/Ku/Ka)

  광대역주파수의 캐리어를 검출하기 위하여 스펙트럼분석기의 Span과 Resolution 대역폭의 자동 제어
- 스펙트럼분석기의 자동제어에 의한 변조형식 검출
- 각각의 캐리어를 위한 우주국 신호의 측정
  - · 중심주파수 및 점유대역폭
  - · EIRP(Equivalent Isotropically Radiated Power) : 등가 등방 복사전력
  - · 전력속밀도(Power Flux Density) 등

○ 자동 인식 및 분석

- 측정된 데이터와 ITU-SRS 데이터를 이용한 캐리어의 자동 인식
  - · 측정된 궤도를 기반으로 하는 정지위성 선택
  - · 중심주파수를 기반으로하는 캐리어의 인식
- 정지위성의 궤도이탈 검출
- 스퓨리어스(불요전파) 캐리어의 검출
- 통계분석
  - · 정지위성 위치
  - · 주파수 사용량 및 기간
  - · 전력속밀도(Power Flux Density)

○ 가시범위

- 경도 : 67°E ~ 147°W
- 가시범위 내 위성의 수 : 400대 이상



▲ 일본 미우라 위성전파 감시센터 전경

2. 차세대 전파감시망 구축 추진

가. 개 요

종합전파감시망은 1992년부터 설치되어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내용년수가 만료됨에 차세대 종합전파감시망은 2000년대 전파통신기술의 발전과 전파감시 환경변화을 예측, 능률적으로 전파감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하기 위하여 전파감시망의 보강, 구축하기 위한 과제를 선정하고 2000년도 정보통신 선도기반 기술개발 사업 중 「차세대 종합전파감시망 개발」를 과제로 개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 3개년 계획으로 기술개발비 30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하고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자 회의를 1999년 10월에 개최하였다.

나. 종합전파감시망 구축현황

구 분	'92	'93	'95	'96	'97	'98	계획	계
전파품질측정장비	7	7	8	18	4	24	8	76
광대역수신기	10	-	-	-	34	24	8	76

다. 추진방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연 · 학 · 관의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 외국의 보편화된 전파감시 시스템을 종합 분석하여 2000년대 전파이용기술발전과 정보통신산업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차세대 종합전파감시망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와 2000년대의 전파이용환경을 예상한 차세대 종합전파감시망의 필요성, 수용업무, 시스템구성, 소요예산,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계획하여 급증하는 주파수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파스펙트럼 감시 대책으로서 전파감시 지휘 · 통제망 및 위성전파감시센타와 연계 운용될 수 있도록 전파감시기술개발과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기존에 개발중인 감시장비의 일치성 검토 및 필요시 보완 수정하는 방안으로 추진

라. 추진일정

○ 2000년도 정책과제제안서 제출 : 1999년 12월

○ 2000년도 정책과제선정(3년과제)추진 : 2000~2002년



附錄

□ 연 혁

□ 연 표

□ 간부 이 · 취임사항

□ 해외 훈련사항

□ 무선전신법

□ 전파관련법

□ 중앙전파관리소의 사무분장세칙

□ 조직 변천사

부 록

□ 연 혁

Ⅰ. 전파관리

1910. 6. 11 : 인천, 항문도, 목포, 소청도, 원산과 항로표지 관리소 소속 항로 표지감시선 광제호 무선설비 설치를 계획(탁지부의 예비비 3만원 예산 확보)

1910. 8. 15 : 무선통신 시설착공

1910. 9. 5 : 준공개통(국내최초의 무선통신)

1910. 10. 1 : 조선총독부 통신국에서 무선관계업무 관장

1911. 2. : 항문도 무선전신시설 준공(일본해군)

1912. 4. 1 : 조선총독부 통신국을 체신국으로 개칭.
통신과에서 무선 및 우편업무 공동취급

1913. 7. 1 : 런던 국제무선전신회의 결의에 의거 국제무선전신 조약 및 국내 제 규칙율 전편 개정 공포

1914. 12. 1 : 체신국 감리과에 양성계를 신설

1915. 6. 19 : 무선전신법 제정

1915. 11. 19 : 선박무선전신법 시행

1916. 2. : 전파 통제 실시(일본)

1918. 1. 21 : 체신이원양성소 신설(훈령 제4호) 통신과, 감리과로 개칭

1919. 7. 4 : 체신국에 해원양성소 신설(훈령 제24호)

1920. 10. 6 : 체신국기구개정(감리과→서무과, 통신과→감리과, 계리과 →경리과)

1921. 1. : 사설무선전신전화규칙 개정(무선 통신 종사자 검정규칙)

1923. 6. 11 : 경성무선국설치

1924. 5. 1 : 목포, 제주무선국 개국

1925. 4. 2 : 선박무선전신시설법 제정(법률 제11호)
1926. 5. 2 : 부산무선전신국준공
1926. 8. : 경성무선국 중앙집중식 무선국으로 발족
1927. 2. 11 : 진남포무선전신국 설치
1927. 4. 7 : 체신국 감리과에 항공계 신설(국달 제70호)
1927. 5. 2 : 목도무선전신국 설치
1927. 5. 8 : 경성↔대판간 정식무선 개시
1927. 7. : 워싱톤 국제무선전신회의 개막
1929. 8. 16 : 청진무선국개국
1929. 12. 29 : 사설무선전신통신존사자 검정규칙제정
1930. 1. 1 : 무선전신법중 전파통제, 통신취제 준용실시
1930. 4. 19 : 울산무선국 개국
1934. : 부산, 목포, 청진무선국 시설보강, 선박전신전화 검사업무 지정
1934. 10. 1 : 조선총독부 체신국을 조선총독부 체신분장국으로 개칭(훈령 38호)
1935. 6. 14 : 체신국서무과 정원계를 복무계로 개정코 감리과 복무계 폐지
1936. 1. 15 : 신의주무선전신국 개국
1937. 5. 31 : 대구항공무선전신국 설치
1937. 6. 12 : 대구무선전신국 개국
1937. 7. 9 : 신포무선국 개국
1938. 8. : 경성, 목포, 부산, 진남포, 청진, 강릉무선국을 무선통신감시소로 지정
1938. 9. 1 : 강릉무선전신국 개국
1938. 11. 1 : 평양.함흥무선전신국 개국
1939. 1. : 울릉도 무선전신국 개국
1939. 7. 14 : 체신국 감리과에 조사제도 실시
1939. 11. 1 : 체신국 감리과의 무선계를 무선업무계와 무선규획계로 분리 (훈령 제62호)
1940. 7. : 광장리 수신소 준공(단.중.장파수신기 설치)
1941. 5. 1 : 원산무선전신국 개국
1941. 9. 10 : 체신국 감리과 서무계 폐지하고 특무계 신설
1942. 3. 29 : 추풍령항공무선전신국 설치, 광장리수신소에 무선전화 주파수

정밀측정 장치 설치

1942. 6. 2 : 뚝도무선감시소 설치

1945. 8. 15 : 광복

1946. 4. 23 : 체신국이 체신부로 승격. 전무국 무선과 신설

1947. 6. 1 : 체신부 전무국 무선과 광장분실 설치(部達71號 : 取扱種別 監視事務)

※ 경기도 고양군 뚝도면 광장리 서울중앙전신국 광장수신소내

1948. 1. 15 : 제네바에서 ITU 임시주파수국회의 및 제3지역(아주) 주관청회의 개최

1948. 7. 17 : 기구확장. 무선과와 국제통신과로 개편

1948. 11. 4 : 체신부 전무국에 전신, 전화, 무선과로 개편

무선과에 무선전신, 전화에 관한 사항 분장(대통령령 제27호)

1948. 11. 20 : 대통령령 제27호(1948. 11. 4)의 체신부직제변경(대통령령 제36호)

전파국 신설. 감리과, 검정과 설치 ⇒ 전파관리의 기틀을 마련

감리과 : 국내 무선통신업무의 감독 및 불법전파의 단속에 관한 사항

검정과 : 국내 무선통신시설의 검정 및 전파의 통제에 관한 사항 분장

1949. 10. 24 : 한국정부 ITU가입신청

1949. 11. 22 : 서울, 부산, 광주에 각 전파감시국 설치(대통령령 제217호)

전파국 확장. 감리과, 업무과, 검정과, 기술과 설치

1950. 1. 10 : 서울전파감시국 개국. 감리과, 기술과, 발사과, 표준과

1950. 1. 16 : 부산전파감시국 개국. 감리과, 기술과

1950. 1. 18 : 광주전파감시국 개국. 감리과, 기술과

1950. 3. 21 : 전파국 검정과 폐지

업무과 : 통신시설의 검정 및 전파통제사무 관장

기술과 : 무선전신, 무선전화 기술에 관한 사항 관장

1950. 5. 29 : 전파국이 전무국으로 통합. 기구축소(1955. 2. 17)

전파관리과, 무선업무과, 무선기술과, 전파관리과 전파의 통제와 감시 및 무선시설의 허가, 감독에 관한 사항을 관장

1952. 1. 31 : 대한민국 국제전기통신연합 가입

1953. 1. 7 : 부산전파감시국 화재로 이전 → 부산저금보험관리국 본관

1955. 2. 17 : 전파관리과를 전파감시과로 개칭

1961. 9. 13 : 국가재건최고회의 지침으로 통신정보 및 보안업무 통제지침 제정
(현역 군 요원, 서울전파감시국에 보안업무 개시)

1961. 10. 2 : 서울전파감시국 발사과 폐지(표준과로 통합 : 각령 제209호)

1961. 10. 2 : 전파관리국(체신부 외국) 신설. 전무국 전파관리과 폐지
감리과, 주파수과, 기술과

1961. 10. 2 : 전파감시기구 확장개편 특별전파감시업무 개시(각령 제209호)
서울, 광주전파감시국 방탐계 신설

1961. 11. 20 : 중앙정보부규정 제24조 "무선검사규정"제정을 계기로 행정부 및 공공기관 무선국에 대한 보안감청을 체신부 전파관리국에서 담당
(무선감청 규정, 무선감시 규정)

1961. 12. 30 : 전파관리법 제정 공포(법률 제924호)

1962. 10. 2 : 서울전파감시국 발사과를 표준과로 폐합(각령 제221호)

1963. 6. 28 : 전파관리국 훈령 제7호

○ 서울전파감시국
- 감리과 : 서무계, 감시계, 방탐계
- 표준과 : 측정계, 교정계
- 기술과 : 기술계

○ 부산전파감시국
- 감리과 : 서무계, 감시계
- 기술과 : 기술계
- 광주전파감시국

○ 감리과 : 서무계, 감시계, 방탐계
- 기술과 : 기술계

1964. 10. 23 : 강릉전파감시국 신설(대통령령 제1965호)
- 감리과 : 서무계, 감시계
- 기술과 : 기술계

1965. 1. 15 :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조정규정으로 대체(정보 및 보안감청)

1966. 2. 5 : 전파연구소 신설(대통령령 제2396호)
전파연구소 개소(서무, 전파, 표준과) 서울전파감시국 표준과 폐지

1966. 4. 1 : 특별감시기능 확장 및 무선국검사업무 전담부서 설치(전파관리
국 훈령 제11호)
서울전파감시국 기술과에 검측계 신설
부산, 강릉전파감시국에 방탐계 신설

1966. 6. : 강릉전파감시국 통신정보업무 개시

1968. 8. 5 : 전파감시기능 확장(전파관리국 훈령 제18호) : 해상이동통신 감
시 취약지역 해소
서울(광화문), 인천, 부산, 여수분실 신설

1968. 11. 16 : 무선국검사업무 전담부서 확장(전파관리국 훈령 제19호)
부산, 광주, 강릉감시국 기술과에 검측계 신설
감리과에 서무계, 감시계, 방탐계를, 기술과에 검측계, 기술계를
둔다.

1968. 12. 19 : 전파관리국 감시업무과 신설, 감리과 규약계 폐지(대통령령 제
3673호)

1970. 1. 12 : 속초(강릉전파감시국) 및 제주(광주전파감시국)분실 신설(전파관
리국 훈령 제26호)

1970. 1. 31 : 각 전파감시국 감시계, 방탐계를 제1계 및 제2계로 개칭

1970. 3. 26 : 각 국소명칭 개칭(전파관리국 훈령 제31호)
서울→11, 인천→12, 부산→21, 여수→31, 제주→32, 속초→41분
실로 개칭

1970. 11. 19 : 13분실(합덕) 및 22분실(홍해) 신설(전파관리국 훈령 제36호)

1970. 12. 28 : 서울전파감시국 현위치(가락동)이전

1971. 12. 24 : 23분실(사천)설치 개국(전파관리국 훈령 제40호)

1972. 12. 31 : 부산전파감시국 현위치(대저동) 이전

1973. 3. 13 : 전파관리국 감시업무과를 감시과를 개칭, 제3계 신설

1974. 4. 1 : 전파관리국 감리과를 관리(서무, 회계), 감시(조사1, 2계)과로 분리

1974. 4. 1 : 각 전파감시국 감리과를 감시과로 개칭하고 관리과 및 허가계 신설

1974. 4. 25 : 각 전파감시국 직제개정(대통령령 제7101호)
관리과 : 서무, 허가계. 감시과 : 조사계, 1, 2계. 기술과 : 기술, 검
사계 신설

1974. 5. 20 : 12분실(인천), 31분실(여수) 폐지(전파관리국 훈령 제59호)

1974. 9. 25 : 전파관리국 감리과를 관리과로 개칭, 감시과에 통신보안계 신설

1975. 3. : 자동전파감시시설 싸이트 1(합덕), 2(부산)운용 개시

1976. 2. 5 : 전파탑관리사무소 신설(관리과, 기술과)

1976. 6. 19 : 서울전파감시국 제11분실 현위치(수색)이전.

1976. 6. 19 : 전파관리국 사무분장규칙 전면개정
2계제도 폐지(중앙관서 편제) 일반, 특별, 고정감시와 통신보안 담당으로 개정

1976. 12. 14 : 합덕(13)분실을 서울전파감시국 서울분국으로 승격
부산전파감시국 부산분국(서생), 강릉전파감시국 강릉분국(대관령) 및 서울전파감시국 통제과 신설

1977. 1. 19 : 서울전파감시국 통제과에 운용계, 통제계 설치 및 각 전파감시국 분국에 제1계, 제3계 신설

1977. 12. 28 : 서울전파감시국 제12분실(김포) 설치

1978. 4. : 자동전파감시시설 보강 및 싸이트3(광주), 4(대관령) 준공 운용

1978. 7. 27 : 전파관리국에 총무과 신설 및 전파탑관리사무소 축소개편(관리과 및 기술과 폐지)

1979. 7. : 초단파대 방탐업무 추가운용(김포)

1979. 9. 7 : 전파관리국에 방송과 신설

1979. 9. 7 : 전파통제소 신설 : 관리과, 조사과, 통제과(대통령령 제9601호)
전파감시국 서울, 부산, 강릉분국 및 광주, 김포, 제주분실을 전파통제소분국 및 분실로 개편.
합덕, 양산, 대관령분국, 12(김포)분실, 광주감시국 2, 3계 및 32(제주)분실 폐지

1979. 9. 20 : 서울전파감시국 감시과 남산주재실 업무개시

1979. 10. 19 : 전파통제소 제51(광주)분실 개국
서울전파감시국 제12분실(김포)을 전파통제소 제52분실로 개편
광주전파감시국 제32분실(제주)을 전파통제소 제53분실로 개편

1979. 12. 22 : 각 전파감시국 허가계를 관리계로 제1계, 제2계를 감시1, 2계로 개편

1980. 3. : 제주분실 청사이전(제주시 오라동 → 한림)

1980. 8. 25 : 전파감시국을 전파감리국으로 개칭

1980. 8.26 : 전파관리국 감시과를 감리과로 부산분실을 제21분실로 개칭
전파통제소 제51분실을 광주분국으로 승격

1980.12.24 : 전파통제소 광주분국에 관리계, 조사계, 통제계 신설

1982. 1. 1 : 전기통신공사 발족으로 전파관리국 내국화
전파기획과, 감리과, 방송과, 주파수과, 기술과
전파통제국 및 지방감리국을 본부 직할관서로 직제개편

1982. 1. 1 : 전파통제소를 전파통제국으로 개칭
전파통제국 : 관리, 조사1, 2과, 통제과로 개편
제53(제주)분실을 제주분국으로 승격

1982. 1. 1 : 전파통제국 : 관리, 조사, 통제과로 축소 개편
전파감리국이 체신청 직속기관으로 이관(직제변경)
전파통제국 조사2과를 제101분국(중앙전화국)으로 개편

1983.12.30 : 중앙전파감시소 승격 발족(소장: 박성득) 6개분소 10개분실 설치
○ 각 체신청 산하 전파감리국 및 전파통제국 통 · 폐합
○ 관리과 : 서무계, 회계계, 기획방호계
○ 감시1과(일반) : 관리계, 기술계, 보안계, 감시계
○ 감시2과(정보) : 관리계, 통제계, 분석계, 기술계
○ 11 : 합덕, 21 : 서생, 31 : 산포, 41 : 대관령, 51 : 한림, 61 : 부산 분소
111 : 김포, 121 : 수색, 131 : 남산, 141 : 합덕, 151 : 부산, 161 : 홍해, 171 : 사천, 181 : 산포, 191 : 강릉, 201 : 속초분실
○ 전파통제국 제101분국 폐지(한국전기통신공사 이관)

1985. 1.17 : 211(대전), 221(대구)분실 및 광주, 전주, 원주주재실 설치

1985.12.24 : 춘천(춘천전신전화국) ⇒ 원주분실간 원격무인감시시설 설치운용

1986. 1.16 : 제주분소 감시계를 폐지하고 231(제주)분실 설치(한림⇒오라동).
제주분소에 통제계 신설 및 241(전주), 251(원주)분실 승격

1986.12.26 : 중앙전파감시소 기술과 신설

1986.12.27 : 서생(21분소내) 및 불모산 ⇒ 부산분실간 원격제어무인감시시설 설치운용

1987. 1. 1 : 제71(서울)분소 신설 및 각 분실 명칭변경
(대통령령 제12017호 : '86. 12. 26 체신관서직제중 개정령)

○ 감시1과 : 감시계 및 기술계 폐지, 조사계, 전산계 신설
○ 감시2과 : 기술계를 폐지
○ 기술과 : 기술 1, 2계 및 보전계 신설
○ 11분소 : 141, 211분실을 111(당진), 121(대전)분실로 변경
111, 121, 131분실은 71분소 711(김포), 721(수색), 731(남산) 분실로 변경
○ 21분소 : 감시계를 폐지하고 분석계를 신설
○ 31분소 : 감시계를 폐지하고 분석계를 신설
광주주재실, 181, 241분실을 311(나주), 321(광주), 331(전주) 분실로 변경
○ 41분소 : 감시계, 통제계를 폐지하고 분석계 및 441(대관령) 분실 신설 191, 201, 251분실을 411(강릉), 421(속초), 431(원주)분실로 변경
○ 51분소 : 감시계를 폐지 분석계 신설 및 231분실을 511분실로 변경
○ 61분소 : 통신보안계 신설, 151, 171, 161, 221분실을 611(부산), 621(사천), 631(홍해), 641(대구)분실로 변경
○ 71분소 : 관리계, 감시계, 조사계, 기술계, 통신보안계 신설

1987. 1. 12 : 제111(김포)분실 임무변경(정보⇒일반)
1987. 2. 12 : 제71(서울)분소 개소(용산우체국 4층)
1987. 2. 12 : 망경대⇒서울분소(감시계)간 원격제어 무인감시시설 설치운용
1987. 4. 20 : 제321(광주)분실 이전[북광주전화국 4층(신안동)⇒북광주우체국 3층(임동)]
1987. 12. 15 : 중앙전파감시소를 중앙전파관리소로 명칭 변경(대통령령 제12315호)
1988. 1. 4 : 군산(군산전신전화국)⇒전주분실간 원격제어 감시시설 설치운용
1988. 1. 6 : 금오산(경남 하동)⇒광주분실간 원격제어 감시시설 설치운용
1988. 9. 1 : 수도권 무인방탐국 3개소 설치운용(본소, 영등포보험회관, 기상대)
1988. 10. 5 : 인천(서인천분국)⇒서울분소(감시계)간 원격제어 감시시설 설치운용
1989. 1. 1 : 전파관리 온라인망 개통(본부, 본소, 각 분소 및 분실간)으로 종전

의 수작업에 의한 전파감시월보를 폐지하고 온라인화

1989. 1.23 : 서울분소 이전(용산우체국⇒서대문우체국(구 국제우체국) 4층

1989. 5. 1 : 611분실 TRS(주파수공용통신)감시시스템 설치운용(KTA장비 전용)

1989. 5. 6 : 611(부산)분실 청사이전(부산시외전화국⇒부산체신보험회관 5층)

1989. 5. 8 : 641(대구)분실 청사이전(동대구우체국⇒대구우체국 5층)

1989. 11. 1 : 중앙전파관리소 신청사 준공 이전(현 위치 : 송파구 가락동 100)

1990. 2. 3 : 중앙전파관리소 단체아마추어국 개국(HL0MOP)

1990. 2.28 : 부산분소 청사증축(현위치 : 강서구 대저1동 2327-3)

1990. 5.28 : 종합전파감시망 구축 기본 계획수립

1990.10. 11 : 생활무선국(CB : 27MHz대) 40개 채널 전면개방(체신부고시 제 104, 105호)허가 및 신고없이 개설가능(출력 0.5W)

1990.11. 1 : 전파감시 및 조사 등에 관한 업무처리세칙 발령(훈령 제2791호)

1990.11.24 : MBC은월중계소(울산시)⇒부산분실간 원격제어 감시시설 설치운용

(전 울산분소에 설치운용중이던 시설을 은월봉으로 이전설치)

1991. 1. 1 : 각 분소 및 분실의 숫자명칭을 지역명칭으로 변경

11 : 당진분소(111 : 당진, 121 : 대전분실)

21 : 울산분소

31 : 광주분소(311 : 나주, 321 : 광주, 331 : 전주분실)

41 : 강릉분소(411 : 강릉, 421 : 속초, 431 : 원주분실)

51 : 제주분소(511 : 제주분실)

61 : 부산분소(611 : 부산, 641 : 대구분실)

71 : 서울분소(711 : 김포, 731 : 서울분실)

1991. 1.16 : 수색, 사천, 흥해분실 폐지 및 광주, 강릉, 당진분소 조사계 신설

1991. 1.16 : 441(대관령)분실 폐지⇒강릉분소 통제계에 흡수

1991. 1. : 전 원격제어감시국소에 V/UHF대 감시장치(CMR-23RA)증설운용

1991. 1. : 불모산 원격제어 감시시설 제어국소 변경운용(부산분실⇒부산분소)

단, V/UHF대 감시장치(CMR-23RA)는 부산분실에서 계속 운용

1991. 3.16 : 전파법개정에 따라 조사관증 발급권자 변경(소장→장관)

1991.10. 11 : 국제방탐업무 처리방법 개선(본부→일본을 중앙전파관리소→일

본으로)

1991. 11. 5 : 국제방탐업무 협조체제확립(중앙전파관리소→FCC호노루루감시국)

1992. 2. 1 : 중앙전파관리소 단체아마추어국 변경허가(V/UHF대 추가)

1992. 2. 12 : 강릉분소 청사신축 이전(강릉시 유산동⇒명주군 연곡면 방내리 산106)

1992. 2. 13 : 제주분소 청사신축 이전(한림읍⇒제주시 오라동)

1992. 3. 3 : 광주분소 청사신축 이전(나주군 산포면 현 위치)

1992. 3. : 경인권 종합전파감시망 구축에 따른 무인국소 이전설치 및 신설

○ 신설 : 수원전화국(3.12), 의정부우체국(3.10), 이천전화국(3.13)

○ 이전 : 서인천분국⇒인천측후소(3.14)

○ 기존 : 망경대중계소 : 장비 및 공중선 대체(3.15)

○ 보강 : 서울분소 감시계(종합전파감시장비1식:3.7) 및 서울분실(3식:3.9)

○ 설치장비

- 운용감시 : Master 및 Slave(20MHz-1GHz)

- 품질감시 : Minilock(100KHz-1.89GHz)

○ 공중선

- 운용감시 : Discon ANT(High 및 Low : 각 1기)

- 품질감시 : Yagi 및 Active ANT 각 1기

1992. 3. 19 :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 개정(훈령 제2829호)
광주분실, 당진분실, 제주분실을 감시계로 개편

1992. 5. 1 : 전파감시 및 조사 등에 관한 업무처리세칙 개정(훈령 제2833호)

1992. 6. 1 : 생활무선국 출력 상향조정(0.5W→3W로)

1992. 7. 1 : 경인권 종합전파감시망 설치, 운용(인천, 의정부, 수원, 이천, 망경대)

1992. 7. 1 : 아마추어국 이동운용 허용

1992. 8. 1 : 조사관증 발급권자 변경(장관→중앙전파관리소장)

1992.12. 2 : 중앙전파관리소대전분소 신설(관리계, 감시계, 조사계, 기술계)
당진분소 조사계 및 대전분실 폐지(대통령령 제13763호 '92. 1. 23)

1993. 1. 1 : 전파사용료 징수

1993. 1. 1 : 간이무선국 허가업무 우체국 위임(5급 이상 200국)
1993. 1. 13 : 전파감시 및 조사 등에 관한 업무처리세칙 개정(훈령 제2842호)
1993. 5. 20 : 아마추어국 이동운용 허가지침 개정(공중선 제한 등 폐지)
1993. 6. 1 : 생활무선국 운용요령 및 무선설비의 조건에 관한 고시 개정
(휴대, 차량탑재, 고정설치 허용 등)
1993. 7. 1 : 김포분실을 인천으로 이전(부평우체국 3층)하고 인천분실로 개칭
1995. 12. 20 : 청주분실 신설(대통령령 제14549호)
1996. 2. 22 : 전주, 대구분소 신설(대통령령 제14927호)

2. 중앙전파관리소

1947. 6. 1 : 체신부전무국무선과 광장분실 설치(경기도 고양군 뚝도면 광장리 서울중앙전신국 광장수신소내)
1947. 10. : 광장리분실에서 불온 및 무선통신보안위주 전파감시업무개시
1949. 11. 22 : 서울, 부산, 광주에 각 전파감시국 설치. 뚝도 및 대연리분실 폐지(대통령령 제217호)
전파국 확장(감리과, 업무과, 검정과, 기술과 설치)
1950. 1. 10 : 서울전파감시국 개국(감리과, 기술과, 발사과, 표준과)
1950. 1. 16 : 부산전파감시국 개국(감리과, 기술과)
1950. 1. 18 : 광주전파감시국 개국(감리과, 기술과)
1952. 1. 31 : 대한민국 국제전기통신연합 가입
1953. 1. 7 : 부산전파감시국 화재로 이전 → 부산저금보험관리국 본관
1955. 2. 17 : 전파관리과를 전파감시과로 개칭
1961. 9. 13 : 국가재건최고회의 지침으로 통신정보 및 보안업무 통제지침 제정
(현역 군 요원, 서울전파감시국에 보안업무 개시)
1961. 10. 2 : 서울전파감시국 발사과 폐지(표준과로 통합 : 각령 제209호)
1961. 10. 2 : 전파감시기구 확장개편 특별전파감시업무 개시(각령 제209호)
서울, 광주전파감시국 방탐계 신설
1961. 12. 30 : 전파관리법 제정 공포(법률 제924호)
1962. 10. 2 : 서울전파감시국 발사과를 표준과로 폐합(각령 제221호)
1963. 6. 28 : 전파관리국훈령 제7호

○ 서울전파감시국

– 감리과 : 서무계, 감시계, 방탐계

– 표준과 : 측정계, 교정계

– 기술과 : 기술계

○ 부산전파감시국

– 감리과 : 서무계, 감시계

– 기술과 : 기술계

○ 광주전파감시국

– 감리과 : 서무계, 감시계, 방탐계

– 기술과 : 기술계

1964. 10. 23 : 강릉전파감시국 신설(대통령령 제1965호)

– 감리과 : 서무계, 감시계

– 기술과 : 기술계

1966. 2. 5 : 서울전파감시국 표준과 폐지

1966. 4. 1 : 특별감시기능 확장 및 무선국검사업무 전담부서 설치(전파관리국 훈령 제11호)

서울전파감시국 기술과에 검측계 신설

부산, 강릉전파감시국에 방탐계 신설

1966. 6. : 강릉전파감시국 특별감시업무 개시

1968. 8. 5 : 전파감시기능 확장(전파관리국 훈령 제18호) : 해상이동통신 감시취약지역 해소

서울(광화문), 인천, 부산, 여수분실 신설

1968. 11. 16 : 무선국검사업무 전담부서 확장(전파관리국 훈령 제19호)

부산, 광주, 강릉감시국 기술과에 검측계 신설

감리과에 서무계, 감시계, 방탐계를, 기술과에 검측계, 기술계를 둔다.

1970. 1. 12 : 속초(강릉전파감시국) 및 제주(광주전파감시국)분실 신설(전파관리국 훈령 제26호)

1970. 1. 31 : 각 전파감시국 감시계, 방탐계를 제1계 및 제2계로 개칭

1970. 3. 26 : 각 국소명칭 개칭(전파관리국 훈령 제31호)

서울→11, 인천→12, 부산→21, 여수→31, 제주→32, 속초→41분

실로 개칭

1970. 11. 19 : 13분실(합덕) 및 22분실(홍해) 신설(전파관리국 훈령 제36호)

1970. 12. 28 : 서울전파감시국 현위치(가락동)이전

1971. 12. 24 : 23분실(사천)설치 개국(훈령 제40호)

1972. 12. 31 : 부산전파감시국 현위치(대저동) 이전

1974. 4. 1 : 각 전파감시국 감리과를 감시과로 개칭하고 관리과 및 허가계 신설

1974. 4. 25 : 각 전파감시국 직제개정(대통령령 제7101호)
관리과(서무, 허가계) 감시과(조사계, 1, 2계) 기술과(기술, 검사계) 신설

1974. 5. 20 : 12분실(인천), 31분실(여수) 폐지(전파관리국 훈령 제59호)

1975. 3. : 자동전파감시시설 사이트 1(합덕), 2(부산) 운용 개시

1975. 12. 16 : 서울(11)분실을 수색으로 이전

1976. 6. 19 : 서울전파감시국 제11분실 현위치(수색)이전.

1976. 12. 14 : 합덕(13)분실을 서울전파감시국 서울분국으로 승격
부산전파감시국 부산분국(서생), 강릉전파감시국 강릉분국(대관령) 및 서울전파감시국 통제과 신설

1977. 1. 19 : 서울전파감시국 통제과에 운용계, 통제계 설치 및 각 전파감시국 분국에 제1계, 제3계 신설

1977. 12. 28 : 서울전파감시국 제12분실(김포) 설치

1978. 4. : 자동전파감시시설 보강 및 사이트 3(광주), 4(대관령) 준공 운용

1979. 7. : 초단파대 방탐업무 추가운용(김포)

1979. 9. 7 : 전파통제소 신설 : 관리과, 조사과, 통제과(대통령령 제9601호)
전파감시국 서울, 부산, 강릉분국 및 광주, 김포, 제주분실을 전파통제소분국 및 분실로 개편
합덕, 양산, 대관령분국, 12(김포)분실, 광주감시국 2, 3계 및 32(제주)분실 폐지

1979. 9. 20 : 서울전파감시국 감시과 남산주재실 업무개시

1979. 10. 19 : 전파통제소 제51(광주)분실 개국
서울전파감시국 제12분실(김포)을 전파통제소 제52분실로 개편
광주전파감시국 제32분실(제주)을 전파통제소 제53분실로 개편

1979. 12. 22 : 각 전파감시국 허가계를 관리계로 제1계, 제2계를 감시1, 2계로 개편

1980. 3. : 제주분실 청사이전(제주시 오라동 → 한림)

1980. 8. 25 : 전파감시국을 전파감리국으로 개칭

1980. 8. 26 : 전파관리국 감시과를 감리과로 부산분실을 제21분실로 개칭
전파통제소 제51분실을 광주분국으로 승격

1980. 12. 24 : 전파통제소 광주분국에 관리계, 조사계, 통제계 신설

1982. 1. 1 : 전파통제국 및 지방감리국을 본부 직할관서로 직제개편

1982. 1. 1 : 전파통제소를 전파통제국으로 개칭
전파통제국 : 관리, 조사1, 2과, 통제과로 개편
제53(제주)분실을 제주분국으로 승격

1982. 1. 1 : 전파통제국 : 관리, 조사, 통제과로 축소 개편
전파감리국을 체신청 직속기관으로 이관(직제변경)
전파통제국 조사2과를 제101분국(중앙전화국)으로 개편

1983. 12. 30 : 중앙전파감시소 승격 발족(소장: 박성득) 6개분소 10개분실 설치
○ 각 체신청 산하 전파감리국 및 전파통제국 통 · 폐합
○ 관리과 : 서무계, 회계계, 기획방호계
○ 감시1과(일반) : 관리계, 기술계, 보안계, 감시계
○ 감시2과(정보) : 관리계, 통제계, 분석계, 기술계
○ 11 : 합덕, 21 : 서생, 31 : 산포, 41 : 대관령, 51 : 한림, 61 : 부산분소
111 : 김포, 121 : 수색, 131 : 남산, 141 : 합덕, 151 : 부산, 161 : 홍해, 171 : 사천, 181 : 산포, 191 : 강릉, 201 : 속초분실
○ 전파통제국 제101분국 폐지(한국전기통신공사 이관)

1985. 1. 17 : 211(대전), 221(대구)분실 및 광주, 전주, 원주주재실 설치

1985. 12. 24 : 춘천(춘천전신전화국)⇒ 원주분실간 원격무인감시시설 설치운용

1986. 1. 16 : 제주분소 감시계를 폐지하고 231(제주)분실 설치(한림⇒오라동).
제주분소에 통제계 신설 및 241(전주), 251(원주)분실 승격

1986. 12. 26 : 중앙전파감시소 기술과 신설

1986. 12. 27 : 서생(21분소내) 및 불모산⇒ 부산분실간 원격제어무인감시시설 설치운용

1987. 1. 1 : 체신관서직제개정 (대통령령 제12017호, 87. 12. 26)
○ 제71(서울)분소 신설 및 각 분실 명칭변경

○ 감시1과 : 감시계 및 기술계 폐지, 조사계, 전산계 신설

○ 감시2과 : 기술계를 폐지

○ 기술과 : 기술 1, 2계 및 보전계 신설

○ 11분소 : 141, 211분실을 111(당진), 121(대전)분실로 변경

111, 121, 131분실은 71분소 711(김포), 721(수색), 731(남산)분실로 변경

○ 21분소 : 감시계를 폐지하고 분석계를 신설

○ 31분소 : 감시계를 폐지하고 분석계를 신설

광주주재실, 181, 241분실을 311(나주), 321(광주), 331(전주)분실로 변경

○ 41분소 : 감시계, 통제계를 폐지하고 분석계 및 441(대관령)분실 신설 191, 201, 251분실을 411(강릉), 421(속초), 431(원주)분실로 변경

○ 51분소 : 감시계를 폐지 분석계 신설 및 231분실을 511분실로 변경

○ 61분소 : 통신보안계 신설, 151, 171, 161, 221분실을 611(부산), 621(사천), 631(홍해), 641(대구)분실로 변경

○ 71분소 : 관리계, 감시계, 조사계, 기술계, 통신보안계 신설

1987. 1. 12 : 제111(김포)분실 임무변경(정보⇒일반) 대공600-4608(86. 12. 30)

1987. 2. 12 : 제71(서울)분소 개소(용산우체국 4층)

1987. 2. 12 : 망경대⇒서울분소(감시계)간 원격제어 무인감시시설 설치운용

1987. 4. 20 : 제321(광주)분실 이전[북광주전화국 4층(신안동)⇒북광주우체국 3층(임동)]

1987. 12. 15 : 중앙전파감시소를 중앙전파관리소로 명칭 변경

1988. 1. 4 : 군산(군산전신전화국)⇒전주분실간 원격제어 감시시설 설치운용

1988. 1. 6 : 금오산(경남 하동)⇒광주분실간 원격제어 감시시설 설치운용

1988. 9. 1 : 수도권 무인방탐국 3개소 설치운용(본소, 영등포보험회관, 기상대)

1988. 10. 5 : 인천(서인천분국)⇒서울분소(감시계)간 원격제어 감시시설 설치운용

1989. 1. 1 : 전파관리 온라인망 개통(본부, 본소, 각 분소 및 분실간)으로 종전의 수작업에 의한 전파감시월보를 폐지하고 온라인화

1989. 1.23 : 서울분소 이전(용산우체국⇒서대문우체국(구 국제우체국) 4층
1989. 5. 1 : 611분실 TRS(주파수공용통신)감시시스템 설치운용(KTA장비 전용)
1989. 5. 6 : 611(부산)분실 청사이전(부산시외전화국⇒부산체신보험회관 5층)
1989. 5. 8 : 641(대구)분실 청사이전(동대구우체국⇒대구우체국 5층)
1989. 11. 1 : 중앙전파관리소 신청사 준공 이전(현 위치 : 송파구 가락동 100)
1990. 2. 3 : 중앙전파관리소 단체아마추어국 개국(HL0MOP)
1990. 2. 28 : 부산분소 청사증축(강서구 대저1동 2327-3 : 현위치)
1990. 11. 1 : 전파감시 및 조사등에 관한 업무처리세칙 발령(훈령 제2791호)
1990. 11. 24 : 은월중계소(울산시)⇒부산분실간 원격제어 감시시설 설치운용
(전 울산분소에 설치운용중이던 시설을 은월봉으로 이전설치)
1991. 1. 1 : 각 분소 및 분실의 숫자명칭을 지역명칭으로 변경
11 : 당진분소(111 : 당진, 121 : 대전분실)
21 : 울산분소
31 : 광주분소(311 : 나주, 321 : 광주, 331 : 전주분실)
41 : 강릉분소(411 : 강릉, 421 : 속초, 431 : 원주분실)
51 : 제주분소(511 : 제주분실)
61 : 부산분소(611 : 부산, 641 : 대구분실)
71 : 서울분소(711 : 김포, 731 : 서울분실)
1991. 1. 16 : 수색, 사천, 홍해분실 폐지 및 광주, 강릉, 당진분소 조사계 신설
1991. 1. 16 : 441(대관령)분실 폐지⇒강릉분소 통제계에 흡수
1991. 1. : 전 원격제어감시국소에 V/UHF대 감시장치(CMR-23RA)증설 운용
1991. 1. : 불모산 원격제어 감시시설 제어국소 변경운용(부산분실⇒부산분소)
단, V/UHF대 감시장치(CMR-23RA)는 부산분실에서 계속 운용
1991. 3. 16 : 전파법개정에 따라 조사관증 발급권자 변경(소장→장관)
1991. 10. 11 : 국제방탐업무 처리방법 개선(본부→일본을 중앙전파관리소→일본으로)
1991. 11. 5 : 국제방탐업무 협조체제확립(중앙전파관리소↔FCC호노루루감시국)
1992. 2. 1 : 중앙전파관리소 단체아마추어국 변경허가(V/UHF대 추가)
1992. 2. 12 : 강릉분소 청사신축 이전(강릉시 유산동⇒명주군 연곡면 방내리 산106)

1992. 2. 13 : 제주분소 청사신축 이전(한림읍⇒제주시 오라동)

1992. 3. 3 : 광주분소 청사신축 이전(나주군 산포면 현 위치)

1992. 3. : 경인권 종합전파감시망 구축에 따른 무인국소 이전설치 및 신설

○ 신설 : 수원전화국(3.12), 의정부우체국(3.10), 이천전화국(3.13)

이전 : 서인천분국⇒인천측후소(3.14)

기존 : 망경대중계소 : 장비 및 공중선 대체(3.15)

보강 : 서울분소 감시계(종합전파감시장비1식:3.7) 및 서울분실(3식:3.9)

○ 설치장비

운용감시 : Master 및 Slave(20MHz-1GHz)

품질감시 : Minilock(100KHz-1.89GHz)

○ 공중선

운용감시 : Discon ANT(High 및 Low : 각 1기)

품질감시 : Yagi 및 Active ANT 각 1기

1992. 3. 19 :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 개정(훈령 제2829호)
광주분실, 당진분실, 제주분실을 감시계로 개편

1992. 5. 1 : 전파감시 및 조사등에 관한 업무처리세칙 개정(훈령 제2833호)

1992. 7. 1 : 경인권 종합전파감시망 설치, 운용(인천, 의정부, 수원, 이천, 망경대)

1992. 8. 1 : 조사관증 발급권자 변경(장관→중앙전파관리소장)

1992. 12. 2 : 중앙전파관리소대전분소 신설(관리계, 감시계, 조사계, 기술계)
당진분소 조사계 및 대전분실 폐지(대통령령 제13763호)

1993. 1. 13 : 전파감시 및 조사 등에 관한 업무처리세칙 개정(훈령 제2842호)

1993. 7. 1 : 김포분실을 인천으로 이전(부평우체국 3층)하고 인천분실로 개칭

1995. 1. 5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법경찰권 확보

1995. 12. 20 : 청주분실신설(대통령령 제14549호)

1996. 2. 22 : 전주, 대구분소신설(대통령령 제14927호)

1997. 4. 30 : 종합전파감시망구축완료

1998. 6. 19 : 전파감시방법개선

1998. 7. 1 : 아마추어 자율감시체제 확립

1999. 2. 1 : CS기동팀 발족 운용

1999. 6.30 : 전파감시시설 Y2k문제해결

1999. 11.30 : 전파감시 지휘통제망 구축

3. 서울분소

1987. 1. 2 : 중앙전파감시소 제71분소 신설(용산 : 서울 체신청 직영우체국)

1987. 12. 15 : 중앙전파관리소 제71분소 개칭

1989. 1. 23 : 청사이전(서대문우체국)

1991. 1. 10 : 중앙전파관리소 서울분소를 개칭

1993. 10. 30 : 김포분실 폐지후 인천분실 설치

1997. 10. 30 : 현 위치로 청사준공 이전 (구로구 궁동 산 34-10)

4. 부산분소

1949. 11. 22 : 대통령령 제217호「지방체신관서 설치법 제2조」에 의거 개국

1949. 12. 3 : 부산시 중구 창선동 소재 부산전화국 3층에 임시사무실을 설치하고 업무개시

1950. 6. 9 : 부산시 대연동 146 부산무선전신국 청사로 이전

1950. 8. 30 : 6 · 25동란중 미군의 청사사용으로 부산우체국으로 이전

1951. 6. 30 : 대연동 청사로 이전

1951. 7. 21 : 미군의 청사 재사용으로 부산무선전신국 대연동 제8호 관사로 이전

1951. 9. 3 : 미군철수후 대연동 청사로 이전

1952. 10. 1 : 부산무선전신국 소관인 대연동 청사 1동(건평72평)과 관사5동 및 부지 5,588평을 관리전환 받음

1953. 1. 17 : 부산무선전신국 직원 김유현의 실화로 청사1동 및 차고1동을 전소당하여 부산저금관리국에 임시사무소 설치하여 업무재개

1953. 3. 3 : 대연동 제3호 관사로 이전

1955. 1. 23 : 대연동 제2호 및 제3호 관사를 개수하여 청사로 사용

1955. 4. 3 : 누전으로 인하여 임시청사 전소

1955. 4. 4 : 제1호 관사에 임시사무소 설치 사무재개

1955. 6. 29 : 부산시 문현동 294번지 구 부산진중계소를 관리전환 받아 이전

1963. 12. 24 : 경남 김해군 대저면 사덕리에 청사 신축용 부지 6,300평 매입과
동시에 대한민국으로 소유자 이전등기 완료

1964. 6. 14 : 김해군 대저면 사덕리에 공중선 이전공사 완료

1964. 6. 23 : 김해군 대저면 사덕리에 청사신축공사 착공

1964. 7. 1 : 청사 진입 전용도로 개통

1964. 10. 31 : 신축청사 준공(건평 140평)

1964. 11. 27 : 전파감시 시설 공사준공

1964. 11. 30 : 김해군 대저면 사덕리에 방향탐지실 준공(건평 8.15평)

1965. 4. 1 : 부산전파감시국 감리과에 방탐계 신설

1968. 11. 30 : 부산전파감시국 기술과에 검측계 신설

1968. 12. 1 : 부산전파감시국 감리과에 부산분실(부산시외전신전화국내) 신설

1971. 1. 11 : 감리과에 제22분실(경북 영일군 흥해면) 설치

1972. 1. 15 : 감리과에 제23분실(경남 사천군 사남면) 설치

1974. 5. 1 : 감리과를 관리과와 감시과로 분리
관리과에 허가계 신설
감시과에 조사계 신설
기술과 검측계를 검사계로 변경

1976. 12. 14 : 감리과 제2계를 분리하여 부산분국(#3) 신설(대통령령 제8306호)

1979. 10. 18 : 전파감리국 직제개정(대통령령 제9601호:79. 9. 7)에 따라 부산
분국이 전파통제소 편입되어 전파방향탐지 및 자동방향탐지시설
운용업무 개시

1980. 8. 26 : 부산전파감시국을 부산전파감리국으로 개정
감시과를 감리과로 개칭(대통령령 제10008호)

1981. 12. 28 : 부산시 남구 남천동 49-1(감청실만 대저면에 남았음)
부산체신청 직영우체국으로 청사이전

1982. 1. 1 : 체신부 직할관서로 됨(대통령령 제10584호)

1983. 1. 1 : 부산체신청 직할관서로 소속변경(대통령령 제11008호)

1983. 12. 30 : 부산전파감시국 폐지
중앙전파관리소 제61분소로 개편(대통령령 제11302호)

제21분실을 제151분실로 개칭
제22분실을 제161분실로 개칭
제23분실을 제171분실로 개칭
1984. 1. 23 : 부산시 남구 남천동 49-1번지 부산체신청 직영우체국에서 김해군 대저면 사덕리 현재의 청사로 이전
1985. 1. 17 : 제221분실 신설(대구시 동구 경북체신청 직영우체국 내)
1986. 12. 15 : 중앙전파관리소 제61분소 청사 개축(단층 197평)
1986. 12. 27 : 통신보안계 신설 및 분실명칭 변경
제151분실을 제611분실로
제161분실을 제621분실로
제171분실을 제631분실로
제221분실을 제641분실로 명칭변경
1987. 12. 15 : 중앙전파관리소 제 61분소로 명칭변경(대통령령 제12315호)
1989. 3. 23 : 제611분실 이전(부산시외전화국→부산체신보험회관)
1990. : 제641분실 이전(경북체신청직영우체국→대구우체국으로)
1990. 4. 3 : 중앙전파관리소 제61분소 청사증축(2층 394평)
1990. 12. 31 : 사천, 흥해분실 폐지
1991. 1. 10 : 중앙전파관리소 제61분소를 부산분소로 명칭변경
제611분실을 부산분실
제641분실을 대구분실로 변경(체신부 훈령 제2796호)
1996. 2. 22 : 중앙전파관리소부산분소 대구분실을 폐지
대구분실을 대구분소로 승격개편(대통령령 제14927호)

5. 광주분소

1950. 1. 8 : 송정우체국에 임시사무소 설치
1950. 1. 18 : 업무개시(감리과, 기술과)
1950. 4. 1 : 전남 광산군 송정읍 송정리 1003번지 소재 목조3층 건물로 이전
1950. 5. 1 : 청사 신축공사 착공(서울 신영토건)
1950. 7. 28 : 6·25사변 당시 북괴군 남침으로 업무중단 및 청사신축공사 중단
1950. 10. 1 : 아군 진주로 광주우체국 회의실에 임시 사무소 설치

1950. 10. 13 : 광주우체국 임시사무소에서 업무개시

1950. 12. 18 : 임시사무소 이전(광주우체국 보험과)

1951. 4. 10 : 광산군 송정읍 송정리 1003번지 소재 목조3층 청사로 이전 광주우체국에 분실설치

1951. 7. 31 : 광주분실 무선통신업무를 광주우체국에 인계하고 전면적인 전파 감시 업무 개시

1956. 6. 27 : 발전기 화재로 인하여 청사일부 소실

1957. 12. 3 : 광산군 송정읍 도산리 875번지에 신축용 청사부지 매입(2,000평)

1958. 8. 15 : 광산군 송정읍 도산리 871-1 소재 당국 가청사(목조와가 2동 30평)를 박경섭씨로 부터 기부 받음

1958. 9. 15 : 광산군 송정읍 송정리 1003번 소재 목재건물 3층 임시청사를 전라남도 관재국에 반환

1958. 10. 27 : 광산군 송정읍 도산리 소재 제1호 가청사로 감리과 사무실이전

1958. 12. 4 : 광산군 송정읍 도산리 소재 제2호 가청사로 기술과, 감리과 감청실 이전

1960. 9. 21 : 광산군 송정읍 도산리 875번지에 청사 신축공사 착공(합성공업공사)

1960. 10. 12 : 본청사 신축부지 396평 추가매입

1960. 11. 30 : 청사진입 전용도로 보수공사 착공

1960. 12. 10 : 공중선 철탑 건립공사 착공(자립식 1기, 지선식 9기)

1060. 12. 14 : 청사 진입 전용도로 보수공사 준공

1960. 12. 31 : 청사 신축공사 준공 및 공중선 철탑 건립공사 준공

1961. 1. 5 : 신축청사로 사무실 일부이전(국장실, 서무실)

1961. 4. 20 : 신축청사로 사무실 이전완료

1961. 9. 30 : 전남 광산군 평동면 월전리 532번지에 방향탐지실 부지 매입 (445평)

1961. 9. 30 : 위 청사 방향탐지기 설치

1962. 10. 1 : 방향탐지 업무개시

1963. 1. 1 : 방향탐지실과 무선전화 개통

1964. 1. 1 : 이동방향탐지 업무개시

1968. 5. 10 : 수위실 신축공사 준공(광산군 송정읍 도산리 875번지)

1968. 12. 1 : 감리과 여수분실(31) 업무개시(사무실 : 여수전신전화국 내)

1970. 2. 1 : 감리과 제주분실(32) 업무개시

1970. 9. 23 : 무기고 공사 준공(광산군 송정읍 도산리 875번지 청사내)

1971. 12. 15 : 나주군 산포면 매선리 340-10외 108필지를 청사 및 안테나 시설 부지로 매입(면적 : 37,888평)

1972. 7. 22 : 나주군 산포면 매성리 산5-2에 신청사 착공(남화토건 주)

1973. 2. 21 : 나주군 산포면 매성리 산5-2에 신청사 준공과 동시 감시업무 부분이전

1974. 4. 10 : 여수(31)분실 폐지

1974. 5. 1 : 직제개정(대통령령 제7101호)으로 관리과, 감시과, 기술과로 편제 확대개편

1975. 3. 7 : 자동감시시설 준공(나주군 산포면 매성리 산5-2 청사 내)

1976. 6. 2 : 나주군 산포면 매성리 산5-2 신청사로 이전

1977. 12. 30 : 당직실 준공(나주군 산포면 매성리 산5-2 청사 내)

1978. 12. 20 :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에 32분실 청사부지 일부 매입

1979. 8. 31 : 32분실 부지(5,936평)로 이전

1979. 9. 7 : 직제개정(대통령령 제9601호)으로 특별감시업무를 전파통제소로 이관하고 32분실폐지(전파통제소 산하 53분실 개편)

1979. 10. 19 : 전파통제소 53분실(제주)에 일반감시업무 주재요원 파견

1979. 12. 10 :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1814번지에 53분실 청사 준공(체신부 건축사무소)

1979. 12. 22 : 전파관리국 훈령 제94호에 의거 편제 및 사무분장 개정
(감시과 제2계와 제3계를 폐지하고 3개과 6계로 개편)

1979. 12. 30 : 전파통제소 53분실 공중선 시설 및 전력선 인입공사

1979. 12. 31 : 방향탐지업무 중지 및 시설철거(광산군 평동면 월전리 532)

1980. 2. 28 : 53분실 시설일체를 전파 통제소로 이관

1980. 6. 30 : 나주군 산포면 매성리 산5-2에 청사 증축공사 준공(108평)

1980. 8. 26 : 직제개정(대통령령 제10008호)으로 기관명칭 개정
(광주전파감시국→광주전파감리국)

1980. 11. 27 : 삼양타이어 주식회사로부터 국유재산(토지600평, 건물20평)을 기부체납 받음(이유:광산군 평동면 월전리 532번지의 방탐시설

주위에 고압 전력선 시설)

1981. 3. 14 : 제주 주재 일반감시업무 철수

1981. 5. 24 : 국유재산(잡종재산) 매각(광산군 평동면 월전리 532 소재 대지 445평, 건물 14.1평)

1981. 6. 25 : 당국 본 청사 부지에 차고 준공(시멘트 벽돌조 스라브 58평)

1981. 9. 28 : 북광주전신전화국 5층에 감리과 "상설이동감시반" 편성업무개시 감리과 조사계 측정실, 감시계 감청실, 기술과 보수실은 산포청사에 잔류

1982. 1. 1 : 대통령령 제10548호(81. 11. 2) 전파관서 직제개정에 따라 체신부장관 소속하의 직할관서로 직제개편
체신부 훈령 제2581호(81. 12. 31)전파관리국 사무분장 세칙 발령 시행

1982. 1. 27 : 광주청사(광주시 동구 대의동 45-2) 부지(635평), 건물(철근콘크리트조)을 전남체신청으로부터 관리 전환 받음

1982. 3. 15 : 감리과 조사계 측정실을 산포 청사에서 광주청사로 이전

1982. 3. 17 : 제주 구청사 (제주시 오라3동 2328-3)부지 1256평, 건물 58.14평을 전파통제국으로 관리전환

1983. 1. 1 : 지방체신관서 직제 제10조 규정에 의거 전남체신청 직속기관으로 직제개정

1983. 4. 30 : 산포청사(나주군 산포면 매성리 산5-2) 부지 38,458평, 청사건물 578평, 구축물 전파통제국에 보관함)

1983. 10. 1 : 전국 통신망을 제외한 사설무선국 검사를 한국무선종사자 협회에 위탁

1983. 12. 30 : 중앙전파감시소 신설
직제개정(대통령령 제11302호)으로 허가 및 검사업무는 체신청 전파과에서 조사 및 감시업무는 중앙전파감시소에서 실시
중앙전파감시소 신설에 따라 제31분소 및 제181분실 개설

1985. 1.16 : 중앙전파감시소 제31분소 전주, 광주 주재실 개설

1986. 1.16 : 전주 주재실을 241분실로 승격

1987. 1.10 : 광주 주재실을 321분실로 승격
181분실→311분실

241분실→331분실로 개칭

1991. 1.10 : 중앙전파관리소 광주분소 조사계 신설

1991. 1.16 : 중앙전파관리소 명칭 개칭

제 31분소 → 광주분소

제311분실 → 나주분실

제321분실 → 광주분실

제331분실 → 전주분실

1991. 4. 1 : 중앙전파관리소 나주분실을 감시계로 개칭

1996. 4.25 : 중앙전파관리소 광주분소 전주분실 폐지

전주분실을 전주분소로 승격

6. 강릉분소

1964.10.23 : 강릉전파감시국 개설(강릉시 유산동 70번지)

1966. 4. 1 : 감리과 방탐계 신설

1968.11.25 : 기술과 검측계 신설

1970. 1.12 : 속초분실 개설(속초시 조양동 237-1번지)

1970. 1.31 : 감리과 감시계, 방탐계를 제1계, 제2계로 개칭

1970. 3.26 : 속초분실을 강릉전파감시국 제41분실로 개칭

1974. 4. 1 : 감리과를 감시과로 개칭, 관리과 신설

1976.12.14 : 강릉분국 개설(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산1-123번지)

1977. 1.19 : 강릉분국 산하 제1계, 제3계 설치

1979. 9. 7 : 전파통제소 신설로 강릉분국을 전파감시국에서 전파통제소 산하로 개편

1979.10.19 : 전파통제소 강릉분국 제2계, 제3계를 관리계, 조사계, 통제계로 개칭

1979.12.22 : 강릉전파감시국 허가계를 관리계로, 제2계를 감시1계, 감시2계로 개칭

1980. 8.26 : 강릉전파감시국에서 강릉전파감리국으로 개칭

1982. 1. 1 : 전파통제소 강릉분국에서 전파통제국 강릉분국로 개칭

: 전파통제국 강릉분국 및 강릉전파감리국을 본부 직할관서로 개편

1983. 1. 1 : 강릉전파감리국을 강원체신청 직할관서로 개편

1983. 12. 30 : 중앙전파감시소 제41분소로 직제 개편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산1-123번지 소재)

- 전파통제국 및 강원체신청 산하 강릉전파감리국 기능 통폐합)
- 일반, 특별감시업무 통합, 무선국 허가 · 검사업무 강원체신청으로 이관)
- 강릉전파감리국 속초분실에서 중앙전파감시소 제41분소 201분실로 개칭)
- 제191분실 신설(강릉시 유산동 50-1번지)

1985. 1. 16 : 원주주재실 개설(원주시 일산동 54-1번지 소재, 강원체신청내)

1985. 12. 24 : 춘천지역 통신망 무인 감시 개시

1986. 1. 1 : 원주주재실에서 제251분실로 개칭

1986. 12. 26 : 청사 이전(강릉시 유산동 50-1번지)

1986. 12. 29 : 감시계, 통제계 폐지, 분석계 신설

1987. 1. 16 : 제191분실, 제201분실, 제251분실이 제411분실, 제421분실, 제431분실로 개칭

1987. 12. 15 : 중앙전파관리소 제41분소로 개칭

1989. 12. 28 : 감시업무 ON-LINE화로 사무 자동화(속초, 원주)

1991. 1. 10 : 중앙전파관리소 강릉분소로 개칭

1991. 1. 16 : 제411분실, 제421분실, 제431분실에서 강릉분실, 속초분실, 원주분실로 개칭

1992. 2. 12 : 청사 이전(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산106번지)

1985. 8. 22 : 중앙전파관리소 강릉분소 감시계 신설(강릉분실 일부 업무 이관)

1995. 10. 1 : 종합전파감시망 원격 감시 개시(춘천 보강, 동해 · 삼척 · 태백 신설)

7. 당진분소

1970. 11. 19 : 서울전파감시국 합덕(13)분실 신설

1971. 2. 1 : 충남 당진국 우강면 송산리 553-1 합덕(13)분실 설치

1971. 2. 5 : 서울전파감시국 제13분실로 개국

1974. 12. : 서울전파감시국 합덕분실 제2계에 자동방탐기능부여

1976. 12. 14 : 합덕(13)분실을 서울 전파감시국 서울분국으로 승격
1979. 9. 7 : 전파감시국 서울분국을 전파통제소 서울분국으로 개편
1979. 10. 19 : 전파통제소 서울분국에 제2계, 제3계를 관리계, 조사계, 통제계로 개편
1983. 12. 30 : 중앙전파감시소 제11분소 개편
1986. 12. 29 : 중앙전파감시소 제11분소 제141분실을 111분실로 변경
1987. 12. 15 : 중앙전파감시소 제11분소 개칭
1990. 12. 25 : 신청사 신축(충남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553-1)
- 본청사(철근콘크리트 1층, 슬라브지붕) 110평
- 지하(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 80평
- 경비실 및 차고(벽돌조 슬라브지붕) 36평

1991. 1. 1 : 각분소 및 분실의 숫자명칭을 지역명칭으로 개편
1991. 1. 16 : 당진분소 조사계 신설
1992. 1. 1 : 조사계에서 수행하던 품질감시 업무를 당진분실로 이관하여 운용감시업무와 병행 수행
1992. 3. 19 : 당진분실을 폐지하고 감시계 신설
1992. 11. 23 : 당진분소 조사계 및 대전분실 폐지

8. 제주분소

1970. 1. 12 : 광주전파감시국 제주분실 개설
1979. 9. 7 : 전파통제소 제53분실로 개편
1980. 3. 5 : 제주시에서 한림읍으로 청사이전
1982. 1. 1 : 전파통제국 제주분국으로 승격
1983. 12. 30 : 중앙전파감시소 제51분소로 개칭
1986. 1. 16 : 중앙전파감시소 제51분소 제511분실 신설(제주시)
1987. 12. 15 : 중앙전파관리소 제51분소로 개칭
1991. 1. 10 : 중앙전파관리소 제주분소로 개칭
1992. 2. 13 : 한림청사 관리계, 기술계를 제주청사로 이전
1992. 3. 19 : 제주분실 폐지 대신 감시계 신설(제주시)
1995. 8. 1 : 조사계 신설(제주시)

9. 울산분소

1966. 4. 1 : 부산전파감시국 감리과에서 방탐업무 개시

1975. : 현위치(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산95-2번지)에 부산분국 개소를 위한 위치선정 및 청사 신축공사 시작

1976. 12. 14 : 부산전파감시국 부산분국 신설(대통령령 제8306호)

1977. 1. 19 : 부산분국에 제1계 및 제3계 설치

1977. 12. 5 : 특별전파감시업무를 현위치로 이전 운용

1978. 4. 1 : 자동방탐시설 운용개시

1979. 9. 7 : 전파통제소 부산분국으로 직제개편(제2계, 제3계) (대통령령 제9601호)

1979. 10. 19 : 제2계 및 제3계를 관리계, 조사계, 통제계로 개편

1983. 12. 30 : 중앙전파감시소 제21분소로 직제개편 및 조사계를 감시계로 개칭하고 기술계 신설(대통령령 제11302호)

1986. 12. 29 : 감시계를 분석계로 명칭 변경

1987. 12. 15 : 중앙전파관리소 제21분소로 개편(대통령령 제12315호)

1991. 1. 10 : 중앙전파관리소 울산분소로 개칭(체신부 훈령 제2796호)

1992. 5. 9 : 청사개축 현청사 준공

10. 대전분소

1985. 1. 11 : 11분소 211분실 신설

1992. 11. 23 : 대전분소 신설(승격) 대통령령 제13763호

1995. 5. 21 : 대전분소 준공(대전 서구 갈마동 408-9번지에 청사 신축)

1995. 4. 4 : 청주분실 신설

1995. 12. 20 : 청주분실 개실(청주 흥덕구 봉명동 211번지 새한B/D 3층)

11. 대구분소

1985. 1. 17 : 중앙전파감시소 제61분소 제211분실 설치
대구시 동구 신암2동 1289-2번지(경북체신청직영우체국 4층)

1986. 12. 29 : 중앙전파감시소 제61분소 제641분실 개칭

1987. 5. 15 : 중앙전파관리소부산분소 대구분실 개칭

1990. 4. 3 : 중앙전파관리소부산분소 대구분실 이전
대구시 중구 포정동 35번지(대구우체국 5층)

1996. 4. 24 : 중앙전파관리소대구분소 신설
대구시 중구 포정동 35번지(대구우체국 5층)

1998. 12. 18 : 신청사 공사 착공(지하1층 지상3층) 준공예정일 2000. 7.

(1) 위치 :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1429-7번지

(2) 대지 : 3,870평

(3) 건물규모

가) 본청사(철근콘크리트) 1,016평

나) 경비실(철근콘크리트) 13.56평

다) 차고동(철근콘크리트) 48.4평

12. 전주분소

1985. 1. 16 : 중앙전파감시소 제31분소 전주주재실 개설

1991. 1. 16 : 중앙전파관리소광주분소 전주분실로 개칭

1996. 4. 25 : 중앙전파관리소전주분소 개소

1997. 12. 29 : 신청사 공사 착공(지하1층 지상3층)

(1) 위치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전주과학산업단지 2B-3L

(2) 대지 : 3,912평

(3) 건물규모

가) 본청사(철근콘크리트) 933평

나) 수위실(철근콘크리트) 20평

다) 차고동(철근콘크리트) 48평

□ 연 표

전파관리

1910. 9. 5	○ 인천 월미도–광제호간 최초의 무선전신 개시
1910.10. 1	○ 조선총독부 통신국에서 무선관계업무 관장
1915. 6.19	○ 무선전신법 제정
1916. 2. 1	○ 전파의 통제업무 실시(일본)
1935. 3.15	○ 무선방위측정규칙 제정
1938.	○ 경성, 목포, 부산, 진남포, 청진, 강릉무선국을 무선통신감시소로 지정
1940. 7.	○ 광장리수신소 준공(단 · 중 · 장파수신기설치)
1942. 1.31	○ 광장리수신소에 주파수정밀측정장치 설치
1942. 6. 2	○ 경기도 고양군 노해면 월계리(현 광운전자공고)에 독립된 무선통신감시소 설치(후에 뚝섬으로 이전)후 나진, 부산에도 설치

정보통신

1884. 3. 27	○ 우정총국 창설(초대총판 홍영식)
1885. 8.20	○ 한성전보총국 개국
1885. 8.25	○ 한성–인천간 전신업무 개시
1885.10.18	○ 최초의 국제전신업무 개시
1888. 7. 6	○ 최초의 전신법 "전보장정"공포시행
1895. 5. 9	○ 봉수제도 폐지
1897. 8.	○ 대한제국 성립
1900. 9. 27	○ 통신원 발족(초대총판 민상호)
1901. 4. 13	○ 일관 무선전신교환소 설치 등 6개 항목의 전신 특권을 요구
1905. 4. 1	○ 통신권 피탈
1906.12.10	○ 광제호 진수식 거행
1910. 9. 5	○ 인천 월미도–광제호간 최초의 무선전신 개시
1910.10. 1	○ 조선총독부 통신국 설치
	○ 목포 · 소청도 등대간 무선전신 취급개시(일본해군)
1910.11.	○ 일반공중무선 및 선박과 육지간 통신에 관한 제규칙 제정
	○ 소청도등대무선국준공
1910.11.19	○ 자지도(항문도)등대무선소 해안국으로 개설
1910.11.23	○ 목포무선전신소 개소(목포시 항동)
1913. 7. 1	○ 런던 국제무선전신회의 결의에 따라 국제무선전신 조약 및 국내규칙을 전면 개정 공포
1915. 6.19	○ 무선전신법 제정
1916. 2. 1	○ 전파의 통제업무 실시
1923. 6. 11	○ 경성무선전신국 설치
1929.12.29	○ 경성방송국 개설
1930. 4. 19	○ 울산무선전신국 설치
1935. 3. 15	○ 무선방위측정규칙 제정
1939.10. 1	○ 경성중앙전신국 개국
1940. 7.	○ 광장리수신소 준공(단 · 중 · 장파수신기설치)
1942. 1. 31	○ 광장리수신소에 주파수정밀측정장치 설치
1945. 8. 15	○ 광복
1945.12. 6	○ 한 · 미간 직통무선전화 개최
1946. 1.25	○ 제1회 무선전신국장회의 개최
1946. 4.23	○ 체신국이 체신부로 승격
	○ 전무국 무선과 신설
1947. 6. 1	○ 체신부 전무국 무선과 광장분실 설치 (부달71호 : 취급종별 감시사무, 경기도고양군뚝도면광장리 서울중앙전신국 광장수신소내)
1947.10.24	○ 광장리분실에서 불온 및 무선통신보안위주 전파감시업무 개시
1948. 4.20	○ 보도무선송신 허가제도 설정
1948.11.20	○ 체신부 전파국 신설
1949.11.22	○ 서울, 부산, 광주에 전파감시국 설치
	○ 뚝도 및 대연리분실 폐지
1947. 9. 3	○ 국제무선호출부호 HL 사용 결정
1948. 8.15	○ 대한민국 체신부 탄생(초대장관 윤석구)
1948.11.30	○ 전파국 신설
1950. 5.29	○ 전파국이 전무국으로 통합
1950. 8.16	○ 사변으로 체신부 부산 피난
1952. 1.31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가입
1953.12.17	○ 수복 후 국제전신업무 재개
1954. 8.16	○ 긴급통신복구비로 FOA자금 650만불 책정(국무회의)

1946년이전

1947 ~ 1960

전파관리

○ 전파국 확장(감리, 업무, 검정, 기술과 설치)
1950. 1.10 ○ 서울전파감시국 개국(감리, 기술, 발사, 표준과)
1950. 1.16 ○ 부산전파감시국 개국(감리, 기술과)
1950. 1.18 ○ 광주전파감시국 개국(감리, 기술과)
1950. 3.21 ○ 전파국 검정과 폐지
1950. 5.29 ○ 전파국이 전무국으로 통합
1952.12.31 ○ 불법무선전신시설단속 실시
1953. 1. 7 ○ 부산전파감시국 화재로 이전 → 부산저금보험관리국 본관
1953. 3.14 ○ 서울 · 부산전파감시국 시설공사
1953. 5.12 ○ 서울전파감시국 시설복구공사 재실시
1953. 8.31 ○ 부산전파감시국 시설복구공사
1953. 9.15 ○ 부산전파감시국 시설복구공사 준공
1954. 3.30 ○ 서울전파감시국 시설복구공사 준공
1954. 4. 3 ○ 광주전파감시국 시설복구공사 준공
1955. 6.26 ○ 부산전파감시국 긴급 가복구공사 준공
1955. 6.30 ○ 서울전파감시국 시설복구공사 준공
1956.12.30 ○ 서울전파감시국 시설개수 · 증설공사 준공
1957.12.15 ○ 서울전파감시국 초단파감시시설 준공
1957.12.24 ○ 부산전파감시국 감시장치시설 준공
1957.12.30 ○ 서울전파감시국 수신장치 시설공사 준공
○ 광주전파감시국 수신장치 시설공사 준공
1958.12.15 ○ 서울전파감시국 이동감시시설공사 준공
1958.12.30 ○ 서울전파감시국 불법통신감시용 수신장치설치
1960.12.30 ○ 부산전파감시국 수신장치시설 준공

정보통신

1956. 6. 4 ○ 체신의 날 지정(매년12월4일)
1957. 9.15 ○ AFKN-TV 방송 개시
1959. 4.15 ○ 최초의 상업방송 부산MBC 개국(HLKU 1KW 1035KHz)
1959. 5.10 ○ 대 유럽방송개시(15,410KHz 50KW)
1959.12.21 ○ 최초의 모사전신기 설치(서울, 부산, 대구간)
1960. 8.15 ○ 이동무선전화업무 취급개시(공중차량무선)
1960. 8.28 ○ EMD 자동전화 교환시설 개통(서울 중앙우체국 용산분국)

1961 ~ 1970

전파관리

1961. 9.13 ○ 국가재건최고회의 지침으로 통신정보 및 보안업무 통제지침 제정(현역 군 요원, 서울전파감시국에서 보안업무 개시)
1961.10. 2 ○ 서울전파감시국 발사과 폐지(표준과로 통합)
○ 전파관리국(체신부 외국) 신설(감리, 주파수, 기술과)
○ 전파감시기구 확장개편(특별전파감시업무 개시) – 서울, 광주전파감시국 방탐계 신설
1961.11.20 ○ 중앙정보부규정 제24조 "무선검사규정"제정을 계기로 행정부 및 공공기관 무선국에 대한 보안감청을 체신부 전파관리국에서 담당
1961.12.30 ○ 전파관리법 제정 공포(법률 제924호)
1962.10. 2 ○ 서울전파감시국 발사과를 표준과로 통합
1963. 9.27 ○ 무선국 검사규정 공포
1963.12.24 ○ 청사 신축용 부지 6,300평 매입(경남 김해군 대저면 사덕리)
1964.10.23 ○ 강릉전파감시국 신설(대통령령 제1965호)
1965. 1.15 ○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조정규정으로 대체(정보 및 보안감청)
1965. 2.24 ○ 부산전파감시국 방향탐지기시설 운용개시

정보통신

1961. 8.15 ○ 육상이동 무선전화교환업무 취급개시(수동식 20대)
1961. 9.13 ○ 국가재건최고회의 지침으로 통신정보 및 보안업무 통제지침 제정(현역 군 요원, 서울전파감시국에서 보안업무 개시)
1961.10. 2 ○ 전파관리국(체신부 외국) 신설(감리, 주파수, 기술과)
1961.11.20 ○ 중앙정보부규정 제24조 "무선검사규정"제정을 계기로 행정부 및 공공기관 무선국에 대한 보안감청을 체신부 전파관리국에서 담당
1961.12.27 ○ 목포-제주간 스캐터통신회선 개통
1961.12.30 ○ 전기통신법, 전파관리법 제정 공포(법률 제924호)
1962. 6.29 ○ 제1차 통신사업5개년계획 공포
1963. 3. 4 ○ 서울-동경간 국제가입전신 개시
1964. 7. 5 ○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 발표
1965. 1.15 ○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조정규정으로 대체(정보 및 보안감청)
1965.12.15 ○ 국제자동가입전신업무 개시
1966. 2. 5 ○ 전파연구소 신설(대통령령 제2396호)
1967. 2.24 ○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 가입

1961 ~ 1970

전파관리

1965.12.27 ○ 전파감시시설 23종 전파연구시설 2종 도입
1966. 2. 5 ○ 전파연구소 신설(대통령령 제2396호)
○ 서울전파감시국 표준과 폐지
1966. 4. 1 ○ 특별감시기능 확장 및 무선국검사업무 전담부서 설치(훈령 제11호)
– 서울전파감시국 기술과에 검측계
– 부산, 강릉전파감시국에 방탐계 신설
1966. 6. ○ 강릉전파감시국 통신정보업무 개시
1968. 8. 5 ○ 전파감시기능 확장
– 서울(광화문), 인천, 부산, 여수분실 신설
1968.11.16 ○ 무선국검사업무 전담부서 확정
– 부산, 광주, 강릉감시국 기술과에 검측계 신설
1968.12. 1 ○ 부산전파감시국 감리과에 부산분실(부산시외전신전화국내) 신설
1968.12.19 ○ 전파관리국 감시업무과 신설
1970. 1.12 ○ 속초 및 제주분실 신설
1970. 1.31 ○ 각 전파감시국 감시계, 방탐계를 제1계 및 제2계로 개칭
1970. 3.26 ○ 각 국소명칭 개칭(서울→11, 인천→12, 부산→21, 여수→31, 제주→32, 속초→41분실)
1970.11.19 ○ 합덕(13) 및 흥해(22)분실 신설
1970.12.28 ○ 서울전파감시국 현위치(가락동)이전

정보통신

1967.12.21 ○ 마이크로웨이브 통신회선 개통
1968. 6. 3 ○ 한–일간 국제스캐터통신회선 개통(울산 무룡산)
1968.12.19 ○ 전파관리국 감시업무과 신설, 감리과 규약계 폐지
1969. 2.11 ○ 동축케이블 통신방식 개통
1969. 7.15 ○ 전화가입자 50만 돌파
1970. 3.21 ○ 서울–일본간 최초 국제전화 반자동 실시
1970. 7. 1 ○ 금산 제1위성통신지구국 개통
1970. 9. 1 ○ 한일 자동텔렉스 개통

1971 ~ 1980

전파관리

1971. 1.11 ○ 부산전파감시국 제22분실(경북 영일군 흥해면) 설치
1972. 1.15 ○ 부산전파감시국 제23분실(경남 사천군 사남면) 설치
1972.12.31 ○ 부산전파감시국 현위치(대저동) 이전
1973. 3.13 ○ 전파관리국 감시업무과를 감시과로 개칭. 제3계 신설
1974. 4. 1 ○ 전파관리국 감리과를 관리, 감시과로 분리
○ 각 전파감시국 감리과를 감시과로 개칭하고 관리과 및 허가계 신설
1974. 4.25 ○ 각 전파감시국 직제개정
– 관리과 : 서무, 허가계
– 감시과 : 조사, 제1, 2계
– 기술과 : 기술, 검사계
1974. 5.20 ○ 인천(12분실), 여수(31분실) 폐지
1974. 9.25 ○ 전파관리국 감리과를 관리과로 개칭하고, 감시과에 통신보안계 신설
1975. 3. ○ 자동전파감시시설 싸이트 1(합덕), 2(양산)운용 개시
1975.12.16 ○ 서울(11)분실을 수색으로 이전
1976. 2. 5 ○ 전파탑관리사무소 신설(관리과, 기술과)
1976. 6.19 ○ 서울전파감시국 제11분실 수색 이전.
○ 전파관리국 사무분장규칙 전면개정(일반, 특별, 고정감시와 통신보안담당으로 개정)

정보통신

1971. 3.31 ○ 장거리자동전화(DDD) 개통
1972. 4. 1 ○ 한국무선종사자협회 창립
1972. 7. 3 ○ KBS 남산종합타워 송신 개시
1972. 7.12 ○ 체신의날을 4월22일로 변경
1972.12.18 ○ 한 · 미간 국제전화 반자동화
1973. 3. 3 ○ 한국방송공사 발족
1973. 3.13 ○ 장거리전신전화관리청 발족
1974. 4. 1 ○ 전파관리국 감리과를 관리(서무, 회계계), 감시과(조사1, 2계)로 분리
1974. 9.25 ○ 전파관리국 감리과를 관리과로 개칭. 감시과에 통신보안계 신설
1975. 2. 7 ○ 서울–부산간 동축케이블 반송시설 개통
1975. 2.11 ○ 서울–동경간 반자동국제전화 개통
1975.11.29 ○ 전화가입자 100만 돌파
1976. 2. 5 ○ 전파탑관리사무소 신설(관리과, 기술과)
1976. 6.19 ○ 전파관리국 사무분장규칙 전면개정(중앙관서 편제인 일반, 특별, 고정감시와 통신보안담당으로 개정)
1976. 9. 1 ○ 전자교환방식 도입 결정
1976.12.14 ○ 서울무선전신국 개편 발족
1976.12.31 ○ 면단위 통신망 완성
○ KIST부설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설립
1977. 7. 8 ○ 아시아 · 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PT) 정회원 가입

1971 ~ 1980

전파관리

1976. 12. 14 ○ 합덕(13)분실을 서울전파감시국 서울분국으로 승격
○ 부산전파감시국 부산분국(서생), 강릉전파감시국 강릉분국(대관령) 및 서울전파감시국 통제과 신설

1977. 1. 19 ○ 서울전파감시국 통제과에 운용, 통제계 설치 및 각 전파감시국 분국에 제1, 제3계 신설

1977. 12. 28 ○ 서울전파감시국 제12분실(김포) 설치

1978. 4. ○ 자동전파감시시설 보강 및 싸이트3(광주), 4(대관령) 준공 운용

1978. 7. 27 ○ 전파관리국 총무과 신설 및 전파탑관리사무소 축소개편(관리과 및 기술과 폐지)

1979. 7. ○ 초단파대 방탐업무 추가운용(김포)

1979. 9. 7 ○ 전파관리국 방송과 신설

1979. 9. 7 ○ 전파통제소 신설 : 관리과, 조사과, 통제과(대통령령 제9601호)
- 전파감시국 서울, 부산, 강릉분국 및 광주, 김포, 제주분실을 전파통제소 분국 및 분실로 개편
- 합덕, 양산, 대관령분국, 12(김포)분실, 광주감시국 2, 3계 및 32(제주)분실 폐지

1979. 9. 20 ○ 서울전파감시국 감시과 남산주재실 업무개시

1979. 10. 19 ○ 전파통제소 제51(광주)분실 개국
- 서울전파감시국 제12분실(김포)을 전파통제소 제52분실로,
- 광주전파감시국 제32분실(제주)을 전파통제소 제53분실로 개편

1979. 12. 22 ○ 각 전파감시국 허가계를 관리계로, 제1, 제2계를 감시1, 2계로 개편

1980. 3. ○ 제주분실 청사이전(제주시 오라동 → 한림)

1980. 8. 25 ○ 전파감시국을 전파감리국으로 개칭

1980. 8. 26 ○ 전파관리국 감시과를 감리과로 부산분실을 제21분실로 개칭
○ 전파통제소 제51분실을 광주분국으로 승격

1980. 12. 24 ○ 전파통제소 광주분국에 관리, 조사, 통제계 신설

정보통신

1977. 9. 1 ○ 금산 제2위성통신지구국(인도양지구) 개통

1977. 9. 26 ○ 전자교환기 제1기종 선정(M10CN)

1977. 12. 31 ○ 전기통신법 개정

1978. 7. 27 ○ 전파관리국에 총무과 신설 및 전파탑관리사무소 축소개편(관리 및 기술과 폐지)

1978. 12. 30 ○ 주요도시간 장거리자동공중전화 개통

1979. 9. 1 ○ 원양선박과 전화개통

1979. 9. 7 ○ 전파관리국에 방송과 신설

1979. 12. 16 ○ 전자교환방식 자동전화 개통
○ 단파장, 광통신시스템 현장설치시험(중앙-광화문전화국간)

1979. 12. 18 ○ 통신시설 확장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

1980. 8. 26 ○ 전파관리국 감시과를 감리과로 개칭

1980. 11. 28 ○ 한 · 일간 해저케이블 개통

1980. 12. 1 ○ 컬러TV 방영 개시

1981 ~ 1982

전파관리

1982. 1. 1 ○ 전파관리국 내국화(전파기획, 감리, 방송, 주파수, 기술과)
○ 전파통제국 및 지방감리국을 본부 직할관서로 직제개편
- 전파통제소를 전파통제국으로 개칭(관리, 조사2, 통제과로 개편)
- 제53(제주)분실을 제주분국으로 승격
- 전파감리국을 체신청 직속기관으로 이관
- 전파통제국 조사2과를 제101분국(중앙전화국)으로 개편

1983. 9. 20 ○ 간이무전기 사용 허용
○ 아마추어무선국 이동무선통신의 운용 허용

정보통신

1981. 6. 1 ○ 원양선박 TELEX업무 개시

1981. 2. 10 ○ 한국전기통신공사 창립

1982. 1. 1 ○ 한국전기통신공사 발족(업무개시)
- 전파관리국 내국화(전파기획, 감리, 방송, 주파수, 기술과)
- 전파감리국을 각 체신청 직속기관으로 이관

1982. 3. 29 ○ 한국데이터통신주식회사 설립

1982. 4. 16 ○ 아마추어무선국시설 공동사용제도 신설

1982. 9. 1 ○ 국가기간통신망 통합시작

1982. 12. 15 ○ 무선호출서비스제도 실시

1983. 2. 15 ○ 해외 데이터뱅크연결 서비스 개시

1983. 3. 21 ○ 공중전화망(PSTN)의 데이터통신 이용 개방

전파관리

1983.12.30 ○ 각 체신청 산하 전파감리국 및 전파통제국 통·폐합하여 중앙전파감시소로 승격 발족(초대소장 박성득)
- 관리과 : 서무, 회계, 기획방호계
- 감시1과(일반) : 관리, 기술, 보안, 감시계
- 감시2과(정보) : 관리, 통제, 분석, 기술계
- 6개 분소(11:합덕, 21:서생, 31:산포, 41:대관령, 51:한림, 61:부산)
- 10개 분실(111:김포, 121:수색, 131:남산, 141:합덕, 151:부산, 161:흥해, 171:사천, 181:산포, 191:강릉, 201:속초) 설치
- 전파통제국 제101분국 폐지(한국전기통신공사 이관)

1985. 1. 17 ○ 211(대전), 221(대구)분실 및 광주, 전주, 원주주재실 설치

1985.12. 24 ○ 춘천(춘천전신전화국) ⇒ 원주분실간 원격무인감시시설 설치운용

1986. 1. 16 ○ 제주분소 감시계를 폐지하고 231(제주)분실 설치(한림⇒오라동).
○ 제주분소 통제계 신설 및 241(전주), 251(원주) 분실 승격

1986.12. 26 ○ 중앙전파감시소 기술과 신설

1986.12. 27 ○ 울산(21분소내) 및 불모산 ⇒ 부산분실간 원격제어무인감시시설 설치운용

1987. 1. ○ 제71분소(서울) 신설 및 각 분실 명칭변경
- 감시1과 : 감시 및 기술계 폐지, 조사, 전산계 신설
- 감시2과 : 기술계 폐지
- 기술과 : 기술 1, 2 및 보전계 신설
- 11분소 : 141, 211분실을 111(당진), 121(대전) 분실로 변경
- 111, 121, 131분실은 71분소 711(김포), 721(수색), 731(남산)분실로 변경
- 21, 31분소 : 감시계를 폐지하고 분석계 신설
- 광주주재실, 181, 241분실을 311(나주), 321(광주), 331(전주)분실로 변경
- 41분소 : 감시, 통제계를 폐지하고 분석계 및 441(대관령)분실 신설
- 191, 201, 251분실을 411(강릉), 421(속초), 431(원주)분실로 변경
- 51분소 : 감시 폐지 분석계 신설 및 231분실을 511분실로 변경
- 61분소 : 통신보안계 신설,
- 151, 171, 161, 221분실을 611(부산), 621(사천), 631(흥해), 641(대구)분실로 변경
- 71분소 : 관리, 감시, 조사, 기술, 통신보안계 신설

1987. 1. 12 ○ 제111(김포)분실 임무변경(정보⇒일반)

1981 ~ 1990

정보통신

1983. 5.14 ○ 디지털 전자교환방식 장거리자동전화 개통(NO.4 ESS, AXE-10)

1983. 7. 1 ○ 자동보고체제(ARS) 구성운용

1983. 8. 1 ○ 국제자동전화(ISD) 개통

1983. 9.20 ○ 간이무전기 사용 허용
○ 아마추어무선국 이동무선통신의 운용 허용

1983.12.20 ○ 군청소재지이상 전국 전화자동화 완성

1983.12.30 ○ 중앙전파감시소 발족(초대소장 박성득)

1984. 3.29 ○ 한국이동통신서비스(주) 설립

1984. 4.20 ○ 전화가입자 500만대 돌파

1984. 4.25 ○ 한국형 전전자교환기(TDX-1) 시범 개통(서대전↔유성전화국)

1984. 5. 7 ○ 차량전화의 자동서비스 개시(서울, 안양, 수원, 성남)

1984. 6.22 ○ 광통신개발(다중모드 90Mb/s)

1984. 7.18 ○ 방송통신망 통합(KTA)

1984. 7.25 ○ 공중정보통신망 건설운용 개시(서울, 부산, 대구)

1984.10.16 ○ 통신종합센터 준공(체신부청사 이전)

1984. 11. 6 ○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PT) 서울총회 및 관리이사회 개최

1984. 11.30 ○ 정보통신훈련센터 설립

1984. 12. 1 ○ 방송송신중계소 통합운영 개시

1984.12.23 ○ 전국 시외자동전화망 완성

1985. 2. 4 ○ 통신정책연구소 설립

1985. 4.22 ○ 제1회 체신관서책임경영평가 우수관서 시상

1985. 5. 1 ○ 우정박물관 개관

1985. 5.29 ○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 발족

1985. 7.10 ○ 차량전화단말기 대여제 실시(월 50,000원)

1985. 7.29 ○ 통신용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규정 제정

1985. 8.21 ○ 국제해사위성기구(INMARSAT) 가입비준서 기탁

1985.10. 1 ○ 음성다중방송 서비스 시행
○ 전자종합예금제도 시행

1985.12.24 ○ 무선호출서비스 이용제도 및 요금확정

1985.12.30 ○ 통신엔지니어링(주) 설립
○ 공항 및 항만통신서비스 시행

1985.12.31 ○ 한국항만전화(주) 설립

1986. 1.27 ○ 한국통신기술(주) 설립

1986. 3.21 ○ 무선호출 전화번호 표시방식 서비스시행(서울, 부산)

1986. 3.14 ○ 국산 전전자교환기(TDX-1) 개통(2만4천회선, 무주, 고령, 전곡, 가평전화국)

1986. 4.25 ○ 국제통신관문국 2원화 개통

1986. 5.21 ○ 한국통신진흥(주) 설립

1986. 8.28 ○ 시험적 공중통신서비스요금 신설

1986. 9. 2 ○ 한국데이터통신 천리안서비스 개시

1986. 9. 8 ○ 카드식 공중전화서비스 시행

1986.10.20 ○ 무선호출서비스지역 확대(대구, 대전, 광주)

1986.12. 1 ○ 전화사서함서비스 개시

전파관리

1987. 2. 12 ○ 제71(서울)분소 개소(용산우체국 4층)
○ 망경대⇒서울분소(감시계)간 원격제어 무인감시시설 설치운용
1987. 4. 20 ○ 제321(광주)분실 이전[북광주전화국 4층(신안동)⇒북광주우체국 3층(임동)]
1987.12. 15 ○ 중앙전파감시소를 중앙전파관리소로 명칭 변경
1988. 1. 4 ○ 군산(군산전신전화국)⇒전주분실간 원격제어 감시시설 설치운용
1988. 1. 6 ○ 금오산(경남 하동)⇒광주분실간 원격제어 감시시설 설치운용
1988. 9. 1 ○ 수도권 무인방탐국 3개소 설치운용(본소, 영등포보험회관, 기상대)
1988.10. 5 ○ 인천(서인천분국)⇒서울분소(감시계)간 원격제어 감시시설 설치운용
1989. 1. 1 ○ 전파관리 온라인망 개통(본부, 본소, 각 분소 및 분실간)
1989. 1. 23 ○ 서울분소 이전[(용산우체국⇒서대문우체국(구 국제우체국) 4층]
1989. 5. 1 ○ 611분실 TRS(주파수공용통신)감시시스템 설치운용(KTA장비 전용)
1989. 5. 6 ○ 611(부산)분실 청사이전(부산시외전화국⇒부산체신보험회관 5층)
1989. 5. 8 ○ 641(대구)분실 청사이전(동대구우체국⇒대구우체국 5층)
1989. 6. 7 ○ 특별감시분석업무 전산망 준공
1989.11. 1 ○ 중앙전파관리소 신청사 준공(송파구 가락동 100)
1990. 2. 3 ○ 중앙전파관리소 단체아마추어국 개국(HLOMOP)
1990. 2. 28 ○ 부산분소 청사증축(강서구 대저1동 2327-3)
1990.10. 11 ○ 생활무선국(CB : 27MHz대) 40개 채널 전면개방
○ 소출력무전기(출력 0.5W) 허가 및 신고 없이 개설가능
1990.11. 1 ○ 전파감시 및 조사 등에 관한 업무처리세칙 발령
1990.11. 24 ○ MBC은월중계소(울산시)⇒부산분실간 원격제어 감시시설 설치운용

1981 ~ 1990

정보통신

1986. 12. 4 ○ 방송송신중계소 통합협정 체결
1987. 1. 16 ○ 한국전산원 설립
1987. 5. 19 ○ 정보통신진흥협회 설립
1987. 7. 1 ○ 전국전화자동화 완성
1987. 7. 3 ○ 한국전기통신공사 민영화 확정
1987. 8. 15 ○ 전국 시외 114안내 전화번호 동일화
1987. 9. 30 ○ 전화 1천만회선 돌파
1987. 12. 1 ○ 국제 및 국내전화 야간할인
1988. 1. 1 ○ 전신전화채권 폐지
○ 통신개발연구원(재) 설립
1988. 2. 4 ○ 정보통신훈련센터를 정보문화센터(재)로 확대 개편
1988. 3. 18 ○ 정보문화의 달 설정(매년 6월)
1988. 4. 28 ○ 아시아 ISDN협의회 발족
1988. 4. 30 ○ 한국이동통신 공중전기통신사업자 지정
1988. 5. 1 ○ 무선호출기 자급제 시행
○ 방송송신 중계소 이관
1988. 6. 1 ○ 한국이동통신(주) 금고관리협약 체결
1988. 9. 10 ○ 항만전화 자동화 개통
1988. 9. 14 ○ 주파수 공용통신 서비스 실시
1988. 12. 20 ○ 전기통신홍보관 개관(어린이대공원)
1988. 12. 28 ○ 무선호출 10만가입자 돌파
1988. 12. 29 ○ 한국통신기술협회 설립
1989. 1. 5 ○ TV 문자다중방송에 관한 표준방식 제정
1989. 2. 10 ○ 개인아마추어국 이동운용 허용
1989. 4. 25 ○ TDX-1B 전자교환기 최초 개통(1만6천회선)
1989. 6. 23 ○ ITU 관리이사국 진출
1989. 7. 20 ○ 구내무선국 호출국의 음성방식 도입
1989. 9. 8 ○ 전자파 무반사시설 준공
1989. 12. 27 ○ KBS TV 문자다중방송 허가
1989. 12. 30 ○ 전파심의관실 신설
○ 한국전파기술협회 설립
1990. 4. 25 ○ 국제 디지털 전용회선 개설
1990. 5. 18 ○ 통신방송위성사업추진위원회 통신방송위성 명칭선정(무궁화호 : KOREA SAT)
1990. 6. 15 ○ 이동통신사업체 설립 허용계획 발표
1990. 7. 4 ○ 서울우편집중국 개국
1990. 7. 10 ○ 한국-일본-홍콩 해저광케이블 개통
1990. 7. 19 ○ 한국- 통신사업 구조조정안 발표(KT-정보통신 참여, 한국데이터통신(주)-국제음성통신 참여)
1990. 8. 1 ○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설립
1990. 9. 4 ○ 공중팩시밀리 서비스 제공
1990. 9. 11 ○ 생활무선국제도 도입
1990. 10. 29 ○ 한국전파산업진흥협회 설립
1990. 12. 31 ○ 정보통신국 신설 및 전파심의관실을 통신위성계획관실로 개칭

전파관리

1991. 1. 1 ○ 각 분소 및 분실의 숫자명칭을 지역명칭으로 변경
- 11 : 당진분소(111 : 당진, 121 : 대전분실)
- 21 : 울산분소
- 31 : 광주분소(311 : 나주, 321 : 광주, 331 : 전주분실)
- 41 : 강릉분소(411 : 강릉, 421 : 속초, 431 : 원주분실)
- 51 : 제주분소(511 : 제주분실)
- 61 : 부산분소(611 : 부산, 641 : 대구분실)
- 71 : 서울분소(711 : 김포, 731 : 서울분실)

1991. 1.16 ○ 수색, 사천, 흥해분실 폐지
○ 광주, 강릉, 당진분소 조사계 신설
○ 441(대관령)분실 폐지⇒강릉분소 통제계에 흡수

1991. 1. ○ 전 원격제어감시국소에 V/UHF대 감시장치(CMR-23RA)증설 운용

1991. 1. ○ 불모산 원격제어 감시시설 제어국소 변경운용(부산분실⇒부산분소)
단, V/UHF대 감시장치(CMR-23RA)는 부산분실에서 계속 운용

1991. 2. 1 ○ 미수교 공산국가 아마추어교신 전면허용

1991. 3.16 ○ 전파법개정에 따라 조사관증 발급권자 변경(소장→장관)

1991.10. 11 ○ 국제방탐업무 처리방법 개선(본부→일본을 중앙전파관리소→일본으로)

1991. 11. 5 ○ 국제방탐업무 협조체제확립(중앙전파관리소→FCC호놀룰루감시국)

1992. 2. 1 ○ 중앙전파관리소 단체아마추어국 변경허가(V/UHF대 추가)

1992. 2.12 ○ 강릉분소 청사신축 이전(강릉시 유산동⇒명주군 연곡면 방내리 산106)

1992. 2.13 ○ 제주분소 청사신축 이전(한림읍⇒제주시 오라동)

1992. 3. 3 ○ 광주분소 청사신축 이전(나주군 산포면)

1992. 3. ○ 경인권 종합전파감시망 구축에 따른 무인국소 이전설치 및 신설
- 신설 : 수원전화국(3.12), 의정부우체국(3.10), 이천전화국(3.13)
- 이전 : 서인천분국⇒인천측후소(3.14)

1992. 3.19 ○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 개정(광주분실, 당진분실, 제주분실을 감시계로 개편)

1992. 5. 1 ○ 전파감시 및 조사 등에 관한 업무처리세칙 개정(훈령 제2833호)

1992. 6. 1 ○ 생활무선국 출력 상향조정(0.5W→3W로)

1992. 7. 1 ○ 경인권 종합전파감시망 설치, 운용(인천, 의정부, 수원, 이천, 망경대)
○ 아마추어국 이동운용 허용

1992. 8. 1 ○ 조사관증 발급권자 변경(장관→중앙전파관리소장)

1992. 9. 1 ○ 한 · 일간 아마추어무선 상호운용 인정

1992.12. 2 ○ 중앙전파관리소 대전분소 신설(관리, 감시, 조

정보통신

1991. 3. 6 ○ 국제 해상위성지구국 개통

1991. 3.18 ○ 서울방송 라디오방송국 허가

1991. 6.22 ○ 전자파내성(EMS) 시험시설 준공

1991. 7. 1 ○ 한 · 미간 국제 VAN업무 개시

1991.11.15 ○ 한 · 일간 국제 VAN업무 개시

1991.12. 3 ○ DACOM 국제전화서비스 개시

1991.12. 5 ○ 서울방송 TV방송국 허가

1992. 2.25 ○ 국가 기간전산망사업 2단계('92~'96) 추진계획 수립

1992. 3.21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과학기술처에서 체신부로 이관

1992. 3.26 ○ 통신위원회 구성

1992. 7. 7 ○ (주)데이콤 국제통신위성지구국 개통

1992. 8.20 ○ 한국전파진흥협회 설립
○ 이동통신 제2사업자(무선호출분야) 선정

1992.12.10 ○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 · 개정(안) 확정

1993. 1. 1 ○ 전파사용료 징수제도 시행
○ TV 문자다중 방송국 허가

1993. 2. 1 ○ 이동공중무선전화 승인 · 시행

1993. 3.13 ○ 한국통신산업협회(TLA) 설립

1993. 7. 1 ○ 국내 위성통신서비스 개시(기업통신망 · 디지털 · 비디오)

1993. 7.15 ○ 과학위성 우리별2호에 대한 무선국 허가

1993. 7.21 ○ 위성방송 전송방식 결정 – 디지털 방식

1993.12.29 ○ 전파연구소 이천분소 개소

1994. 1. 4 ○ 무선국 및 고주파이용설비 검사방법, 절차 및 기준 제정 · 시행
○ 무선국 정기검사 주기 개정 · 시행

1994. 1.14 ○ 주파수공용통신무선국 허가지침 개정 · 시행

1994. 1.31 ○ 국내무선(LAN) 주파수대 확보

1994. 3.15 ○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기본계획 수립

1994. 6. 1 ○ 표준방송 스테레오포닉방송 송신의 표준방식 기준 제정

1994. 3.15 ○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기본계획 수립

1994. 7. 1 ○ AM스테레오 방송국 허가(SBS)

1994. 8.17 ○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기획단 설치

1994.12.23 ○ 정보통신부로 확대개편(과학기술처, 상공자원부, 공보처의 관련기능 흡수)

1995. 2. 2 ○ LG정보통신 세계 최초 CDMA 상용시스템 개발

1995. 2. 7 ○ 방송구역 전계강도 기준 및 방송구역 전계강도 계산기준 개정 · 시행

1995. 2.15 ○ RJK(러시아-일본-한국) 해저케이블 개통

1995. 4. 1 ○ CDMA방식의 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 및 단말기 상용제품 생산개시

1995. 5. 2 ○ 무궁화위성망 및 지구국 국제등록

1995. 5. 9 ○ 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역 민방 TV방송국 허가

1995. 5.13 ○ 디지털 텔레비전 위성방송에 관한 송신의 표준방식 관련기준 제정

1991 ~ 1999

전파관리

사, 기술계)
- ○ 당진분소 조사계 및 대전분실 폐지

1993. 1. 1 ○ 전파사용료 징수
- ○ 간이무선국 허가업무 우체국 위임(5급 이상 200국)

1993. 6. 1 ○ 생활무선국 운용요령 및 무선설비의 조건에 관한 고시 개정(휴대, 차량탑재, 고정설치 허용 등)

1993. 7. 1 ○ 김포분실을 인천으로 이전(부평우체국 3층)하고 인천분실로 개칭

1995.12.20 ○ 청주분실 신설

1996. 2.22 ○ 전주, 대구분소 신설

1997. 4.30 ○ 종합전파감시망 구축 완료

1997.10.30 ○ 서울분소 청사준공 이전(궁동)

1998. 1. 9 ○ 무선국검사업무제도 개선

1998. 1.14 ○ 아마추어국 운용주파수대 확대 고시

1998. 3. 9 ○ 전파감시 및 조사 등에 관한 업무처리세칙 개정

1998. 6.19 ○ 전파감시방법 개선

1998. 7. 1 ○ 아마추어 자율감시체제 확립

1998. 9. 5 ○ 위성휴대통신(GMPCS) 가입자회선용 주파수할당

1999. 2. 1 ○ CS기동팀 발족운용

1999. 6.30 ○ 전파감시시설 Y2k문제 해결

1999. 11.30 ○ 전파감시 지휘통제망 구축

정보통신

1995. 5.18 ○ 주파수공용방식 무선국 도입

1995. 6. 11 ○ 정보통신부 청사이전

1995. 7. 4 ○ 통신사업 경쟁력강화 기본정책방향 발표

1995. 7.10 ○ 통합사무자동화망(LAN) 설치 및 개통

1995. 8. 5 ○ 무궁화 1호위성 발사

1995.11. 8 ○ PCS 무선접속방식 확정

1995.11.29 ○ 무궁화 APT(아 · 태전기통신협의체) 제7대 사무총장 진출(정보통신협력국장 이종순)

1996. 1.14 ○ 무궁화 2호위성 발사

1996. 4.30 ○ AFKN 남산 TV 채널 변경

1996. 6.10 ○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선정(27개 사업자)

1996. 6. 11 ○ 제1차 정보화추진위원회 개최

1996. 6.29 ○ KBS 제1,2TV 위성방송국 허가

1996. 7.29 ○ EDI(전자자료교환)방식에 의한 관세수납 처리

1996. 9.13 ○ 지역정보센터 설립(37개 지역)

1996.10.18 ○ FM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소출력방송 도입

1996.11.12 ○ 제1회 국제 CDMA회의 개최

1996.12. 6 ○ 정보통신산업발전 종합대책 수립

1997. 2.10 ○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설립

1997. 2.21 ○ 정보문화센터 부설 정보기술교육원 개원

1997. 3.20 ○ GMPCS 국내 도입방안 확정

1997. 5. 1 ○ 주파수 분배 및 할당 과정의 투명성 확보정책 도입

1997. 6.30 ○ 정보통신부 전자문서 전면 시행

1997. 7.23 ○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정

1997. 8.13 ○ 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신설 및 사무국 발족

1997. 8.28 ○ 한국전기통신공사법 폐지

1997.10. 1 ○ PCS 상용서비스 개시

1997. 11.10 ○ 디지털 TRS 상용서비스 개시

1998. 1. 3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설립

1998. 3.18 ○ CT-2 사업폐지 승인

1998. 3.31 ○ '96 신규 TRS사업자 서비스 개시

1998. 4.22 ○ 해외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립

1998. 6.20 ○ '98년도 기간통신사업자(위성휴대통신) 선정

1998. 6.30 ○ 이동전화가입자 1천만명 돌파

1998. 7.29 ○ 신용정보공동관리시스템(PCS) 사업자 개통

1998.10.31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설립

1999. 1.29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설립

1999. 3. 3 ○ CYBER KOREA 21 창조적 지식 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 VISION 발표

1999. 4. ○ 하나로통신 초고속 멀티미디어 시내전화 상용서비스 개시

1999. 5. 12 ○ 한국통신 위성인터넷서비스 개시

1999. 5. 18 ○ KBS 디지털 TV 실험방송

1999. 5.20 ○ 한국통신 유럽표준방식인 비동기식 IMT-2000 시스템 개발

□ 간부 이 · 취임사항

1. 전파관리국/ 전파방송관리국

• 국장

초대	최 원 식 (崔源植)	재 임	1961.10. 2 ~ 1962.10. 2
2대	박 조 욱 (朴照昱)	재 임	1962.10. 2 ~ 1966. 3. 3
3대	백 오 현 (白五鉉)	재 임	1966. 3. 3 ~ 1969. 7. 1
4대	신 용 철 (申龍徹)	재 임	1969. 7. 1 ~ 1969. 7.26
5대	신 언 모 (申彦摸)	재 임	1969. 7.26 ~ 1971. 2. 4
6대	최 준 식 (崔俊植)	재 임	1971. 2. 4 ~ 1972. 7.27
7대	오 세 관 (吳世觀)	재 임	1972. 7.27 ~ 1974.10. 1
8대	신 언 모 (申彦摸)	재 임	1974.10.16 ~ 1976. 4.23
9대	오 황 근 (吳潢根)	재 임	1976. 4.23 ~ 1979. 4.15
10대	이 영 한 (李英漢)	재 임	1979. 4.16 ~ 1983. 1.10
11대	박 남 희 (朴南熙)	재 임	1983. 1.10 ~ 1986. 3.18
12대	정 덕 교 (鄭德敎)	재 임	1986. 3.18 ~ 1988. 1.14
13대	허 필 국 (許弼國)	재 임	1988. 1.15 ~ 1988.12.29
14대	이 계 철 (李溪徹)	재 임	1988.12.30 ~ 1990. 4. 11
15대	박 성 득 (朴成得)	재 임	1990. 4.12 ~ 1991. 11.24
16대	이 인 학 (李寅學)	재 임	1991.11.25 ~ 1993. 6.27
17대	이 성 해 (李成海)	재 임	1993. 6.28 ~ 1995. 3. 7
18대	박 영 일 (朴榮一)	재 임	1995. 3. 8 ~ 1996.12. 3
19대	천 조 운 (千朝雲)	재 임	1996.12.31 ~ 1997. 8.15
20대	김 창 곤 (金彰坤)	재 임	1997. 8.16 ~ 1998.12.31
21대	석 호 익 (石鎬益)	재 임	1999. 1. 1 ~ 현재

• 감리과/ 관리과/ 전파기획과/ 전파방송기획과장

1대	심 현 보	재 임	1961.10. 2. ~ 1965. 2. 28
2대	김 인 극	재 임	1965. 3. 1 ~ 1966. 2. 28
3대	김 인 극	재 임	1966. 3. 1 ~ 1967. 6. 22

4대	김길식	재 임	1967. 6. 23 ~ 1968. 3. 24
5대	진병로	재 임	1968. 3. 25 ~ 1968. 8. 8
6대	심현보	재 임	1968. 8. 9 ~ 1969.12. 6
7대	정규복	재 임	1969.12. 6 ~ 1971. 2. 17
8대	김창진	재 임	1971. 2. 17 ~ 1971. 9. 28
9대	조만환	재 임	1971. 9. 28 ~ 1972. 5. 22
10대	박재월	재 임	1972. 5. 22 ~ 1973. 3. 20
11대	김길식	재 임	1973. 3. 20 ~ 1974. 5. 16
12대	민영환	재 임	1974. 5. 16 ~ 1977. 7. 26
13대	진해영	재 임	1977. 7. 26 ~ 1979. 4. 20
14대	조병국	재 임	1979. 4. 20 ~ 1981.12. 31
15대	이형우	재 임	1982. 1. 1 ~1984. 7. 5
16대	문영환	재 임	1984. 11. 21 ~ 1985. 3. 10
17대	이경천	재 임	1985. 3. 11 ~ 1986. 6. 30
18대	이기성	재 임	1986. 7. 1 ~ 1989. 5. 7
19대	이동선	재 임	1989. 5. 8 ~ 1991. 1. 21
20대	이상윤	재 임	1991. 1. 22 ~ 1992. 7. 16
21대	정호동	재 임	1992. 7. 17 ~ 1993. 9. 29
22대	이정행	재 임	1993. 10. 5 ~ 1994. 3. 8
23대	황중연	재 임	1994. 4. 8 ~ 1995. 3. 19
24대	강중협	재 임	1995. 3. 20 ~ 1998. 12. 31
25대	윤재홍	재 임	1999. 1. 1 ~ 현재

• 감시업무과/ 감시과/ 감리과/ 전파감리과장

1대	김근만	재 임	1968. 12. 28 ~ 1971. 8 1
2대	고규봉	재 임	1971. 8. 2 ~ 1972. 9. 6
3대	김운경	재 임	1972. 9. 7 ~ 1973. 3. 19
4대	이응효	재 임	1973. 3. 20 ~ 1976. 5. 12
5대	권홍재	재 임	1976. 5. 13 ~ 1976. 12. 16
6대	김운경	재 임	1976. 12. 17 ~ 1979. 4. 19
7대	문영환	재 임	1979. 4. 20 ~ 1983. 9. 7

8대	김시일	재 임	1984. 1. 9 ~ 1984. 7. 4
9대	이기성	재 임	1984. 7. 5 ~ 1986. 6. 30
10대	천조운	재 임	1986. 7. 1 ~ 1987. 4 6
11대	박원호	재 임	1987. 4. 7 ~ 1988. 9. 11
12대	정호동	재 임	1988. 9. 12 ~ 1990. 1. 18
13대	주현정	재 임	1990. 1. 19 ~ 1991. 1. 21
14대	정구윤	재 임	1991. 1. 22 ~ 1993. 6. 30
15대	곽태근	재 임	1993. 7. 1 ~ 1995. 1. 2
16대	이무윤	재 임	1995. 1. 3 ~ 1995. 7. 14
17대	강덕근	재 임	1995. 7. 15 ~ 1998. 3. 17
18대	이근협	재 임	1998. 3. 18 ~ 현재

• 총무 과장

1대	박경돈	재 임	1978. 9. 1 ~ 1979. 10. 1
2대	백장섭	재 임	1979. 10. 1 ~ 1981. 12. 31

• 주파수 과장

1대	조재문 (趙載文)	재 임	1961. 10. 2 ~ 1962. 8. 7
2대	이봉익 (李鳳翊)	재 임	1962. 8. 7 ~ 1966. 3. 1
3대	이응효 (李應孝)	재 임	1966. 3. 1 ~ 1967. 4. 5
4대	조재문 (趙載文)	재 임	1967. 4. 5 ~ 1969. 2. 28
5대	이영한 (李英漢)	재 임	1969. 2. 28 ~ 1973. 3. 13
6대	권홍재 (權洪才)	재 임	1973. 3. 13 ~ 1974. 12. 12
7대	이영한 (李英漢)	재 임	1974. 12. 12 ~ 1977. 7. 26
8대	임정재 (任廷宰)	재 임	1977. 7. 26 ~ 1979. 4. 20
9대	김병석 (金柄奭)	재 임	1979. 4. 20 ~ 1983. 9. 6
10대	이경천 (李京天)	재 임	1983. 9. 7 ~ 1985. 3. 10
11대	고원상 (高源相)	재 임	1985. 3. 11 ~ 1988. 1. 17
12대	임정재 (任廷宰)	재 임	1988. 1. 18 ~ 1990. 1. 16
13대	강덕근 (姜德根)	재 임	1990. 3. 29 ~ 1993. 6. 30
14대	최명선 (崔鳴善)	재 임	1993. 10. 20 ~ 1996. 7. 5

15대	이 근 협 (李饉協)	재 임	1996. 7. 5 ~ 1998. 3. 18
16대	황 의 환 (黃義煥)	재 임	1998. 3. 18 ~ 1998. 12. 31
17대	박 정 렬 (朴正烈)	재 임	1999. 1. 1 ~ 현재

• 방송과/ 방송위성과장

1대	손 익 수	재 임	1979. 10. 1 ~ 1980. 2. 8
2대	김 시 일	재 임	1980. 2. 9 ~ 1984. 1. 9
3대	강 신 용	재 임	1984. 1. 9 ~ 1988. 1. 17
4대	고 원 상	재 임	1988. 1. 18 ~ 1990. 1. 18
5대	정 호 동	재 임	1990. 1. 19 ~ 1992. 7. 26
6대	석 호 익	재 임	1992. 7. 27 ~ 1993. 2. 8
7대	강 덕 근	재 임	1993. 7. 1 ~ 1995. 7. 14
8대	신 현 욱	재 임	1995. 7. 15 ~ 1996. 7. 4
9대	신 순 식	재 임	1997. 7. 5 ~ 1997. 8. 31
10대	강 대 영	재 임	1997. 9. 1 ~ 1998. 12. 31
11대	차 양 신	재 임	1999. 1. 1 ~ 현재

• 전파심의관/ 통신위성계획관

1대	임 정 재	재 임	1990. 1. 12 ~ 1990. 6. 15
2대	문 영 환	재 임	1990. 7. 5 ~ 1990. 12. 31
3대	김 창 곤	재 임	1991. 1. 1 ~ 1991. 11. 5

• 통신위성과장

1대	조 병 하	재 임	1991. 11. 11 ~ 1993. 7. 5
2대	류 필 계	재 임	1993. 7. 6 ~ 1994. 6. 31
3대	천 창 필	재 임	1994. 7. 1 ~ 1995. 8. 19
4대	신 순 식	재 임	1995. 8. 20 ~ 1996. 12. 31
5대	이 재 태	재 임	1997. 1. 1 ~ 1997. 8. 16
6대	강 문 석	재 임	1997. 8. 17 ~ 1998. 3. 18
7대	서 병 조	재 임	1998. 3. 19 ~ 1998. 10. 8
8대	이 동 오	재 임	1998. 10. 15 ~ 1999. 5. 31

• 기술과장

1대 이봉익	재 임	1961.10. 2 ~ 1962. 10.13
2대 김홍찬	재 임	1962.10.13 ~ 1966. 3. 1
3대 송찬복	재 임	1966. 3. 1 ~ 1969. 7. 26
4대 황인영	재 임	1969. 7.26 ~ 1970. 2. 20
5대 이응효	재 임	1970. 2. 21 ~ 1973. 3. 20
6대 이양수	재 임	1973. 3.20 ~ 1974.12. 12
7대 권홍재	재 임	1974.12.12 ~ 1976. 5. 13
8대 김병석	재 임	1976. 5.13 ~ 1979. 4. 20
9대 이경천	재 임	1979. 4.20 ~ 1983. 9. 7
10대 임정재	재 임	1983. 9. 7 ~ 1988. 1. 17
11대 강신용	재 임	1988. 1.18 ~ 1988. 6. 7
12대 이정행	재 임	1988. 9.12 ~ 1993.10. 4
13대 신용섭	재 임	1993.10. 5 ~ 1993.12. 31

2. 서울전파감시국

1대	통신기정	최원식 (崔源植)	재 임	1949. 12. 1 ~ 1950. 5. 30
2대	통신기정	홍순성 (洪順成)	재 임	1950. 5. 30 ~ 1951. 4. 31
3대	통신기정	김중백 (金仲伯)	재 임 전 직	1951. 4. 31 ~ 1958. 1. 4 부산전파 감시국장
4대	통신기정	조정현 (趙鼎鉉)	재 임	1958. 1. 4 ~ 1958. 11. 17
5대	통신기정	조재문 (趙載文)	재 임 전 직	1958. 11. 17 ~ 1960. 6. 30 서울국제전신전화국 부평송신소장
6대	통신기정	송찬복 (宋燦復)	재 임 전 직	1960. 6. 30 ~ 1961. 6. 21 서울국제전신전화국 광장수신소장
7대	통신기정	신언모 (申彦模)	재 임 전 직	1961. 6. 21 ~ 1962. 8. 7 부평무선전신전화국장
8대	통신기정	조재문 (趙載文)	재 임 전 직	1962. 8. 7 ~ 1964. 12. 9 전파관리국주파수과장
9대	행정서기관	김인극 (金仁克)	재 임 전 직	1964. 12. 9 ~ 1965. 7. 25 서울체신청 총무과장
10대	행정서기관	고규봉 (高圭峯)	재 임 전 직	1965. 7. 25 ~ 1966. 6. 1 체신부전무국 국제업무과장
11대	통신기정	김성규 (金聖奎)	재 임 전 직	1966. 6. 1 ~ 1966. 11. 30 대전전신전화건설국장
12대	행정서기관	한창명 (韓昶命)	재 임 전 직	1966. 11. 30 ~ 1967. 6. 23 체신부우정국 저금보험과장
13대	통신기정	위종만 (魏鍾萬)	재 임 전 직	1967. 6. 23 ~ 1968. 10. 11 광주전파감시국장
14대	통신기정	김득풍	재 임	1968. 10. 11 ~ 1970. 1. 21

	(金得豊)	전 직	전파연구소 표준과장
15대 통신기정	이양수	재 임	1970. 1. 21 ~ 1970. 10. 5
	(李養壽)	전 직	강동전신전화 건설국장
16대 통신기정	이용훈	재 임	1970. 10. 5 ~ 1971. 5. 20
		전 직	강릉무선전신국장
17대 서기관	김길식	재 임	1971. 5. 20 ~ 1973. 3. 20
	(金吉植)	전 직	용산우체국장
18대 서기관	김운경	재 임	1973. 3. 20 ~ 1976. 12. 17
	(金雲慶)	전 직	전파관리국 감시과장
19대 통신기정	문명진	재 임	1976. 12. 17 ~ 1979. 10. 1
	(文明進)	전 직	진주전신전화국장
20대 서기관	남명진	재 임	1979. 10. 1 ~ 1980. 10. 27
	(南明鎭)	전 직	체신부환금관리사무소
21대 통신기정	성이운	재 임	1980. 10. 27 ~ 1981. 12. 31
	(成利運)	전 직	전기통신연구소 연구실장
22대 통신기정	이희영	재 임	1982. 1. 1 ~ 1983. 6. 3
	(李熙英)		
23대 통신기정	김병석	재 임	1983. 7. 1 ~ 1984. 1. 8
	(金炳奭)		

3. 부산전파감시국

1대	통신기정	김중백	재 임	1950. 9. 30 ~ 1951. 5. 24
		(金仲伯)	전 직	체신부전무국
2대	통신기정	배은성	재 임	1951. 5. 24 ~ 1951. 9. 23
		(裵恩成)		
3대	통신기정	홍명복	재 임	1951. 9. 23 ~ 1955. 5. 31
		(洪命福)	전 직	부산전파감시국감리과장
4대	통신기정	차인도	재 임	1955. 5. 31 ~ 1957. 5. 15
		(車引道)	전 직	부산무선전신국장
5대	통신기정	김남수	재 임	1957. 5. 15 ~ 1960. 8. 1

		(金南壽)	전	직	광주전파감시국장
6대	통신기정	조정현	재	임	1960. 8. 1~1961. 6. 21
		(趙鼎鉉)	전	직	울릉무선전신국장
7대	통신기정	차인도	재	임	1961. 6. 21~1963. 6. 17
		(車引道)	전	직	광주전파감시국장
8대	통신기정	임재오	재	임	1963. 6. 17~1970.10. 1
		(任在五)	전	직	목포무선전신국장
9대	통신기정	김남수	재	임	1970.10. 5~1972. 6. 12
		(金南壽)	전	직	강릉전파감시국장
10대	통신기정	전성주	재	임	1972. 6. 12~1976. 5. 23
		(全聲柱)	전	직	울릉무선전신국장
11대	서기관	황성근	재	임	1976. 5. 23~1979. 10. 1
		(黃成根)	전	직	부산체신청감사관
12대	통신기정	전성주	재	임	1979. 10. 1~1980. 8. 23
		(全聲柱)	전	직	해운대전신전화국장
13대	통신기정	노판구	재	임	1980. 8. 1~1981. 11. 13
		(盧判九)	전	직	진주전신전화국장
14대	통신기정	최석환	재	임	1981. 11. 14~1982. 6. 30
		(崔碩煥)	전	직	진주전신전화국장
15대	통신기정	강신용	재	임	1982. 11. 10~1984. 1. 8
		(姜信容)	전	직	진주전신전화국장

4. 광주전파감시국

1대	통신기정	조정현	재	임	1949. 12. 26~1951. 9. 24
		(趙鼎鉉)	전	직	체신부전무국
2대	통신기정	김남수	재	임	1951. 9. 24~1957. 5. 16
		(金南壽)	전	직	광주전파감시국 기술과장
3대	통신기정	차인도	재	임	1957. 5. 16~1961. 6. 22
		(車引道)	전	직	부산전파감시국장
4대	통신기정	이해운	재	임	1961. 6. 22~1963. 9. 13

		(李海運)	전 직	인천무선전신국장
5대	통신기정	박영효	재 임	1963. 9. 13 ~1964. 4. 23
		(朴泳孝)	전 직	체신부전무국
6대	통신기정	안종두	재 임	1964. 4. 23 ~1964. 7. 15
		(安鍾斗)	전 직	대전전신전화국
7대	통신기정	이응효	재 임	1964. 7. 15 ~1966. 3. 5
		(李膺孝)	전 직	전파관리국기술과
8대	통신기정	위종만	재 임	1966. 3. 5 ~1967. 6. 23
		(魏鍾萬)	전 직	전파관리국기술과
9대	행정서기관	김근만	재 임	1967. 6. 23 ~1968. 12. 28
		(金根萬)	전 직	체신부총무과
10대	행정서기관	박남희	재 임	1968. 12. 28 ~1969. 11. 10
		(朴南熙)	전 직	체신부기획관리실
11대	서기관	박화규	재 임	1969. 11. 10 ~1971. 4. 12
		(朴化圭)	전 직	목포우체국장
12대	서기관	양학규	재 임	1971. 4. 12 ~1978. 1. 30
		(梁學圭)	전 직	전주전신전화국장
13대	통신기정	박정철	재 임	1978. 1. 30 ~1979. 10. 1
		(朴正喆)	전 직	광주체신청공무과장
14대	서기관	류광용	재 임	1979. 10. 1 ~1983. 1. 7
		(柳光容)	전 직	북광주전신전화국장
15대	서기관	김성제	재 임	1983. 1. 8 ~1984. 1. 8
		(金成濟)		

5. 강릉전파감시국

1대	통신기정	김득풍	재 임	1964. 11. 14 ~1966. 3. 28
		(金得豊)	전 직	체신공무원 교육원
2대	통신기정	최연수	재 임	1966. 3. 28 ~1966. 11. 30
		(崔然壽)	전 직	동대문전화국 선로과장
3대	통신기정	김남수	재 임	1966. 11. 30 ~1970. 10. 5

		(金南壽)	전	직	울릉무선전신국장
4대	통신기정	문순기	재	임	1970. 10. 5 ~ 1971. 8. 1
		(文順基)	전	직	서울전신전화건설국 기계과장
5대	통신기정	권홍재	재	임	1971. 8. 1 ~ 1972. 9. 8
		(權洪才)	전	직	서울국제전신전화국 광장 수신소장
6대	통신기정	김신회	재	임	1972. 9. 11 ~ 1973.12. 24
		(金信會)	전	직	서울초단파 전신전화국
7대	통신기정	문명진	재	임	1974. 3. 4 ~ 1975. 2. 18
		(文明進)	전	직	서울국제전신전화국 전화과장
8대	통신기정	김옥수	재	임	1975. 2. 18 ~ 1975. 6. 26
		(金玉秀)	전	직	체신부 보전국
9대	통신기정	임영두	재	임	1975. 6. 26 ~ 1976. 6. 7
		(林永斗)	전	직	울릉무선전신국
10대	통신기정	정규찬	재	임	1976. 6. 7 ~ 1977. 7. 26
		(丁奎燦)	전	직	체신부 감사관실
11대	통신기정	이경천	재	임	1977. 7. 26 ~ 1979. 4. 20
		(李景天)	전	직	전파관리국감시과
12대	서기관	김운경	재	임	1979. 4. 20 ~ 1983. 1. 8
		(金雲慶)	전	직	전파관리국 감시과장
13대	서기관	최상규	재	임	1983. 1. 8 ~ 1984. 1. 8
		(崔相圭)	전	직	체신부 감사관실

6. 전파통제소/ 전파통제국

(전파통제소장)

1대	통신기정	문명진	재	임	1979. 10. 1 ~ 1984. 1. 8
		(文明進)	전	직	서울전파감시국장

(서울분국장)

1대	통신기좌	정도영	재	임	1976. 12. 14 ~ 1979. 5. 10
		(鄭道永)			

2대	통신기좌	이 천 종 (李 天 鍾)	재 임	1979. 5. 10 ~1980. 2. 5
3대	통신기좌	강 정 섭 (姜 正 燮)	재 임	1980. 2. 5 ~1982. 5. 15
4대	통신기좌	이 경 호 (李 京 鎬)	재 임	1982. 5. 20 ~1984. 1. 10
(부산분국장)				
1대	통신기좌	손 도 성 (孫 道 成)	재 임	1976. 12. 14 ~1980. 11. 3
2대	전무기좌	김 규 태 (金 圭 泰)	재 임	1980. 11. 3 ~1983. 1. 18
3대	전무기좌	최 일 랑 (崔 一 郎)	재 임	1983. 1. 18 ~1984. 1. 10
(광주분국장)				
1대	통신기좌	오 홍 열 (吳 洪 烈)	재 임	1980. 11. 4 ~1984. 1. 10
(강릉분국장)				
1대	통신기좌	조 현 기 (趙 賢 起)	재 임	1977. 4. 23 ~1982. 11. 10
2대	통신기좌	변 도 환 (邊 道 煥)	재 임	1982. 11. 11 ~1984. 1. 10
(제주분국장)				
1대	전무기좌	조 용 만 (趙 容 萬)	재 임	1982. 1. 25 ~1984. 1. 10
(제101분국장)				
1대	행정사무관	손 규 성 (孫 圭 成)	재 임	1983. 1. 1 ~1983. 12. 30

7. 중앙전파감시소/ 중앙전파관리소

(소 장)

1대	통신부기감	박 성 득	재 임	1984. 1. 9 ~1987. 7. 31
		(朴 成 得)	전 직	체신부 통신진흥과장
2대	부이사관	이 인 학	재 임	1987. 8. 1 ~1988. 8. 16
		(李 寅 學)	전 직	강원체신청장
3대	부이사관	김 근 수	재 임	1988. 8. 17 ~1988. 12. 29
		(金 槿 洙)	전 직	전남체신청장
4대	부이사관	권 영 수	재 임	1988. 12. 30 ~1990. 1. 11
		(權 寧 收)	전 직	체신공무원 교수부장
5대	부이사관	이 종 산	재 임	1990. 1. 12 ~1991. 1. 1
		(李 鐘 山)	전 직	경북체신청장
6대	부이사관	이 기 성	재 임	1991. 1. 2 ~1992. 1. 14
		(李 起 晟)	전 직	체신부
7대	부이사관	김 시 일	재 임	1992. 1. 15 ~1992. 7. 15
		(金 時 鎰)	전 직	강원체신청장
8대	부이사관	조 홍	재 임	1992. 7. 16 ~1993. 1. 3
		(曺 弘)	전 직	체신공무원 교수부장
9대	부이사관	박 원 호	재 임	1993. 1. 26 ~1994. 2. 26
		(朴 元 浩)	전 직	체신공무원 교수부장
10대	정보통신	이 정 행	재 임	1994. 3. 9 ~1995. 4. 12
	부이사관	(李 政 幸)	전 직	전파관리국 기획과장
11대	부이사관	이 동 선	재 임	1995. 4. 7 ~1996. 6. 30
		(李 東 善)	전 직	전파연구소장
12대	부이사관	조 경 호	재 임	1996. 8. 27 ~1997. 8. 15
		(趙 景 鎬)	전 직	충청체신청장
13대	이 사 관	천 조 운	재 임	1997. 8. 16 ~1998. 3. 15
		(千 朝 雲)	전 직	전파방송관리국장
14대	정보통신	강 덕 근	재 임	1998. 3. 18 ~ 현재
	부이사관	(姜 德 根)	전 직	전파방송관리국 감리과장

(감시1과장)

1대	서기관	정호동 (鄭鎬東)	재임 전직	1984. 1. 9 ~1986. 7. 1 진해우체국장
2대	통신기정	김병석 (金炳奭)	재임 전직	1986. 7. 1 ~1991. 8. 4 서울체신청 전파국장
3대	통신서기관	최상규 (崔相圭)	재임 전직	1991. 8. 5 ~1995. 1. 2 감시2과장
4대	정보통신 서기관	이근협 (李槿協)	재임 전직	1995. 1. 3 ~1996. 7. 4 국방대학원 수료
5대	정보통신 서기관	양의청 (梁義晴)	재임 전직	1996. 7.27 ~1999. 9. 29 감시2과장
6대	정보통신 서기관	주종옥 (朱宗鈺)	재임 전직	1999. 9.30 ~ 현재 전파방송관리국 통신위성과

(감시1과 관리계장)

1대	전무기좌	장은식 (張銀植)	재임 전직	1984. 1. 11 ~1986. 8. 3 서울전파감리국 감리과장
2대	전무기좌	최상배 (崔相培)	재임 전직	1986. 8. 4 ~1987. 1. 18 제 31 분소장
3대	전무기좌	고완식 (高宛植)	재임 전직	1987. 1. 1 ~1992. 3. 11 충청체신청 전파과장
4대	전무사무관	김홍식 (金洪植)	재임 전직	1992. 3. 12 ~1994. 11. 6 울산분소장
5대	전무사무관	고완식 (高宛植)	재임 전직	1994. 11. 7 ~1995. 7. 11 서울분소장
6대	전무사무관	김홍식 (金洪植)	재임 전직	1995. 9. 15 ~1999. 2. 1 감시2과 관리계장
7대	통신사무관	김종환 (金宗煥)	재임 전직	1999. 2. 2 ~ 현재 서울분소장

(감시1과 기술계장)

1대	통신기좌	이천종 (李天種)	재임 전직	1984. 1. 11 ~1987. 1. 9 체신부 전파관리국 기술과

(감시1과 조사계장)

1대	전송주사	강 일 한 (姜一韓)	재 임	1984. 1. 11 ~1986. 8. 3
2대	전송주사	김 경 호 (金景鎬)	재 임	1986. 8. 4 ~1987. 1. 18
3대	전무기좌	안 희 영 (安 熙 榮)	재 임 전 직	1987. 1. 1 ~1995. 3. 11 제주분소장
4대	통신기좌	서 성 하 (徐 盛 河)	재 임 전 직	1995. 3. 12 ~1996. 12. 31 기술과장
5대	전무기좌	안 희 영 (安 熙 榮)	재 임 전 직	1997. 1. 1 ~1999. 2. 1 기술과장
6대	정보통신 서 기 관	김 홍 식 (金 洪 植)	재 임 전 직	1999. 2. 2 ~ 현재 감시1과 관리계장

(감시2과장)

1대	통신기정	문 명 진 (文 明 進)	재 임 전 직	1984. 1. 9 ~1987. 2. 26 전파통제국장
2대	통신기정	최 상 규 (崔 相 圭)	재 임 전 직	1987. 3. 21 ~ 1991. 8. 4 전파연구소 검정과장
3대	통신기정	김 병 석 (金 炳 奭)	재 임 전 직	1991. 8. 5 ~1992. 4. 1 감시1과장
4대	통신기정	최 윤 우 (崔 潤 宇)	재 임	1992. 4. 1 ~1993. 1. 26
5대	정보통신 서 기 관	양 의 청 (梁 義 晴)	재 임 전 직	1993. 1.26 ~1996. 7. 26 전파관리국
6대	정보통신 서 기 관	편 무 곤 (片 茂 坤)	재 임 전 직	1996. 7.27 ~1998. 3. 31 전파연구소 전파과장
7대	정보통신 서 기 관	조 규 조 (曺 奎 照)	재 임 전 직	1998. 4. 1 ~1999.10. 8 정보통신정책실 기술기준과
8대	정보통신 서 기 관	최 광 용 (崔 光 鎔)	재 임 전 직	1998.10. 9 ~ 현재 서울체신청 전파국장

(감시2과 관리계장)

1대	전무기좌	고 완 식	재 임	1984. 1. 11 ~1984.10. 9
		(高 宛 植)	전 직	서울전파감리국 감리과장
2대	전무기좌	양 세 욱	재 임	1984.10.10 ~1986. 7. 27
		(梁 世 昱)	전 직	제 31 분소장
3대	전무기좌	장 은 식	재 임	1986. 8.4 ~1990.1. 30
		(張 銀 植)	전 직	감시1과 관리계장
4대	전무기좌	유 춘 영	재 임	1990. 2. 1 ~1994. 11. 6
		(柳 春 榮)	전 직	제11분소장
5대	전무사무관	김 홍 식	재 임	1994. 11. 7 ~1995. 9. 14
		(金 洪 植)	전 직	감시1과 관리계장
6대	전무사무관	천 성 철	재 임	1995. 9. 15 ~1997. 8. 26
		(千 成 哲)	전 직	제주분소장
7대	전무사무관	장 석 남	재 임	1997. 9. 19 ~ 현재
		(張 奭 男)	전 직	전북체신청 관리국 기술과장

(감시2과 통제계장)

1대	통신기좌	편 무 곤	재 임	1984. 1. 11 ~1987. 1. 9
		(片 茂 坤)	전 직	전파통제국 통제과장
2대	통신기좌	이 천 종	재 임	1987. 1. 10 ~1987. 1. 31
		(李 天 鍾)	전 직	감시1과 기술계장
3대	통신기좌	유 응 곤	재 임	1987. 2. 1 ~1990. 1. 30
		(柳 應 坤)	전 직	체신부 전파관리국
4대	통신기좌	이 효 경	재 임	1990. 2. 1 ~1992. 3. 11
		(李 孝 京)	전 직	체신부 전파관리국
5대	통신기좌	서 성 하	재 임	1992. 3. 12 ~1993. 3. 31
		(徐 盛 河)	전 직	부산분소장

(관리과장)

1대	행정사무관	김 진 선	재 임	1984. 1. 9 ~1984. 11. 20
		(金 振 璇)	전 직	전파통제국 관리과장
2대	행정사무관	정 태 서	재 임	1984. 11. 21 ~1986. 8. 6
		(鄭 泰 書)	전 직	천안우체국 업무과장
3대	행정사무관	송 건 종	재 임	1986. 8. 7 ~1990. 8. 6

		(宋建鍾)	전 직	우정국 우정기획과
4대	행정사무관	김동균	재 임	1990. 8. 7~1993.10. 31
		(金東均)	전 직	체신부 공무원교육원
5대	서기관	한춘용	재 임	1993. 11. 1~1998. 1. 14
		(韓春龍)	전 직	전파연구소 관리과장
6대	행정사무관	김재휘	재 임	1998. 1. 15~ 현재
		(金在徽)	전 직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기획계장

(기술과장)

1대	통신기좌	편무곤	재 임	1987. 1. 10~1992. 4. 12
		(片茂坤)	전 직	감시2과 통제계장
2대	통신사무관	박갑응	재 임	1992. 4. 13~1993. 3. 31
		(朴甲應)	전 직	서울체신청 전파국 기술과장
3대	통신사무관	서성하	재 임	1993. 4. 1~1995. 3. 3
		(徐盛河)	전 직	감시2과 통제계장
4대	전무사무관	안희영	재 임	1995. 3. 3~1996.12. 31
		(安熙榮)	전 직	감시1과 조사계장
5대	정보통신	서성하	재 임	1997. 1. 4~ 현재
	서기관	(徐盛河)	전 직	감시1과 조사계장

(서울분소장)

1대	전무기좌	최상배	재 임	1987. 1. 10~1992. 3. 11
		(崔相培)	전 직	감시1과 관리계장
2대	전무사무관	고완식	재 임	1992. 3. 12~1994.11. 6
		(高宛植)	전 직	감시1과 관리계장
3대	전무사무관	유춘영	재 임	1994.11. 7~1995.10. 1
		(柳春榮)	전 직	감시2과 관리계장
4대	행정사무관	고재우	재 임	1995.10. 2~1997. 1. 3
		(高在雨)	전 직	제천우체국 업무과장
5대	전무사무관	이종훈	재 임	1997. 1. 4~1997. 8. 26
		(李鍾勳)	전 직	광주분소장
6대	통신사무관	김종환	재 임	1997. 8. 27~1999. 2. 1
		(金宗煥)	전 직	전주분소장

7대	전무사무관	안 희 영	재 임	1999. 2. 2 ~ 현재
		(安 熙 榮)	전 직	감시1과 조사계장
(부산분소장)				
1대	전무기좌	김 규 태	재 임	1984. 1.11 ~ 1987. 3. 2
		(金 圭 泰)	전 직	부산전파감리국 감리과장
2대	전무기좌	최 일 랑	재 임	1987. 3. 2 ~ 1989. 1. 1
		(崔 一 郎)	전 직	제21분소장(울산)
3대	통신기좌	서 성 하	재 임	1989. 1.10 ~ 1992. 3.11
		(徐 盛 河)	전 직	체신부 전파관리국
4대	통신사무관	노 영 현	재 임	1992. 3.12 ~ 1997. 1. 3
		(盧 映 懸)	전 직	체신부 감사관실
5대	통신사무관	허 이 랑	재 임	1997. 1. 4 ~ 1999. 8.31
		(許 二 郎)	전 직	울산분소장
6대	전무사무관	황 근 완	재 임	1999. 9. 1 ~ 현재
		(黃 根 完)	전 직	강릉분소장
(광주분소장)				
1대	전무기좌	양 의 청	재 임	1984. 1. 11 ~ 1984. 5. 6
		(梁 義 晴)	전 직	광주전파감리국 감리과장
2대	통신기좌	서 광 현	재 임	1984. 6. 8 ~ 1984. 9. 23
		(徐 光 鉉)	전 직	체신부 총무과
3대	전무기좌	최 상 배	재 임	1984.10. 10 ~ 1986 8. 7
		(崔 相 培)	전 직	제41분소장(강릉)
4대	통신기좌	조 인 섭	재 임	1986. 9. 8 ~ 1988.12. 25
		(曺 寅 燮)	전 직	광주분소장 직무대리
5대	전무기좌	김 용 우	재 임	1988.12. 26 ~ 1992. 9. 21
		(金 容 宇)	전 직	충청체신청 전파과장
6대	전무사무관	박 준 업	재 임	1992. 9. 22 ~ 1995. 9.28
		(朴 準 業)	전 직	제주분소장
7대	전무사무관	이 종 훈	재 임	1995. 9. 29 ~ 1997. 1. 3
		(李 宗 勳)	전 직	서울체신청 전파국
8대	전무사무관	박 준 업	재 임	1997. 1. 4 ~ 1999. 8. 31

		(朴準業)	전 직	제주분소장
9대	통신사무관	허이랑	재 임	1999. 9. 1 ~ 현재
		(許二郎)	전 직	부산분소장
(강릉분소장)				
1대	전무기좌	최상배	재 임	1984. 1. 11 ~1984.10. 9
		(崔相培)	전 직	강릉전파감리국 감리과장
2대	전무기좌	고완식	재 임	1984.10. 10 ~1985. 8. 4
		(高宛植)	전 직	감시2과 관리계장
3대	통신기좌	조현기	재 임	1985. 8. 5 ~1992. 3. 11
		(趙賢起)	전 직	전파연구소 전파과 전파계장
4대	전무사무관	최상배	재 임	1992. 3. 12 ~1993. 6. 30
		(崔相培)	전 직	서울분소장
5대	통신사무관	조현기	재 임	1993. 7. 1 ~1995. 8. 9
		(趙賢起)	전 직	울산분소장
6대	전무사무관	황근완	재 임	1995. 9. 15 ~1999. 8. 31
		(黃根完)	전 직	울산분소장
7대	전무사무관	박준업	재 임	1999. 9. 1 ~ 현재
		(朴準業)	전 직	광주분소장
(당진분소장)				
1대	전무기좌	조용만	재 임	1984. 1. 11 ~1985. 8. 1
		(趙容萬)	전 직	전파통제국 제주분국장
2대	전무기좌	유춘영	재 임	1985.10. 25 ~1990. 1. 31
		(柳春榮)	전 직	체신부 전파관리국 감리과
3대	전무기좌	이창우	재 임	1990. 2. 1 ~1993. 1. 13
		(李昌雨)	전 직	체신부 전파관리국 감리과
4대	전무사무관	최상배	재 임	1993. 7. 1 ~1997. 6. 30
		(崔相培)	전 직	강릉분소장
5대	전무사무관	목형균	재 임	1997. 9. 19~현재
		(睦炯均)	전 직	서울분소
(제주분소장)				
1대	전무기좌	김용우	재 임	1985.10. 25 ~1987. 8. 1

		(金容宇)	전 직	전남체신청 전파국 업무과
2대	전무기좌	김홍식	재 임	1987. 8. 2~1988.12. 25
		(金洪植)	전 직	감시2과 분석계장
3대	전무기좌	박준업	재 임	1989. 1. 10~1992. 9. 22
		(朴準業)	전 직	제31분소 분석계장
4대	전무사무관	안희영	재 임	1992. 9. 23 -1993. 9. 24
		(安熙榮)	전 직	서울체신청 전파과
5대	전무사무관	천성철	재 임	1993.11. 10~1995. 9. 14
		(千成哲)	전 직	서울분소 조사계장
6대	전무기좌	박준업	재 임	1989. 1. 10~1992. 9. 22
		(朴準業)	전 직	광주분소장
7대	전무사무관	오정만	재 임	1997. 9. 19~ 현재
		(吳正滿)	전 직	정보통신부 전파관리국
(울산분소장)				
1대	전무기좌	최일랑	재 임	1984. 1. 11~1987. 3. 2
		(崔一郎)	전 직	전파통제국 부산분국장
2대	전무기좌	김규태	재 임	1987. 3. 3~1988. 2. 1
		(金圭泰)	전 직	제61분소장
3대	전무기좌	김홍식	재 임	1988.12. 26~1992. 3. 11
		(金洪植)	전 직	제51분소장
4대	전무기좌	조현기	재 임	1992. 3. 12~1993. 7. 1
		(趙賢起)	전 직	강릉분소장
5대	전무사무관	황근완	재 임	1994. 9. 12~1995. 9. 15
		(黃根完)	전 직	강릉분소 감시계장
6대	통신사무관	허이랑	재 임	1995. 9. 29~1997. 1. 4
		(許二郎)	전 직	울산분소 통제계장
7대	통신사무관	김우현	재 임	1997. 2. 17~ 현재
		(金禹鉉)	전 직	대구분소장
(대전분소장)				
1대	전무기좌	이창우	재 임	1993. 1. 14~1997. 8. 26
		(李昌雨)	전 직	당진분소장

2대	전무사무관	천 성 철	재 임	1997. 8. 27 ~ 현재
		(千 成 哲)	전 직	감시2과 관리계장
(대구분소장)				
1대	통신사무관	김 우 현	재 임	1996. 4. 22 ~1997. 2. 17
		(金 禹 鉉)	전 직	부산분소 조사계장
2대	행정사무관	김 태 술	재 임	1997. 2. 17 ~1997.12. 31
		(金 泰 述)	전 직	충청체신청 제천우체국
3대	통신사무관	김 상 오	재 임	1997.12. 31 ~ 현재
		(金 相 五)	전 직	당진분소 기술계장
(전주분소장)				
1대	통신사무관	김 종 환	재 임	1996. 4. 22 ~1997. 8. 26
		(金 宗 煥)	전 직	전파연구소
2대	전무사무관	이 창 우	재 임	1997. 8. 26 ~ 현재
		(李 昌 雨)	전 직	대전분소장

□ 해외 훈련사항

1965. 7. 2 : 일본에 7월 25일까지 전리층 측정장치 운용에 관한 기술훈련차 무선기술기사 임필선(林弼善)이 파견되다.

1966. 11. 9 : 호주에 11월 26일까지 전파관리시설 시찰 및 전파관리제도 연구차 통신부기감 오세관(吳世觀)과 통신기정 이응효(李應孝)가 파견되다.

1966. 11. 11 : 미국에 1967년 5월 18일까지 전파관리 기술습득차 UN자금으로 무선기술기사 조성용(趙成鏞)이 파견되다.

1967. 3. 22 : 일본에서 6월 15일까지 수산청 도입선박 무선시설 검사차 통신기정 김신호(金伸浩)가 파견되다.

1969. 10. 22 : 일본에서 11월 18일까지 수정발진자 개발연구 시찰차 통신부기감 이순기(李淳基) 및 무선기술기사 김종은(金鍾恩)이 파견되다.

1969. 11. 22 : 일본에 12월 18일까지 수정발진자 개발연구 시찰차 통신기좌 윤창근(尹昌根)이 파견되다.

1970. 6. 18 : 일본에 7월 15일까지 이동방향 탐지기의 기술습득 및 운영법 실

습차 일본 광전주식회사 자금으로 전파관리국 행정서기관 김근만(金根萬)과 무선기술기사 강신용(姜信容)이 파견되다.

1970. 7. 1 : 미국에서 7월 30일까지 개최되었던 "전파감시업무 자동화 기술협의"를 위하여 전파관리국 기술과장 이응효(李應孝)를 파견하다.

1970. 7. 10 : 미국에 9월 7일까지 "스펙트럼 자동감시 장치의 운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습득차 Fair Child & Lectrometrics 주식회사 자금으로 전파관리국 통신기좌 조성용(趙成龍)이 파견되다.

1970. 7. 10 : 미국에 8월 10일까지 "스펙트럼 자동감시 장치의 운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습득차" Fair Child & Lectrometrics 주식회사 자금으로 전파관리국 통신기정 이응효(李應孝)가 파견되다.

1970.10. 20 : 미국에서 12월 20일까지 실시된 "컴퓨터 운용 및 보수훈련"을 위하여 전파관리국 기술과 시설계장 이경천(李景天), 서울전파감시국 전송기사보 김응빈(金應彬)을 파견하다.

1972. 1. 29 : 미국에서 3월 26일까지 실시된 "컴퓨터 운용 및 보수훈련"을 위하여 전파관리국 주파수과 기준계장 김현덕(金賢德), 서울전파감시국 전송기사 장말현(張末鉉), 통신사보 양의청(梁義晴), 전송기원 최영환을 파견하다.

1972.10. 26 : 한 · 일 과학기술처 장관회의(72. 4. 27) 협의사항에 대한 양국 전파연구소간의 공동연구 타협 및 각서교환차 11월 28일까지 전파연구소장 통신부기감 기우황(奇宇晃)이 일본 우정성 연구소와 다음 사항을 합의하다.

(1) 전파과학 기술의 공동연구

(2) 전파과학 기술공동 연구조사 및 실험

(3) 기술자료 및 간행물 교환

(4) 연구원의 훈련 및 교환

1973. 1. 10 : 일본에 3월 9일까지 무선기기 형식검정 및 표준전파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전파연구소 전송기사 김 준(金 俊)을 파견하다.

1973. 3. 27 : 미국에서 6월 15일까지 실시된 "컴퓨터 운용 및 보수훈련"을 위하여 전파관리국 기술과 통신기좌 이경천(李景天), 서울전파감시국 전송기사보 이재훈(李載勳)을 파견하다.

1973. 5. 14 : 미국에서 6월 30일까지 실시된 "컴퓨터 운용 및 보수훈련"을 위하여 전파관리국 전송기사 조길호(趙吉浩), 통신사보 김진곤(金珍坤), 서울전파감시국 통신사 조용만(趙龍萬), 전송기사 고원상(高源相)을 파견하다.

1974. 6. 17 : 일본 우정성 전파연구소에 7월 14일까지 지자기관측 및 분석 연구차 전파연구소 통신기좌 김신호(金伸浩)를 파견하다.

1974. 8. 5 : 미국에서 9월 27일까지 실시된 "컴퓨터 운용 및 보수훈련"을 위하여 전파관리국 전송기사 김응빈, 전송기사 정동석(鄭東錫)을 파견하다.

1974.10. 29 : 일본 우정성 전파연구소에 11월 25일까지 태양지구 물리현상과 전파 전파의 연관성 연구를 위하여 전파연구소 통신기정 성이운(成利運)과 통신기좌 강신용(姜信容)이 파견되다.

1976. 8. 16 : 미국에서 9월 11일까지 실시된 "전파감시 시설운용 훈련"을 위하여 전파관리국 통신사 조용만(趙龍萬), 전송기사 편무곤(片茂坤), 전송기사 박강홍(朴康弘), 광주전파감시국 전송기원 정인기(鄭寅起)를 파견하다.

1976.10. 11 : 일본전파연구소에 11월 19일까지 무선기기 형식검정연구를 위하여 전파연구소 통신기좌 여성규(余星圭)와 전송기사보 육재림(陸在林)을 파견하다.

1976.11. 29 : 미국에서 12월 11일까지 실시된 "전파감시 시설공장 시험입회"를 위하여 전파관리국 기술과장 김병석(金炳奭) 감시과 통신기좌 이경천(李景天)을 파견하다.

1976.11. 29 : 미국에서 12월 24일까지 실시된 "전파감시 시설운용 훈련"을 위하여 전파관리국 통신사 양의청(梁義晴), 전송기사 이재훈(李載勳)을 파견하다.

1977. 5. 14 : 서독에서 6월 1일까지 실시된 방탑시설공사 시험입회를 위하여 전파관리국 기술과 통신기좌 유두종(劉斗鍾), 전파감시국 통신기좌 김홍석(金洪錫)을 파견하다.

1977.10. 29 : 일본전파연구소에서 11월 12일까지 레이다 형식검정방법 연구를 위하여 전파연구소 전송기사보 최세하(崔世河)를 파견하다.

1978.12. 1 : 일본전파연구소에 12월 20일까지 UHF대 전파연구를 위하여

전파연구소 전송기사 육재림(陸在林)을 파견하다.

1978. 10. 14 : 일본에 11월 7일까지 "V/UHF방탐시설의 운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습득차 "Koden"사에 전파관리국 기술과 전송기사 서석갑(徐石鉀), 서울전파감시국 전송기사 정성진(丁誠鎭)을 파견하다.

1979. 2. 24 : 서독에 3월 27일까지 "HF방탐시설"의 운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습득차 "AEG-Telefunken"사에 전파관리국 감리과 전무기좌 고완식(高宛植), 기술과 전송기사 김현식(金現植)을 파견하다.

1979. 10. 28 ~11. 24 : ITU에서 설립 운영하는 싱가폴 전기통신학교 주파수관리 제1기(F2)과정에 전파연구소 전송기사 이진동(李鎭東)을 파견하다.

1980. 1. 5 ~3. 17 : ITU에서 설립 운영하는 싱가폴 전기통신학교 전파감시 제2기 과정에 부산전파감시국 통신사 양세욱(梁世昱)을 파견하다.

1980. 1. 19 : 서독에 2월 6일까지 "전파의 질 측정시설"의 운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습득차 "Schlumberger"사에 서울전파감시국 기술과장 강덕근(姜德根), 통신사 김민곤(金敏坤), 전송기사 이재훈(李在勳)을 파견하다.

1980. 9. 13 ~10. 28 : ITU에서 설립 운영하는 싱가폴 전기통신학교 주파수관리 제4기과정에 전파관리국 관리담당 행정사무관 라병화(羅炳和)를 파견하다.

1980. 11. 21 : 일본 전파연구소에 12월 20일까지 위성통신 전파연구 및 레이다 형식검정 연구를 위하여 전송기사 육재림(陸在林)과 전송기사 이진동(李鎭東)을 파견하다.

1985. 7. 11 ~ 7. 25 서독에서 전파방향탐지장비(인터페로미터 방식)에 대한 특별전시회 참관을 위하여 전파관리국 통신기좌 강덕근, 전무기좌 양의청, 편무곤을 파견하다.

1989. 7. 8 : 서독 AEG사의 전파감시장비(PSI-1750) 성능 시험, 공중선 설치방법 및 장비설비 운용점검 방법 교육을 위하여 7. 21 (2주간)까지 전파관리국 서기관 정호동, 중앙전파관리소 통신기정 최상규, 전송기사 김상호를 파견하다.

1989. 8. 21 : 캐나다 통신성의 무인 전파관리시스템 연구를 위하여 10. 13까

지 박인식을 파견하다

1989. 11. 20 : 일본 우정성 산하 Kanto 전기통신국 및 통신총합연구소의 국제 전파감시 시설, V/UHF 종합감시장치, 주파수 스펙트럼 자동기록기, 이동SENSOR 차량, 휴대용방탐기, 안테나 시설, HF 방탐시설 및 전리층 관측자료 기록 시스템, 고주파감쇄 교정장치를 견학하기 위하여 11. 25까지 전무기좌 고완식, 통신사 목형균을 파견하다.

1990. 4. 21 : 서독의 전파감시장비(T-10) 성능시험 및 운용 유지보수 기술훈련을 위하여 5.4(2주간)까지 전파관리국 서기관 주현정, 중앙전파관리소 통신기좌 편무곤, 전송기사보 최성환을 파견하다.

1990. 11. 14 : 캐나다 통신성의 전파관리 실태견학 및 관련자료 수집을 위하여 11.23 (10일간)까지 전파관리국 통신기좌 정성진, 중앙전파관리소 통신사보 황규춘을 파견하다.

1991. 6. 22 : 독일의 전파관리시설 기술자료조사 및 신형 전파감시 시스템 설명회 참가를 위하여 7. 6(2주간)까지 전파관리국 서기관 정규윤, 전송기사 강태신, 중앙전파관리소 통신기좌 편무곤을 파견하다.

1991. 11. 24 : 독일 우전사무소, 다름스타트 감시소, 리하임 위성감시소의 전파감시시설 견학 및 관련자료 수집을 위하여 11. 30(1주간)까지 전파관리국 통신사 오정만, 중앙전파관리소 전무기좌 류춘영을 파견하다.

1992. 2. 22 : 미국 WATKINS-JOHNSON사의 다기능 전파감시장비(WJ-9088/FMS) 2식의 현지공장인수 시험을 위하여 3.7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전송기사보 이진상, 통신원 민병태를 파견하다.

1992. 5. 10 : 영국 HARRIS사의 AFKN TV송신기 운용교육을 위하여 5. 24(2주간)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전송주사 최인현, 전송서기 신동관을 파견하다.

1992. 10. 1 : 독일의 전파관리시설에 관한 세미나 참석을 위하여 10. 10(10일간)까지 전파관리국 전송기사 장윤일, 중앙전파관리소 전송기사보 송학현을 파견하다.

1992. 12. 7 : 태국의 전파감시시설 현황 및 운용실태조사를 위하여 12. 13(1주간)까지 전파관리국 전무주사보 이갑주, 중앙전파관리소 전무

사무관 김홍식을 파견하다.

1993. 5 : 일본의 위성통신자료 조사를 위하여 94. 5(1년간)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전송주사 최인현을 파견하다.

1993. 8. 10 : 일본 JICA 초청으로 일본의 전파관리 연수를 위하여 10. 2(2달간)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전무서기보 하수용을 파견하다.

1993. 10. 18 : 미국 NTIA, FCC의 선진 전파감시시설 및 기술에 관한 자료조사 및 수집을 위하여 10. 24(1주간)까지 전파관리국 전무사무관 조덕창,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관 이채옥, 중앙전파관리소 전무서기 신현수, 전자통신연구소 강홍용을 파견하다.

1994. 7. 2 : 독일 DASA사의 전파감시시설 자료조사 및 세미나 참석을 위하여 7. 16(2주간)까지 전파관리국 통신사무관 문명필, 중앙전파관리소 통신사무관 서성하를 파견하다.

1994. 7. 9 : 태국의 전파감시시설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7. 16(1주간)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전무주사 이돈화, 행정주사 정명도를 파견하다.

1994. 10. 24 : 스웨덴 국제감시부의 전파감시 시설현황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10. 30(1주간)까지 전파방송관리국 행정사무관 박응기, 중앙전파관리소 전무서기 하수용을 파견하다.

1995. 5. 22 : 독일 R&S사의 장비교정 및 유지보수 교육을 위하여 5. 31(12일간)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전송주사보 위돈환, 전송서기 현창헌을 파견하다.

1995. 6. 12 : 호주 SMA의 전파감시시설 견학을 위하여 6. 21(10일간)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전무사무관 고완식, 전무주사보 김인규를 파견하다.

1995. 8. 5 : 독일 뮌헨 R&S사, 베링거 현지공장의 전파품질 측정장비(ESN)에 대한 운용교육과 장비제원, 선적물품 확인을 위하여 8. 16(2주간)까지 전파방송관리국 전무주사보 이갑주, 중앙전파관리소 전송주사보 신동관, 전송서기 이응영, 전무서기 민병태를 파견하다.

1995. 11. 13 : 미국 컴덱스 박람회, LA 전자상가의 전산발전과 신기술 동향파악 및 전파감시업무의 지동화를 견학하기 위하여 11. 20(1주간)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전송주사 박영신, 전무서기 장청익을 파견

하다.

1995. 11. 18 : 중국 국가무선전파관리위원회(SRRC), 국가전파감시센터(SRMC), 북경전파감시국, 상해전파감시국의 전파감시시설 견학과 기술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11. 26(9일간)까지 전파방송관리국 전송주사 조관복, 중앙전파관리소 전무사무관 천성철, 전무서기 신동엽을 파견하다.

1996. 5. 12 : 일본 우정성의 DEURA SYS 감시시설 견학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5. 19(1주간)까지 전파방송관리국 행정사무관 박응기, 중앙전파관리소 행정주사 서윤교, 전무주사보 백광석, 전송주사보 정일성, 전자통신연구소 강홍룡을 파견하다.

1996. 10. 21 : 독일 WAVETEK사의 종합감시망 구축에 필요한 전파품질 측정 시스템의 인수 시험을 위하여 10. 24(3일간)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전송주사보 신동관, 전송서기 최우형을 파견하다.

1996. 10. 26 : 영국 전파통신청(R/A), 발독감시국, INMARSAT 본부, 번함해안통신센타의 전파감시실태 자료조사를 위하여 11. 3(1주간)까지 전파방송관리국 행정사무관 임호영, 행정주사 유승록, 전무주사보 이용균, 중앙전파관리소 전송주사보 이종호를 파견하다.

1997. 6. 22 : 독일 WAVETEK사의 외자장비 현지 검사를 위하여 6. 30(9일간)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전송주사보 김영태, 전송주사보 김정희를 파견하다.

1997. 9. 21 : 독일 DASA사의 이동방탐장비 기능보강 시스템에 대한 운용교육을 위하여 10.5(2주간)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통신서기관 양의청, 전무주사 김동술, 전송주사 김문성, 전송서기 오동열, 전송서기 이희영을 파견하다.

1997. 10. 12 : 독일 DASA사의 전파감시장비 무선통신망 항법시스템 등 각 장치별 기능 및 유지보수교육을 위하여 11. 2(3주간)까지 중앙전파관리소 통신사무관 허이랑, 전송주사 김경호, 전송주사 박영신, 전송서기 이권, 전송서기 김재호를 파견하다.

1997. 10. 21 : 캐나다 산업무, 토론토 전파감시소, 미국 덴버통신과학연구소(ITS)의 전파감시시설 견학 및 자료 수집을 위하여 10. 30(10일간)까지 전파방송관리국 전무사무관 이종훈, 전무주사 채학묵,

중앙전파관리소 전무사무관 안희영을 파견하다.

1997. 10. 28 : 독일 우편전기통신 연방사무소, 위성감시소, R&D사, DARMSTADT 감시소의 전파감시자료조사를 위하여 11. 5(9일간)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전무사무관 이창우, 전송서기 최종해를 파견하다.

1998. 11. 4 : 일본 우정성 위성전파감시센타의 우주전파감시 국제워크 전문가회의 참석을 위하여 11. 6(3일간) 전파방송관리국 임호영, 중앙전파관리소 통신사무관 김종환, 전무주사 백광석, 전송서기 최종해, 조달사무소 건축서기 김영성을 파견하다.

1999. 10. 3 : 독일 우정청이 개최하는 우주전파감시 기술 국제 워크샵 및 전문가 회의 참석과 독일위성전파감시센터를 견학하여 우리나라 위성전파감시센터 설립 추진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수집코자 10월 10일까지(8일간)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 정보통신서기관 이근협, 중앙전파관리소장 부이사관 강덕근, 전송주사 고영철을 파견하다.

□ 無線電信法

大正4年(1915년)6월19일 法律第26號

第一條 無線電信 및 無線電話는 政府가 이를 管掌한다.

第二條 아래의 無線電信 또는 無線電話는 命令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主務長官의 許可를 얻어 이를 私設할 수 있다.

一. 航行의 安全에 對備하는 目的으로서 船舶에 施設하는 것.

二. 同一人의 特定事業에 사용하는 船舶相互間에 있어서 그 事業의 用에 供하는 目的으로서 船舶에 施設하는 것.

三. 電報送受를 하기 위하여 電信官署와의 間에 施設者의 專用에 供할 目的으로서 電信·電話·無線電信 또는 無線電話에 의한 公衆通信의 連絡이 없는 陸地 또는 船舶에 施設하는 것.

四. 電信·電話·無線電信 또는 無線電話에 의한 公衆通信의 連絡이 없고 前

號의 規定에 의함이 不適當한 陸地相互間 또는 陸地·船舶間에 있어서 同一人의 特定事業에 使用할 目的으로서 陸地 또는 船舶에 施設하는 것.
五. 無線電信 또는 無線電話에 關한 實驗에 專用할 目的으로서 施設하는 것.
六. 前各號의 外 主務長官이 特히 施設의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는 것.

第三條 私設의 無線電信 또는 無線電話의 機器 그 裝置 및 運用에 關한 制限과 私設의 無線電信 또는 無線電話의 通信에 從事하는 者의 資格 및 配置定員은 命令의 定한 바에 의한다.

第四條 私設의 無線電信 및 無線電話는 그 施設目的 以外에 使用할 수 없다. 但 命令의 定한 바에 의하여 船舶遭難通信, 氣象通信, 報時通信 其他 主務長官이 公益上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通信에 限하여 이를 使用하도록 하여도 無妨하다.

第五條 外國船舶에 裝置한 無線電信 또는 無線電話는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한 것을 除外하고는 이를 使用할 수 없다. 但 船舶遭難通信 및 航行中 電信官署 또는 電話官署와의 通信에 使用하도록 하여도 無妨하다.

第六條 主務長官은 命令의 定한 바에 의하여 私設의 無線電信 또는 無線電話를 公衆通信 또는 軍事上 必要한 通信의 用에 供하게 할 수 있다.
前項의 境遇에 있어서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主務長官은 關係公務員을 派遣하여 그 取扱을 시킬 수 있다.

第七條 主務長官은 公衆通信上 또는 軍事上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私設의 無線電信, 無線電話의 許可를 取消하고 또는 그 設備의 變更, 使用의 制限 或은 使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第八條 主務長官은 公安을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私設의 無線電信, 無線電話 또는 外國船舶에 裝置한 無線電信, 無線電話의 使用의 制限, 停止 또는 그 機器附屬具의 除却을 命할 수 있다. 前項의 境遇에 있어서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主務長官은 當該公務員으로 하여금 機器附屬具에 封印을

하고 또는 이를 除却시킬 수 있다.

第九條 私設의 無線電信 또는 無線電話의 施設者가 本法에 基하여 發하는 命令 또는 이에 基하여 行하는 處分에 違反할 때에는 主務長官은 그 無線電信, 無線電話의 許可를 取消하고 또는 그 使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第十條 私設의 無線電信 또는 無線電話의 施設者가 그 無線電信 또는 無線電話의 許可를 取消 當하였을 때는 主務長官의 命하는 바에 의하여 그 機器工作物을 撤去하여야 한다. 私設의 無線電信 또는 無線電話를 廢止하였을 때 또한 같다.

第十一條 私設의 無線電信, 無線電話 또는 外國船舶에 施設한 無線電信, 無線電話는 船舶遭難通信 取扱의 依賴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拒否할 수 없다.

第十二條 無線電信 또는 無線電話는 船舶遭難通信이 있는 境遇에 있어서는 直時 應答하고 救助上 가장 便宜한 位置에 있는 無線電信 또는 無線電話에 通報하여야 한다.

前項의 境遇에 있어서 特定事項의 通報를 要求받았을 때에는 前項의 規定에 의하지 않고 直時 그 通報를 하여야 한다.

第十三條 主務長官은 不法으로 無線電信 또는 無線電話를 施設하는 者가 있다고 認定하였을 때는 當該 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施設의 場所에 들어가 機器工作物의 檢査, 機器附屬具의 除却 其他 相當한 措置를 取하게 할 수 있다.

第十四條 政府는 公衆通信의 用에 供하는 無線電信 또는 無線電話의 施設을 하기 위하여 船舶의 一部를 使用하고 必要할 때에는 特殊한 供給 또는 設備를 命할 수 있다. 前項의 境遇에 있어서 相當한 使用料 및 特殊한 供給, 設備의 實費는 請求에 의하여 政府가 이를 支給한다.

第十五條 公衆通信의 用에 供하는 無線電信 또는 無線電話에 의한 通信으로서 無線電信, 無線電話, 電信電話, 郵便, 郵便貯金, 郵便換金의 事務 또는 船舶遭難, 航行의 安全, 時報, 氣象報告에 關한 것은 命令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無

料로 할 수 있다.

第十六條　許可없이 無線電信, 無線電話를 施設하거나 或은 施設한 無線電信, 無線電話를 使用한 者 또는 許可를 取消 當한 後 私設의 無線電信, 無線電話를 使用한 者는 一年以下의 懲役 또는 千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前項의 境遇에 있어서 無線電信 또는 無線電話를 他人의 用에 供함으로써 金錢物品을 取得하였을 때에는 이를 沒收한다. 이미 消費 또는 讓渡하였을 때에는 그 金額 또는 代價를 追徵한다.

第十七條　私設의 無線電信 또는 無線電話를 그 施設目的 以外에 使用한 者는 千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前項의 境遇에 있어서 無線電信 또는 無線電話를 他人의 用에 供함으로써 金錢物品을 取得하였을 때에는 이를 沒收한다. 이미 消費 또는 讓渡하였을 때에는 그 金額 또는 代價를 追徵한다.

私設의 無線電信 또는 無線電話에 依賴하여 通信을 하게 한 者는 百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十八條　第五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또는 本法에 依한 無線電信, 無線電話의 使用에 制限停止, 設備變更 或은 除却撤去의 命令에 服從치 않는 者는 千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無線電信, 無線電話의 事務에 從事하는 者 使用의 制限 또는 停止에 違反하여 使用할 때에는 그 從事者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第十九條　第六條의 境遇에 있어서 正當한 事由없이 無線電信, 無線電話의 供用을 拒否하고 또는 第14條의 境遇에 있어서 正當한 事由없이 船舶의 使用을 拒否하거나 特殊한 設備供給을 하지 아니하는 者는 千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二十條　電信官署 또는 電話官署의 取扱中에 있는 無線電信 또는 無線電話의 通信의 秘密을 侵害한 者는 一年以下의 懲役 또는 二百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無線電信 또는 無線電話의 事務에 從事하는 者가 前項의 秘密을 漏泄하였을 때에는 二年以下의 懲役 또는 五百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한다.

第二十一條 不法으로 無線電信, 無線電話에 關한 料金을 免脫하거나 또는 他人으로 하여금 이를 免脫하게 한 者는 二百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無線電信 또는 無線電話의 事業에 從事하는 者가 前項의 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一年以下의 懲役 또는 五百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二十二條 他人에게 損害를 加할 目的으로서 無線電信 또는 無線電話에 의하여 虛僞의 通信을 發한 者는 二年以下의 懲役 또는 五百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公益을 害할 目的으로서 無線電信 또는 無線電話에 의하여 虛僞의 通信을 發한 者는 五年以下의 懲役 또는 千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船舶遭難의 事實이 없음에도 不拘하고 無線電信 또는 無線電話에 의하여 船舶遭難通信을 發한 者는 三月以上 十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無線電信 또는 無線電話의 事務에 從事하는 者가 第一項의 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五年以下의 懲役 또는 千圓以下의 罰金, 第二項의 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十年以下의 懲役, 第三項의 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一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第二十三條 無線電信의 事務에 從事하는 者가 電信官署의 取扱中에 있는 無線電信에 의한 電報를 正當한 事由없이 開披, 毁損, 隱匿 或은 放棄하였거나 또는 受取人이 아닌 者에게 交付한 때는 三年以下의 懲役 또는 五百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但 刑法 第二百五十八條 또는 第二百五十九條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刑法의 例에 의한다.

第二十四條 無線電信, 無線電話의 事務에 從事하는 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公衆通信 或은 軍事上 必要한 通信의 取扱을 아니하였을 때 또는 이를 遲延시켰을 때에는 一年以上의 懲役 또는 二百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無線電信, 無線電話의 事務에 從事하는 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第十一條 或은 第十二條의 規定에 의한 船舶遭難通信의 取扱을 아니하였을 때 또는 이를 遲延시켰을 때에는 一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船舶遭難通信의 取扱을 妨害한 者는 前項과 같이 罰한다.

第二十五條　無線電信, 無線電話에 의한 公衆通信 或은 軍事上 必要한 通信을 障碍하고 또는 이를 障碍할 行爲를 한 者는 七年以下의 懲役 또는 五百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二十六條 前十條의 未遂罪는 이를 罰한다.

第二十七條 本法에 基하여 行하는 當該公務員의 職務의 執行을 拒否하거나 이를 妨害하고 或은 忌避하며 또는 第十三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關한 當該公務員의 尋問에 對하여 答辯을 아니하고 或은 虛僞의 陳述을 한 者는 百圓以上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

第二十八條 電信法 第四條, 第五條, 第十一條 乃至 第二十一條, 第二十三條, 第二十四條 및 第四十五條의 規定은 公衆通信 또는 軍事上 必要한 通信의 用에 供하는 無線通信 또는 無線電話에 이를 準用한다.

附 則

本法의 施行日은 勅令으로 정한다.

□ 전파관련법

I. 전파관리법 제정

1961년 제정시의 전파법(法律 第924號 :61. 12. 30 공포)

전파관리법은 1961년의 제정으로부터 1980년에 이르기까지 18차에 걸쳐 개정되면서 명실공히 국민의 법으로서 국민편익 위주로 개정되었다. 시대적 변천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제정시의 전파법과 그 주요 개정내용 및 현행 전파법을 살펴보면 보면 아래와 같다.

第 1 章　總　　則

第1條(目的) 本法은 電波의 合理的인 管理를 함으로써 公共의 福祉를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本法에서 使用되는 用語는 다음과 같이 定義한다.

1. 電波 : 人工的인 導引없이 空間을 傳播하는 3千기가헬즈 以下의 周波數의 電磁波
2. 無線電信 : 電波를 利用하여 符號를 보내거나 받는 通信方式
3. 無線電話 : 電波를 利用하여 音聲 其他音響을 보내거나 받는 通信方式
4. 無線設備 : 無線電信, 無線電話 其他電波를 보내거나 받기 爲한 電氣的施設
5. 無線局 : 無線設備와 無線設備를 操作하는 者의 總體 但, 放送聽取를 爲하여 受信만을 目的으로 하는 것은 包含하지 아니한다.
6. 無線從事者 : 無線設備를 操作하거나 그 設備의 工事를 하는 者로서 遞信部長官의 免許를 얻은 者
7. 施設者 : 遞信部長官으로부터 無線局의 許可를 얻은 者

第3條(電波에 關한 條約) 電波에 關하여 條約에 따로 規定이 있는 때에는 本法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規定에 依한다.

第 2 章 無線局의 許可

第4條(無線局의 開設) ①無線局을 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遞信部長官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但 發射하는 電波가 極히 微弱한 無線局으로서 閣令의 定하는 것에 關하여는 例外로 한다.

②公衆通信業務(公衆의 一般的 利用에 供하는 無線通信의 業務를 말한다)를 行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無線局은 政府가 아니면 開設하지 못한다. 但, 遞信部長官은 公衆通信業務의 運營上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業務의 一部를 他에 委託하여 取扱할 수 있다.

第5條(缺格事由) ①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無線局의 許可를 하지 아니한다.

1.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2. 外國政府 또는 그 代表者
3. 外國의 法人 또는 團體
4. 法人 또는 團體로서 前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가 그의 代表者인 때 또는 그들의 任員의 3分의 1以上이거나 議決權의 3分의 1 以上을 占하는 때

5. 本法에 規定한 罪를 犯하여 禁錮以上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날로부터 2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6. 無線局의 許可를 取消當한 날로부터 2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② 前項 第1號乃至第4號의 規定은 다음의 無線局의 許可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1. 實驗無線局(科學 또는 技術發展을 爲한 實驗에 專用하는 無線局을 말한다. 以下 같다)
2. 船舶安全法 第14條의 規定에 依한 船舶의 無線局

第6條(許可의 申請과 審査) ①無線局의 許可를 얻고자 하는 者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申請書를 遞信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 遞信部長官은 前項의 申請書를 受理한 때에는 다음 各號에 依하여 許可의 適否를 審査하여야 한다.

1. 工事設計가 第3章의 定하는 技術基準에 適合할 것.
2. 周波數의 割當이 可能할 것
3. 當該業務를 維持할 만한 財政的基礎가 있을 것
4. 閣令의 정하는 無線局開設基準에 合致할 것

第7條(假許可) ①遞信部長官은 前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審査한 結果, 그 申請이 同項 各號에 符合된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指定하여 無線局의 假許可를 할 수 있다.

1. 無線局의 竣工期限
2. 電波와 型式 및 幅과 周波數
3. 呼出符號(標識符號를 包含한다. 以下같다) 또는 呼出名稱
4. 空中線電力
5. 運用許容時間
6. 無線從事者의 資格과 定員

②遞信部長官은 假許可를 얻은 者로부터 前項 第1號의 期限延長의 申請이 있는 境遇에 그 事由가 合當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1回에 限하여 그 期限을 延長할 수 있다.

第8條 (工事設計等의 變更) ①前條의 假許可를 얻은 者가 工事設計를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遞信部長官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但, 閣令의 定하는 輕微한 事項에 關하여는 例外로 한다.

②前項但書의 事項에 關하여 工事設計를 變更한 境遇에는 遲滯없이 그 事項을 遞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變更은 周波數電波의 型式 또는 空中線電力에 對한 變更을 招來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④前項의 假許可를 얻은 者는 遞信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通信의 相對方, 通信事項, 無線設備의 設置場所, 放送事項 또는 放送區域을 變更할 수 있다.

第9條(竣工檢査) 第7條의 假許可를 얻은 者는 無線設備가 竣工된 경우에는 遞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 그 設備와 無線從事者의 資格 및 定員에 對하여 檢査를 받아야 한다.

第10條(假許可의 取消) 第7條第1項第1號의 期限(同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期限을 延長한 때에는 그 期限)이 經過한 後 30日 以內에, 前條의 申告가 없는 때에는 遞信部長官은 그 無線局에 對한 假許可를 取消한다.

第11條(無線局의 許可) 遞信部長官은 第9條의 規定에 依한 竣工檢査를 한 結果 그 無線設備가 本法과 閣令의 定하는 無線局開設基準에 適合하고 無線從事者의 資格과 定員이 第31條 및 第37條의 規定에 違反하지 아니하는 때는 遲滯없이 그 無線局을 許可하여야 한다.

第12條(許可의 有效期間) ①許可의 有效期間은 5年을 經過하지 아니하는 範圍내에서 閣令으로 定한다. 但, 再許可를 할 수 있다.

②船舶安全法의 規定에 依하여 無線設備를 하는 船舶의 無線局(以下 義務船舶局이라 한다)과 航空法의 規定에 依하여 無線設備를 하는 航空機의 無線局(이하 義務航空機局이라 한다)의 許可의 有效期間은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無期限으로 한다.

第13條(許可狀) ①遞信部長官은 無線局을 許可한 때에는 許可狀을 交付한다.

②許可狀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한다.

1. 許可年月日 및 許可番號
2. 施設者의 姓名 또는 名稱
3. 無線局의 種別
4. 無線局의 目的
5. 通信의 相對方 및 通信事項
6. 無線設備의 設置場所
7. 許可의 有效期間

8. 呼出符號 또는 呼出名稱

9. 電波의 型式 및 幅과 周波數

10. 發振 및 變調方式

11. 空中線電力

12. 空中線의 型式 및 構成

13. 運用許容時間

14. 無線從事者의 資格 및 定員

③放送을 目的으로 하는 無線局의 許可狀에는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다음의 事項을 記載한다.

1. 前項第1號乃至第4號 및 第6號乃至第14號에 揭記하는 事項

2. 放送事項

3. 放送區域

第14條(再許可節次) 第12條第1項의 但書의 假許可는 第6條乃至第11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閣令의 定하는 節次에 依할 수 있다.

第15條(運用開始日의 申告) 施設者는 許可를 얻은 때에는 遲滯없이 無線局의 運用開始日을 遞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6條(變更等의 許可) ①施設者는 施設目的, 通信의 相對方, 通信事項과 無線設備의 設置場所를 變更하거나 無線設備의 變更工事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遞信部長官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放送을 目的으로 하는 無線局의 施設者가 放送事項 또는 放送區域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第8條第1項但書,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前項의 規定에 依한 無線設備의 變更工事를 하는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第17條(變更檢査) 前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無線設備의 設置場所의 變更 또는 無線設備의 變更工事의 許可를 얻은 施設者는 遞信部長官의 檢査를 받고 그 變更 또는 工事의 結果가 許可內容과 合致된다고 認定받은 後가 아니면 無線設備를 運用하지 못한다.

第18條(周波數等의 變更) 遞信部長官은 施設者가 呼出番號와 呼出名稱, 電波의 型式 및 幅, 周波數, 空中線電力 또는 運用許容時間의 指定의 變更을 申請한 境遇에는 混信除去其他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된 때에 限하여 指定을 變更할 수 있다.

第19條(許可의 承繼) ①施設者에 對하여 相續이 있는 때에는 相續人이 그 施設

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②施設者인 法人이 合併한 때에는 合併後 存續하는 法人 또는 合併에 依하여 設立된 法人은 遞信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施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但, 船舶의 無線局(以下 船舶局이라 한)과 航空機의 無線局(以下 航空機局이라 한다)의 施設者의 境遇는 例外로 한다.

③第5條의 規定은 前項의 許可에 이를 準用한다.

④無線局이 있는 船舶에 있어서 船舶所有權의 移轉, 傭船契約의 締結, 變更 또는 解除나 解止에 依하여 船舶을 運行하는 者에 變更이 있는 때에는 變更後 船舶을 運行하는 者는 施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⑤前項의 規定은 無線局이 있는 航空機에 이를 準用한다.

⑥第1項, 第2項, 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施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遲滯없이 그 事實을 證明하는 書類를 添附하여 遞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⑦前6項의 規定은 第7條의 假許可를 얻은 者에 이를 準用한다.

第20條(無線局의 廢止와 運用休止) ①施設者가 無線局을 廢止하고자 하는 때 또는 無線局의 運用을 1月以上 休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遞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施設者가 無線局을 廢止한 때에는 許可는 그 效力을 喪失한다.

第21條(許可狀의 返還) 無線局의 廢止申告를 한 施設者는 廢止한 날로부터 1月以內에 許可狀을 返還하여야 한다.

第22條(無線局의 告示) 遞信部長官은 無線局을 許可한 때에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第23條(許可의 特例) ①遞信部長官은 外國에서 取得한 船舶 또는 航空機의 無線局에 對하여는 第6條乃至第12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許可를 할 수 있다.

②前項의 許可는 그 船舶또는 航空機가 國內의 目的地에 到着한 때에는 本法의 規定하는 바에 依하여 다시 許可를 얻어야 한다.

第 3 章 無線設備

第24條(電波의 質) 送信施設에 使用하는 電波의 周波數의 偏差와 幅, 高調波의 强度等 電波의 質은 閣令의 定하는 바에 適合하여야 한다.

第25條(受信設備의 條件) 受信設備는 그가 副次的으로 發生하는 電波 또는 高調波電流가 閣令의 定하는 限度를 超過하여 다른 無線設備의 機能에 支障을 주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第26條(安全施設) 無線設備에는 人體에 危害를 주거나 物件에 損傷을 주지 아니하도록 閣令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施設을 하여야 한다.

第27條(計器, 豫備品의 備置) 無線局의 無線設備에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設備의 操作에 必要한 計器, 器具 및 豫備品을 備置하여야 한다.

第28條(義務船舶局과 義務航空機局의 條件) ①義務船舶局의 無線電信에는 閣令의 定하는 條件에 適合한 補助設備를 하여야 한다.

②義務船舶局과 義務航空機局의 無線設備의 條件에 관하여는 閣令으로 定한다.

第29條(技術基準) 無線設備(放送의 聽取만을 目的으로 하는 것을 除外한다)는 本章에 規定하는 것 외에 閣令의 定하는 技術基準에 適合하여야 한다.

第 4 章 無線從事者

第30條(無線設備의 操作과 工事) 無線局의 無線設備는 第31條의 規定하는 바에 依하여 無線從事者가 아니면 이를 操作하거나 그 工事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但, 船舶 또는 航空機가 航行中이어서 無線從事者를 補充할 수 없는 때나 其他 閣令의 定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31條(無線從事者의 資格) ①無線從事者의 資格은 第一級無線通信士, 第二級無線通信士, 第三級無線通信士, 電話級無線通信士, 第一級無線技術士, 第二級無線技術士, 第三級無線技術士, 特殊無線技士, 第一級아마추어無線技士, 第二級아마추어無線技士, 第三級아마추어無線技士로 한다.

第32條(免許) 無線從事者가 되고자하는 者는 閣令의 定하는바에 依하여 施行하는 無線從事者資格考試(以下 資格考試라 한다)에 合格한 後 遞信部長官의 免許를 얻어야 한다.

第33條(免許를 附與하지 아니하는 境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 無線從事者의 免許를 附與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本法에 規定한 罪를 犯하여 罰金 以上의 形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날로부터 2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2. 無線從事者의 免許를 取消 當한 날로부터 2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3. 身體 또는 精神上의 缺格으로 因하여 職務遂行에 適合하지 아니한 者

第34條(免許의 有效期間) 無線從事者의 免許의 有效期間은 免許로부터 起算하여 5年으로 한다.

第35條(免許의 更新) ①無線從事者는 同一한 資格에 對한 免許의 更新을 申請할 수 있다.

②遞信部長官은 前項의 申請을 한 者가 本法 또는 本法에 依한 命令에 違反하지 아니하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同一한 資格에 對하여 免許의 更新을 하여야 한다.

1. 免許의 有效期間中 通算하여 2年6月以上 當該業務에 從事한 者
2. 免許의 有效期間中 通算하여 1年6月以上 및 申請前年以內에 6月以上 當該業務에 從事한 者

③前項各號의 境遇에 兵役義務를 畢하기 爲하여 軍에 服務하는 者에 對하여는 其 期間中 當該業務에 從事한 것으로 본다.

④第1項의 申請을 한 者가 第2項 各號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資格考試의 一部를 免除할 수 있다.

⑤遞信部長官은 第2項에 規定한 本法 또는 本法에 依據한 命令에 違反한 事項이 輕微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6月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免許의 更新을 保留할 수 있다.

⑥免許의 更新에 關하여는 第33條 및 第3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36條(資格考試 및 免許) 無線從事者의 資格考試 및 免許에 關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37條(通信長의 配置 無線從事者의 資格別定員) ①다음 表의 上欄에 揭記하는 船舶無線電信局(船舶局으로서 無線電信에 依하여 無線通信을 行하는 것을 말한다)에는 各 下欄에 揭記하는 無線通信士를 通信長으로 配置하여야 한다.

船舶無線電信局	通信長
第1種局(總屯數 3千屯 以上의 旅客船 및 總屯數 5千5百屯을 超過하는 旅客船 以外의 船舶의 船舶無線電信局을 말한다. 以下같다.)	通信長이 되기전 15年 以內에 있어서 船舶無線電信局의 第1級無線通信士로 4年 以上 業務에 從事하고 現在 第1級無線通信士의 免許를 가진者
第2種局甲(船舶安全法 第4條의 船舶으로서 總屯數 3千屯 未滿 5百屯 以上의 旅客船 또는 總屯數5千5百屯 以下 千 6百屯 以上의 旅客船 以外의 船舶의 無線電信局을 말한다. 以下 같다.)	通信長이 되기전 15年以內에 있어서 船舶無線電信局의 第1級無線通信士로 2年 以上 또는 第2級無線通信士로 4年 以上 業務에 從事하고 現在 第1級無線通信士의 免許를 가진자
第2種局 乙(旅客船 以外의 船舶의 無線電信局(第1種局 및 第2種局甲에 該當하는 것을 除外한다.) 으로서 公衆通信業務를 取扱하는 것 또는 船舶無線電信局(第1種局 및 第2種局甲에 該當하는 것을 除外한다.)을 말한다. 以下같다.)	第1級 無線通信士의 免許를 가진 자 또는 通信長이 되기전 10年 以內에 있어서 船舶無線電信局이나 海岸局 (船舶과 通信을 행하기 위하여 陸上위에 開設하는 無線局을 말한다.)의 第2級無線通信士로 1年 以上 業務에 從事하고 現在 第2級無線通信士의 免許를 가진자

②國際航空에 從事하는 航空機局으로서 無線電信에 依하여 無線通信을 行하는 航空機의 通信長에는 無線通信士의 資格을 얻고 50時間以上 航空機의 無線通信業務에 從事하고 現在 第一級無線通信士의 免許를 가진 者를 配置하여야 한다.

③前2項에 規定하는 通信長 外의 無線局에 配置하여야 할 無線從事者의 資格과 定員에 關하여 閣令으로 定한다.

第 5 章 運 用

第38條(目的外 使用의 禁止 等) 無線局은 許可狀에 記載된 目的 또는 通信의 相對方과 通信事項(放送을 目的으로 하는 無線局에 있어서는 放送事項)의 範圍內에서 運用하여야 한다. 但, 다음의 通信에 關하여는 例外로 한다.

1. 遭難通信(船舶 또는 航空機가 重大하고 急迫한 危險에 處한 境遇에 遭難信號를 前置하고 行하는 無線通信을 말한다. 以下같다)
2. 緊急通信(船舶 또는 航空機가 重大하고 急迫한 危險에 處할 憂慮가 있는 境遇 其他 緊急한 事態가 發生한 境遇에 緊急信號를 前置하고 行하는 無線通信

을 말한다. 以下같다)

3. 安全通信(船舶 또는 航空機의 航行에 對한 重大한 危險을 豫防하기 爲하여 安全信號를 前置하고 行하는 無線通信을 말한다. 以下같다)

4. 非常通信(地震, 颱風, 洪水, 海溢, 雪害, 火災 其他 非常事態가 發生하거나 또는 發生할 憂慮가 있는 境遇에 有線通信을 利用할 수 없거나 이를 利用하기 困難한 때에 人命의 救助, 災害의 救護, 交通通信의 確保 또는 秩序維持를 爲하여 行하는 無線通信을 말한다. 以下같다)

5. 放送의 受信

6. 其他 閣令으로 定하는 通信

第39條(無線局의 運用) ①無線局을 運營하는 境遇에는 無線設備의 設置場所, 呼出符號 또는 呼出名稱, 電波의 型式, 周波數發振과 變調方式, 空中船의 型式과 構成은 許可狀에 記載된 바에 依하여야 한다. 但, 遭難通信은 例外로 한다.

②無線局을 運用하는 境遇에 空中線電力은 許可狀에 記載된 範圍內에서 通信을 하기 爲하여 必要한 最少의 것이라야 한다. 但, 遭難通信은 例外로 한다.

第40條(無線局의 運用) 無線局은 第7條第1項第5號와 第13條第2項第13號에 依하여 指定하는 運用許容時間內에 運用하여야 한다. 但, 第38條各號에 依한 通信을 行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41條(混信等의 防止) 無線局은 다른 無線局의 運用을 해할 混信 其他의 妨害를 하지 아니하도록 運用하여야 한다. 但, 第38條第1號乃至第4號의 通信에 關하여는 例外로 한다.

第42條(秘密의 保護) 누구든지 法律에 特別히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無線局이 取扱하는 無線通信을 接受하거나 無線通信에 關하여 知得한 他人의 秘密을 漏泄 또는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3條(擬似空中線回路의 使用) 無線局은 다음의 境遇에는 可能한 限 擬似空中線回路를 使用하여야 한다.

1. 無線設備의 機器試驗 또는 調整을 行하기 爲하여 運用할 때

2. 實驗無線局을 運用할 때

第44條(實驗無線局等의 通信)

①實驗無線局은 外國의 實驗無線局과 通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實驗無線局과 아마추어無線局의 行하는 通信에는 暗語를 使用하여서는 아

니된다

第45條(時計, 業務書類等의 備置) 無線局에는 正確한 時計, 無線檢査簿, 無線業務日誌 其他 閣令의 定하는 書類를 備置하여야 한다. 但, 閣令의 定하는 無線局에 對하여는 이들의 全部 또는 一部의 備置를 省略할 수 있다.

第46條(通信方法等) 無線局의 呼出 또는 應答方法 其他의 通信方法, 時刻의 照合, 補助設備, 救命艇의 無線設備, 方位測定裝置와 警報自動受信機의 調整 其他 無線設備의 機能을 維持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47條(船舶局等의 運用) ①船舶局의 運用은 그 船舶의 運行中에 限하고 航空機局의 航行中 및 航行準備中에 限한다. 但, 受信裝置만을 運用할 때, 第38條各號의 通信을 할 때, 其他 閣令의 定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②海岸局 또는 航空局(航空機局과 通信을 行하기 爲하여 陸上에 開設하는 無線局을 말한다)은 船舶局 또는 航空機局으로부터 自局의 運用에 妨害를 받을 때에는 妨害하고 있는 船舶局 또는 航空機局에 對하여 그 妨害를 除去하기 爲하여 必要한 措處를 取하도록 要求할 수 있다.

③船舶局 또는 航空機局은 海岸局 또는 航空局과의 通信에 있어서 通信의 順序, 時刻, 使用電波의 型式 또는 周波數에 對하여 海岸局 또는 航空局으로부터 指示를 받을 때에는 그 指示에 따라야 한다.

第48條(運用時間) ①船舶無線電信局은 그 船舶의 航行中은 第1種局에 있어서는 常時 第2種局과 第3種局甲 總屯數 千600屯未滿 五百屯以上의 旅客船 以外의 船舶安全法 第4條의 船舶의 船舶無線電信局으로서 公衆通信業務를 取扱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以下같다)에 있어서는 閣令에 定하는 時間表에 依한 時間에 依하여 運用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時間表의 時間은 第2種局甲은 1日16時間, 第2種局乙은 1日8時間, 第3種局甲은 1日4時間으로한다.

③海岸局 또는 航空局은 常時運用하여야 한다. 但, 閣令의 定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④義務航空機局의 運用時間은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야 한다.

第49條(沈默時間) ①海岸局과 船泊局은 國際標準時에 의한 每時 15分 및 45分부터 3分間(以下 第1沈默時間이라 한다) 485키로싸이클부터 515키로싸이클까지의 周波數의 電波를 發射하지 못한다. 但, 遭難通信, 緊急通信을 行하는 境遇 또는 第1沈默時間終了前 20秒間 安全信號를 送信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②海岸局 및 船舶局은 每時 6分以內의 範圍內에서 閣令이 定하는 時間(以下 第2沈默時間이라 한다)에는 前項의 周波數 以外의 電波를 發射하지 못한다.

③第1項但書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第50條(聽守義務) ①500키로싸이클의 周波數의 指定을 받은 第1種局, 第2種局甲과 國際航海에 從事하는 旅客船의 第2種局乙은 500키로싸이클의 周波數로써 常時 聽守하여야 한다.

②500키로싸이클의 周波數의 指定을 받고 있는 海岸局, 第2種局乙(國際航海에 從事하는 旅客船은 除外한다)과 第3種局甲은 運用하여야 할 時間(以下 運用義務時間이라 한다)中에는 500키로싸이클의 周波數로서 聽守하여야 한다

③前2項의 無線局은 運用義務時間中 第1沈默時間을 除外하고 現在 通信中인 境遇에는 前2項의 規定에 의한 聽守를 要하지 아니한다. 但, 警報自動受信機를 施設하고 있는 船舶無線電信局은 例外로 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無線局은 運用義務時間中에는 警報自動受信機에 의하여 聽守하여서는 아니된다. 但, 現在 通信中인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⑤閣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周波數의 指定을 받고 있는 海岸局 및 船舶局은 運用義務時間中 그 周波數로써 聽守하여야 한다.

⑥第3種局乙(第1種局, 第2種局과, 第3種局甲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船舶無線電信局을 말한다. 以下같다)은 2時間의 範圍에서 閣令의 定하는 周波數로서 聽守하여야 한다. 但, 現在 通信中인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51條(同前) 航空局과 航空機局은 運用義務時間中에는 閣令의 定하는 周波數로서 聽守하여야 한다.

第52條(遭難通信) ①海岸局과 船舶局은 遭難通信을 受信한 때에는 다른 모든 無線通信에 優先하여 卽時 應答하고 遭難을 當하고 있는 船舶 또는 航空機를 救助하기 爲하여 가장 便利한 位置에 있는 無線局에 對하여 通報하는 等 救助通信에 關하여 最善의 措處를 取하여야 한다.

②無線局은 遭難信號를 受信한 때에는 遭難通信을 妨害할 憂慮가 있는 電波의 發射를 卽時 中止하여야 한다.

第53條(緊急通信) ①海岸局과 船舶局은 遭難通信 다음의 優先順位로서 緊急通信을 取扱하여야 한다.

②海岸國과 船舶局은 緊急信號를 受信한 때에는 遭難通信을 行하는 境遇에는

最少 3分間 繼續하여 이를 受信하여야 한다.

第54條(安全通信) ①海岸局과 船舶局은 迅速하고 正確하게 安全通信을 取扱하여야 한다.

②海岸局과 船舶局은 安全信號를 受信한 때에는 그 通信이 自局에 關係없다는 것을 確認할 때까지 安全通信을 受信하여야 한다.

第55條(船舶局의 機器調整을 爲한 通信) 海岸局 또는 船舶局은 다른 船舶局으로부터 無線設備의 機器調整을 爲한 通信을 要請받은 때에는 支障이 없는 限이에 應하여야 한다.

第56條(通信圈 出入通知) ①船舶局은 海岸局의 通信圈에 들어온 때와 通信圈을 떠날 때에는 그 뜻을 그 海岸局에 通知하여야 한다. 但, 閣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

②第1項의 海岸局의 通信圈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57條(準用) 第49條第1項 및 第51條 乃至 第54條의 規定은 航空機局의 運用에 이를 準用 한다.

第58條(航空機局의 通信連絡) 航空機局은 그 航空機의 航行中에는 閣令의 定하는 方法에 依하여 閣令의 定하는 航空局과 連絡을 하여야 한다.

第59條(其他 運用條件) 無線局의 運用에 關하여는 本章의 規定外에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 6 章 檢 查

第60條(無許可無線局等의 檢查) 遞信部長官은 許可없이 無線局을 開設하거나 運用한 者 또는 第72條第1項의 設備를 하거나 運用한 者가 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關係 公務員을 派遣하여 無線設備의 檢查를 行하게 할 수 있다.

第61條(定期檢查) 遞信部長官은 每年1回 미리 通知하는 期日에 關係公務員을 無線局에 派遣하여 無線設備, 無線從事者의 資格과 定員, 第45條 時計와 書類를 檢查하게 할 수 있다. 但, 檢查를 每年 行할 必要가 없다고 認定하는 無線局과 外國航行中인 船舶, 航空機의 無線局에 關하여는 例外로 한다.

第62條(臨時檢查) ①遞信部長官은 第65條第1項에 依하여 電波發射의 停止를 命한 때, 同條 第2項의 申告가 있을 때, 無線局이 있는 船舶이 外國에 出航하고자 하는 때, 其他 本法의 施行을 保障하기 爲하여 特히 必要가 있는 때에는

關係公務員을 無線局에 派遣하여 無線設備, 無線從事者의 資格과 定員, 第71條의 時計와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遞信部長官은 放送의 受信을 目的으로 하는 受信設備의 對하여 第71條의 措置를 命한 境遇에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關係公務員을 當該 設備가 있는 場所에 派遣하여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第63條(證票의 提示) 本章의 規定에 依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施設者 其他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 7 章 監　　督

第64條(周波數等의 變更과 損失補償) ①遞信部長官은 電波의 規定 其他 公益上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當該無線局의 目的遂行에 支障을 주지 아니하는 範圍내에서 無線局의 周波數 또는 空中線電力의 指定을 變更할 수 있다.

②政府는 前項에 依하여 無線局의 周波數 또는 空中線電力의 指定을 變更함으로써 發生한 損失을 當該 施設者에게 補償하여야 한다. 但, 施設者의 要請에 의하여 變更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③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補償을 할 損失은 前項의 處分으로 인하여 通常 發生할 損失로 한다.

④第2項의 補償金額에 對하여 不服이 있는 者는 補償金額決定의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月以內에 訴로써 그 增額을 請求할 수 있다.

第65條(電波의 發射의 停止) ①遞信部長官은 無線局에서 發射하는 電波의 質이 第24條의 規定에 依한 閣令의 定하는 것에 適合하지 아니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當該 無線局에 對하여 臨時로 電波發射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②遞信部長官은 前項의 命令을 받은 無線局으로부터 發射하는 電波의 質이 第24條의 規定에 依한 閣令의 定하는 것에 適合하게 되었다고 申告가 있는 때에는 그 無線局에 對하여 試驗電波를 發射하게 하여야 한다.

③遞信部長官은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發射하는 電波의 質이 第24條의 規定에 依한 閣令의 定하는 것에 適合하게 된 때에는 卽時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停止命令을 解除하여야 한다.

第66條(非常事態에 있어서의 無線通信) ①遞信部長官은 地震, 颱風, 洪水, 海

溢, 雪害, 火災 其他의 非常事態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는 境遇에는 人命救助, 災害救護, 交通通信의 確保 또는 秩序維持를 爲하여 必要한 通信을 無線局에 行하게 할 수 있다.

②遞信部長官이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無線局에 通信을 行하게 한 때에는 政府는 그 通信에 要한 實費를 補償한다.

第67條 (無線局의 許可取消 等) ①遞信部長官은 施設者가 第5條第1項第1號 乃至 第4號 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얻을 수 없는 者가 된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②遞信部長官은 施設者가 本法 또는 本法에 依한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한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3月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無線局의 運用의 停止를 命하거나 期間을 定하여 運用許容時間, 周波數 또는 空中線電力을 制限할 수 있다.

③遞信部長官은 施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非常事態가 發生한 때

2. 混信防止上 必要한 때

④遞信部長官은 施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正當한 事由없이 繼續하여 6月以上 無線局의 運用을 休止한 때

2. 不正한 方法으로 無線局의 許可 또는 第16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얻거나 第18條의 規定에 依한 指定의 變更을 하게 한 때

3. 第2項 또는 第3項에 依한 命令 또는 制限을 違反한 때

4. 施設者가 第5條第1項第5號에 該當하게 된 때

第68條(空中線의 撤去) 無線局의 許可의 效力이 喪失된 때에는 施設者이었던 자는 遲滯없이 空中線을 撤去하여야 한다.

第69條(無線從事者의 免許의 取消 等) ①遞信部長官은 無線從事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免許를 取消하거나 3月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業務從事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1. 本法 또는 本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한 때

2. 不正한 手段으로 免許 또는 免許의 更新을 받은 때

3. 第33條第3號에 該當하게 된 때

②遞信部長官은 前項의 規定에 依한 處分을 한 때에는 그 理由를 記載한 文書를 本人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第70條(報告) ①施設者는 다음의 境遇에는 閣令의 定하는 節次에 依하여 遞信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1. 遭難通信, 緊急通信, 安全通信 또는 非常通信을 行한 때
2. 本法 또는 本法에 依한 命令에 違反하여 運用한 無線局을 認知한 때
3. 遞信部長官이 許可한 無線局 以外의 無線設備에서 電波가 發射된 것을 認知한 때
4. 無線局이 外國에서 미리 遞信部長官이 告示한 以外의 運用制限을 받은 때

②遞信部長官은 無線通信의 秩序維持 其他 無線局의 適正한 運用을 確保하기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施設者에 對하여 無線局에 關한 報告를 하게 할 수 있다.

第71條(受信設備에 대한 監督) 遞信部長官은 第4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要하지 아니하는 無線局(許可를 要하지 아니하는 無線局이라 한다. 以下같다)의 無線設備가 發射하는 電波 또는 受信設備가 副次的으로 發하는 電波 또는 高周波電流가 다른 無線設備의 機能에 繼續的으로 重大한 障害를 주는 境遇에는 그 設備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 對하여 그 障害를 除去하기 爲하여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 8 章 雜 則

第72條(高周波利用設備) ①다음의 設備를 하고자 하는 者는 遞信部長官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1. 電線路에 10키로싸이클 以上의 高周波電流를 通하는 電信電話 其他 通信設備(케이블搬送設備 및 平衡2線式 裸線搬送設備를 除外한다)
2. 無線設備 및 前號의 設備以外의 設備로서 10키로싸이클 以上의 高周波電流를 利用하는 것 中 閣令으로 定하는 것

②前項의 許可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遞信部長官은 當該 申請이 第24條, 第26條 또는 第29條의 技術基準에 適合하며 當該 申請에 依한 周波數의 使用이 다른 通信에 妨害를 주지 아니한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

③第13條第1項 및 第2項(許可狀), 第16條(變更等의 許可), 第20條(無線局의 廢

止와 通用休止), 第21條(許可狀의 返還), 第26條(安全施設), 第29條(技術基準), 第62條(臨時檢査), 第63條(檢査官證의 提示), 第65條(電波發射의 停止), 第67條第2項 및 第3項(無線局의 許可取消等)과 第70條第2項(報告)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얻은 設備에 이를 準用한다.

第73條(無線設備의 機能의 保護) 第71條의 規定은 無線設備 以外의 設備(前條의 設備를 除外한다)에서 副次的으로 發하는 電波 또는 高周波電流가 無線設備의 機能에 繼續的으로 重大한 障害를 주는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第74條(同前) ①遞信部長官이 施設한 無線方位測定裝置의 設備場所에서 1키로미터 以內의 地域에 電波를 妨害할 憂慮가 있는 建造物 또는 工作物로서 閣令이 定하는 것을 建設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그 事實을 遞信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無線方位測定裝置의 設置場所는 遞信部長官이 公告한다.

第75條(手數料의 徵收) 다음에 偈記하는 者는 閣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1. 第6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申請하는 者
2. 第9條, 第17條, 第61條, 第62條의 規定에 依한 檢査를 받는 者
3. 第32條의 規定에 依한 無線從事者 資格考試申請을 하는 者와 免許證을 申請하는 者
4.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免許의 更新을 申請하는 者로서 同鳥第2項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
5. 許可狀 또는 免許證의 再交付를 申請하는 者

第 9 章 罰 則

第76條 (罰 則) ①無線通信業務에 從事하는 者가 第52條第1項(第56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依한 遭難通信의 取扱을 하지 아니한 때 또는 遲延시킨 때에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遭難通信의 取扱을 妨害도 前項과 같다.

③第2項의 未遂犯은 이를 處罰한다.

第77條(同前) ①無線設備 또는 第72條第1項第1號의 通信設備에 依하여 大韓民國憲法 또는 政府를 暴力으로 破壞할 것을 主張하는 通信을 發한 者는 3年 以

上의 有期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②前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③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第78條(同前) ①自己 또는 他人의 利益을 爲하거나 他人에게 損害를 가할 目的으로 無線設備 또는 第72條第1項第1號의 通信設備에 依하여 虛僞의 通信을 發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0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船舶遭難 또는 航空機遭難이 없음에도 不拘하고 無線設備에 依하여 遭難通信을 發한 者는 3月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③無線通信業務에 從事하는 者가 第1項의 行爲를 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하고 前項의 行爲를 한 때에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第79條(同前) ①公衆通信業務 또는 放送業務에 供用하는 無線局의 無線設備 또는 人命 및 財産의 保護, 公安維持, 氣象業務에 供用하는 無線設備을 損壞하여 이에 物品을 接觸하거나 其他 無線設備의 機能에 障害를 주어 無線通信을 妨害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前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80條(同前) 無線設備 또는 第72條第1項第1號의 通信設備에 依하여 淫亂한 通信을 發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20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81條 (同前) ①第42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無線通信業務에 從事하는 者가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20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82條(同前)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20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없이 無線局을 開設하거나 無線局을 運用한 者

2. 第7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없이 同條同項의 設備를 하거나 이를 運用한 者.

第83條 (同前)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8條乃至 第40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無線局을 運用한 者

2. 第17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無線設備를 運用한 者

3. 第65條第1項, 第67條第2項 또는 同條 第3項(第72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各各 包含한다)의 規定에 依하여 電波의 發射 또는 運用이 停止된 無線局 또는 第72條 第1項의 設備를 運用한 者

4. 第60條, 第61條 또는 第62條(第72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依한 檢査를 拒否하거나 妨害한 者

5. 第66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措置를 拒否한 者

第84條 (同前)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5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7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第67條第2項 또는 同條第3項(第72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依한 運用制限에 違反한 者.

第85條 (同前)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3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0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第49條第1項(第56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者

3. 第68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4. 第69條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의 從事를 停止 當한 後, 無線設備의 操作 또는 工事를 한 者.

5. 第71條의 規定에 依한 命令에 違反한 者.

第86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其他 從事者가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82條 乃至 前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處罰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對하여도 各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87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萬圓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

1. 第19條第6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21條(第72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違反하여 許可狀을 返還하지 아니한 者

附　　則

第1條(施行期日) 本法은 196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廢止法令) 1915 勅令 第186號 無線電信法을 朝鮮, 臺灣 및 樺太에 施行하는 件은 本法施行과 同時에 이를 廢止한다.

第3條(經過措置) ①本法施行 當時 1951年 12月 1日 大統領令第57號無線通信士資格檢定令(以下檢定令이라 한다)에 依하여 다음 表上欄에 偈記하는 資格이 있는 者는 本法에 依한 同表 下欄에 偈記하는 資格의 免許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境遇에 免許의 有效期間은 舊資格의 免許有效殘餘期間으로 한다.

舊資格	新資格
第1級 無線通信士	第1級 無線通信士
第2級 無線通信士	第2級 無線通信士
第3級 無線通信士	第3級 無線通信士
電話級 無線通信士	電話級 無線通信士
第1級 아마추어 無線通信士	第1級 아마추어 無線通技士

②本法施行 當時 檢定令에 依하여 聽守員級無線通信士의 資格이 있는 者는 그 免許有效期間滿了日까지 그 資格을 가진다.

③本法施行 當時 檢定令에 依하여 第2級아마추어無線通信士의 資格이 있는 者는 本法施行日로부터 2年間 그 資格을 가진다.

第4條 (同前) 本法施行 當時 免許없이 無線設備의 通信操作 또는 技術操作에 從事하는 者는 第30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本法 施行日로부터 1年間에 限하여 無線通信士 또는 無線技術士 資格없이 當該 操作에 從事할 수 있다.

第5條 第37條第1項의 第1種局通信長의 資格에 있어서는 本法 施行日로부터 2年間은 同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業務從事期間을 2年으로 한다.

第6條 (同條) 從前의 法令에 依하여 電波管理에 關하여 發한 命令이나 處分, 節次 其他의 行爲는 本法 中 이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本法에 依하여 한 것으로 본다. 이 境遇에 第5條第1項第1號乃至第4號의 規定에 該當되는 無線局에 對한 許可의 有效期間은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本法施行日로부터 1年間으로 한다.

2. 주요 개정사항

□ 제1차 (법률 제1913호 : 1967. 3. 14) 개정 주요사항

- 무선국의 허가에 있어 외국성(外國性)배제의 완화
- 무선국허가의 승계범위 조정
- 무선기기에 대한 형식검정제도의 신설
- 무선종사자 면허 유효기간의 폐지와 이에 따른 갱신제도의 폐지
- 전파장해방지 구역의 지정신설
- 전기통신법의 관련조항 준용규정(토지사용 등) 신설 등

□ 제2차 (법률 제2280호 : 1971. 1. 13) 개정 주요사항 전파관리국을 체신부 외국화로 분리 체신부장관을 전파관리국장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 결격사유 중 외국성의 배제완화와 반국적 배제 신설
- 무선국 허가 신청의 공동명의 불가
- 가허가 취소요건의 강화
- 무선설비의 공동사용제도의 신설
- 무선설비의 철거와 신고제도의 신설
- 무선종사자협회 규정의 신설
- 벌금액의 현실화

□ 제3차 (법률 제2529호 : 1973. 2. 16) 개정 주요대상 선박국의 종별과 선박국의 통신장에 대한 규정을 보강

□ 제4차 (법률 제2999호 : 1976. 12. 31) 개정 주요사항

- 시행령으로서 전파에 관한 정의개정
- 국가기술자격법의 시행에 따라 무선종사자에 대한 관계규정의 정비
-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 형식검정 및 무선국의 운용사항 등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체신부령으로 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여

□ 제5차 (법률 제3308호 : 1980. 12. 31) 주요 개정사항

- 간이한 허가 절차에 의한 무선국을 확정 조정

- 500㎑ 또는 2182㎑를 지정 받은 무선국은 그 주파수로서 상시 청수
- 전기통신법의 전문개정에 따른 관계조문 정비 등

□ 제6차 (법률 제3514호 : 1981. 12. 31) 주요 개정사항

- 공중통신업무(공중의 일반적 이용에 공하는 무선통신업무)를 정부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행 할수 있도록 함(제4조)
-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의 무선설비에 가하여 어선법에 의한 무선설비의 허가유효기간도 무기한으로 함(제12조)
-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무선국은 운용개시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 무선설비는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위탁 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3).
- 고주파이용설비도 무선국과 같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7조 제3항).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체형 및 벌금형에 있어서는 타 법률과 형평을 같게 현실화(제78조 내지 제87조).
- 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 둔다.
  가. 시행일은 정부조직법시행일과 같이 1982년 1월 1일로 함.
  나. 전파관리국장으로 부터 받은 무선국허가 및 고주파이용설비의 허가는 체신부장관으로 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다. 전파관리국장으로 부터 받은 수첩은 체신부장관으로 부터 교부 받은 것으로 봄.
  라.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 제7차 (법률 제3686호 : 1983. 12. 30) 주요 개정사항

□ 제8차(법률 제4193호 : 1989. 12. 30) 주요 개정사항

- 무선국의 개설은 체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발사하는 전파가 극히 미약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전파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등 대통령이 정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구분에 따라 신고에 의하여 개설하거나 또는 신고 없이 자유로이 개설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

- 외국인 등에게 원칙적으로 무선국의 개설을 금지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사관 등 공관에 설치하는 무선국, 육상이동업무를 행하는 일부무선국 및 국제행사 기간 중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무선국 등에 대하여는 그 개설을 허용 함.
- 형식검정대상 무선기기로써 형식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기기와 전자파장애검정 대상기기로써 전자파 장애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기기를 제작·판매하는 경우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이 불법기기로 유통되어 왔는바 앞으로는 이를 제정하기 위하여 형식검정 또는 전자파장애검정미필기기의 제작 또는 판매 · 진열보관 및 운송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산업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자파 장애에 대한 방지기 중 및 당해 전자파장애로부터 보호기준을 설정하여 타인의 전자기기 등 사용을 보호함.
- 무선국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무선종사자협회에서 체신부 장관의 수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무선국의 정기검사 등 검사업무 및 무선종사자의 통신보안교육 등 무선국의 관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선종사자 협회를 무선국관리사업단으로 개편함.
- 고층건물의 건설로 야기되는 방송수신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는 동 장애를 제거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함.

□ 제 9차 (법률 제4393호 : 1991. 8. 10) 주요 개정사항

- 전기통신기본법 중 전파법과 관련부분

□ 제10차 (법률 제4394호 : 1991. 8. 10) 주요 개정사항

-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중 전파법과 관련부분

□ 제11차 (법률 제4435호 : 1991. 12. 14) 주요 개정사항

- 항공법 중 전파법 관련부분

□ 제12차 (법률 제4441호 : 1991. 12. 14) 주요 개정사항

– 법률 제4441호 개정

□ 제13차 (법률 제4528호 : 1992. 12. 8) 주요 개정사항

– 공업표준화법 중 전파법 관련부분

□ 제14차 (법률 제5218호 : 1996. 12. 30) 주요 개정사항

– 무선국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고 개설하도록 되어있으나 앞으로는 이동전화 등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허가절차를 생략 하도록 함.

– 무선기기를 제작 수입하는 경우에 형식검정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동전화 등 일부 무선기기는 형식검정 대신 형식등록을 하도록 함.

– 전자파 장애기기를 제작 · 수입하는 경우에 전자파장애검정을 받도록 하였으나, 전자파 적합등록을 하도록 함.

– 중요무선통신의 전파장애 방지구역안에서 높이 35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하는 경우에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를 얻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요 무선통신에 대한 장해를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함.

□ 제15차 (법률 제5383호 : 1997. 8. 28) 주요 개정사항

– WTO기본통신협력에 의한 국제기준을 반영하고 2000년대의 국제화 · 세계화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하여 외국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총 발행주식의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무선국 개설을 허용하도록 함으로 무선국 개설요건을 완화

– 이동무선공중전화, 이동전화 지하중계기기 등 공공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제16차 (법률 제5454호 : 1997. 12. 13) 주요 개정사항

– 정부부처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개정

□ 제17차 (법률 제5470호 : 1997. 12. 17) 주요 개정사항

– 선박안전법 중 전파법 관련 부분

□ 제18차 (법률 제5637호 : 1998. 12. 14) 주요 개정사항

- 전파분야 각종 철폐함으로써 전파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내용으로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49퍼센트를 초과하는 국내법인은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거나 이를 폐지하여 외국자본의 국내 투지유치를 활성화하도록 함.
- 외국에서 제작 또는 수입되는 무선설비로서 형식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형식등록을 받지 아니하기로 국가간 상호 인정된 무선설비의 기기에 대하여는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을 생략하도록 함.
- 아마추어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과 범위 내에서 유·무선 접속장치를 이용하여 유·무선간의 중계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함.
- 무선국의 가허가, 기술기준확인증명, 무선국의 통신방법, 전파발사의 정지 시설자의 보고의무, 수신설비에 대한 감독 및 전파장애 방지구역의 지정을 각각 폐지 함.

3. 현행 전파법(法律 第5,637號 : '99. 1. 18 改正)

第1條(目的) 이 法은 電波의 效率的인 利用 및 管理에 관한 事項을 定하여 電波利用 및 電波에 관한 技術의 開發을 촉진함으로써 電波의 振興을 도모하고, 公共福利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電波"라 함은 3千기가헬즈 以下의 周波數의 電磁波를 말한다.
2. "無線電信"이라 함은 電波를 利用하여 符號를 보내거나 받는 通信方式을 말한다.
3. "無線電話"라 함은 電波를 利用하여 音聲 其他 音響을 보내거나 받는 通信方式을 말한다.
4. "無線設備"라 함은 無線電信, 無線電話 기타 電波를 보내거나 받는 電氣的 施設을 말한다.
5. "無線局"이라 함은 無線設備와 無線設備를 操作하는 者의 總體를 말한다.
6. "無線從事者"라 함은 無線設備를 操作하거나 그 設備의 工事를 하는 者로서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資格檢定에 合格하여 登錄한 者를 말한다.

7. "施設者"라 함은 情報通信部長官으로부터 無線局의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8. "電磁波障害"라 함은 電磁波를 발생시키는 機器로부터 그 電磁波가 放射(電磁波에너지가 空間으로 퍼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傳導(電磁波에너지가 電源線을 통하여 흐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되어 다른 機器의 性能에 障害를 주는 것을 말한다.
9. "電磁波適合"이라 함은 第29條의4의 規定에 의한 電磁波障害防止基準 및 電磁波로부터 保護基準에 適合한 것을 말한다.

第3條(電波에 關한 條約) 電波에 關하여 條約에 따로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規定에 의한다.

第4條(無線局의 開設) ①無線局을 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의 無線局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無線局은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發射하는 電波가 微弱한 無線局
2. 受信專用의 無線局
3. 情報通信部長官이 정하는 일정한 條件하에서 個人의 日常生活에 자유로이 이용하기 위한 無線局

②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電氣通信基本法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役務를 제공받기 위한 無線局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無線局을 開設하고자 하는 者가 당해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하는 電氣通信事業者와 利用契約을 締結한 때에는 당해 無線局에 대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第16條 · 第20條 · 第61條 및 第75條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電氣通信事業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無線局을 開設하고자 하는 자와 利用契約을 締結한 때에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情報通信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④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外國에서 開設된 無線局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無線局은 당해 無線局을 運用하는 者가 당해 無線設備를 휴대하고 國內에 入國한 때에 情報通信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第12條 · 第16條 · 第19條 · 第20條 · 第61條 및 第75條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

니한다.

⑤第1項의 단서의 規定에 불구하고 發射하는 電波가 극히 微弱한 無線局 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無線局은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지 아니하고 開設할 수 있다.

⑥無線局이 행하는 業務 및 無線局의 分類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缺格事由) ①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無線局의 開設을 許容하지 아니한다. 다만, 第4條第1項 단서 및 동조 第2項 · 第4項 ·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2. 外國政府 또는 그 代表者
3. 外國의 法人 또는 團體
4. 削 除
5. 이 法에 規定한 罪를 犯하여 禁錮以上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날로부터 2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6. 削 除
7. 刑法中 內亂의 罪 · 外患의 罪 軍刑法중 利敵의 罪 및 國家保安法 위반의 罪를 犯하여 刑의 宣告를 받은 者.

②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1. 實驗局(科學 또는 技術發展을 위한 實驗에 專用하는 無線局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船舶安全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船舶의 無線局
3. 航空法 第145條 단서 및 第148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아 國內航空에 專用하는 航空機의 無線局
4. 削 除
5.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無線局으로서 大韓民國의 政府 · 代表者 또는 國民에게 自國안에서 無線局의 開設을 許容하는 國家의 政府 · 代表者 또는 國民에게 그 國家가 許容하는 無線局과 同日한 種類의 無線局

가. 大韓民國안에서 當該 國家의 外交 및 領事業務를 행하는 大使館등의 公館에서 특정 지점간의 通信을 위하여 公館안에 開設하는 無線局

나. 아마추어국(개인적인 無線技術의 興味에 의하여 自己訓練과 技術硏究에

專用하는 無線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육상이동업무를 행하는 無線局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

6. 國內에서 열리는 國際的 또는 範國家的인 行事를 위하여 必要한 경우 그 期間中 情報通信部長官이 許容하는 無線局

7. 아마추어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該當하는 者가 開設하는 無線局

가.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大韓民國의 아마추어무선기사 資格을 取得한 者

나. 大韓民國에 一時 滯留하는 期間中에 無線局을 運用하고자 하는 者(自國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資格을 取得한 者에 한한다)로서 情報通信部長官이 指定하는 團體의 推薦을 받은 者

③第1項第5號의 規定은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한 義務的으로 無線局을 開設하는 者와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6條(許可의 申請과 審査) ①無線局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情報通信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削 除

③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신청서를 接受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許可의 適否를 審査하여야 한다.

1. 工事設計가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에 適合할 것

2. 周波數의 割當이 可能할 것

3. 當該業務를 維持할 만한 財政的基礎가 있을 것

4. 大統領令이 정하는 無線局開設基準에 合致할 것

④情報通信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함에 있어서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申請人에게 資料의 提出을 要求하거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第7條(無線局의 許可 등) 情報通信部長官은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한 結果 그 申請이 동항 各號에 符合된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그 무선국을 許可하고 申請人에게 無線局의 竣工期限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이 記載된 許可證을 交付한다.

第7條의2(試驗電波의 發射) 削 除

第8條(工事設計등의 變更) 削 除

第9條(竣工檢査) ①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無線局의 許可를 받은 者는 無線設備가 竣工된 경우 이를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 그 無線設備와 無線從事者의 資格 및 定員에 對하여 檢査를 받아야 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無線局의 許可를 받은 者로부터 동조의 規定에 의한 許可證에 기재된 竣工期限의 연기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合當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1會에 한하여 그 期限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延長期間은 1年을 超過할 수 없다.

③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한 결과 그 無線設備가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에 適合하고 無線從事者의 資格 및 定員이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無線局별 無線從事者의 配置基準에 適合한 때에는 지체없이 檢査를 申請한 者에게 竣工檢査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第10條(無線局의 運用) ①無線局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竣工檢査를 받은 후이를 運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無線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漁船에 設置하는 無線局, 소규모의 無線局 및 아마추어局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無線局
2. 第12條第1項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再許可를 받은 無線局
3. 無線設備의 設置工事가 불필요 하거나 간단한 無線局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無線局
4. 外國에서 취득한 후 國內의 目的地에 到着하지 못한 船舶 또는 航空機의 無線局

②無線局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證에 記載된 事項의 範圍안에서 運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通信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遭難通信(船舶 또는 航空機가 중대하고 급박한 危機에 處한 경우에 遭難信號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無線通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緊急通信(船舶 또는 航空機가 중대하고 급박한 危險에 處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緊迫한 事態가 發生한 경우에 緊急信號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無線通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安全通信(船舶 또는 航空機의 航行에 중대한 危險을 豫防하기 위하여 安全信號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無線通信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非常通信(地震 · 颱風 · 洪水 · 海溢 · 火災 기타 非常事態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는 경우에 有線通信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를 利用하기 困難한 때에 人命의 救助, 災害의 救護, 交通通信의 確保 또는 秩序維持를 위하여

행하는 無線通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通信

第11條(無線局의 許可) 削 除

第12條(許可의 有效期間) ①許可의 有效期間은 5年을 經過하지 아니하는 範圍 내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며, 그 期間이 經過한 때에는 再許可를 할 수 있다.

②船舶安全法 및 漁船法의 規定에 의하여 無線設備를 하는 船舶의 無線局(이하 義務船舶局이라 한다)과 航空法의 規定에 의하여 無線設備를 하는 航空機의 無線局(이하 義務航空機局이라 한다)의 許可의 有效期間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無期限으로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有效期間은 竣工檢事畢證을 교부 받은 날부터 起算한다.

第13條(許可證) 削 除

第14條(簡易한 許可節次) 削 除

第15條(運用開始日의 申告) 削 除

第16條(變更許可) ①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無線局의 許可를 받은 者가 許可받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삭 제

③第9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자에 이를 準用한다.

第17條(變更檢査)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變更許可를 받은 施設者는 情報通信部長官의 檢査를 받고 變更의 結果가 變更許可 內容과 合致된다고 認定받은 후가 아니면 無線設備를 運用하지 못한다.

第18條 削 除

第19條(許可의 承繼) ①다음 각호의 1에 該當하는 者는 施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1. 施設者가 事業을 讓渡하면서 그 事業과 關聯된 無線局을 讓渡한 경우의 讓受人
2. 施設者인 法人의 合併이 있는 경우의 合併後 存續하거나 合併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3. 施設者에 대하여 相續이 있는 경우의 相續人

4. 無線局이 있는 船舶 또는 航空機의 所有權 이전 또는 賃貸借契約 등에 의하여 船舶 또는 航空機를 運航하는 者가 변경된 경우의 변경 후 船舶 또는 航空機를 運航하는 者

②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에 該當하는 者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第1項第3號 또는 第4號에 該當하는 者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無線局을 承繼하고자 하는 者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第5條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⑤相續이나 法人의 合併에 의하여 施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가 2人以上인 경우에는 그 중의 1人을 代表者로 選定하여야 한다.

第20條(無線局의 廢止와 運用 休止) ①施設者가 無線局을 廢止하고자 하는 때 또는 無線局의 運用을 1月以上 休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施設者가 無線局을 廢止한 때에는 許可는 그 效力을 喪失한다.

第21條(許可狀의 返還) 削 除

第22條(無線局의 告示) 情報通信部長官은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無線局을 許可한 때에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23條(許可의 特例) 削 除

第24條(電波의 質) 削 除

第25條(受信設備의 條件) 削 除

第26條(安全施設) 無線設備에는 人體에 危害를 주거나 物件에 損傷을 주지 아니하도록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施設을 하여야 한다.

第27條(計器, 豫備品의 備置) 削 除

第28條(義務船舶局과 義務航空機局의 條件) ①義務船舶局의 無線電信에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條件에 適合한 補助設備를 하여야 한다.

②義務船舶局과 義務航空機局의 無線設備의 條件에 관하여는 情報通信部令으로 定한다.

第28條의2(電波利用技術의 標準化) ①情報通信部長官은 電波의 效率的인 利用 및 利用秩序의 維持와 利用者의 保護를 위하여 電波의 利用에 關한 技術을

標準化하여 이를 無線設備를 製造하는 者에게 勸告할 수 있다. 다만, 産業標準化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이 制定되어 있는 事項에 대하여는 그 規格에 따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의 標準化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情報通信部令으로 定한다.

第29條(技術基準) 無線設備(放送의 聽取만을 目的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技術基準에 適合하여야 한다.

第29條의2(型式檢定 또는 型式登錄) ①無線設備의 機器를 製作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機器에 대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이 행하는 型式檢定을 받거나 情報通信部長官에게 型式登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無線通信의 硏究·開發을 위하여 試驗 製作하거나 輸入하는 것
2. 國內에서 販賣하지 아니하고 輸出用으로 製作하는 것
3. 外國으로부터 導入(賃貸借 또는 傭船契約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船舶 또는 航空機에 設置된 것
4. 外國에서 製作 또는 輸入된 無線設備의 機器로서 型式檢定을 받지 아니하거나 型式登錄을 하지 아니하기로 國家間 相互 認定된 것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檢定 또는 型式登錄의 對象機器·方法·節次 및 試驗機關의 指定 등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情報通信部令으로 定한다. 이 경우 對象機器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 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한 型式檢定 또는 型式登錄 對象 機器는 型式檢定에 合格하거나 型式登錄을 한 후 情報通信部令이 定하는 型式檢定 合格표시 또는 型式登錄表示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販賣하거나 販賣를 目的으로 製作·陳列·保管 또는 運送하거나 無線局에 이를 設置할 수 없다.

第29條의4(電磁波障害防止基準등)電磁波障害를 일으키는 機器(이하"電磁波障害機器"라 한다)의 電磁波障害防止基準 및 電磁波로부터 影響을 받는 機器의 電磁波로부터의 保護基準은 情報通信部令으로 定한다.

第29條의5(電磁波適合登錄) ①電磁波障害機器 또는 電磁波로부터 影響을 받는 機器를 製作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機器에 대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電磁波適合登錄을 하여야 한다. 다만, 第29條의2第1項第1號·第2號 및

第4號에 該當하는 機器와 다음 各號의1에 該當하는 機器로서 關係法令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電磁波適合登錄에 準하는 電磁波障害 및 電磁波로 부터의 保護에 관한 檢定등을 받은 機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表示의 許可 또는 承認을 얻은 品目
2. 電氣用品安全管理법에 의한 形式承認을 얻은 電氣用品
3. 削 除
4. 電氣通信基本法에 의한 形式承認을 얻은 電氣通信機資材
5. 自動車管理法에 의한 形式承認을 얻은 自動車
6. 消防法에 의한 形式承認을 얻은 消防機器
7. 藥師法에 의한 品目許可를 받은 醫療用具

②第29條의2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電磁波適合登錄 對象機器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9條의6 (無線設備의 效率的 利用) 施設者는 無線設備의 效率的 利用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無線局의 無線設備의 全部 또는 一部를 他人에게 賃貸 또는 委託運用하거나 他人과 공동으로 使用할 수 있다.

第29條의7(技術基準確認證明) 削 除

第30條(無線從事者의 資格 등) ①無線從事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國家技術資格에 關한 法令 또는 情報通信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施行하는 技術資格檢定(이하 "資格檢定"이라 한다) 에 合格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檢定에 合格한 者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③無線局의 無線設備는 無線從事者가 아니면 이를 造作하거나 그 工事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船舶 또는 航空機가 航行중이어서 無線從事者를 補充할 수 없거나 기타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無線從事者의 資格種目 및 資格種目別 從事範圍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1條(無線從事者의 資格種目 및 從事範圍) 削 除

第32條(無線從事者의 資格) 削 除

第33條 削 除

第34條 削 除

第35條 削 除

第36條(資格檢定의 및 手帖交付) 削 除

第37條(無線從事者의 配置) 無線局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資格別 定員에 따라 無線從事者를 配置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無線局에 配置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刑法중 內亂의 罪, 外患의 罪, 軍刑法중 利敵의 罪 및 國家保安法에 規定된 罪를 범하여 禁錮以上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 5년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第38條(無線局의 運用) 削 除

第39條 削 除

第40條 削 除

第41條(混信등의 防止) 削 除

第42條(秘密의 保護) 削 除

第42條의2(通信保安의 遵守) 施設者 및 無線通信業務에 從事하는 者와 無線設備를 利用하는 者는 情報通信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通信保安에 관한 사항을 遵守하여야 한다.

第43條(疑似空中線回路의 使用) 削 除

第44條(實驗局등의 通信) ①實驗局은 外國의 實驗局과 通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實驗局과 아마추어국이 通信을할 때에는 暗語를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아마추어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 제3자를 위한 通信을 할 수 있다.

④아마추어국은 無線設備에 有無線 接續裝置를 接續하여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 有無線間의 中繼通信을 할 수 있다.

第45條(時計, 業務書類등의 備置) 削 除

第46條(通信方法등) 削 除

第47條(船舶局등의 運用) 削 除

第48條(運用時間) ①國際電氣通信業務를 取扱하는 船舶局은 그 船舶의 航行중 다음 表의 運用時間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時間表에 의하여 당해 無線局을 運用하여야 한다.

②削 除

③海岸局 · 海岸地球局(宇宙에 있는 無線局을 통하여 船舶局과 通信하기 위하여 陸上에 開設하는 無線局을 말한다. 以下 같다) · 航空局 및 航空地球局(宇宙에 있는 無線局을 통하여 航空機局과 通信하기 위하여 陸上에 開設하는 無線局을 말한다) 은 常時 運用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義務航空機局의 運用時間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第49條(沈默時間) ①海岸局과 船泊局은 國際標準時에 의한 每時 15分 및 45分부터 3分間(이하 第1沈默時間이라고 한다) 485키로헬즈부터 515키로헬즈 까지의 周波數의 電波를 發射하지 못한다. 다만, 遭難通信, 緊急通信을 행하는 경우 또는 제1沈默時間終了前 20秒間 安全信號를 送信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②海岸局 및 船舶局은 每時 6分외의 範圍내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時間(以下 第2沈默時間이라 한다)에 第1項의 周波數외의 電波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發射하지 못한다.

③第1項但書의 規定은 第2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第50條(聽取義務) ①5백키로헬즈 또는 2,182키로헬즈의 周波數의 指定을 받은 第1種局, 第2種局과 第3種局은 5백키로헬즈 또는 2,182키로헬즈의 周波數로서 常時 聽取하여야 한다.

②5백키로헬즈 또는 2,182키로헬즈의 周波數의 指定을 받고 있는 海岸局과 第4種局은 運用하여야 할 時間(이하 運用義務時間이라 한다)중에는 5백키로헬즈 또는 2,182키로헬즈의 周波數로서 聽取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無線局은 運用義務時間중 제1沈默時間을 除外하고 現在通信中인 境遇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聽取를 要하지 아니한다. 다만, 警報自動受信機를 施設하고 있는 船舶局은 例外로 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運用義務時間중에는 警報自動受信機에 의하여 聽取하여

서는 아니된다. 다만, 現在 通信중인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⑤第1項 및 第2項외에 遭難通信用 周波數를 指定받은 海岸局·海岸地球局·船舶局 및 船泊地球局(宇宙에 있는 無線局을 통하여 海岸地球局등과 通信하기 위하여 船泊에 開設하는 無線局을 말한다)은 情報通信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周波數로 聽取하여야 한다.

船舶局의 種別	運用時間
第1終局 (國際航海에 就航하는 旅客船으로서 旅客定員 25인 이상인船舶의 無線局을 말한다. 以下 같다)	常時
第2終局 (國際航海에 就航하는 旅客船으로서 旅客定員 25인 미만인船舶의 無線局을 말한다. 以下 같다)	1日 16時間
第3終局 (第1終局 및 第2終局을 除外한 旅客船, 國際航海에 취항하는 旅客船외의 船舶과 第2終局 또는 第3終局의 從業制限이 있는 500톤 이상인 漁船의 無線局을 말한다. 以下같다)	1日8時間
第4終局 (第3終局에 該當하는 船舶局중 旅客船을 除外한 連續航海時間이 8時間以下의 船舶의 無線局을 말한다. 以下같다)	1日8時間 以下

⑥削 除

第51條(聽取義務) 航空局과 航空機局은 運用義務時間중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周波數로서 聽取하여야 한다.

第52條(遭難通信) ①海岸局과 船舶局은 遭難通信을 受信한 때에는 다른 모든 無線通信에 優先하여 卽時 응답하고 遭難을 당하고 있는 船舶 또는 航空機를 救助하기 위하여 가장 便利한 位置에 있는 無線局에 대하여 통보하는 등 救助通信에 관하여 最先의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②無線局은 遭難信號를 受信한 때에는 遭難通信을 妨害할 憂慮가 있는 電波의 發射를 卽時 中止하여야 한다.

第53條(緊急通信) ①海岸局과 船舶局은 遭難通信 다음의 優先順位로서 緊急通信을 取扱하여야 한다.

②海岸國과 船舶局은 緊急信號를 受信한 때에는 遭難通信을 行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最小 3分間 繼續하여 이를 受信하여야 한다.

第54條(安全通信) ①海岸局과 船舶局은 迅速하고 正確하게 安全通信을 취급하

여야 한다.

②海岸局과 船舶局은 安全信號를 受信한 때에는 그 通信이 自國에 關係없다는 것을 確認할 때까지 安全通信을 受信하여야 한다.

第55條(船舶局의 機器調整을 위한 通信) 海岸局 또는 船舶局은 다른 船舶局으로부터 無線設備의 機器調整을 위한 通信을 要請받은 때에는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56條(通信圈 出入通知)①船舶局은 海岸局의 通信圈에 들어온 때와 通信圈을 떠날 때에는 그 뜻을 그 海岸局에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

②第1項의 海岸局의 通信圈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57條(準用) 第49條第1項 및 第52條 내지 第54條의 規定은 航空局과 航空機局의 運用에 이를 準用 한다.

第58條(航空機局의 通信連絡) 航空機局은 그 航空機의 航行中에는 大統領領이 定하는 方法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航空局과 連絡을 하여야 한다.

第59條(기타 運用條件) 削 除

第60條(調査 및 措置) ①情報通信部長官은 第4條 · 第16條 · 第29條 · 第29條의2 · 第29條의5 · 第72條 및 第74條의 規定을 違反한 者가 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情報通信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調査 또는 試驗하게 할 수 있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 또는 試驗結果 違反事實이 確認된 때에는 그 施設者 · 所有者 · 製作者 또는 이를 販賣 · 陳列 · 保管 또는 運送하는 者에게 情報通信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이의 是正 · 撤去 · 破棄 · 收去 · 使用中止 또는 生産中止 등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61條(定期檢査) ①情報通信部長官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無線局에 대하여 5年의 範圍 내에서 無線局別로 情報通信部令이 定하는 期間마다 定期檢査를 實施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의 時期 · 方法 및 節次등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情報通信部令으로 定한다.

第62條(臨時檢査) 情報通信部長官은 無線局이 있는 船舶 또는 航空機가 外國에 出航하고자 하는 때, 기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특히 必要한 때에는 無線設備의 技術基準 및 無線從事者의 資格과 定員 기타 必要한 사항 등을 檢査할

수 있다.

第63條(證票의 提示) 이 章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 또는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施設者 기타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63條의2(電波監視) 情報通信部長官은 電波의 效率的인 利用을 促進하고 混信의 迅速한 除去등 電波秩序의 維持를 위하여 電波監視業務를 行한다.

第64條(周波數등의 變更과 損失補償) ①情報通信部長官은 電波에 관한 法令이 改正되거나 公益상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當該無線局의 目的遂行에 支障을 주지 아니하는 範圍내에서 無線局의 周波數 또는 空中線電力의 指定을 變更 할 수 있다.

②政府는 第1項에 의하여 無線局의 周波數 또는 空中線電力의 指定을 변경함으로써 發生한 損失을 當該施設者에게 補償하여야 한다. 다만, 電波에 관한 條約의 改正 또는 施設者의 要請에 의하여 變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政府는 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損失을 補償한 경우에 종전의 周波數를 새로이 指定받은 者 등 그 變更의 원인을 提供한 者가 있는 때에는 그 원인을 提供한 者에게 求償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을 할 損失은 第2項의 處分으로 인하여 통상 發生할 損失로 한다.

⑤第2項의 補償金額에 대하여 不服이 있는 者는 補償金額決定의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月以內에 訴로써 그 增額을 請求할 수 있다.

第65條(電波發射의 停止) 削 除

第66條(非常事態에있어서의 無線通信) 削 除

第67條 (無線局의 許可取消 등) ①施設者가 第5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該當하게 된 때에는 그 無線局 開設 許可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施設者가 다음 각호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情報通信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6月以內의 期間을 정하여 無線局의 運用停止, 無線局의 運用許容時間과 周波數 또는 公衆線電力의 制限을 命할 수 있다.

1. 第1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
2. 削 除
3. 第61條 또는 第62條(第72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檢査를 拒否하거나 妨害한 때

4. 기타 이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한 때

③情報通信部長官은 다음 각호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無線局의 許可를 取消하거나 設備의 變更, 運用의 制限 또는 停止를 命할 수 있다.

1. 非常事態가 發生한 때
2. 混信防止상 必要한 때

④情報通信部長官은 施設者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施設者가 第5條第1項第5號에 該當하게 된 때
2.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竣工期限(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期限을 延長한 때에는 그 期限)이 경과한 후 30日이 經過할 때까지 竣工을 하지 아니한 때
3. 第10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違反하여 竣工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運用한 때
4. 不正한 方法으로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無線局의 許可 또는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은 때
5. 正當한 事由없이 繼續하여 6月以上 無線局의 運用을 休止한 때
6. 第74條의5의 規定에 의한 電波使用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한 때

⑤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境遇에는 그 效力喪失의 뜻을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한 때에는 그 事由를 施設者에게 文書로 通知하여야 한다.

⑥削 除

第67條의2(過徵金의 賦課) ①情報通信部長官은 第6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線局의 運用停止 또는 周波數등의 制限을 命하여야 하는 境遇로서 그 停止 또는 制限이 當該 無線局의 利用者에게 심한 不便을 주거나 公益을 害할 우려가 있는 境遇에는 그 停止 또는 制限에 갈음하여 2千만원 以下의 過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徵金을 賦課하는 違反行爲의 種別과 그 정도에 따른 過徵金의 金額 기타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第67條第5項 및 第75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徵金의 賦課·徵收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67條의3(型式檢定 또는 型式登錄의 取消) ①情報通信部長官은 第29條의 2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檢定에 合格한 者 또는 型式登錄을 한 者가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情報通信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無線設備의 機器에 대한 型式檢定의 合格 또는 型式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1. 虛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型式檢定에 合格하거나 型式登錄을 한 때
2. 型式檢定의 合格 또는 型式登錄후 生産된 機器가 型式檢定 合格基準 또는 型式登錄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한 때
3. 型式檢定 合格表示 또는 型式登錄表示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表示를 한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檢定 合格 또는 型式登錄이 取消된 者는 그 取消일부터 1년의 範圍내에서 情報通信部令이 定하는 期間내에는 동일한 種類의 機器에 대하여 型式檢定을 신청하거나 型式登錄을 할 수 없다.

③削 除

第67條의4(電磁波適合登錄의 取消) 第67條의3의 規定은 第29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磁波適合登錄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68條 削 除

第69條(無線從事者의 技術資格의 取消 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無線從事者가 다음 각호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情報通信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技術資格을 取消하거나 6月以上 2年以內의 期間을 정하여 業務從事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1. 이 法 또는 이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한 때
2. 虛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無線從事者의 資格을 取得한 때
3. 削 除
4. 削 除
5. 削 除

②削 除

③削 除

第70條(報告) 削 除

第71條(受信設備에 대한 監督) 削 除

第71條의2(無線局管理事業團) ①電波의 振興을 위한 事業과 電波에 관한 技術을 硏究·開發·普及하고 無線從事者의 福祉增進을 위한 事業과 政府로부터 委託받은 業務를 效率的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無線局管理事業團(이하"事業團"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②事業團은 法人으로 한다.

③事業團은 그 주된 事業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第71條의3(定款) ①事業團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주된 事務所 및 地域事務所에 관한 事項
4. 任員 및 職員에 관한 事項
5. 理事會에 관한 事項
6. 事業 및 그 執行에 관한 事項
7. 財産 및 會計에 관한 事項
8. 定款變更에 관한 事項
9. 公告의 方法에 관한 事項
10. 規約·規定의 制定 및 開閉에 관한 事項

②事業團은 그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情報通信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71條의4(任員) 削 除

第71條의5(委任規定) 事業團의 理事會의 構成 및 運營과 委任의 任期, 事業團의 運營 및 監督등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71條의6(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第75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受託業務를 取扱하는 事業團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71條의7 (民法의 準用) 事業團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71條의8(電波振興基本計劃) ①情報通信部長官은 電波에 관한 技術의 開發과 電波의 利用을 促進하기 위한 電波振興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②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電波를 利用하는 事業의 振興
2. 電波資源의 開發
3. 電波環境의 改善
4. 電波技術의 開發

5. 電波利用의 安全

6. 電波에 관한 專門人力의 養成

7. 電波利用秩序의 改善

8. 기타 電波의 振興에 關聯된 事項

第71條의9 (研究機關등의 育成) 情報通信部長官은 電波의 振興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電波를 研究하는 機關 및 團體를 指導 · 育成한다.

第71條의10 (電波利用技術의 開發) 情報通信部長官은 基本計劃에 의하여 중점적으로 開發하고자 하는 電波利用技術의 대상 및 基準을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定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71條의11 (周波數 利用公告) 情報通信部長官은 周波數帶를 調整하거나 새로운 周波數帶의 開發에 의하여 利用가능한 周波數를 確保한 경우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71條의12(韓國電波振興協會) ①電波資源의 效率的인 利用을 도모하고 電波環境의 變化에 대처함으로써 電波振興의 發展基盤을 造成하기 위하여 韓國電波振興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電波와 관련된 事業을 經營하는 者, 電波를 研究 · 開發하는 團體 또는 電氣通信事業法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事業者는 協會의 會員이 될 수 있다.

④協會의 事業 기타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⑤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中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適用한다.

第72條(高周波利用設備) ①다음의 設備를 하고자 하는 자는 情報通信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1. 電線路에 10키로헬즈以上의 高周波電流를 통하는 電信, 電話 기타 通信設備 (케이블搬送設備 및 平衡2線式 裸線搬送設備를 除外한다)

2. 無線設備 및 第1號의 設備以外의 設備로서 10키로헬즈以上의 高周波電流를 利用하는 것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신청이 있는 경우 情報通信部長官은 당해 신청이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에 適合하고, 當該 신청에 의한 周波數의 使用이 다른 通信에 妨害를 주지 아니한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

③第7條, 第9條, 第16條, 第20條, 第29條, 第61條 내지 第63條 및 第67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設備에 이를 準用한다.

第73條(無線設備의 機能의 保護) 削 除

第74條(無線方位測定裝置의 機能의 保護) ①情報通信部長官이 施設한 無線方位測定裝置의 設備場所에서 1키로미터以內의 地域에 電波를 妨害할 憂慮가 있는 建造物 또는 工作物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것을 建設하고자 하는 者는 情報通信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第1項의 無線方位測定裝置의 設置場所는 情報通信部長官이 公告한다. 다만, 通信保安상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設置場所를 通知하고 公告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74條의2 (電波障害防止區域의 指定) 削 除

第74條의3(高層建築物등에 관한 承認) 削 除

第74條의4(放送受信의 保護) ①通常的으로 受信이 可能한 放送의 受信을 障碍하는 建築物을 所有하고 있는 者는 當該 障碍를 除去할 수 있는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的으로 受信이 可能한 放送受信의 基準은 情報通信部令으로 定한다.

第74條의5(電波使用料) ①情報通信部長官은 無線局의 施設者에 대하여 當該 無線局에서 使用하는 電波에 대한 使用料(이하"電波使用料"라 한다)를 賦課·徵收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중 第1號 및 第2號에 該當하는 無線局의 施設者에 대하여는 이를 免除하고, 第3號에 該當하는 無線局의 施設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의 全部 또는 일부를 免除할 수 있다.

1. 國歌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開設한 無線局
2. 放送을 目的으로 하는 無線局중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無線局과 韓國放送廣告公社法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放送廣告物의 受託手數料를 納付하는 無線局
3.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公共福利를 增進시키기 위하여 開設한 無線局중 大統領令이 定하는 無線局

②電波使用料의 賦課基準 및 徵收方法등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電波使用料는 電波管理에 必要한 經費의 충당과 電波振興을 위하여 使用한다.

④情報通信部長官은 電波使用料를 納付하여야 할 者가 그 納付期限까지 이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滯納된 電波使用料에 대하여 100分의 5의 範圍안에서 情報通信部令이 定하는 率에 상당하는 金額을 加算金으로 徵收 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波使用料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을 滯納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第74條의6 (聽聞) 情報通信部長官은 다음 각호의 1에 該當하는 處分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實施하여야 하나다.

1. 第67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檢定의 合格 또는 型式登錄의 取消
2. 第67條의4의 規定에 의한 電磁波適合登錄의 取消
3. 第69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技術資格의 取消

第75條(手數料의 徵收) ①다음 각호의 1에 該當하는 者는 情報通信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1. 第6條, 第12條第1項, 第16條 또는 第72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 再許可 또는 變更許可의 신청을 하는 者
2. 第9條 · 第17條 · 第61條 또는 第72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는 者
3. 第29條의2의 規定에 의한 型式檢定 또는 型式登錄, 第29條의5의 規定에 의한 電磁波適合登錄을 신청하는 者
4.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無線從事者의 資格檢定을 신청하는 者
5. 許可證 再交付를 신청하는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는 公共福利를 增進시키기 위하여 必要한 경우에는 情報通信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減免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滯納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이 경우에는 手數料는 國稅를 除外한 다른 債權에 優先한다.

第75條의2 (準用規定) 電波管理業務의 用에 공하는 空中線과 그 附屬設備의 建設 또는 補修에 관하여는 電氣通信事業法 第33條의3, 第44條, 第51條, 第70條第3號 및 第73條第1號 · 第2號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道路法에 의한 道路, 河川法에 의한 河川 또는 公有水面管理法에 의한 指定港灣에 이를 建設하거나 補修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所管管理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75條의3 削 除

第75條의4(權限의 委任 · 委託) ①이 法에 의한 情報通信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 所屬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9條·第17條·第20條第1項, 第29條의2, 第29條의5, 第30條第1項·第2項, 第61條, 第62條, 第72條第3項 및 第75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團·協會 또는 電氣通信事業法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76條(罰則) ①다음 각호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1. 無線通信業務에 從事하는 者로서 第10條第2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遭難通信·緊急通信 또는 安全通信을 發信하여야 할 事態에 이르러 그 船長 또는 機長의 命令을 받고 遲滯없이 이를 發信하지 아니한다.
2. 無線通信業務에 從事하는 者로서 第52條第1項(第57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遭難通信의 取扱을 하지 아니하거나 遲延시킨 者
3. 遭難通信의 取扱을 妨害한 者

②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未遂犯은 이를 處罰한다.

第77條(罰則) ① 無線通信設備 또는 第72條第1項第1號의 通信設備에 의하여 大韓民國憲法 또는 政府를 暴力으로 破壞할 것을 主張하는 通信을 발한 者는 3年以上의 有期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②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③第1項의 犯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以上의 有期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第78條(罰則) ①電氣通信業務, 放送業務, 治安維持, 氣象業務, 電氣工給 또는 鐵道, 船舶, 航空機의 運行業務에 供하는 無線局의 無線設備를 損壞하거나 物品의 接續 기타의 方法으로 無線設備의 機能에 障害를 주어 無線通信을 妨害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 또는 3千만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이외의 無線設備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者에 대하여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2千만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79條(罰則) ①自己 또는 他人의 利益을 위하거나 他人에게 損害를 가할 目的으로 無線設備 또는 第72條第1項第1號의 通信設備에 의하여 虛僞의 通信을 發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만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선박조난 또는 航空機遭難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無線設備에 의하여 遭難通

信을 發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③無線通信業務에 從事하는 者가 第1項의 行爲를 한 때에는 5年二下의 懲役 또는 2千만원以下의 罰金에 處하고 第2項의 行爲를 한 때에는 1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第80條(罰則) 無線設備 또는 第72條第1項第1號의 通信設備에 의하여 淫亂한 通信을 發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만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81條 (罰則) 削 除

第82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만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없이 無線局을 開設하거나 無線局을 運用한 者
2. 第7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없이 高周波利用設備를 하거나 이를 運用한 者

第83條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300만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9條의2의 規定에 의한 型式檢定에 合格하지 아니하거나 型式登錄을 하지 아니한 機器 또는 第29條의5의 規定에 의한 電磁波適合登錄을 하지 아니한 機器를 販賣하거나 販賣를 目的으로 製作 · 陳列 · 保管 또는 運送한 者
2. 第60條第1項 · 第61條 또는 第62條(第72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調査 · 試驗 또는 檢査를 拒否하거나 妨害한 者
3. 第6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4. 第67條第2項 및 第3項(第72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運用이 停止된 無線局 또는 高周波利用設備를 운용한 者
5. 削 除
6.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建造物 또는 工作物을 建設한 者
7. 削 除

第84條 (過怠料) 다음 각호의 1에 該當하는 者는 300만원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4條第3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利用契約의 締結을 通報하지 아니한 者
2. 第17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無線設備를 運用한 者.
3. 第10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違反하여 無線局을 運用한 者
4. 削 除

5. 第67條第2項 또는 동조第3項(第72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運用制限에 違反한 者
6. 第72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高周波利用設備를 運用한 者

第85條 (過怠料) 다음 각호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00만원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30條 第3項 本文의 規定에 違反하여 無線局의 無線設備를 操作 또는 工事한 者
2. 削 除
3. 第49條第1項 本文 · 第2項(第57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하여 海岸局 또는 航空局등에서 電波를 發射한 者
4. 第50條 내지 第54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電波聽取 · 遭難通信 · 緊急通信 또는 安全通信에 관한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者
5. 削 除
6. 第69條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의 從事를 停止당한 후 無線設備의 操作 또는 工事를 한 者
7. 削 除

第86條 (過怠料) 다음 각호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00만원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4條第1項 단서 또는 第19條第3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者
2. 削 除

第86條의2(過怠料의 賦課 · 徵收) ①第84條 내지 第86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이 賦課 · 徵收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情報通信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 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87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 使用人 기타의 從

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82條 및 第83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處罰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각 本朝의 罰金刑을 科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可許可를 받은 無線局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可許可를 받은 無線局은 第7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境遇 可許可를 받은 때에 指定받은 無線局의 竣工期限은 第7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許可證에 記載된 竣工期限을 본다.

③(電波障害防止區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電波障害防止區域에 대하여는 第74條의2 및 第74條의3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 중앙전파관리소의 사무분장세칙

중앙전파관리소 훈령 제16호

중앙전파관리소의 사무분장 세칙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8. 11. 9

중앙전파관리소장

제1조(목적) 이세칙은 중앙전파관리소 각과 및 분소의 사무를 계별로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전파관리소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관리과) ① 관리과에 서무계 · 회계계 · 기획방호계 · 청사관리계 및 감시계를 둔다.

② 서무계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관인관수 · 회의 · 의전 및 보안업무(통신보안을 제외한다)

2. 직원의 인사 · 교육 · 제증명 및 정원관리

3. 직원의 제급여 및 연금

4. 문서의 수발 · 통제 및 보존

5.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부대사무

7. 기타 소내 다른 과 또는 과내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회계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무

2. 기업회계 사무 및 유가증권의 출납관리

3. 국유재산 관리 및 유지보수

4. 물품 및 고정자산 관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부대사무

④ 기획방호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2. 사업현황 및 통계의 종합

3. 비상계획

4. 시설방호계획의 수립 및 집행

5. 예비군 · 민방위 및 청원경찰의 운영관리

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예산편성 · 배정 및 운영지침의 설정

8.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종합 및 추진상황보고

9. 분소청사에 대한 투자사업총괄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부대사무

⑤ 청사관리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 및 그 부대시설 관리와 조정

2. 냉 · 난방시설 운용 및 유지 · 보수

3. 직원의 보건후생

4. 차량관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부대사무

⑥ 감사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 감사

2. 범죄 · 비위 사고의 예방 및 조사

3. 소송 · 신고 및 진정의 조사 처리
4. 직장의 규율 감사 및 정화 업무
5. 직원의 복무 관리 및 제안
6. 민원 사무
7. 제1호 내지 제6호의 부대 사무

제4조(감시1과) ① 감시 1과에 관리계 · 조사계 · 통신보안계, 전산계 및 국제 업무계를 둔다.

② 관리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감시업무의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2. 국내전파 위규처리
3. 전파감시업무의 심사분석 및 통계관리
4. 무선국의 운용관리
5. 이동전파감시 활동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삭제)
7. 전파감시업무 지도 및 교육
8. 비축물자 운용관리
9. 전파이용에 대한 홍보업무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부대사무
11. 기타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조사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에 관한 자료조사계의 수립 · 조정 및 집행
2. 혼신조사계획 수립 · 조정 및 집행
3. 불법무선국의 조사, 단속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집행(고주파 이용설비를 포함한다)
4. 고층건물등에 의한 방송수신장에 발생에 대한 조사 및 통보
5. 무선설비 형식검정 · 등록 또는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에 대한 조사 · 단속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집행
6. 사법경찰관리 지명서 및 조사관증 발급에 관한 사항
7. 전파범죄의 수사 및 사건송치
8. 이동방탐장비 및 혼신조사장비의 운용관리
9. 제8호의 부대사무

④ 통신보안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신보안업무의 세부집행계획 수립 · 시행 및 심사분석
2. 무선국 통신보안 준수지도 계획 수립 및 집행
3. 취약무선통신망 전파측정
4. 통신보안자재의 제작 · 관리 및 사용 승인
5. 통신보안교육 지도 · 감독
6. 통신보안 위규처리
7. 통신보안장비용 암호프로그램 관리
8. 무선국 호출명칭표 제작 및 관리
9. 제1호 내지 제8호의 부대 사무

⑤ 전산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산시설 및 데이타회선의 운용관리
2. 업무의 전산화 및 사무자동화
3. 전파감시에 관한 전산프로그램 관리
4. 전산교육 및 전산경진대회 계획수립 및 집행
5. 주파수등록원부 기재사항의 변경 · 추가 · 삭제등에 관한 사항
6. 제1호 및 제5호의 부대사무

⑥ 국제업무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전파감시계획 수립 · 조정 및 집행
2. 외래전파자료조사계획 수립 · 조정
3. 국제혼신조사계획 수립 · 조정 및 위규처리
4. 외국전파감시기관의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
5. 국제전파에 관한 자료관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부대사무

제5조(감시2과) ① 감시2과에 관리계 · 분석계 및 통제계를 둔다.

② 관리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특별전파감시 총괄 계획 수립
2. 특별전파감시 임무조정
3. 특별전파감시 훈련계획 및 집행
4. 특별전파감시 훈련계획 및 집행
5. 정보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부대사무

7. 기타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분석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특별전파감시 운용 계획 수립

2. 특별전파감시 수집 및 방탐운용 총괄

3. 특별전파감시 자료수집 및 조사분석

4. 이동수집 및 이동방탐업무 수행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부대사무

④ 통제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특별전파감시장비 발전계획 수립

2. 특별전파감시 기술에 관한 조사

3. 특별전파감시 장비 운용관리

4, 무선방향탐지기능 보호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부대사무

제6조(기술과) ① 기술과에 기술1계 · 기술2계 · 보전계 및 동력계를 둔다.

② 기술1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전파감시시설의 설치 및 건설

2. 일반전파감시장비의 수급관리

3. 전파감시장비의 기술규격 제정 및 관리

4. 일반전파감시설의 건설에 관한 기술조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부대사무

6. 기타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기술2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특별전파감시시설과 방탐시설의 설치 및 건설

2. 특별전파감시시설 · 장비의 수급관리

3. 유지보수용 및 검사용 측정장비의 수급관리

4, 특별전파감시시설의 건설에 관한 기술조사

5. 제1호 및 제4호의 부대사무

④ 보전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감시시설 · 장비의 유지보수계획수립, 집행 및 조정

2. 전파감시시설 보수센타의 운용

3. 무선국검 사용 측정기기 유지보수의 지원
4. 전파감시유지보수용품의 수급관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부대사무
⑤ 동력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원설비 건설계획 수립 및 집행
2. 전원설비의 수급관리
3. 전원설비 운용 및 관리
4. 전원설비 유지보수계획 수립 및 조정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부대사무
제7조(분소) ① 분소에 두는 계 및 분실은 별표1과 같다.
② (관리계)관리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인사, 보안, 관인관수 및 사항을 분장한다.
2. 청사관리 및 시설방호
3. 도급경비 출납사무
4. 차량의 관리
5. 보안자제 관리 (서울분소 및 부산분소를 제외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부대 사무
7. 기타 분소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감시계) 감시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 감시
2. 전파 위규 처리
3. 전파의 측정 업무
4. 무선국 통신보안의 준수지도 · 관리(광주분소, 강릉분소, 제주분소, 대전분소, 대구분소 및 전주분소에 한한다.)
5. 무선종사자 통신보안교육의 지도 · 관리(광주분소, 강릉분소, 제주분소, 대전분소, 대구분소 및 전주분소에 한한다)
6. 국제전파감시 및 외래전파자료조사 (광주분소, 강릉분소, 당진분소 및 제주분소에 한한다)
7. 비축물자에 운용관리(서울분소, 부산분소, 광주분소, 강릉분소 및 대전분소에 한한다)
8. 제1호 내지 제7호의 부대 사무

④ (국제감시계) 국제감시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전파감시
2. 외래전파자료조사
3. 국제혼신조사 및 처리
4. (삭제)
5. 국제전파감시 자료관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부대 사무

⑤ (조사계) 조사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 및 국제 전파의 혼신 조사 및 제거
2. 불법무선국의 단속(고주파이용설비를 포함한다) 및 조사
3. 전파 범죄 수사 및 사건 송치
4. 고층 건축물 등에 의한 방송수신장애 조사 및 처리
5. 무선설비 형식검정 · 등록 또는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지 아니한 기기에 대한 조사 및 단속
6. 조사장비의 운용 및 관리
7. 전파에 관한 자료 조사
8. 제1호 내지 제7호의 부대 사무

⑥ (조사1계) 조사1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불법무선국의 단속(고주파이용설비를 포함한다) 및 조사
2. 전파 범죄 수사 및 사건 송치
3. 무선설비 형식검정 · 등록 또는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지 아니한 기기에 대한 조사 및 단속
4. 조사 장비의 운용 및 관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부대 사무

⑦ (조사2계) 조사2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 및 국제 전파의 혼신 조사 및 제거
2. 전파 범죄 수사
3. 고층건축물 등에 의한 방송수신장애 조사 및 처리
4. 전파에 관한 자료 조사
5. 조사 장비의 운용 및 관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부대 사무

⑧ (통신보안계) 통신보안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선국 통신보안의 준수지도 · 관리
2. 무선종사자 통신보안교육의 지도 · 관리
3. 통신보안자재의 관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대 사무

⑨ (분석계) 분석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특별전파감시
2. 특별전파 이동수집업무(제주분소를 제외한다)
3. 수집 전산망의 운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대 사무

⑩ (통제계) 통제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정방탐시설의 운용
2. 방탐정확성조사
3. 특별전파 이동방탐업무 (제주분소를 제외한다)
4. 무선방향탐지 기능보호지역내의 건조물등 건설승인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부대 사무

⑪(기술계) 기술계는 대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 감시 시설의 유지 보수
2. 전파 감시 시설용품의 수급 관리
3. 제1호 내지 제2호의 부대 사무

⑫(분실) 분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및 방호 관리와 청사 관리(청사 보유 분실에 한한다)
2. 국내 전파 감시
3. 전파위규처리(시정, 경고)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대 사무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세칙폐지) 관리 12301-2060(97.11.10)로 발령한 중앙전파관리소분소의 계 및 분실의 사무분장세칙은 이 세칙의 발령한 날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분소별 계 · 분실의 명칭

분 소 명	계 명	분 실 명
서울분소	관리계, 감시계, 국제감시계, 조사1계. 조사2계, 통신보안계, 기술계	서울분실, 인천분실
부산분소	관리계, 감시계, 국제감시계, 조사1계. 조사2계, 통신보안계, 기술계	부산분실
광주분소	관리계, 감시계,조사계, 분석계, 통제계, 기술계	광주분실
강릉분소	관리계, 감시계,조사계, 분석계, 통제계, 기술계	강릉분실, 속초분실 원주분실
당진분소	관리계, 감시계, 통제계, 기술계	
제주분소	관리계, 감시계,조사계. 분석계, 통제계, 기술계	
울산분소	관리계, 분석계, 통제계, 기술계	
대전분소	관리계, 감시계, 조사계, 기술계	청주분실
대구분소	관리계, 감시계, 조사계, 기술계	
전주분소	관리계, 감시계, 조사계, 기술계	

□ 조직 변천사

◇1947년 5월 31일 (부달제 제71호:체신부, 전무국, 광장분실 설치)
전무국 무선과 분실을 설치하고 1947년 6월 1일부터 사무를 개시함



◇1948년 11월 20일 (대통령령 제36호)
체신부에 전파국 신설
◇1949년 11월 22일 (대통령령 제217호)
전파감시국 직제공포
◇1950년 1월 10일 (서울전파감시국)
◇1950년 1월 16일 (부산전파감시국)
◇1950년 1월 18일 (광주전파감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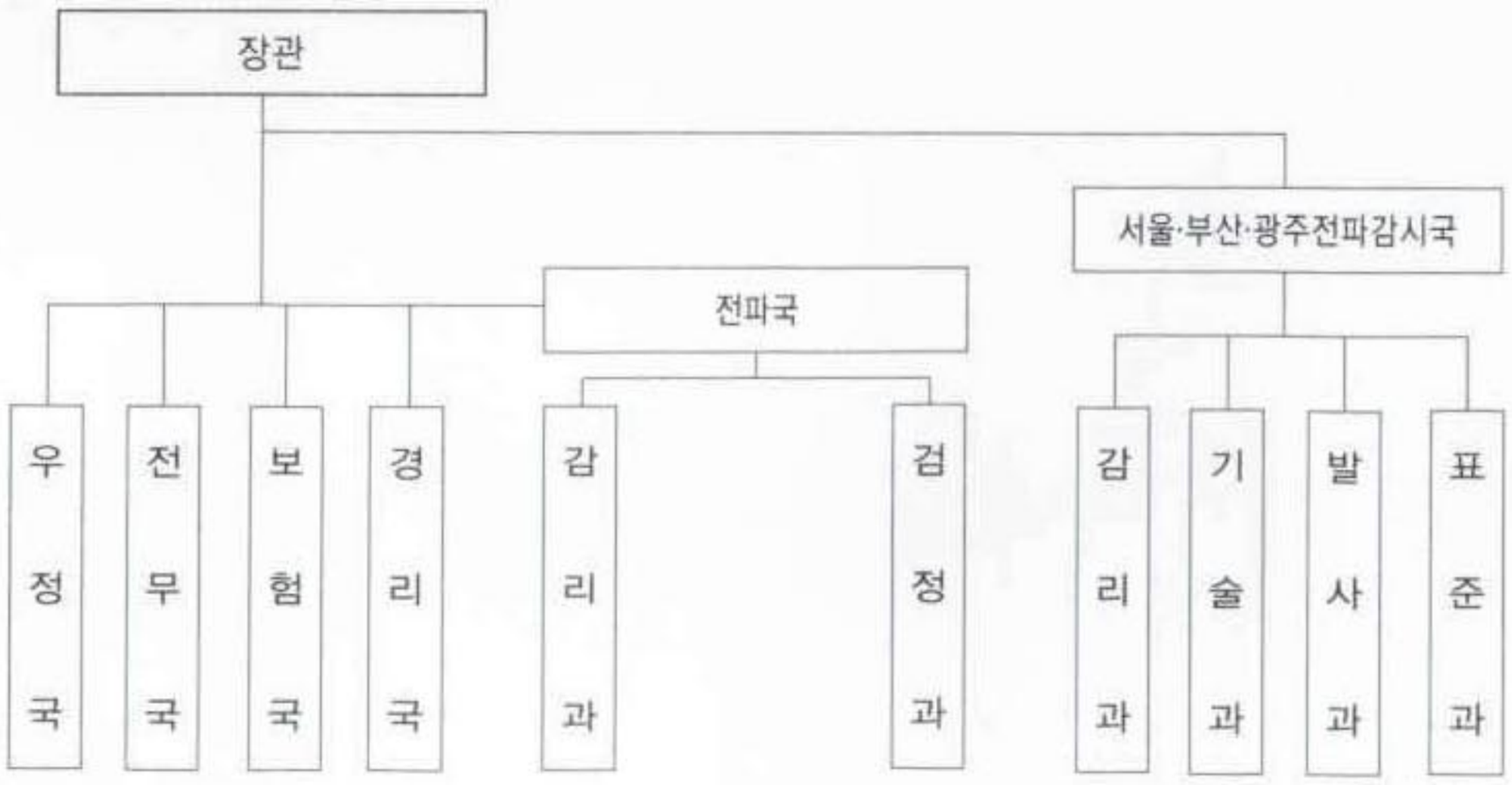

※발사과, 표준과는 서울전파감시국 한

◇1950년 3월 21일 (대통령령 제314호)
전파국 검정과를 업무과로 개칭하고 기술과 신설
◇1955년 2월 17일 (대통령령 제1006호)
전파국을 전무국에 통합하여 전파감시과 신설





◇1961년 10월 2일 (각령 제209호)
전파관리국 직제제정
서울전파감시국 발사과를 표준과에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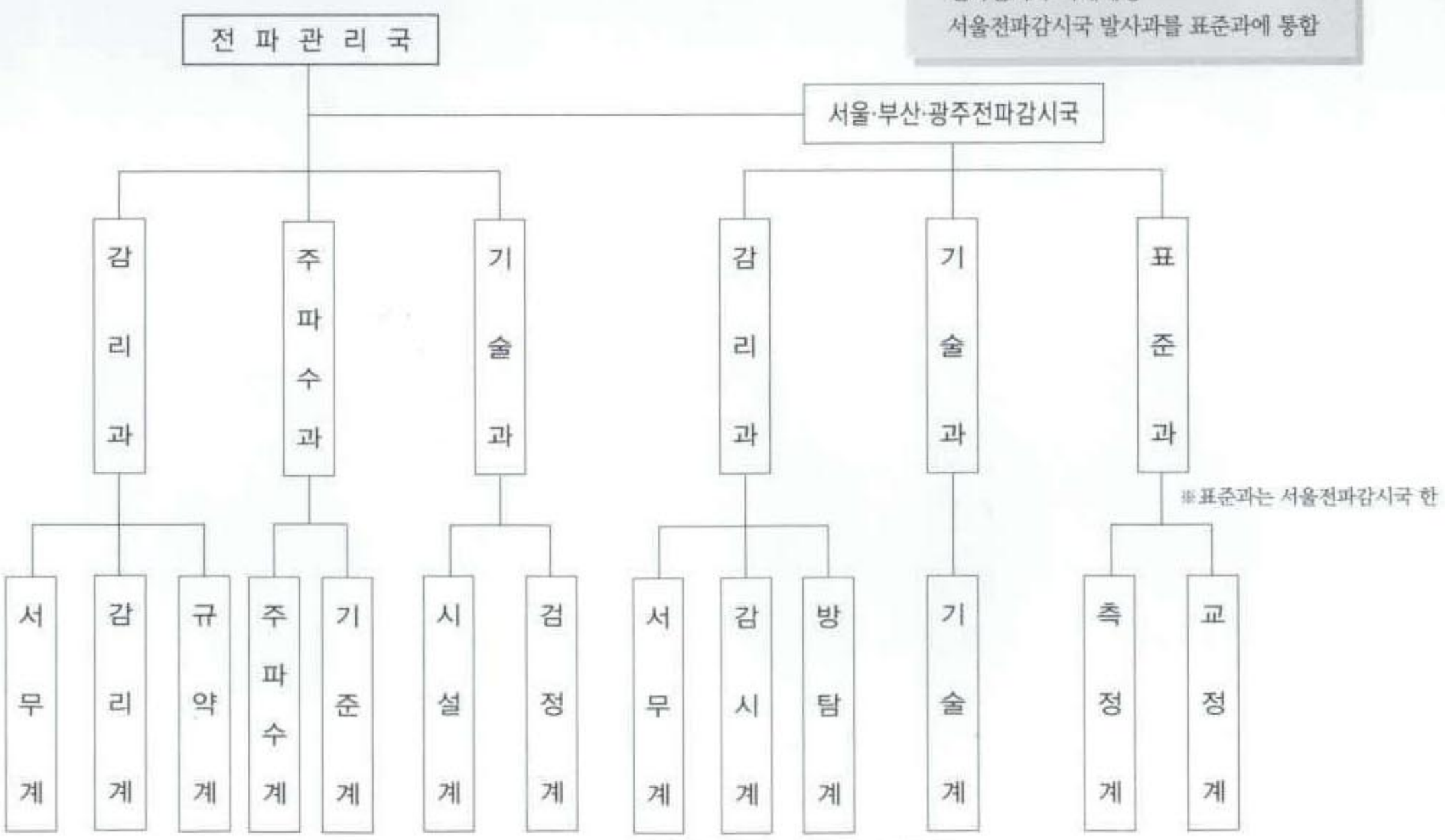

◇1964년 10월 23일 (대통령령 제1965호)
강릉전파감시국 신설
◇1966년 2월 5일 (대통령령 제2397호)
전파연구소 신설
◇1966년 4월 1일 (훈령 제11호)
서울전파감시국 기술과에 검측계 신설
부산 · 강릉전파감시국에 방탐계 신설



※검측계는 서울전파감시국 한.

◇1968년 8월 5일 (훈령 제18호)
전파감시국에 분실 신설(서울 · 인천 · 부산 · 여수)
◇1968년 11월 25일 (훈령 제19호)
부산 · 광주 · 강릉전파감시국의 기술과에 검측계 신설
◇1968년 12월 19일 (대통령령 제3673호)
전파관리국에 감시업무과 신설
◇1970년 1월 12일 (훈령 제26호)
전파감시국에 분실 신설(속초 ·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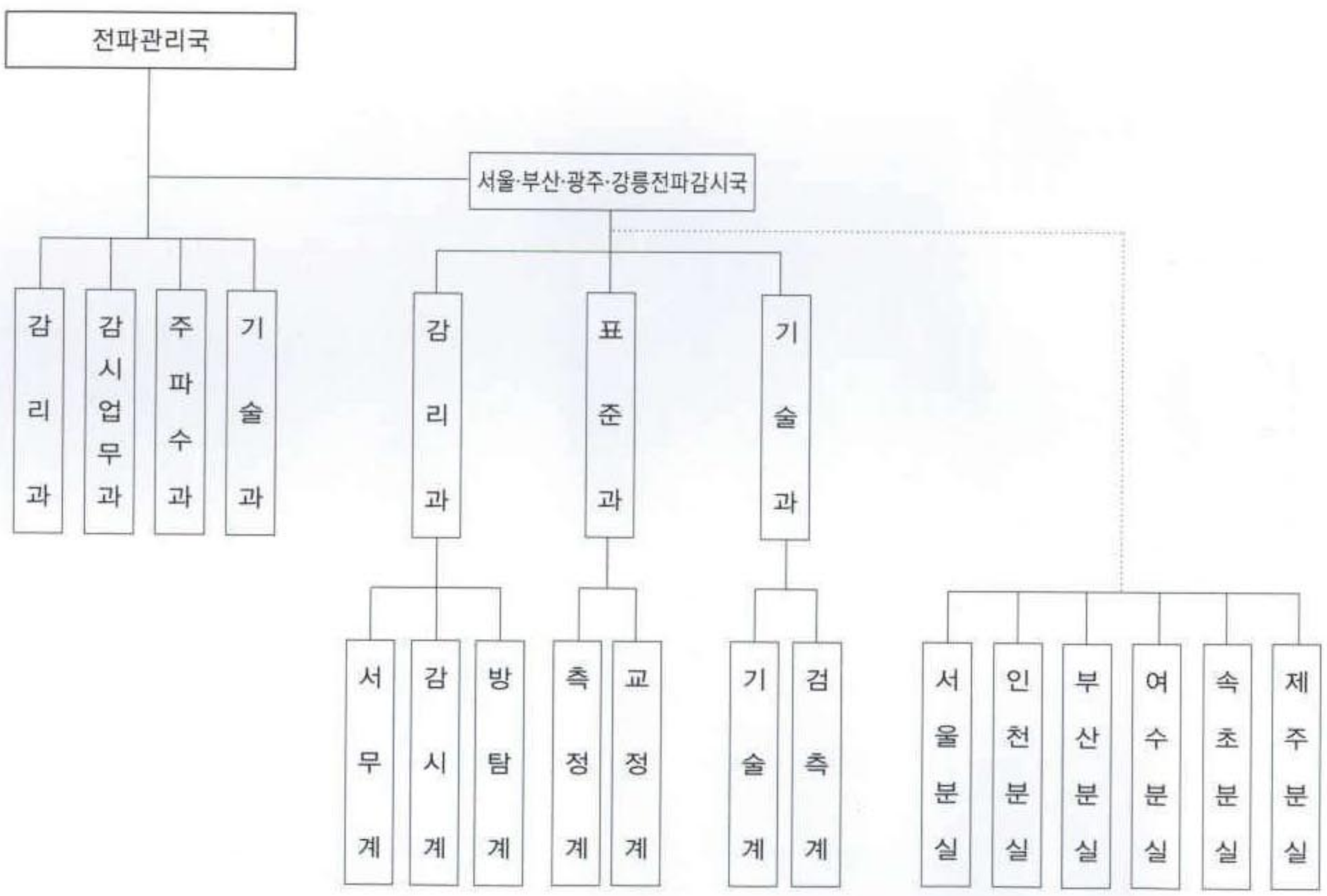

◇1970년 1월 31일 (훈령 제27호)
전파감시국 감리과의 감시계와 방탐계를 제1계 및 제 2계로 개정
◇1970년 3월 26일 (훈령 제31호)
서울 · 부산 · 광주 · 강릉전파감시국 분실명칭 개정
◇1970년 11월 19일 (훈령 제36호)
전파감시국 분실 신설(합덕 · 홍해)
◇1971년 12월 24일 (훈령 제40호)
전파감시국 분실 신설(사천)
◇1973년 3월 13일 (대통령령 제6557호)
전파관리국 감시업무과를 감시과로 개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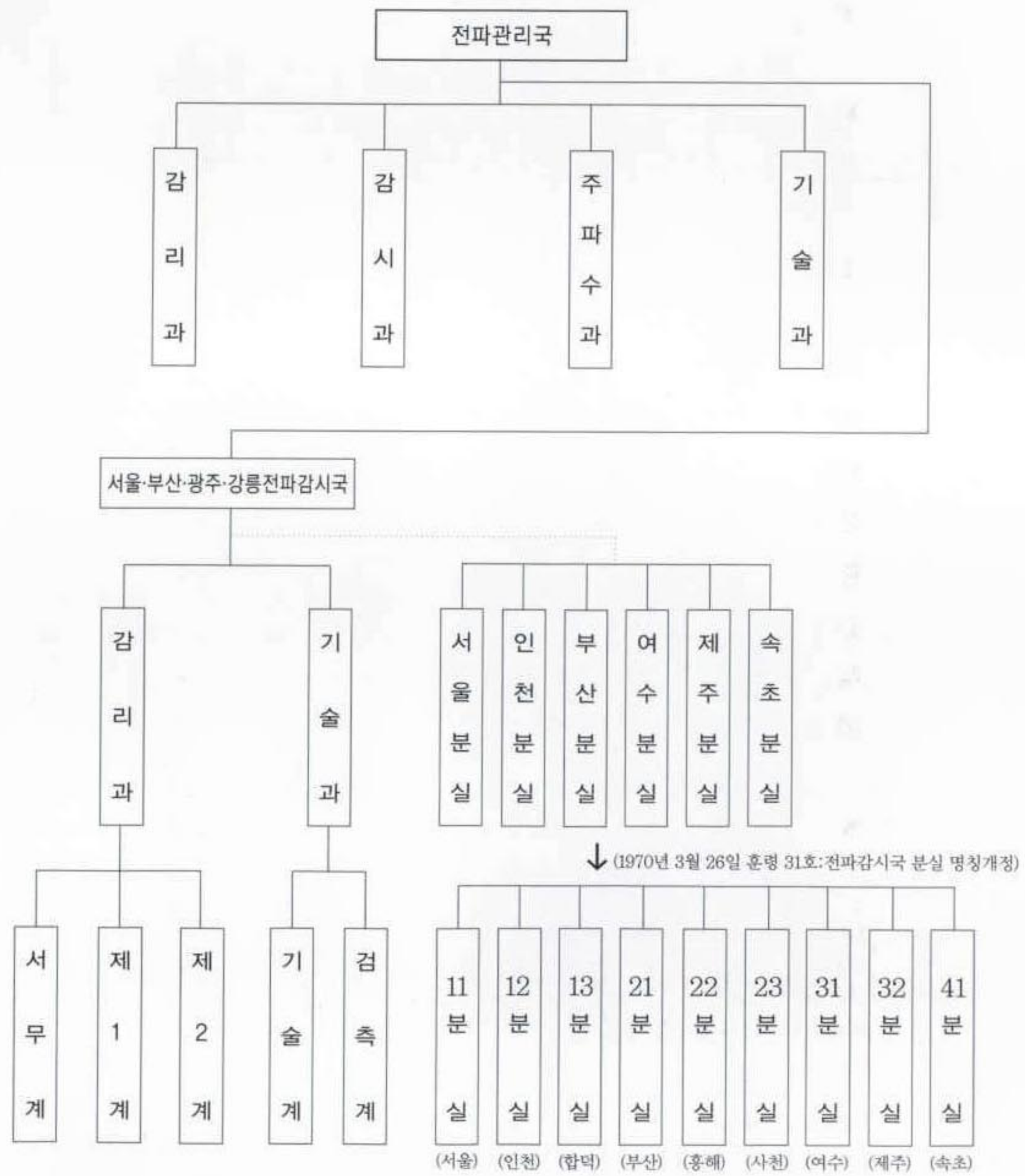

◇1974년 4월 1일 (대통령령 제7101호)
전파감시국의 감리과를 관리과로 개칭하고 감시과를 신설
◇1974년 9월 25일 (대통령령 제7260호)
전파관리국에 감리과를 관리과로 개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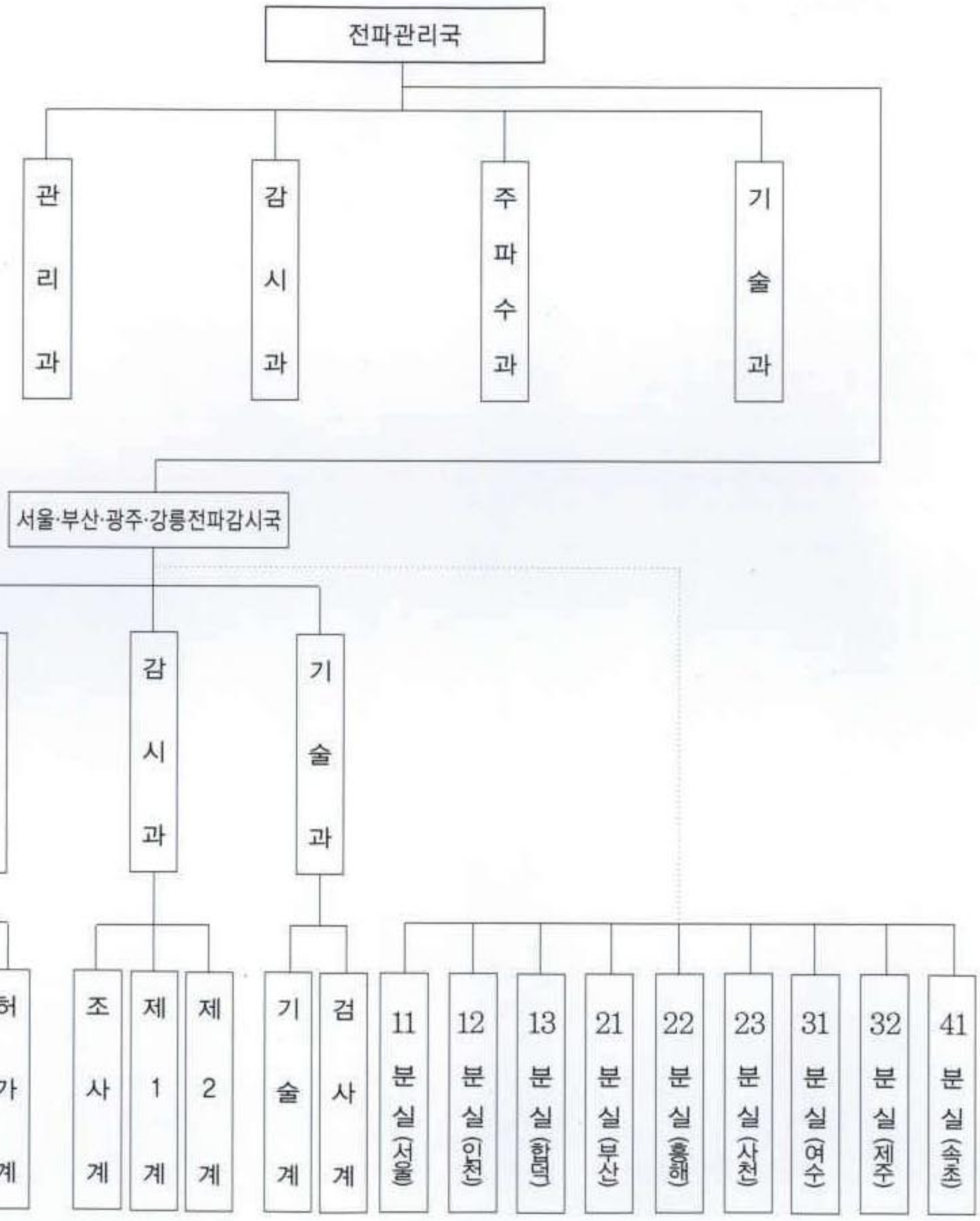

◇1974년 5월 20일 (훈령 제59호)
전파감시국의 분실 폐지(인천 · 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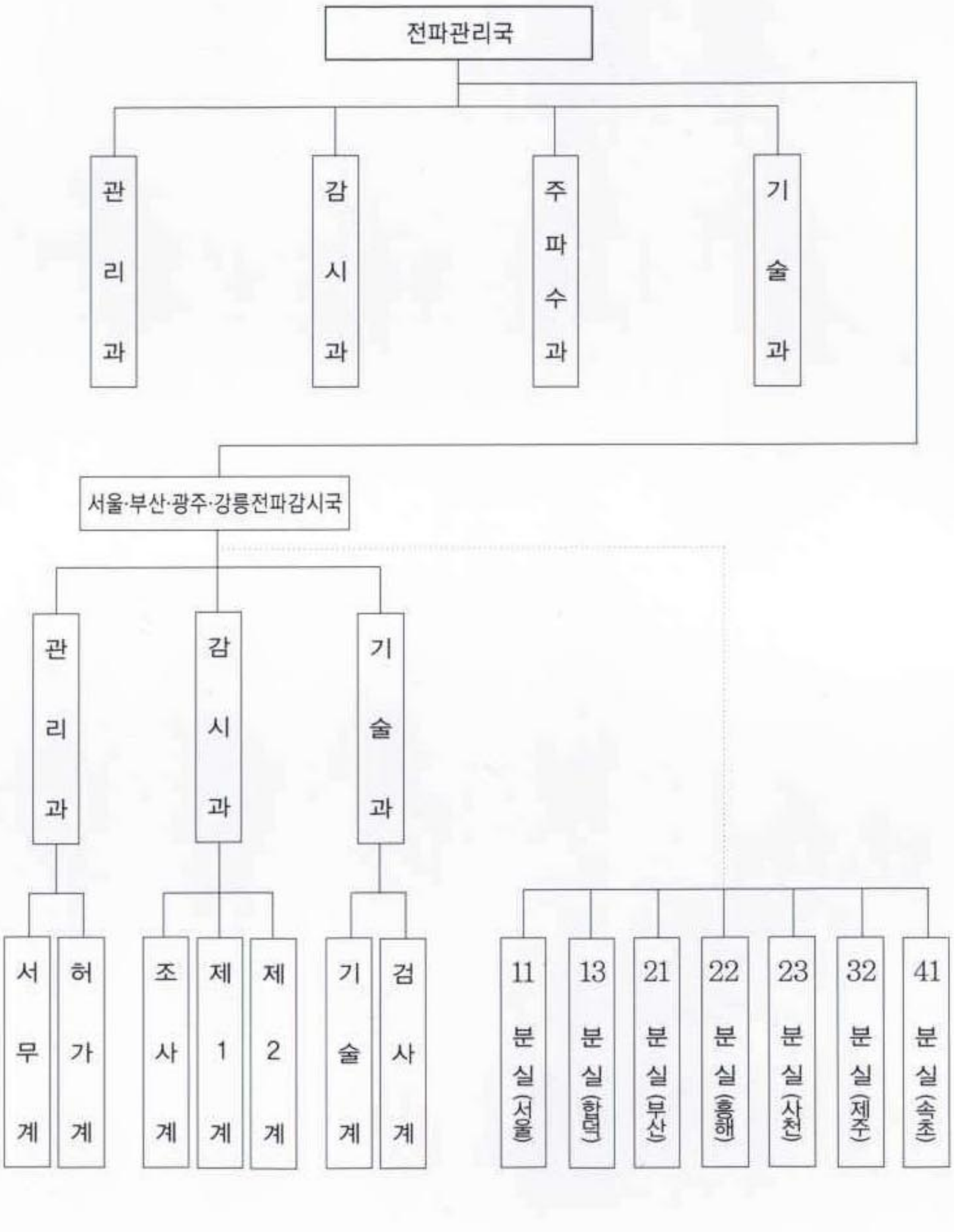

◇1976년 2월 6일 (대통령령 제7978호)
전파관리국 각과의 계편제를 담당제로 개편
◇1978년 7월 27일 (대통령령 제9108호)
전파관리국에 총무과 신설
◇1979년 9월 7일 (대통령령 제9601호)
전파관리국에 방송과 신설
전파통제소 신설
◇1979년 12월 22일 (전파관리국 훈령 제93호)
방송과에 방송업무담당, 방송기술담당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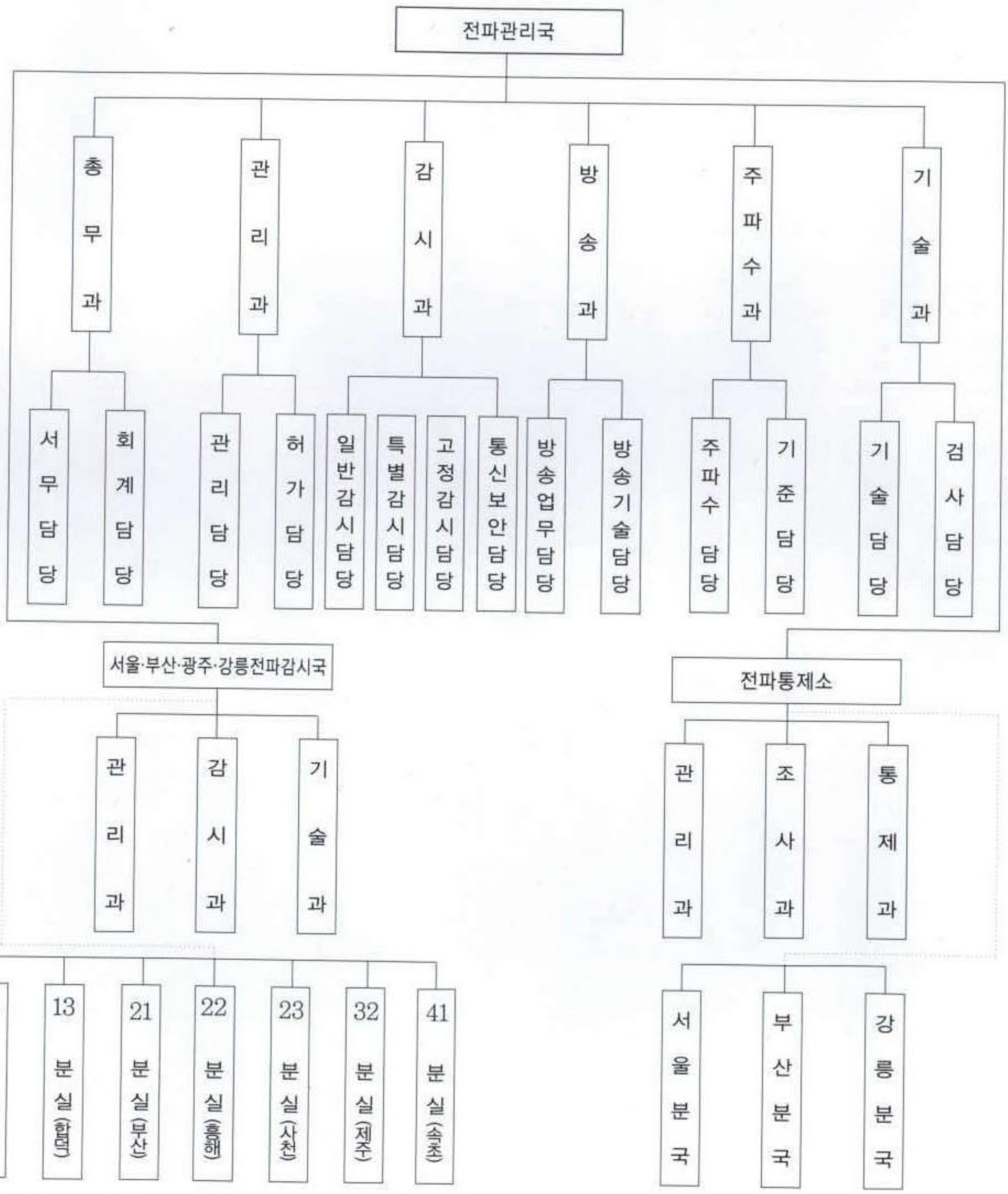

◇1980년 8월 26일 (대통령령 제10008호)
전파관리국 감시과를 감리과로 개칭
전파감시국을 전파감리국으로 개칭
전파통제소 광주분국 신설
◇1980년 12월 24일 (전파관리국 훈령 제104호)
전파관리국 감리과에 국제감시담당 신설
◇1981년 12월 31일
전파관리국 총무과 폐지
관리과를 전파기획과로 개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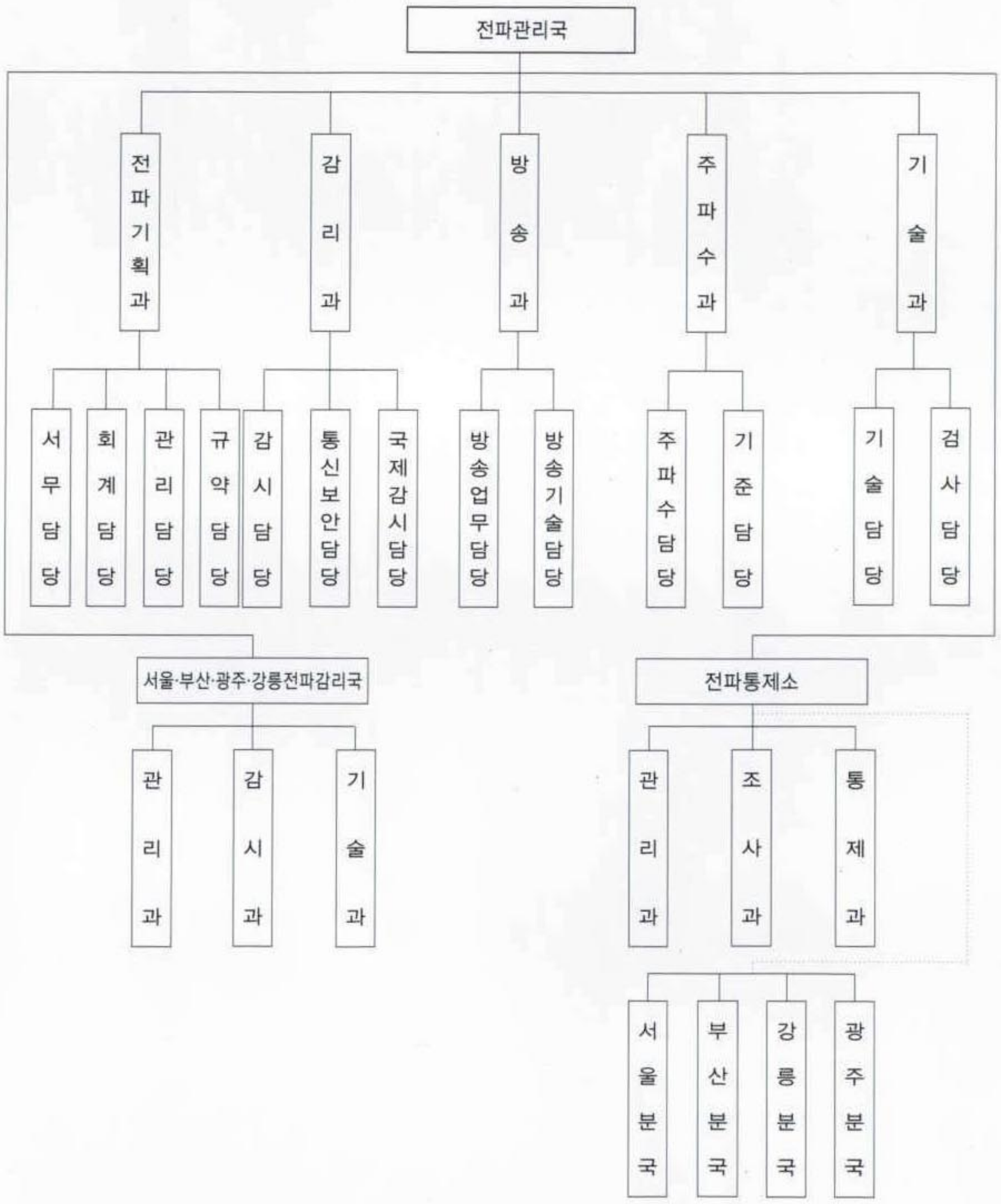

◇1981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1007호 전파관서 직제 개정)
전파통제소를 전파통제국으로 개칭
◇1981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1008호 체신관서 직제 개정)
전파감리국을 체신청장(서울 · 부산 · 전남 · 강원)직속하에 둔다.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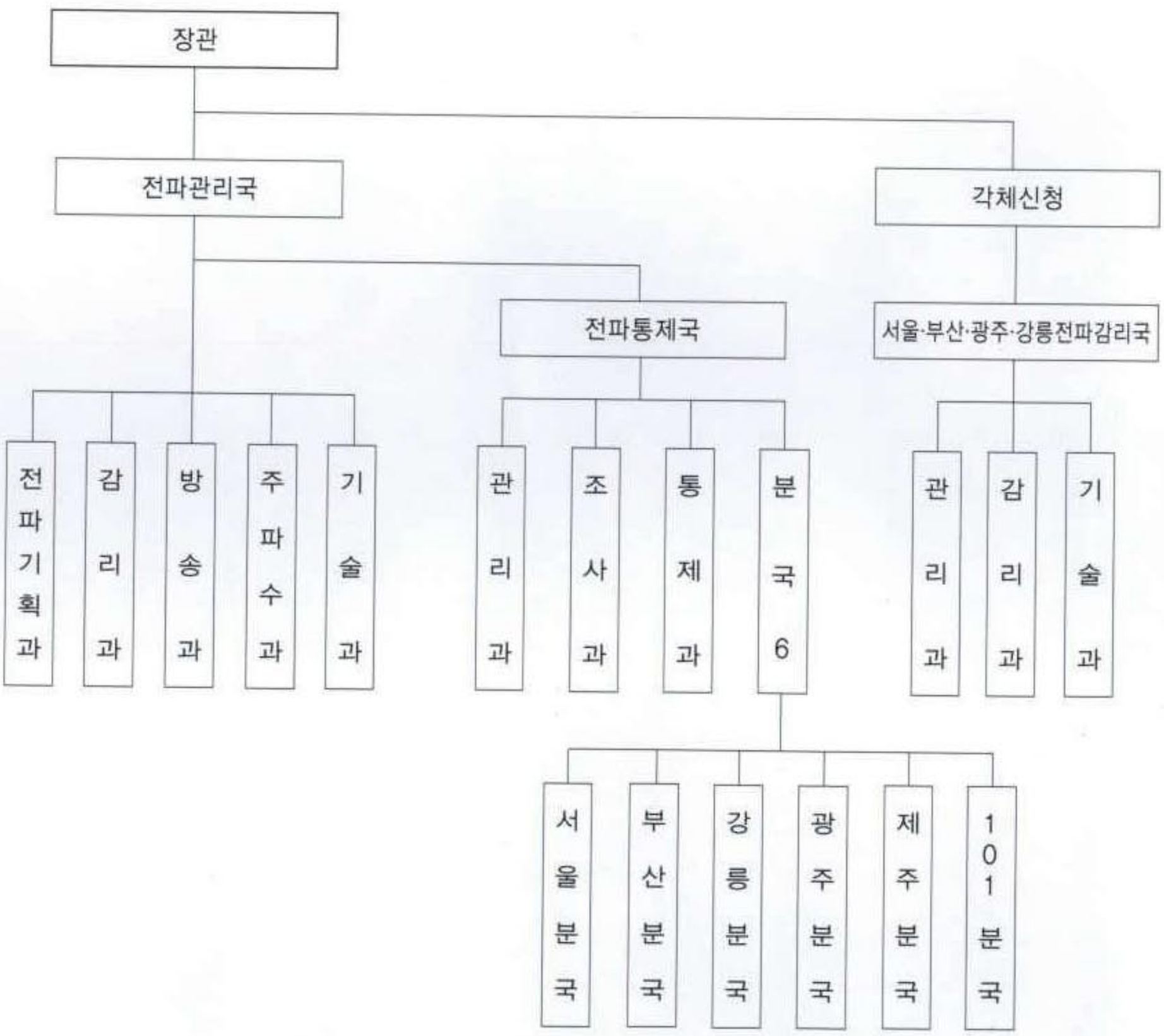

◇1983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1320호 전파관서 직제 개정)
전파통제국과 지방체신청 소속 4개 전파감리국 기능을 통합하여 중앙전파감시소 신설
전파통제국 제101 분국 폐지(한국전기통신공사 이관)
◇1986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2315호 전파관서 직제 개정)
중앙전파감시소 기술과 신설
◇1987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017호 전파관서 직제 개정)
제71분소 신설
◇1987년 12월 15일 (대통령령 제12315호 전파관서 직제 개정)
중앙전파감시소를 중앙전파관리소로 개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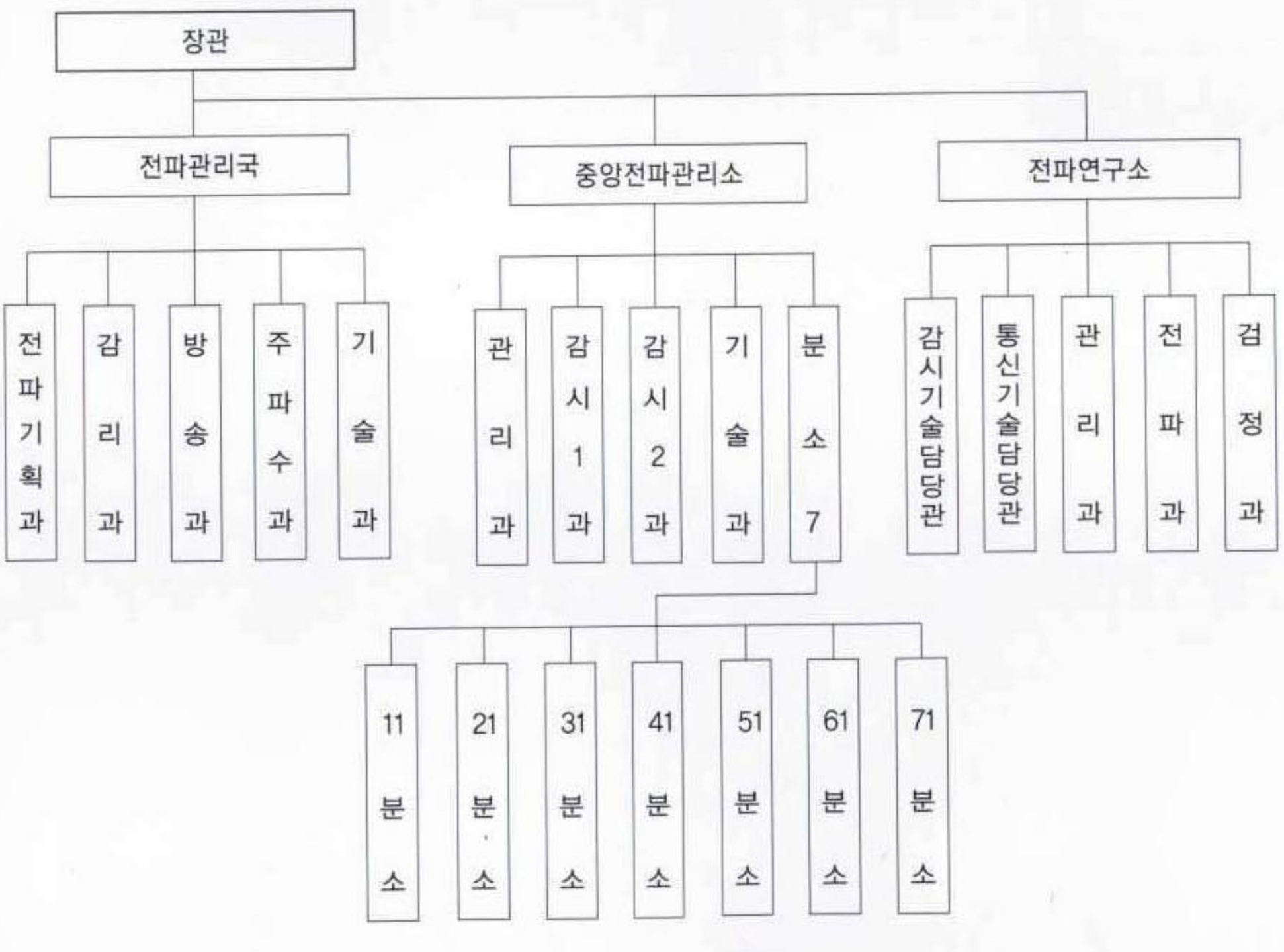

◇1989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2886호 전파관서 직제 개정)
전파관리국에 전파심의관(3급) 신설
통신, 위성방송 확보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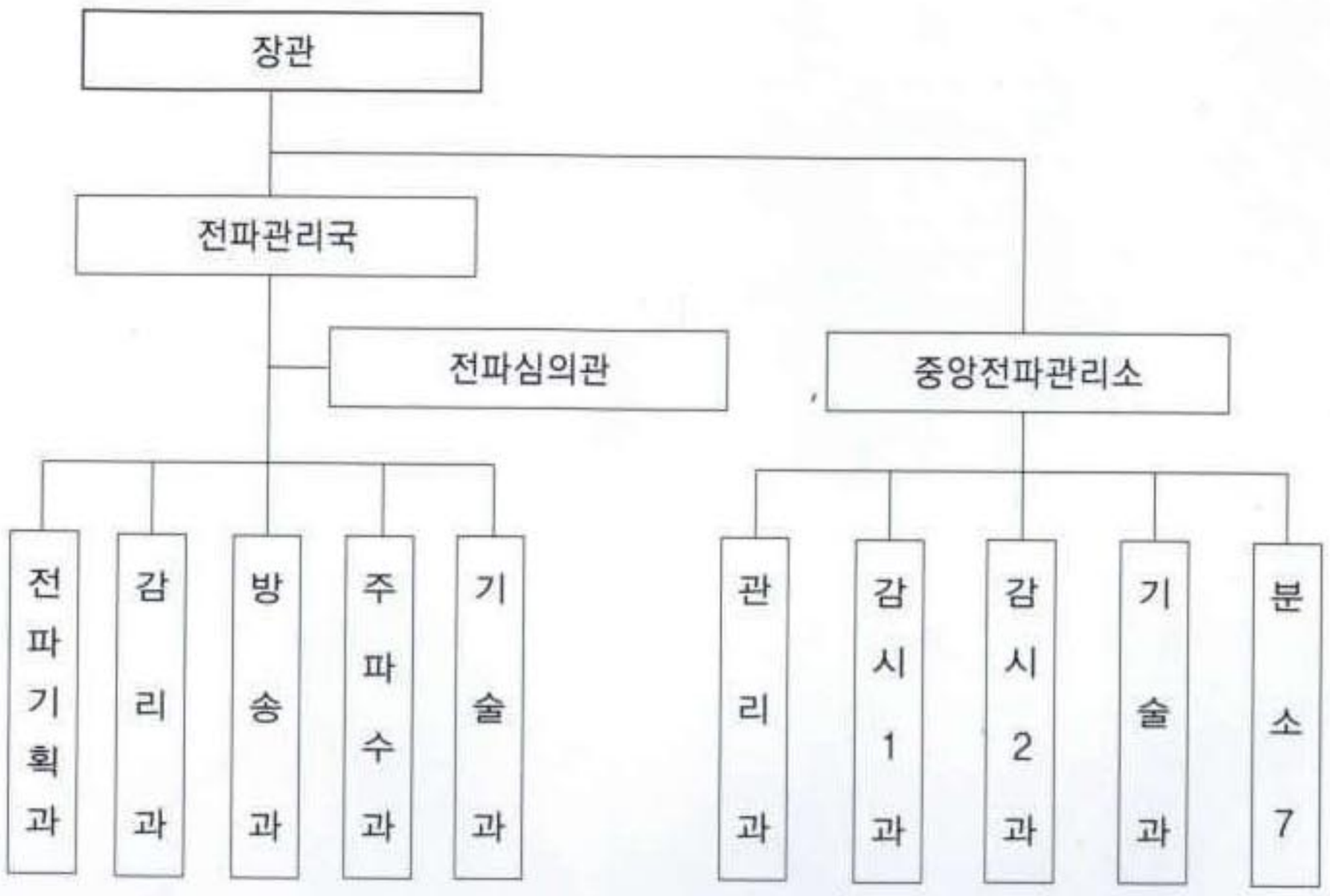

◇1990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227호 체신부 직제 개정)
차관직속으로 통신위성계획관(2급) 신설하여 전파관리국
전파심의관 업무를 통신위성계획관으로 이관하고 전파심의관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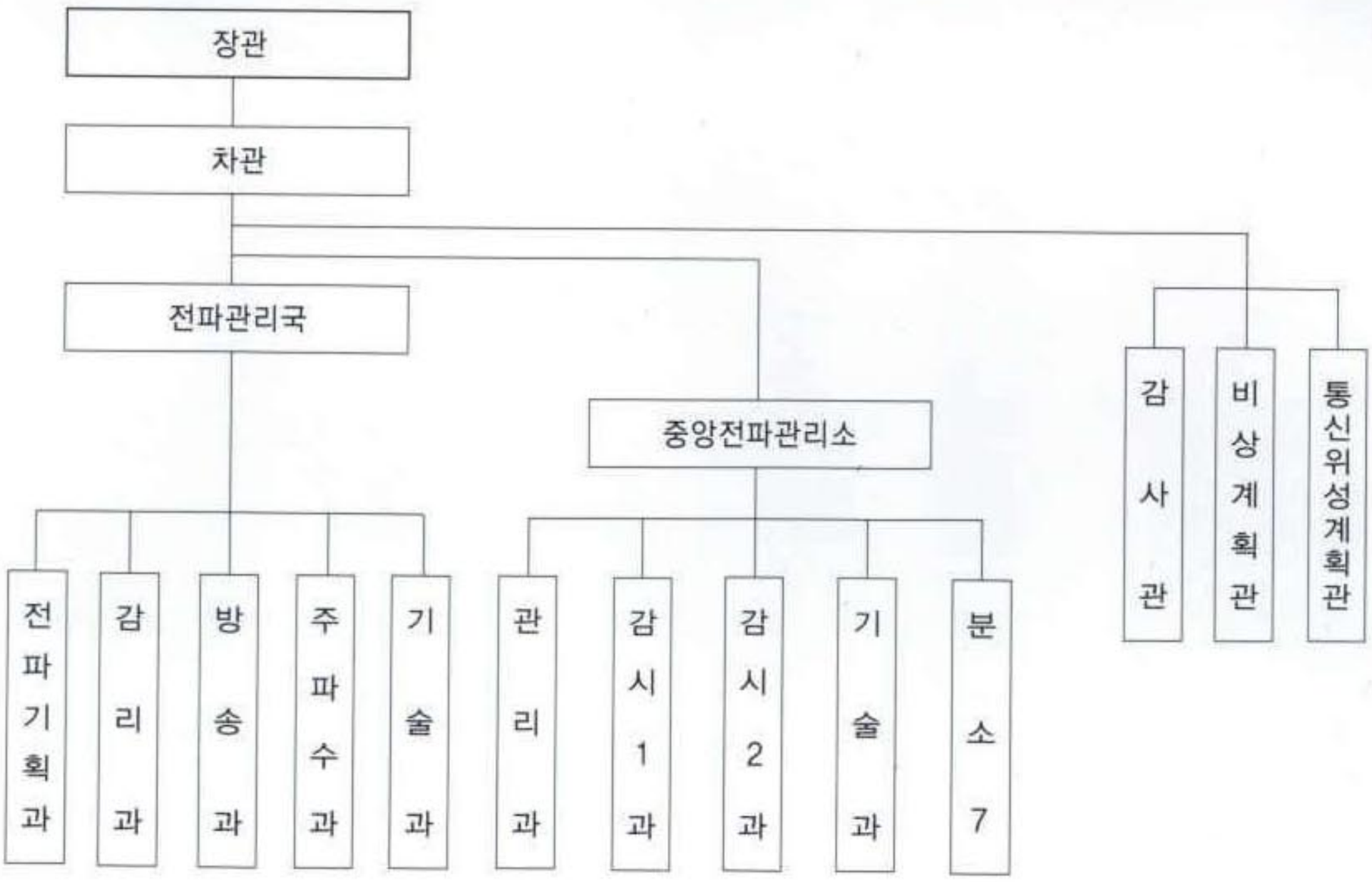

◇1991년 11월 5일 (대통령령 제13497호 체신부 직제 개정)
차관직속 통신위성계획관(2급), 통신정책국(2급)을 폐지하고 통신정책실(1급) 신설
통신정책실 통신정책심의관, 통신기술심의관, 통신위성과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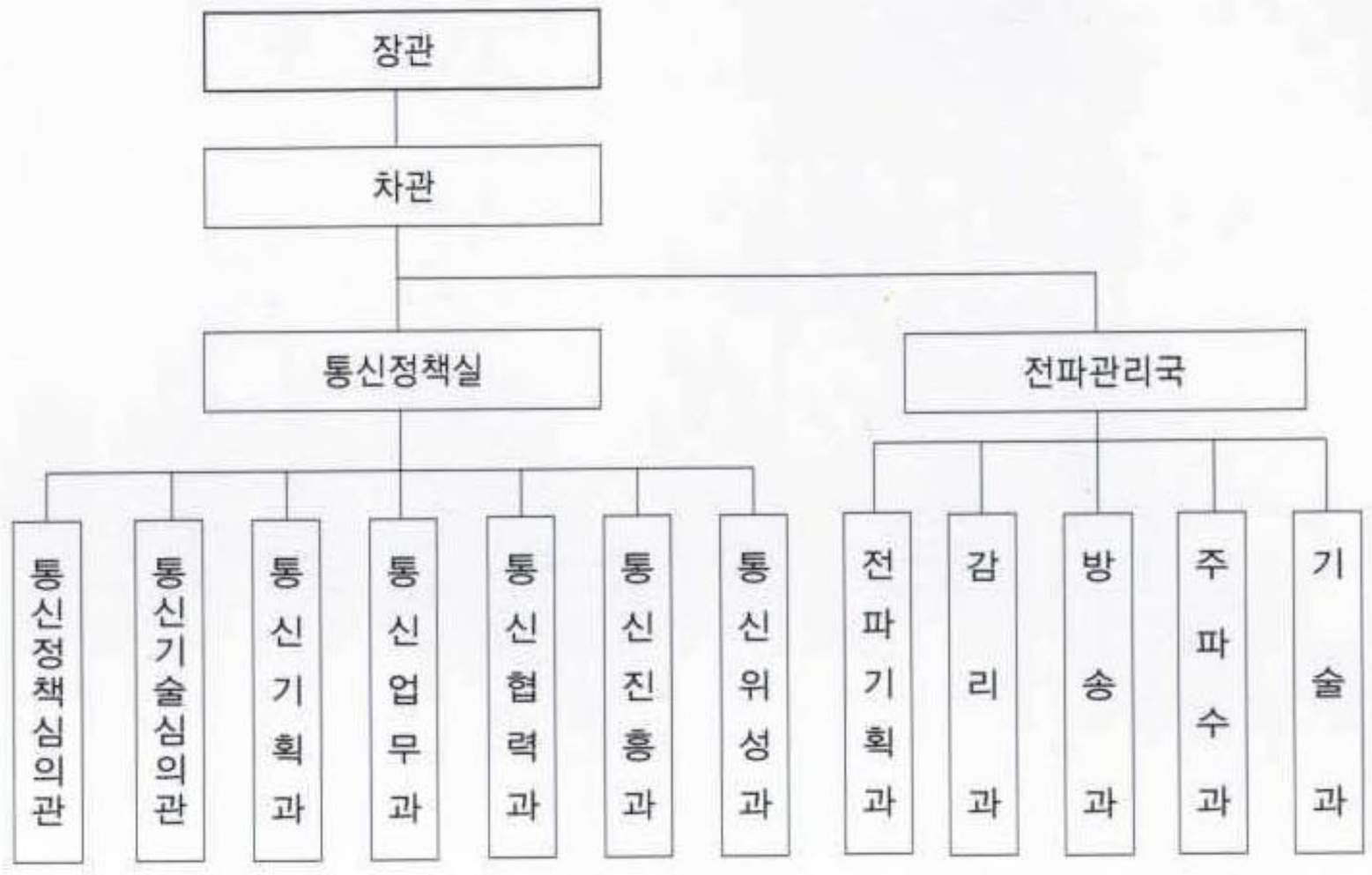

◇1992년 11월 23일 (대통령령 제13763호 전파관서 직제 개정)
전파감시소 대전분소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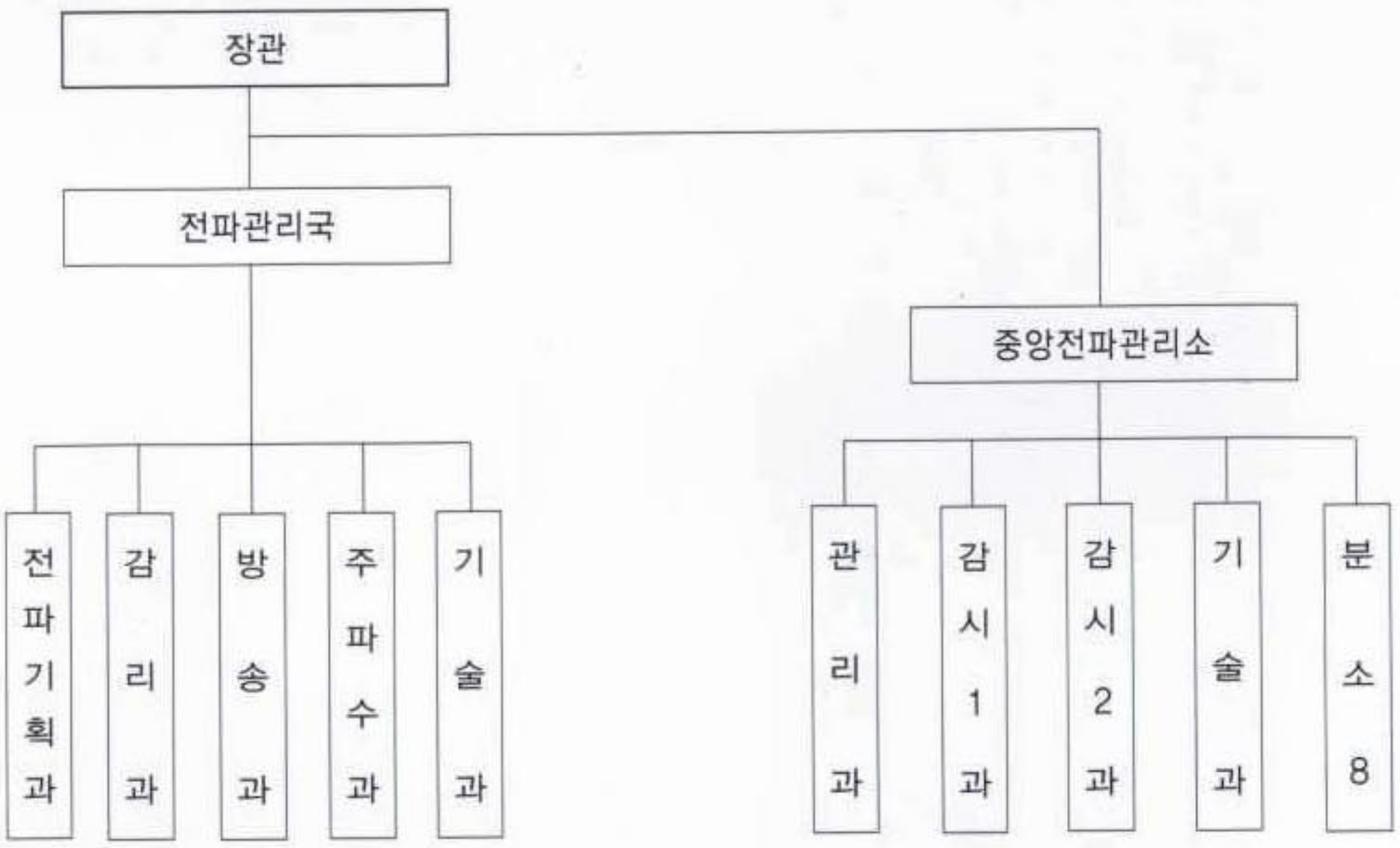

◇1994년 5월 4일 (대통령령 제14252호 전파관서 직제 개정)
통신정책실의 통신위성관련 기능을 전파관리국 기술과의 기능과 통합하여 통신위성과로 개편
◇1994년 12월 23일 (대통령령 제14445호 전파관서 직제 개정)
전파관리국을 전파방송관리국으로 개칭하고 전파기획과, 감리과, 방송과, 주파수과, 통신위성과를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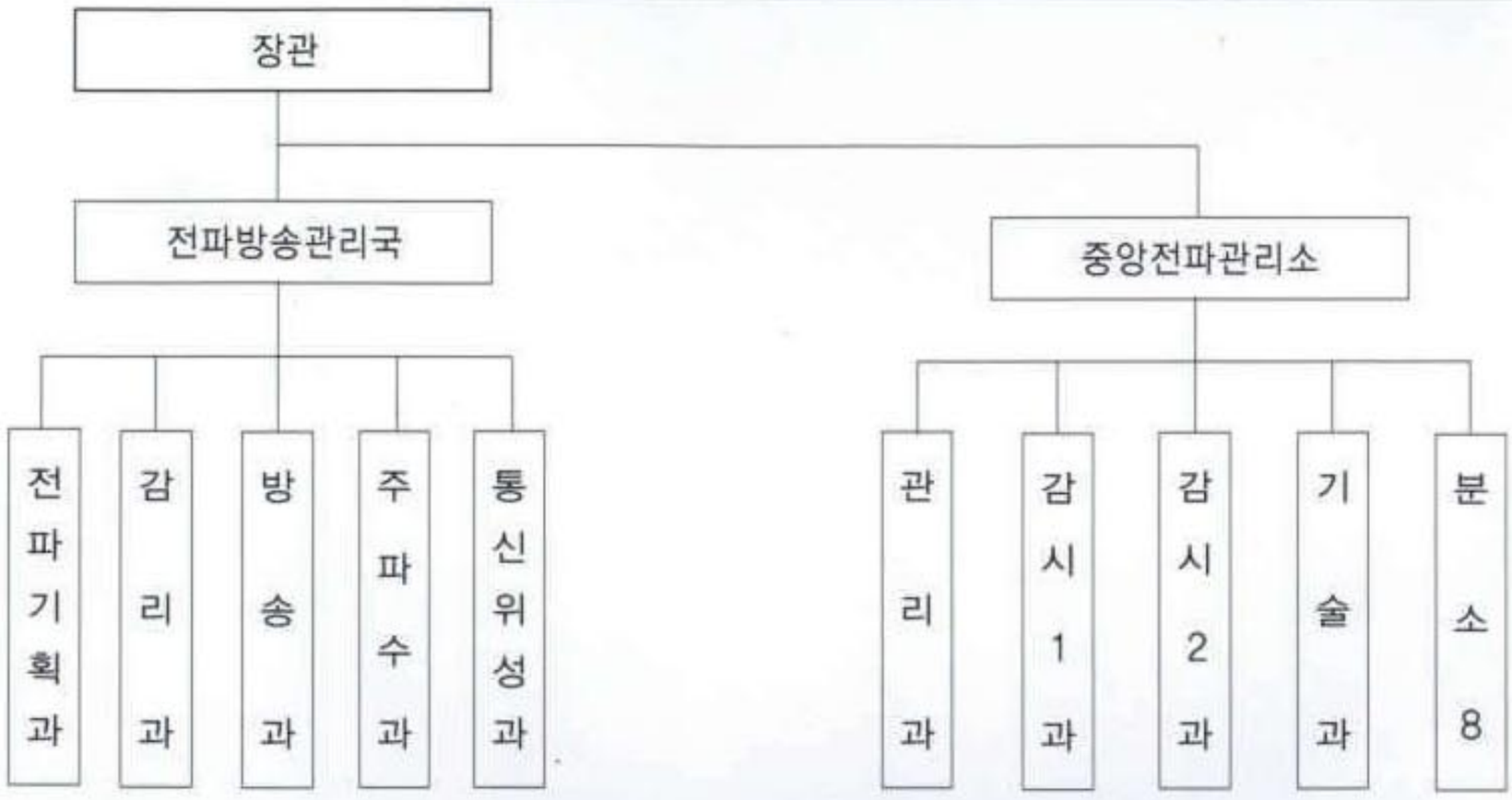

◇1996년 2월 22일 (대통령령 제14927호 전파관서 직제 개정)
중앙전파관리소 대구분소, 전주분소 신설
◇1999년 5월 24일 (대통령령 제16365호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직제중 개정령)
전파방송관리국에 전파방송기획과, 전파감리과, 방송위성과, 주파수과를 둔다.

映像으로 보는

중앙전파관리소 / 지방분소 얼굴들



중앙전파관리소



♥ 1947. 6. 1 : 체신부 전무국 무선과 직할 광장분실 설치(광장수신소 내)
♥ 1970. 4. 1 : 서울전파감시국 청사 이전(성수동 ⇨ 가락동)
♥ 1979. 9. 7 : 전파통제소 신설
♥ 1980. 8.26 : 전파감시국을 전파감리국으로 개칭
♥ 1982. 1. 1 : 전파통제소를 전파통제국으로 개칭
♥ 1983. 12.30 : 중앙전파감시소로 승격
♥ 1987. 12. 15 : 중앙전파관리소로 개칭



◀ 관리과 직원일동



감시1과 직원일동 ▶



◀ 감시2과 직원일동



기술과 직원일동 ▶



▲ 청사

중앙전파관리소-서울분소



♥ 1987. 1. 2 : 중앙전파감시소 제7|분소 개소
♥ 1997. 10.30 : 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34-10번지 이전
♥ 관 할 구 역 : 서울시, 경기도
♥ 직 제 : 관리계, 감시계, 조사1계, 조사2계, 통신보안계, 국제감시계, 기술계, 서울분실, 인천분실

중앙전파관리소-부산분소

♥ 1949. 12. 3 : 부산전파감시국 개국
♥ 1964. 10.31 :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27-1번지 이전
♥ 관 할 구 역 :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 직　　제 : 관리계, 감시계, 조사1계, 조사2계, 통신보안계, 국제감시계, 기술계, 부산분실





청사 ▶

중앙전파관리소-광주분소



♥ 1950. 1. 8 : 광주전파감시국 개국
♥ 1976. 6. 2 : 전남 나주군 산포면 매성리 산5-2번지 이전
♥ 관 할 구 역 : 광주시, 전라남도
♥ 직 제 : 관리계, 감시계, 조사계, 분석계, 통제계
기술계, 광주분실



◀ 청사

중앙전파관리소-강릉분소



▲ 청사

♥ 1964. 10. 23 : 강릉전파감시국 개국
♥ 1992. 2. 12 :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산 106번지
♥ 관 할 구 역 : 강원도
♥ 직 제 : 관리계, 감시계, 조사계, 분석계, 통제계
기술계, 강릉분실, 원주분실, 속초분실





▲ 청사

중앙전파관리소-당진분소



♥ 1970. 11. 19 : 서울전파감시국 13 분실(합덕) 설치
♥ 1990. 12. 25 : 충남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청사 신축
♥ 관 할 구 역 : 충청남도 일부(당진군, 서산군, 태안군, 예산군, 홍성군, 서천군) 및 중단파 해안, 항공
♥ 직 제 : 관리계, 감시계, 통제계, 기술계

중앙전파관리소-제주분소

♥ 1970. 1. 12 : 광주전파감시국 제주분실 설치
♥ 1992. 2. 13 : 제주시 오라동 이전
♥ 관 할 구 역 : 제주도
♥ 직 제 : 관리계, 감시계, 조사계, 분석계, 통제계
기술계





청사 ▶

중앙전파관리소-울산분소



♥ 1976. 12. 14 : 부산전파감시국 부산분국 설치
♥ 1977. 12. 5 :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이전
♥ 관 할 구 역 : 전국
♥ 직 제 : 관리계, 분석계, 통제계, 기술계



◀ 청사

중앙전파관리소-대전분소



▲ 청사

♥ 1992. 11. 23 : 중앙전파관리소 대전분소 신설
♥ 1995. 5. 21 : 대전시 서구 갈마동 408-9번지 이전
♥ 관 할 구 역 : 대전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일부
♥ 직 제 : 관리계, 감시계, 조사계, 기술계, 청주분실





▲ 청사

중앙전파관리소-대구분소



♥ 1996. 4. 24 : 중앙전파관리소 대구분소 신설
♥ 1998. 12. 18 :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1429-7번지 청사착공
♥ 관 할 구 역 : 대구시, 경상북도
♥ 직 제 : 관리계, 감시계, 조사계, 기술계

중앙전파관리소-전주분소

♥ 1996. 4.24 : 중앙전파관리소 전주분소 신설
♥ 1998.12.16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2-3BL 이전
♥ 관 할 구 역 : 전라북도
♥ 직 제 : 관리계, 감시계, 조사계, 기술계





청사 ▶

참고문헌

대한민국 체신연혁	1971	체신부
대한민국 전기통신사업사	1971	체신부
한국전기통신100년사	1985	체신부
신문기사 발췌집	1992	체신부공보관실
전남체신연혁	1988	전남체신청
전북체신25년사	1996	전북체신청
전파관리업무편람	1987	체신부
선통25년사	1985	한국선박통신사협회
부산체신청 90년사	1996	부산체신청
한국이동통신10년사	1995	한국이동통신
정보통신표준화 10년	1999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00년대를 향한 전파감시 장기종합계획	1984	체신부
정보통신통계연보	1996	정보통신부
전파부분 중장기 계획	1984	한국전기통신연구소
전파관리 전산화 기본설계	1986	체신부
제6차통신부문계획	1986	체신부
전파진흥기반조성계획	1991	체신부
전파관계훈령집	1969	전파관리국
업무현황	1990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감시 통계연보	1987	전파관리국
전기통신의 발자취	1990	한국통신
중앙전파관리소회보	(1984~1994)	중앙전파감시소/중앙전파관리소
사진속에 담긴 전기통신의 발자취	1990	한국통신
영상으로본 한국전기통신 100년	1985	한국통신
체신연혁 부록(전권)	-	체신부
체신문화(전권)	-	체신부
조선총독부 체신통계요람	1938	체신국
체신지(전권)	-	체신부
정보와 통신(전권)	-	정보통신부
체신백서	1976	체신부
체신화보	1963	체신부
체신화보	1965	체신부
체신화보	1967	체신부
전기통신사업80년사	1966	체신부
전파연혁	1978	전파관리국
한국통신10년사	1992	한국통신

만든 사람들

【편찬위원회】

위원장	강 덕 근	중앙전파관리소장
위 원	이 근 협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 전파감리과장
〃	주 종 옥	중앙전파관리소 감시1과장
〃	최 광 용	중앙전파관리소 감시2과장
〃	서 성 하	중앙전파관리소 기술과장
〃	김 재 휘	중앙전파관리소 관리과장
고 문	양 의 청	전파연구소 이천분소장
간 사	김 종 환	중앙전파관리소 감시1과 관리계장

【편찬전담반】

반 장	주 종 옥	중앙전파관리소 감시1과장
반 원	노 영 현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 전파감리과
〃	반 경 식	중앙전파관리소 감시1과
〃	오 병 희	중앙전파관리소 감시1과
〃	오 병 국	중앙전파관리소 감시1과
〃	이 용 균	중앙전파관리소 감시1과

【감 수】

민 병 기	초대 광장분실장
이 응 효	전 한국통신 부사장
박 성 득	전 정보통신부 차관
문 명 진	전 전파통제국장
윤 현 보	동국대학교 교수
진 용 옥	경희대학교 교수

편집후기

우리나라 전파관리50년 역사를 뒤돌아 보고자 「전파관리50년사」를 편찬하고자 한것은 1997년으로 계획되었지만 매서운 IMF한파로 인하여 늦게나마 발간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당초 촉박한 제작기간 등 내부여건상 추진이 망설여 지긴 했으나 역사를 계획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역사를 정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고 무모하게 시작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오로지 뜨거운 열정으로 밀고 나왔습니다. 계절을 잊고 칙칙한 지하실을 뒤지면서 한 줄의 전파관리 역사 자료라도 더 발굴하려 했고 매캐한 곰팡이 냄새나는 박물관 수장고에서 낡은 서적을 조심조심 뒤적거리느라 여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지난여름 석양 빛에 비지땀을 흘리면서도 가을의 결실을 바라보며 밤낮으로 열띤 토론과 집중작업을 벌리던 정열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막연히 구전되어오던 이야기들이 기록속에서 발견될때 그 환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으며 선배님들의 사진과 증언이 없었으면 이러한 작업은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역사는 늘 새로워지는 것이며 언제든 다시 써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전파감시는 전기통신과 더불어 함께 발달되어 왔지만 비밀이라는 운명의 굴레를 뒤집어 쓴 탓에 철저히 파기되는 역사의 연속이라 자료의 발굴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완전한 역사란 원래부터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라고 자위도 해보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중요한 과거 기록이 누락되거나 본의 아닌 오류가 나지않도록 애를 썼으나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음을 외람되게 자인합니다. 아울러 사진은 눈으로 말한다 했으니 향후 전파관리60년사, 100년사가 태어날 때 이 자료가 믿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행히 「전파관리50년사」를 편찬하면서 우리나라 무선통신의 역사에 중요한 사료도 새로이 발굴되는 등 약간의 성과도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광제호 사진발굴, 전파감시 효시의 재정립, 1915년에 제정된 무선전신법의 올바른 번역, 전파관련 부서의 간부이 · 취임사 등을 새로이 정리하였습니다

숱한 산고를 이겨내고 삼위일체가 되게 처음부터 이끌어 주신 강덕근 소장님, 전파방송관리국 이근협 과장님,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시작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신 양의청 전파연구소 이천 분소장님께도 감사 드리며, 자료수집과 정리 및 편찬업무를 도와주신 여러 분들과 역사정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강행군으로 일관한 「전파관리50년사」 편찬업무 전담반의 반경식, 오병국, 오병희, 이용균 그리고 편찬작업에 열심히 조력한 김영택, 박인석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 책을 편집하여 주신 한양 애드 전직원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1999. 12. 28

전파관리50년사 편찬전담반장
중앙전파관리소 감시1과장 주 종 옥

電波管理五十年史

1999년 12월 17일 인쇄
1999년 12월 28일 발행

발 행 인 강 덕 근

편 찬 전파관리50년사 편찬위원회

발 행 처 중 앙 전 파 관 리 소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00

디 자 인 한 양 애 드(02-2279-0814)

인 쇄 (재)체 성 회(02-735-7351)